



Walking



Mt. climbing



Body building



Badminton



Swimming



Yoga



Bicycle



Dance sports



Golf



Horse-riding



Ski



Skin scuba



Baseball



Soccer



Basketball



Volleyball

2016 Sport White Paper

2016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6 Sport White Paper

일러두기

1. 본 간행물은 『2002 체육백서』를 시작으로 해마다 발행되고 있습니다.
2. 『2016 체육백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 의해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되었습니다.
3. 스포츠산업 관련 자료는 2014년부터 『스포츠산업백서』가 발간됨에 따라 체육백서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4. 본 백서는 7개의 체육단체와 교육부, 통일부,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목차는 총 10장으로 1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2장 생활체육, 3장 학교체육, 4장 전문체육, 5장 국제체육, 6장 장애인체육, 7장 체육시설, 8장 체육전문인력, 9장 남북체육교류, 10장 스포츠윤리로 구성하였습니다.
5. 본 백서의 기초자료는 201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몇몇 자료들은 각 기관이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6. 본 백서의 통계자료에 기입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자료마다 출처 및 주를 삽입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7. 『2016 체육백서』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 개발원(www.sports.re.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 Sport White Paper

발간사

스포츠는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즐기는 문화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정책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체육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새롭게 통합·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체육역사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하나가 되어 국민들이 한층 더 가까이 스포츠와 함께 ‘건강한 삶’을 다지고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스포츠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장애인 스포츠 참여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스포츠복지 실현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리우 하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여 208개 출전국 중 8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한국양궁은 올림픽 최초로 전 종목을 석권하며 대한민국의 스포츠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체육계 내부적으로는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심판매수, 도핑 등 스포츠비리

문제와 스포츠 분야가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건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체육단체의 부조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스포츠인권을 향상시키고 체육계를 새롭게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스포츠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개최는 인류에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공유하고 평화와 화합의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대회시설과 경기운영, 문화올림픽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빈틈없이 잘 준비하여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가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를 근대 올림픽이 추구하고자 했던 평화올림픽으로 치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2016 체육백서가 체육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체육 관련 종사자 여러분의 업무와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국민들이 정부의 체육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향후 체육활동을 계획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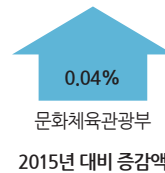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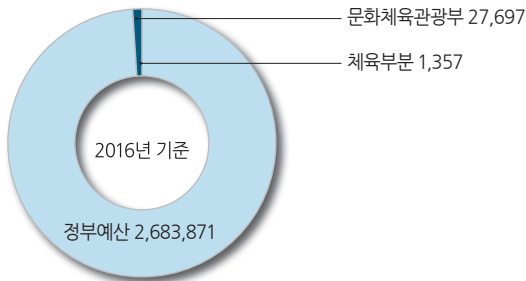
2017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 종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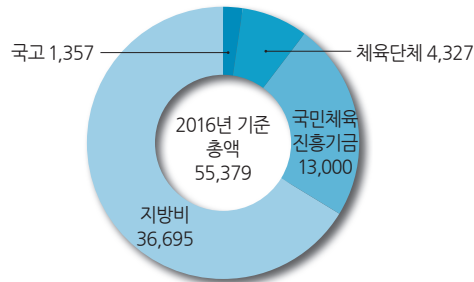
2016 한국체육

체육진흥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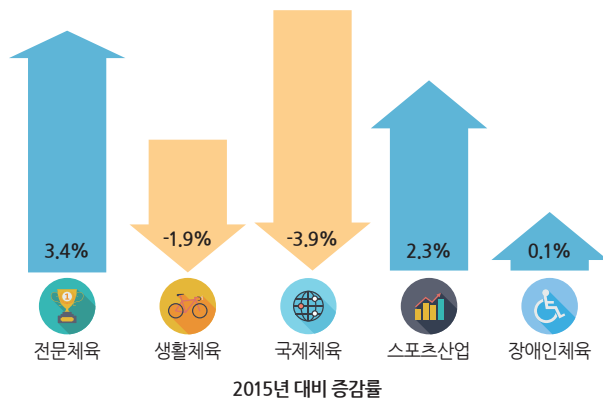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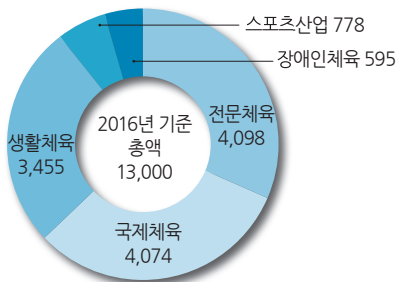
정부예산 대비 체육예산 (단위 : 억 원)



체육진흥지원의 구성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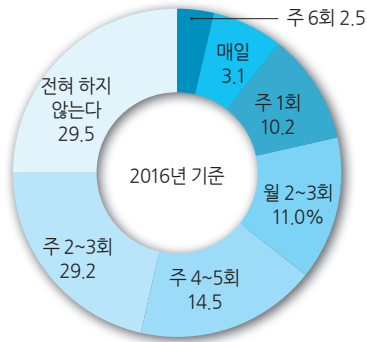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구성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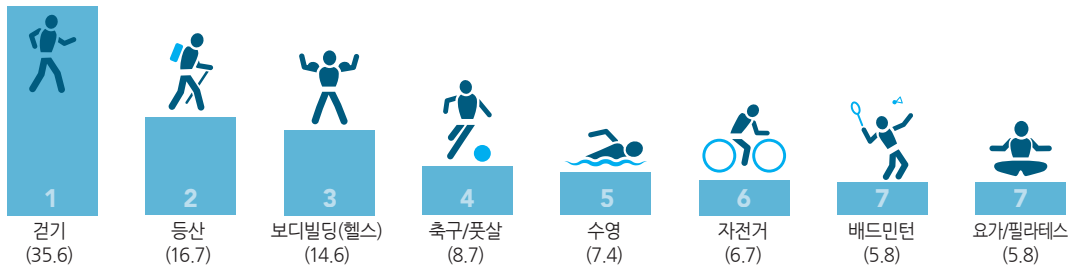


생활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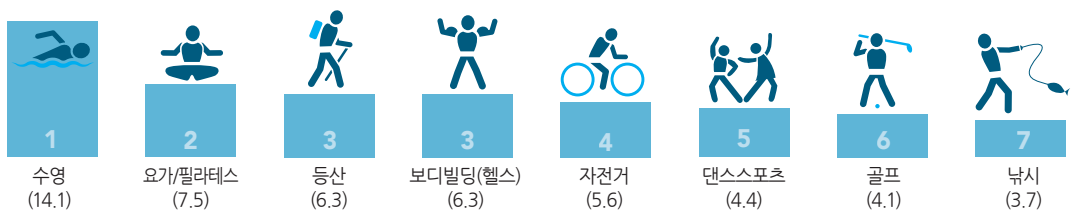
생활체육 참여율 (단위 : %)



생활체육 참여종목 (2016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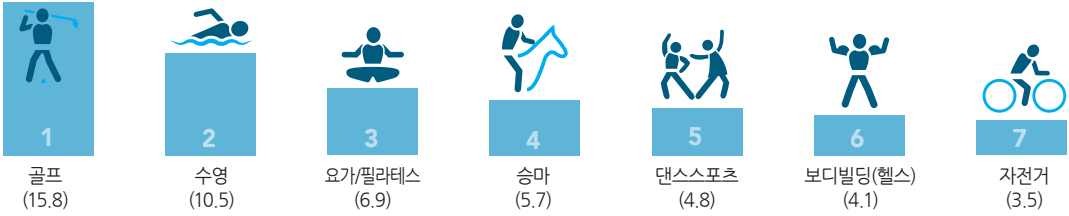


생활체육 참여 희망종목(시간적 여유 시) (2016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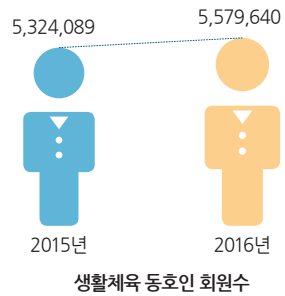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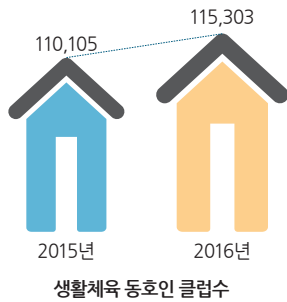
생활체육 참여 희망종목(금전적 여유 시)

(2016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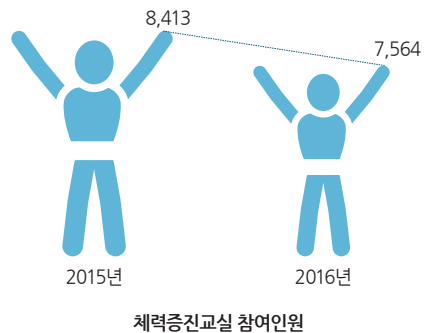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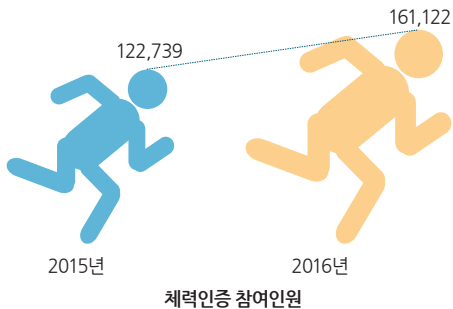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수 및 회원수

(단위 :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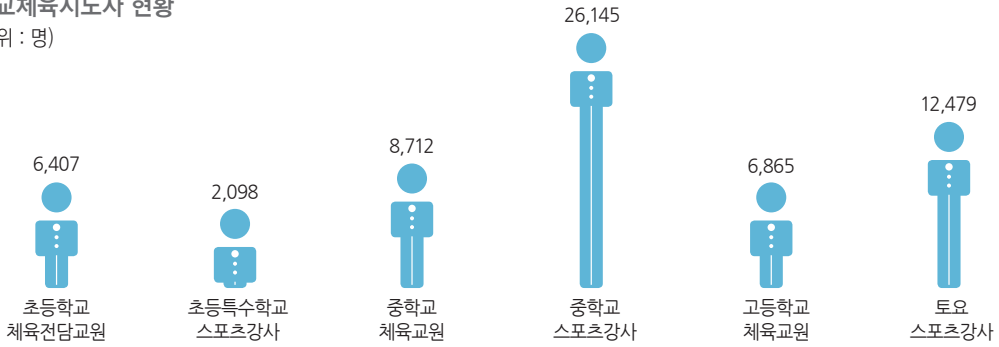
국민체력 100 참여인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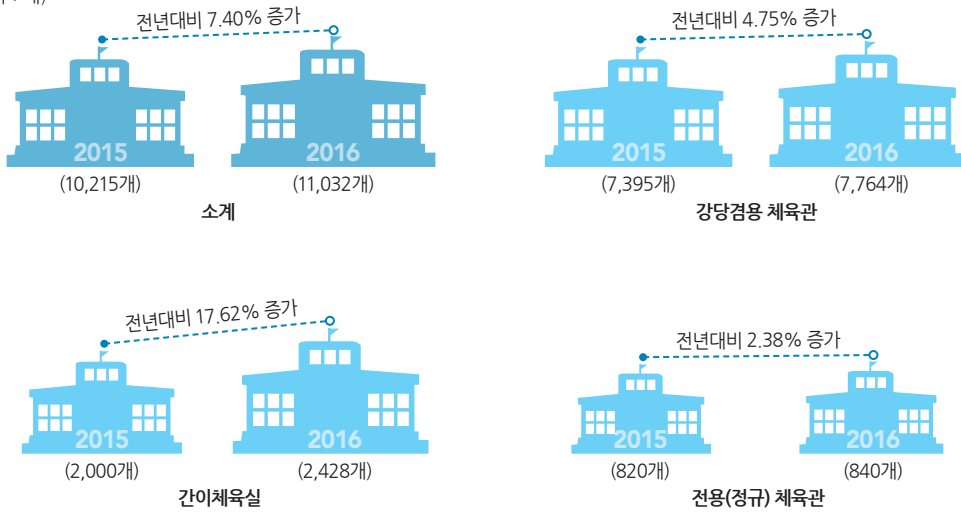


학교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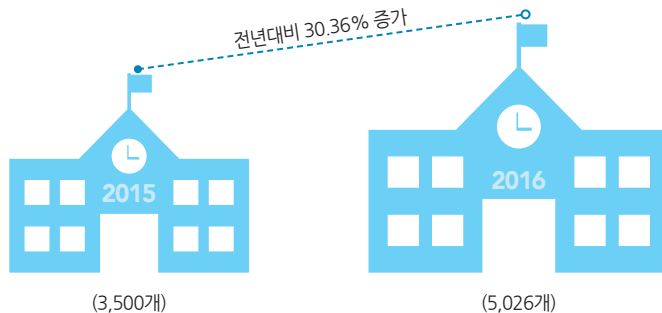
학교체육지도자 현황 (단위 : 명)



학교체육시설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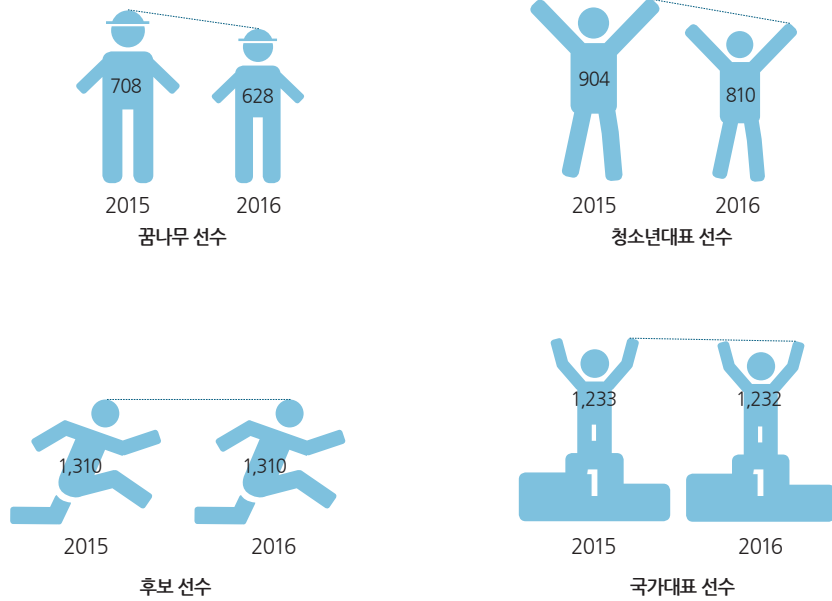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학교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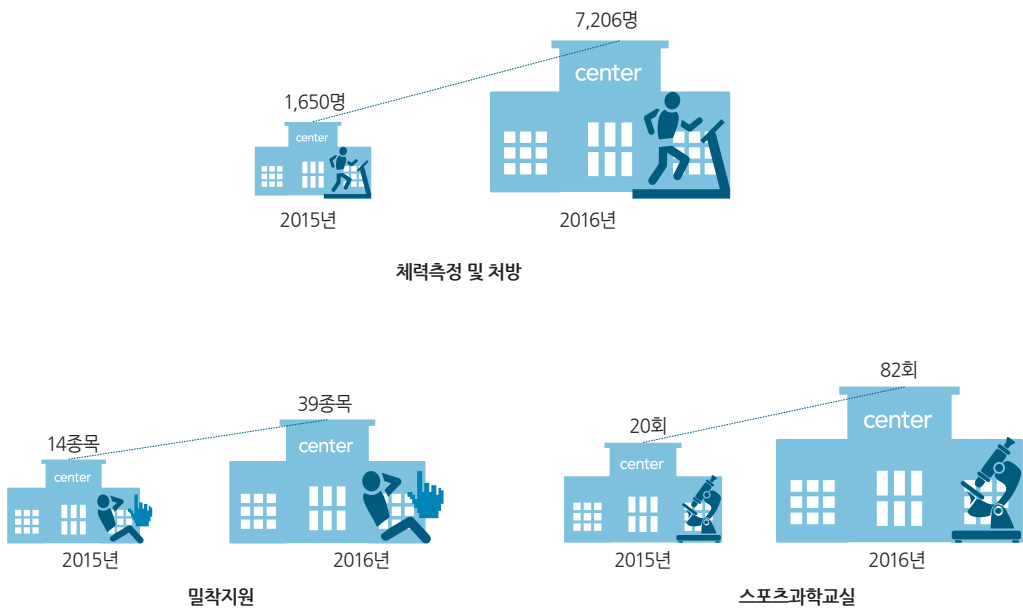


전문체육

우수선수 발굴·육성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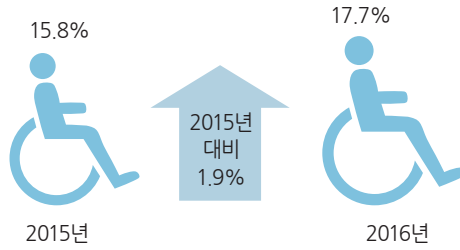
스포츠과학지원센터 (단위 : 개, 명, 종목, 회)



장애인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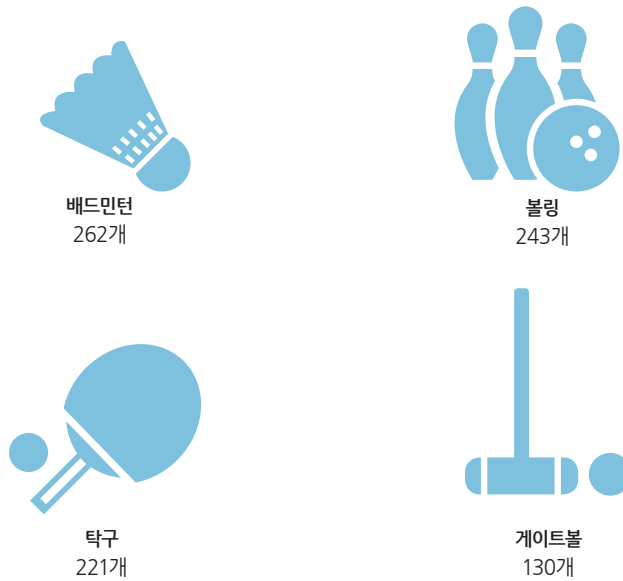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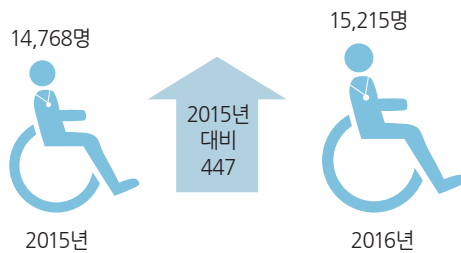
장애인 생활체육 클럽 상위종목

(단위 : 개)



장애인 전문체육 등록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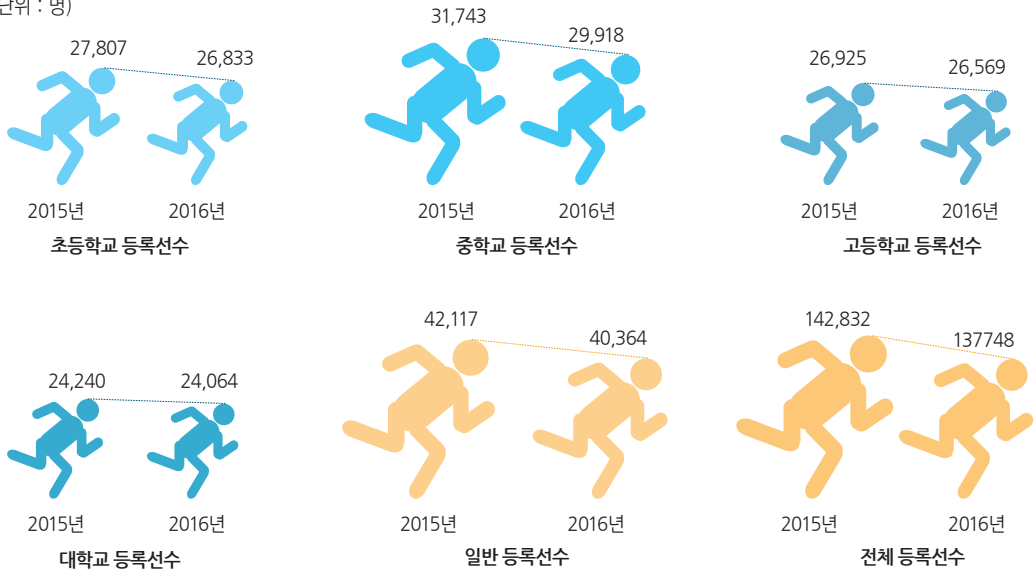
(단위 : 명)



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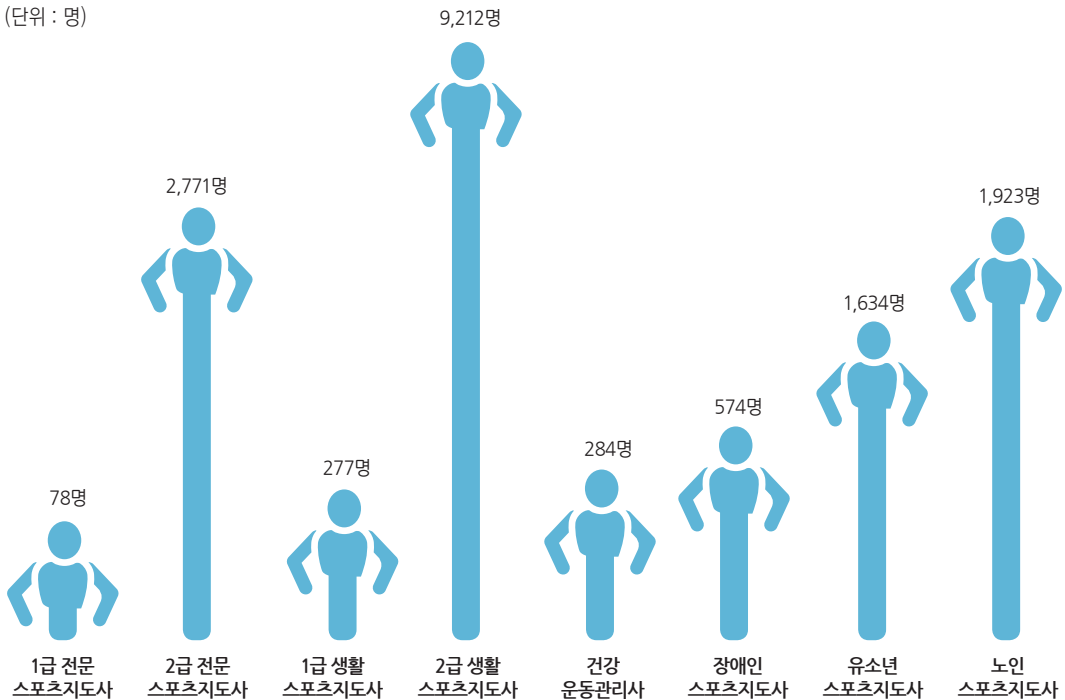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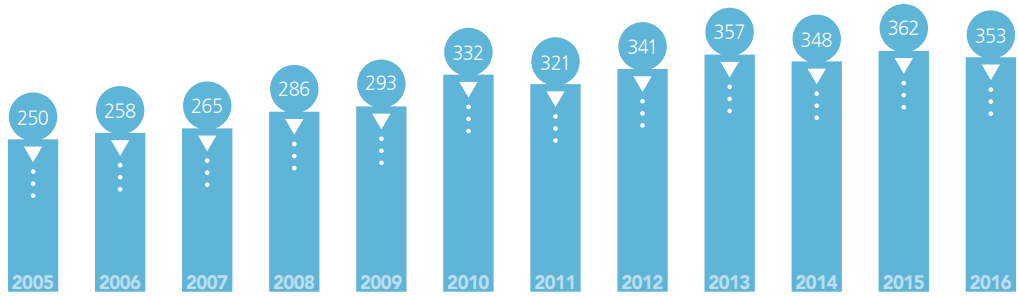
체육지도자 양성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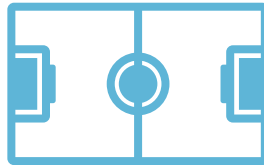
국제체육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위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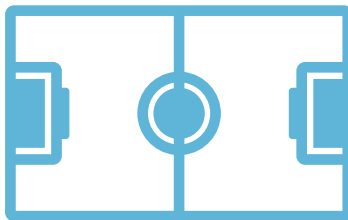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2016년 기준
22,662개소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단위 : 개소)



2016년 기준
55,857개소

2016 Sport White Paper

목 차

제1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001

제1절 체육정책 변천	2
1. 중앙정부 체육정책	2
제2절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17
1. 중앙정부 체육조직	17
2. 지방자치단체 체육조직	24
3. 체육단체	53
제3절 체육진흥자원	100
1.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100
2.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101
3.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재정	102
4. 국민체육진흥기금	120
제4절 체육관련 법제	126
1. 체육관계법 현황	126
2. 체육관계법	127

제2장 생활체육 147

제1절 생활체육 전개	148
1. 생활체육 정책 전개	148
2. 생활체육 인프라 전개	153
제2절 생활체육 참여실태	157
1. 생활체육 직접 참여실태	157
2. 생활체육 간접 참여실태	164
제3절 생활체육 참여지원	166
1. 생활체육광장	166

2. 국민체력100 운영	167
3. 동호인클럽 육성	171
4. 생활체육대회 개최	172
5. 스포츠클럽 및 동호인조직 육성	174
제4절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181
1. 체육활동 소외계층 지원	181
2. 스포츠강좌 이용권	184
제5절 생활체육 홍보	186
1. 스포츠7330 캠페인 전개	186
2. 범국민 생활체육캠페인 전개	189
3. 생활체육정보포털 서비스 확대운영	191

제3장 학교체육 193

제1절 학교체육 전개	194
제2절 학교체육 현황	198
1. 체육교육과정	198
2. 체육 담당교원	205
3. 학교체육시설 현황	206
4. 학생건강	211
5. 학교운동부	215
6. 체육 중 · 고등학교	216
제3절 일반학생 지원 사업	219
1.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219
2.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 활성화(1학생 1스포츠 활동)	224
3.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232
4. 학생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화	234
제4절 학생선수 지원 사업	236
1. 최저학력제	236
2.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239
3.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240

제4장 전문체육 243

제1절 전문체육 전개	244
제2절 전문체육 선수육성	247
1. 꿈나무선수	247
2. 청소년대표선수	251
3. 후보선수	255
4. 국가대표선수	265
제3절 전문체육대회 및 훈련시설	268
1. 전국(하계)체육대회	268
2. 전국(동계)체육대회	269
3. 전국소년체육대회	271
4. 훈련시설	273
5. 스포츠과학지원센터 운영	283
제4절 선수지원 및 체육인 복지강화	284
1. 선수지원	284
2. 체육인 복지강화	288

제5장 국제체육 293

제1절 올림픽대회	294
1. 역대 올림픽대회 개최	294
2. 역대 한국 올림픽대회 참가	296
제2절 국제체육계 동향	300
1. 세계 주요국 체육행정	300
2. 국제 체육기구 현황	305
3. 국제 체육위원 현황	306
4. 도핑방지 활동	311
5.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개발활동	318
6. 국제 스포츠이벤트의 상업화	319

제3절 국제체육 역량	322
1. 해외 스포츠 국제교류 정책	322
2. 국내 스포츠 정책과 조직	325
제4절 국제체육 교류 현황	338
1. 국제종합 경기대회 참가	338
2. 국제체육교류 지원	343

제6장 장애인체육 353

제1절 장애인 생활체육	354
1. 장애인 생활체육 현황	354
2.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	356
3.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359
제2절 장애인 전문체육	367
1. 장애인 전문체육 현황	367
2. 장애인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	377
3. 이천훈련원	379
4. 장애인체육 선수복지	380
제3절 국내·외 장애인체육대회	382
1. 국내대회	382
2. 국제대회	386
제4절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현황	395
1.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진출인사	395
2. 교류의향서 및 양해각서 체결현황	398

제7장 체육시설 401

제1절 체육시설 정의 및 현황	402
1. 체육시설 정의	402
2. 체육시설 현황	405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408
1. 체육시설 조성정책 전개	408
2.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	410
3.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410
4.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413
5.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413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416
1. 국민체육센터	417
2.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	420
3.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422
4.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422
제4절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리·운영 효율화	424
1. 체육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	424
2.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429
제5절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432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배경 및 목표	432
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과제	433

제8장 체육전문인력

439

제1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440
1. 선수·코치·심판	440
2. 체육계 고등학교 및 대학(원)	447
제2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464
1.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464
2.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470
3. 체육지도자 양성	472
4. 체육지도자 배치·활용	484

제9장 남북체육교류

489

제1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의미	490
1. 남북체육교류협력 의미	490
2. 남북체육교류협력 기능	492
제2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정책 환경	493
1. 법·제도적 기반	493
2. 재원	496
제3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 현황	498
1. 남북체육회담을 통한 체육교류 발전	498
2. 남북체육교류 추진	498
3. 남북단일팀 구성 노력	502
4. 남북체육교류 현황(2011~2016)	506

제10장 스포츠윤리

513

제1절 스포츠비리	514
1. 스포츠비리 현황	514
2. 스포츠비리 근절 대책	516
제2절 스포츠윤리강화	518
1. 체육단체 감사	518
2. 클린스포츠 환경 구축	521
3.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526

2016 Sport White Paper

표 차례

■ 표 1- 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주요사업	4
■ 표 1- 2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주요 정책과제	5
■ 표 1- 3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주요 정책과제	6
■ 표 1- 4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주요 정책과제	8
■ 표 1- 5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2008~2012 체육부분 주요 정책과제	9
■ 표 1- 6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목표	10
■ 표 1- 7	스포츠비전 2018 세부 추진과제	11
■ 표 1- 8	2016년 박근혜 정부 정책 추진 성과	12
■ 표 1- 9	정부 체육부처 연혁	21
■ 표 1-10	2003~2017년 지방자치단체 체육발전 계획 수립 현황	25
■ 표 1-11	광역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26
■ 표 1-12	기초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28
■ 표 1-13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 현황	38
■ 표 1-14	광역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 실태	38
■ 표 1-15	기초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 실태	40
■ 표 1-16	대한체육회 연혁	55
■ 표 1-17	통합체육회 추진 과정	57
■ 표 1-18	통합체육회 인력구성	59
■ 표 1-19	회원종목단체 현황	60
■ 표 1-20	통합체육회 예산현황	62
■ 표 1-21	시도체육회 예산 현황	62
■ 표 1-22	시·군·구 체육회 예산 현황	63
■ 표 1-23	2016년 시도 및 시군구 회원종목단체 예산과 자체수입 비율	70
■ 표 1-24	대한장애인체육회 연혁	72
■ 표 1-25	대한장애인체육회 인력 현황	74
■ 표 1-26	시·도 대한장애인체육회 현황	75

■ 표 1-27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현황	76
■ 표 1-28	대한장애인체육회 연도별 재정 현황	77
■ 표 1-29	국민체육진흥공단 인력 현황	80
■ 표 1-30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정자산	80
■ 표 1-31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인회계 예산	82
■ 표 1-32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회계 예산	83
■ 표 1-33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인력 현황	85
■ 표 1-34	연도별 도핑검사 현황	86
■ 표 1-35	연도별 도핑방지 교육인원 현황	87
■ 표 1-36	연도별 도핑방지 현장홍보 현황	87
■ 표 1-37	WADA 및 IF와 도핑검사 위탁대행 MOU 체결 현황	88
■ 표 1-38	연도별 소재지정보 검사 현황	88
■ 표 1-39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업 추진 전략목표	89
■ 표 1-40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도별 예산 현황	89
■ 표 1-41	태권도진흥재단 연혁	91
■ 표 1-42	태권도진흥재단 연도별 예산 현황	92
■ 표 1-43	스포츠안전 교육프로그램 체계도	94
■ 표 1-44	연도별 스포츠 안전공제 가입 현황	95
■ 표 1-45	연도별 스포츠공제 가입 및 보상 현황	95
■ 표 1-46	스포츠안전재단 연도별 예산(수입) 현황	96
■ 표 1-47	2018 평창 조직위원회 인력 현황	99
■ 표 1-48	2018 평창 조직위원회 연도별 예산 현황	99
■ 표 1-49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100
■ 표 1-50	체육분야별 국고예산 현황	101
■ 표 1-51	정부예산대비 체육예산 현황	102
■ 표 1-52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 총괄표	103
■ 표 1-53	광역시자치단체 체육예산	104
■ 표 1-54	기초자치단체별 체육예산	104
■ 표 1-55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112
■ 표 1-56	광역시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112
■ 표 1-57	기초자치단체별 분야별 체육예산	113

■ 표 1-58	연도별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	121
■ 표 1-59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	122
■ 표 1-60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실적	123
■ 표 2- 1	생활체육 정책 변화	149
■ 표 2- 2	연도별 생활체육 시설 전개	154
■ 표 2- 3	연도별 생활체육분야 지도자 전개	155
■ 표 2- 4	연도별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	157
■ 표 2- 5	연도별/연령별 주 2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158
■ 표 2- 6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종목 순위	158
■ 표 2- 7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시간	159
■ 표 2- 8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기간	160
■ 표 2- 9	주로 참가하는 체육활동 참여장소	160
■ 표 2-10	연도별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	161
■ 표 2-11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 영향 주체	161
■ 표 2-12	연도별 체육활동 동반자	162
■ 표 2-13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이유	163
■ 표 2-14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	163
■ 표 2-15	참여희망 운동종목	164
■ 표 2-16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165
■ 표 2-17	프로스포츠 관람객 연도별 현황	165
■ 표 2-18	생활체육광장 사업추진 실적	166
■ 표 2-19	국민체력100 연간지원액 현황	168
■ 표 2-20	국민체력100 체력측정항목	169
■ 표 2-21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현황	169
■ 표 2-22	연도별 국민체력100 연간 참여인원	170
■ 표 2-23	국민체력100 인증단계 및 수상기준	170
■ 표 2-24	연도별 동호인 행사지원	173
■ 표 2-25	2016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현황	174
■ 표 2-26	K-스포츠클럽 연도별 지원현황	174
■ 표 2-27	연도별 동호인조직 육성 지원	175
■ 표 2-28	연도별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실적	176

■ 표 2-29	지역별 동호인클럽 및 회원 현황.....	177
■ 표 2-30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177
■ 표 2-31	시·군·구 클럽리그 운영 현황.....	180
■ 표 2-32	시·군·구 클럽리그 운영 실적.....	180
■ 표 2-33	종목별 클럽리그 최강전대회 개최.....	180
■ 표 2-34	소외계층 운동용품지원	181
■ 표 2-35	스포츠버스 지원현황	182
■ 표 2-36	행복나눔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지원현황	183
■ 표 2-37	스포츠강좌이용권 연도별 지원 실적	185
■ 표 2-38	스포츠강좌이용권 연도별 추진 실적	185
■ 표 2-39	스포츠7330 정책 추진 경과.....	188
■ 표 2-40	스포츠7330 단계별 목표와 내용	189
■ 표 2-41	스포츠7330 대중언론매체 캠페인 실적.....	190
■ 표 2-42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추진 현황.....	191
■ 표 2-43	스포츠7330 발간 실적	191
■ 표 3- 1	정부 내 학교체육 담당부처 변천.....	195
■ 표 3- 2	초·중·고등학교 체육교과 명칭 및 이수단위 변천	200
■ 표 3- 3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편제와 체육수업 이수단위	201
■ 표 3- 4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편제와 체육수업 이수단위	202
■ 표 3- 5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제와 체육수업 이수단위	204
■ 표 3- 6	2015년 개정 고등학교 체육 보통교과.....	204
■ 표 3- 7	2015년 개정 고등학교 체육 전문교과	204
■ 표 3- 8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원 배치 현황.....	205
■ 표 3- 9	중·고등학교 성별 체육교원 현황.....	206
■ 표 3-10	중·고등학교 성별 체육교원 현황.....	206
■ 표 3-11	학교체육시설 설치현황	207
■ 표 3-12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선정 구분.....	208
■ 표 3-13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지역별 현황	208
■ 표 3-14	초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213
■ 표 3-15	중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214
■ 표 3-16	고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214

■ 표 3-17	건강체력 우려학생 현황	215
■ 표 3-18	학교운동부 현황	216
■ 표 3-19	전국 체육중학교 학생 수	217
■ 표 3-20	전국 체육고등학교 학생 수	217
■ 표 3-21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원 배치현황 및 계획	219
■ 표 3-22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현황	220
■ 표 3-23	시·도교육청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 현황	221
■ 표 3-24	시·도별 토요스포츠강사 배치 인원 현황	222
■ 표 3-25	수영 실기교육 현황	223
■ 표 3-26	전국 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내용	224
■ 표 3-27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관련 「학교체육진흥법」 내용	225
■ 표 3-28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학교 현황	226
■ 표 3-29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예산 배부 내역 현황	227
■ 표 3-30	지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요	228
■ 표 3-31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229
■ 표 3-32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요	229
■ 표 3-33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비 지원 현황	230
■ 표 3-34	학교안·밖 프로그램 현황	231
■ 표 3-35	학생심판연수 및 찾아가는 스포츠 클리닉 종목	232
■ 표 3-36	여학생 체육활성화관련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내용	233
■ 표 3-37	여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233
■ 표 3-38	학생건강정보센터 영역별 제공자료	235
■ 표 3-39	최저학력기준 단계별 적용계획	237
■ 표 3-40	최저학력제 시행현황	238
■ 표 3-41	연도별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실적	239
■ 표 3-42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	240
■ 표 4- 1	전문체육 정책 전개	245
■ 표 4- 2	종목별 꿈나무선수 선발현황	249
■ 표 4- 3	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현황	250
■ 표 4- 4	종목별 청소년대표선수 선발육성 인원 및 선발기준	252
■ 표 4- 5	청소년대표선수 합숙훈련	253

■ 표 4- 6	종목별 청소년대표선수 국외전지훈련	254
■ 표 4- 7	연도별 후보선수 발굴 및 국가대표선수 배출	256
■ 표 4- 8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비율	256
■ 표 4- 9	종목별 후보선수 및 지도자 현황	258
■ 표 4-10	후보선수 훈련육성 사업예산 지원내역	260
■ 표 4-11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결과	260
■ 표 4-12	국가대표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 결과	262
■ 표 4-13	국가대표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 결과	263
■ 표 4-14	한일우수청소년스포츠교류 현황	264
■ 표 4-15	종목별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현황	265
■ 표 4-16	대회와 선수층 구분에 따른 국가대표 훈련 현황	266
■ 표 4-17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훈련 현황	266
■ 표 4-18	연도별 전국(하계)체육대회 개최 현황	269
■ 표 4-19	연도별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 현황	270
■ 표 4-20	연도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현황	272
■ 표 4-21	태릉선수촌 시설 현황	275
■ 표 4-22	진천선수촌 시설 현황	277
■ 표 4-23	태백선수촌 시설 현황	279
■ 표 4-24	연도별 선수촌 시설확충 현황	280
■ 표 4-25	진천선수촌 조성 추진 현황	281
■ 표 4-26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현황	283
■ 표 4-27	체육영재 육성 현황	284
■ 표 4-28	연도별 체육계학교 지원 현황	285
■ 표 4-29	국가대표 하계종목 국외전지훈련 지원 현황	286
■ 표 4-30	국가대표 동계종목 국외전지훈련 지원 현황	287
■ 표 4-31	연도별 외국인코치 초청 현황	287
■ 표 4-32	지도자 국외정보수집사업 현황	288
■ 표 4-33	국가대표선수 생애주기 교육 현황	289
■ 표 4-34	연도별 생애주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290
■ 표 4-35	연도별 은퇴선수 취업지원 추진성과	291
■ 표 4-36	장학금 지원 현황	291

■ 표 4-37	보조금 지원 현황	291
■ 표 4-38	포상내역	292
■ 표 5- 1	역대 올림픽 개최현황	295
■ 표 5- 2	역대 올림픽대회 하계 메달 획득 현황	299
■ 표 5- 3	역대 올림픽대회 동계 메달 획득 현황	299
■ 표 5- 4	주요국 체육담당부처 및 주요역할	301
■ 표 5- 5	주요 국제체육기구 및 단체 주요역할 현황	306
■ 표 5- 6	대륙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배출 인원 현황	307
■ 표 5- 7	국제올림픽위원회연합회 집행위원회(2014~2018)	308
■ 표 5- 8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원국 현황	309
■ 표 5- 9	하계올림픽대회 정식종목별 국제경기연맹/홈페이지 현황	310
■ 표 5-10	세계도핑방지기구 위원회 구성	313
■ 표 5-11	세계도핑방지기구 금지약물 목록	314
■ 표 5-12	도핑컨트롤센터 년도별 분석시료 현황	317
■ 표 5-13	도핑컨트롤센터 년도별 양성 보고 건수	317
■ 표 5-14	역대 하계올림픽대회 중계권료 및 중계국가	320
■ 표 5-15	올림픽대회 공식후원업체 후원금액	321
■ 표 5-16	박근혜 정부 국제체육 정책	326
■ 표 5-17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요업무	327
■ 표 5-18	대한체육회 부서별 국제관계 주요업무	328
■ 표 5-19	체육교류협정 체결 현황	329
■ 표 5-20	국제체육인력 강화방안	330
■ 표 5-21	2016년도 체육인재육성단 지원실적	331
■ 표 5-22	2016년도 수료생 성과사례	331
■ 표 5-23	국제심판 자격취득 지원과정 종목별 지원현황	332
■ 표 5-24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임원 현황	333
■ 표 5-25	IOC 한국인위원 현황	334
■ 표 5-26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분과위원 세부현황	335
■ 표 5-27	국제경기연맹 한국인 임원 현황	337
■ 표 5-28	아시아경기연맹 한국인 임원 현황	337
■ 표 5-29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현황	338

■ 표 5-30	릴레함메르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요	339
■ 표 5-31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339
■ 표 5-32	아시아유소년국제경기대회 개요	340
■ 표 5-33	리우 하계올림픽대회 개요	341
■ 표 5-34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341
■ 표 5-35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현황	342
■ 표 5-36	아시아비치경기대회 개요	343
■ 표 5-37	한·일, 한·중 청소년 스포츠교류	344
■ 표 5-38	드림프로그램 참가 현황	345
■ 표 5-39	태권도지도자 초청 연수프로그램 현황	346
■ 표 5-40	사업실적	347
■ 표 5-41	개발도상국 선수초청 합동훈련 사업 성과	348
■ 표 5-42	개발도상국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 사업성과	349
■ 표 5-43	개발도상국 스포츠 발전 지원 연도별 사업 현황	350
■ 표 5-44	국제체육기구 파견사업 현황	350
■ 표 5-45	국제체육교류 지원 및 국제회의의 파견사업 현황	351
■ 표 6- 1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54
■ 표 6- 2	시·도 장애인 생활체육 클럽팀 현황	355
■ 표 6- 3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 현황	358
■ 표 6- 4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기타 프로그램 지원 실적	360
■ 표 6- 5	연도별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실적	360
■ 표 6- 6	2016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현황	361
■ 표 6- 7	종목 통합대회 개최 현황	361
■ 표 6- 8	장애유형별 통합대회 개최 현황	365
■ 표 6- 9	장애유형별 축제대회 개최 현황	365
■ 표 6-10	20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어울림사이클대회 개최 현황	365
■ 표 6-11	전국어울림축제대회 개최 현황	365
■ 표 6-12	2016 전국장애인체육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현황	366
■ 표 6-1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현황	366
■ 표 6-14	연도별 국내대회 지원현황	368
■ 표 6-15	연도별 전문인력(등급분류사, 심판) 양성현황	368

■ 표 6-16	2016년 전문인력(등급분류사, 심판) 양성 사업 세부현황	369
■ 표 6-17	연도별 시도 등록선수 현황	370
■ 표 6-18	연도별 종목별 등록선수 현황	370
■ 표 6-19	장애인 꿈나무, 신인선수 국가대표 선발 현황	372
■ 표 6-20	2016년 장애인 국가대표훈련 현황	372
■ 표 6-21	연도별 장애인실업팀 지원 현황.....	376
■ 표 6-22	장애인실업팀 종목별 운영현황.....	376
■ 표 6-23	전임지도자 배치현황	377
■ 표 6-24	연도별 장애인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 상담 접수 현황	378
■ 표 6-25	연도별 장애인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 교육 및 홍보 현황	378
■ 표 6-26	이천훈련원 1단계 건립(2007-2009) 시설내역	379
■ 표 6-27	이천훈련원 2단계 건립(2011-2015) 시설내역	379
■ 표 6-28	이천훈련원 3단계 건립(2016) 시설내역	380
■ 표 6-29	연도별 장애인체육선수 복지지원금 지급현황.....	381
■ 표 6-30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383
■ 표 6-31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384
■ 표 6-32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현황.....	385
■ 표 6-33	하계 패럴림픽대회 개최 현황	387
■ 표 6-34	동계 패럴림픽대회 개최 현황	388
■ 표 6-35	하계 농아인올림픽대회 개최 현황.....	390
■ 표 6-36	동계 농아인올림픽대회 개최 현황.....	390
■ 표 6-37	역대 장애인아시아대회 참가 현황.....	392
■ 표 6-38	2016년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현황	393
■ 표 6-39	2016년 국제회의 및 워크숍 참가 현황.....	395
■ 표 6-40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대한민국 집행위원 및 상임위원 현황.....	396
■ 표 6-41	장애유형별 국제스포츠기구 개요.....	397
■ 표 6-42	장애유형별 국제스포츠기구 내 대한민국 주요 인사 현황	397
■ 표 6-43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한민국 집행위원 및 상임위원 활동 현황	398
■ 표 6-44	교류의향서 및 양해각서 체결현황.....	399
■ 표 7- 1	체육시설 종류	403
■ 표 7- 2	공공체육시설 분류기준	404

■ 표 7- 3	전국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406
■ 표 7- 4	전국 시·도별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407
■ 표 7- 5	체육시설 지원사업	416
■ 표 7- 6	연도별 체육시설 지원실적 및 계획	417
■ 표 7- 7	지원시설	417
■ 표 7- 8	연도별·지역별 지원 실적	418
■ 표 7- 9	연도별·지역별 지원 실적	420
■ 표 7-10	연도별 지원실적	422
■ 표 7-11	연도별 지원 내역	423
■ 표 8- 1	종목별 등록선수 수	440
■ 표 8- 2	연도별 등록선수 수	443
■ 표 8- 3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수	443
■ 표 8- 4	종목별 심판 수	445
■ 표 8- 5	국제심판 자격취득 및 역량강화 교육 현황	447
■ 표 8- 6	고등학교 체육계열학과 및 학생 수	448
■ 표 8- 7	체육계열 전문대학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	449
■ 표 8- 8	체육계열 대학교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	453
■ 표 8- 9	체육계열 대학원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	460
■ 표 8-10	자격체계 기존 및 현행 비교표	464
■ 표 8-11	체육지도자 지도대상 및 분야	465
■ 표 8-12	체육지도자 자격정의	466
■ 표 8-13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467
■ 표 8-14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468
■ 표 8-15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과목	469
■ 표 8-16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470
■ 표 8-17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471
■ 표 8-18	체육지도자 연도별 양성 현황	472
■ 표 8-19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473
■ 표 8-20	종목별 전문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	476
■ 표 8-21	종목별 생활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	479
■ 표 8-22	종목별 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	482

■ 표 8-23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485
■ 표 8-24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실적	486
■ 표 8-25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실적	486
■ 표 8-26	광장지도자 배치 실적	487
■ 표 9- 1	남북체육회담 주요일지	599
■ 표 9- 2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결과	500
■ 표 9- 3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현황	500
■ 표 9- 4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세부 실적	501
■ 표 9- 5	2001년~2010년 남북체육교류 세부 실적	504
■ 표 9- 6	2011년-2015년 남북체육교류 세부 실적	508
■ 표 9- 7	체육관련 북한방문 현황	510
■ 표 9- 8	체육관련 남한방문 현황	512
■ 표 10-1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사건처리 현황	515
■ 표 10-2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517
■ 표 10-3	2016년 체육단체 종합감사 실시현황	519
■ 표 10-4	국민감사관 활동실적	520
■ 표 10-5	청렴 생태계 조성 및 정착 사업	521
■ 표 10-6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주요 업무	522
■ 표 10-7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주요 실적	522
■ 표 10-8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내용	523
■ 표 10-9	스포츠인권 교육 현황	523
■ 표 10-10	선수인권 침해 신고·상담 접수 현황	524
■ 표 10-11	스포츠인권센터 신고대비 징계 현황	525
■ 표 10-12	스포츠인권 인지도	525
■ 표 10-13	2016년 선수(성)폭력 현황	525
■ 표 10-14	2016년 학교급별, 종목별, 성별 폭력 경험률	526
■ 표 10-15	2016년 학교급별, 종목별, 성별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률	526
■ 표 10-16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	527

2016 Sport White Paper

그림 차례

■ 그림 1- 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 조직도	21
■ 그림 1- 2 국·내외 스포츠단체 조직도	58
■ 그림 1- 3 통합체육회 조직도	59
■ 그림 1- 4 국내·외 장애인체육회 조직도	73
■ 그림 1- 5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도	74
■ 그림 1- 6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직도	79
■ 그림 1- 7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직도	85
■ 그림 1- 8 태권도진흥재단 조직도	91
■ 그림 1- 9 스포츠안전재단 조직도	94
■ 그림 1-10 2018 평창 조직위원회 조직도	98
■ 그림 2- 1 국민체력100 사업흐름도	171
■ 그림 3- 1 2016 학교체육 정책목표·추진과제	197
■ 그림 4- 1 꿈나무선수 선발 과정(문화체육관광부 2015체육백서, 2016)	248
■ 그림 7- 1 공공체육시설 공급 비전(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5 체육백서)	415
■ 그림 7- 2 제1차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	433
■ 그림 10-1 스포츠비리 신고센터 신고처리 과정(문화체육관광부, 2016)	517
■ 그림 10-2 종목별 경기동영상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도(대한체육회, 2016)	527

1

2016 SPORT WHITE PAPER

체육의 제도적 기반

제1절 체육정책 변천

제2절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제3절 체육진흥재원

제4절 체육관련 법제

제1절 체육정책 변천

1. 중앙정부 체육정책

1) 198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은 정부수립 후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제3공화국 이전에는 문교부에서 문화행정과 체육행정을 동시에 관장하였기에 문화국 체육과는 주로 학교체육 중심의 체육행정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체육철학, 체육기초과학, 체육지도자 육성 및 체육연구와 같은 분야의 발전은 미흡하였으며, 경기기술 향상, 올림픽경기대회 참가를 통한 국위 선양, 국제 스포츠교류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1961년부터 민간단체인 한국레크리에이션협회가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보건·체육·레크리에이션 등의 사회체육활동 보급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체육시설은 서울운동장 야구장(1959년 8월 준공)과 효창운동장(1960년 10월 준공) 및 장충체육관(1962년 12월 준공)이 전부였기에 체육의 대중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며 정부지원도 미약하였다.

제3공화국에서부터 체육정책과 제도의 틀을 확립하여 체육진흥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제3공화국은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체력 향상과 국민체육 진흥을 국민통합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기본으로 인식하여 전문체육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체육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체육정책 및 제도를 확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및 국민체육진흥재단 설립 등 체육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법의 내용은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설정, 지방체육 진흥, 학교 및 직장체육 진흥,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국립종합경기장 설치, 선수 보호 및 육성,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조항을 담고 있어 체육행정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1970년 3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

장으로 하는 국민체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체육·학교체육·체육시설·체육기금·운동용구 및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제3공화국이 체육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조직을 마련하고,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1962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한 것은 한국 체육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98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은 학교체육과 국력과시를 위한 전문체육에 중점을 두어 체육의 분야별 균형 있는 성장을 방해하였다.

2) 1990년대 중반까지의 체육정책

제5공화국은 ‘스포츠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체육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체육행정이 가장 주목받았으며, 1986 서울 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1988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막대한 행·재정적인 자원을 투입하면서 국력과시를 위한 전문체육에 집중하였다. 제5공화국은 ‘체육부’를 신설하여 국민체육진흥을 본격화하고 체육을 생활화하며 체육을 통한 국민화합과 복지증진 및 국위선양을 위한 정책의지를 관철시켰다. 체육부의 발족(1982년 3월 20일)은 한국 체육사에 커다란 분수령이 되었다. 비록 체육부가 1986 서울 하계아시아대회와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신설되었지만, 문교행정의 시각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오던 체육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1986 서울 하계아시아대회와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회 준비기간 동안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정책수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제대회 준비에 행정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국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이후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식이 크게 개선되고, 소득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진흥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제6공화국은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을 발판으로 전문체육 육성을 모체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을 세우고 생활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탄생(1991년 2월 6일)시켜 생활체육

4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제6공화국 때는 이전 정부에 비하여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국가의 행정조직 및 기구의 정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의 주요사업은 <표 1-1>과 같다.

표 1-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주요사업

	시 설	프 로 그 램	지 도 자
주 요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올림픽기념 생활관 건립 - 소규모 근린생활체육시설 건립 - 국립초등학교 내 테니스장 설치 - 광역권별 수영장 건립 - 레포츠공원 조성 ○기존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 학교체육시설 개방·이용 확대 - 올림픽시설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기 종목의 개발·보급 - 계층별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 건강생활체조 개발·보급 ○전국 스포츠교실 운영 ○직장체육프로그램 개발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국민체력평가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개선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종합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정책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근로청소년, 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소외집단을 포함한 각계각층에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국민 개개인이 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 기준치를 만들고, 건강생활체조를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였다. 1988년 12월에 처음으로 ‘국민여가활동참여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1989년 이후부터 3년마다 생활체육 참여실태를 조사하였고, 2006년부터는 2년에 1번, 그리고 2015년부터는 1년마다 생활체육 참여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체육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체육정책을 전문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전환하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적 성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전문체육을 점차 민간차원으로 이양하고, 범국민적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확산에 역점을 두었다. 문민정부의 체육정책은 민간체육단체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양적으로 성장해온 체육정책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문민정부의 체육정책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의 수립으로 집약되었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국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 도모, 세계 10위권 내의

경기력 유지, 국제체육 협력증진 및 민족화합 도모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생활체육 중점 진흥을 통해 국민체육활동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수영·육상·체조 등 기본종목과 하계종목에 비해 취약한 동계종목의 중점 육성을 추진하였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당초 155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학교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총 13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당초 투자규모는 총 1조 6,669억 원이었으나 4조 1,293억 원이 투자되었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는 <표 1-2>와 같다.

표 1-2.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주요 정책과제

정 책 과 제	추진내용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의식 고취 ○체육활동 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국민체육활동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국민건강여가 기회의 확대
전문체육의 지속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 ○국내경기대회 운영의 개선 ○우수한 경기지도 인력 양성 ○체육인 복지향상 및 체육단체의 자율성 제고
국제체육협력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체육계에서 한국의 입지 강화 ○국제체육교류 사업의 효율적 추진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 도모
체육과학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과학의 연구기반 강화 ○체육과학의 실용화
체육행정체제의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행정체제의 정비·보강 ○체육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2000년대 초반까지의 체육정책

국민의 정부는 1998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하였다. IMF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작은 정부가 요구되었고, 전체적인 정부조직의 축소에 따라 체육조직의 축소도 불가피하였다. 이에 지방화·민간화·다원화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체육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체육업무의 분

6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권화 및 민간 주도화를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 체육정책 기조는 출범 초기에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엿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건강은 생활체육에서’ 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둘째, 체육지도자 양성, 셋째,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복합체육시설 확충, 넷째, 경기단체 재정자립 기금지원 및 법인화, 다섯째, 체육용·기구 품질향상 지원, 여섯째, 2002 FIFA 한·일 월드컵축구경기대회 준비 등 6개 주요사업을 선정·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2002)을 수립하고 제반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체력과 비만 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 다양한

표 1-3.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 내용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 주민활동의 장으로써 체육시설 확충 ○미참여 인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생활체육지도인력의 육성 및 활용 ○국민체력관리의 과학적 지원 ○민간주도적 생활체육 확산
세계상위권 경기력 유지 및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수 발굴 및 육성체계의 전문성 보강 ○경기단체 자율성 제고 ○경기운영체계의 합리화 및 전산화 강화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발전
국제교류 역량강화 및 남북체육교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교류 대상국 확대 및 교류 내실화 ○체육외교역량의 강화로 국제체육기구 내 역할 강화 ○남북체육교류 추진으로 민족화합 분위기 조성 ○국가이미지 홍보를 위한 상징종목의 세계적 보급 확산
2002 FIFA 한·일 월드컵축구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발전의 재도약 전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준비 운영체제 구축, 경기장 등 대회시설 확보 ○경기운영, 개최식 등 대회운영 단계적 준비 ○범국민적 대회참여 분위기 조성 및 전 정부적 지원
체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산업의 연구 개발 ○취약지구 민간체육시설 우선 융자 지원 ○민간체육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체육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및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 강구
경쟁력 있는 체육과학 발전추구 및 체육행정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체육과학연구원(現 한국스포츠개발원) 기능 증대 ○국민체력증진 연구 및 경기력향상 연구 역량강화 ○체육부문 종합정보망 구축 및 다양한 체육정보 제공 ○체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지방체육조직에 전문인력 배치

생활체육활동 기회부여, 여가활동 기회확대 등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정부가 종합적·체계적으로 국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였다. 또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두 축이 상호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2002 FIFA 한·일 월드컵축구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인식 하에 경기장 시설확보, 숙박·방송·보도시설 확보, 다양한 문화행사 준비,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의 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서 첫째, 생활체육 참여율의 획기적 제고(50%)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둘째,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 유지를 통한 국위 선양, 셋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발전 및 지역균형 발전, 넷째, 국제체육교류의 실질화로 국가이미지 제고, 다섯째,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로 남북 화해 분위기 구축 등을 향후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성·연령·계층·지역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생활·전문체육을 체계화·선진화하며, 체육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체육의 과학화·정보화를 추진하고, 국제체육협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체육정책 수립 및 집행, 체육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한 분권을 설정하였다. 2005년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장애인체육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 체육과학 진흥 및 정보화, 체육행정 시스템 혁신 및 재원 확충 등 6개 부문, 21개 과제, 146개 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 체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은 다음의 <표 1-4>와 같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문화비전 2008~2012’,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제시하고 ‘신나는 한국인,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라는 주제로 ‘15분 프로젝트’, 즉, 문을 열면 15분 거리에 원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

8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표 1-4.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주요 정책과제

부 문 별 목 표	추진 내 용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확충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과학적 국민체력관리시스템 구축 ○레저스포츠 발전방안 마련 ○생활체육지도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생활체육 인식 제고 및 추진체제 강화
과학적 훈련지원을 통한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체계 확립 ○전문체육시설의 다기능화·현대화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등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전문체육단체 자율성 및 재정자립 기반 강화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 진흥 관련 법적 기반 마련
국제체육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선수권대회 등 종목별 주요 국제대회의 유치 ○스포츠외교 전문인력 양성 ○국가 간 체육교류 협력 내실화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 기반 조성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스포츠 반도핑 활동의 활성화
체육과학의 진흥 및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의 학문적 연구 활동 지원 ○체육종합정보체계 구축
체육행정시스템의 혁신과 체육진흥재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정책 추진체제의 체계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조성

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는 체육 친화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기본체육활동 기반 조성,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전국대회 운영제도 개선, 선수인권 보호체계 구축,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병행 환경 구축 사업 등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비전 2008~2012’의 주요 체육부분 정책과제는 <표 1-5>와 같다.

표 1-5.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2008~2012 체육부분 주요 정책과제

부 문 별 목 표	추진 내용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 ○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 ○ 전통무예 지정 및 육성 보급 강화 ○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활용 제고 ○ 레저스포츠 시설·공간 확충
체육 친화적 교육환경 및 교육 친화적 체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 조성 ○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 선수 인권보호 체계 구축 ○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 병행 환경조성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 ○ 소수자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 전개
세계 속의 스포츠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강국 이미지 지속 ○ 스포츠 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 활동 강화 ○ 태권도의 세계화 ○ 선진 스포츠도핑 방지시스템 확립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스포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 강화 ○ 스포츠용품 고부가가치화 및 U-스포츠 사회 구축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 ○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환경 개선
전문체육 및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런던 하계올림픽대회 대비 국가대표선수 체계적 양성 및 훈련의 과학화 ○ 우수선수 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 ○ 비인기 종목 활성화 ○ 스포츠 의·과학 및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 육상진흥 토대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이행 ○ 전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체육행정 시스템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단체의 조직 및 기능 선진화 ○ 선진형 체육 법·제도 정비 ○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4) 박근혜 정부의 체육정책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하고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다. 국정목표의 주요과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을 위해

10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표 1-6.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목표

부 문 별 목 표	추진 내용
학교교육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배치 확대, 중·고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및 우수스포츠클럽 지원 ○ 학교 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체육활동 여건 개선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정 2% 달성 ○ 예산과 기금재원을 균형 있게 확충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 체육시설 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체육교실 등 확대 ○ 공공문화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개보수 지원 및 어울림 스포츠센터 건립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스포츠교류 정례화 추진 ○ 개발도상국 스포츠지도자 및 선수 초청사업 등 문화 ODA 확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통합콜센터(#7330) 도입 ○ 전국민 스포츠·체력 인증제 도입 ○ 중합형 스포츠클럽 설립 추진 ○ 국가대표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및 학교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체육인 진로지원 등 복지 강화 ○ 태릉, 태백, 진천 국가대표훈련장 효율적 기능 분담 ○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체육행정시스템의 혁신과 체육진흥재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 전통문화 체험, 레저·스포츠, 생태기반관광, IT 융·복합 관광)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의 구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와 세부내용은 <표 1-6>과 같다.

박근혜 정부는 ‘스포츠비전 2018’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 5년(2013~2017)의 스포츠정책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스포츠비전 2018’은 스포츠의 가능성을 확대하여, 스포츠가 삶의 방식이 되고 스포츠로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스포츠정책이었다. ‘스포츠비전 2018’은 손에 닿는 스포츠,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공장한 스포츠 등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7>과 같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참여환경 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 장애인스포츠 참여환경

표 1-7. 스포츠비전 2018 세부 추진과제

전략	세부추진과제
<p>손에 닿는 스포츠</p> <p>↓</p> <p>‘스포츠로 사회를 바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조성하여 다양한 종목의 지도자 및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 체육시설 배치계획 수립 의무화로 시설배치 효율성 제고 : 기존 시설을 활용한 작은 체육관과 세대통합 및 문화통합시설 조성 ○ 생활체육콜센터’를 통한 원스톱 정보제공 및 체육시설지도’ 구축으로 민간에 정보개방 확대 ○ 국민체력인증제’ 도입으로 거점체력센터에서 의료·영양·건강·체력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및 2015년 체육지도자 자격개편 대비 지도자 전문성 강화 ○ 유소년, 학생, 직장인,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대상 맞춤형 참여 확대 유도 및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교실 지원 확대
<p>뿌리가 튼튼한 스포츠</p> <p>↓</p> <p>‘스포츠로 국격을 바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영재 육성·확대 및 꿈나무·청소년선수 확대 ○ 학생선수 수업의무화에 따른 체육중점학급 운영 및 과학적 훈련지원, 운동부지도자 교육 강화, 은퇴 후 대비 진로교육 확대 ○ 지역별 스포츠과학 거점센터 설치로 과학화 지원대상 확대, 진천·태릉·태백선수촌 기능 특화 ○ 국제스포츠전문인재 양성 및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진출 확대 ○ 국제경기대회 등을 계기로 남북교류 확대, 개발도상국 스포츠지원 확대 및 드림프로그램 지원 확대, 태권도 시범 파견확대 ○ 국제대회 유치기준 및 국고지원기준 강화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성공 개최 준비
<p>경제를 살리는 스포츠</p> <p>↓</p> <p>‘스포츠로 미래를 바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스포츠활동정보’ DB화·개방, 실감형 가상스포츠콘텐츠 개발 지원으로 융복합 시장 창출 ○ 개방형 중계사이트’ 구축 및 컨슈머리포트 발간 ○ 스포츠기업 확인제’ 도입, 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경기장 임대, 위탁운영 및 프로시민구단 지원 법적근거 마련, 스포츠대리인제도 도입 ○ ‘명품스포츠이벤트’ 선정 지원, 레저스포츠 시설운영기준 마련 및 올림픽스포츠컴플렉스 조성 ○ 무형자산 가치평가체계 마련 및 금융기관 협약·대출 지원, 마케팅업 전문화 지원
<p>공정한 스포츠</p> <p>↓</p> <p>‘스포츠를 바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경기단체 운영규정 전면개선 및 평가 환류 강화 ○ 스포츠 공정위원회(가칭)’ 설치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17)

조성,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표 1-8>과 같다.

2016년도 박근혜 정부 정책의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포츠 참여환경 조성 정책 추진으로 첫째,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이 '15년 56.0%에서 '16년 59.5%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특히,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60대에서 생활체육 참여율이 '15년 51.0%에서 '16년 54.2%로

12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표 1-8. 2016년 박근혜 정부 정책 추진 성과

추진 내용	주요 성과
스포츠 참여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국민체력인증제 성공적 운영 ○ 지도자 양성 및 파견 확대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 ○ 기초 생활권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 전국체전시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설지원 ○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 공공체육시설을 선정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 ○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 선수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 ○ 도핑방지활동 지원 ○ 스포츠인권 교육활동을 통한 선수 등의 인권 보호 ○ 체육단체 및 체육계 불공정 불투명성 개선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본격 준비 및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 국제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마련 ○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기반 마련 ○ 국가/NOC 간 체육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국제 네트워크 확대 및 우리나라의 스포츠외교 역량 강화 ○ 한류문화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한국이미지 제고에 기여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시행('16. 08. 04.) ○ 스포츠산업의 활력을 위한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융자확대로 스포츠산업체의 투융자 수혜 증가 ○ 스포츠용품 국내인증 및 해외인증 지속 확대 ○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확대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산업 융복합 및 서비스(안전) 기술개발 중점지원 ○ 스포츠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선진화
장애인스포츠 참여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여건 확대 ○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대회지원 강화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전문체육 육성 기반 구축 ○ 훈련시설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 관리 ○ 2016 리우 하계패럴림픽대회 참가 대비 경기력 향상 집중 지원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대비 장애인 동계스포츠 육성 ○ 장애인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17)

3.7% 상승하였다. 둘째, 국민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 3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스포츠활동 인증시범운영 및 건강체력기준 개발 등 체력인증제도를 고도화하였다. 셋째,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여건 조성을 위한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및 고령화시대에 따른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1,200명을 배치하였으며, 넷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저소득층 청소년(만 5~18세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매월 7만 원 이내)을 '15년 3만 2천 명에서 '16년 3만 4천명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첫째, 지자체의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 27개소, 지방 체육시설 조성 164개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80개소, 노인 건강체육시설 조성 11개소,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5개소 등, 287개소(1,321억 원)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였다. 둘째, 국민체육센터 32개소, 개방형 체육관 24개소, 기초 생활체육시설 18개소, 유해운동장 16개소, 공공체육시설 126개소 등, 216개소(1,433억 원)의 생활체육시설을 개·보수 지원 및 확충하였다. 셋째,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남('16년 개최) 22개소, 충북('17년 개최) 3개소, 전북('18년 개최) 2개소 등, 총 27개소(268억 원)에 전국체전시설을 지원하였다. 넷째,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 공공체육시설(권역별 4개, 부분별 5개)을 선정·포상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첫째,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2,098명을 배치하여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16년 전국 초등학교강사 배치 계획은 당초 3,000명이었으나, 시·도교육청의 지방비 확보가 미흡하여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였다. 둘째, 전국 초·중·고등학교 4,700개교 및 지역사회 스포츠시설과 연계한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454개 프로그램, 시군구별 2개)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정책추진으로 첫째, 체계적인 국가대표선수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지원을 강화하여 리우 하계올림픽대회에서 8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둘째, 프로선수 도핑검사 의무화 및 제재기준 강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 등록 시 도핑방지 온라인교육 의무화 등 선도적인 도핑방지 활동을 통해 공정한 스포츠

14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경쟁기반 구축 및 약물로부터의 선수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리우 하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등 국제대회 도핑검사관 파견을 통한 국제 반도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경기대회에서 도핑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국내·외 스포츠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셋째, 선수를 포함한 체육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인권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였다. 넷째, 종목단체 지배구조와 독점적 권한의 투명화 및 기타 체육단체 부조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체육단체 및 체육계 불공정·불투명성을 개선하였다.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정책추진으로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경기장 등 대회기반 시설을 조성(신설경기장 6개소 '16년 평균공정률 94.9%)하고, 외국인 코치 및 장비전문가, 전담팀 등 종목별 맞춤형 대표선수 훈련 등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였다. 둘째, 2017 FIFA U-20 월드컵대회,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창원국제사격장 개보수 사업 추진, 2017 FIFA U-20 월드컵조직위원회(2016년 3월 31일) 및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2016년 8월 26일)를 설립하였다. 셋째, IOC 선수위원, 세계반도핑기구 이사국(재진출, '17~'19) 등 주요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및 제1회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한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넷째,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몽골, 프랑스, 네덜란드(NOC) 등 5개국과 국가/NOC 간 체육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하였다. 다섯째, 개발도상국과의 다양한 스포츠 교류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 확대 및 우리나라의 스포츠 외교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태권도 사범, 시범단, 봉사단 등의 전략적 국가 선정 및 파견을 통한 태권도 세계화 및 태권도 공연·연구사업 확대 등 한류문화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한국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첫째, 2016년 8월 4일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시행하였다. 이는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이 실제적 규정이 미비하여 전면 개정을 통해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정비와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품질 향상, 투자자금 지원 근거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스포츠산업 활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4개 기관, 346명 교육 완료), 스포츠산업 융복합분야 CEO아카

데미 지원(33명 교육 완료), 스포츠산업분야 인턴지원(43개 기업, 46명 지원), 체육분야 인턴 지원(국내 41개 단체 55명, 해외 11개국 35명 배치) 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 및 잡 스포이즈를 통한 일자리 지원(매칭 8,417건, 채용성사 601건), 스포츠 잡페어를 통한 일자리 지원(118개 기업, 15,058명 참가, 채용성사 78건), 기타 창업지원(창업보육 17팀, 창업교육 97명 수료)을 통해 스포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셋째,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및 용자확대로 스포츠산업체의 투·용자 수혜를 증가시켰다. 스포츠산업펀드 조성현황을 보면, '16년 2개 펀드 중 1개 펀드를 결성(170억 원)하였으며, 다른 1개의 펀드는 '17년 운용사 재선정 및 결성 추진 계획에 있다. 또한 '15, '16년도에 결성된 펀드에 197억 원을 투자하였다. 스포츠산업 용자는 고정금리 4%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변동금리 1~2%대로 인하하고, 총 41개 업체에 315억 원을 지원하였다. 넷째, 스포츠산업 지원 수혜 중소기업체의 시험 및 인증을 통해 품질 향상 및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인증건수는 '14년 50건(국내 33, 해외 17)에서 '15년 118건(국내 91, 해외 27), '16년에는 101건(국내 71, 해외 30)이었다. 다섯째,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 사업 예산을 확대('15년 25억 원, '16년 35억 원, '17년 90억 원)하였으며, 스포노믹스 육성 사업 예산을 신규 반영(20억 원)하였다.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 정책 추진으로 첫째, 스포츠산업 융·복합 및 서비스(안전) 기술개발 중점 지원하여 스포츠와 정보통신 기술융합, 스포츠안전과 정보통신 기술융합, 스포츠콘텐츠와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4개 과제에 17억 원을 지원하였다. 둘째,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향식(Top-Down) 과제 기획위원회에 대해 해당과제 참가신청을 제한하고, 기술 수요조사를 통한 과제기획 병행 및 시장수요 기반의 국책성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스포츠산업 기술 R&D 프로세스를 선진화하였다.

장애인 스포츠참여 환경 조성 정책 추진결과 첫째, 통합체육 보급(교사연수, 통합체육 교실 66개소 운영) 및 전국 시·도 서비스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차량지원(5대)을 통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331명)를 통해 교실 및 동호인 프로그램 현장순회지도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둘째,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대회 지원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생활체육교실 392개소, 스포츠센터교실 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동호인클럽 246개를 지원

16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하였다. 셋째,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목통합대회(125개소, 31,888명), 장애유형별 통합대회(2개소, 1,151명), 장애유형별 축제대회(3개소, 10,045명), 20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어울림사이클대회, 전국어울림축제대회(2개소, 300명), 2016 전국장애인체육가족 한마음대회(1개소, 320명)를 지원하였다.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결과, 첫째, 체계적인 전문체육 육성 기반을 구축하였다. 가맹단체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지원(31개 단체), 국내 전문인력 양성지원(14개 종목, 23회), 장애인 국제전문체육 교류지원(회의 참가 2회, 전문인력 양성 2종목 3명), 각종 장애인 국제대회 개최지원(5개 대회)을 통해 가맹단체 운영을 내실화하였다. 장애인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임지도자 배치(22명)를 통한 후보·신인선수 육성 지원, 자문단운영 및 교육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 성과를 관리하고,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지원(15개팀)을 통해 장애인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제공하였다. 또한, 전문 상담사 및 행정보조를 배치한 장애인 스포츠권익보호센터 운영과 전문인력풀 운영(17개 시도, 100명)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컬링훈련장 및 사격훈련장 건립을 완공('14년 1월 ~ '16년 12월)하고, 훈련원 편의시설 확충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훈련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였다. 셋째, 2016 리우 하계 패럴림픽대회를 위해 국가대표 상시훈련 지원(27개 종목, 477명) 및 리우PG대비 특별훈련지원(11개 종목, 144명), 리우 현지 적응을 위한 전지훈련(7개 종목, 100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넷째,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대비하여 동계종목 국외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지원(6개 종목, 평균 48일), 해외우수지도자 운영(3개 종목, 4명) 및 전문인력 배치(5개 종목, 12명), 동계종목 전용숙소 및 트레이닝장 운영(물리치료사 배치, 전용숙소 10개실 및 트레이닝장 운영) 등으로 장애인 동계스포츠를 육성하였다. 마지막으로 IPC 및 APC 등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주최 회의 참가(14회)를 통해 최신정보 획득 및 표결권 행사, 개발도상국 초청 국제장애인 스포츠캠프 개최(11개국, 65명 참가), 국제기구 한국인 임원 진출(13명) 등, 장애인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통해 국제위상을 높였다.

제2절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1. 중앙정부 체육조직

1) 체육조직의 변천

가. 1980년 이전의 체육조직

우리나라의 체육행정 조직은 1945년 8.15광복과 더불어 시작된 미군정기에 마련되었다. 미군정 당국은 1946년 3월 29일부터 문교부 교화국 내 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0일 교화국을 문화국으로 개편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인원은 4~5명이었다.

정부의 체육조직은 5.16 이후 크게 변화되었다. 1961년 10월 2일 종래 문화국에 속해 있던 체육과가 체육국으로 승격되었으며 인원 20명, 예산 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 후 1963년 12월 14일 제3공화국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예체육국 체육과로 환원되었으며, 1968년 7월 24일 문교부의 문화예술행정이 문화공보부로 이관되면서 사회체육국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 8월 31일에는 다시 체육국을 신설하고 종전의 체육과를 국민체육과와 학교체육과로 분리하였으며, 1973년 3월 9일에는 체육국 내에 학교급식과가 추가되어 3개 과가 되었다. 1979년 3월 19일에는 문교부 직제 개정으로 체육국의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 체육과, 학교보건과, 체육교류과로 변경되었다. 1981년 11월 2일에는 체육국과 사회체육국을 통합하여 체육국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학교체육과, 국민체육과, 국제경기과, 교육협력과, 재외국민교육과로 정비되었다.

나. 1980년대의 체육조직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1988 하계올림픽대회의 서울 개최가 확정되었고,

그 해 11월 1986 서울 하계아시아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6 서울 하계아시아대회와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1982년 3월 20일에 체육부를 신설하였다. 체육부는 발족 당시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체육정책과, 사회체육과, 학교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과학국(기획과, 지도훈련과, 조사연구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을 두어, 1실 3국 10과 4담당관으로 당시 체육부 전체의 정원은 총 187명이었다. 이후 체육부는 1987년까지 다섯 차례의 직제 개편으로 소폭의 변동은 있었으나 전체적인 기초를 유지하였다. 1988년 6월 18일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심의관)이 신설되면서 체육행정을 청소년행정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수행하였고, 청소년국의 신설로 체육부 정원은 225명으로 증가하였다.

다. 1990년대의 체육조직

1990년 2월 12일 체육진흥국 내에서 사회체육과가 생활체육과로 개칭되었으며 학교체육과가 폐지되고 사업관리과가 신설되었다. 체육과학국은 체육지도국으로 개칭되었으나 여전히 체육관련 조직은 체육진흥국(생활체육과, 사업관리과, 체육시설과), 체육지도국(조사기획과, 훈련과, 지도육성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 체제를 유지하였다. 한편 학교체육업무 중 급식관련 업무는 1989년에 발표된 행정개혁위원회의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에 따라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사회체육과를 생활체육과로 개칭한 사실은 사회단체 수준의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1990년 7월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진흥 세부 추진계획인 ‘호돌이 계획’에서도 나타난다. 1990년 9월 10일에는 청소년국이 1실 2관 6과의 청소년 정책조정실(청소년 기획관, 청소년 협력관, 청소년 기획과,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지도과, 청소년 교류과, 시설기금과, 홍보협력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1990년 12월 27일에는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칭되었다.

1993년 3월 6일에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는 문화체육부로 통합되었다. 문화체육부는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지원국(체육과학과, 지도육성과, 훈련지원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과)을 두어 3국 9과 체제

를 갖추었다. 1994년 5월 4일에는 해외협력과를 체육교류과로 개칭하고, 1994년 5월 16일에 학교체육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였으나 전체적인 체육관련 조직은 3국 9과 체제를 유지하였다. 1994년 12월 23일 문화체육부내에 관광업무가 이관되면서 체육지원국을 폐지하여 체육행정조직은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지원육성과, 체육시설과)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와, 해외협력과)의 2국 7과 77명으로 축소되었다.

1998년 2월 28일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칭하고,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을 체육국으로 통합하였으며, 기존의 체육기획과와 협력총괄과를 체육정책과로 통합하였다. 또한 생활체육과는 그대로 생활체육과로 유지하고, 지원육성과와 체육시설과를 체육지원과로, 국제경기와와 체육교류과를 체육교류과로 통합하는 등 체육담당부서를 1국 4과로 축소하였다. 그 결과 2국 7과 77명에서 1국 4과 56명으로 21명 감소하였다. 1999년 5월 24일에는 체육정책과와 체육교류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통합하여 1국 3과 40명으로 행정조직 및 정원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라. 2000~2012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체육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경제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근무시간의 단축은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증대시켰고, 이러한 현상은 생활체육 수요증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가한 여가시간을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유도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2년 3월 9일 생활체육과를 다시 설치하였다. 이후 스포츠여가산업에 대한 수요 및 관심 증가에 따라 2004년 11월에 다시 직제개편을 실시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하는 한편, 체육진흥과는 폐지하고 체육진흥과 업무 중 학교운동부 및 전국체전 등의 업무는 생활체육과로, 태권도공원 조성 및 프로단체 육성 등에 관한 업무는 스포츠여가산업과로, 국가대표선수 육성 및 대한체육회 지도 감독 등의 업무는 국제체육과로 이관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체육을 이관받아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여 장애인체육진흥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2006년 7월 25일 기존의 ‘과’ 단위는 ‘팀’ 단위로 재편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팀’ 단위는 다시 ‘과’ 단위로 개편되면서 2008년

20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12월 31일 생활체육과가 체육진흥과로, 장애인체육과가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되었다. 생활체육과가 체육진흥과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생활체육업무 이외에 국가대표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생활체육과 함께 전문체육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장애인문화체육과 역시 기존의 장애인체육업무 이외에 장애인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여 기능을 확대하였다. 이후 2009년 5월 4일 체육진흥과와 스포츠산업과를 체육진흥과로 통합하였으며, 장애인문화체육과는 장애인문화체육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 다시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칭하였다.

마. 2013~2016년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 3월 23일 장애인문화체육과는 장애인체육과로 개칭되고, 12월 13일에는 스포츠산업과가 신설되었다. 2014년에는 체육국을 관광체육레저정책실 내에 체육정책관실로 개칭하였고, 1정책관 5과 5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다. 2015년에는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을 체육관광정책실로 개칭하고,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지원과 준비를 위해 ‘체육협력관’과 ‘평창올림픽지원과’를 신설하였다. ‘체육협력관’은 기존 체육정책관실 산하에 있던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평창올림픽지원과가 더해져 총 3개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의 체육정책관 산하는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로 개편되었다. 정부에 2개 이상의 체육업무 담당국 조직이 운영된 것은 1998년 문화관광부 내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이 체육국으로 통합된 이후 17년 만이었다.

2016년에는 체육관광정책실이 ‘체육정책실’로 개편되었다. 이번 개편으로 1993년 체육부가 없어지면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된 이후 23년 만에 체육업무만을 전담하는 ‘체육정책실’의 실 체제로 체육 관련 정부 조직이 강화되었다. ‘체육정책실’은 ‘체육정책관’과 ‘체육협력관’을 두었으며, ‘체육정책관’은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로 구분하여 2016년 3월 대한체육회로 통합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육성, 스포츠산업 진흥과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주관하였다. ‘체육협력관’은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평창올림픽지원과로 구분하여 ‘2016 리우 하계올림픽대회’ 참가 준비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지원 업무를 주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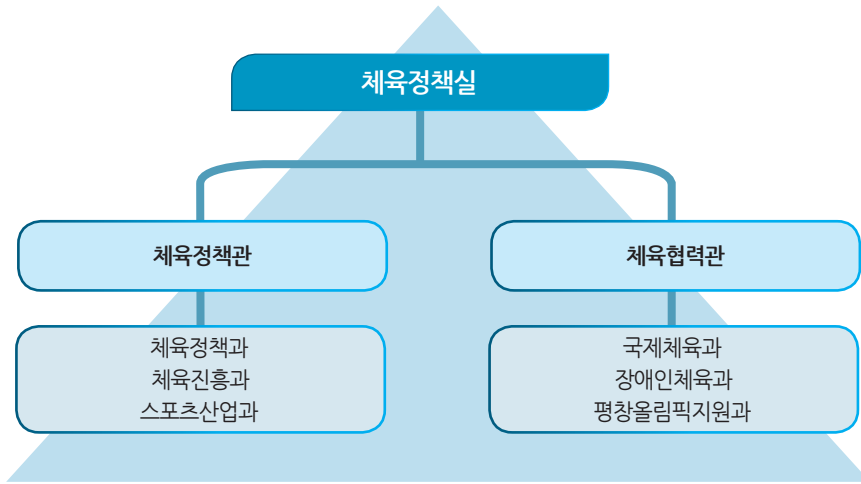


그림 1-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 조직도(문화체육관광부, 2016)

표 1-9. 정부 체육부처 연혁

○ 1982. 03. 20	체육부 신설(1실 3국 10과 3관 4담당관 187명) -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 체육과학국, 국제체육국
○ 1990. 12. 27	체육부 ⇒ 체육청소년부로 개칭
○ 1992. 01. 01	한국마사회 운영의 지도·감독업무 인수
○ 1993. 03. 06	문화체육부 발족, 3국 9과 98명 - 체육정책국, 체육지원국, 국제체육국
○ 1994. 12. 23	3국 9과 98명 ⇒ 2국 7과 77명, 체육지원국 폐지
○ 1998. 02. 28	문화관광부 발족, 2국 7과 77명 ⇒ 1국 4과 56명, 국제체육국 폐지
○ 1999. 05. 24	1국 4과 56명 ⇒ 1국 3과 40명
○ 2001. 01. 29	한국마사회 업무 농림부 이관
○ 2002. 03. 09	생활체육과 신설 1국 4과 45명
○ 2004. 11. 07	스포츠여가산업과 신설, 체육진흥과 폐지
○ 2005. 12. 15	장애인체육과 신설 1국 5과 52명
○ 2006. 07. 25	'과' 명칭이 '팀' 제로 변경 1국 5팀
○ 2008. 02. 29	문화체육관광부 신설, '팀' 제가 '과' 제로 변경 1국 5과 50명
○ 2008. 12. 31	생활체육과 ⇒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과 ⇒ 장애인문화체육과로 명칭 변경
○ 2009. 05. 01	직제개편(1국 3과 1팀 50명), 체육진흥과와 스포츠산업과 ⇒ 체육진흥과로 통합, 장애인문화체육과 ⇒ 장애인문화체육팀으로 명칭 변경
○ 2010. 07. 01	장애인문화체육팀 ⇒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 1국 4과 52명
○ 2013. 03. 23	장애인문화체육과 ⇒ 장애인체육과로 개편 1국 4과 51명
○ 2013. 12. 13	스포츠산업과 신설 1국 5과 55명
○ 2014. 10. 23	체육국 ⇒ 관광체육레저정책실 내 체육정책관으로 개칭 1정책관 5과 52명
○ 2015. 01. 06	관광체육레저정책실 ⇒ 체육관광정책실로 개칭, 체육협력관 및 평창올림픽지원과 신설, 1실 4관 12과 126명
○ 2016. 03. 30	체육관광정책실 ⇒ 체육정책실로 개편, 1실 2관 6과 59명

2) 부서별 주요업무

2016년 12월 31일 기준 체육정책실 내 체육정책관 산하에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협력관 산하에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평창올림픽지원과로 구성되어 있다.

체육정책관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국가대표선수의 육성·지원,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과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민간체육시설 활성화, 스포츠산업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체육정책관 산하의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의 부서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체육정책과는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전국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국민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 종목단체 지도·감독과 관련된 업무,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였다.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및 민속경기 진흥,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에 관한 사항,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국민체력증진에 관련된 사항, 전 통무에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이용 활성화,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바우처 지원,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선수·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지원, 서울평화상에 관한 사항,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

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스포츠산업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지원, 스포츠산업 진흥재원의 조성 및 운용,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스포츠 용품·시설·서비스의 품질비교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민간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스포츠 관련 용품·용구·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체육협력관은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국제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 국가 간 혹은 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을 담당하였다. 체육협력관 산하의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평창올림픽지원과의 부서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국제체육과는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 간·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장애인체육과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애인 스

24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포츠클럽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국가대표 장애인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평창올림픽지원과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올림픽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지원, 올림픽대회 경기력향상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체육조직

1) 지방자치단체 체육정책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52년 4월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다. 1961년 9월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1988년에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1991년에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단체장과 의회위원들을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7개의 시·도이며,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17개 시도에 총 228개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복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체육발전 계획은 경기도를 필두로 시작되었다. 경기도는 2004년에 체육

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음으로 광주광역시(2007)가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다음해인 2008년에 대구광역시가 대구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수립하였고, 2010년 인천광역시의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2011년 강원도 체육발전 방안, 2012년 서울특별시의 2020 체육진흥 기본정책, 2014년 충청남도의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2015년 대전광역시의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과 전라남도 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2016년 세종시의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순으로 체육발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제주도는 2017년에 체육발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체육발전 계획 수립현황은 <표 1-10>과 같다.

표 1-10. 2003~2017년 지방자치단체 체육발전 계획 수립 현황

시도명	연도	수립여부	계획명
서울	2012	O	2020 체육진흥 기본정책
부산	2017	(계획)	부산시 체육발전 종합계획
대구	2008	O	대구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스포츠로 행복한 일류 대구 실현
인천	2010	O	인천광역시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광주	2007	O	광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
대전	2015	O	대전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울산	2017	(계획)	울산 체육발전 중장기 진흥계획
세종	2016	O	세종시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경기	2004	O	경기도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강원	2011	O	강원체육 발전방안
충북	2017	(계획)	충북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충남	2014	O	충청남도 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전북	-	-	-
전남	2015	O	전남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경북	-	-	-
경남	-	-	-
제주	2017	(계획)	제주체육 진흥 5개년 계획

2) 지방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 현황

광역자치단체인 각 시·도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체육국 등의 국 단위 수준에서

26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체육진흥과, 체육정책과, 체육지원과, 체육과, 스포츠산업과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하부 단위로 체육정책,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산업 등의 하부 팀 또는 담당자를 중심으로 체육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근무 인력은 평균 10~30여명 내외이다. 서울, 부산, 대구, 세종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광주, 경기, 전남은 민간위탁 관리 형태의 체육시설을 운영한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생활체육과, 체육진흥과, 체육과, 평생교육과, 교육체육과, 체육청소년과, 건강체육과 등에서 체육행정, 체육시설, 체육진흥, 생활체육, 주민자치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체육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10명 내외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중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체육시설관리·운영을 하는 곳도 있었다.

〈표 1-11〉과 〈표 1-12〉에 나타난 것처럼 2016년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행정직 452명, 기술직 361명, 기능직 181명, 별정직 58명, 계약직 121명으로 총 1,173명이었다.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직 1,316명, 기술직 563명, 기능직 257명, 별정직 15명, 계약직 390명으로 총 2,541명이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총 3,714명으로 2015년 3,342명보다 372명 증가하였다. 2015년 대비 인력구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직은 1,590명에서 1,768명으로 178명 증가하였고, 기술직은 859명에서 924명으로 65명 증가하였다. 기능직은 469명에서 438명으로 31명 감소하였고, 별정직은 75명에서 73명으로 2명 감소하였으며, 계약직 349명에서 511명으로 162명 증가하였다.

표 1-11. 광역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단위: 명)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서울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체육정책팀, 전문체육팀, 체육시설팀, 체육복지팀, 전국체전팀)	18	4	-	-	1	23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생활체육진흥팀, 생활체육시설팀, 여가스포츠팀)	12	1	1	-	1	15
	체육시설관리사업소(4과 4팀)	30	49	45	1	6	131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 3개소)	27	54	90	-	1	172
	소 계	87	108	136	1	9	341
부산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체육진흥,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올림픽유치)	16	2	-	-	-	1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6	60	16	-	1	103
	소 계	42	62	16	0	1	121
대구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체육정책, 생활체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15	5	-	-	2	22
	체육시설관리사업소(대구스타디움, 시민운동장, 육상진흥센터, 대구체육관)	15	58	-	-	1	74
	소 계	30	63	0	0	3	96
인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체육정책, 체육진흥, 체육시설, 체육시설마케팅, 국제스포츠 교류, U-20월드컵추진단)	26	8	-	-	-	34
	소 계	26	8	-	-	-	34
광주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6개팀)	13	9	-	-	-	22
	광주실내수영장 등 3개소(민간위탁-도시공사)	2	4	21	10	1	38
	월드컵경기장 등 20개소(민간위탁-시체육회)	35	-	-	-	3	38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3개소(민간위탁-장애인체육회)	2	2	-	-	1	5
	소 계	52	15	21	10	5	103
대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지원과(4담당)	15	4	1	-	-	20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본부)	20	38	-	4	86	148
	소 계	35	42	1	4	86	168
울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지원과(3개팀)	13	3	-	-	-	16
	시설관리공단	18	30	1	40	-	89
	소 계	31	33	1	40	0	105
세종	균형발전국 문화체육관광과(체육진흥담당)	3	2	-	-	-	5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체육시설관리담당)	2	4	4	-	-	10
	소 계	5	6	4	0	0	15
경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체육행정팀, 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스포츠산업팀)	12	6	-	-	-	18
	경기도종합사격장(민간위탁)	13	-	-	3	2	18
	소 계	25	6	0	3	2	36
강원	문화관광체육국 체육과(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10	3	-	-	1	14
	소 계	10	3	0	0	1	14

28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구분	조직	인 력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계
충북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무예마스터지원팀)	15	2	-	-	-	17
	소 계	15	2	0	0	0	17
충남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스포츠산업, 체육활동지원, 체육시설지원팀)	12	2	-	-	-	14
	소 계	12	2	0	0	0	14
전북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과(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태권도스포츠산업팀, 체육시설관리팀)	11	4	2	-	1	18
	소 계	11	4	2	0	1	18
전남	관광문화체육국 스포츠산업과(체육정책,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11	1	-	-	-	12
	전라남도체육회(도 체육시설 민간위탁)	22	1	-	-	12	35
	소 계	33	2	0	0	12	47
경북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체육정책,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체육)	12	1	-	-	-	13
	소 계	12	1	0	0	0	13
경남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지원과(체육행정, 생활체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관리)	16	2	-	-	-	18
	소 계	16	2	0	0	0	18
제주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체육진흥, 체육시설, 체육지원)	10	2	-	-	1	13
	소 계	10	2	0	0	1	13
총 계		452	361	181	58	121	1,173

1. 기술직: 전기·토목·건축 기계
 2. 기능직: 사무보조요원 등
 3. 별정직: 공무원분류상 별정직으로 채용된 체육지도사
 4. 계약직(전문직 포함): 일용계약 등에 따라 채용된 체육전문가
- ※ 주 : 전국체전준비기획단 등 한시조직은 제외함
 ※ 출처 : 각 지방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16)

표 1-12. 기초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단위: 명)

구분	조직	인 력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계	
서울 (25)	중 로 구	관광체육과(2개팀)	7	-	-	-	-	7
	중 구	교육체육과(생활체육팀)	5	-	-	-	-	5
	용 산 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5	1	-	-	-	6
	성 동 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5	-	-	-	-	5

구분	조직		인력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계
서울 (25)	광진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6	-	-	-	-	6
	동대문구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5	-	-	-	-	5
	중랑구	문화체육과(2개팀)	5	1	1	-	1	8
	성북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4	-	-	-	-	4
	강북구	문화체육과(2개팀)	5	1	-	1	-	7
	도봉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4	-	-	-	-	4
	노원구	체육청소년과(생활체육팀)	6	-	-	-	-	6
	은평구	생활체육과(3개팀)	12	-	1	-	-	13
	서대문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5	-	-	-	-	5
	마포구	생활체육과(3개팀)	12	1	-	-	-	13
	양천구	문화체육과(2개팀)	7	1	-	-	-	8
	강서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3	-	-	-	2	5
	구로구	문화체육과(2개팀)	6	1	1	-	-	8
	금천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3	-	-	-	-	3
	영등포구	문화체육과(2개팀)	7	-	-	-	-	7
	동작구	생활체육과(3개팀)	15	-	-	-	-	15
	관악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5	-	-	-	-	5
	서초구	문화체육관광과(2개팀)	8	4	-	-	1	13
	강남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4	-	-	-	-	4
	송파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6	1	-	-	2	9
강동구	문화체육과(2개팀)	5	-	-	-	-	5	
소 계			155	11	3	1	6	176
부산 (16)	중구	총무과(구민협력계)	5	-	-	-	-	5
	서구	문화관광과(체육진흥팀)	4	-	-	-	-	4
	동구	문화체육관광과(체육지원계)	4	-	-	-	-	4
	영도구	문화체육과(체육청소년)	4	-	-	-	-	4
	부산진구	문화체육과(체육진흥계)	5	-	-	-	-	5
	동래구	총무과(생활체육계)	4	-	-	-	-	4
	남구	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	3	-	-	-	-	3
	북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4	-	-	-	-	4
	해운대구	교육협력과(생활체육팀)	4	-	-	-	-	4
	사하구	총무과(구민협력팀)	6	-	-	-	-	6
	금정구	총무과(구민지원팀)	5	-	-	-	-	5
	강서구	문화체육과(체육진흥계)	3	-	-	-	-	3
	연제구	문화체육과(체육지원계)	4	-	-	-	-	4
	수영구	총무과(생활체육계)	3	-	-	-	-	3

30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사 상 구	자치행정과(진흥계)	5	-	-	-	-	5
	기 장 군	문화관광과(생활체육팀)	3	-	-	-	-	3
	소 계		66	0	0	0	0	66
대구 (8)	중 구	문화진흥과(교육체육팀)	2	-	-	-	-	2
	동 구	문화교육과(체육팀)	3	1	-	-	-	4
	서 구	문화홍보과(체육지원팀)	3	-	-	-	-	3
	남 구	교육홍보과(여가체육, 체육시설)	4	2	-	-	-	6
	북 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5	1	-	-	-	6
	수 성 구	문화체육과(체육팀)	4	1	-	-	-	5
	달 서 구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6	-	-	-	-	6
	달 성 군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4	-	-	-	-	4
소 계		31	5	0	0	0	36	
인천 (10)	중 구	홍보체육진흥실(체육진흥팀)	3	-	-	-	-	3
	동 구	홍보체육진흥실(생활체육팀)	4	-	-	-	-	4
	남 구	생활체육과	6	1	1	-	2	10
	연 수 구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5	1	1	-	-	7
	남 동 구	문화체육과(체육팀)	3	2	-	-	-	5
	부 평 구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3	1	1	-	-	5
	계 양 구	문화체육관광과(체육관광팀, 문화재체육시설팀)	4	3	-	-	-	7
	서 구	문화관광체육과(체육진흥팀)	5	-	-	-	-	5
	강 화 군	안전행정과(체육팀)	2	2	-	-	-	4
	웅 진 군	관광문화과(문화체육팀)	4	-	-	-	-	4
소 계		39	10	3	0	2	54	
광주 (5)	동 구	인권청년과(체육진흥팀)	2	1	-	-	4	7
	서 구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2	2	5	-	-	9
	남 구	총무과(체육지원팀)	3	-	-	-	1	4
	북 구	총무과(생활체육팀)	4	1	-	-	-	5
	광 산 구	관광체육지원단(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3	3	-	-	1	7
소 계		14	7	5	0	6	32	
대전 (5)	동 구	문화공보과(체육담당)	4	-	2	-	-	6
	중 구	문화체육과(체육담당)	4	1	-	-	-	5
	서 구	문화체육과(체육담당, 문화체육 시설담당)	7	1	1	-	-	9
	유 성 구	문화관광과(건강체육담당)	4	-	-	-	-	4

구분	조직		인력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계
	대 덕 구	문화체육과(체육담당, 체육시설 담당)	6	-	2	-	3	11
	소 계		25	2	5	0	3	35
울산 (5)	중 구	평생교육과 체육지원팀	3	-	-	-	1	4
	남 구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4	1	-	-	-	5
		도시관리공단	4	2	-	-	48	54
	동 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체육 시설팀)	5	1	-	-	-	6
	북 구	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 체육 센터팀)	7	4	4	-	2	17
	울 주 군	교육체육과 생활체육팀	3	2	-	-	-	5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5	10	10	-	21	46
소 계		31	20	14	0	72	137	
경기 (31)	수 원 시	체육진흥과(체육행정팀, 체육시설 팀, 스포츠산업팀)	8	4	-	-	-	12
	고 양 시	체육진흥과(체육정책팀, 체육지원 팀, 체육시설팀)	10	5	-	-	-	15
	성 남 시	체육진흥과(체육정책팀, 생활체육 팀, 시설관리팀)	8	4	2	-	1	15
	용 인 시	체육진흥과(체육행정팀, 체육시설 팀, 체육시설운영팀, 스포츠마케팅 팀)	14	5	-	-	-	19
	부 천 시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생활체육 팀, 체육시설팀, 시설관리팀)	11	7	-	-	-	18
	안 산 시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 팀, 체육지원팀, 스포츠마케팅팀)	11	6	-	-	-	17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체육행정팀, 체육 시설조성팀, 체육시설관리팀)	6	5	-	-	-	11
	안 양 시	체육생활과(체육지원팀, 건강생활 팀, 체육시설팀)	9	3	-	-	-	12
	화 성 시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스포츠 마케팅팀, 체육시설팀)	9	4	-	-	-	13
	평택시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 팀, 체육시설운영팀)	9	5	3	-	6	23
		송출 사회복지과(체육시설운영팀)	2	1	5	-	5	13
		안출 사회복지과(문화체육팀)	3	1	2	-	5	11
	의정부시	체육과(체육정책팀, 체육시설팀, 체육육성팀)	9	3	-	-	-	12
	시 흥 시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	5	-	-	-	-	5
	파 주 시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 체육 시설팀, 시설운영팀)	6	5	-	-	18	29

32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구분	조직	인 력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계	
경기 (31)	김 포 시	교육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 시설팀)	3	3	1	-	-	7
	광 명 시	문화체육과(체육팀, 체육시설팀)	4	2	1	-	-	7
	광 주 시	교육체육과(체육운영팀)	5	-	-	-	-	5
	군 포 시	청소년교육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3	3	-	-	-	6
	오 산 시	문화체육관광과(체육팀)	3	-	-	-	-	3
	이 천 시	체육지원센터(체육진흥팀, 시설 관리팀)	4	5	1	-	1	11
	양 주 시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 체육 시설팀, 생활체육팀, 청소년팀)	10	4	-	-	-	14
	안 성 시	교육체육과(체육행정팀)	2	-	-	-	1	3
	구 리 시	평생학습과(체육진흥팀)	3	3	1	-	-	7
	포 천 시	문화체육과(체육경영팀)	3	-	-	-	-	3
	의 왕 시	문화체육과(체육활동지원팀, 문화체육시설팀)	3	3	-	-	-	6
	하 남 시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4	1	-	-	-	5
	여 주 시	교육체육과(체육행정팀, 체육 시설팀)	3	3	-	-	-	6
	동두천시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2	1	-	-	-	3
	과 천 시	문화체육과(체육팀)	2	1	-	-	-	3
	양 평 군	문화체육과(체육팀)	3	2	-	-	-	5
	가 평 군	문화체육과(체육팀)	2	-	1	-	-	3
	연 천 군	문화관광체육과(체육진흥팀)	3	-	-	-	-	3
소 계		182	89	17	0	37	325	
강원 (18)	춘 천 시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 체육 시설팀)	9	2	-	-	-	11
	원 주 시	건강체육과(건강도시계, 체육진흥 계, 체육시설계, 마을체육계)	9	3	-	-	1	13
	강 릉 시	체육청소년과(체육행정팀, 스포츠 마케팅팀, 체육시설팀)	10	-	-	-	-	10
		체육시설사업소(관리팀, 운영팀, 시설팀)	2	10	3	-	-	15
	동 해 시	체육교육위생과(체육진흥팀, 체육 시설팀)	4	1	-	-	-	5
	태 백 시	스포츠레저과(스포츠기획팀, 스포 츠레저팀, 스포츠시설팀)	11	5	-	-	7	23
	속 초 시	교육문화체육과(체육팀)	4	1	-	-	1	6
	삼 척 시	자치행정과(체육육성)	4	-	3	-	-	7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		-	4	10	-	6	20	

구분	조직	인력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계		
강원 (18)	홍천군	자치행정과(체육담당)	1	3	1	-	-	5	
	횡성군	자치행정과(체육육성)	4	-	3	-	-	7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	-	4	10	-	6	20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체육진흥계)	5	3	2	-	-	10	
	평창군	경제체육과(체육진흥팀)	3	-	-	-	-	3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스포츠지원팀)	3	1	-	-	-	4	
	철원군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3	1	1	2	1	8	
	화천군	문화체육과	8	1	-	-	-	9	
	양구군	문화체육과(체육진흥)	3	1	-	-	2	6	
	인제군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 스포츠마케팅팀)	5	1	-	-	-	6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4	1	-	-	-	5	
	양양군	문화관광과(체육진흥팀)	3	1	-	-	-	4	
	소계		95	43	33	2	24	197	
	충북 (11)	청주시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9	3	-	-	-	12
		충주시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시설개발팀, 조정경기장관리팀)	9	4	-	-	-	13
			체육시설관리과(총괄관리팀, 공공시설팀, 체육시설팀)	8	7	14	-	-	29
		제천시	체육진흥과(체육지원팀, 시설조성팀, 시설관리팀)	10	5	-	-	-	15
		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체육팀)	3	1	-	-	-	4
증평군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3	-	-	-	-	3	
괴산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팀)	2	-	1	-	-	3	
음성군		문화홍보과(체육진흥팀)	3	-	-	-	-	3	
단양군		문화관광과(체육진흥팀)	3	1	-	1	-	5	
진천군		문화홍보체육과(체육팀)	2	-	2	-	-	4	
보은군		스포츠사업단(체육계, 시설계, 전지훈련계, 운영계)	9	4	-	-	-	13	
영동군	시설사업소(체육시설팀)	1	4	-	-	-	5		
	문화체육관광과(체육진흥팀)	3	-	-	-	-	3		
소계		65	29	17	1	0	112		
충남 (15)	천안시	체육교육과(체육행정, 체육지원)	8	1	-	-	-	9	
	공주시	교육체육과(체육진흥, 체육시설팀)	5	1	-	-	-	6	
	보령시	교육체육과(체육지원팀)	5	2	-	-	-	7	

34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구분	조직		인력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계
충남 (15)	아산시	체육육성과(체육정책, 체육지원, 체육시설1, 체육시설2)	8	7	3	-	2	20
	서산시	체육진흥과(체육지원, 생활체육관리, 체육시설운영)	10	4	7	-	9	30
	논산시	관광체육과(체육팀)	3	-	-	-	-	3
	계룡시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2	1	-	-	-	3
	당진시	체육육성과(체육정책, 체육지원, 체육시설)	7	6	-	-	1	14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체육진흥팀)	3	1	-	-	1	5
	부여군	문화관광과(체육진흥팀)	1	2	1	-	-	4
	서천군	자치행정과(체육팀)	2	1	-	-	-	3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체육팀)	3	1	-	-	-	4
	홍성군	문화관광과(체육진흥팀)	3	-	-	-	1	4
	예산군	교육체육과(체육지원, 체육시설)	3	2	3	-	1	9
	태안군	교육체육과(체육진흥, 체육시설)	2	4	-	-	-	6
소계			65	33	14	0	15	127
전북 (14)	전주시	체육산업과(스포츠산업, 체육진흥, 체육시설조성, 체육시설관리)	9	6	1	-	-	16
	군산시	체육진흥과(체육진흥, 운영, 시설, 국민체육센터)	9	7	8	3	1	28
	익산시	체육진흥과(체육진흥, 시설)	8	13	6	-	-	27
	정읍시	교육체육과(체육진흥팀)	3	-	-	-	-	3
	남원시	교육체육과(체육진흥계, 체육시설계)	5	4	3	-	-	12
	김제시	체육청소년과(체육담당, 체육시설담당)	3	7	3	2	-	15
	완주군	관광체육과(체육지원팀)	1	2	-	-	-	3
	진안군	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	3	2	-	-	5	10
	무주군	문화관광과(체육진흥)	2	-	-	-	-	2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체육팀)	3	1	1	-	5	10
	임실군	행정지원과(체육진흥팀)	3	1	-	-	-	4
	순창군	체육공원사업소(체육진흥계, 체육시설계)	4	4	3	-	-	11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체육진흥, 체육시설)	4	4	7	-	-	15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스포츠마케팅팀, 관리팀)	4	3	1	-	-	8
소계			61	54	33	5	11	164
전남 (22)	목포시	스포츠산업과(체육지원팀, 스포츠마케팅팀, 생활체육팀)	7	1	1	-	-	9

구분	조직		인력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계
전남 (22)	여수시	체육지원과(체육지원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진남관리팀, 망마관리팀, 체육관관리팀)	12	9	4	-	26	51
	순천시	스포츠산업과(체육지원팀,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팀)	9	4	-	-	-	13
		체육시설관리소(관리담당, 시설담당, 운영담당)	3	5	4	2	-	14
	나주시	교육체육과(체육지원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관리팀)	5	5	-	-	-	10
	광양시	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체육시설운영팀)	7	6	2	3	7	25
	담양군	문화체육과(스포츠산업담당)	1	1	5	-	-	7
	곡성군	문화과(체육팀)	2	1	1	-	-	4
	구례군	스포츠산업과(체육지원담당, 문화시설운영담당, 체육시설운영담당, 스포츠유치팀, 철인3종경기추진팀)	11	1	2	-	14	28
	고흥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시설담당, 체육담당)	7	3	4	-	1	15
	보성군	문화관광과(체육진흥담당)	4	1	-	-	6	11
	화순군	스포츠산업과(체육행정담당, 스포츠지원담당, 시설관리담당)	8	3	-	-	15	26
	장흥군	문화관광과(스포츠산업담당)	3	-	1	-	12	16
	강진군	스포츠산업단(체육경영팀, 시설관리팀)	3	3	3	-	8	17
	해남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5	2	1	-	30	38
	영암군	문화관광체육과(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4	4	1	-	8	17
	무안군	체육시설사업소(운영관리담당, 체육진흥담당)	6	2	-	-	1	9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체육진흥담당)	2	1	-	-	-	3
	영광군	스포츠산업과(스포츠마케팅담당, 시설개발담당, 시설관리담당)	6	7	2	-	1	16
	장성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2	-	-	-	-	2
	완도군	문화체육과(스포츠산업담당)	2	2	-	-	14	18
	진도군	행정과(체육지원담당)	2	1	-	-	1	4
	신안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2	-	-	-	1	3
	소 계		113	62	31	5	145	356
경북 (23)	포항시	새마을체육산업과(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스포츠마케팅팀)	6	6	-	-	-	12
		해양산업과(해양레저팀)	2	1	-	-	1	4

36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구분	조직	인력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³⁾	계약직 ⁴⁾	계	
경북 (23)	경주 시	체육진흥과(체육지원팀, 체육관리팀, 스포츠마케팅팀, 국민체육센터운영팀)	13	5	-	-	-	18
	김천 시	스포츠산업과(스포츠지원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스포츠시설운영담당, 스포츠시설관리담당)	9	12	3	-	-	24
	안동 시	체육관광과(체육진흥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7	4	-	-	-	11
	구미 시	체육진흥과(체육진흥담당, 시설조성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체육시설관리담당)	11	9	4	-	-	24
	영주 시	체육진흥과(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시민운동장팀)	6	6	-	-	-	12
	영천 시	문화체육과(체육지원담당)	3	1	-	-	-	4
	상주 시	새마을체육과(체육,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9	4	-	-	5	18
	문경 시	새마을체육과(체육지원담당, 체육시설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7	4	-	-	3	14
	경산 시	체육진흥과(체육행정계, 생활체육계, 체육시설계, 국민체육센터)	7	9	-	-	12	28
	군위 군	문화관광과(체육진흥담당)	4	-	-	-	-	4
	의성 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계)	2	-	-	-	-	2
	청송 군	공보과(체육지원담당)	2	1	-	-	-	3
		문화체육시설사업소(시설관리담당)	-	1	2	-	-	3
	영양 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3	1	-	-	-	4
	영덕 군	자치행정과(스포츠마케팅담당)	2	2	-	-	-	4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2	3	6	-	4	15
	청도 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기획운영담당, 시설관리담당, 체육지원담당)	4	6	-	-	2	12
	고령 군	문화누리관(체육담당)	3	-	-	-	-	3
	성주 군	새마을체육과(체육진흥담당)	3	4	-	-	11	18
	칠곡 군	새마을문화과(체육지원담당)	3	-	-	-	-	3
		체육시설사업소	5	7	-	-	-	12
	예천 군	문화체육사업소(체육진흥)	3	1	-	-	-	4
	봉화 군	새마을경제과(체육진흥담당)	3	-	-	-	-	3
울진 군	체육진흥사업소(체육지원팀, 시설개발팀, 시설관리팀)	8	3	-	-	1	12	
울릉 군	문화관광체육과(체육지원담당)	3	-	-	-	-	3	
소계		130	90	15	0	39	274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경남 (18)	창원시	체육진흥과(체육지원담당, 체육시설담당, 생활체육담당)	8	6	-	-	-	14
	진주시	시민생활지원센터 체육진흥과	10	10	-	-	-	20
	통영시	체육지원과(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9	1	1	-	-	11
	사천시	체육지원과(체육지원담당, 체육시설담당, 시설관리담당, 수영장담당)	8	3	16	-	4	31
	김해시	체육지원과(체육지원팀, 생활체육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11	4	1	-	-	16
	밀양시	체육시설사업소(운영, 체육지원, 체육시설)	8	4	1	-	-	13
	거제시	교육체육과(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4	2	-	-	-	6
	양산시	교육체육과(체육지원담당, 체육시설담당)	4	2	-	-	-	6
	의령군	의병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관광체육시설담당)	4	2	2	-	-	8
	함안군	문화관광과(체육담당)	2	1	-	-	-	3
	창녕군	문화체육과(체육담당, 문화시설담당)	2	1	1	-	-	4
	고성군	문화체육과(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팀)	4	4	-	-	-	8
	남해군	체육시설사업소(체육시설팀, 스포츠산업)	4	5	-	-	10	19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체육진흥, 체육시설)	4	5	-	-	15	24
	산청군	문화관광과(체육담당)	2	1	1	-	-	4
	함양군	문화관광과(체육팀)	2	3	-	-	-	5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9	2	-	-	-	11
	합천군	문화체육과(체육담당)	3	-	1	-	-	4
공공시설사업소		4	3	3	-	-	10	
소계			102	59	27	0	29	217
제주 (2)	제주시	체육진흥과(체육진흥담당, 체육관리담당, 체육시설담당, 국민체육센터담당, 애월국민체육센터담당)	6	5	23	-	1	3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체육지원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경기장관리담당, 경기장시설담당, 국민체육센터담당)	5	15	-	-	-	20
	소계			11	20	23	0	1
총계			1,316	563	257	15	390	2,541

1. 기술직: 전기·토목·건축·기계
 2. 기능직: 사무보조요원 등
 3. 별정직: 공무원분류상 별정직으로 채용된 체육지도사 등
 4. 계약직(전문직 포함): 일용계약 등에 따라 채용된 체육전문가
- ※ 주 : 전국체전준비기획단 등 한시조직은 제외함
 ※ 출처 : 각 기초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16)

3) 지방 체육단체 운영현황

2016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방 체육단체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에 따라 각각의 단체들은 독립운영하거나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통합운영 등의 유형이 있었다. 광역자치단체 17개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228개 시·군·구 중 체육회는 213개, 장애인체육회는 63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각 시·도의 특성에 따라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15개였다.

표 1-13.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 현황 (단위: 개)

구 분		체육단체 독립운영	체육단체 미설치	체육단체 통합운영
광역	체육회	17	-	-
	장애인체육회	17	-	
기초	체육회	213	-	15
	장애인체육회	63	150	
통합운영 기초자치단체명 (체육회+장애인체육회)		경기(성남시, 남양주,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양평군), 강원(양양군), 충북(제천시,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영동군), 전북(익산시, 순창군)		

표 1-14. 광역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 실태 (단위: 명)

시 도	구 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체육단체운영		비 고
				독립	통합	
서울특별시	체육회	1처 1실 4부 9팀(과)	74 (2)	○		
	장애인체육회	1처 4팀(과)	16 (51)	○		
부산광역시	체육회	1처 1실 6부	33 (51)	○		
	장애인체육회	1처 3부	10 (20)	○		
대구광역시	체육회	1처 4부 1소	25 (9)	○		
	장애인체육회	1처 2부 3과 1팀	13 (20)	○		
인천광역시	체육회	1처 4부 12팀	75 (46)	○		
	장애인체육회	1처 1부 3팀	12 (19)	○		

시 도	구 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체육단체운영		비 고
				독립	통합	
광 주 광 역 시	체 육 회	1처 3부 9팀	68 (104)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11 (17)	○		
대 전 광 역 시	체 육 회	1처 1본부 3부 6팀	31 (268)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11 (21)	○		
울 산 광 역 시	체 육 회	1처 3부 5과	22 (4)	○		
	장애인체육회	1처 1과 2팀	8 (12)	○		
세종특별자치시	체 육 회	1처 3팀	13 (9)	○		
	장애인체육회	1처 2팀	5 (4)	○		
경 기 도	체 육 회	1처 1총괄본부 3부 8과	40 (4)	○		
	장애인체육회	1처 1본부 3과	19 (3)	○		
강 원 도	체 육 회	1처 4부 8팀	28 (200)	○		
	장애인체육회	1처	13 (4)	○		
충 청 북 도	체 육 회	1처 5부 5팀	23 (3)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과)	11 (10)	○		
충 청 남 도	체 육 회	1처 2부 6팀	24 (2)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11 (8)	○		
전 라 북 도	체 육 회	1처 2본부 7과	28 (7)	○		
	장애인체육회	1처 2과	10 (27)	○		
전 라 남 도	체 육 회	1처 5부	35 (48)	○		단체장 겸직 (지자체장)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9 (22)	○		
경 상 북 도	체 육 회	1처 2부 6팀	24 (3)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8 (2)	○		
경 상 남 도	체 육 회	1처 3부 1과	21 (3)	○		
	장애인체육회	1처 1부 1과 3팀	9 (16)	○		
제주특별자치도	체 육 회	1처 4부 1과	24 (42)	○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9 (12)	○		

※ 출처 : 각 광역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16)

40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표 1-15. 기초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 실태

(단위: 명)

지 역	구 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체육단체운영		비 고
				독립	통합	
서울 (25)	종 로 구	체 육 회	1국	13(12)	○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2(0)	○	
	중 구	체 육 회	1국	10(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용 산 구	체 육 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성 동 구	체 육 회	1국	15(14)	○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1(0)	○	
	광 진 구	체 육 회	1국	15(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동대문구	체 육 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중 랑 구	체 육 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성 북 구	체 육 회	1국	16(15)	○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2(0)	○	
	강 북 구	체 육 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1국	1(0)	○	
	도 봉 구	체 육 회	1국	14(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노 원 구	체 육 회	1국	17(16)	○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1(0)	○		
은 평 구	체 육 회	1국	13(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서대문구	체 육 회	1국	14(13)	○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1(0)	○		
마 포 구	체 육 회	1국	17(1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양 천 구	체 육 회	1국	13(12)	○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1(0)	○		
강 서 구	체 육 회	1국	17(16)	○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1(0)	○		
구 로 구	체 육 회	1국	14(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체육단체운영		비고
				독립	통합	
서울 (25)	금천구	체육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영등포구	체육회	1국	14(13)	○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1(0)	○	
	동작구	체육회	1국	14(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관악구	체육회	1국	14(13)	○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1(0)	○	
	서초구	체육회	1국	14(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강남구	체육회	1국	14(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송파구	체육회	1국	15(14)	○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1(0)	○		
강동구	체육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2(1)	○		
부산 (16)	중구	체육회	이사회, 1국	1(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서구	체육회	1국	6(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동구	체육회	1국	1(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영도구	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부산진구	체육회	1국	1(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동래구	체육회	1국	1(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남구	체육회	1국	1(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북구	체육회	1국	1(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해운대구	체육회	이사회	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사하구	체육회	이사회	8(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42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체육단체운영		비고
				독립	통합	
부산 (16)	금정구	체육회	이사회	9(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강서구	체육회	1국	2(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연제구	체육회	이사회	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수영구	체육회	이사회, 1국	1(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사상구	체육회	이사회, 1국	1(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기장군	체육회	1국	4(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대구 (8)	중구	체육회	1국	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동구	체육회	1국	1(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서구	체육회	1국	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남구	체육회	1국	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북구	체육회	1국	1(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수성구	체육회	1국	1(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달서구	체육회	1국	1(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달성군	체육회	1국	2(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인천 (10)	중구	체육회	이사회	9(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동구	체육회	이사회, 1국	1(8)	○	체육회: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담당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남구	체육회	이사회	2(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연수구	체육회	1국(이사회)	2(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지역	구 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체육단체운영		비 고
				독립	통합	
인천 (10)	남 동 구	체 육 회	1국	1(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부 평 구	체 육 회	1국	14(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계 양 구	체 육 회	1국	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서 구	체 육 회	이사회	1(11)	○	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담당
	강 화 군	체 육 회	1국	4(7)	○	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안전행정과에서 담당
웅 진 군	체 육 회	1국	2(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광주 (5)	동 구	체 육 회	1국	3(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서 구	체 육 회	1국	2(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남 구	체 육 회	1국	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북 구	체 육 회	1국	2(14)	○	
		장애인체육회	1국	3(2)	○	
	광 산 구	체 육 회	1국	2(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대전 (5)	동 구	체 육 회	2국	14(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중 구	체 육 회	1국	2(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서 구	체 육 회	1국	1(15)	○	
		장애인체육회	1국	1(1)	○	
	유 성 구	체 육 회	1국	2(1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대 덕 구	체 육 회	1국 3팀	1(1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울산 (5)	중 구	체 육 회	1팀	2(12)	○	
		장애인체육회	1팀	2(0)	○	
	남 구	체 육 회	1팀	4(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44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지 역	구 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체육단체운영		비 고	
				독립	통합		
울산 (5)	동 구	체 육 회	1국	3(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북 구	체 육 회	1국 1담당	3(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울 주 군	체 육 회	1국	3(16)	○		체육회 : 교육체육과에서 담당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경기 (31)	수 원 시	체 육 회	1국1차4과 10팀	38(11)	○		사무국장 겸직
		장애인체육회	1국1과2팀	6(7)	○		
	고 양 시	체 육 회	1국	10(12)	○		
		장애인체육회	1국	3(4)	○		
	성 남 시	체 육 회	1국	17(13)		○	사무국장, 부장, 과장 겸직
		장애인체육회		2(2)			
	용 인 시	체 육 회	1국	13(1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부 천 시	체 육 회	2부	10(13)	○		사무국장 겸직, 이사회 별도 조직
		장애인체육회	1부	1(4)	○		
	안 산 시	체 육 회	1국	12(14)	○		사무국장 겸직
		장애인체육회	1국	3(3)	○		
	남양주시	체 육 회	2국 3팀	11(10)		○	체육회/장애인체육회 통합운영
		장애인체육회		2(2)			
	안 양 시	체 육 회	1국	6(14)	○		
		장애인체육회	1국	3(0)	○		
	화 성 시	체 육 회	1국 4팀	11(13)		○	사무국장 겸직
		장애인체육회		2(4)			
	평 택 시	체 육 회	이사회	7(9)		○	사무국장 겸직
		장애인체육회		1(4)			
의정부시	체 육 회	1국	5(8)	○			
	장애인체육회	1국	2(2)	○			
시 흥 시	체 육 회	1국	7(0)	○			
	장애인체육회	1국	3(0)	○			
파 주 시	체 육 회	1국 1과 2팀	5(11)		○		
	장애인체육회						
김 포 시	체 육 회	1국	7(10)		○	체육회 : 교육체육과에서 담당	
	장애인체육회		2(3)				
광 명 시	체 육 회	1국	6(15)	○			
	장애인체육회	1국	2(1)	○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체육단체운영		비고
				독립	통합	
경기 (31)	광주 시	체육회	1국	5(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군포 시	체육회	1국	5(10)	○	
		장애인체육회	1국	2(1)	○	사무국장 겸직
	오산 시	체육회	1국	6(6)	○	
		장애인체육회	1국	2(2)	○	사무국장겸직 이사,대의원 일원화
	이천 시	체육회	1국	5(8)	○	
		장애인체육회	1국	2(2)	○	
	양주 시	체육회	1국	2(9)	○	
		장애인체육회	1국	1(5)	○	
	안성 시	체육회	이사회	5(13)	○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1(0)	○	체육회 : 교육체육과에서 담당
	구리 시	체육회	1국	4(7)	○	
		장애인체육회	1국	2(0)	○	체육회 : 평생학습과에서 담당
	포천 시	체육회	1국	5(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의왕 시	체육회	1국	3(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체육회 : 문화체육과에서 담당
	하남 시	체육회	1국2과	7(13)	○	
		장애인체육회	1국	1(2)	○	
여주 시	체육회	1국	6(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동두천시	체육회	1국	2(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과천 시	체육회	1국2과	8(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양평 군	체육회	1국	4(5)		○	
	장애인체육회		1(0)			
가평 군	체육회	1국	7(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연천 군	체육회	이사회	5(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강원 (18)	춘천 시	체육회	1국	12(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체육회 :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
원주 시	체육회	1국	7(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46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지 역	구 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체육단체운영		비 고
				독립	통합	
강원 (18)	강릉시	체육회	1국	5(25)	○	
		장애인체육회	1팀	2(6)	○	
	동해시	체육회	1국	7(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태백시	체육회	2국	6(19)	○	2국장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속초시	체육회	1국	22(17)	○	
		장애인체육회	1국	8(6)	○	
	삼척시	체육회	이사회	12(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홍천군	체육회	1국2팀	7(15)	○	
		장애인체육회	1국1팀	2(4)	○	
	횡성군	체육회	이사회	12(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영월군	체육회	1국	6(16)	○	체육회 : 자치행정과에서 담당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2(1)	○	
	평창군	체육회	1국	5(1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정선군	체육회	1국	4(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철원군	체육회	1국4팀	7(11)	○	체육회 :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담당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화천군	체육회	이사회	3(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양구군	체육회	1국	18(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인제군	체육회	1국	39(2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고성군	체육회	1국	3(16)	○	사무국장 파견 체육회 : 문화체육과에서 담당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양양군	체육회	1국 3팀	7(11)		○	사무국장 겸직
	장애인체육회					
충북 (11)	청주시	체육회	1국	10(24)	○	체육회 :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
		장애인체육회	1국	5(0)	○	
	충주시	체육회	1국	5(13)	○	
		장애인체육회	1국	2(0)	○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체육단체운영		비고	
				독립	통합		
충북 (11)	제천시	체육회	1국	11(10)		○	단체장 겸직(지자체장)
		장애인체육회					
	옥천군	체육회	1국	1(13)	○		
		장애인체육회	1국	2(1)	○		
	증평군	체육회	5팀	17(16)		○	
		장애인체육회					
	괴산군	체육회	이사회, 1국	1(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음성군	체육회	1국	20(15)		○	
		장애인체육회					
	단양군	체육회	1국	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진천군	체육회	이사회	17(0)		○	사무국장 겸직	
	장애인체육회		2(0)				
보은군	체육회	1국	6(10)	○			
	장애인체육회	1국	2(2)	○			
영동군	체육회	이사회	13(11)		○		
	장애인체육회						
충남 (15)	천안시	체육회	1국	5(13)	○		
		장애인체육회	1국	3(4)	○		
	공주시	체육회	1국	3(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보령시	체육회	1국	14(11)	○		
		장애인체육회	1국	4(2)	○		
	아산시	체육회	1과	5(33)	○		
		장애인체육회	1과	2(4)	○		
	서산시	체육회	1국	3(22)	○		
		장애인체육회	1국	2(4)	○		
	논산시	체육회	1국	6(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계룡시	체육회	1국	3(10)	○		
		장애인체육회	1국	2(1)	○		
	당진시	체육회	1국	16(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금산군	체육회	1국	10(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48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체육단체운영		비고
				독립	통합	
충남 (15)	부여군	체육회	1국	3(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서천군	체육회	1국	2(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청양군	체육회	1국	9(6)	○	
		장애인체육회	1국	4(3)	○	
	홍성군	체육회	1국	4(8)	○	
		장애인체육회	1국	4(1)	○	
	예산군	체육회	1국	4(8)	○	
		장애인체육회	1국	2(3)	○	
	태안군	체육회	1국	4(11)	○	
		장애인체육회	1국	1(2)	○	
전주시	체육회	1국	9(16)	○		
	장애인체육회	1국	3(2)	○		
군산시	체육회	1국	4(13)	○		
	장애인체육회	1국	2(0)	○		
익산시	체육회	1국	18(13)		○	사무국장 겸직
	장애인체육회					
정읍시	체육회	1국	2(13)	○		
	장애인체육회	1국	1(1)	○		
남원시	체육회	1국	2(11)	○		
	장애인체육회	1국	1(1)	○		
김제시	체육회	1국	4(12)	○		체육회 :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완주군	체육회	1국	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진안군	체육회	1국	4(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무주군	체육회	1국	8(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장수군	체육회	1국	8(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임실군	체육회	1국	4(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순창군	체육회	1국	10(8)		○	사무국장 겸직
	장애인체육회		1(0)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체육단체운영		비고
				독립	통합	
전북 (14)	고창군	체육회	1국	1(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부안군	체육회	1국	10(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목포시	체육회	1국	19(14)	○		
	장애인체육회	1국	-	○		
여수시	체육회	1국 2과	20(16)	○		
	장애인체육회	1국 1과	2(1)	○		
순천시	체육회	1국	22(18)	○		
	장애인체육회	1국	2(0)	○		
나주시	체육회	1국	14(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광양시	체육회	2국	15(11)	○		
	장애인체육회	1국	2(0)	○		
담양군	체육회	1국	1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곡성군	체육회	1국	18(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례군	체육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고흥군	체육회	1국	10(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보성군	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화순군	체육회	1국	17(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장흥군	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1국	1(0)	○		
강진군	체육회	1국 2과 2팀	11(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해남군	체육회	1국	14(10)	○		
	장애인체육회	1국	2(0)	○		
영암군	체육회	1국	15(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무안군	체육회	1국	13(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50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지 역	구 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체육단체운영		비 고
				독립	통합	
전남 (22)	함 평 군	체 육 회	1국	14(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영 광 군	체 육 회	1국 2과	11(9)	○	
		장애인체육회	1국	2(0)	○	
	장 성 군	체 육 회	1국	11(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완 도 군	체 육 회	1국	7(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진 도 군	체 육 회	1국	10(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신 안 군	체 육 회	1국	13(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경북 (23)	포 항 시	체 육 회	2국	8(19)	○	
		장애인체육회	1국	2(1)	○	
	경 주 시	체 육 회	1국 2팀	4(12)	○	
		장애인체육회	1국 1팀	2(2)	○	
	김 천 시	체 육 회	1국	4(11)	○	
		장애인체육회	1국	2(0)	○	
	안 동 시	체 육 회	1국	5(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 미 시	체 육 회	1국	7(11)	○	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과에서 담당
		장애인체육회	1국	2(0)	○	
	영 주 시	체 육 회	1국	4(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영 천 시	체 육 회	1국	2(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상 주 시	체 육 회	이사회	4(12)	○	체육회 : 새마을체육과에서 담당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문 경 시	체 육 회	2부	5(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경 산 시	체 육 회	1국	7(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군 위 군	체 육 회	1국	1(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의 성 군	체 육 회	1국	2(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지 역	구 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체육단체운영		비 고
				독립	통합	
경북 (23)	청 송 군	체 육 회	이사회	4(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영 양 군	체 육 회	이사회	2(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영 덕 군	체 육 회	이사회	2(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청 도 군	체 육 회	이사회	1(7)	○	체육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담당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고 령 군	체 육 회	1국	2(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성 주 군	체 육 회	1국	5(9)	○	체육회 : 새마을체육과에서 담당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칠 곡 군	체 육 회	이사회	2(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예 천 군	체 육 회	1국(2팀)	4(10)	○	1팀 : 엘리트체육분야 2팀 : 생활체육분야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봉 화 군	체 육 회	이사회	1(7)	○	조직명칭 일원화 1국 2부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울 진 군	체 육 회	1국	2(9)	○	체육회 : 체육진흥사업소에서 담당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울 릉 군	체 육 회	1국	4(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경남 (18)	창 원 시	체 육 회	2국 7부	21(28)	○	체육회 : 체육진흥과에서 담당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진 주 시	체 육 회	1국	19(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통 영 시	체 육 회	1국	3(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사 천 시	체 육 회	1국	5(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김 해 시	체 육 회	2국	8(0)	○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1(0)	○	
	밀 양 시	체 육 회	1국	3(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거 제 시	체 육 회	1국	5(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52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지 역	구 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체육단체운영		비 고
				독립	통합	
경남 (18)	양 산 시	체 육 회	1국	6(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의 령 군	체 육 회	1국	2(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함 안 군	체 육 회	이사회	3(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창 념 군	체 육 회	2국	4(14)	○	실무부회장 겸직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고 성 군	체 육 회	1국	3(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남 해 군	체 육 회	1국	3(16)	○	체육회 : 체육시설사업소 담당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하 동 군	체 육 회	이사회	3(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산 청 군	체 육 회	1국	3(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함 양 군	체 육 회	1국	3(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거 창 군	체 육 회	2팀	10(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합 천 군	체 육 회	1국	3(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제주 (2)	제 주 시	체 육 회	1국	12(2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서귀포시	체 육 회	1국	13(1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출처 : 각 기초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16)

3. 체육단체

1) 대한체육회

가. 설립배경 및 목적

대한체육회는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7월 13일에 조선체육회라는 명칭으로 창립하였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살리자'는 취지로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창설된 대한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으나,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부활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단체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체육회는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 체육인의 복지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였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매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우수 선수발굴과 스포츠인구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선수·후보선수·국가대표선수로 이어지는 우수선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전문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3월 7일 통합체육회를 출범시켰다.

나. 연혁

1920년 7월 13일 창립된 조선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나, 1945년 11월 26일 광복과 더불어 조선체육회로 다시 부활하였다. 이후 1948년 런던 하계올림픽대회 참가를 위하여 1946년 7월 15일 조선체육회 내에 올림픽대책위원회를 설

치하였으며 이는 조선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 KOC) 출범의 계기가 됐다.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NOC)로서 1947년 6월 20일 제41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단체가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조선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 조선체육회 내부 조직이었던 조선올림픽위원회는 1948년 9월 3일 대한올림픽위원회로 명칭이 개칭되었다.

1954년 3월 16일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1964년 9월 8일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독립기구인 사단법인체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후 심각한 체육계 내부 갈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8년 3월 1일에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학교체육회가 흡수·통합되었다.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내 정관상의 특별위원회의 지위를 가졌다. 1982년 12월 31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대한체육회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하였다.

2009년 6월 29일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 종전의 정관상 특별위원회인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에 통합시켜 대한체육회가 IOC에 가입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사업에 관하여 IOC와 대외적 교섭을 갖는 유일한 단체가 되었으며,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올림픽 정신을 함양·보급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적, 신체적 자질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제친선과 세계평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참여 등의 활동목적은 추가하였다.

대한체육회의 국제스포츠 행사개최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1986년 제10회 서울 하계아시아대회를 개최하였고, 1988년 제24회 서울 하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1996년 4월에는 제6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 개최를 비롯하여, 1997년 1월 제18회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1997년 5월 제2회 부산 동아시아대회, 1999년 1월 제4회 강원 동계아시아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99년 6월 17일 제109차 IOC총회, 2002년 9월 제14회 부산 하계아시아대회, 2003년 8월 제22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아울러, 2006년 3월에는 제15차 국가올림픽총연합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7년 4월 2014년 인천 하계아시아대회를, 2009년에는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였다. 특히 2011년 7월 6일에는 2018년 동계올림픽

대회를 평창에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대회, 하계올림픽대회, FIFA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를 모두 유치하는데 기여하였다. 2014년 9월에는 제17회 인천 하계아시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제28회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 3월 7일에는 대한체육회(KOC)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이 이뤄졌으며 통합체육회의 명칭은 대한체육회(KSOC)로 정하였다.

표 1-16. 대한체육회 연혁

○	1920. 07. 13	조선체육회 창립
○	1938. 07. 04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
○	1945. 11. 26	조선체육회 부활
○	1947. 06. 20	조선올림픽위원회(KOC) 설립 및 IOC 가입
○	1948. 09. 03	대한체육회 및 대한올림픽위원회로 개칭
○	1954. 03. 16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인가
○	1964. 09. 08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	1966. 06. 30	태릉선수촌 건립
○	1968. 03. 01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학교체육회 통합
○	1982. 12. 31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를 특수법인으로 지정
○	1986. 09. 20	제10회 서울 하계아시아대회 개최
○	1988. 09. 17	제24회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개최
○	1996. 04. 21	제6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 개최
○	1997. 01. 24	제18회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	1997. 05. 10	제2회 부산 동아시아대회 개최
○	1999. 01. 30	제4회 강원 동계아시아대회 개최
○	1999. 06. 17	제109차 IOC총회 개최
○	2002. 09. 27	제14회 부산 하계아시아대회 개최
○	2003. 08. 21	2003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	2006. 03. 31	2006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개최
○	2009. 06. 29	대한체육회·KOC 완전 통합
○	2011. 10. 27	진천선수촌 1단계 완공
○	2014. 09. 19	제17회 인천 하계아시아대회 개최
○	2015. 07. 03	제28회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	2016. 03. 07	대한체육회(KOC)·국민생활체육회 통합 → 대한체육회(KSOC)

다. 통합체육회 출범

우리나라의 스포츠시스템은 1920년부터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대한체육회와 1991년부터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스포츠 복지의 확립 및 확

대에 기여해 온 국민생활체육회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생활체육과 연계되지 않은 전문체육은 저변 확대의 어려움과 선수층의 약화, 은퇴선수 일자리 제공 한계, 생활체육 서비스 질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재정 운영 상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스포츠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전문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체육단체 통합에 대한 논의는 2013년 12월 대한체육회와 체육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 각종 단체, 체육계 사이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양 단체 모두 통합 원칙에 찬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단체 간 동등한 입장의 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위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이 2014년 2월 제출되었고, 체육단체 통합을 명시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동년 10월에 발의되었다. 2015년 2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3월 27일 개정법이 공포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16년 3월까지 양 체육회가 통합하도록 의무화하고, 통합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확정할 수 있도록 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합준비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 3명, 대한체육회장 추천 3명(사무총장 포함), 국민생활체육회장 추천 3명(사무총장 포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국민생활체육회장이 반대하는 경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으며, 국민생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대한체육회장이 반대하는 경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양 단체가 상호간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각각의 추천 주체들은 위원들을 추천하였고, 통합준비위원회의 정원을 구성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가 통합준비위원 추천을 미루거나 추천된 위원을 국민생활체육회가 거부하는 등 일부 갈등이 발생하였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준비위원회 구성이 일부 지연되었다. 초기에는 총 인원 11명 중 8명만으로 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5년 6월 20일에 통합준비위원회가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회의가 시작되었다. 2015년 9월 16일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한 안양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양측은 논의와 협의 끝에 2015년 11월 10일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국민생활체육회가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2명을 추천함에 따라 총 11명의 위원이 모두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16일에 개최된 통합준비위원회 8차 회의부터는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통합 작업은 가속화되었다.

2016년 3월 7일 두 단체를 통합한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가 열려 공동회장으로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공동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승인하였다. 2016년 10월 5일에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를 통해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공동회장 체제를 마무리하고, 이기홍 회장이 선출되었다.

표 1-17. 통합체육회 추진 과정

○ 2014. 02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 발의
○ 2014. 10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 2015. 02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5. 03월 27일	개정법 공포
○ 2015. 06월 20일	통합준비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시
○ 2015. 06월 23일	국민생활체육회 법정 법인화
○ 2015. 11월 16일	통합준비위원회 정상화
○ 2016. 03월 07일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
○ 2016. 10월 05일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

통합체육회의 명칭에 대해서는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일찍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제4차 회의에서 처음 발의된 통합체육회 명칭 논의는 제10차 회의에서

는 통합체육회의 명칭이 확정되었다. 통합체육회의 국문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결정하였으며, 영문 명칭은 KSOC(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로 하되, 리우 하계올림픽대회 때까지는 IOC 관계에 대해 KOC(Korean Olympic Committee)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체육회는 리우 하계올림픽대회 이후 영문명칭에 대한 IOC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도 KSOC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라. 조직 및 인력

대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그리고 각종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는 ‘종목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7조 제4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회(舊 대한체육회의 시·도지부와 舊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시·도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단체)는 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대한체육회는 68개(정회원단체 59개, 준회원단체 5개, 인정단체 4개)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회원종목단체 1,058개를 두었다. 또한 17개의 시·도체육회와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별로 조직된 228개 시·군·구 체육회로 구성되었다.

두 단체의 통합이니 만큼 직제의 설계 방향은 통합체육회의 조속한 안정과 향후 통합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통합체육회 직제에 대해서는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비롯한 기타 협의사항들이 우선 협의된 후에 제18차 회의(‘16년 2월 29일)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제20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직제가 확정되었다. 통합체육회 조직구조는 1사무총장, 1감사, 1선수총장, 1사무차장, 4본부, 2실, 17부로 되어있으며, 인력 구성은 임원/관리직 3명, 별정직 4명, 일반직 147명, 전문기술직 27명, 실무직 10명, 운영직 3명 등 총 정원 194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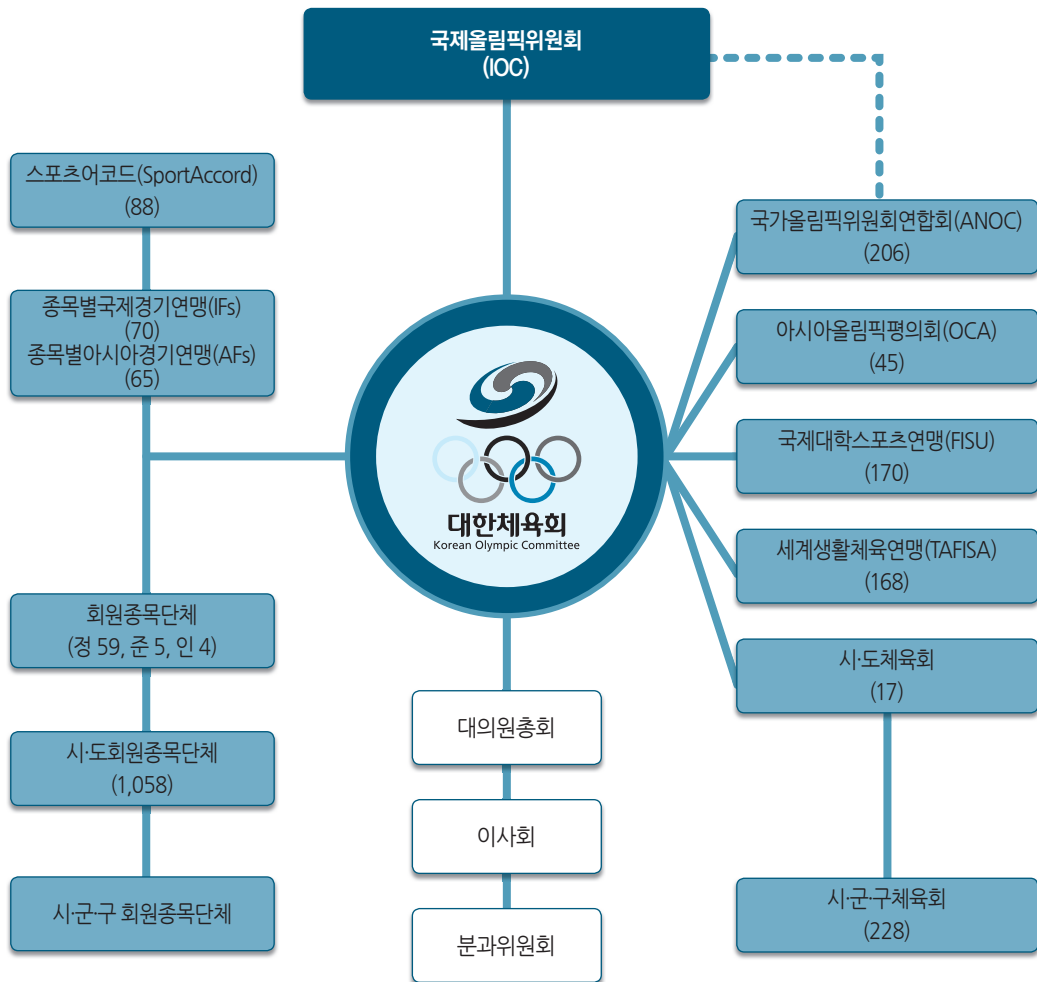


그림 1-2. 국·내외 스포츠단체 조직도(2016 대한체육회 결과보고서, 2017)

마. 회원종목단체 현황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 마찬가지로 각 단체의 회원으로 있던 회원종목단체 역시 통합을 하였다. 2015년 12월, 대한사이클연맹(전문체육)과 전국자전거연합회(생활체육)의 통합(대한자전거연맹)을 필두로 2016년 6월까지 38개 종목의 단체가 통합하여 통합 후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 59개, 준회원 5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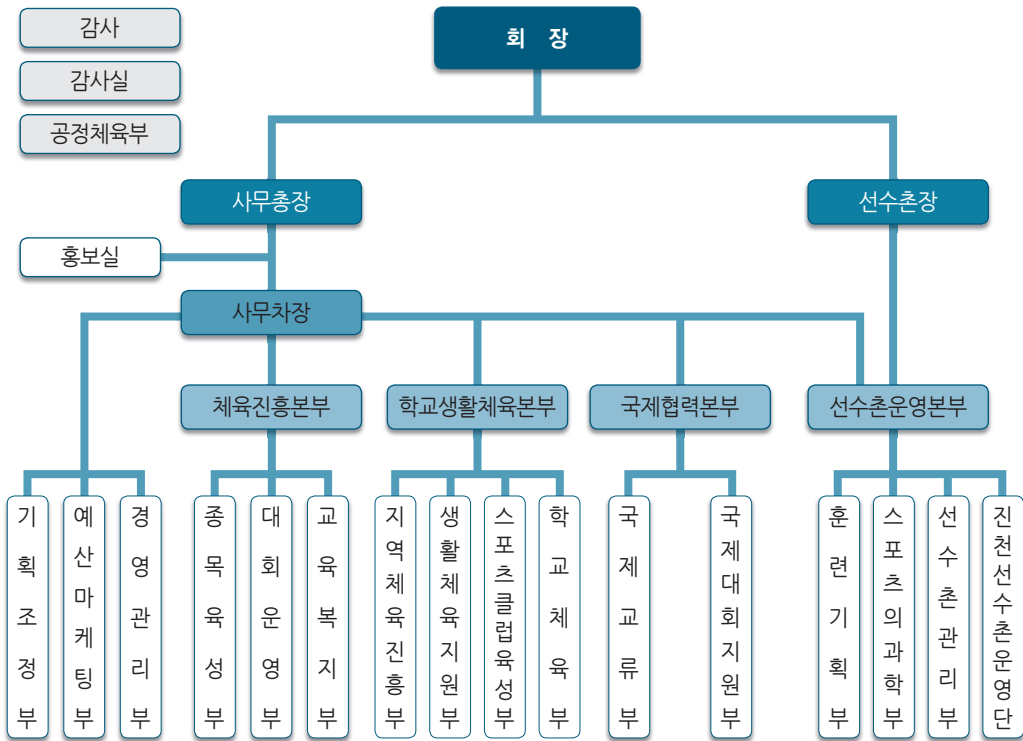


그림 1-3. 통합체육회 조직도(문화체육관광부 통합백서, 2016)

표 1-18. 통합체육회 인력구성

(단위: 명)

구분	계	임원/관리직	별정직 (비상계획관, 전문위원)	일반직								기능직	운영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218	3	6	169	3	11	20	30	37	29	39	37	3
현원	224	3	6	166	4	8	21	32	34	25	42	45	4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백서(2016)

바. 재정 현황

통합체육회의 2016년도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 2,855억 원, 공익사업적립금 8억 원, 기타보조금 13억 원, 자체수입 145억 원 등 총 3,023억 원 규모이다. 구체적인 예산 현황은 <표 1-20>과 같다.

표 1-19. 회원종목단체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단체 정보		2016년 결산 현황		
	단체명	회장명	전체결산액	자체부담분	재정자립도
정회원 (59)	대한검도회	이종림	3,346,726	2,542,525	76.0
	대한게이트볼협회	맹수일	1,423,779	656,870	46.1
	대한골프협회	허광수	6,503,566	3,870,040	59.5
	대한국학기공협회	권기선	809,817	184,473	22.8
	대한궁도협회	안상문	699,959	372,579	53.2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최일성	399,223	140,742	35.3
	대한근대5종연맹	박상우	3,548,337	2,106,516	59.4
	대한민국농구협회	방 열	6,494,715	2,223,998	34.2
	대한당구연맹	남삼현	2,259,995	1,842,429	81.5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천중순	689,129	287,284	41.7
	대한럭비협회	이상웅	3,481,242	1,728,271	49.7
	대한레슬링협회	이정욱	4,838,821	1,156,402	23.9
	대한롤러스포츠연맹	-	1,861,721	801,652	43.1
	대한루지경기연맹	박지은	2,009,987	557,867	27.8
	대한바둑협회	신상철	3,260,089	1,196,281	36.7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장영준	3,063,461	396,806	13.0
	대한민국배구협회	서병문	6,551,055	1,939,053	29.6
	대한배드민턴협회	박기현	13,415,525	9,534,152	71.1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연용	1,123,292	864,579	77.0
	대한복싱협회	하용환	2,467,818	403,544	16.4
	대한볼링협회	김길두	2,854,938	1,423,175	49.9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오창희	4,517,515	1,187,264	26.3
	대한빙상경기연맹	김상형	14,106,133	8,499,118	60.3
	대한사격연맹	황용득	5,282,382	1,971,982	37.3
	대한산악연맹	김종길	2,958,892	2,430,540	82.1
	대한세일링연맹	-	3,512,315	125,179	3.6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이래규	1,591,981	412,475	25.9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장인화	643,159	373,742	58.1
	대한수영연맹(관리단체)	-	3,710,925	1,393,208	37.5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이선명	3,293,609	2,612,719	79.3
	대한스쿼시연맹	허태숙	1,326,004	238,490	18.0
	대한스키협회	신동빈	16,485,456	6,269,589	38.0
	대한승마협회	-	6,742,772	4,938,094	73.2
	대한씨름협회	박팔용	6,702,714	656,684	9.8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정몽원	6,592,630	2,155,848	32.7	

62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구분	단체 정보		2016년 결산 현황		
	단체명	회장명	전체결산액	자체부담분	재정자립도
	대한아구소프트볼협회	김응용	7,896,746	4,627,262	58.6
	대한양궁협회	정의선	12,371,951	10,817,281	87.4
	대한역도연맹	이원성	1,738,356	120,794	7.0
	대한우수협회	박창범	3,500,171	485,429	13.9
	대한유도회	김진도	4,384,389	1,431,990	32.7
	대한육상연맹	배호원	6,816,472	3,929,004	57.6
	대한사전거연맹	구자열	9,390,367	3,907,753	41.6
	대한정구협회	이계왕	2,168,446	446,309	20.6
	대한조정협회	최진식	3,069,420	1,610,687	52.5
	대한민국족구협회	박상순	378,293	217,449	57.5
	대한철인3종협회	박성원	2,990,701	577,500	19.3
	대한체조협회	한찬건	5,043,065	368,607	7.3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88,340,779	64,403,366	72.9
	대한카누연맹	임호순	1,987,870	176,250	8.9
	대한컬링경기연맹	장문익	5,063,953	2,474,501	48.9
	대한탁구협회	조양호	5,223,392	2,593,523	49.7
	대한태권도협회	최창신	6,695,772	7,588,555	113.3
	대한택견회	김상훈	389,422	175,575	45.1
	대한테니스협회	곽용운	5,794,390	3,047,511	52.6
	대한파크골프협회	김세규	357,917	318,724	89.1
	대한퍼러글라이딩협회	김경환	199,258	100,855	50.6
	대한펜싱협회	신헌철	5,768,928	2,081,111	36.1
	대한하키협회	-	4,979,230	241,276	4.9
	대한핸드볼협회	최태원	13,486,021	10,002,680	74.2
준회원 (5)	대한줄넘기협회	김병일			
	대한카바디협회	강양수			
	대한크리켓협회	-			해당 사항 없음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협회	하태부			
	대한피구연맹	조형기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표 1-20. 통합체육회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계(A)	재원별					자체 예산비중 (B/A)×100(%)
		국고	기금	공익사업적립금	기타보조금	자체수입(B)	
2016	302,348	-	285,593	805	1,378	14,572	4.8%

※ 주 : 결산세입액 기준 작성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17개의 시·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통합을 완료하였다. 2016년 시도체육회의 총 예산은 4,134억 원 규모이며, 자체수입은 201억 원 규모이다. 전체 예산 중 자체수입은 4.9%를 차지하였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 체육회 역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을 완료하였다. 2016년 시·군·구 체육회의 총 예산은 4,219억 원 규모이며, 자체수입은 188억 원 규모이다. 전체 예산 중 자체수입은 4.5%를 차지하였다.

2016년도 시·도 및 시·군·구 회원종목단체의 총 예산은 4,170억 원, 자체수입은 661억 원 규모이다. 전체 예산 중 자체수입은 15.9%를 차지하였다.

표 1-21. 시도체육회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설립년월	시도 체육회 예산		
		2016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서울특별시체육회	1953. 2.	71,092	3,024	4.3
부산광역시체육회	1963. 3.	29,563	2,276	7.7
대구광역시체육회	1981. 7.	28,741	349	1.2
인천광역시체육회	1981. 7.	37,725	183	0.5
광주광역시체육회	1986.11.	12,102	194	1.6
대전광역시체육회	1989. 1.	14,129	927	6.6
울산광역시체육회	1997. 7.	16,082	-	0.0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2012. 7.	5,614	32	0.6
경기도체육회	1950. 6.	34,731	4,644	13.4
강원도체육회	1946. 5.	22,050	1,008	4.6
충청북도체육회	1946. 3.	17,188	3,913	22.8
충청남도체육회	1927. 3.	17,404	207	1.2
전라북도체육회	1947. 3.	20,390	368	1.8
전라남도체육회	1945. 9.	19,518	2,158	11.1
경상북도체육회	1949. 1.	24,797	439	1.8
경상남도체육회	1945.12.	20,821	58	0.3
제주도체육회	1951. 6.	21,453	397	1.9
합계		413,400	20,177	4.9

※ 주 : 전체예산=국고+기금+공익사업적립금+자체수입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표 1-22. 시·군·구 체육회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자치단체명	2016년도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서울 (25)	종로	808	44	5.4
	중구	703	20	2.8
	용산	640	28	4.4
	성동	738	37	5.0
	광진	710	43	6.1
	동대문	614	25	4.1
	중랑	743	44	5.9
	성북	872	48	5.5
	강북	763	56	7.3
	도봉	961	59	6.1
	노원	1,033	47	4.5
	은평	650	37	5.7
	서대문	767	60	7.8
	마포	1,078	56	5.2
	양천	858	59	6.9
	강서	1,144	38	3.3
	구로	739	34	4.6
	금천	620	31	5.0
	영등포	810	55	6.8
	동작	1,002	48	4.8
	관악	858	31	3.6
	서초	727	41	5.6
	강남	1,058	43	4.1
	송파	892	84	9.4
	강동	772	84	10.9
소계	20,560	1,152	5.6	
부산 (16)	중구	312	1	0.3
	서구	491	33	6.7
	동구	560	42	7.5
	영도구	345	29	8.4
	부산진구	531	32	6.0
	동래구	834	64	7.7
	남구	547	37	6.8
북구	474	17	3.6	

자치단체명	2016년도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부산 (16)	해운대구	712	92	12.9
	사하구	50	-	0.0
	금정구	703	134	19.1
	강서구	545	47	8.6
	연제구	392	60	15.3
	수영구	483	79	16.4
	사상구	498	63	12.7
	기장군	570	-	0.0
소계	8,047	730	9.1	
대구 (8)	중구	525	65	12.4
	동구	631	17	2.7
	서구	522	24	4.6
	남구	593	53	8.9
	북구	785	35	4.5
	수성구	755	46	6.1
	달서구	1,139	55	4.8
	달성군	1,345	136	10.1
소계	6,295	431	6.8	
인천 (10)	중구	582	92	15.8
	동구	314	-	0.0
	남구	841	77	9.2
	연수구	513	9	1.8
	남동구	799	110	13.8
	부평구	825	23	2.8
	계양구	624	50	8.0
	서구	769	28	3.6
	강화군	632	12	1.9
	옹진군	219	8	3.7
소계	6,118	409	6.7	
광주 (5)	동구	533	2	0.4
	서구	791	4	0.5
	남구	645	14	2.2
	북구	710	13	1.8
	광산구	974	22	2.3
	소계	3,653	55	1.5

자치단체명		2016년도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대전 (5)	동 구	828	32	3.9
	중 구	834	38	4.6
	서 구	2,313	195	8.4
	유 성 구	1,142	24	2.1
	대 덕 구	1,061	145	13.7
	소 계	6,178	434	7.0
울산 (5)	중 구	1,344	-	0.0
	남 구	3,221	-	0.0
	등 구	1,014	-	0.0
	북 구	1,134	-	0.0
	울 주 군	1,668	-	0.0
	소 계	8,381	0	0.0
경기 (31)	수 원 시	22,639	1,586	7.0
	고 양 시	4,212	-	0.0
	성 남 시	14,907	-	0.0
	용 인 시	5,378	-	0.0
	부 천 시	4,874	204	4.2
	안 산 시	4,579	109	2.4
	남 양 주 시	2,984	238	8.0
	안 양 시	2,377	62	2.6
	화 성 시	5,868	-	0.0
	평 택 시	2,326	49	2.1
	의 정 부 시	1,683	37	2.2
	시 흥 시	1,975	178	9.0
	파 주 시	1,686	-	0.0
	김 포 시	2,081	273	13.1
	광 명 시	3,405	111	3.3
	광 주 시	1,615	217	13.4
	군 포 시	1,987	86	4.3
	오 산 시	2,462	150	6.1
	이 천 시	2,998	134	4.5
	양 주 시	1,218	48	3.9
	안 성 시	2,178	123	5.6
구 리 시	1,028	84	8.2	
포 천 시	3,446	-	0.0	

자치단체명	2016년도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경기 (31)	의왕시	1,234	655	53.1
	하남시	1,931	87	4.5
	여주시	3,279	55	1.7
	동두천시	966	53	5.5
	과천시	1,370	48	3.5
	양평군	1,391	177	12.7
	가평군	1,967	246	12.5
	연천군	2,273	83	3.7
	소계	112,317	5,093	4.5
강원 (18)	춘천시	8,018	-	0.0
	원주시	2,714	223	8.2
	강릉시	2,185	40	1.8
	동해시	2,404	48	2.0
	태백시	3,613	-	0.0
	속초시	1,981	52	2.6
	삼척시	1,233	-	0.0
	홍천군	4,408	115	2.6
	횡성군	2,796	-	0.0
	영월군	1,613	-	0.0
	평창군	2,099	8	0.4
	정선군	2,183	-	0.0
	철원군	2,852	-	0.0
	화천군	2,467	218	8.8
	양구군	1,206	53	4.4
	인제군	4,191	29	0.7
	고성군	1,941	-	0.0
	양양군	1,252	-	0.0
	소계	51,172	786	1.5
충북 (11)	청주시	5,744	949	16.5
	충주시	1,838	41	2.2
	제천시	1,570	323	20.6
	보은군	1,380	-	0.0
	옥천군	1,193	-	0.0
	영동군	1,632	5	0.3
	증평군	902	20	2.2

자치단체명	2016년도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충북 (11)	진천군	1,431	-	0.0
	괴산군	975	8	0.8
	음성군	2,429	2	0.1
	단양군	1,337	16	1.2
	소계	20,431	1,364	6.7
충남 (15)	천안시	4,394	97	2.2
	공주시	2,347	-	0.0
	보령시	2,494	113	4.5
	아산시	3,859	-	0.0
	서산시	2,840	356	12.5
	논산시	1,869	-	0.0
	계룡시	1,297	9	0.7
	당진시	2,681	-	0.0
	금산군	1,407	-	0.0
	부여군	2,277	43	1.9
	서천군	1,348	-	0.0
	청양군	3,117	18	0.6
	홍성군	1,519	63	4.1
	예산군	1,700	140	8.2
	태안군	2,153	73	3.4
소계	35,302	912	2.6	
전북 (14)	전주시	4,486	-	0.0
	군산시	2,584	67	2.6
	익산시	2,118	167	7.9
	정읍시	1,411	-	0.0
	남원시	1,753	86	4.9
	김제시	1,128	-	0.0
	완주군	1,468	-	0.0
	진안군	1,268	-	0.0
	무주군	744	-	0.0
	장수군	1,157	-	0.0
	임실군	1,149	-	0.0
	순창군	1,690	-	0.0
	고창군	1,593	-	0.0
	부안군	795	-	0.0
소계	25,360	320	1.3	

자치단체명	2016년도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전남 (22)	목포시	1,816	92	5.1
	여수시	2,496	141	5.6
	순천시	2,254	48	2.1
	나주시	800	32	4.0
	광양시	1,957	-	0.0
	담양군	2,710	2	0.1
	곡성군	917	8	0.9
	구례군	1,418	187	13.2
	고흥군	425	17	4.0
	보성군	408	-	0.0
	화순군	1,846	607	32.9
	장흥군	642	-	0.0
	강진군	1,346	-	0.0
	해남군	665	21	3.2
	영암군	1,383	-	0.0
	무안군	826	-	0.0
	함평군	788	15	1.9
	영광군	3,104	2,079	67.0
	장성군	522	10	1.9
	완도군	747	19	2.5
	진도군	1,220	32	2.6
	신안군	1,432	9	0.6
소계	29,722	3,319	11.2	
경북 (23)	포항시	4,826	533	11.0
	경주시	1,519	-	0.0
	김천시	2,002	135	6.7
	안동시	4,247	80	1.9
	구미시	4,064	112	2.8
	영주시	2,095	72	3.4
	영천시	1,600	-	0.0
	상주시	2,960	83	2.8
	문경시	3,183	114	3.6
	경산시	2,868	150	5.2
	군위군	1,014	11	1.1
	의성군	944	21	2.2

70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자치단체명	2016년도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경북 (23)	청 송 군	768	7	0.9
	영 양 군	1,002	20	2.0
	영 덕 군	50	-	0.0
	청 도 군	893	-	0.0
	고 령 군	725	-	0.0
	성 주 군	1,467	230	15.7
	칠 곡 군	1,185	27	2.3
	예 천 군	522	19	3.6
	봉 화 군	894	68	7.6
	울 진 군	2,456	-	0.0
	울 립 군	358	272	76.0
	소 계	41,642	1,954	4.7
경남 (18)	창 원 시	10,053	-	0.0
	진 주 시	2,197	92	4.2
	통 영 시	2,058	33	1.6
	사 천 시	2,211	96	4.3
	김 해 시	3,491	159	4.6
	밀 양 시	1,293	81	6.3
	거 제 시	2,645	83	3.1
	양 산 시	2,472	730	29.5
	의 령 군	784	90	11.5
	함 안 군	1,524	112	7.3
	창 녕 군	1,389	76	5.5
	고 성 군	1,806	30	1.7
	남 해 군	2,643	72	2.7
	하 동 군	1,142	33	2.9
	산 청 군	1,314	44	3.3
	함 양 군	1,447	128	8.8
	거 창 군	1,232	23	1.9
	합 천 군	983	51	5.2
소 계	42,700	1,933	4.5	
제주 (2)	제 주 시	5,037	-	0.0
	서 귀 포 시	5,123	-	0.0
	소 계	10,160	0	0.0
합 계	421,990	18,892	4.5	

표 1-23. 2016년 시도 및 시군구 회원종목단체 예산과 자체수입 비율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		
	전체예산(A)	자체수입(B)	B/A×100(%)
시도 회원종목단체	105,718	41,651	39.4
시군구 회원종목단체	311,340	24,508	7.9
합계	417,058	66,159	15.9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2) 대한장애인체육회

가. 설립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은 1988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를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88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 잉여금으로 장애인체육과 복지를 담당할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1989년에 설립되었다. 그동안 장애인체육은 일반체육과 비교하였을 때 전문적인 체육행정 시스템이 아닌 장애인복지차원 행정시스템이라는 제도적 한계로 ‘국민체육’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였다. 장애인체육은 2000년 이후 올림픽과 패럴림픽 공동개최를 명문화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협약에 따라 전문화, 체계화, 엘리트화가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체육 선수들을 중심으로 복지가 아닌 국민체육으로 인정받기 위해 장애인체육 담당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現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4년 12월 정부는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장애인체육 담당부처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2005년 1월 28일 문화관광부장관은 장애인체육계 인사를 초청하여, 장애인체육 현안과 비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 3월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업무이관과 관련하여 장애인체육단체, 선수, 체육학계 등이 참가한 실무협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4월에 선수, 체육단체, 학계, 생활체육계, 일반체육계를 포함한 장애인체육회 설립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정관제정 등 전반에 관한 설립준비를 하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6월 29일 임시

72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국회에서 의결, 7월 29일에 공포되었으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10월 26일에 공포되었다. 동 법률을 기반으로 66인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2005년 11월 8일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창립 발기인 총회를 거쳐 11월 25일에 설립되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국내에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와 시도지부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며, 국제적으로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장애인올림픽 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확산하는 단체의 성격을 가지며, 그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 국내·외 장애인체육 경기대회의 개최·참가와 국제스포츠 교류
- 장애인 선수 양성,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장애인선수·체육지도자·유공자의 복지향상
- 장애인 체육시설·경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장애인체육 용기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 장애인체육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나. 연혁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05년 11월 25일 법인 설립허가 이래 장애인선수 육성 및 각종 국제대회파견을 통한 국위선양과 다양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으로 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서 164개국 중 12위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설립당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4%에서 2016년 17.7%로 획기적인 성장률을 나타내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연혁은 <표 1-24>와 같다

표 1-24. 대한장애인체육회 연혁

○ 2004. 12. 14.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장애인체육 문화관광부 이관 결정
○ 2005. 06. 29.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의결
○ 2005. 07. 29.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근거 마련)
○ 2005. 11. 25.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초대 장항숙 회장 취임
○ 2006. 05. 12.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설립(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6조)
○ 2006. 04. 27.	19개 경기단체(골볼,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스키,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육상, 테니스, 펜싱) 및 3개 유형별 단체(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 가맹
○ 2006. 07. 31.	2개 경기단체(조정, 탁구) 및 1개 유형별 단체(대한농아인체육연맹) 가맹
○ 2007. 06. 28.	이천장애인종합수련원(현 이천훈련원) 건립공사 착공
○ 2007. 10. 16.	2개 경기단체(요트, 컬링) 가맹
○ 2008. 03. 14.	대한장애인축구협회 가맹
○ 2009. 09. 18.	2개 경기단체(유도, 태권도) 가맹
○ 2009. 10. 15.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원(현 이천훈련원)
○ 2009. 11. 22.	장항숙 회장 IPC 집행위원 당선
○ 2009. 11. 25.	제2대 윤석용 회장 취임
○ 2012. 03. 15.	대한장애인승마협회 가맹
○ 2013. 07. 19.	이천훈련원 2단계 훈련시설 증축 준공
○ 2013. 11. 25.	제3대 김성일 회장 취임
○ 2013. 11. 26.	나경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회장 IPC 집행위원 당선
○ 2014. 02. 28.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통합
○ 2014. 04. 16.	2개 경기단체(골프, 당구) 가맹
○ 2015. 03. 31.	2개 유형별 단체(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 탈퇴
○ 2017. 02. 23.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가맹
○ 2017. 02. 23.	제4대 이명호 회장 취임

다. 조직 및 인력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17개 시·도지부(시도장애인체육회)와 31개 가맹단체(29개 경기단체 및 2개 유형별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시·도지부인 시·도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시·도 행정구역별 일부 시·군·구지부와 시·도별 가맹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81개 시·군·구장애인체육회와 399개의 시·도 가맹단체를 두고 신인·꿈나무 선수는 물론 종목별 선수 육성과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가입되어 있으며, 종목별 국제스포츠기구 및 장애유형별 스포츠기구와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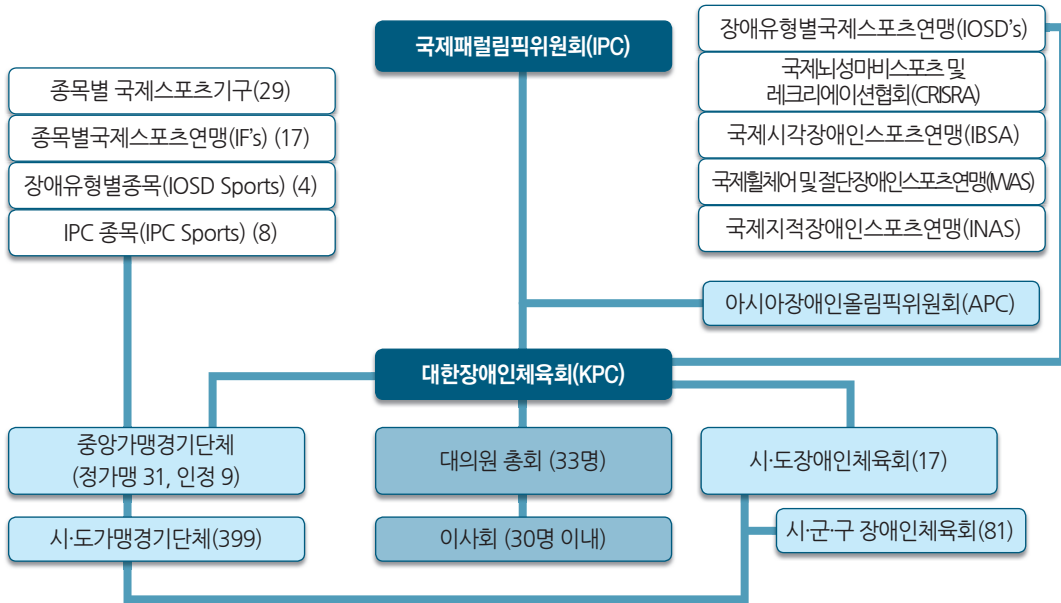


그림 1-4. 국내 · 외 장애인체육회 조직도(대한장애인체육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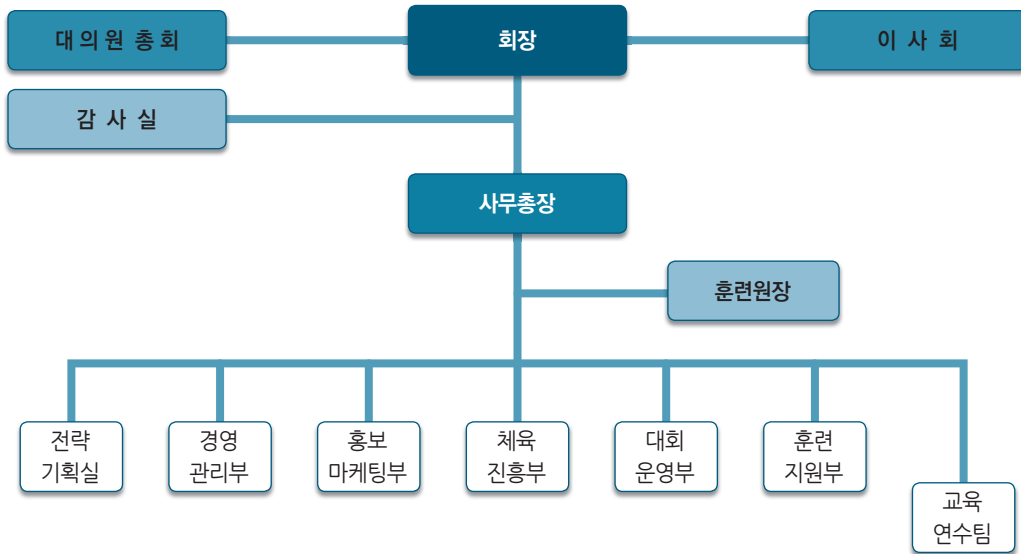


그림 1-5.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도(대한장애인체육회, 2016)

무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또한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들의 요람인 ‘이천훈련원’을 별도로 두고 운영하는 등 생활·전문·국제체육에서의 장애인체육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원은 전신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이관된 15명을 포함하여 회장, 사무총장 포함 정원 25명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증가하는 장애인체육 업무와 2009년도 국가대표선수들의 요람인 이천훈련원 개원 등으로 매년 인력이 증가하여 2016년 1월 1일 6부 1팀, 73명의 정원 직제로 운영되었다.

표 1-25. 대한장애인체육회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상근인원	관리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73	1	1	2	4	9	11	14	15
현원	68	1	-	2	4	8	12	15	12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16)

라. 시도지부 및 가맹단체 현황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관 제6조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는 17개 시·도지부를 설립하였다. 17개의 시·도지부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 심의 결정, 각 가맹단체와 각급 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지도 감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장애인체육 생활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 육성 및 보급,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 특수학교 및 장애 학생체육의 육성,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마. 재정현황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출범 당시 2005년 10월 정부로부터 경륜 공익사업적립금을 지원받아 사무처 개소식 준비를 하였으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체육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다. 장애인체육회 초기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자체수입을 포함하여 97억 원으로 출발하였으며,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체육

표 1-26. 시·도 대한장애인체육회 현황

구 분	소재지	설립년월	시군구 지부(71개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송파구	07.03.30	노원구,은평구,영등포구,종로구,성북구,양천구,강동구, 송파구,강남구,강북구,강서구,성동구,관악구,서대문구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해운대구	06.12.07	사상구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수성구	06.07.27	-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남구	07.04.11	-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서구	07.07.18	북구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중구	07.05.04	서구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중구	08.01.17	중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수원시	06.11.20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의정부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이천시, 구리시, 양주시, 하남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파주시, 군포시, 광명시, 오산시, 안성시, 양평군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춘천시	07.05.30	속초시, 양양군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청주시	06.12.18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영동군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예산군	07.01.17	서산시, 공주시, 천안시, 보령시, 계룡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아산시, 당진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전주시	06.12.26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군산시, 전주시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무안군	07.11.0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해남군, 장흥군, 영광군, 나주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산시	07.04.10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창원시	06.07.18	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시	07.02.14	-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조치원읍	14.01.16	-

※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16)

회의 요구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하에 매년 그 규모가 크게 증대되어 201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530억 원, 공익사업적립금 4억 원, 자체 48억 원 등 총 588억 원의 예산규모로 성장하였다. 2016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은 626억 원으로 2015년보다 95억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6 리우 하계패럴림픽대회 참가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표 1-27.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설립일	연번	단체명	설립일
1	대한장애인골볼협회	2004.09.09	17	대한장애인양궁협회	2004.04.04
2	대한장애인골프협회	2006.06.23	18	대한장애인역도연맹	1996.01.25
3	대한장애인농구협회	1997.04.25	19	대한장애인요트연맹	2006.12.15
4	대한장애인당구협회	2009.01.31	20	대한장애인 유도협회	1988.03.26
5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2002.07.28	21	대한장애인육상연맹	2002.02.25
6	대한장애인럭비협회	2004.12.19	22	대한장애인조정연맹	2006.07.08
7	대한장애인론볼협회	1992.05.16	23	대한장애인축구협회	2004.09.09
8	대한장애인배구협회	2006.02.26	24	대한장애인컬링협회	2007.05.28
9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2000.02.15	25	대한장애인탁구협회	1993.08.20
10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2006.03.18	26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2006.04.02
11	대한장애인볼링협회	2002.12.12	27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1993.09.20
12	대한장애인사격연맹	1997.04.15	28	대한장애인펜싱협회	1996.11.28
13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1993.07.10	29	대한장애인승마협회	2011.04.28
14	대한장애인수영연맹	2003.03.22	30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2006.02.18
15	대한장애인스키협회	2001.10.20	31	대한농아인체육연맹	1982.04.30
16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2003.02.21			

※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16)

표 1-28. 대한장애인체육회 연도별 재정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계(A)	재원별					자체수입비중 (B/A)×100(%)
		일반회계	기금	공익사업 적립금	자체수입(B)	기타	
2005	200	-	-	200	-	-	-
2006	9,712	2,680	5,613	100	1,319	-	13.58
2007	25,153	7,236	9,110	-	8,807	-	35.01
2008	35,708	4,049	17,455	4,147	10,030	-	28.09
2009	50,598	6,549	26,011	5,170	12,868	-	25.43
2010	30,468	4,194	20,066	1,239	4,969	-	16.31
2011	32,046	4,341	23,814	717	3,174	-	9.90
2012	44,551	6,568	30,814	2,640	4,529	-	10.17
2013	47,071	6,197	31,624	5,546	3,704	-	7.87
2014	47,444	-	39,147	4,652	3,645	-	7.68
2015	58,891	-	53,090	422	4,808	571	8.16
2016	70,229	-	62,614	391	5,307	1,917	7.56

※ 주 : 2005년도는 사무처 개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은 현황이며, 당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이관된 직원(15명) 인건비(11월,12월)는 자료미비로 인해 파악 불가.

※ 주 : 2006년-20014년은 결산 기준

※ 재원 중 기타는 휠체어농구레거시사업(대한장애인농구협회 재교부) 및 체육지도자(공단 간접재보조) 사업임.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16)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가. 설립배경 및 목적

1988년 제 24회 서울 하계올림픽대회는 민족적으로는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였고,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서울 하계올림픽대회를 영원히 기념하고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과 성과를 보존 및 발전시키며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4월 20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민국 체육재정의 후원자로서 온 국민이 하나되고 스포츠 생활화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연혁

국민체육진흥재단을 모체로 1989년 4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경기시설이나 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0년 7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을 설립하였다. 그 후 공단은 국제청소년교류와 청소년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국제선수단 숙소 제공을 위하여 1990년 9월 올림픽유스호스텔과 올림픽기념관을 개관하였고, 1993년 12월에는 (주)한국스포츠TV를 설립하였다.

1994년 10월에는 안정적인 체육진흥재원 조성을 위해 잠실경륜장을 개장하였으며, 1999년 1월에는 체육과학연구원(現 한국스포츠개발원)을 통합하여 부설기관으로 설치하였다. 2000년 1월에는 경영효율화의 한 방편으로 (주)한국스포츠TV를 매각하였으며, 2001년 10월에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개시하였다. 2002년 6월에는 미사리에 경정장을 개장하였고, 2003년 9월에는 올림픽홀, 2004년 9월에는 소마미술관을 개관하였다. 2006년 2월에는 경륜장을 광명돔경륜장으로 이전하였으며, 2008년 11월에는 조직효율화의 일환으로 경륜운영본부와 경정운영본부를 경륜·경정사업본부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9년 5월에는 뮤지컬 전용극장인 우리금융아트홀을 개관하였다. 2012년 7월 체육과학연구원이 유네스코 석좌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9월에는 체육진흥 투표권사업이 세계복권협회의 건전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였다. 2014년 2월 체육과학연구원은 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다. 조직 및 인력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본부 이외에 스포츠레저산업본부와 경륜·경정사업본부, 한국스포츠개발원, 그리고 출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체 조직은 이사장을 비롯하여 3임원 2본부 1원 4단 38실 7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단본부는 3임원 8실 24팀으로 되어 있다. 스포츠레저산업본부는 1본부장 1단 4실 17팀, 경륜·경정사업본부는 1본부장 2단 22실 28팀, 한국스포츠개발원은 1원장 1단 1센터 2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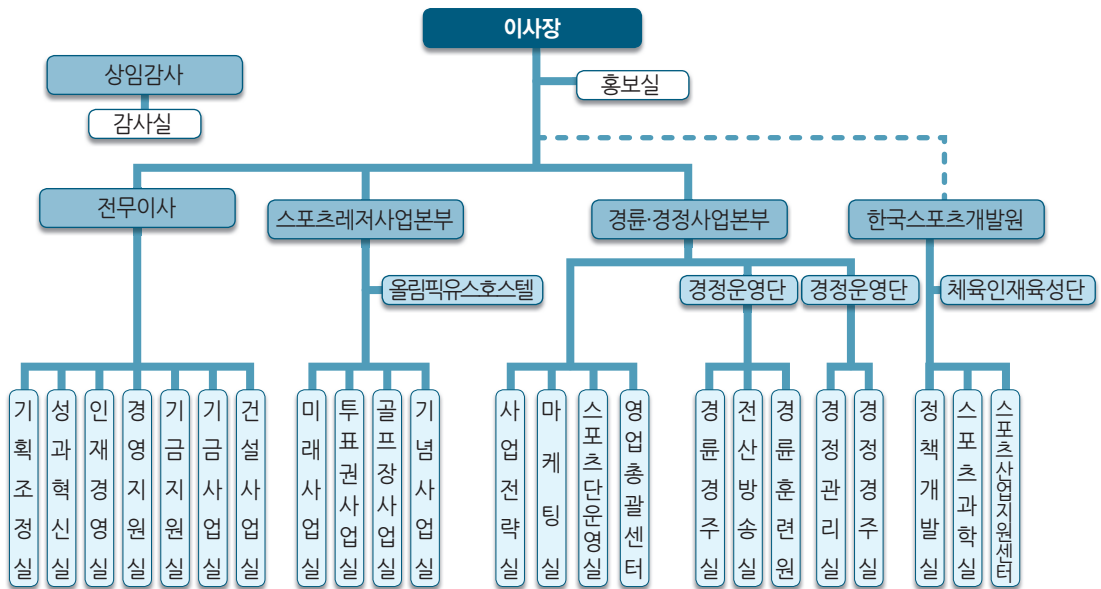


그림 1-6.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직도(국민체육진흥공단, 2016)

80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은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시설물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로 복합문화 및 레저공간을 제공하며, 수익사업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은 올림픽시설물 유지관리,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올림픽시설 대관, 올림픽공원 주차·매점·임대 등 편의시설 운영을 통한 부대 및 수입사업 등으로 현재 1임원 6실 1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력현황은 현원기준으로 본부 199명, 스포츠레저산업본부 153명, 경륜·경정사업본부 340명, 한국스포츠개발원 111명, 한국체육산업개발(주) 17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9. 국민체육진흥공단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계	임원	본부장/원장	관리직	일반직	연구직	운영직
본부	190(199)	3(3)	0(0)	0(0)	152(160)	0(0)	35(36)
스포츠레저산업	150(153)	0(0)	1(1)	1(0)	104(99)	0(0)	44(53)
경륜·경정사업	369(340)	0(0)	1(1)	2(1)	197(182)	0(0)	169(156)
한국스포츠개발원	101(111)	0(0)	1(1)	1(1)	39(49)	44(40)	16(20)
계	810(803)	3(3)	3(3)	4(2)	492(490)	44(40)	264(265)

※ 한국체육산업개발: 1임원 6실(관) 13팀(정원: 177명 / 현원: 174명)

※ 주: ()는 현원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2016)

라. 자산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3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의 운영사업을 수행하며, 제24회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시설물인 올림픽공원(경기장 및 문화예술시설), 미사리 조정호, 올림픽유스호스텔, 기념관, 미술관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요 고정자산 현황은 <표 1-30>과 같다.

표 1-30.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정자산

구 분		내 역
올림픽공원		770,076㎡(서울특별시 소유 몽촌토성 676,213.5㎡ 별도)
올림픽회관		연면적 24,303.35㎡(기념관 6,998.07㎡ 포함), 지하 2층, 지상 15층
공원 내 경기장		연면적 115,269㎡(올림픽수영장, 체조경기장, 펜싱경기장, 역도경기장, 테니스경기장, 벨로드롬, 경륜고객홀, 실내테니스장)
서울올림픽파크텔		연면적 25,139.99㎡, 지하 1층, 지상 18층
올림픽홀		연면적 16,883.71㎡, 지하 1층, 지상 2층
소마미술관		연면적 10,191.17㎡, 지하 2층, 지상 2층
컨벤션센터		연면적 10,116.41㎡, 지상 3층
광명동경륜장		연면적 75,491.05㎡, 지하 1층, 지상 5층
경륜훈련원		연면적 18,589.08㎡
경정훈련원		연면적 13,774.86㎡
올림픽 스포츠센터	분 당	대지 3,880.00㎡, 연면적 17,141.23㎡(지하3층, 지상 5층)
	일 산	대지 3,716.50㎡, 연면적 35,849.45㎡(지하6층, 지상10층)
구축물		조각작품 및 기념조형물 222점

※ 미사리조정경기장(국유지 1,134,792㎡) : 문체부로부터 무상사용

※ 한국스포츠개발원(토지 2,054.87㎡, 건물 7301.2㎡) : 문화재청으로부터 무상사용

※ 출처 :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마. 예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은 기금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된다. 기금회계는 본부 기금관리부서, 한국스포츠개발원, 기금지원·투자·융자금, 기금여유자금 등이며, 법인회계는 본부, 유스호스텔, 경륜, 경정, 투표권,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회계는 기금운용계획과 별도로 운영되며 2016년도 법인회계의 규모는 1조 8,782억 원이다. 주요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표 1-31>과 같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16년도 기금회계 운용규모는 1조 6,508억 원으로 경륜·경정·투표권으로 구성된 법인회계 전입금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주요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표 1-32>와 같다.

표 1-31.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인회계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수 입		지 출	
	사 업	금 액	사 업	금 액
	합 계	1,878,219	합 계	1,878,219
본부	일반관리	5,515	일반관리	31,180
	올림픽공원	32,389	올림픽공원	35,794
	스포츠센터	14,168	스포츠센터	13,075
	스포츠산업	1,789	건설관리	7,704
	올림픽유스호스텔	18,639	스포츠산업	4,372
	전입금	38,907	투표권운영	962
			유스호스텔	16,493
			사내근로복지기금	300
			예비비	1,527
		소계	111,407	소계
경륜	경륜수득금	223,345	본장운영	114,408
	교차투표 수탁수수료	16,162	지점운영	56,287
	운영자금 이자수입	2,781	경륜훈련원	3,226
	입장료	6,370	스포츠단	3,078
	매점수입	10,649	경륜예비비	2,014
	경정지점 공동활용	13,978	시설환경개선준비금	18,612
	기타수입	3,088	사감위분담금	1,258
			법정배분금	62,831
			공단전출금	14,659
		소계	276,373	소계
경정	경정수득금	87,988	본장운영	44,362
	운영자금 이자수입	720	지점운영	20,880
	입장료	3,384	경정훈련원	4,649
	본장 매점수입	742	스포츠단	1,145
	조정호 수입	1,597	경정예비비	563
	기타수입	1,022	시설환경개선준비금	7,332
			사감위분담금	470
			법정배분금	15,250
			공단전출금	802
		소계	95,453	소계
투표권	투표권수입	1,323,891	투표권 위탁비	231,438
	기타 사업외수입	13,647	법정배분금	1,106,100
	소계	1,337,538	소계	1,337,538
보조금	보조사업	57,448	보조사업	57,448
	소계	57,448	소계	57,448

※ 출처 :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표 1-32.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회계 예산

(단위: 백만 원)

수입	금액	지출	금액
○이자수입	10,767	○기금관리비	12,094
- 기금조성용자 이자	1,767	○사업운영비	15,499
- 스포츠산업용자 이자	565	- 투자사업 운영	3,753
- 예탁금이자	8,435	- 한국스포츠개발원 운영	4,038
○부가금수입	38,553	-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7,708
○투자사업수입 등	40,084	○보조금(기금지원)	1,324,250
- 미술관운영	910	- 생활체육 육성	355,066
- 올림픽홀 및 태권도상설공연장	2,364	- 전문체육 육성	418,666
- 경륜훈련원 사용료	1,505	-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491,032
-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7,991	- 장애인체육 육성	59,486
- 경정훈련원 사용료	1,241	○스포츠산업 용자	54,000
- 생활체육인프라(골프장)운영	9,589	○기금조성투자	24,829
- 개발원 운영수입	1,270	-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지원	4,829
- 기금 정산수입	15,214	- 체육용구 등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20,000
○법인회계전입금	1,095,74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00,000
- 경륜	29,914	○기금간거래(문예진흥기금전출금)	50,000
- 경정	5,803	○여유자금 운용	70,219
- 투표권	1,060,023		
○용자회수	12,211		
○공자금이자	4,253		
○복권기금 전입금	53,383		
○여유자금회수	395,900		
합계	1,650,891	합계	1,650,891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2016 종합업무현황(2017)

4)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가. 설립배경 및 목적

1967년 IOC 의무분과위원회 발족으로 스포츠윤리 실천, 선수의 건강보호, 모든 선수에게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도핑의 정의 및 금지약물목록이 발표되었다. 1999년 11월 10일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 Doping Agency: WADA) 설립(스위스 로잔)과 2003년 3월 5일 스포츠 도핑방지 세계대회인 「코펜하겐 선언」을 통해 세계도핑방지규약

(World Anti Doping Code: WADC)을 선포하여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대회부터 전면 적용하였고 WADA 결의문 발표 및 각국 정부와 올림픽대회 기구가 각각 서명하였다. 이후 UNESCO 반도핑국제협약을 추진하여 2005년 제33차 UNES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2007년 2월 1일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도 스포츠 도핑방지에 대한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국내 전문도핑방지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2006년 11월 13일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수집 및 연구, 도핑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도핑검사 결과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기준 수립과 시행, 그 밖에 도핑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7년 2월 5일 UNESCO 반도핑국제협약을 비준·수용하였다.

나. 연혁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스포츠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확립과 스포츠정신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2006년 11월 13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2007년 4월 27일 세계도핑방지기구 가입 및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하였고, 같은 해 6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법정법인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등록하고 12월 19일에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였다. 2009년 9월 28일 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로부터 획득하였고, 현재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규약을 토대로 국내 및 국제대회의 도핑검사 및 도핑방지 교육과 홍보, 국제교류 및 협력 등 국내 유일의 도핑방지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11월 5일 2014년~2016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 진출하였으며, 2014년 6월 2일 제11차 아시아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6년 11월 2일에는 2017년~201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에 재진출하였다.

다. 조직 및 인력

사무국은 1실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운영부는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홍보계획 수립 및 집행, 현장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핑검사부는 도핑검사 계획수립 및 집행, 도핑검사 결과 및 제재 관리, 도핑검사관 양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홍보부는 도핑방지교육 운영, 교육인력 역량강화, 온라인교육 운영 및 금지약물검색 서비스, 간행물 제작·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력현황은 <표 1-3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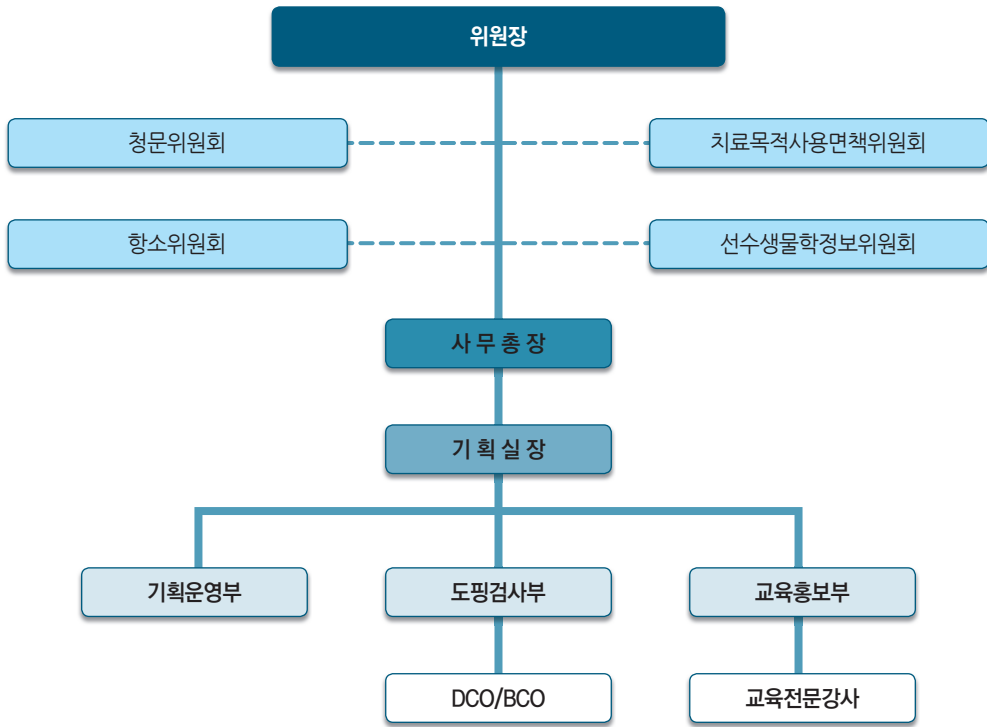


그림 1-7.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직도(한국도핑방지위원회, 2016)

표 1-33.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22	1	1	2	3	4	4	7
현원	19	1	-	1	4	2	3	8

※ 출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내부자료(2016)

라. 주요사업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정신 고양을 통해 도핑 없는 깨끗한 스포츠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핑검사 및 결과관리를 위해 아마추어 및 프로스포츠의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핑검사관(Doping Control Officer: DCO / Blood Collection Officer: BCO)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그리고 도핑위반결과 관리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까지 프로대회의 도핑검사는 외부 검사로 이뤄졌으나 2016년부터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핑검사 인원은 2014년 3,890명에서 2016년 3,89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인 연도별 도핑검사 현황은 <표 1-34>와 같다.

표 1-34. 연도별 도핑검사 현황

(단위: 명)

검사구분		비용주체	2014	2015	2016	
자체 검사	경기기간 중	한국도핑방지위원회	1,220	1,440	1,583	
	경기기간 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1,285	1,068	903	
	프로 경기기간 중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	786	
	프로 경기기간 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	174	
	소계			2,505	2,508	3,446
외부 요청 검사	경기 기간 중	국제대회	국제연맹/조직위	322	218	229
		국내대회	국내연맹	80	130	43
		프로대회	프로단체	390	521	-
		계		2,827	869	272
	경기 기간 외	국제대회	국제연맹	52	70	169
		국내대회	국내연맹	538	320	7
		국내대회	프로단체	3	15	-
		계		3,269	405	176
	소계			1,385	1,274	448
	합계			3,890	3,782	3,894

※ 출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내부자료(2016)

둘째, 도핑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효율적인 도핑방지를 위하여 대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도핑방지교육 콘텐츠 강화, 도핑방지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면교육의 경우 2015년 13,250명에서 2016년

22,694명으로 9,444명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온라인교육도 실시하여 도핑방지 교육을 받은 총 인원은 33,812명으로 2015년 대비 155.2%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도핑방지 교육인원 현황은 <표 1-35>와 같다. 한편, 도핑방지 현장홍보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핑방지 현장홍보 현황은 <표 1-36>과 같다.

표 1-35. 연도별 도핑방지 교육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대면교육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1,999	2,123	2,553
	국가대표 후보 선수 등·하계훈련	821	1,234	1,143
	체육 중·고등학교	3,830	4,974	4,308
	프로스포츠	622	360	2,842
	요청교육(경기 단체 연수회 및 강습회)	5,000	4,559	11,848
소계		12,272	13,250	22,694
온라인교육(소계)		-	-	11,118
합계		12,272	13,250	33,812

※ 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내부자료(2016)

표 1-36. 연도별 도핑방지 현장홍보 현황

(단위: 회)

구분	2014	2015	2016
도핑방지 현장홍보 실시	5	6	9

※ 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내부자료(2016)

셋째, 국제역량강화 및 교류협력을 위하여 2014년부터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도핑방지활동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국제대회 및 국제기구 인력파견을 통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6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Clean, Transparency(투명), Expertise(전문), Sincerity(신뢰), Together(협력)를 핵심가치로 삼고 국제표준에 근거한 도핑검사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도핑 사전예방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표 <1-39>와 같은 목표를 수립하였다.

표 1-37. WADA 및 IF와 도핑검사 위탁대행 MOU 체결 현황

체결일자	MOU 체결 연맹(17개 기구)
2011. 02. 22	국제레슬링연맹(FILA)
2011. 04. 05	국제사격연맹(ISSF)
2011. 05. 16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2011. 06. 20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2011. 06. 21	국제연맹총연합회(SportAccord)
2011. 06. 27	세계아이언맨협회(WTC)
2011. 07. 19	국제인라인롤러연맹(FIRS)
2011. 09. 30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TU)
2011. 10. 15	국제휠체어농구연맹(IWBF)
2011. 11. 02	국제텐핀볼링연맹(WTBA)
2012. 01. 31	국제빙상연맹(CCES/ISU)
2012. 04. 20	국제조정연맹(FISA)
2012. 06. 15	국제핸드볼연맹(IHF)
2012. 08. 09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2014. 04. 23	국제력비연맹(IRB)
2014. 06. 10	국제바둑연맹(IGF)
2015. 11. 27	국제배드민턴연맹(BWF)
2016. 06. 24	세계골프연맹(IGF)
2016. 09. 23	중국·일본 체육국
2016. 06. 25	중국도핑방지기구(CHINADA)

※ 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내부자료(2016)

표 1-38. 연도별 소재지정보 검사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대상인원	실시인원	대상인원	실시인원	대상인원	실시인원
국내RTP선수	71	66	71	83	72	72

※ 주: RTP(Registered Testing Pool) 검사대상자등록명부

※ 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내부자료(2016)

표 1-39.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업 추진 전략목표

구분	전략목표
도핑검사	스포츠 도핑검사 강화 도핑검사관 운영체계 효율화 도핑방지 연구·조사 기능 강화 도핑방지 국제협력 및 위상 강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도핑관리 지원
교육홍보	도핑방지 교육·홍보활동 영역 확대 교육·홍보활동 전문성 강화 선수 및 기타 관계자 편의성 증대
경영관리	경영효율화 정보공유 체계 강화

※ 출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2016)

마. 재정현황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창립초기 11억 원의 국고예산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1억 원 및 자체수입 1억 원 등 총 32억 원의 예산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는 2015년 예산보다 7억 원 정도가 증가한 금액으로 2016년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하나인 반도핑 선진화 사업 추진으로 도핑방지활동 지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1-40>과 같다.

표 1-40.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계(A)	재원별			자체수입비중 (B/A)×100(%)
		국고	기금	자체수입(B)	
2011	2,112	-	2,061	51	2.4
2012	2,138	-	2,085	53	2.5
2013	2,157	-	2,106	51	2.4
2014	2,274	-	2,199	75	3.3
2015	2,524	-	2,429	95	3.8
2016	3,227	-	3,127	100	3.1

※ 출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내부자료(2016)

5) 태권도진흥재단

가. 설립배경 및 목적

태권도는 5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민족의 얼과 슬기를 담아 심신을 연마해 온 전통 무예이자 우리민족의 국난극복을 주도해 온 호국의 무예로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태권도는 1950년대부터 해외에 진출하여 인종, 이념, 종교를 초월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무도로 뿌리를 내렸다. 또한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문화유산으로 정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브랜드로 성장하였다.

정부는 태권도 진흥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2005년 7월 1일 태권도원의 조성과 관리운영 및 태권도 진흥사업, 태권도를 테마로 한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의 진흥 등 태권도를 전 세계에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 주체로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하였다.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은 태권도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 운영과 태권도 진흥사업 수행을 통한 태권도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다.

나. 연혁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조성·운영과 태권도 발전을 통한 국익 증진을 위해 2005년 7월 민법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어 왔다. 2007년 12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2008년 6월에 동 법 제 20조에 근거한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09년 9월에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태권도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태권도원 기공식을 하였다. 태권도원은 2014년 4월 개원하였으며, 그해 9월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표 1-41. 태권도진흥재단 연혁

○ 2005.07.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 설립 허가(문화관광부)
○ 2007.1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8.06.	상기 태권도법에 의한 법정법인화
○ 2009.08.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승인(문화체육관광부)
○ 2009.09.	태권도공원 기공식
○ 2012.02.	명칭변경(태권도공원 ⇒ 태권도원)
○ 2013.08.	태권도원 준공
○ 2014.04.	태권도원 개원(2014.9월, 개원식)

다. 조직 및 인력

태권도진흥재단은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와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3본부 7부 2실 1관)가 있다. 이사장 직속으로 감사실, 사무총장 직속으로 전략기획실이 있으며, 경영본부 산하에 경영지원부, 운영관리부, 정보기술부, 사업본부 산하에 진흥사업부, 교육연구부, 마케팅부, 대외협력본부 산하에 교류협력부와 박물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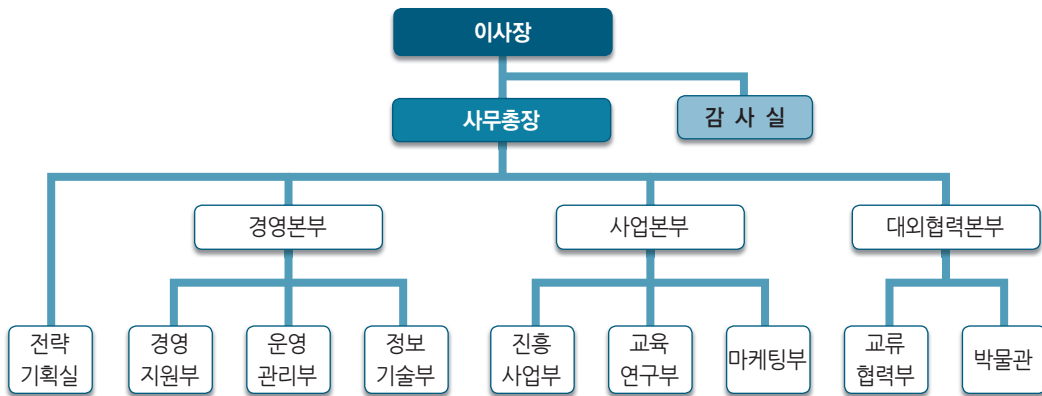


그림 1-8. 태권도진흥재단 조직도(태권도진흥재단, 2016)

라. 주요사업

태권도진흥재단의 주요사업은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태권도원 시설 임대와 관련한 사업,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육성지원 등이다.

2016년도 태권도진흥재단의 중점 추진과제는 한스타일 융복합 콘텐츠 개발, 태권도의 우리문화 정체성 강화, 태권도 세계화 확산, 태권도 산업화 촉진, 태권도원 상징성(정체성) 강화,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 등으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올림픽 챔피언존(Zone) 조성과 전통무예 체험 및 수련코스 조성 등 태권도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태권도원 경연대회·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태권도 대회 및 행사를 개최·지원하였다. 또한 태권도 해외 활성화 지원 사업과 태권도 교육·산업 박람회 개최 지원 등 태권도 세계화 및 산업화 확산·촉진에 기여하였다.

마. 재정현황

태권도진흥재단은 창립초기 3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어 2016년 국민체육진흥기금 212억 원 및 자체수입 28억 원 등 총 240억 원의 예산규모로 성장하였다. 2013년 이후 예산규모가 축소된 것은 태권도원 완공에 따른 기금지원액 감소 때문이며, 2016년에는 태권도 전문수련관 신축으로 기금지원액이 증가하였다.

표 1-42. 태권도진흥재단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계(A)	재원별				자체수입비중 (B/A)×100(%)
		국고	기금	지방비	자체수입(B)	
2011	56,951	-	53,709	3,242	-	-
2012	95,210	-	89,517	5,366	327	0.3
2013	68,036	-	62,873	3,294	1,869	2.7
2014	23,958	-	19,439	-	4,519	18.9
2015	22,000	-	19,200	-	2,800	12.7
2016	24,066	-	21,266	-	2,800	11.6

※ 출처 : 태권도진흥재단 내부자료(2016)

6) 스포츠안전재단

가. 설립배경 및 목적

생활체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육활동 중 안전사고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체육인들이 안전하게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문 및 생활체육을 포괄하는 스포츠활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스포츠 관련 사고에 대한 공제사업 및 위로·구호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안전재단이 설립되었다.

나. 연혁

스포츠안전재단은 현재 대한체육회와 통합한 (舊)국민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2억 6천여만 원을 출연하여 2010년 7월 15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생활체육인 대상 공제(보험)사업을 주로 운영했던 재단은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정관개정을 통해 사업대상을 기존 생활체육 외 전문체육까지 확대하였으며, 사업범위는 기존 공제(보험)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시설안전 예방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조직 및 인력

사무국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운영팀은 인사, 총무, 회계업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사업팀은 대상별, 연령별 안전교육 사업 계획수립·운영 및 전문·생활체육인을 위한 공제(보험)상품 개발·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력구성은 현원 14명으로 임원 1명에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라. 주요사업

스포츠안전재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사업과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공제(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안전교육 사업은 행사운영자, 지도자, 참가자 대상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행사운영자 대상 교육은 대한체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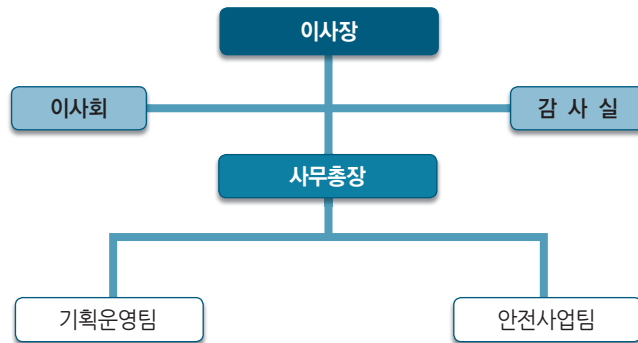


그림 1-9. 스포츠안전재단 조직도(스포츠안전재단, 2016)

회원단체(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도자는 생활·전문체육 지도자 및 심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종목별, 대상별 안전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표 1-43. 스포츠안전 교육프로그램 체계도

구 분	행사운영자	지도자	참여자
기초	스포츠안전의식 / 심폐소생술		
필수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스포츠 안전지도	스포츠안전 습관형성
		종목별 안전 특성	
심화	질환 별 응급처치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천식>		
	온도 변화에 의한 신체손상과 응급처치 <화상, 온열질환, 동상, 저체온증>		
	충격에 의한 신체손상과 응급처치 <뇌진탕, 두개골 골절, 경추/척수 손상, 복부·안구·안면 손상>		
	상처소독 및 붕대활용		
	근골격계 손상 응급처치 <골절 및 탈구, 염좌 및 근육경련, 부목고정>		
응용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고 별 대응절차		
	스포츠운영 소송사례연구		(예정) 체크리스트 작성 실무
	위험성 평가 및 관리		
특별	스포츠안전교육 지도법 / 테이핑		
	스포츠이벤트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 출처 : 스포츠안전재단 내부자료(2016)

공제(보험)사업은 생활·전문체육인 및 체육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개인 상해공제와 기관의 주최자 배상책임공제 등 11종의 공제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다(17. 5월 기준). 재단 공제상품은 민간보험사 상품운용의 한계에서 벗어나 생활·전문체육인 상해 등 종목 혹은 대상별 공제가입에 인수제한이 없다. 또한 체육시설 및 스포츠여행자 등 체육계가 요구하는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으로 공제수입을 스포츠안전 분야에 재투자하고 있다.

시설안전사업은 2014년도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2015년도 번지점프 및 하강시설 등 주요 6개 종목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업무조정을 통해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체육시설이 용 중 발생한 사고 보상을 위한 시설업자배상책임 및 재산종합공제서비스는 운영 중이다.

표 1-44. 연도별 스포츠 안전공제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입자수	659,247	761,399	905,572	1,258,214	4,042,478	8,384,886
상승률	-	15.5%	18.9%	38.9%	221.3%	107.4%

※ 출처: 스포츠안전재단 내부자료(2016)

표 1-45. 연도별 스포츠공제 가입 및 보상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가입현황		보상현황	
	건수	금액	건수(인원)	금액
2011	17,604	2,343	2,281	1,311
2012	17,446	2,279	2,155	1,158
2013	17,835	2,376	1,914	978
2014	20,793	2,566	1,674	895
2015	22,993	3,538	1,934	1,526
2016	21,090	4,885	2,399	2,075
합계	117,761	17,987	12,357	7,943

※ 출처: 스포츠안전재단 내부자료(2016)

마. 재정현황

스포츠안전재단은 2010년 7월 12억 6천만 원의 출연자산으로 설립하였다. 공제(보험) 사업 운영을 통한 자체수입은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스포츠안전교육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2016년도에는 ‘안전한 스포츠환경 구축’ 사업에 6억 원, ‘생활체육 안전교실’ 사업에 12억 원 등 총 18억 원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았다.

표 1-46. 스포츠안전재단 연도별 예산(수입)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계(A)	재원별				자체수입비중 (B/A)×100(%)
		국고	기금	적립금	자체수입(B)	
2011	2,343	-	-	-	2,343	100
2012	2,279	-	-	-	2,279	100
2013	2,376	-	-	-	2,376	100
2014	3,266	-	-	700	2,566	78.6
2015	4,388	-	850	-	3,538	80.6
2016	6,685	-	1,800	-	4,885	73.1

※ 출처 : 스포츠안전재단 내부자료(2016)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가. 설립배경 및 목적

강원도는 1993년부터 1996 동계아시아대회 유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강원도에서는 나가노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올림픽 개최지와 개최 예정도시를 방문하는 등 실무검토를 통해 평창의 자연조건과 투자여건 등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 손색 없다는 결과에 도달하였다. 1999년 2월 동계아시아대회 폐막식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표명하였다. 2000년 8월 실시한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계획 타당성 조사결과 국가적 측면과 강원도 측면에서 볼 때 동계올림픽 유치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강원도는 2000년 10월 정부 및 대한체육회에 대회유치를 신청하였다.

2002년 1월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대회유치안이 정식 승인됨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2002년 1월 2010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신청서를 IOC에 공식 제출했다. 잘츠부르크, 밴쿠버와 함께 후보도시에 선정된 평창은 IOC의 현지실사를 거쳐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11차 IOC 총회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으나, 1차 투표에서 51 대 40으로 앞섰던 밴쿠버에 결선 2차 투표에서 53 대 56으로 3표차로 탈락하였다. 강원도는 두 번째 도전을 위하여 2005년 5월 유치계획을 승인 받아 그 해 7월 IOC에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재신청하였으나 4표차로 패배함으로써 다시 한 번 탈락하였다.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이후 재도전 문제가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강원도에서는 2007년 9월 재도전을 공식 선언하였고, 2011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123차 IOC 총회에서 1차 투표결과 평창 63표, 뮌헨 25표, 안시 7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3번의 도전 끝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회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유치와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유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대회조직위원회의 출범준비는 조직위원 및 임원 인선, 대회준비 및 운영의 근간이 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준비, 조직위원회 운영근거가 될 정관을 비롯한 각종 제 규정 마련, 대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준비 등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하였으며 3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2011년 10월 창립총회를 열고 대회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나. 연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헌장 제36조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절차를 밟았으며, 2011년 11월 법인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정식 법인으로 성립되었다. 이와 함께 조직위원회 사무처 구성 절차도 추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現 행정자치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2012년 2월 1단계 직제 및 정원을 승인받았으며, 그해 3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법률 제11226호, 2012년 1월 26일 제정)에 따른 법인 인가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획득하였다. 2013년 8월에 2단계 직제 및 정원을 승인받았으며,

2014년 3월에 2단계 직제 및 정원 변경 승인을 받았고, 2015년 6월에 3단계 직제 및 정원 승인을 받았다.

다. 조직 및 인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위원총회와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사무총장, 1부위원장, 3사무차장, 16국, 6담당관, 52부, 162팀, 15종목 담당)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 직속으로 비서실, 대변인이 있으며, 사무총장 직속으로 개최도시 협력관, 안전관이 있으며, 산하에 기획사무차장(CFO, 패럴림픽 담당관, 대회조정관), 운영사무차장(테스트이벤트 담당관, 베뉴운영국, 경기국, 미디어운영국), 시설사무차장(선수촌 담당관, 환경 담당관, 시설국, 숙박국, 수송교통국, 정보통신국)이 있고, 국제부위원장 산하에 국제국이 있다.

인력현황은 현원 858명이며, 사무총장 1명, 국제 부위원장 1명, 사무차장 3명, 국장 14명, 담당관 6명, 부장 47명, 팀장 153명, 종목담당 15명, 팀원 6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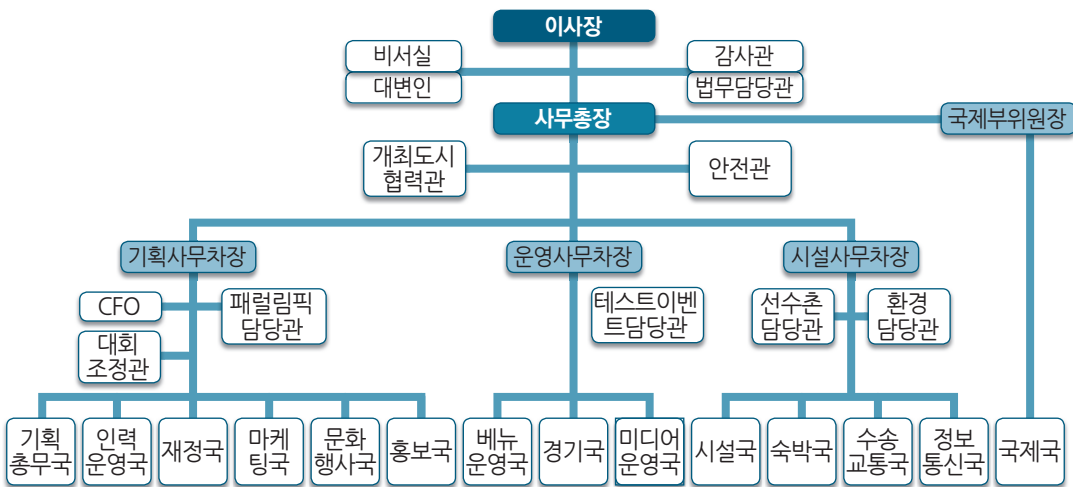


그림 1-10. 2018 평창 조직위원회 조직도(2018 평창 조직위원회, 2016)

표 1-47. 2018 평창 조직위원회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무 총장	국제 부위원장	사무 차장	국장	담당관	부장	팀장	종목 담당	팀원
정원	876	1	1	3	16	6	52	162	15	620
현원	858	1	1	3	14	6	47	153	15	618

※ 출처: 평창 조직위원회 내부자료(2016)

라. 주요사업

조직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대회의 준비·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대회종합계획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과 집행, 경기장시설, 지원시설, 숙박시설 등 대회관련 시설의 확보·운영,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마. 재정현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11년 설립된 이래 대회가 가까워짐에 따라 매년 운영예산이 증가하여 2016년도 예산은 3,975억 원으로 2015년도 대비 53.34%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후원사와의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자체수입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1-48. 2018 평창 조직위원회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계(A)	재원별				자체수입비중 (B/A)×100(%)
		국고	기금	지방비	자체수입(B)	
2011	2,071	-	-	-	2,071	100.0
2012	11,834	1,000	-	-	10,834	91.5
2013	31,872	1,800	15,795	1,750	12,527	39.3
2014	58,303	1,650	1,647	2,600	52,406	89.9
2015	185,497	3,122	11,472	2,600	168,303	90.7
2016	397,548	36,300	37,644	23,700	299,904	75.4

※ 주: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증량발행수익금 배분액 과 옥외광고수익금 배분액 으로 구성

※ 출처: 평창 조직위원회 내부자료(2016)

제3절 체육진흥자원

1.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은 크게 중앙정부의 국고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등 민간체육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체재원 등으로 구성된다.

체육진흥재원의 규모는 2008년 3조 1,303억 원, 2009년 3조 4,090억 원, 2010년 3조 5,344억 원, 2011년 3조 5,938억 원, 2012년 3조 9,423억 원, 2013년 4조 5,836억 원, 2014년 4조 8,290억 원, 2015년 5조 1,458억 원, 2016년 5조 5,377억 원이다. 2016년도 체육재정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비가 3조 6,695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이 1조 3000억 원, 체육단체 자체수입이 4,327억 원, 국고가 1,357억 원 순이었다. 구체적인 체육진흥재원의 구성은 <표 1-49>와 같다.

표 1-49.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단위: 억 원)

연도	국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비	체육단체	합계
2008	2,343	2,578	24,808	1,574	31,303
2009	2,135	3,860	25,949	2,146	34,090
2010	1,529	5,295	26,193	2,327	35,344
2011	1,559	6,568	25,677	2,134	35,938
2012	1,516	7,251	28,198	2,365	39,330
2013	1,717	8,799	32,130	2,724	45,836
2014	1,488	8,951	35,527	2,045	48,290
2015	1,344	11,605	34,819	3,690	51,458
2016	1,357	13,000	36,695	4,327	55,379

1. 국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예산
2.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사업만 작성
3. 지방비: 시도 및 시·군·구 일반회계 최종예산
4. 체육단체: 대한체육회,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자체수입 예산, 대한장애인체육회 자체수입 예산,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스포츠안전재단, 태권도진흥재단, 평창조직위원회 자체수입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16)

2.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중앙정부의 2016년 체육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생활체육과 국제교류 분야는 증가하였으며, 스포츠산업은 감소하였다. 국고예산 총계는 2008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43억 원이 감소하였다. 그 후 2013년에 2012년 대비 약 200억이 증가하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약 144억이 감소하였다.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생활체육 분야 중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비가 15억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체육진흥시설지원 중 지방체육시설 지원은 82억 감소한데 반해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이 57억,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지원이 29억,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이 12억 증가하였다. 체육분야별 국고예산 현황은 <표 1-50>과 같다.

표 1-50. 체육분야별 국고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생활체육	17,649	12,863	93,896	96,547	89,248	104,227	146,491	132,976	134,357
전문체육	193,058	177,563	42,404	43,128	40,845	47,131	-	-	-
국제교류	12,998	7,970	7,609	7,126	9,802	10,316	1,011	876	886
스포츠산업	6,262	8,269	3,244	3,444	3,759	3,496	985	200	190
장애인체육	4,110	6,610	5,550	5,401	7,747	6,307	110	110	110
기타	263	244	226	220	214	205	241	245	233
합계	234,340	213,519	152,929	155,866	151,615	171,682	148,838	134,407	135,776

※ 주: 기타는 체육국의 기본사업비

※ 출처: 2016년도 체육예산기금사업현황(2016)

정부예산에서 체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0.13%, 2009년 0.11%, 2010년 0.0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0.7%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4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14년에는 0.06%, 2015년에는 0.05%를 차지하였으며, 2016년에는 0.05%로 2015년과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51. 정부예산대비 체육예산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정부예산(A)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부문	
		예산(B)	점유율(B/A, %)	예산(C)	점유율(C/A, %)
2008	1,782,797	15,136	0.85	2,343	0.13
2009	2,041,000	16,579	0.81	2,135	0.11
2010	2,053,312	18,166	0.88	1,529	0.07
2011	2,099,303	19,603	0.93	1,559	0.07
2012	2,231,384	20,933	0.94	1,514	0.07
2013	2,436,433	22,706	0.94	1,715	0.07
2014	2,507,885	23,258	0.93	1,488	0.06
2015	2,585,856	25,546	0.99	1,344	0.05
2016	2,683,871	27,697	1.03	1,357	0.05

※ 주 : 동 표는 당초 예산만 해당

※ 출처 : 201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2016),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16)

3.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국고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기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부세·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되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30~50%인 국고 보조율에 따라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증가는 지방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면서 지방행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교실 등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이 증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도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예산 262조 4,928억 원 중 3조 6,747억 원으로 1.40%로 나타났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예산을 보면 경기도가 7,753억 원인 것에 반해 세종특별자치시는 186억 원으로 경기도의 약 2.4%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편차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서도 마찬

가지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 재정상황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으나, 체육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의 건설 여부에 따른 차이로 파악된다.

표 1-52.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 원)

자치단체명	2016년도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서울특별시	46,966,862	325,505	0.69	46,067,202	316,351	0.69
부산광역시	13,295,341	123,548	0.93	12,462,394	132,252	1.06
대구광역시	8,940,830	156,008	1.74	8,811,723	146,759	1.67
인천광역시	10,572,849	93,336	0.88	10,535,234	92,058	0.87
광주광역시	6,265,829	89,818	1.43	5,887,717	82,338	1.40
대전광역시	5,280,757	115,801	2.19	5,010,508	97,552	1.95
울산광역시	5,682,861	103,809	1.83	5,477,730	115,254	2.10
세종특별자치시	1,428,760	18,686	1.31	1,412,783	22,474	1.59
경기도	47,939,803	775,351	1.62	46,695,305	657,425	1.41
강원도	13,306,088	279,071	2.10	12,934,021	266,174	2.06
충청북도	11,292,915	300,748	2.66	10,450,002	218,390	2.09
충청남도	15,762,175	239,557	1.52	14,249,177	220,480	1.55
전라북도	13,953,279	163,865	1.17	13,079,742	147,167	1.13
전라남도	15,219,716	186,563	1.23	16,090,128	204,672	1.27
경상북도	21,129,349	333,415	1.58	20,175,221	300,620	1.49
경상남도	20,872,278	286,117	1.39	18,638,020	264,136	1.42
제주특별자치도	4,583,126	78,354	1.71	4,702,075	61,473	1.31
합계	262,492,818	3,669,552	점유율 1.40	252,678,982	3,345,575	점유율 1.32

※ 주 : 2016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 주 :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당초예산

※ 주 : 기초자치단체 예산 포함한 금액임.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예산)

※ 주 :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항목 부재.

※ 출처 : 각 지방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16)

표 1-53.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

(단위: 백만 원)

자치단체명	2016년도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 × 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 × 100(%)
서울특별시	34,615,317	154,560	0.45	33,710,681	153,908	0.46
부산광역시	8,092,040	80,430	0.99	7,746,803	96,144	1.24
대구광역시	5,312,000	115,011	2.17	5,323,100	96,338	1.81
인천광역시	6,125,401	50,221	0.82	6,301,734	47,158	0.75
광주광역시	4,253,790	69,396	1.63	4,039,754	67,142	1.66
대전광역시	3,229,408	94,049	2.91	2,997,198	80,133	2.67
울산광역시	3,855,880	49,059	1.27	3,247,105	61,683	1.90
세종특별자치시	1,428,760	18,686	1.31	1,412,783	22,474	1.59
경기도	17,979,979	94,588	0.53	19,162,780	79,456	0.41
강원도	5,130,320	72,734	1.42	5,294,629	81,403	1.54
충청북도	4,835,281	97,344	2.01	4,323,585	87,846	2.03
충청남도	6,715,900	48,896	0.73	5,172,467	45,844	0.89
전라북도	5,734,406	53,870	0.94	5,158,525	40,316	0.78
전라남도	5,555,583	46,957	0.85	5,711,221	42,537	0.74
경상북도	7,262,215	61,643	0.85	6,751,100	58,326	0.86
경상남도	8,300,430	58,432	0.70	6,957,854	61,421	0.88
제주특별자치도	2,804,726	42,165	1.50	2,872,182	33,910	1.18
합계	131,231,436	1,208,041	점유율 0.92	126,183,501	1,156,039	점유율 0.92

※ 주 : 2016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 주 :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당초예산
 ※ 주 : 광역자치단체 예산만 계산(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제외)
 ※ 출처 : 각 광역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16)

표 1-54. 기초자치단체별 체육예산

(단위: 백만 원)

자치단체명		2016년도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 × 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 × 100(%)
서울 (25)	종로구	351,879	9,309	2.65	299,385	8,436	2.82
	중구	370,608	12,195	3.29	337,994	9,825	2.91
	용산구	331,321	2,613	0.79	355,534	2,737	0.77
	성동구	389,669	9,053	2.32	410,633	9,245	2.25
	광진구	383,580	5,937	1.55	400,640	8,301	2.07
	동대문구	498,500	6,388	1.28	457,100	8,053	1.76

자치단체명	2016년도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서울 (25)	중랑구	513,536	7,537	1.47	500,366	6,913	1.38
	성북구	659,844	11,110	1.68	560,466	5,855	1.04
	강북구	555,087	3,223	0.58	540,875	3,526	0.65
	도봉구	399,831	1,366	0.34	434,417	1,568	0.36
	노원구	703,582	7,669	1.09	668,991	14,217	2.13
	은평구	585,788	5,877	1.00	604,498	5,944	0.98
	서대문구	390,398	1,792	0.46	420,435	2,605	0.62
	마포구	498,354	4,005	0.80	530,655	4,649	0.88
	양천구	466,089	11,263	2.42	498,090	11,489	2.31
	강서구	624,022	7,272	1.17	688,074	8,433	1.23
	구로구	457,248	6,815	1.49	492,310	6,205	1.26
	금천구	389,839	13,812	3.54	361,111	6,866	1.90
	영등포구	456,508	7,075	1.55	471,238	7,347	1.56
	동작구	521,333	5,262	1.01	451,118	1,272	0.28
	관악구	545,312	5,354	0.98	538,500	5,877	1.09
	서초구	478,449	1,928	0.40	557,618	2,003	0.36
	강남구	668,585	7,122	1.07	676,410	7,022	1.04
	송파구	577,004	5,776	1.00	607,580	6,238	1.03
	강동구	535,179	11,192	2.09	492,483	7,817	1.59
	소계	12,351,545	170,945	1.38	12,356,521	162,443	1.31
부산 (16)	중구	167,201	823	0.49	166,467	807	0.48
	서구	263,876	1,343	0.51	213,601	782	0.37
	동구	232,912	5,265	2.26	232,246	3,846	1.66
	영도구	261,354	928	0.36	269,966	970	0.36
	부산진구	455,570	5,717	1.25	410,546	1,695	0.41
	동래구	326,822	789	0.24	270,732	718	0.27
	남구	363,888	3,774	1.04	258,539	2,998	1.16
	북구	324,546	1,305	0.40	347,732	1,493	0.43
	해운대구	513,832	2,274	0.44	457,307	1,910	0.42
	사하구	457,328	2,195	0.48	386,820	2,226	0.58
	금정구	339,721	4,422	1.30	301,647	3,712	1.23
	강서구	279,810	1,473	0.53	232,417	1,182	0.51
	연제구	298,968	2,793	0.93	245,225	2,379	0.97
	수영구	208,579	1,074	0.51	224,583	1,109	0.49
	사상구	292,030	1,104	0.38	297,684	1,469	0.49

자치단체명	2016년도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기 장 군	416,864	7,839	1.88	400,079	8,812	2.20	
	소 계	5,203,301	43118	0.83	4,715,591	36108	0.77
대구 (8)	중 구	262,849	816	0.31	201,237	860	0.43
	동 구	525,400	1,951	0.37	490,700	2,919	0.59
	서 구	321,450	4,024	1.25	296,300	1,802	0.61
	남 구	316,600	10,759	3.40	280,500	1,603	0.57
	북 구	463,800	2,201	0.47	485,500	3,635	0.75
	수 성 구	558,586	3,539	0.63	481,986	2,728	0.57
	달 서 구	640,145	5,561	0.87	605,400	4,152	0.69
	달 성 군	540,000	12,146	2.25	647,000	32,722	5.06
	소 계	3,628,830	40,997	1.13	3,488,623	50,421	1.45
	중 구	349,425	2,394	0.69	258,811	1,829	0.71
인천 (10)	동 구	180,116	1,555	0.86	203,804	1,987	0.97
	남 구	546,783	6,483	1.19	499,160	7,967	1.60
	연 수 구	456,722	2,632	0.58	437,749	3,317	0.76
	남 동 구	564,395	9,664	1.71	640,180	7,481	1.17
	부 평 구	582,981	5,065	0.87	596,451	4,180	0.70
	계 양 구	415,746	2,521	0.61	373,581	2,725	0.73
	서 구	632,195	3,267	0.52	572,299	3,874	0.68
	강 화 군	367,256	5,678	1.55	389,086	8,123	2.09
	웅 진 군	351,829	3,856	1.10	262,379	3,417	1.30
	소 계	4,447,448	43,115	0.97	4,233,500	44,900	1.06
광주 (5)	동 구	249,631	4,538	1.82	198,021	708	0.36
	서 구	357,649	2,544	0.71	368,398	2,601	0.71
	남 구	347,042	3,833	1.10	285,300	1,420	0.50
	북 구	557,915	2,948	0.53	492,969	2,450	0.50
	광 산 구	499,802	6,559	1.31	503,275	8,017	1.59
	소 계	2,012,039	20,422	1.01	1,847,963	15,196	0.82
대전 (5)	동 구	387,413	1,190	0.31	364,531	1,073	0.29
	중 구	365,950	1,730	0.47	380,777	1,797	0.47
	서 구	526,848	13,865	2.63	558,442	5,139	0.92
	유 성 구	441,224	3,358	0.76	404,183	7,244	1.79
	대 덕 구	329,914	1,609	0.49	305,377	2,166	0.71
	소 계	2,051,349	21,752	1.06	2,013,310	17,419	0.87
울산	중 구	273,079	2,991	1.10	293,202	3,363	1.15

자치단체명	2016년도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울산 (5)	남 구	348,953	9,979	2.86	389,121	7,759	1.99
	동 구	240,289	5,119	2.13	235,358	4,056	1.72
	북 구	245,233	9,168	3.74	260,367	10,086	3.87
	울 주 군	719,427	27,493	3.82	1,052,577	28,307	2.69
	소 계	1,826,981	54,750	3.00	2,230,625	53,571	2.40
경기 (31)	수 원 시	2,267,213	73,279	3.23	2,405,405	49,855	2.07
	고 양 시	1,657,328	15,220	0.92	1,392,564	10,243	0.74
	성 남 시	2,333,635	48,522	2.08	2,625,068	51,360	1.96
	용 인 시	1,881,559	69,213	3.68	1,550,163	73,360	4.73
	부 천 시	2,015,777	51,953	2.58	1,461,570	44,164	3.02
	안 산 시	1,782,824	18,591	1.04	1,813,338	16,416	0.91
	남양주시	1,392,823	36,680	2.63	1,198,089	34,128	2.85
	안 양 시	1,285,883	29,006	2.26	1,092,500	27,929	2.56
	화 성 시	1,989,721	81,535	4.10	1,681,266	33,603	2.00
	평 택 시	910,089	14,861	1.63	1,002,974	15,383	1.53
	의정부시	702,656	8,445	1.20	643,953	9,570	1.49
	시 흥 시	731,753	21,828	2.98	802,138	45,282	5.65
	파 주 시	882,137	14,057	1.59	1,001,995	11,663	1.16
	김 포 시	1,442,441	9,253	0.64	1,084,798	10,540	0.97
	광 명 시	771,986	8,479	1.10	748,100	10,272	1.37
	광 주 시	706,292	24,837	3.52	587,346	12,262	2.09
	군 포 시	507,712	15,122	2.98	444,770	13,409	3.01
	오 산 시	387,294	5,479	1.41	397,609	6,639	1.67
	이 천 시	914,901	13,185	1.44	656,887	8,313	1.27
	양 주 시	560,666	18,563	3.31	625,468	17,837	2.85
	안 성 시	537,785	6,549	1.22	468,407	15,732	3.36
	구 리 시	341,909	6,490	1.90	325,413	6,467	1.99
	포 천 시	629,020	10,732	1.71	407,954	5,993	1.47
	의 왕 시	309,611	4,978	1.61	368,033	8,014	2.18
	하 남 시	504,867	12,424	2.46	513,526	11,365	0.00
	여 주 시	622,032	13,201	2.12	475,563	7,117	1.50
	동두천시	467,788	3,405	0.73	408,038	2,311	0.57
	과 천 시	254,722	3,895	1.53	206,232	5,686	2.76
양 평 군	390,065	24,174	6.20	407,189	5,779	1.42	
가 평 군	373,861	12,535	3.35	309,474	14,297	4.62	

자치단체명	2016년도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연천군	403,474	4,272	1.06	426,695	4,334	1.02	
	소 계	29,959,824	680,763	2.27	27,532,525	577,969	2.10
강원 (18)	춘천시	974,886	11,834	1.21	973,646	11,712	1.20
	원주시	1,269,599	11,986	0.94	964,887	9,746	1.01
	강릉시	650,654	13,674	2.10	758,451	13,057	1.72
	동해시	386,007	7,876	2.04	312,899	7,347	2.35
	태백시	391,613	15,569	3.98	303,304	13,343	4.40
	속초시	259,545	4,409	1.70	285,470	4,007	1.40
	삼척시	522,550	16,252	3.11	458,086	21,619	4.72
	홍천군	536,894	27,848	5.19	426,196	12,573	2.95
	횡성군	330,683	10,099	3.05	303,207	14,740	4.86
	영월군	357,349	9,242	2.59	350,083	8,608	2.46
	평창군	453,392	13,701	3.02	463,509	9,533	2.06
	정선군	387,230	8,724	2.25	324,999	6,628	2.04
	철원군	305,349	6,936	2.27	329,063	7,982	2.43
	화천군	255,635	8,713	3.41	260,408	10,631	4.08
	양구군	275,778	8,322	3.02	299,002	11,224	3.75
	인제군	268,499	10,711	3.99	287,136	11,231	3.91
	고성군	278,198	6,014	2.16	257,339	4,908	1.91
	양양군	271,907	14,427	5.31	281,707	5,882	2.09
소 계	8,175,768	206,337	2.52	7,639,392	184,771	2.42	
충북 (11)	청주시	2,189,748	41,448	1.89	2,031,072	19,902	0.98
	충주시	822,230	57,385	6.98	712,427	39,157	5.50
	제천시	707,531	23,511	3.32	638,654	10,113	1.58
	옥천군	415,087	7,876	1.90	360,615	5,151	1.43
	증평군	193,097	9,293	4.81	192,144	3,494	1.82
	괴산군	353,589	3,431	0.97	351,865	4,275	1.21
	음성군	380,400	8,808	2.32	464,200	10,691	2.30
	단양군	325,288	11,372	3.50	274,136	8,908	3.25
	진천군	409,705	13,118	3.20	412,774	11,215	2.72
	보은군	259,897	16,793	6.46	320,390	10,744	3.35
	영동군	401,062	10,369	2.59	368,140	6,894	1.87
소 계	6,457,634	203,404	3.15	6,126,417	130,544	2.13	
충남 (15)	천안시	1,660,000	36,413	2.19	1,730,000	29,433	1.70
	공주시	614,172	6,044	0.98	556,000	6,997	1.26
	보령시	726,793	17,127	2.36	609,600	14,697	2.41

자치단체명	2016년도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충남 (15)	아산시	738,000	33,336	4.52	859,500	21,134	2.46
	서산시	658,256	11,570	1.76	724,141	15,737	2.17
	논산시	522,891	4,496	0.86	603,917	4,692	0.78
	계룡시	181,058	3,226	1.78	163,453	6,381	3.90
	당진시	895,534	12,974	1.45	821,092	18,621	2.27
	금산군	304,358	7,087	2.33	309,416	9,553	3.09
	부여군	531,700	8,449	1.59	555,051	8,368	1.51
	서천군	355,323	6,310	1.78	364,283	7,135	1.96
	청양군	326,330	5,298	1.62	340,091	8,527	2.51
	홍성군	525,522	11,612	2.21	506,380	7,394	1.46
	예산군	542,991	18,221	3.36	480,890	7,616	1.58
	태안군	463,347	8,498	1.83	452,896	8,351	1.84
	소계	9,046,275	190,661	2.11	9,076,710	174,636	1.92
전북 (14)	전주시	1,485,100	24,604	1.66	1,429,726	19,503	1.36
	군산시	799,576	14,159	1.77	780,448	13,515	1.73
	익산시	902,967	5,908	0.65	860,969	6,574	0.76
	정읍시	563,961	6,343	1.12	612,462	5,678	0.93
	남원시	567,765	5,616	0.99	518,549	6,397	1.23
	김제시	633,400	3,878	0.61	605,910	3,260	0.54
	완주군	602,152	13,990	2.32	580,496	16,150	2.78
	진안군	361,008	6,314	1.75	345,791	5,589	1.62
	무주군	335,965	3,436	1.02	300,733	2,931	0.97
	장수군	332,048	5,267	1.59	276,644	4,081	1.48
	임실군	347,744	3,052	0.88	330,228	2,954	0.89
	순창군	338,435	6,783	2.00	302,558	7,159	2.37
	고창군	506,863	6,688	1.32	492,825	8,049	1.63
	부안군	441,889	3,957	0.90	483,878	5,011	1.04
소계	8,218,873	109,995	1.34	7,921,217	106,851	1.35	
전남 (22)	목포시	537,949	8,615	1.60	652,913	9,197	1.41
	여수시	885,795	16,677	1.88	932,675	17,955	1.93
	순천시	904,433	22,214	2.46	1,010,235	5,162	0.51
	나주시	561,828	6,919	1.23	649,622	7,649	1.18
	광양시	739,309	10,776	1.46	757,500	13,414	1.77
	담양군	302,503	7,714	2.55	306,485	11,773	3.84
	곡성군	314,141	2,461	0.78	339,703	3,329	0.98
구례군	225,293	3,707	1.65	232,431	3,759	1.62	

110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자치단체명	2016년도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전남 (22)	고흥군	460,512	3,527	0.77	486,387	3,393	0.70
	보성군	445,153	7,541	1.69	481,859	11,513	2.39
	화순군	370,200	3,048	0.82	379,905	5,228	1.38
	장흥군	327,019	1,927	0.59	379,905	5,228	1.38
	강진군	280,063	3,709	1.32	303,044	5,473	1.81
	해남군	448,447	11,277	2.51	463,028	13,657	2.95
	영암군	352,277	6,209	1.76	367,404	13,527	3.68
	무안군	386,473	2,846	0.74	386,895	5,048	1.30
	함평군	321,982	2,676	0.83	328,475	3,067	0.93
	영광군	367,109	6,075	1.65	373,804	5,975	1.60
	장성군	337,032	1,694	0.50	336,006	7,086	2.11
	완도군	342,297	3,557	1.04	427,612	6,540	1.53
	진도군	345,000	4,469	1.30	364,300	2,110	0.58
	신안군	409,318	1,968	0.48	418,719	2,052	0.49
	소계	9,664,133	139,606	1.44	10,378,907	162,135	1.56
경북 (23)	포항시	1,584,200	29,580	1.87	1,573,600	28,751	1.83
	경주시	1,363,000	26,590	1.95	1,146,000	16,998	1.48
	김천시	924,000	12,361	1.34	871,000	15,828	1.82
	안동시	888,400	14,640	1.65	910,170	14,211	1.56
	구미시	1,184,300	25,222	2.13	1,057,300	24,320	2.30
	영주시	562,600	14,201	2.52	518,000	11,269	2.18
	영천시	637,287	6,102	0.96	644,418	7,848	1.22
	상주시	628,450	11,364	1.81	600,000	13,633	2.27
	문경시	534,300	13,291	2.49	567,300	9,257	1.63
	경산시	734,200	10,621	1.45	836,600	10,758	1.29
	군위군	312,087	12,175	3.90	313,515	7,732	2.47
	의성군	480,000	4,266	0.89	500,000	4,415	0.88
	청송군	330,451	7,024	2.13	304,479	4,408	1.45
	영양군	282,000	3,243	1.15	239,700	3,343	1.39
	영덕군	341,287	10,616	3.11	370,225	7,829	2.11
	청도군	317,311	1,512	0.48	300,000	1,604	0.53
	고령군	285,823	2,607	0.91	262,115	2,682	1.02
	성주군	391,000	4,161	1.06	378,000	7,126	1.89
	칠곡군	417,900	5,999	1.44	398,000	4,945	1.24
	예천군	365,525	7,615	2.08	374,541	12,600	3.36
봉화군	372,915	3,568	0.96	389,248	3,598	0.92	

자치단체명	2016년도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울진군	777,898	43,688	5.62	715,910	27,029	3.78	
	152,200	1,326	0.87	154,000	2,110	1.37	
	13,867,134	271,772	1.96	13,424,121	242,294	1.80	
경남 (18)	창원시	2,955,457	81,447	2.76	2,510,737	57,108	2.27
	진주시	1,039,368	6,473	0.62	1,080,084	7,490	0.69
	통영시	554,539	10,237	1.85	450,876	8,426	1.87
	사천시	525,272	8,802	1.68	473,002	7,743	1.64
	김해시	1,209,356	14,443	1.19	1,117,581	17,050	1.53
	밀양시	678,366	13,864	2.04	588,252	9,424	1.60
	거제시	681,538	13,288	1.95	639,714	11,666	1.82
	양산시	896,554	15,333	1.71	885,081	8,629	0.97
	의령군	298,049	5,043	1.69	272,607	1,974	0.72
	함안군	384,096	4,519	1.18	388,596	3,162	0.81
	창녕군	414,593	14,892	3.59	441,721	26,830	6.07
	고성군	371,841	6,055	1.63	381,861	6,722	1.76
	남해군	389,654	5,919	1.52	378,677	5,846	1.54
	하동군	417,958	10,449	2.50	385,118	7,766	2.02
	산청군	393,010	4,961	1.26	352,898	5,387	1.53
	함양군	324,338	4,221	1.30	385,075	6,302	1.64
	거창군	496,609	3,804	0.77	471,774	5,596	1.19
	합천군	541,250	3,935	0.73	476,512	4,249	0.89
소계	12,571,848	227,685	1.85	11,680,166	202,715	1.74	
제주 (2)	제주시	1,095,733	23,831	2.17	1,044,253	12,924	1.24
	서귀포시	682,667	12,358	1.81	785,640	14,639	1.86
	소계	1,778,400	36,189	2.03	1,829,893	27,563	1.51

※ 주 : 2016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 주 :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당초예산

※ 주 :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항목 부재.

※ 출처 : 각 기초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16)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은 <표 1-55>와 같이 총 3조 6,695억 원 중 체육시설이 1조 7,60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체육(4,643억 원),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4,042억 원), 생활체육(4,000억 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3,260억 원), 기타(2,239억 원), 장애인체육(742억 원), 국제교류(6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5.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 원)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체육시설(전문, 생활)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¹⁾
서울특별시	32,469	14,312	7,645	95	106,416	133,312	21,001	10,255	325,505
부산광역시	17,188	25,745	2,724	30	39,346	18,232	11,565	7,938	123,548
대구광역시	12,577	16,454	3,222	0	88,141	13,441	12,191	5,076	156,008
인천광역시	17,549	16,458	2,424	5	25,807	6,637	14,781	7,154	93,336
광주광역시	15,588	10,967	3,311	0	29,725	6,707	5,323	17,997	89,818
대전광역시	10,724	16,038	3,420	0	46,705	24,958	3,333	10,585	115,801
울산광역시	11,264	10,324	2,753	123	39,677	30,416	8,703	103	103,809
세종특별자치시	1,052	3,490	802	0	11,430	500	1,412	0	18,686
경기도	76,122	89,509	12,647	834	357,375	111,453	79,355	47,986	775,351
강원도	35,166	49,557	4,626	2115	140,811	7,998	23,177	15,440	279,071
충청북도	20,464	24,950	4,798	40	216,100	678	24,987	8,691	300,748
충청남도	20,758	28,637	6,499	0	115,342	9,562	27,160	31,545	239,557
전라북도	27,577	20,128	4,340	810	91,610	1,271	13,751	4,378	163,865
전라남도	27,130	29,521	4,815	529	97,291	1,494	17,830	7,954	186,563
경상북도	41,267	56,304	4,321	1519	170,886	9,642	30,953	18,523	333,415
경상남도	28,069	44,330	3,034	108	148,644	27,623	22,846	11,443	286,117
제주특별자치도	5,128	7,618	2,903	55	35,096	502	7,709	18,900	78,354
합계	400,092	464,342	74,284	6,263	1,760,402	404,426	326,077	223,968	3,669,552

1. 2016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체육분야 최종예산

※ 주: 기초자치단체 예산 포함한 금액(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예산)

※ 주: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항목 부재.

※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16)

표 1-56. 광역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 원)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체육시설(전문, 생활)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¹⁾
서울특별시	17,727	13,203	7,126	-	77,657	18,858	15,957	4,032	154,560
부산광역시	6,938	20,070	2,722	781	16,785	18,092	7,555	7,487	80,430
대구광역시	5,871	16,454	2,821	4,906	60,160	11,323	8,400	5,076	115,011
인천광역시	4,539	15,926	2,269	2,521	9,921	-	8,332	6,713	50,221
광주광역시	11,180	10,967	3,232	200	17,455	4,787	3,578	17,997	69,396
대전광역시	6,294	15,865	3,250	38	32,800	23,265	2,357	10,180	94,049
울산광역시	4,236	10,271	2,688	446	5,126	22,239	3,950	103	49,059
세종특별자치시	1,052	3,490	802	-	11,430	500	1,412	-	18,686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체육시설(전문, 생활)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 경기부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¹⁾
경기도	15,695	15,476	5,478	70	48,885	4,414	4,488	82	94,588
강원도	5,817	20,941	3,521	181	32,982	1,410	7,173	709	72,734
충청북도	5,072	8,235	3,679	40	71,498	179	3,347	5,294	97,344
충청남도	5,465	10,159	2,886	54	20,052	-	10,230	50	48,896
전라북도	8,671	15,149	2,488	-	21,926	245	3,130	2,261	53,870
전라남도	2,585	9,199	2,527	-	29,269	650	2,727	-	46,957
경상북도	7,288	17,340	3,039	-	27,265	-	6,600	111	61,643
경상남도	6,158	14,889	2,308	20	25,381	-	3,756	5,920	58,432
제주특별자치도	2,984	4,657	2,903	443	12,238	337	4,988	13,615	42,165
합계	117,572	222,291	53,739	9,700	520,830	106,299	97,980	79,630	1,208,041

1. 2016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체육분야 최종예산

* 출처 : 각 광역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16)

표 1-57. 기초자치단체별 분야별 체육예산

(단위: 백만 원)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체육시설(전문, 생활)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 경기부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¹⁾	
서울(25)	종로구	600	-	35	-	2,273	6,129	272	-	9,309
	중구	499	-	10	20	2,583	8,561	478	44	12,195
	용산구	781	-	-	-	103	1,729	-	-	2,613
	성동구	668	161	-	-	-	8,224	-	-	9,053
	광진구	427	-	2	-	920	4,308	280	-	5,937
	동대문구	684	111	39	-	243	5,311	-	-	6,388
	중랑구	387	15	-	-	147	6,988	-	-	7,537
	성북구	600	-	27	-	994	3,986	444	5,059	11,110
	강북구	579	22	14	-	195	2,413	-	-	3,223
	도봉구	659	-	24	-	384	-	299	-	1,366
	노원구	992	-	80	-	2,729	3,606	262	-	7,669
	은평구	525	-	25	-	2,150	2,471	559	147	5,877
	서대문구	208	-	5	38	34	1,507	-	-	1,792
	마포구	655	21	22	27	765	2,381	-	134	4,005
	양천구	620	16	-	10	1,122	9,495	-	-	11,263
	강서구	670	-	-	-	144	6,458	-	-	7,272
	구로구	553	-	-	-	429	5,323	510	-	6,815
	금천구	331	-	1	-	10,441	2,846	90	103	13,812
	영등포구	494	-	22	-	332	6,227	-	-	7,075

114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체육시설(전문, 생활)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 경기부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¹⁾
서울 (25)	동작구	792	-	45	-	627	3,258	525	15	5,262
	관악구	160	-	9	-	206	4,850	-	129	5,354
	서초구	846	-	-	-	557	525	-	-	1,928
	강남구	770	763	53	-	302	4,726	508	-	7,122
	송파구	677	-	103	-	90	3,881	433	592	5,776
	강동구	565	-	3	-	989	9,251	384	-	11,192
	소계	14,742	1,109	519	95	28,759	114,454	5,044	6,223	170,945
부산 (16)	중구	281	-	-	-	481	-	49	12	823
	서구	513	-	-	-	528	50	252	-	1,343
	동구	504	-	-	-	4,652	-	109	-	5,265
	영도구	355	-	-	-	307	-	266	-	928
	부산진구	869	-	-	-	4,769	-	79	-	5,717
	동래구	405	-	-	-	154	-	230	-	789
	남구	485	-	-	-	2,835	-	453	1	3,774
	북구	437	-	-	-	242	-	329	297	1,305
	해운대구	845	-	-	30	1,037	-	362	-	2,274
	사하구	676	-	-	-	1,069	-	450	-	2,195
	금정구	572	-	-	-	3,618	-	232	-	4,422
	강서구	458	-	-	-	616	87	312	-	1,473
	연제구	901	-	-	-	1,621	-	271	-	2,793
	수영구	461	-	-	-	232	-	381	-	1,074
	사상구	324.1	-	1.5	-	399.9	2.5	235.3	140.7	1,104
	기장군	2,164	5,675	-	-	-	-	-	-	7,839
소계	10,250.1	5,675	1.5	30	22,560.9	139.5	4,010.3	450.7	43,118	
대구 (8)	중구	406	-	-	-	25	-	385	-	816
	동구	673	-	-	-	897	43	338	-	1,951
	서구	467	-	-	-	3,191	-	366	-	4,024
	남구	568	-	-	-	9,945	-	246	-	10,759
	북구	723	-	-	-	1,020	-	458	-	2,201
	수성구	738	-	-	-	2,197	-	604	-	3,539
	달서구	1,961	-	33	-	3,043	-	524	-	5,561
	달성군	1,170	-	368	-	7,663	2,075	870	-	12,146
	소계	6,706	0	401	0	27,981	2,118	3,791	0	40,997
인천 (10)	중구	566	-	11	5	472	653	687	-	2,394
	동구	338	-	5	-	560	-	605	47	1,555
	남구	5,195	-	14	-	483	-	774	17	6,483
	연수구	1,018	70	14	-	532	2	989	7	2,632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체육시설(전문, 생활)	공공체육시설위탁관리비	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¹⁾	
인천 (10)	남동구	918	153	34	-	6,491	1,394	674	-	9,664
	부평구	869	2	12	-	573	2,962	551	96	5,065
	계양구	617	31	5	-	798	410	660	-	2,521
	서구	588	40	60	-	627	1,216	462	274	3,267
	강화군	567	236	-	-	4,213	-	662	-	5,678
	옹진군	2,334	-	-	-	1,137	-	385	-	3,856
	소계	13,010	532	155	5	15,886	6,637	6,449	441	43,115
광주 (5)	동구	638	-	2	-	3,898	-	-	-	4,538
	서구	1,320	-	-	-	1,224	-	-	-	2,544
	남구	561	-	3	-	2,601	-	668	-	3,833
	북구	748	-	74	-	1,463	20	643	-	2,948
	광산구	1,141	-	-	-	3,084	1,900	434	-	6,559
	소계	4,408	0	79	0	12,270	1,920	1,745	0	20,422
대전 (5)	동구	735	3	-	-	240	157	-	55	1,190
	중구	776	15	4	-	585	-	-	350	1,730
	서구	1,185	7	159	-	10,923	1,157	434	-	13,865
	유성구	853	148	-	-	1,436	379	542	0	3,358
	대덕구	881	-	7	-	721	-	-	-	1,609
	소계	4,430	173	170	0	13,905	1,693	976	405	21,752
울산 (5)	중구	1,375	-	60	-	664	597	295	-	2,991
	남구	2,368	-	-	93	3,550	2,920	1,048	-	9,979
	동구	971	-	-	-	970	1,589	1,589	-	5,119
	북구	1,002	-	-	-	7,258	-	908	-	9,168
	울주군	1,312	53	5	30	22,109	3,071	913	-	27,493
	소계	7,028	53	65	123	34,551	8,177	4,753	0	54,750
경기 (31)	수원시	2,074	22,078	1,682	100	28,160	6,497	10,930	1,758	73,279
	고양시	3,513	1,301	508	80	4,310	-	5,086	422	15,220
	성남시	1,653	10,267	415	-	7,729	17,555	6,941	3,962	48,522
	용인시	2,460	2,590	312	-	57,580	300	5,874	97	69,213
	부천시	5,140	3,856	495	-	19,105	12,595	3,423	7,339	51,953
	안산시	1,737	2,853	489	-	7,645	-	5,254	613	18,591
	남양주시	2,160	738	125	-	9,265	22,169	2,205	18	36,680
	안양시	1,020	1,333	187	-	15,095	4,690	3,128	3,553	29,006
	화성시	1,945	4,970	172	563	39,501	8,672	5,590	20,122	81,535
	평택시	3,271	-	296	-	6,168	1,446	3,336	344	14,861
	의정부시	521	680	209	35	1,079	4,096	1,474	351	8,445
	시흥시	1,649	2,956	403	-	13,567	2,188	1,020	45	21,828

116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체육시설(전문, 생활)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 경기부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¹⁾	
경기 (31)	파주시	552	1,767	25	-	9,697	922	494	600	14,057
	김포시	803	2,135	103	-	2,375	2,441	1,396	-	9,253
	광명시	1,255	1,317	178	10	1,858	86	1,385	2,390	8,479
	광주시	665	786	113	24	11,633	10,197	1,419	-	24,837
	군포시	1,299	857	146	22	12,130	631	-	37	15,122
	오산시	1,222	2,565	87	-	1,102	-	503	-	5,479
	이천시	1,192	2,949	254	-	7,325	35	1,261	169	13,185
	양주시	803	240	374	-	15,353	-	1,257	536	18,563
	안성시	2,393	290	54	-	2,509	-	1,303	-	6,549
	구리시	723	665	146	-	724	4,073	91	68	6,490
	포천시	2,338	826	91	-	4,177	-	1,634	1,666	10,732
	의왕시	401	655	6	-	2,145	1,771	-	-	4,978
	하남시	1,725	280	112	-	4,300	5,098	447	462	12,424
	여주시	2,310	917	45	-	7,946	1,577	406	-	13,201
	동두천시	830	118	25	-	1,512	-	528	392	3,405
	과천시	1,304	848	33	-	848	-	862	-	3,895
	양평군	10,938	1,620	20	-	3,329	-	5,857	2,410	24,174
	가평군	1,640	880	9	-	8,900	-	1,106	-	12,535
	연천군	891	696	55	-	1,423	-	657	550	4,272
	소계	60,427	74,033	7,169	834	308,490	107,039	74,867	47,904	680,763
강원 (18)	춘천시	2,535	2,819	150	90	1,783	-	1,557	2,900	11,834
	원주시	1,503	2,384	120	480	4,236	-	1,361	1,902	11,986
	강릉시	935	813	115	-	2,723	175	4,077	4,836	13,674
	동해시	875	1,058	42	105	4,315	-	1,173	308	7,876
	태백시	1,085	2,741	23	200	10,030	300	313	877	15,569
	속초시	323	416	268	-	816	76	388	2,122	4,409
	삼척시	2,239	2,212	64	-	11,717	20	-	-	16,252
	홍천군	1,571	1,688	96	-	23,067	800	325	301	27,848
	횡성군	1,158	2,227	18	-	6,189	-	507	-	10,099
	영월군	2,415	1,062	82	1,220	362	2,825	1,276	-	9,242
	평창군	1,267	2,685	-	-	8,715	-	1,034	-	13,701
	경선군	2,120	165	19	-	4,499	-	1,079	842	8,724
	철원군	1,474	748	35	-	2,918	1,442	319	-	6,936
	화천군	1,081	2,272	17	20	4,478	-	676	169	8,713
	양구군	3,938	59	-	-	2,882	950	493	-	8,322
인제군	1,155	3,755	-	-	5,274	-	527	-	10,711	
고성군	1,669	881	29	-	3,081	-	354	-	6,014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체육시설(전문, 생활)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¹⁾
양양군	2,006	631	27	-	10,744	-	545	474	14,427
소계	29,349	28,616	1,105	2,115	107,829	6,588	16,004	14,731	206,337
충북(11)									
청주시	3,763	6,752	460	-	23,600	-	6,764	109	41,448
충주시	1,054	2,779	243	-	48,529	55	4,070	655	57,385
제천시	1,000	2,691	-	-	17,376	-	2,318	126	23,511
옥천군	1,115	241	101	-	4,979	-	1,341	99	7,876
증평군	608	478	12	-	7,118	250	827	-	9,293
괴산군	840	76	-	-	1,000	-	802	713	3,431
음성군	406	1,853	80	-	4,647	22	1,800	-	8,808
단양군	1,786	-	10	-	7,713	-	825	1,038	11,372
진천군	1,126	-	20	-	10,664	31	1,132	145	13,118
보은군	1,654	1,841	125	40	12,664	-	469	-	16,793
영동군	2,040	4	68	-	6,312	141	1,292	512	10,369
소계	15,392	16,715	1,119	40	144,602	499	21,640	3,397	203,404
충남(15)									
천안시	1,987	2,398	497	-	23,391	1,380	2,094	4,666	36,413
공주시	513	1,650	128	-	2,625	-	928	200	6,044
보령시	793	966	162	-	13,354	-	1,852	-	17,127
아산시	612	767	338	-	4,611	7,862	2,175	16,971	33,336
서산시	1,568	1,589	319	-	5,825	-	1,851	418	11,570
논산시	2,262	870	80	-	264	-	1,020	-	4,496
계룡시	389	677	104	-	1,436	-	443	177	3,226
당진시	1,086	1,825	274	-	5,305	-	1,142	3,342	12,974
금산군	1,576	-	66	-	4,472	-	973	-	7,087
부여군	422	972	800	-	3,780	277	1,169	1,029	8,449
서천군	614	585	57	-	4,298	43	625	88	6,310
청양군	488	2,601	124	-	1,640	-	445	-	5,298
홍성군	1,830	1,268	345	-	8,103	-	10	56	11,612
예산군	604	1,134	185	-	11,208	-	982	4,108	18,221
태안군	549	1,176	134	-	4,978	-	1,221	440	8,498
소계	15,293	18,478	3,613	0	95,290	9,562	16,930	31,495	190,661
전북(14)									
전주시	1,412	3,796	1,180	-	16,432	-	1,701	83	24,604
군산시	2,605	708	86	20	9,587	-	1,153	-	14,159
익산시	727	-	110	-	2,467	111	2,493	-	5,908
경읍시	2,284	70	146	-	3,026	-	817	-	6,343
남원시	1,507	95	152	455	2,897	-	335	175	5,616
김제시	493	-	11	-	1,737	-	665	972	3,878
완주군	1,673	-	-	-	12,080	-	237	-	13,990

118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체육시설(전문, 생활)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¹⁾	
전북 (14)	진안군	897	-	26	-	4,158	-	508	725	6,314
	무주군	747	150	26	-	1,978	-	373	162	3,436
	장수군	1,130	0	12	0	3,556	-	569	0	5,267
	임실군	1,198	70	40	10	369	905	460	0	3,052
	순창군	1,513	-	28	-	4,801	-	441	-	6,783
	고창군	1,396	80	10	-	4,737	-	465	-	6,688
	부안군	1,324	10	25	325	1,859	10	404	-	3,957
	소계	18,906	4,979	1,852	810	69,684	1,026	10,621	2,117	109,995
전남 (22)	목포시	858	593	165	10	1,468	-	3,634	1,887	8,615
	여수시	5,678	4,731	446	20	2,805	-	2,586	411	16,677
	순천시	1,729	1,168	182	95	17,506	-	1,395	139	22,214
	나주시	784	1,145	81	-	3,133	128	1,048	600	6,919
	광양시	787	1,321	116	-	5,965	-	1,203	1,384	10,776
	담양군	701	337	25	-	6,651	-	-	-	7,714
	곡성군	370	110	18	-	810	-	497	656	2,461
	구례군	821	306	8	404	1,469	-	474	225	3,707
	고흥군	1,825	174	20	-	984	-	524	-	3,527
	보성군	1,044	395	44	-	5,857	-	167	34	7,541
	화순군	869	351	30	-	1,093	-	705	-	3,048
	장흥군	427	370	54	-	839	16	-	221	1,927
	강진군	722	1,621	43	-	599	-	494	230	3,709
	해남군	786	2,934	152	-	5,100	-	955	1,350	11,277
	영암군	1,541	546	33	-	3,963	-	126	-	6,209
	무안군	1,022	218	23	-	528	610	379	66	2,846
	함평군	355.6	-	23	-	1,923.1	89.5	-	284.8	2,676
	영광군	304	2,518	-	-	2,890	-	-	363	6,075
	장성군	945	213	10	-	497	-	29	-	1,694
	완도군	768	-	50	-	2,421	-	318	-	3,557
	진도군	1,269	900	742	-	1,281	-	178	99	4,469
	신안군	939	371	23	-	240	-	391	4	1,968
소계	24,544.6	20,322	2,288	529	68,022.1	843.5	15,103	7,953.8	139,606	
경북 (23)	포항시	3,773	4,518	143	17	14,733	3,554	2,762	80	29,580
	경주시	1,325	9,057	171	17	12,366	-	2,873	781	26,590
	김천시	912	2,638	45	668	632	-	2,500	4,966	12,361
	안동시	1,805	4,585	134	-	5,478	418	2,220	-	14,640
	구미시	1,467	4,399	167	-	8,873	3,084	4,270	2,962	25,222
	영주시	1,273	1,208	237	-	10,026	-	1,210	247	14,201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체육시설(전문, 생활)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¹⁾
영천시	2,180	1,044	33		2,081	-	702	62	6,102
상주시	975	1,912	127	-	3,819	-	920	3,611	11,364
문경시	1,428	1,232	39	-	7,004	1,372	1,664	552	13,291
경산시	4,154	926	27	40	2,329	-	1,830	1,315	10,621
군위군	276	530	7	-	10,331	1,031	-	-	12,175
의성군	427	165	10	5	990	-	998	1,671	4,266
청송군	420	295	14	676	4,271	140	-	1,208	7,024
영양군	528	187	13	-	1,760	-	-	755	3,243
경북(23)	6,062	-	-	-	4,554	-	-	-	10,616
청도군	858	310	29	-	315	-	-	-	1,512
고령군	823	839	11	16	900	-	-	18	2,607
성주군	440	720	22	-	2,440	23	490	26	4,161
칠곡군	703	369	25	-	4,423	-	479	-	5,999
예천군	682	1,840	8	80	4,165	20	820	-	7,615
봉화군	812	-	-	-	2,756	-	-	-	3,568
울진군	1,818	2,190	20	-	39,010	-	615	35	43,688
울릉군	838	-	-	-	365	-	-	123	1,326
소계	33,979	38,964	1,282	1,519	143,621	9,642	24,353	18,412	271,772
창원시	3,152	5,515	149	52	42,185	22,459	7,935	-	81,447
진주시	1,285	1,513	37	-	2,983	-	374	281	6,473
통영시	829	1,399	54	-	5,246	144	860	1,705	10,237
사천시	1,086	2,012	45	-	5,063	-	504	92	8,802
김해시	1,181	1,771	73	14	5,941	15	5,050	398	14,443
밀양시	1,728	203	11	-	10,581	-	923	418	13,864
거제시	2,667	1,222	56	-	6,910	1,807	626	-	13,288
양산시	730	8,692	82	12	5,057	-	760	-	15,333
경남(18)	896	-	3	15	3,776	-	353	-	5,043
함안군	950	579	19	-	2,531	-	440	-	4,519
창녕군	1,144	893	13	15	11,290	900	611	26	14,892
고성군	293	1,435	16	-	4,252	-	-	59	6,055
남해군	788	144	43	-	2,154	-	334	2,456	5,919
하동군	561	1,228	9	-	6,835	1,791	-	25	10,449
산청군	1,114	30	15	-	3,601	168	-	33	4,961
함양군	973	304	8	-	2,936	-	-	-	4,221
거창군	1,716	454	93	-	1,172	339	-	30	3,804
합천군	818	2,047	-	-	750	-	320	-	3,935
소계	21,911	29,441	726	108	123,263	27,623	19,090	5,523	227,685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체육시설(전문, 생활)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¹⁾	
제주(2)	제주시	1,104	2,145	-	55	14,382	-	1,339	4,806	23,831
	서귀포시	1,040	816	-	-	8,476	165	1,382	479	12,358
	소계	2,144	2,961	0	55	22,858	165	2,721	5,285	36,189

1. 2016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체육분야 최종예산

※ 주: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항목 부재.

※ 출처: 각 기초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16)

4. 국민체육진흥기금

1) 설치근거 및 연혁

최초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 여건 조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36호, 1972년 8월 14일)이 제정되어 1974년 1월 1일부터 운동장에 대한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이 신설되면서 탄생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재단은 1972년에 설립(허가권자: 문교부장관, 1972년 9월 23일) 되었다. 1982년에는 「정부조직법」(법률 제3540호, 1982년 3월 20일)의 개정으로 개정 법률에 따라 체육진흥업무가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이관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 현재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1989년 4월 20일에는 국민체육진흥재단이 해산되고 올림픽잉여금 3,110억 원 등 총 3,521억 원의 발족기금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하였다.

2) 기금 조성

가. 조성재원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정부 외 자의출

연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하는 광고사업의 수입금,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수익금, 경륜·경정사업 등에 따른 수익금,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따른 기금출연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시설물의 대여, 임대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나. 조성실적

1989년 올림픽잉여금 3,110억 원과 국민체육진흥재단의 411억 원 등 발족기금 3,521억 원으로 시작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2조 2,755억 원을 조성하였다. 자세한 기금 조성 현황은 <표 1-58>과 같다.

표 1-58. 연도별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89~'11	'12	'13	'14	'15	'16
총 조성액	121,030	63,756	8,512	9,016	12,294	13,262	14,190
총 지출액	105,100	53,135	7,588	9,116	9,338	12,012	13,910
(기금지원) ¹⁾	(87,493)	(37,887)	(7,251)	(8,799)	(8,951)	(11,605)	(13,000)
(투융자, 사업비 등)	(17,606)	(15,248)	(337)	(317)	(387)	(407)	(910)
순 조성액	15,931	10,621	924	△100	2,956	1,250	280
기타 조정 ²⁾	4,309	4,247	169	16	△36	△1	△86
기금순자산 ³⁾		34,904	18,477	18,393	21,313	22,562	22,755
(금융성자산 ⁴⁾)		(15,168)	(5,872)	(5,168)	(5,310)	(5,794)	(4,952)

1)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및 국제교류,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지출액 중 건설가계정 및 융자출자금 제외

2) 기타조정 : 투자증권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자산재평가 등)의 조정,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등

3) 기금순자산 = 전년도 기금순자산 + (당해년도 순 조성액 + 기타조정)

4) 금융성자산 : 현금 및 현금등가물, 장·단기금융상품, 장·단기투자증권, 공자금

※ 출처 :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3) 기금지원 실적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를 위

122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한 사업 등에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6년 현재까지 8조 7,493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 중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에 2조 2,076억 원, 생활체육에 2조 9,272억 원, 국제체육에 2조 8,995억 원, 스포츠산업에 2,363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006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장애인체육부문에 3,742억 원이 지원되었다.

표 1-59.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실 적													소계	
	1989-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체육 진흥 사업	전문체육	4,129	566	646	667	640	771	1,080	1,586	1,237	1,322	2,072	3,262	4,098	22,076
	생활체육	4,245	1,144	1,520	1,462	1,434	1,931	1,692	1,952	2,229	2,814	2,089	3,305	3,455	29,272
	국제체육	3,762	37	55	103	221	810	2,216	2,643	3,158	3,935	3,898	4,083	4,074	28,995
	스포츠 산업	-	-	-	24	67	69	87	118	265	264	263	428	778	2,363
	장애인 체육	-	-	70	111	216	279	220	269	362	464	629	527	595	3,742
	소계	12,136	1,747	2,291	2,367	2,578	3,860	5,295	6,568	7,251	8,799	8,951	11,605	13,000	86,448
총계	13,181	1,747	2,291	2,367	2,578	3,860	5,295	6,568	7,251	8,799	8,951	11,605	13,000	87,493	

※ 주: 청소년육성 지원 774억 원, 올림픽기념사업 지원 271억 원 ('89-'04 총계에 포함)

※ 주: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 지원 2,103억 원 (전문체육 부문에 포함)

- 연도별 지원액: '99년 100억 원, '00년 1,903억 원, '01년 100억 원

- 6개 도시: 서울 300억 원, 인천 418억 원, 울산 346억 원, 수원 440억 원, 전주 314억 원, 서귀포 285억 원

※ 출처: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나. 스포츠산업 융자

국민체육진흥과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스포츠산업 융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의거하여 1991년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를 시행하여 2016년까지 총 779개의 업체에 2,345억 원을 융자하였다. 체육시설업 596개소에 약 1,942억 원이 융자되었고, 체육용구 생산업체 159개소에 272억 원이 융자되었으며, 스포츠서비스업체 22개소에 50억 원이 융자되었다.

표 1-60.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용자실적

(단위: 개소, 백만 원)

자치단체명	계		체육시설업		체육용구 생산업체		스포츠 서비스업체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계	234,541	779	194,296	596	27,230	159	5,015	22
'91 '07	132,209	488	108,294	392	14,440	86	1,475	8
'08	12,182	44	9,394	25	1,488	17	1,300	2
'09	9,050	28	7,550	19	1,350	8	150	1
'10	8,073	28	5,490	17	2,283	10	300	1
'11	7,491	28	5,444	19	1,697	7	350	2
'12	8,240	28	7,440	24	800	4	-	-
'13	5,579	23	3,710	13	1,369	7	500	3
'14	6,478	20	5,278	13	900	6	300	1
'15	13,714	41	12,114	33	1,500	7	100	1
'16	31,525	51	29,582	41	1,403	7	540	3

※ 출처: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4) 지원성과

서울올림픽 잉여금 등 3,521억 원을 기초재원으로 출발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6년 말 기준 2조 2,75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육성 등 국민체육진흥 분야에 총 8조 7,493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체육진흥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2016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체육복지 여건 조성이다.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6개소, 468억 원) 및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24개소, 147억 원)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을 개보수(144개소, 464억 원)하였으며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283억 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93억 원)와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22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를 위한 스포츠바우처 지원(131억 원), 일반 생활스포츠지도자 및 어르신전담지도자 등 체육인력보급(321억 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회 운영비,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체육교류, 국민체력인증, 생활체육정보제공,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등 생활체육 보급·육

성사업(1,324억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견인하였다.

둘째, 전문체육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의 체계적 육성이다. 우리나라는 1988 서울 하계 올림픽대회 종합 4위라는 놀라운 성과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오고 있으며,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대회에서는 종합순위 8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적에는 후보선수 육성, 전문체육시설 확충, 소년체전 지원, 연금 및 체육장학금 등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큰 역할을 차지하였다. 2016년에도 경기단체지원, 한국동계스포츠육성,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건설, 우수선수 양성지원, 체육인재육성 등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에 3,53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소년)체전지원(423억 원) 등 경기력증진을 위한 우수선수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체육인 복지사업과 장애인체육인 복지사업에도 14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체육인 복지향상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 노력도 꾸준히 하였다.

셋째, 장애인체육 육성이다. 장애인체육 정착 및 진흥을 위한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까지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액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원(6억 원), 시각장애인 생활체육(2억 원) 등 8억 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전문체육(10억 원), 생활체육(39억 원)에 지원을 하여 장애인체육의 진흥기반을 구축하며 장애인체육의 일대 전환기를 가져왔다. 2009년 완공된 이천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에 302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 종합 거점시설로써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하였다. 2016년에는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 등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을 위해 215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장애인체육대회 등 장애인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38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장애인체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넷째, 국제체육 교류증진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이다. 국제체육교류(33억 원), 스포츠반도평화활동(43억 원), 국제대회개최지원(63억 원),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및 태권도진흥(315억 원), 개발도상국 스포츠공적개발원조(56억 원), 국제대회참가(68억 원) 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40억 원),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20억 원)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3,436억 원)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스포츠산업의 육성이다. 스포츠과학 기술개발(119억 원)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133억 원)를 위해 체육시설업체 및 우수 체육용기구 생산업체 등에 체육산업 용자를 실시하여 열악한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스포츠과학지원을 위해 한국스포츠개발원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체육정책개발 지원, 경기력향상 지원, 스포츠정보 전산화, 스포츠산업 기술지원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4절 체육관련 법제

1. 체육관계법 현황

체육관계법은 특수한 법의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실정법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을 말한다. 체육관계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려면 체육법 체계를 실정법 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법을 분류하는 데는 법의 형식이나 내용, 또는 효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 수는 약 5,000여건으로 형식에 따라서 피라미드식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최상의 위치에는 헌법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입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과 부령이 시행규칙으로서 존재한다. 이외에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법규가 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법인이 주체가 되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공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법이며, 사법은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 외에 공법과 사법에 걸쳐 법률관계가 규정되는 중간영역인 사회법이 있다. 이 사회법의 범주에는 보통 「사회보장법」, 「노동법」, 「경제법」 등이 있다.

체육관계법에 대한 분류는 주로 공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또한 「경륜·경정법」, 「스포츠산업진흥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수상레저안전법」 등도 특별법의 형태로 체육관계법에 속한다.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청소년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체육 및 스포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가진 법률을 찾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스포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지,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률이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각

종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사고와 관련하여 그 주체가 사인이라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은 그 적용순서에 있어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체육관계법」에서 일반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며, 「경륜·경정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에 속한다. 이외에도 법령은 시간적인 효력에 따라서 일반법과 한시법으로 분류된다. 보통 일반적인 법령은 절차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나, 한시법의 경우 유효기간을 부칙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처럼 명문으로 규정된 효력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우리나라의 체육관련 법령은 체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겠지만, 체육관계법은 대략 5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2. 체육관계법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가.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제정된 후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된 법률로서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총 6장 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체육진흥의 기본이 되는 조장적 성격의 법으로서, 체육,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 운동경기부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체육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의무를, 제4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본시책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운동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 육성, 경륜·경정 등 여가체육활동의 건전 시

행,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 등을 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민체육진흥재단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구성과 사용을, 제4장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제5장에서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의 육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2010년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과 구매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추가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 회차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대상을 미성년자에서 청소년으로 조정하였다.

2011년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대상별·기능별로 세분화하였다. 자격검정을 거친 후 현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프로선수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해 주도록 조정하였으며,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 마련,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신설 및 자격취소 요건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관련 벌칙을 신설하였고,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와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를 명확히 하였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의 신고·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마련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대한 벌칙강화와 징역, 벌금의 병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2년에는 체육지도자 양성에서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 지정기관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금의 사용항목 중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유사행위 및 운동경기의 부정행위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도 강화하였다.

2013년에는 국가 성장 동력의 양대 핵심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관련 업무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였다.

2014년에는 경기단체의 범위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지 아니한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 외에도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였다. 한편,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가대표 또는 그 지도자로 소집되어 국제경기·훈련 중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였다.

2015년에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통합체육회는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사업,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현행법에서 아마추어 선수의 도핑검사 의무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프로선수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도핑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지

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을 강화하였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신고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1989년 3월 31일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민간체육시설업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총 5장 40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업으로 나누며,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고, 민간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인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체육지도자 배치·시설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의 장에게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의무를 부가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해 동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였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어린이체육교실 운영자가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체육시설업자에게 등록취소 처분 등을 취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였다.

2015년은 전년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관리자에게는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체육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안전점검 등 체육시설 안전관련 사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위탁기관을 통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시설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양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은 2007년 4월 6일 제정된 법으로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지정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한다. 2010년에는 프로구단이 관객유치와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시설 사용·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프로구단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

2016년에는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였다. 스포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라.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법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마. 경륜·경정법

「경륜·경정법」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서 ‘경륜 및 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원

활한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경륜·경정의 시행, 수익금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발생하는 미환급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하여 각종 체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년에는 「개별소비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입장료 징수 범위를 경주장에서 경주장 및 장외매장으로 수정하였다.

경륜·경정을 통한 수익금은 체육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기금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륜·경정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수육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2014년 경륜·경정을 통한 수익금에서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 방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자투표 방법 중 특별승식의 경우 그 종류와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 지원법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 지원법」은 2007년 12월 14일 제정 및 공포된 법으로서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에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초 제정시에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었으나, 그 후 2010년 개정을 통하여 광주광역시가 유치한 2015년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명을 「2011 대구 세계육상선

수권대회, 2014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하였다. 2011년도 주요 개정을 살펴보면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년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하였고,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남북 간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도에는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 2014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되는 2013 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 근거 규정 신설, 국가적 차원의 태레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 근거 명시, 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총량 조정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였다.

전체 6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회조직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대회 관련시설,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회를 통한 남북체육교류,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4년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사.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로서 ‘우리 민족의 고유 무예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예 및 스포츠로 육성·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체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등 태권도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효율적인 태권도공원의 조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의 안정적인 지원은 물론, 민자로 조성되는 민자 지구에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인 바, 민간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마련하고, 임대료 감면 및 임대기간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도로망의 정비, 적절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였다.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와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 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 활용이 불가능해지면서 특수법인인 국기원의 태권도 품·단증 발급 및 태권도지도자 교육 업무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였다. 특히 태권도 품·단증이 경찰공무원 시험 등 다양한 국가시험에 활용되고 있기에, 2016년에는 국기원이 고유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고유 식별정보 처리를 허용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아. 씨름진흥법

「씨름진흥법」은 2012년 1월 17일 제정된 법으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씨름의 날 지정 및 행사진행, 씨름 시설의 지원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록 하고 있다.

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법으로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8장 9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위원회, 대회지원위원회, 대회관련시설,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운영,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5년에는 타법 개정에 따라 전월세시장 수급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공공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수용 저수지 건설사업 및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을 활성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차.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2012년 11월 23일 제정된 법으로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산업 발전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행사인 바, 이러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하여 그 동안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FIFA 한·일 월드컵축구경기대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개별입법 추진의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 포함)의 장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 제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유치 승인 시 미리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대회 개최에 따른 재정소요를 고려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대회 개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회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부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포함한 대회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올림픽 및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주요 스포츠 행사인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최지로 광주광역시가 선정됨에 따라,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지정하여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스포츠 및 관광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와 2018년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가.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은 2012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학교시설설치,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건강체력교실,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등의 운영,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학교체육진흥원의 사업 등에 있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체적 규정을 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학생 체육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타.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은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6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회시설 및 수익사업, 대회지원단체 지원 및 안전대책,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벌칙 등 규정하고 있다.

2012년에는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설립사항,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금의 차입,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대회운영기업이 아닌 조직위원회로 변경하였다.

2013년에는 대회의 총괄추진을 조직위원회가, 대회관련수익 등은 대회운영기업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포물러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 관련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출연금·보조금·수익금·기부금·차입금 등으로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2014년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파.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은 ‘2013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스페셜올림픽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고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체력 향상과 더불어 지적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사회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체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조직

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대회기금 설치 할 수 있다. 국유·공유 재단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기념주화의 판매, 기념우표 등의 발행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은 2012년 2월 17일 제정된 법으로 국제군인간의 우의 증진 및 유대 강화, 군사 체육의 발전, 그리고 범세계적인 평화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1948년 2월에 프랑스 등 5개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되었다. 우리나라는 1957년에 그리스의 추천으로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대회로서, 서울에서 개최된 제66차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총회에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대한민국 문경 개최가 최종 확정되었다.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주관기관으로 설립될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회 관련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 체육진흥과 국가발전, 군인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가.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에 3백 7십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한해 700억 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며 국민 체육단체로 성장한 국민생활체육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단체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2015년 3월 27일에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2) 규정과 예규

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1-26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4호)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은 관세법 제36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총 8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체육용품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후관리 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재위탁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사후관리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다.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26호)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체육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기준과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문화체육관광부고시 2009-25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의 지정대상업종 신청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우수업체 제품의 우선구매, 대한체육회 및 체육과학연구원의 기술지도,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지정업체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1호)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훈령으로 제정하였다.

바. 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7호)

「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은 2007년 11월 22일 문화관광부훈령으로 제정되었으며, 국제체육대회의 체계적·심층적인 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국제체육대회 유치를 도모하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단체 등이 국제체육대회를 유치·개최하기 위하여 정부 승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기금 내지 기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국제 종합경기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연맹(IFs)에서 주최·주관하는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로서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선수단(선수와 임원 포함)이 참가하는 대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체육 관련 회의, 기타 중앙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로 제한하고 있다.

사.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은 1984년 2월 16일 제정된 규칙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은 체육지도자연수원, 연수과정 및 교과, 연수계획의 수립 및 제출, 연수시행, 수료증 교

부, 자격검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012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4호에 의하여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을 타법 폐지하고, 법령 체계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국민체육진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지도자의 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합 규정하였다.

아.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17호)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규정」은 2012년 2월 6일 제정된 규칙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장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금은 유소년스포츠,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사업,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13년 11월)에 따라 주최단체지원금 중 각 주최단체의 기여도가 낮은 해외수익금의 일부(40%)를 승부조작 등 운동경기 부정방지, 은퇴·부상선수지원 프로그램, 기초종목 지원에 사용하도록 개정(2014년 1월)하였다.

자.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54호)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15년 5월 18일 제정된 규칙으로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의 효율적 준비와 전문체육-생활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통합준비위원회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합준비위원회의 기능은 통합체육회의 정관 작성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 취득, 양 단체와 종목단체, 지역 체육단체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제 규정의 정비, 통합체육회의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양 단체의 통합 및 체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원회로 부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통합준비위원회 운영 중에 양 단체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이 추가로 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도 본 위원회의 업무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 밖에도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통합체육회가 설립등기를 마치고 통합체육회의 회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한 날 폐지된다고 하였다.

3) 체육유관법령

가.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은 국민의 여가스포츠로서의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전형적인 여가스포츠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2011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의 근거 마련과 조종면허 결격사유, 갱신기간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범위를 10해리로 확대하고,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하도록 신설하였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 보완·신설내용을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개정하였고,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하였다.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등록기준 완화, 수상레저사업자가 교육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이용한 스포츠생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2011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을 ‘도시·군 계획’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오늘날 사격은 스포츠경기의 한 종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적 스포츠로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격은 총기를 사용하는 스포츠로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관계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목적이 스포츠 활동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법률로서 이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중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주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말산업육성법

「말산업육성법」은 2011년 3월 9일 제정된 법으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이용업」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승마장 및 승마장업과 업종구분이 불명확하여 행정절차 및 시설·안전기준 등이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2009년 6월 9일 제정되어 ‘마리나 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리나 항만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도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촉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2년 개정을 통하여 위반행위별로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3개월 이내 및 1년 이내)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3년 6월 시행되었다.

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법률로서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과 관련한 2011년 주요개정을 살펴보면 숲길의 정의를 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로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숲길의 종류를 신설하여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 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정의하였다. 또한, 등산로에 한하여 지원하던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 등산로를 포함하여 트레킹길(주요 산의 둘레길

과 트레일 포함),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산악레포츠 대회에 필요한 산악레포츠길,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할 가치가 있는 옛길과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휴양·치유숲길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하였다.

2012년에는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을 휴양, 보건, 문화, 교육 등 복지적 측면에서 활용하려는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산림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국민의 산림복지·교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2012년 8월 26일 제정된 법률로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싸움 경기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소싸움 경기의 투표권에 관한 사항, 소싸움경기장 설치, 심판 및 조교사의 등록 및 면허, 소싸움경기의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 기타 법률

그 밖에 체육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것에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스포츠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과 하천법」,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한 「조세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체육관련법에 해당된다.

2

2016 SPORT WHITE PAPER

생활체육

- 제1절 생활체육 전개
- 제2절 생활체육 참여실태
- 제3절 생활체육 참여지원
- 제4절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 제5절 생활체육 홍보

제1절 생활체육 전개

1. 생활체육 정책 전개

생활체육은 전 국민이 여가시간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통해 행하는 체육 혹은 스포츠 활동이다. 생활체육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체육은 1975년 3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 각국 체육부장관 회의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유럽 헌장’이 채택되면서 사회운동과 국가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헌장에서는 스포츠 활동 참여 자체가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최초로 천명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라는 범세계적 생활체육 운동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생활체육 운동은 소외계층인 노인이나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체육 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체육활동에서 불평등을 해소시켜 왔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전까지 ‘사회체육’이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1990년부터 ‘생활체육’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용어가 변경된 이유는 정부조직 개편과 정책수립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1990년 2월 12일 체육부 체육진흥국 내 사회체육과를 생활체육과로 개칭하였는데, 사회단체 수준의 체육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함이었다. 둘째는 1986년 체육부가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에서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생활체육은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개최 이후 관람하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급속한 경제성장과 생활여건 개선, 여가시간 증대의 배경 등으로 생활체육이 태동하였다. 이러한 생활체육은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양적으로 급성장하였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생활체육

이 고칼로리 섭취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병리현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 해소의 주요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체육활동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정책을 추진하였다. 생활체육 정책변화를 사업명, 체육담당부처, 정책과제 및 부분별 목표(민간단체체육기구), 주요사업 및 추진내용은 <표 2-1>과 같다.

제3공화국은 대한체육회 산하 사회체육위원회에서 지역사회체육과 직장체육 활성화를

표 2-1. 생활체육 정책 변화

구분	사업명	체육 담당부서	정책과제 및 부분별 목표 (민간단체체육기구)	주요사업(추진내용)
제3공화국	사회체육진흥 5개년계획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	‘체력은 국력’ (대한체육회 산하 사회체육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제정(1962년) ○사회체육진흥5개년계획 ○지역사회체육과 직장체육 중심 전개
제5공화국	새마을운동 (새마을체육)	체육부	‘체육을 통한 건전한 시민육성’ 체육입국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체육부 신설(1982년 3월) ○’86, ’88 양 대회 준비에 우선 ○엘리트체육 집중육성 ○1985년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설립
제6공화국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호돌이계획)	체육 청소년부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회체육 => 생활체육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신설(1991년 1월)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직장체육프로그램 개발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제도 개선
문민정부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문화 체육부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의식 고취 ○체육활동공간 확충,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국민체육활동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국민건강여가기회 확대
국민의 정부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문화 관광부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여건 조성	○지역공동체 주민활동의 장으로써 체육 시설 확충 ○미참여 인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 여 확대 ○생활체육지도인력의 육성 및 활용 ○국민체력관리의 과학적 지원 ○민간주도적 생활체육 확산

구분	사업명	체육 담당부서	정책과제 및 부분별 목표 (민간단체체육기구)	주요사업(추진내용)
참여 정부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문화 관광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확충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과학적 국민체력관리시스템 구축 ○레저스포츠 발전 방안 마련 ○생활체육 지도인력 양성 및 활용 ○생활체육 인식 제고 및 추진체제 강화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2008~2012	문화체육 관광부	'15분 프로젝트'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국민생활체육회 : 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 ○전통무예 지정 및 육성 보급 강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활용 제고 ○레저스포츠시설, 공간 확충
박근혜 정부	스포츠비전 2018	문화체육 관광부	손에 닿는 스포츠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형스포츠클럽(9개소 → 229개소) -수혜인원(3,600명 → 91,600명) -국민체력인증제(49,000여 명 → 211,000명) -생활체육지도자(일반, 노인) 2,230명 → 2,600명, (장애인) 230명 → 600명 -작은 체육관(2017년까지 900여 개소) 조성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 개·보수 400개소 -저소득계층 등 대상 행복 나눔 스포츠 교실 확대(274개소 → 680개소)
	국민생활체육 진흥종합계획		스마일 100 '스포츠를 마음껏 일상적으로 100세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13년 43.3%에서 '17년 60% -유소년기(유아기관 및 스포츠활동 우수학교 인증제 도입 등) -청소년기(학교스포츠클럽 정착 및 지역 스포츠클럽과 연계시스템 구축 등) -성인기(국민체력100 정착 및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등) -은퇴기 이후(찾아가는 체력관리 및 생활 체육교실 확대 등)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백서(2016),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2013)

위해 ‘사회체육진흥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앙정부 체육담당부처는 문교부 내 문화국 내 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체력은 국력’이란 정책과제 아래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제5공화국은 새마을운동과 결부시켜 ‘새마을체육사업’을 전개하였다. 중앙정부 체육담당부처로 ‘과’단위에서 ‘부’단위로 승격된 체육부가 신설되었으며, ‘체육을 통한 건전한 시민육성’을 통해 체육입국을 강조하였다. 민간단체기구로 한국사회체육진흥회가 1985년 설립되었으나, 당시 국위선양을 위한 엘리트체육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회체육은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제6공화국은 '86 서울 하계아시아대회와 '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계기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앙정부 체육담당부처는 ‘체육청소년부’로 개칭되어 체육과 청소년 정책을 다루었다. 정책과제 및 부문별 목표로 사회체육 대중화 요소인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직장체육프로그램 개발,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제도 개선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민간단체체육기구로 1991년 1월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신설되었다.

문민정부는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앙정부체육기구로 체육청소년부에서 ‘문화체육부’로 변경되었다.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이란 정책과제 아래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의식 고취, 체육활동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국민체육활동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국민건강여가기회 확대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앙정부 체육담당부처는 문화체육부에서 ‘문화관광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부’단위의 체육행정이 ‘국’단위로 축소되었다.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 여건조성이라는 정책과제 아래 지역공동체 활동의 장으로써 체육시설 확충, 미참여 인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생활체육 지도인력 육성 및 활용, 국민체력관리의 과학적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앙정부 체육담당부처는 국민의 정부와 같이 ‘문화관광부’를 그대로 이어 받았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정책과제 아래 주민친화형 생활체육 공간 확충,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과학적 국민체력관리시스템 구축, 레저스포츠 발전방안 마련, 생활체육지도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생활체육 인식제고 및 추진체제 강화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문화비전 2008~2012'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앙정부 체육담당부처를 기존의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개칭하였다.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의 정책 아래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체육인력 활용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 맞춤형 체육 복지 구현, 전통무예 지정 및 육성보급 강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활용제고, 레저스포츠시설, 공간확충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향후 5년간(2013~2017) 스포츠정책으로 '스포츠비전 2018'을 발표하였다. '스포츠비전 2018'은 스포츠가 삶의 방식과 문화가 되고, 스포츠로 경제·사회·미래를 바꾸는 '문화융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생활체육참여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손에 닿는 스포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습관처럼 스포츠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43%인 생활체육참여율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형스포츠클럽(9개소에서 229개소로), 수혜인원(3,600명에서 91,600명으로), 국민체력인증제 인증 국민(49,000여 명에서 211,000명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일반, 노인) 2,230명에서 2,600명으로, (장애인) 230명에서 600명으로, 작은 체육관(2017년까지 900여 개소) 조성,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 개·보수 400개소, 저소득계층 등 대상 행복 나눔 스포츠교실 확대(274개소에서 680개소로)를 목표로 두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정책목표로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13년 43.3%에서 '17년 60%의 목표를 두었으며,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생애주기별로 설정하였다. 유소년기에는 운동습관 형성으로 건강 100세 출발을 슬로건으로 유아기관 체육돌봄 프로그램 지원 및 스포츠 활동 우수 학교 인증제 도입, 유치원 등에 유소년지도자 파견 및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및 우수 스포츠클럽 지원을 세부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청소년기에는 스마트기기 대신 운동으로 스마트한 청소년기라는 슬로건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정착 및 지역 스포츠클럽과 연계시스템

구축, 스포츠 활동 이력제 등 스포츠 지원시스템 구축, 여학생 친화적 체육활동 참여여건 조성으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성인기에는 가정과 직장에서 일상적 운동으로 활력있는 성인기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체력100 정착 및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여성 및 가족단위 운동참여 여건 조성, 1직장 1스포츠 운동, 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교실, 생활체육 광장 확대의 세부추진과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퇴기 이후는 무병장수의 보약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은퇴기 이후의 슬로건으로 찾아가는 체력관리 및 생활체육교실 확대, 세대 간 어울림 프로그램 보급 확대, 경로시설의 체육활동 거점 시설 기능 강화 및 지도자 배치 확대를 세부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2. 생활체육 인프라 전개

1) 생활체육 시설 전개

생활체육 정책에 따라 생활체육 대중화 요소 중 시설현황을 정부별, 시설 기준일, 공공체육시설 현황, 체육(등록, 신고)시설업 현황, 증가추이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연도별 생활체육 시설현황은 <표 2-2>와 같다.

제5공화국 1983년 12월 기준 공공체육시설 451개소, 체육(등록, 신고)시설업 1,056개소를 시작으로, 제5공화국 마지막 1987년에는 공공체육시설 689개소, 체육(등록, 신고)시설업 4,055개소로 증가하였다. 제6공화국 때는 1992년 공공체육시설 2,098개소, 체육(등록, 신고)시설업 35,294개소로 제5공화국 대비 공공체육시설 1,409개소 증가, 체육(등록, 신고)시설업 31,239개소 증가로 나타났다. 문민정부는 1997년 공공체육시설 3,630개소, 체육(등록, 신고)시설업 41,740개소로 제6공화국 대비 공공체육시설 1,532개소 증가, 상업체육시설 6,446개소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는 2002년 공공체육시설 6,723개소, 체육(등록, 신고)시설업 42,320개소로 문민정부 대비 공공체육시설 3,093개소 증가, 상업체육시설 580개소 증가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2007년 공공체육시설 10,946개소, 체육(등록, 신고)시설업 45,800개소로 국민의 정부 대비 공공체육시설 4,223개소 증가, 상업체육시설 3,480개소 증가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공공체육시설 17,157개소, 체육(등록, 신고)시설업 56,437개소로 참여정부 대비 공공체육시설 6,211개소 증가, 상업체육시설 10,637개소 증가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공공체육시설 19,398개소, 체육(등록, 신고)시설업 56,422개소로 이명박 정부 대비 공공체육시설 5,505개소 증가, 상업체육시설 193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연도별 생활체육 시설 전개

(단위 : 개소)

정부별	기 준	공공체육시설현황	체육(등록, 신고) 시설업 현황	증가추이
제5공화국	1983. 12	451	1,056	-
	1987. 12	689	4,055	
제6공화국	1990. 12	986	29,034	공공체육 1,409 증가 시설업 31,239 증가
	1992. 12	2,098	35,294	
문민정부	1994. 12	2,661	41,740	공공체육 1,532 증가 시설업 6,446 증가
	1997. 12	3,630	41,740	
국민의 정부	2001. 12	6,150	41,984	공공체육 3,093 증가 시설업 580 증가
	2002. 12	6,723	42,320	
참여정부	2003. 12	6,901	43,567	공공체육 4,223 증가 시설업 3,480 증가
	2005. 12	8,717	42,703	
	2006. 12	9,949	43,168	
	2007. 12	10,946	45,800	
이명박 정부	2008. 12	12,342	38,664	공공체육 6,211 증가 시설업 10,637 증가
	2009. 12	13,968	53,851	
	2010. 12	15,179	55,648	
	2011. 12	16,127	56,807	
	2012. 12	17,157	56,437	
박근혜 정부	2013. 12	19,398	56,422	공공체육 5,505 증가 시설업 193 감소
	2014. 12	21,317	56,630	
	2015. 12	22,662	56,630	
	2016. 12	22,662	55,857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체육시설업 현황(2016) 재구성

2) 생활체육분야 지도자의 전개

생활체육분야 지도자 양성은 1986년 2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양성되었으며 (1988년 제외), 1995년에는 운동처방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을

시작하였다. 2015년부터는 기존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변경되었고,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체적인 생활체육분야 지도자 전개는 <표 2-3>과 같다.

표 2-3. 연도별 생활체육분야 지도자 전개

(단위 : 명)

정부별	연 도	1급	2급	3급	계	증가추이	
제5공화국	1986	-	177	-	177	783명 양성	
	1987	-	606	-	606		
제6공화국	1988	-	-	-	-	11,759명 양성	
	1989	-	435	2,629	3,064		
	1990	-	-	2,825	2,825		
	1991	-	-	4,480	4,480		
	1992	-	244	1,146	1,390		
문민정부	1993	-	108	3,153	3,261	18,301명 양성	
	1994	-	217	3,131	3,348		
	1995	17	193	3,261	3,471		
	1996	21	137	3,777	3,935		
	1997	23	158	4,105	4,286		
국민의정부	1998	52	401	5,716	6,169	36,611명 양성	
	1999	48	370	9,944	10,362		
	2000	36	404	5,537	5,977		
	2001	40	481	6,064	6,585		
	2002	48	416	7,054	7,518		
참여정부	2003	47	355	6,934	7,336	46,998명 양성	
	2004	50	609	8,599	9,258		
	2005	65	448	8,549	9,062		
	2006	61	458	10,114	10,633		
	2007	73	372	10,264	10,709		
이명박 정부	2008	57	375	10,683	11,115	53,246명 양성	
	2009	61	369	8,982	9,412		
	2010	70	319	11,211	11,600		
	2011	57	280	10,430	10,767		
	2012	51	290	10,011	10,352		
박근혜 정부	2013	69	343	12,695	13,107	52,608명 양성	
	2014	106	497	22,365	22,968		
	2015	건강	1급	2급	-		
		234	185	6,340	6,759		
	2016	284	230	9,260	9,774		
계		1,570	9,477	209,259	220,30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체육백서(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재구성

연도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을 보면 1986년 제5공화국 때 2급 783명의 양성을 시작으로 제6공화국 때 11,759명 양성, 문민정부 때 18,301명 양성, 국민의 정부 때 36,611명 양성, 참여정부 때 46,998명 양성, 이명박 정부 때 53,246명 양성, 박근혜 정부 때 52,608명을 양성하였다.

생활체육분야만 놓고 봤을 때, 건강운동관리사(1,570명),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9,477명),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209,259명)로 총 220,306명이 양성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지도자 양성에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지도자의 질적개선과 지도자의 효율적 배치 그리고 재교육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제2절 생활체육 참여실태

1. 생활체육 직접 참여실태

1)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

2016년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 29.5%, 주 2~3회 29.2%, 주 4~5회 14.5%, 월 2~3회 11.0%, 주 1회 10.2%, 매일 3.1%, 주 6회 2.5%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주 1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은 59.5%이며, 2015년 56.0%에 비해 3.5%가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는 <표 2-4>와 같다.

표 2-4. 연도별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 (단위: %)

연도	전혀 하지 않는다	월 2-3회	주 1회	주 2-3회	주 4-5회	주 6회	매일	주 1회 이상	주 2회 이상
2014	34.5	10.8	11.2	22.9	11.1	4.0	5.5	54.8	43.5
2015	34.4	9.6	10.6	23.2	12.6	2.5	7.2	56.0	45.3
2016	29.5	11.0	10.2	29.2	14.5	2.5	3.1	59.5	49.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6)

연령별 주 2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은 60대 54.2%, 50대 51.0%, 40대 50.7%, 70대 이상 49.5%, 20대 46.9%, 30대 46.8%, 10대 45.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연령에서 2015년 대비 참여율이 모두 상승하였다. 특히 10대에서 2015년 대비 9.7% 증가하여,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구체적인 연도별/연령별 주 2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은 <표 2-5>와 같다.

표 2-5. 연도별/연령별 주 2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단위: %)

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4	38.9	47.2	40.3	44.3	45.9	48.1	39.4
2015	36.2	46.0	42.3	48.3	47.9	51.0	44.6
2016	45.9	46.9	46.8	50.7	51.0	54.2	49.5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6)

2) 참여종목

체육활동 참여종목을 살펴보면, 걷기가 35.6%, 등산 16.7%, 보디빌딩(헬스) 14.6%, 축구/풋살 8.7%, 수영 7.4%, 자전거/사이클/산악자전거 6.7%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종목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집주변에서도 가능하고 운동효과도 검증된 '걷기'가 1순위로 나타났다. 등산의 경우 지리적으로 산이 많은 지정학적 특징과 아웃도어 의류산업의 발전과 보급의 영향으로 2014년부터 꾸준히 2위를 하였다. 한편 보디빌딩(헬스)은 2000년 이후 몸짱 синдром으로 순위 내에 등장한 이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3순위를 차지하며 대중적인 참여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종목 순위는 <표 2-6>과 같다.

표 2-6.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종목 순위 (단위: %)

연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2014	걷기 (38.7)	등산 (22.8)	보디빌딩 (11.8)	축구 (8.7)	자전거 (7.1)	배드민턴 (6.7)	-	-
2015	걷기 (35.0)	등산 (22.4)	보디빌딩 (12.0)	축구 (8.1)	자전거 (7.6)	수영 (6.2)	배드민턴 (5.3)	요가/ 필라테스 (4.7)
2016	걷기 (35.6)	등산 (16.7)	보디빌딩 (14.6)	축구/풋살 (8.7)	수영 (7.4)	자전거 (6.7)	배드민턴 (5.8)	요가/ 필라테스 (5.8)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6)

3) 참여시간

체육활동 평균 참여시간은 79분(약 1시간 19분)으로 나타났으며, 1시간~1시간 30분 미만 57.2%, 30분~1시간 미만 37.7%, 2시간~3시간 미만 19.9%, 1시간 30분~2시간 미만 16.6%, 3시간 이상 14.2%, 30분 미만 1.3%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활동 1회 평균 참여시간 연도별 비교 결과 '1시간~1시간 30분 미만'이 꾸준히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평균 참여시간은 지난해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6년 약 20분가량 줄어들었으며, 또한 '3시간 이상' 응답도 다소 하락(9.8%)하였다. 구체적인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시간은 <표 2-7>과 같다.

표 2-7.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시간

(단위: %)

연도	참여빈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2시간 미만	2시간~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평균(분)
2014		0.6	16.4	40.3	12.5	19.2	11	91
2015		0.6	12.1	38.8	12.2	20.2	16.1	101
2016		-	25.8	42.9	12.3	12.6	6.3	79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6)

4) 참여기간

체육활동 참여기간은 2015년 대비 2016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9개월 이상으로 조사 단위가 변경되었다. 이에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기간이 2015년 평균 3년 7개월인 반면, 2016년에는 평균 9개월로 나타났다. 수치상 확인 가능한 부분은 2015년 대비 2016년에 3~6개월 미만이 10.5%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기간은 <표 2-8>과 같다.

표 2-8.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기간

(단위: %)

연도	참여기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1년 6개월 미만	1년 6개월~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2015		1.5	4.4	8.1	15.8	3.7	17.7	21.3	17.5	10.1	3년 7개월
-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평균	
2016		4.3	14.9	20.3	60.4					-	

※ 주 : 2016년부터 참여기간에 대한 조사범위가 변경되었음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6)

5) 참여장소

주로 참가하는 체육활동 참여장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체육활동 참여장소 분류가 기존 분류와는 다르게 적용되어 조사되었다. 공공체육시설 35.5%, 민간체육시설 27.4%, 학교/직장체육시설 17.6%, 기타부대시설 15.5%, 자가시설 4.0%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활동 참여장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학교체육시설 정비가 요구되며,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홍보 그리고 적절한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로 참가하는 체육활동 참여장소는 <표 2-9>와 같다.

표 2-9. 주로 참가하는 체육활동 참여장소

(단위: %)

연도	학교체육 시설	민간종합 체육시설	공동주택 단지 체육시설	공공종합 체육시설	생활 체육관	복지시설	체력단련장	기타	-
2014	16.8	6.2	5.3	3	2.9	2.5	5.6	57.7	
2015	17.8	3.5	4.8	2.1	1.7	1.7	6.3	62	
구분	학교/직장 체육시설	민간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	자가시설	
2016	17.6	27.4	35.5				15.5	4	

※ 주 : 2016년 조사부터 체육활동 이용 시설구분이 변경됨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6)

6) 체육활동 경비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는 무료 30.6%, 3~6만 원 미만 22.9%, 10만 원 이상 17.6%, 3만 원 미만 17.1%, 6~10만 원 미만 1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특별한 운동경비가 필요하지 않은 걷기 종목 참여와 학교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6년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는 48,430원으로 2015년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 50,434원 보다 2,004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도별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는 <표 2-10>과 같다.

표 2-10. 연도별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 (단위: %)

연도	무료	3만 원 미만	3~6만 원 미만	6~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평균
2012	41.9	14.4	20.0	10.1	13.7	40,815
2014	31.3	13.2	23.5	10.5	21.6	53,011
2015	29.5	15.7	25.0	9.5	20.4	50,434
2016	30.6	17.1	22.9	11.7	17.6	48,43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6)

7) 체육활동 참여 영향 주체

체육활동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주체는 친구 33.9%, 스스로 28.3%, 가족/친지 25.9%, 직장/지역사회 3.6%, 대중매체 2.9%, 체육동호인 조직 2.2%, 지도자(교사 제외)

표 2-11.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 영향 주체 (단위: %)

연도	가족/친지	친구	지도자 (교사제외)	대중매체	직장/ 지역사회	체육동호인 조직	스스로
2014	26.7	33.5	1.9	4.3	4.0	2.1	26.4
2015	22.8	34.0	2.5	5.2	4.3	1.9	28.5
2016	25.9	33.9	2.1	2.9	3.6	2.2	28.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6)

2.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의 연도별 비교 역시 친구, 스스로, 가족/친지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 영향 주체는 <표 2-11>과 같다.

8) 체육활동 동반자

체육활동 동반자는 혼자 참여한다는 응답이 2015년 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친구 및 배우자/자녀와 함께 한다는 응답은 4.5%로 하락하였다. 이는 1인 가구 수 증가, 단체 종목 중심에서 개인종목 중심으로 전환,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원인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인 연도별 체육활동 동반자는 <표 2-12>와 같다.

표 2-12. 연도별 체육활동 동반자

(단위: %)

연도	유형	친구/연인	혼자	배우자/자녀	동호회회원	지역주민	직장동료	그 외 가족/친지
2014		32.4	37.1	11.0	5.5	6.5	3.9	3.7
2015		38.6	32.5	12.2	5.4	4.2	3.8	3.3
2016		34.1	37.9	9.3	5.7	4.9	3.3	4.8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6)

9) 체육활동 참여 및 비참여 이유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건강유지 및 증진 41.0%, 여가선용 22.1%,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 13.2%, 스트레스 해소 6.4%, 자아실현 및 자기만족 5.9%, 대인관계 및 사교 3.8%, 신체수행 능력향상 3.5%, 개인의 즐거움 3.3%, 시간을 때우기 위해 0.3%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교 결과, 건강유지 및 증진 응답이 매년 가장 높았으며, 여가선용은 2015년 대비 3.6%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이유는 <표 2-13>과 같다.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는 체육활동 가능시간 부족이 4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표 2-13.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이유

(단위: %)

연도	유형	건강 유지 및 증진	체중 조절 및 체형 관리	여가 선용	스트레스 해소	개인의 즐거움	자아 실현 및 자기 만족	대인 관계 및 사고	신체 수행 능력 향상	시간을 때우기 위해	가족과의 유대 강화
2014		45.5	19.8	18.8	5.7	4.6	4.4	3.7	2.5	0.3	0.3
2015		42.8	18.5	13.2	6.8	6.8	3.8	4.0	1.9	0.5	1.9
2016		41.0	13.2	22.1	6.4	3.3	5.9	3.8	3.5	0.3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6)

였다. 다음으로는 건강상의 문제 12.9%,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 9.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생활체육 홍보시스템의 체계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또한, 규칙적인 체육활동의 예방의학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캠페인성 공익광고와 체육활동 참여방법과 클럽가입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2-14.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

(단위: %)

연도	체육 활동 가능 시간 부족	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	체육 활동 지출 비용 부담	체육 시설 접근성 낮음	건강상의 문제	소득 수준 낮음	체육에 소질이 없어서	체육 활동 정보 부족	실외에서 운동하기 싫어서	땀 흘리는 게 싫어서	동반 참여자 부재	체육 프로그램 부족	건강과 체력에 자신이 있어서	체육 지도자 부재
2014	49.1	13.7	3.8	3.9	9.2	4.7	2.1	1.9	2.9	2.8	-	-	-	-
2015	44.9	13.6	3.7	3.6	10.0	4.2	3.9	1.7	3.6	2.4	2.3	2.1	2.8	0.9
2016	46.7	9.0	2.9	4.2	12.9	4.9	3.9	3.4	1.2	2.3	2.3	1.0	4.5	0.9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6)

10) 참여희망 운동종목

2016년부터 향후 참여희망 운동종목은 시간적 여유시와 금전적 여유시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종목으로는 수영이 1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요가/필라테스(7.5%), 등산(6.3%), 보디빌딩(6.0%)순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골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15.8%로 가장 높았고, 수영(10.5%),

요가/필라테스(6.9%), 승마(5.7%)순으로 나타났다.

참여희망 운동종목은 수영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요가, 골프, 등산, 보디빌딩(헬스)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시간적 여유 시에는 수영이 2006년 이래로 꾸준히 1순위인 이유는 전 연령대가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신 유·무산소 복합운동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2순위인 요가는 여성들의 미용에 대한 관심증대와 이를 상업화한 시설증가가 원인일 것이다. 금전적 여유 시에는 골프, 수영, 요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승마와 스키/스노우보드, 스킨스쿠버, 항공레저 중심으로 고비용 종목이 참여희망 종목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여유 시와 금전적 여유 시 종목을 비교해 보면, 주로 장비스포츠(골프, 스노우보드/스키, 스킨스쿠버 등)와 자연친화적 스포츠(승마, 항공레저 등) 종목이 차지하였다.

표 2-15. 참여희망 운동종목

(단위: %)

시간적 여유시	수영	요가/필라테스	등산	보디빌딩(헬스)	자전거	댄스스포츠	골프	낚시	아쿠아로빅, 수중발레	에어로빅
	14.1	7.5	6.3	6.3	5.6	4.4	4.1	3.7	2.8	2.8
금전적 여유시	골프	수영	요가/필라테스	승마	댄스스포츠	보디빌딩(헬스)	자전거	스노우보드, 스키	스킨스쿠버	항공레저
	15.8	10.5	6.9	5.7	4.8	4.1	3.5	3.3	3.1	3.0

※ 주 : 2016년 조사부터 시간적과 금전적 여유로 구분되어 조사됨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6)

2. 생활체육 간접 참여실태

2015년 동안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은 13세 이상 인구의 66.8%로 2013년의 63.4%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화 관람이 8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박물관, 연극관람, 스포츠 관람, 음악공연, 미술관 관람 순이었다. 스포츠 관람이 2013년 22.0%에서 2015년 21.1%로 0.9% 소폭 감소하

표 2-16.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단위: %)

연도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관람
2011	25.1	24.9	2.6	81.7	26.4	20.6	24.6
2013	21.7	24.2	2.4	85.9	25.8	19.4	22.0
2015	20.6	22.4	1.8	88.1	26.6	19.1	21.1

※ 주: 사회조사보고서는 기본항목(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과 가족, 보건, 복지, 교육, 사회참여, 노동,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환경, 안전 등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함

1) 홀수년도: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

2) 짝수년도: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부문

※ 출처: 통계청 2015 사회조사 보고서(2016)

였다.

스포츠 관람을 많이 하는 대표적 프로스포츠 종목은 야구, 축구, 농구, 배구이다. 2016년 프로스포츠 평균관람객 현황은 프로야구(11,583명), 프로축구(7,854명), 프로농구(남)(3,543명), 배구(2,336명), 프로농구(여)(1,42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현황은 <표 2-17>과 같다.

표 2-17. 프로스포츠 관람객 연도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야구		축구		농구(남)		농구(여)		배구(남·여)	
	경기수	평균관중	경기수	평균관중	경기수	평균관중	경기수	평균관중	경기수	평균관중
2008	518	10,881	253	11,642	292	4,080	118	1,100	189	1,472
2009	549	11,562	256	10,983	296	4,152	130	1,206	189	1,471
2010	547	11,402	210	12,873	293	3,870	130	705	216	1,479
2011	548	13,055	283	10,709	292	3,955	115	1,445	210	1,774
2012	548	13,747	338	7,157	294	4,537	131	1,150	245	1,744
2013	593	11,373	266	7,656	300	4,092	113	1,237	210	1,525
2014	591	11,429	229	8,115	301	4,458	112	1,417	227	1,967
2015	736	10,357	228	7,720	292	3,958	111	1,480	227	2,311
2016	720	11,583	228	7,854	291	3,543	112	1,425	229	2,336

※ 경기수=정규리그+포스트시즌+올스타전(축구는 컵대회 포함)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5 스포츠산업백서(2016)

제3절 생활체육 참여지원

1. 생활체육광장

생활체육광장은 지역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기초적인 참여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지역 동네단위에 참여환경을 제공하여 범국민적 체육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데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광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생활체육광장은 전국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매일 아침 또는 저녁시간 대에 약수터, 공원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서 약 7개월(4월~10월)동안 운영되었다. 2015년 생활체육광장은 434개소에서 59,020회가 운영되었으며, 169만 명이 참여하였다. 2016년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434개소에서 운영되었으며, 구체적으로 59,477회를 운영하여 176만 명이 참여하였다.

표 2-18. 생활체육광장 사업추진 실적

(단위: 개, 회,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개소수	500	500	500	520	520	520	520
회수	140,892	142,672	157,322	166,180	88,609	86,363	74,924
참가인원	4,943,438	5,029,846	5,452,284	5,955,670	4,818,484	4,750,232	2,822,325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개소수	518	434	434	434	434	434	
회수	56,644	60,981	60,971	59,774	59,020	59,477	
참가인원	1,803,503	1,857,131	1,805,937	1,721,924	1,693,118	1,763,938	

※ 주 : 2010년도부터는 지방비로 운영된 사업실적 제외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016년 대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광장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광장운영 사례발표 및 생활체육 강연을 통해 지도자간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성고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생활체육광장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지도자 연수프로그램 시 응급 처치교육 및 응급상황 대비책 교육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2. 국민체력100 운영

1) 추진배경 및 성과

국민체력100 사업은 일반 국민들에게 생활체육 참여동기 및 체력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해 주는 체육복지서비스이다. 국민체력100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08~'09년에는 해외사례 및 타당성 분석과 사업관련 기본연구를 하였고 '1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체력인증사업 시행결정 및 성인대상 체력인증기준을 개발하였다. '11년에는 한국스포츠개발원에 '국민체력사업팀'을 신설하여, 체력인증시스템 구축 및 체력인증사업을 시범 운영(4개소)하였으며, '12년에는 성인대상 체력인증사업 운영(4개소) 및 어르신 체력인증기준을 개발하였고 사업명칭을 '국민체력인증사업'에서 '국민체력100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13년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스포츠레저사업본부 국민체력사업팀'으로 사업본부가 변경되었고 체력인증센터 14개소 운영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다. '14년에는 체력인증센터 21개소 운영, 청소년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5년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실 국민체력사업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체력인증센터 26개소 운영, 청소년대상 정식사업을 실시하였다. 최근 '16년에는 체력인증센터 32개소를 운영하고 스포츠활동인증을 시범운영하였으며, '한국인 건강체력기준'을 개발하였다.

2) 국민체력100 운영 현황

국민체력100 사업은 2010년 3억 원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지원액이 67억 4800만 원, 2016년에는 지원액이 69억 9600만 원으로 나타나 연간지원액이 소폭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국민체력100 연간지원액 현황은 <표 2-19>와 같다.

표 2-19. 국민체력100 연간지원액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원액	300	500	2,000	3,635	5,611	6,748	6,996

※ 출처: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국민체력100은 참여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본인 거주지역의 거점센터 홈페이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측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단체 체력측정은 센터에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체력을 측정하는 방식도 운영되고 있다. 체력측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자신의 체력평가 결과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에 의해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이 처방되며, 처방된 프로그램은 인쇄물과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민체력100 체력 측정항목은 신체조성(신체질량지수, 체지방률), 건강체력(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운동체력(민첩성, 순발력)분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건강체력 요인과 운동수행에 필요한 운동체력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은 청소년(만 13세~18세), 성인(만 19세~64세), 어르신(만 65세 이상)으로 구분하며, 국민체력100 체력 측정항목은 <표 2-20>과 같다.

국민체력100은 2011년 서울 종로구구민회관, 부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광주 북구 국민체육센터, 대전 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시범운영 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6년 수도권권(9개소), 중부권(8개소), 호남권(8개소), 영남권(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1개의 대표센터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1개의 지역별 체력인증센터는 위탁운영되고 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현황은 <표 2-21>과 같다.

표 2-20. 국민체력100 체력측정항목

구분	요인	측정항목	측정방법
체격	신체조성	신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신장, 체중, 신체질량지수(BMI), 체지방율(%)
체력	건강체력	근력	상대약력
		근지구력	교차윗몸일으키기, 윗몸말아올리기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
		유연성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운동체력	민첩성	왕복달리기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 주 : 청소년(만13세~18세), 성인(만 19세~64세), 어르신(만 65세 이상)
 ※ 출처 :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표 2-21.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현황

수도권(9개소)	중부권(8개소)	호남권(8개소)	영남권(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공원 대표센터 · 성동 건강관리센터 · 서초 구민체육센터 · 금천 금천구보건소 · 노원 엠코빌딩 · 인천 가천대학교 · 화성 국민체육센터 · 부천 오정레포츠센터 · 오산 오산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서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 청주 종합운동장 · 영동 국민체육센터 · 세종 중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 천안 종합운동장 · 당진 국민체력센터 · 원주 국민체육센터 ·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광산 빛고을 국민체육센터 ·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시민체력증진센터 · 남원 춘향골체육관 · 전주 전주화산체육관 종합관 · 목포 국제축구센터 · 순천 원도심수영 · 곡성 레저문화센터 · 제주 종합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달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 포항 종합경기장 · 부산 남구 국민체육센터 · 부산 북구 국민체육센터 · 부산 사하 국민체육센터 · 창원 시민생활체육관 · 사천 사천국민체육센터

※ 대표센터(1개소) 직영, 지역별 체력인증센터(31개소) 지정·위탁운영
 ※ 출처 :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국민체력100의 사업내용에는 체력인증과 체력증진교실이 있다. 체력인증 참여인원은 2011년 4,583명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38,383명이 증가한 161,122명이 참여하였다. 체력증진교실 참여인원은 2012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3,849명이 소폭 감소한 7,564명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연도별 국민체력100 연간 참여인원은 <표 2-22>와 같다.

표 2-22. 연도별 국민체력100 연간 참여인원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체력인증 참여인원	4,583	12,216	56,104	86,887	122,739	161,122
체력증진교실 참여인원	-	1,250	4,257	6,167	8,413	7,564

※ 출처: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국민체력100은 참여유인을 위해 체력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단계별 인증상을 수여하며, 참여 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민체력100 인증단계 및 수상기준은 <표 2-23>과 같다.

표 2-23. 국민체력100 인증단계 및 수상기준

구분	인증단계	수상기준
체력인증수상	금 상	5개 검사기록이 모두 인증기준 상위 30% 이내(신체조성 제외)
	은 상	5개 검사기록이 모두 인증기준 상위 50% 이내(신체조성 제외)
	동 상	4개 검사기록이 모두 인증기준 상위 70% 이내 (체지방률 또는 신체질량지수가 건강 권장 범위일 때)
	참 가 증	기타 참가자 (위 수상기준 미달자)
신체조성 건강 권장범위	남 자	7% < 체지방율 < 25%
	여 자	16% < 체지방율 < 32%

※ 주: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 출처: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국민체력100의 사업운영은 사업기반과 사업과정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사업기반은 홈페이지, 체력인증센터 지정운영, 측정항목 개발, 평가기준 개발, 인증단계별 기준 개발, 맞춤형 운동처방프로그램 개발/온라인 운동 동영상 제작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과정은 신청, 방문, 측정 및 평가, 체력인증, 운동처방, 상시 체력관리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체력100 사업흐름도는 <그림 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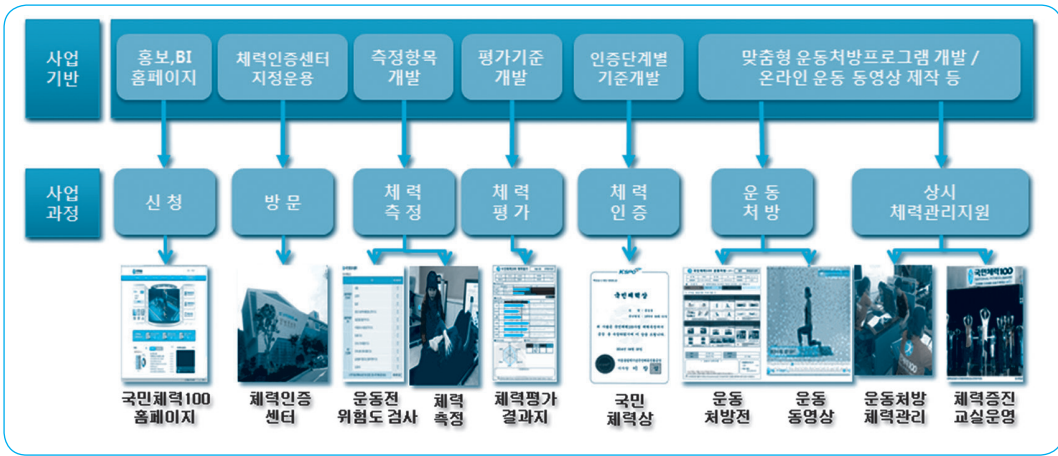


그림 2-1. 국민체력100 사업흐름도(국민체육진흥공단 2016 종합업무현황, 2017)

3. 동호인클럽 육성

동호인클럽 육성은 생활체육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합리적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동호인클럽 육성을 위해 종목별 체육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종목별 체육단체는 생활체육 동호인클럽의 연합체로서 지역 및 클럽 간 체육교류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참여인구를 확대시키는 원동력이다.

종목별 체육단체 육성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동의 구심체인 종목별 체육단체를 육성·지원하여 ‘국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신규 종목별연합회 결성을 유도하며, 동호인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전국규모 대회를 지원하고, 또한 동호인클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목별 체육단체가 재정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종목별 체육단체 지원대상은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55개 단체(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자전거, 스케이팅, 윈드서핑, 탁구, 테니스, 족구, 배구, 사격, 궁도, 스키, 스킨스쿠버, 볼링, 택견, 생활체조, 풋살, 합기도, 패러글라이딩, 정구, 보디빌딩,

승마, 줄다리기, 야구, 농구, 국무도, 골프, 당구, 검도, 태권도, 국학기공, 등산, 씨름, 인라인스케이팅, 낚시, 철인 3종, 수영, 우슈, 스퀘시, 종합무술, 라켓볼, 그라운드 골프, 파크골프, 줄넘기, 핸드볼, 아이스·인라인하키, 하키, 프리테니스, 플라잉디스크, 피구, 걷기)이며, 주요 지원내용은 종목별연합회의 사무처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 신규종목별 체육단체 결성 확대 및 활성화 지원 등이다.

주요 지원사업은 종목별 체육단체의 전국규모대회 지원, 종목별 초보자 및 지도자 강습회 개최 등이다. 종목별 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도사업으로는 종목별 체육단체 결성 종목의 시·도연합회 결성 유도, 종목별 체육단체 사무처직원 실무교육 실시, 종목별 체육단체에 대한 업무지도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신규 동호인클럽 결성 확대를 위해 국민 참여도가 높은 종목과 향후 동호인 확산이 충분히 예상되는 종목, 자연친화 및 극기종목,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중심으로 확대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다.

4. 생활체육대회 개최

1) 종목별 동호인 행사지원

생활체육 참여자에게 자신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 만족스러운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체육활동 참여 유인책으로서 효과적이다. 동호인 행사지원사업은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동기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사업은 전국종목별동호인 행사를 지원하여 생활체육을 생활화하는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종목별 동호인 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권위 있는 전국대회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전국연합회별 동호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지방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지역분산 개최하고 있다.

종목별 동호인 행사지원은 전국단위에서 종목별로 연중 개최되며, 전국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운영하고 대한체육회가 대회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종목별 장관기 대회는 시·도 지역예선을 거쳐 시·도 대항전 경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종목 특성상 시·도 대항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클럽대항전으로 운영하고 있

다. 2015년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은 49개 종목 81개 대회를 지원하였으며, 참가규모는 98,009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45개 종목 73개 대회를 지원하였으며, 참가규모는 60,793명이었다. 연도별 동호인 행사지원은 <표 2-24>와 같다.

표 2-24. 연도별 동호인 행사지원

(단위: 개, 회, 명)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회종목수	43	45	46	46	50	48	46	49	54	49	45
대회수	128	129	124	133	122	127	130	130	134	81	73
참가규모	118,789	125,113	132,754	110,635	124,520	122,613	127,022	141,588	111,040	98,009	60,793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17개 시·도가 함께 하는 축제로서 2001년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축전’으로 시작되었다. 1년에 한번 전국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서 동호인 개인의 명예와 성취감 고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및 계층 간 우정과 화합을 통한 국민통합 기회를 마련하며, 체육활동의 생활화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생활체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종합축전으로 개최되며,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국제 생활체육 교류행사와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추진되고 있다. 매년 각 시도별로 순회 개최되며 체육경기 외에 다양한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한 지역문화행사와 지역문화축제, 내고향 특산물 전시회, 뉴스포츠 체험, 온 가족 함께 걷기대회, 지역 명소 탐방, 이동건강검진센터 등 각종 부대행사가 열린다. 이 외에도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생활체육 세미나가 개최된다.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현황은 <표 2-25>와 같다.

표 2-25.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현황

장소	기간	참가인원	실시종목
서울	2016. 5.26 ~ 29.	60,000여 명 (선수 임원 22,487명, 지역주민 등 40,000여명)	- 정식 종목(36개)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낚시, 농구, 당구, 등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사격,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스체조, 윈드서핑, 육상, 인라인스케이팅, 자전거, 정구, 족구, 철인3종,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풋살, 합기도 - 시범 종목(10개) 국무도, 궁도, 라켓볼, 빙상, 소프트볼, 종합무술, 줄넘기, 줄다리기, 중경식 야구, 핸드볼
강원 (동계)	2016. 1.9 ~ 1.24	선수 임원 1,200	- 4종목(스키,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5. 스포츠클럽 및 동호인조직 육성

1) K-스포츠클럽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다세대·다계층이 참여하는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조직·운영함으로써 국내 스포츠시스템 선진화 및 평생체육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으로 학교체육-생활체육-엘리트체육 연계를 통해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선진화된 스포츠클럽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2013년도에 시작하여 2016년도에는 'K-스포츠클럽'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추진되고 있다.

K-스포츠클럽은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회원에게 다양한 종목 프로그램, 전문지도자가 제공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회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운영과 체육시설, 체육지도자,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스포츠클럽에 종합적으로 융합·지원하는

표 2-26. K-스포츠클럽 연도별 지원현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육성 클럽 개소수	8개소	9개소	12개소	43개소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것이 특징이다. K-스포츠클럽 연도별 지원현황은 <표 2-26>과 같다.

2) 체육동호인조직

체육동호인조직 육성을 위해 동호인 등록업무와 시·도종목별대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호인 등록요건은 각 종목별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인원이 확보되면 가능(가급적 20인 이상)하고 등록기간은 연중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방법은 현장방문과 온라인등록이 있으며, 현장방문 등록은 시·도(시·군·구)생활체육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에 주요활동 장소, 연락처, 구성원 명단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온라인 등록은 동호인조직 등록 사이트(<http://club.sportal.or.kr>)에 접속하여 등록한다. 2016년 동호인 등록 현황은 115,303개 클럽 5,579,640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현황은 <표 2-27>과 같다.

표 2-27. 연도별 동호인조직 육성 지원

(단위: 개, 회, 명)

연도	운영개소		운영횟수	참가인원	지도자수	동호인 등록현황
2012	100		55,278	1,396,276	490	81,882개 클럽 (3,646,013명)
2013	공공	95	52,776	1,287,844	573	90,386개 클럽 (4,131,880명)
	종합	9	6,281	71,430	68	
2014	108		9,062	123,072	963	101,332개 클럽 (4,554,492명)
	공공	90	4,554	107,752	553	
2015	종합	18	4,508	15,320	410	110,105개 클럽 (5,324,089명)
	30		6,450	326,831	693	
2016	공공	-	-	-	-	115,303개 클럽 (5,579,640명)
	종합	30	6,450	326,831	693	
2016	43		11,268	365,206	545	115,303개 클럽 (5,579,640명)
	종합	43	11,268	365,206	545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016년 시·도 종목별대회는 425개 대회에 206,190명이 참가하여, 2015년 267,556명(540개 대회) 보다 대회 개최 수와 참가인원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각 시·도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진행상황이 달라 대회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둘째는 국고 지원예산은 줄어드는데 실제 대회 진행에 지출되는 대회단가는 반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실적은 <표 2-28>과 같다.

표 2-28. 연도별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실적 (단위: 회,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회	385	376	441	592	730	319	486
참가인원	179,433	180,767	208,834	303,862	321,873	187,695	179,224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회	413	431	504	492	540	425	
참가인원	168,814	178,104	214,554	228,934	267,556	206,190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동호인조직은 2016년 전체인구 수 51,269,554명 중 회원 수가 5,579,64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인구 대비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845,138명), 대전(550,275명), 광주(510,199명), 부산(455,153명), 경기(452,30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동호인클럽 및 회원 현황은 <표 2-29>와 같다.

종목별 클럽 수는 축구 12,560개, 생활체조 7,572개, 게이트볼 5,875개, 배드민턴 5,852개, 탁구 5,151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클럽 회원 수는 축구 607,300명, 생활체조 396,260명, 배드민턴 354,844명, 기타 341,591명, 테니스 227,560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은 <표 2-30>과 같다.

표 2-29. 지역별 동호인클럽 및 회원 현황

(단위: 명, 개)

지역	구분	계		지 역		직 장	
		클럽 수	회원 수	클럽 수	회원 수	클럽 수	회원 수
서울		14,009	845,138	13,500	769,624	509	75,514
부산		7,809	455,153	7,486	399,575	323	55,578
대구		6,971	233,526	6,599	214,569	372	18,957
인천		4,192	197,219	4,138	187,273	54	9,946
광주		7,240	510,199	7,079	489,287	161	20,912
대전		4,969	550,275	4,700	472,508	269	77,767
울산		4,606	141,612	4,505	129,838	101	11,774
세종		242	15,496	221	6,637	21	8,859
경기		13,165	452,309	12,657	405,564	508	46,745
강원		6,624	262,838	6,299	233,276	325	29,562
충북		7,025	217,509	6,706	205,373	319	12,136
충남		6,443	373,354	6,119	361,162	324	12,192
전북		4,812	265,334	4,548	246,555	264	18,779
전남		6,278	185,713	5,772	164,579	506	21,134
경북		6,794	343,324	6,549	318,511	245	24,813
경남		10,793	427,509	10,428	415,364	365	12,145
제주		3,331	103,132	3,196	96,241	135	6,891
합계		115,303	5,579,640	110,502	5,115,936	4,801	463,704

※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표 2-30.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단위: 개, 명)

종	목	클럽 수	회원 수	종	목	클럽 수	회원 수
검	도	2,180	108,122	견	기	891	129,551
게	이 트 볼	5,875	172,742	역	도	32	1,060
격	투 기	135	5,574	오	리 엔 티 어 링	18	880
경	당	30	580	요	가	2,168	105,846
경	비 행 기	12	316	요	트	90	2,216
골	프	1,183	40,710	우	드 볼	51	2,613
국	무 도	198	6,778	우	슈 / 쿵 후	412	14,104
국	선 도	87	4,554	원	드 서 핑	189	10,407
국	학 기 공	3,031	156,506	유	도	334	11,539

종 목	클럽 수	회원 수	종 목	클럽 수	회원 수
궁 도	834	33,060	인 라인 스 케 이 팅	1,001	36,973
궁 수 도	31	2,612	전 통 무 예	9	743
그 라 운 드 골 프	1,341	46,128	전 통 무 용	403	15,157
기 공	132	4,048	정 구	773	24,113
기 천 문	12	867	족 구	4,054	112,607
낙 시	666	42,636	중 합 무 술	375	14,952
농 구	2,344	87,272	줄 념 기	1,173	56,183
다 트	42	591	줄 다 리 기	371	13,937
단 전 호 흡	147	6,907	철 인 3 종	351	15,311
당 구	1,254	46,293	축 구	12,560	607,300
댄 스 스포 츠	2,308	97,440	카 누	121	5,464
등 산	2,262	145,832	캠 프	64	4,960
라 켓 볼	190	7,124	클 라 이 밍	119	3,417
력 비	56	2,535	킵 복 싱	99	3,338
레 슬 링	14	670	탁 구	5,151	197,024
레 저 복 싱	9	302	태 권 도	3,510	149,038
레 크 리 에 이 셴	361	30,582	태 극 권	117	5,169
레 포 츠	86	5,284	택 건	732	30,106
론 볼 링	42	2,000	테 니 스	4,576	227,560
모 터 스포 츠	47	13,007	특 공 무 술	163	16,845
무 예 타 이	201	10,194	파 크 골 프	636	21,302
미 식 축 구	27	638	패 러 글 라 이 팅	526	15,424
민 속 경 기	208	16,381	펜 싱	52	2,676
바 독	416	20,911	풋 살	2,479	116,963
배 구	3,841	116,307	프 리 테 니 스	418	15,196
배 드 민 턴	5,852	354,844	피 구	302	12,676
법 률 대 법	28	899	필 드 하 키	88	3,034
보 디 빌 디ング	1,224	102,354	합 기 도	2,332	134,936
보 치 아	15	1,558	항 공 스포 츠	25	1,671
복 싱	507	22,928	핸 드 볼	329	17,859
볼 링	5,009	146,886	활 기 도	10	441
부 메 랑 던 지 기	19	914	X 계 임	109	4,837
사 격	252	6,560	해 등 검 도	45	2,529
사 이 클	12	339	세 팍 타 크 로	38	4,655
생 활 무 술 기 공	1	166	기 타	1,408	341,591
생 활 체 조	7,572	396,260	행 글 라 이 팅	28	1,823
석 궁	5	125	벨 리 댄 스	357	15,300
소 프 트 볼	148	7,668	플 라 잉 디 스크	152	5,656
수 영	1,937	112,564	전 통 선 술	128	10,491
수 상 스 키	145	6,846	공 수 도	30	1,739

종 목	클럽 수	회원 수	종 목	클럽 수	회원 수
스케이팅 / 빙상	158	7,425	이종격투기	94	5,393
스쿼시	620	25,907	치어리딩	33	2,519
스키	482	16,530	스포츠스태킹	5	600
스킨스쿠버	321	9,532	컬링	30	1,797
스포츠글라이딩	15	125	실용무용	35	997
스포츠마사지	6	380	티볼	182	4,660
승마	316	11,053	트레킹	29	4,992
싱크로빅스	12	417	스크린골프	25	11,199
씨바이벌	86	14,382	유술호신술	7	679
육상	2,868	201,872	해동무예	2	227
씨름	596	30,932	생활무용	102	5,471
아이스인라인하키	73	2745	플로어볼	30	670
야구	4,985	159,232	무적도	4	167
양궁	44	767	에어로빅	324	23,365
롤러스케이팅	20	493	KPOP생활댄스	25	1,277
자전거	1,943	85,846	경호무술	104	2,363
			계	115,303	5,579,640

※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3) 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스포츠클럽 리그대회의 목적은 생활체육 최소단위인 동호인클럽이 전국단위 리그 참여를 통해서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및 직장 간 교류활동의 정례화와 지속적 참여를 촉진하는데 있다. 스포츠클럽 리그대회는 운영종목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동호인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16년에 시·군·구 클럽리그 운영(181개 리그, 1,319개 클럽, 23,406명 참가)현황 <표 2-31>, 시·군·구 클럽리그 운영(1,699경기, 9,869개 클럽, 103,804명 참가)실적 <표 2-32>, 종목별 클럽리그 최강전대회(210개 클럽, 2,776명 참가) 개최현황은 <표 2-33>과 같다. 생활체육 종목별 지역리그를 통해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리그운영을 제시하였으며, 동호인이 주거하는 가까운 곳에 생활체육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참여환경을 조성하였다.

표 2-31. 시·군·구 클럽리그 운영 현황

종목	리그(개)	클럽(개)	인원(명)	종목	리그(개)	클럽(개)	인원(명)
게이트볼	17	204	1,369	야구	12	60	1,232
농구	40	320	7,293	축구	30	241	8,234
볼링	50	300	3,136	풋살	31	192	2,142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2-32. 시·군·구 클럽리그 운영 실적

종목	경기	클럽(개)	인원(명)	경기	리그(개)	클럽(개)	인원(명)
게이트볼	2,219	4,454	8,142	야구	234	648	9,452
농구	1,750	1,406	29,644	축구	723	1,446	35,763
볼링	1,800	720	5,737	풋살	973	1,374	15,066

※ 경기는 리그경기 수이며, 참가클럽 및 인원은 누적자료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2-33. 종목별 클럽리그 최강전대회 개최

종목	기간	장소	참가규모
게이트볼	'16.12.8.~9.	수원시 여기산게이트볼구장	17클럽 250명
농구	'16.11.26.~27.	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	40클럽 400명
볼링	'16.11.27.	대전시 월드컵볼링장	50클럽 450명
야구	'16.11.12.~13.	양주시 백석리틀야구장	16클럽 288명
축구	'16.10.29.~30.	충북 단양공설운동장	32클럽 709명
풋살	'16.11.12.~13.	충북 보은군 인조잔디구장	55클럽 679명

※ 2016년도에 한해 '대통령배' 최강전대회로 승격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제4절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1. 체육활동 소외계층 지원

1) 소외계층 운동용품 보내기

정부는 전국의 노인시설에 운동용품을 지원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선용 여건을 조성해 주고, 명랑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운동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시설은 생활스포츠지도사가 파견되어 있거나 파견 예정인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추천 시설이며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이다. 선정되는 시설은 시·군·구별 평균 8-10개소이다. 운동용품 지원 품목은 노인계층 선호도 및 활용도가 높은 용품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시설이용자 및 지원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용품 선정 및 수량을 확정한다. 다만 사후관리가 필요한 운동기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운동용품 지원 대상 시설에 생활스포츠지도사를 파견하여 지원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프로그램 순회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6년 소외계층 운동용품 지원은 총 3,364개소에 15종 92,704점의 운동용품이 지원되었으며, 그 동안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2-34. 소외계층 운동용품지원

연 도	2013	2016
2014	노인시설	2,789개소 22종 116,967점
2015	노인시설	3,603개소 25종 108,899점
2016	노인시설	3,964개소 15종 92,704점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운영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사업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 스포츠참여 형평성 제고 및 사회 적응력 배양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복나눔 스포츠교실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2016년에는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지원(47회/5,745명), 행복나눔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지원(396개소/5,761회/111,077명)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인 스포츠버스 지원현황은 <표 2-35>와 같으며, 행복나눔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지원현황은 <표 2-36>과 같다.

표 2-35. 스포츠버스 지원현황

번호	학교(시설)명	지역	일정	인원
합계			47회	5,745명
1	광주성내경로당	광주 광산구	03.17(목)	64
2	대방초등학교 마도분교	경남 사천시	04.07(목)	92
3	아산초등학교	전남 화순군	04.08(금)	131
4	수곡초등학교	전북 정읍시	04.12(화)	104
5	파천초등학교	경북 청송군	04.14(목)	88
6	초락초등학교	충남 당진시	04.26(화)	40
7	행안초등학교	전북 부안군	04.28(목)	112
8	적암초등학교	경기 파주시	04.30(토)	154
9	시산초등학교	전북 순창군	05.02(월)	101
10	세천초등학교	대전 동 구	05.03(화)	70
11	교동초등학교	인천 강화군	05.04(수)	171
12	본량초등학교	광주 광산구	05.10(화)	151
13	위례초등학교	충남 천안시	05.11(수)	155
14	안흥초등학교	충남 태안군	05.12(목)	129
15	남선초등학교	대전 유성구	05.13(금)	116
16	장연초등학교	충북 괴산군	05.17(화)	78
17	원당초등학교	강원 홍천군	05.24(화)	80
18	잠실종합운동장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서울 송파구	05.27(금)	600
19	쌍류초등학교	세종 연서면	05.26(목)	105
20	한산초등학교	경남 통영시	05.30(월)	58
21	동산초등학교	전북 순창군	06.02(목)	100
22	북내초등학교 운암분교	경기 여주시	06.03(금)	67
23	부석초등학교	충남 서산시	06.08(수)	109

번호	학교(시설)명	지역	일정	인원
24	팔렬중학교	강원 홍천군	06.16(목)	75
25	기성초등학교	대전 서 구	06.17(금)	131
26	올림픽공원 (문화가있는날, 스포츠영화상영)	서울 송파구	06.29(수)	200
27	봉수초등학교	경남 의령군	07.08(금)	43
28	송면중학교	충북 괴산군	07.15(금)	52
29	올림픽공원 (문화가있는날, 스포츠영화상영)	서울 송파구	08.31(수)	150
30	영월초등학교	강원 영월군	09.06(화)	113
31	한서초등학교	강원 홍천군	09.07(수)	94
32	사회복지법인영생원	충북 옥천군	09.09(금)	83
33	수륜중학교	경북 성주군	09.22(목)	93
34	서울역 광장 (평창동계대회 D-500일 기념행사)	서울 종로구	09.27(화)	200
35	동면초등학교	전남 화순군	09.23(금)	134
36	풍산초등학교	강원 화천군	09.29(목)	136
37	오봉초등학교	전북 군산시	09.30(금)	92
38	김제청소년수련원 (김제지평선축제)	전북 김제시	10.01(토)	150
39	송면초등학교	충북 괴산군	10.05(수)	62
40	의신초등학교 접도분교	전남 진도군	10.06(목)	121
41	노음초등학교	경북 울진군	10.11(화)	136
42	계촌중등학교	강원 평창군	10.12(수)	154
43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광주 광산구	10.16(일)	39
44	영흥초등학교	인천 용진군	10.19(수)	127
45	안성건강랜드 (안성맞춤건강축제)	경기 안성시	10.22(토)	250
46	하장초등학교	강원 삼척시	10.25(화)	85
47	올림픽공원 (문화가있는날)	서울 송파구	10.26(수)	150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2-36. 행복나눔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지원현황

번호	종목	개소수(당초)	강습횟수		참여인원		
			총횟수	평균	신청인원	평균	누적인원
	계	396	5,761회	13.7회	10,243명	21.5명	111,077명
1	축 구	31/(30) 31단체 참여	567회	18.3회	791명	25.5명	11,966명
2	검 도	33/(30) 33단체 참여	638회	19.3회	851명	25.8명	15,451명
3	국 학 기 공	72/(70) 72단체 참여	1,440회	20.0회	1303명	18.1명	19,597명
4	탁 구	20 20단체 참여	320회	16.0회	436명	21.8명	6,120명
5	빙 상	27/(20) 30단체 참여	270회	10.0회	690명	25.6명	6,159명
6	배 드 민 턴	26/(20) 27단체 참여	360회	13.8회	701명	27.0명	8,411명
7	볼 링	20 20단체 참여	226회	11.3회	440명	22.0명	4,448명
8	인라인스케이팅	21/(20) 21단체 참여	231회	11.0회	476명	22.7명	4,673명
9	원 드 서 평	5 6단체 참여	60회	12.0회	104명	20.8명	2,130명
10	우 슈	22/(20) 22단체 참여	330회	15.0회	445명	20.2명	4,789명

번호	종목	개소수(당초)		강습횟수		참여인원		
				총횟수	평균	신청인원	평균	누적인원
11	풋살	12/(10)	12단체 참여	141회	11.8회	266명	22.2명	2,526명
12	육상	10	10단체 참여	163회	16.3회	223명	22.3명	3,026명
13	핸드볼	13/(10)	13단체 참여	195회	15.0회	306명	23.5명	3,850명
14	농구	11/(10)	11단체 참여	165회	15.0회	236명	21.5명	3,066명
15	사격	11/(10)	13단체 참여	126회	11.5회	167명	15.2명	1,623명
16	파크골프	14/(10)	14단체 참여	140회	10.0회	259명	18.5명	2,590명
17	야구	11/(10)	12단체 참여	110회	10.0회	275명	25.0명	2,070명
18	보디빌딩	13/(10)	13단체 참여	130회	10.0회	284명	21.8명	2,386명
19	테니스	5	5단체 참여	80회	16.0회	102명	20.4명	1,554명
20	수영	5	5단체 참여	55회	11.0회	156명	31.2명	1,574명
21	스키(캠프)	6/(5)	41단체 참여	6회	1.0회	668명	111.3명	2,004명
22	승마(캠프)	6/(5)	38단체 참여	6회	1.0회	914명	152.3명	914명
23	인라인하키(캠프)	2/(5)	8단체 참여	2회	1.0회	150명	75.0명	150명

- ※ 강습회 평균 횟수 13.7회(캠프 제외/캠프 포함 시 12.01회)
- ※ 강습회 1회 평균 참여인원 22.5명(캠프제외/캠프 포함 시 34.3명)
-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 스포츠강좌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건강증진과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월 7만원 강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내 유소년, 청소년이며, 1인당 지원 금액이 최대 84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 1만원이 상승되어 최대 96만원(월 8만원씩)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016년 128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252,782명을 지원해주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연도별 지원실적은 <표 2-37>과 같으며, 이밖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연도별 추진실적은 <표 2-38>과 같다.

표 2-37. 스포츠강좌이용권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계
예산액	1,960	3,000	8,616	10,584	10,584	10,584	11,760	12,848	69,936
집행률	98.4	100	99.7	100	100	100	100	100	99.9
이용자수(연인원)	55,742	104,231	195,506	207,179	215,321	219,029	231,225	252,782	1,481,015
이용자수(실인원)	시범사업기간			30,255	30,293	30,484	32,019	34,483	157,534

※ 출처: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표 2-38. 스포츠강좌이용권 연도별 추진 실적

구분	내용	비고
'09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내 만 7-19세 유 청소년 ○(신청절차) 신청→지자체 선정→이용권 사용→정산(지자체에서 각 사업자별)→관리(지자체, 수기) ○(이용권 내용) 매월 체육활동 수강료 6만원한도 지원과 연 1회 수강에 필요한 용품 지원(65천원 한도) 	신규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내 만 7-19세 유 청소년 ○(신청절차) 홈페이지 신청→자격확인(행복 e음망)→지자체 선정→카드발급→이용권 사용→일괄정산→통계관리(전산) ○(이용권 내용) 매월 체육활동 수강료 6만원한도 지원과 연 1회 수강에 필요한 용품 지원(65천원 한도) 	카드결제방식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내 만 7-19세 유 청소년 ○(신청절차) 홈페이지 신청→자격확인(행복 e음망)→지자체 선정→카드발급→이용권 사용→일괄정산→통계관리(전산) ○(이용권 내용) 매월 체육활동 수강료 7만원한도 지원 * 종목별 차등으로 형평에 문제 대두, 용품지원 폐지 대신 수강료 1만원 상향조정 	카드결제방식
'13 ~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내 만 5-19세 유 청소년(연령 확대) ○(신청절차) 홈페이지 신청→자격확인(행복 e음망)→지자체 선정→카드발급→이용권 사용→일괄정산→통계관리(전산) ○(이용권 내용) 매월 체육활동 수강료 7만원한도 지원 	카드결제방식
'15 ~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만 5-18세 유 청소년(민법개정 반영) ○(신청절차) 홈페이지 신청(실시간자격확인)→지자체 선정→카드발급→이용권 사용→일괄정산→통계관리(전산) ○(지원내용) 매월 체육활동 수강료 7만원한도 지원 	카드결제방식

※ 스포츠관람이용권 이관('13년,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출처: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제5절 생활체육 홍보

생활체육 홍보는 규칙적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유인하고 비참여자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촉진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핵심 홍보 사업은 스포츠7330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는 취지아래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우리사회의 구조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계획적 홍보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스포츠7330 캠페인 전개

1) 스포츠7330 정책 태동 배경

가. 생산적인 여가문화로의 전환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여가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가형태는 TV 시청, 낮잠 등 단순휴식과 외식, 쇼핑 등 소비형 여가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많다. 이에 국민이 여가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적인 여가문화로 전환할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나. 운동방법에 대한 가이드 제시

스포츠 활동이 가장 생산적인 여가문화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보다는 ‘보는 스포츠’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보는 스포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스포츠 활동 직접 참여자의 운동 상해 예방과 참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다. 생활체육 향유계층의 양극화 해소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일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59.5%이다(2016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또한 생활체육 참여계층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경향이 짙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참여를 적극 유인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라. 국민의 체력지수 향상

과학 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 대비 건강수명이 10년 이상 낮아 노인의료비 부담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미래 국가의 주역인 청소년의 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참여유인 홍보정책이 필요하다.

2) 스포츠7330의 과학적 의미

스포츠7330은 스포츠 참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에 기반을 두어 채택된 캠페인이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가 갖는 과학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생리학적으로 우리 인체는 신체활동 등 외부자극에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영향이 지속되는 시간은 약 2일(48시간) 정도이다. 따라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운동을 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을 때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3~4일의 운동이 투자한 시간에 비해 최대의 건강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스포츠활동에 참여해야 운동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선행 연구결과 5~10분 동안 지구성 운동만 하더라도 심폐지구력이 증가하지만 운동효과 측면에서는 30분 이상이 유효하다고 한다. 여기서 유효하다는 말은 투자 시간에 비해 가장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운동에너지 소모와 관련이 있는데 운동할 때 사용되는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기 때문이다. 이 중 탄수화물

은 낮은 중강도 운동 때 주요기질로 작용하지만 그러나 장시간(30분 이상) 운동 시에는 탄수화물 대사로부터 점차 지방으로 기질대사의 의존율이 증가한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동 후 30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방이 분해·소모되는 것이다. 따라서 30분 이상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면 운동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운동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최대운동능력을 100으로 했을 때 약 몇 %의 강도로 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최대운동심박수의 약 60~70% 내외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만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의 경우, 특히 중장년층은 60%이내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0% 정도의 운동강도는 통상 목표 심박수 130회 정도이며, 목표 심박수는 $((220 - \text{본인나이}) \times 0.6)$ 이다. 독일의 생활체육 슬로건인 'Trimming 130'은 바로 심박수를 130회 이상으로 올리는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3) 스포츠7330 정책 경과

정부는 스포츠7330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참여 촉진을 위한 로고 개발과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7330 정책 추진 경과는 <표 2-39>와 같다.

표 2-39. 스포츠7330 정책 추진 경과

정책개발 및 적용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의 운동참여방법에 관한 스포츠 과학적 가이드 마련 · 운동 참여 계몽을 위한 로고 개발 · 스포츠7330 선포식 및 범국민 가두캠페인 전개
다양한 캠페인 전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브랜드로 선정하고 비전 및 미션 설정 · 언론과 연계하여 기획보도 각종 광고, 직접홍보 등 캠페인의 다원화 · 동영상 프로그램 보급,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직접홍보 강화
맞춤형 캠페인 전개 (2007년 이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기법의 다변화(온-오프라인 병행, 틈새광고 시행) · 방송-언론매체를 통한 대상별 맞춤형 캠페인 전개 추진 ·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포츠7330 캠페인' 전개 · 인지도 조사를 토대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캠페인 정책방향을 설정 · 공모전을 통하여 스포츠7330 캠페인에 대한 국민관심 유도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4) 스포츠7330의 단계별 추진전략

스포츠7330은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에 목표를 두고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40% 목표 달성을 위해 스포츠7330 선포식과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40~50% 목표 달성을 위해 홍보기법을 다양화하였고, 3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50% 목표 달성을 위해 스포츠7330 생활화와 브랜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운출생운’(운동화 신고 출근, 생활 속 운동)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 2012년에는 ‘운동은 밥이다!’(꼬박꼬박 밥을 챙기듯이 운동도 생활 속에서 꼬박꼬박 실천해야 하는 것)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13년에는 생활 속 운동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스포츠7330’을 ‘생활체육7330’으로 명칭 변경하여 새 로고를 홍보했다. 이러한 부제 타이틀과 명칭변경은 있으나 스포츠7330 캠페인의 근본적인 정책방향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스포츠7330 단계별 목표와 내용은 <표 2-40>과 같으며, 스포츠7330 대중언론매체 캠페인 실적은 <표 2-41>과 같다.

표 2-40. 스포츠7330 단계별 목표와 내용

개소	단체명	장소	참가인원
목표	생활체육 참여율 40%	생활체육 참여율 40-50%	생활체육 참여율 50%이상
내용	- 스포츠7330 선포식 - 추진전략 설정	- 홍보기법의 다양화 - 스포츠7330 아젠다 형성	- 스포츠7330 정착화 - 캠페인 브랜드화(상표등록)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2. 범국민 생활체육캠페인 전개

정부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자 범국민 생활체육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범국민 생활체육캠페인은 TV·라디오, 주요 일간지 및 기타 간행물, 지하철, 전광판, 인터넷, 극장 등에 생활체육에 관한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고, 생활체육정책,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방법 및 효과, 외국의 사례, 뉴스포츠, 동호

표 2-41. 스포츠7330 대중언론매체 캠페인 실적

<p>1 단계 (2005~20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명칭 확정, 브랜드 알리기 위한 전략수립 ○ 스포츠7330 선포식 및 퍼레이드 전개
<p>2 단계 (2007~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기관과 연계(세미나, 학술대회, 교과과정에 편성) ○ 관공서 및 사회단체 집회 시 스포츠7330 이슈화 ○ 종목별 동영상 프로그램 보급 확산 ○ 지역문화 축제 및 각종 행사시 스포츠7330 캠페인과 연계 ○ 생명보험사 및 기업체와 연계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체계적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 스포츠클럽 활성화 ○ 브랜드 상품개발(캐릭터개발, 브랜드의 상품화 등) ○ 브랜드 해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국제교류, 세계한민족축전 참가자들을 통한 홍보 - 각종 국제대회 시 한국선수단을 통한 노출 - 재외공관, 한인회, 한국관광공사, 문화원 등을 통한 홍보
<p>3 단계 (2011~2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기법의 다변화(온-오프라인 병행, 틈새광고 시행) ○ 방송-언론매체를 통한 대상별 맞춤형 캠페인 지속 추진 ○ 대국민 참여를 통한 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각종 공모전 실시(수기, 사진 등) - SNS 및 블로그 개설 운영 - 명예기자단, 홍보대사 재능기부 실시 ○ Sub 슬로건 '운동은 밥이다!', "스포츠7330" 상표 등록 및 홍보 ○ 각종 포털과 업무제휴를 통한 스포츠 콘텐츠 제공(네이버, 카카오)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인 활동사항 등의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생활체육회(現 대한체육회)를 통해 2001년 8월부터 국민생활체육지를 발간해 왔으며, 2012년 2월부터 '스포츠7330'으로, 2013년 10월부터는 '생활체육7330'으로 잡지명을 변경, 매년 제작하여 지역별,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소식과 생활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추진 현황은 <표 2-42>와 같으며, 스포츠7330 발간 실적은 <표 2-43>과 같다.

표 2-42.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추진 현황

(단위: 회)

구분	보도실적	신문광고	TV광고	라디오광고
2012	1,884	27	20	183
2013	2,138	14	70	90
2014	2,253	-	30	160
2015	3,014	-	30	165
2016	3,479	2	91	300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표 2-43. 스포츠7330 발간 실적

(단위: 부, 회, 면)

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발행부수	96,000		96,000					120,000				120,000
발행횟수	12		12					12				12
간 별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면 수	56		60					60				64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3. 생활체육정보포털 서비스 확대운영

생활체육정보포털 서비스는 생활체육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개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2016년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 정보수집(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공체육단체 등 타기관 홈페이지의 생활체육정보 수집 및 정보제공), 동호인클럽 운영 및 관리(동호인 클럽별 커뮤니티를 통해 생활체육정보포털에서 클럽홍보, 클럽원모집, 클럽원관리, 대회참가일 정 및 공지 등의 기능 구현), 체육시설정보(생활체육광장, 스포츠클럽, 학교체육시설 등 정보 제공), 생활체육콘텐츠 확대(생활체육강습회, 스포츠버스, 푸드트럭, 대외활동(명예기자단, 자원봉사단), 체육지도자 자격증, 국제교류 등 콘텐츠 확대), 통합계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생활체육서비스 간의 통합계정 제공으로 편의성 증대, 지역, 연령, 성별, 관

심종목에 따라 맞춤형 생활체육정보 제공)을 하였다.

생활체육정보포털 서비스 회원은 총 17,943명이다.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방문자는 203,180명으로 월평균 18,471명이 방문하였다. 총 생활체육강습회 1,148개소 중 강습회 신청자가 21,337명이었으나 실제 참여인원은 8,088명으로 나타났다. 향후 생활체육정보포털 서비스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2017년 3월부터 모바일 웹을 오픈하였으며, 맞춤형 서비스 확대 실시 및 디자인 개선 그리고 생활체육종목소개 및 강습동영상 제작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3

2016 SPORT WHITE PAPER

학교체육

제1절 학교체육 전개

제2절 학교체육 현황

제3절 일반학생 지원 사업

제4절 학생선수 지원 사업

제1절 학교체육 전개

학교체육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체육교과는 1900년대 근대식 학교가 도입되면서 인간을 중심으로 삼는 교육을 실시할 때 지육(智育), 덕육(德育)과 함께 체육(體育)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교육론에서 제기되어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학교체육을 독립된 교과목으로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편성된 학교체육의 교과명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불리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체조’,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체련’으로 불리다가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후인 1950년대부터는 ‘체육(體育, Physical Education)’으로 정한 후 지금까지 같은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다. 학교체육에 관한 교과명이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것은 각 시대가 체육의 목적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인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불린 ‘체조’ 및 ‘체련’이라는 교과명은 체육을 통해 건강한 국민을 양성하고 전투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서 도구적 목적으로 체육을 강조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의 ‘체육’이라는 교과명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신체와 정신, 양측의 모든 측면에서 각각 조화로운 발달을 의도하고 있는 신념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종전의 ‘체조’ 및 ‘체련’에서 나타난 도구적 목적으로 강조한 체육에서 벗어나 ‘전인적 인간 육성’이라는 참된 교육적 목적을 회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부처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교육 부처 존치기, 체육 부처 이양기, 양 부처 협력기 이상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부처 존치기는 해방 이후 제4공화국까지로 교육 부처에서 학교체육을 전담하고 있던 시기이다. 체육 부처 이양기는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을 거쳐 문민정부 초기까지로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등 체육 전담 부처가 신설되어 학교체육 업무가 종전의 교육부에서 체육 전담 부처로 이관된 기간을 말한다.

1990년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변모했다. 그 대표적 정책의 산물이 1997년 12월 30일에 발표된 제7차 교육과정이었다. 제7

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체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다양성과 학교 책임자의 권한 강화 등이다.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는 학생과 주민과의 체육시설 공유를 통해 생활체육과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에 문화관광부(現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現 교육부)는 ‘체육분야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여 상호협력의 일환으로 학교 내의 잔디운동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청소년체력증진, 스포츠클럽제도 도입, 학교 내 체육활동 기회 확대 등을 공조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체육참여 생활화에 초점

표 3-1. 정부 내 학교체육 담당부처 변천

구분	교육부처 존치기	체육부처 이양기	양부처 협력기	
시기	해방 이후 → 4공화국 (1946.07.10-1982.03.20)	5공화국 → 6공화국 → 문민정부초기 (1982.03.20-1994.05.16)	문민정부 → 현재 (1994.05.16-현재)	
세 부 내 용	1946 문교부 교화국 체육과	1982 체육부 체육진흥국 학교체육과	교육부 1994.05.16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학교 보건체육과 1999.01.29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 2001.02.0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학교정 책과 2005.03.0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체육보건급식과 2008.03.01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2012.08.08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2013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문화체육관광부 1994.05.16 문화체육부 생활체육과 1999.05.24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과 2004.11.18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과 2009.05.04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2013.12.0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2016.03.2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2016),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16)

을 두고 정책이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신나는 한국인,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를 주제로, 즐기는 학교체육 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체육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창의적 교육에서의 학교체육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체육전담교사,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우수 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장 체육활동여건 개선으로 학교정규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한편, 2013년 1월 27일에 시행된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이 경시되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교체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부 추진내용은 체육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여학생, 유아·청소년,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정기적 학교체육행사 개최, 학교 간 체육교류 활성화, 체육교원 직무연수 강화, 학생건강 체력평가 저조자 대책강구 등이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일반학생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학생선수는 일정 기준의 학력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했다. 또한 학교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체육 교재 및 용품, 스포츠강사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은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초중등학교 체육 전문인력 배치, 중등학교 체육시수 확대, 담당 교원 전문성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리그 확대, 여학생 체육 활동 참여 촉진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둘째,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권 및 학습권 보호, 학교운동부의 운영 투명화, 체육중점학급 운영 등이 있다. 셋째, 학교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그 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학생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학교 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그 요체이다.

2016년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발표한 학교체육에 관한 추진 목표는 학생의 ‘꿈’과 ‘끼’를 실현시키는 행복교육의 토대로서 학교체육교육을 활성화하는데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체육활동 내실화, 1학생 1스포츠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체육을 내실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며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5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5개 주요 추진과제는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1학생 1스포츠 활동),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지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체력 강화, 학교체육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대국민 인식제고이다.



그림 3-1. 2016 학교체육 정책목표 · 추진과제(교육부, 2016)

제2절 학교체육 현황

1. 체육교육과정

체육교육과정은 7번에 걸친 전면 개정과 이후 수시 개정으로 사회의 변화에 맞게 조정되어 왔다. 체육교육 변화과정에 대한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54년까지는 미흡한 여건과 전쟁 발발 등 사회적 상황으로 체계적 교육과정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체육은 교과 선택에서 국민학교(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교과이고, 교과의 명칭이 일제강점기 ‘체조’ 라는 명칭에서 초등학교 ‘보건’, 중학교 ‘체육·보건’, 고등학교 ‘체육’으로 명칭 정립이 이루어졌다.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의 체육교과 명칭은 초등학교에서는 ‘보건’, 중등학교에서는 ‘체육’ 이었다. 보건교과 및 체육교과의 목적은 3가지 목표를 정하였다. 신체적 발달의 목표, 사회적 발달의 목표, 위생 및 민주생활을 위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또한 중학교부터 남녀별로 교육내용을 다르게 제시하여 학년별 단계적 특성도 부분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목표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목표에 제시된 핵심어들은 놀이, 운동, 스포츠, 건강, 표현, 보건, 안전, 레크리에이션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제1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신체 활동을 유형별로 놀이, 운동, 스포츠, 표현 등으로 세분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는 체육 지도내용 및 학년별 체육목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였다. 세부내용은 운동을 통한 체력향상과 운동기능 습득, 경기규칙과 질서준수, 보건 및 체육활동에 관한 기초지식과 실천을 통한 안전한 생활능력과 태도함양 등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체육지도상의 유의점에 관해 내용 영역별로 제시하였으며, 고등학교 체육실기 필수종목과 선택종목의 남녀별 비율을 제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는 후속 체육교육과정 내용 영역 설정에 모체가 되는 기본 체제를 확립한 시기로 국민학교(現 초등학교)의 경우 체육내용 영역이 세분화되었고,

새로운 개념으로 기본 운동영역이 도입되었다. 이는 움직임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평생 스포츠 및 야외 활동이 새롭게 등장하고 ‘지도’와 ‘평가’를 구분하여 독립적인 항목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는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육체계를 설정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 이루어진 교육개정과 유사하게 ‘지도’와 ‘평가’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제시하였으나, ‘평가’는 보다 구체적이었다.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는 기존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의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전환하였다. 이 시기에서는 학생의 자율적 탐구능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중시하여 운동기능 숙달보다는 운동에 대한 개인적 능력과 개인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운동 기초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제7차 교육과정기(1997~2007)는 체육이 종합교과임을 강조하며 신체활동을 위한 교육, 신체활동에 관한 교육,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을 지향하였다. 이는 신체활동을 그 자체로 배워 신체의 이해와 건강을 도모하고, 신체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덕목을 함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체육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시하여 체계화하였다. 이에 따라 체육교사는 학생 특성을 이해하여 일반학생의 개인차뿐만 아니라 특수학생과 혼성 학급에서 남녀의 차를 고려하여 배려하는 교수·학습방법을 습득해야 했다. 더불어 평가도 교수·학습방법과 마찬가지로 제6차 교육과정기에 이루어진 교육개정보다 체계화되었다.

이상과 같은 7차에 걸친 개정에 이어 2007년에 이루어진 수시개정에서는 체육교육과정에 가치개념을 도입하였다. 가치의 기본내용은 기존 운동기능 중심교육에서 체육을 통한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이전보다 일선 체육교사의 자율권과 책무를 강화하였다. 개정된 체육교육과정은 학생에게 학년별로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운동기능평가 결과보다는 운동 성취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체육교과 교육과정의 개정은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이어졌다. 2009년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교과 교육과정은 2007년 개정의 정신을 이어받으며 부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창의·인성’을 더욱 가중하는 교육과정으로 변모되었다. 2009년 개정에서는 체육교과의 성격 향이 ‘목표’ 목

차로 조정되었다. 체육교과 차원에서는 내용 요소를 재정립하고, 2007년 개정 체육교과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9년 개정은 2007년 개정의 연장선에 있으며 거의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다.

2015년에 개정된 체육교과 교육과정에서는 2009년에 개정하면서 ‘목표’로 통합되었던 ‘성격’을 다시 분리하였다. 체육교과의 성격은 ‘체육교과의 본질과 역할’, ‘체육교과의 역량’, 체육교과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2015년에 개정된 체육교과의 성격에는 기존의 교과 성격에 ‘체육교과의 역량’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체육 교과를 통해 길러야 할 ‘교과 역량’을 제시함으로써 교과 교육에서 지향점을 삼을 인간상, 체육과 본질적 측면인 신체 활동, 신체 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목표와 내용 구성 원리를 종합적으로 나타

표 3-2. 초·중·고등학교 체육교과 명칭 및 이수단위 변천

구분	제1차 (1954)	제2차 (1963)	제3차 (1973)	제4차 (1981)	제5차 (1987)	제6차 (1992)	제7차 (1997)	2007개정	2015개정
초등학교	보건 (3)	체육 (3)	체육 (2~3)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7)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중학교	체육 (2)	체육 (2-4)	체육 (3)	체육(3)	체육(3)	체육(3)	1.2학년 체육(3) 3학년 체육(2)	1.2학년 체육(3) 3학년 체육(2)	1.2학년 체육(3) 3학년 체육(2)
							1학년 필수: 체육(4단위) 2-3학년 선택: 체육과건강 (4단위) 체육이론 (4단위) 체육실기 (4단위 이상)	운동과 건강 생활 (4단위), 스포츠 문화 (4단위), 스포츠 과학 (6단위)	1학년 필수: 스포츠와 생활 (4단위) 2-3학년 선택: 스포츠와 문화 (4단위) 체육이론 (4단위) 체육실기 (4단위 이상)
고등학교	체육 (24단위)	체육 (24단위)	체육 (14~18 단위)	체육: 필수 (6-8단위) 체육: 선택 (8-10단위)	체육: 필수 (6-8단위) 체육: 선택 (8-10단위)	체육: 필수 (6-8단위) 체육: 선택 (8-10단위)	1학년 필수: 체육(4단위) 2-3학년 선택: 체육과건강 (4단위) 체육이론 (4단위) 체육실기 (4단위 이상)	운동과 건강 생활 (4단위), 스포츠 문화 (4단위), 스포츠 과학 (6단위)	1학년 필수: 스포츠와 생활 (4단위) 2-3학년 선택: 스포츠와 문화 (4단위) 체육이론 (4단위) 체육실기 (4단위 이상)

※ 주 :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함
 ※ 주 : 과목명에 붙은 괄호는 주당 편성 시간
 ※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2016)

내고 있다. 또한 체육교과의 역량은 신체활동을 통해 가치를 체험하고, 가치의 내면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포괄하는 총체적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1) 초등학교 체육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는 특히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등을 계기로 안전의식 및 안전 기초소양을 함양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이다. 안전교육 교육과정을 개정하려는 방향은 안전 및 재난대비 교육을 위한 주요 학습내용을 체계화하고, 이를 현행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과 비교하여 누락되거나 미흡한 안전교육 내용요소를 확인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에 ‘안전생활’교과가 신설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부

표 3-3.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편제와 체육수업 이수단위

구분	현행			수정안			
	1-2학년	3-4학년	5-6학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과 (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256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바른생활 128	204	340
	과학/실과	바른생활 128	204	340	슬기로운 생활 192	204	204
	체육	슬기로운 생활 192	272	272	즐거운 생활 384	272	272
	예술(음악/미술)	즐거운 생활 384	136	204	안전생활 128	136	204
	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1,680 → 1,808	1,972	2,176	

※ 주 : 초등 1-2학년(군) 수업 시수를 주당 1-2시간 증배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정하거나 안전생활' 등 안전교육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전담교사제 확대를 통한 담임교사 업무가중 해소, 놀이와 휴식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추진)

※ 출처 : 교육부(2016)

더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체육교과 내에 ‘안전생활’단원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CPR) 등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모든 교과교육에서는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비 기초소양 함양’에 관한 내용을 충실하게 지도해야 하며, 교과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더불어 학교생활 전반을 통하여 안전훈련(소방훈련 등) 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가 추진 중이다.

2) 중학교 체육교육과정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의 신체활동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신체활동 가치의 심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적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중학교 체육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근거가 제시되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한 교육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학기제 편성 및 운영방향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지침을 제시하였다.

표 3-4.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편제와 체육수업 이수단위

구분	현행		수정안	
	1-3학년		1-3학년	
교과 (군)	국어	442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510	
	수학	374	374	
	과학/기술·가정	646	680	
	체육	272	272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340	340	
	선택	204	170	
	창의적 체험활동	306	306	
총 수업시간 수	3,366	3,366		

※ 선택교과의 정보과목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에 필수과목으로 포함(34시간)

※ 선택교과군의 시간배당기준 170시간은 감축할 수 없음

※ 출처 : 교육부(2016)

둘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합리적 운영방안이 제시되었다. 2012년 2학기부터 시행된 연간 34~68시간(3년간 총 136시간)을 편성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여 자유학기 동안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활동’운영 개선방안을 ‘창의적 체험활동’운영 개선방안과 연계하였다.

셋째, 중학교 ‘집중이수제’를 유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집중이수제’는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적정화하게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이를 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나 효과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3)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는 공통과목을 신설하여 학생 기초소양과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적성 및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2015년 개정 내용 중 고등학교 체육교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다양한 체육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는 학생이 세분화된 과목 이수를 통해 체육에서 다양한 소질과 재능을 함양하도록 양성되는데 초점을 둔 것이었다. 둘째,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방식이 조정되었다. 이는 교과영역별 필수이수단위 기준(예: 국어·수학·영어 25, 탐구 15, 체육 10, 음악/미술 5, 생활교양 10)을 폐지하고, 총 이수단위(84~94)만을 지정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체육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체육교과목에 대한 세부방안이 수립되었다. 제안된 내용은 체육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이론 지식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3-5.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제와 체육수업 이수단위

개정 전			개정 후		
교과영역	교과(군)	필수이수단위	교과(군)	필수이수단위	공통과목(단위)
기초	국어	10	국어	10	국어(8)
	수학	10	수학	10	수학(8)
	영어	10	영어	10	영어(8)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0	사회(역사포함)/도덕	6(한국사)	한국사(6)
	과학	10		10	통합사회(8)
체육 예술	체육	10	과학	12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예술(음악/미술)	10	체육	10	-
생활 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예술(음악/미술)	10	-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
소계		86	소계	94	
학교자율과정		94	학교자율과정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단위		204	총 이수단위	204	

※ 출처: 교육부(2016)

표 3-6. 2015년 개정 고등학교 체육 보통교과

교과(군)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심화 선택
체육	체육, 체육과 건강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와 문화

※ 출처: 교육부(2016)

표 3-7. 2015년 개정 고등학교 체육 전문교과

교과(군)	과목			
체육계열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육상 운동	체조 운동
	수상 운동	개인 및 대인 운동	단체 운동	체력 운동
	스포츠경기 기술	스포츠경기 체력	코칭론	스포츠경영·행정
	체육 전공 실기	전공 지도 실습		

※ 출처: 교육부(2016)

2. 체육 담당교원

1)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원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통하여 양질의 체육수업을 지도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6학급(1,2학년 제외)이상 모든 초등학교에 전담교원 1명 이상을 배치할 예정이다. 체육수업 시수가 최대 15시간인 5학급 이하(초등학교 3~6학년 학급 수)인 학교의 경우 체육 전담교사는 다른 교과에의 담당을 허용한다. 체육전담교사는 신규교사나 기존 교사 중 체육교과 전문성(교대 체육심화과정 이수자, 체육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 이수자, 체육부장 및 체육전담교사 경력자)을 가진 교사를 우선 지정하되, 그 외 체육전담교사로 지정된 교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체육교과 연수과정 이수를 권장한다.

표 3-8.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원 배치 현황

(단위: 교, 명)

연도	전체학교 수	배치학교 수	배치인원
2013	5,913	2,713	3,940
2014	5,934	3,468	4,888
2015	5,978	3,049	4,794
2016	6,001	3,474	5,192

※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연보(2016), 교육부 내부자료(2016)

2) 중·고등학교 체육교원

2016년 중·고등학교 체육교원은 총 15,577명으로 집계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총 15,577명 중 남교사가 12,986명으로 2015년도 대비 증가세(373명)를 보였고, 여교사는 2,591명으로 2015년도 대비 증가세(56명)를 보였다.

2016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설립별 체육교원 수는 총 15,577명 중 국립중학교에 32명, 공립중학교에 7,201명, 사립중학교에 1,479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국립 고등학교에 52명, 공립 고등학교에 4,031명, 사립 고등학교에 2,782명이었다.

표 3-9. 중·고등학교 성별 체육교원 현황

(단위: 명)

연도	남			여			합계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2013	6,749	5,216	11,965	1,555	750	2,305	8,304	5,966	14,270
2014	7,194	5,501	12,695	1,644	799	2,443	8,838	6,300	15,138
2015	6,996	5,617	12,613	1,645	890	2,535	8,641	6,507	15,148
2016	7,069	5,917	12,986	1,643	948	2,591	8,712	6,865	15,577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2016)

표 3-10. 중·고등학교 성별 체육교원 현황

(단위: 명)

연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중	고	소계	중	고	소계	중	고	소계	
2013	30	39	69	6,783	3,452	10,235	1,491	2,475	3,966	14,270
2014	31	39	70	7,299	3,667	10,966	1,508	2,594	4,102	15,138
2015	30	45	75	7,129	3,811	10,940	1,482	2,651	4,133	15,148
2016	32	52	84	7,201	4,031	11,232	1,479	2,782	4,261	15,577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2016)

3. 학교체육시설 현황

1) 학교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학교체육시설은 학생의 체육활동 공간일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체육 시설기반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학교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대표적 사업으로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중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 '인조잔디운동장 재조성',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사업', '탈의실 설치 확충' 등이 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은 운동장의 바닥을 첨단소재로 바꾸는 사업으로서, 학교운동장을 잔디(천연 및 인조)운동장, 우레탄 시설(다목적구장, 트랙 등), 흙 운동장(황토, 마사토 등)으로 조성하였다. 이 사업에 따라 2016년에는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11,032개

교 중 분교를 포함한 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잔디운동장 2,864곳, 운동장 탄성시설 5,252곳, 실내 체육관 조성 11,032곳을 보수 및 개선하였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은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현대화에 목적을 두고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중점사항은 기존 흙 운동장을 잔디(천연·인조)운동장, 우레탄 시설(다목적구장, 트랙 등)으로 조성하고,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운동장 조성 후 시설관리(인조잔디 유지·보수 및 천연 잔디 관리 등) 및 재조성 등 사후관리는 학교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에 한하여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시·도교육청 및 사업시행자와 각각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교육지원청은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을 건립·운영하며, 사업시행자는 학교운동장 조성을 맡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단순히 시설 나눠 쓰기가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학교체육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되었다.

특히,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 운영을 권장하고, 실내

표 3-11. 학교체육시설 설치현황

(단위: 교, 개소)

구분						
		초	중	고	특수	합계
잔디	인조	786	553	523	19	1,881
	천연	491	200	230	62	983
	소계	1,277	753	753	81	2,864
탄성 (우레탄) 시설	구장	829	899	820	28	2,576
	트랙	1,252	670	711	43	2,676
	소계	2,081	1,569	1,531	71	5,252
체육관	전용(경규)체육관	296	224	308	12	840
	강당겸용체육관	3,898	2,022	1,726	118	7,764
	간이체육실	1,179	802	402	45	2,428
	소계	5,373	3,048	2,436	175	11,032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16)

체육실 및 탈의실을 확충하였다. 탈의실은 현재 중고등학교 미설치교(1,126교)를 우선으로 설치를 지원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00개교씩 지원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실은 체육관 미설치교(4,833교)를 우선 설치를 지원하고, 탈의실과 동일하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00개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2)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

학교체육시설은 학생 체육활동의 물적 토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서도 기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중요한 체육 인프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체육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2016년에 초등학교 125개, 중학교 50개, 고등학교 45개 총 210개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였다.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리매니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업 운영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개소별 사업운영 개선 활동을 유도하였다.

표 3-12.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선정 구분

구분	합계	학교급별			설립별	
		초	중	고	공립	사립
개소	210	125	50	35	192	18

표 3-13.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지역별 현황

시도	시군구	학교명	비고	시도	시군구	학교명	비고
서울 (3)	금 천 구	문성중	공립	대구(7)	달 서 구	신서초	공립
	중 로 구	청운초	공립		달 서 구	이곡초	공립
	강 남 구	양전초	공립		달 성 군	화동초	공립
부산 (4)	북 구	구남중	공립		서 구	이현초	공립
	동 래 구	동신중	공립		달 성 군	현풍초	공립
	동 구	부산컴퓨터과학고	사립		동 구	방촌초	공립
	부산진구	초읍중	공립		달 서 구	장기초	공립

시도	시군구	학교명	비고	시도	시군구	학교명	비고	
인천(3)	남 동 구	남동초	공립	경기(31)	의정부시	송산초	공립	
	부 평 구	부평남초	공립		이 천 시	백사중	공립	
	부 평 구	부평서여중	공립		안 산 시	삼일초	공립	
광주(2)	동 구	서석초	공립		평 택 시	복창초	공립	
	남 구	무진중	공립		평 택 시	송북초	공립	
대전(1)	서 구	대전산업정보고	공립		시 흥 시	연성초	공립	
	중 구	무룡초	공립		시 흥 시	배곧고	공립	
	중 구	학성초	공립		남양주시	천마중	공립	
울산(10)	울 산	경의고	사립		오 산 시	원당초(전 화성초)	공립	
	울 산	남창중	공립		수 원 시	광고초	공립	
	울 산	두서초	공립		화 성 시	동탄중앙초	공립	
	울 산	삼신초(전 아음초)	공립		인 제 군	인제중	공립	
	울 산	언양초(전 언양중)	공립		철 원 군	철원중	공립	
	울 산	중남초	공립		태 백 시	황지중	공립	
	울 산	호연초	공립		철 원 군	김화공고	공립	
	울 산	상안초	공립		철 원 군	동송초	공립	
	세종(1)	세 종 시	연동초		공립	철 원 군	철원여중고	공립
		시 흥 시	배곧중		공립	철 원 군	김화고	공립
이 천 시		증포중(전 사동중)	공립		철 원 군	신철원초	공립	
경기(31)	부 천 시	소사중	공립		철 원 군	청양초	공립	
	안 성 시	내혜홀초	공립		철 원 군	묘장초	공립	
	안 성 시	서운중	공립		인 제 군	인제고	공립	
	안 성 시	양성중	공립		철 원 군	용정초	공립	
	여 주 시	경기관광고	사립		철 원 군	와수초	공립	
	여 주 시	여강고	사립		정 선 군	화동초	공립	
	여 주 시	여주고	공립		철 원 군	서면초	공립	
	여 주 시	여흥초	공립		정 선 군	고한중고	공립	
	시 흥 시	배곧초	공립		태 백 시	함태초	공립	
	시 흥 시	송운중	공립		정 선 군	증산초	공립	
	시 흥 시	시흥초	공립		영 동 군	추풍령중	공립	
	시 흥 시	장곡중	공립		제 천 시	명지초	공립	
	양 주 시	가남초	공립	제 천 시	화산초	공립		
	부 천 시	동곡초	공립	충 주 시	대원고	사립		
	부 천 시	도원초	공립	옥 천 군	옥천상업고	공립		
	부 천 시	부천여중	공립	옥 천 군	옥천여중	공립		
	안 양 시	안양중	공립	옥 천 군	이원중	공립		
	안 성 시	죽산초(전 비룡초)	공립	옥 천 군	안내초	공립		

시도	시군구	학교명	비고	시도	시군구	학교명	비고
충북	충 주 시	금릉초	공립	전북(16)	고 창 군	고창초	공립
	옥 천 군	장야초	공립		남 원 시	남원중앙초	공립
	청 주 시	창리초	공립		순 창 군	순창초	공립
	충 주 시	대림초	공립		완 주 군	삼례초(전 이성초)	공립
	제 천 시	남당초	공립		익 산 시	이리북일초	공립
	제 천 시	제천동중	공립		진 안 군	진안초	공립
	청 주 시	율량중	공립		고 창 군	고창중	공립
	충 주 시	목행초	공립		익 산 시	함열고	공립
	충 주 시	대소원초	공립		익 산 시	원광중	사립
충남(21)	서 산 시	부춘중	공립	전남(28)	강 진 군	강진동초	공립
	서 산 시	인지초	공립		강 진 군	중앙초	공립
	태 안 군	근흥초	공립		장 흥 군	부산초	공립
	태 안 군	안면고	공립		장 흥 군	용산초	공립
	서 산 시	서령중	공립		장 흥 군	장흥서초	공립
	서 산 시	서산초	공립		여 수 시	소호초	공립
	공 주 시	효포초	공립		여 수 시	문수중	공립
	부 여 군	부여정보고	공립		진 도 군	진도초	공립
	부 여 군	은산중	공립		나 주 시	나주중	공립
	청 양 군	정산초	공립		영 암 군	영암초	공립
	태 안 군	만리포고	공립		강 진 군	강진중	공립
	태 안 군	방포초	공립		곡 성 군	고달초	공립
	태 안 군	태안중	공립		나 주 시	산포초	공립
	태 안 군	태안초	공립		목 포 시	문태중고	사립
	청 양 군	합천초	공립		목 포 시	삼학초	공립
	태 안 군	창기초	공립		진 도 군	진도고	사립
	태 안 군	태안여중	공립		광 양 시	광양서초	공립
	서 산 시	대산중(전 서산여중)	사립		영 암 군	영암여고	사립
	예 산 군	중앙초(전 덕산초)	공립		광 양 시	마로초	공립
	아 산 시	금곡초	공립		광 양 시	광양중	공립
	서 산 시	운산초	공립		곡 성 군	죽곡초	공립
전북(16)	군 산 시	군산동초	공립	곡 성 군	한울고	공립	
	남 원 시	고흥초	공립	장 흥 군	장평초	공립	
	순 창 군	구림초중	공립	장 흥 군	장흥여중	공립	
	순 창 군	동계초	공립	영 광 군	영광초	공립	
	진 안 군	부귀중	공립	영 광 군	영광여중	사립	
	김 제 시	금산중고	공립	영 광 군	영광고	공립	
	순 창 군	순창제일고	공립	영 암 군	삼호중앙초	공립	

시도	시군구	학교명	비고	시도	시군구	학교명	비고
경북(24)	성 주 군	성주중	공립	경남(8)	밀 양 시	미리별초	공립
	칠 곡 군	약목초	공립		고 성 군	하이초	공립
	영 주 시	영주고	사립		하 동 군	하동여고	사립
	영 주 시	영광고	사립		하 동 군	하동초	공립
	영 천 시	영천초	공립		산 청 군	산청초	공립
	상 주 시	화령초	공립		사 천 시	노산초	공립
	상 주 시	증모중고	공립		고 성 군	동해초	공립
	상 주 시	사벌초	공립		사 천 시	삼천포여중	사립
	문 경 시	점촌중	사립	제주(16)	제 주 시	오름중	공립
	의 성 군	의성초	공립		제 주 시	외도초	공립
	성 주 군	중앙초	공립		제 주 시	제주북초	공립
	칠 곡 군	동명초	공립		서귀포시	서호초	공립
	봉 화 군	내성초	공립		서귀포시	표선고	공립
	경 주 시	월성초	사립		서귀포시	표선초	공립
	울 진 군	온정중	공립		서귀포시	안덕중	공립
	영 주 시	영주제일고	공립		서귀포시	성산중	공립
	경 산 시	평산초	공립		서귀포시	남원초	공립
	안 동 시	영가초	공립		서귀포시	동남초	공립
	의 성 군	안계고	공립		서귀포시	대정중	공립
	상 주 시	용운중고	공립		서귀포시	대정초	공립
	상 주 시	화동초	공립		서귀포시	안덕초	공립
	경 주 시	아화초	공립		서귀포시	위미중	공립
	안 동 시	영호초	공립		서귀포시	중문고	공립
	의 성 군	의성고	사립		제 주 시	이도초	공립

4. 학생건강

1) 학생체력검사

학생체력검사는 1951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최초 측정종목은 달리기, 턱걸이(남)/매달리기(여), 넓이 뛰기, 던지기, 나르기 등 5개였으나, 1962년에는 나르기를 제외한 4개로 축소되었다. 이후 1969년 국제체력검사표준위원회에서 권고한 시안이 1971년에 마련됨에 따라 1972년 5월 1일에는 학교신체검사규정(문교부령 제294호) 개정령이 발

표되었다. 개정령에 따라 학생체력검사는 턱걸이(남)/매달리기(여), 윗몸 앞으로 굽히기, 도움닫기멀리뛰기, 달리기, 왕복달리기, 던지기, 오래달리기, 악력 등 8개의 종목으로 늘어났고, 악력 측정치를 제외한 7개 종목 기록은 고입 내신에 반영하였다. 위와 같은 종목은 1973년 「대학입시 예비고사령」 제12조에 따라 대학입시를 위한 내신 성적에 체력장이 반영되었다. 1979년 체력장은 100m, 제자리멀리뛰기, 턱걸이(남)/팔굽혀매달리기(여), 윗몸일으키기, 던지기 등 5개로 줄었다. 1983년에는 오래달리기가 추가됐으나 1991년 4월 2일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대학입시 및 내신 반영 형태의 체력검사 제도는 1993년에 폐지되었다.

2) 학생건강체력검사

교육부는 2005년 5월 체육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한 후, 학생건강체력검사(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PAPS)계획을 구축하여 보급하였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2009년도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도에 중학교, 2011년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학생건강체력검사란 학생 건강·체력 평가제로 기존의 학생신체능력검사를 건강·체력 중심으로 개선한 것이다. 운동기능 중심의 평가에서 건강·체력 중심의 종합 체력 평가 및 운동 처방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측정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선택)이며, 측정 횟수는 연 1회이다. 측정 시기는 보통 5월 중에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별로 매년 7월과 9월, 11월 등에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심폐지구력, 근력·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비만 등 학생 개인의 건강·체력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폐지구력은 왕복 오래달리기(폐이서), 1600(1200)m 달리기, 스텝검사, 근력·근지구력은 (무릎대고)팔굽혀펴기, 윗몸말아올리기, 악력검사, 유연성은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종합유연성검사, 순발력은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비만은 체질량지수(BMI)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체지방률 평가, 심폐지구력 정밀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다

가. 초등학생 건강체력검사

2016학년도 학생건강체력검사 초등학교 5~6학년 대상학생은 총 830,236명이었다. 이 중 1등급 인원은 50,402명, 2등급 인원은 350,787명, 3등급 인원은 379,224명, 4등급 인원은 46,853명, 5등급 인원은 2,970명이었다. 2015년 대비 검사인원과 체력우려학생으로 분류되는 4~5등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초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단위: %, 명)

구분		1등급 (100~80)		2등급 (79~60)		3등급 (59~40)		4등급 (39~20)		5등급 (19~0)		검사 인원수	
학년	성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6	5	남	11,183	5.4	80,856	39.2	99,453	48.2	14,104	6.8	913	0.4	206,509
	여	11,557	6.0	88,161	46.0	83,482	43.5	8,096	4.2	557	0.3	191,853	
2015	6	남	15,024	6.7	90,410	40.3	102,925	45.9	14,779	6.6	952	0.4	224,090
	여	12,638	6.1	91,360	44.0	93,364	44.9	9,874	4.8	548	0.3	207,784	
2015	5	남	12,397	5.7	90,187	41.2	103,882	47.4	11,883	5.4	749	0.3	219,098
	여	12,495	6.2	96,125	47.3	86,886	42.8	7107	3.5	433	0.2	203,046	
2015	6	남	16,132	7.0	97,721	42.7	102,856	45.0	11,559	5.0	725	0.3	228,993
	여	13,213	6.3	96,457	45.7	93,048	44.1	7,855	3.7	457	0.2	211,030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16)

나. 중학교 건강체력검사 결과

2016학년도 학생체력건강검사 대상학생은 총 1,376,202명이었다. 이 중 1등급 인원은 132,310명, 2등급 인원은 622,646명, 3등급 인원은 519,161명, 4등급 인원은 94,640명, 5등급 인원은 7,445명이었다.

다. 고등학교 건강체력검사 결과

2016학년도 학생체력건강검사 대상학생은 총 1,674,877명이었다. 이 중 1등급 인원은 94,501명, 2등급 인원은 637,119명, 3등급 인원은 730,123명, 4등급 인원은 193,632명, 5등급 인원은 19,502명이었다.

표 3-15. 중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단위: %, 명)

구분		1등급 (100~80)		2등급 (79~60)		3등급 (59~40)		4등급 (39~20)		5등급 (19~0)		검사 인원수	
학년	성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6	1	남	17,214	7.4	88,480	38.2	100,607	43.4	23,532	10.2	1,940	0.8	231,773
		여	20,048	9.4	106,523	50.0	75,955	35.7	9,850	4.6	645	0.3	213,021
	2	남	24,062	10.5	94,981	41.6	88,129	38.6	19,283	8.5	1,654	0.7	228,109
		여	19,931	9.6	104,135	50.2	73,152	35.3	9,558	4.6	658	0.3	207,434
	3	남	28,019	10.8	111,884	43.2	96,770	37.4	20,416	7.9	1,705	0.7	258,794
		여	23,036	9.7	116,643	49.2	84,548	35.7	12,001	5.1	843	0.4	237,071
2015	1	남	16,535	7.3	88,938	39.5	97,053	43.1	21,003	9.3	1,652	0.7	225,181
		여	18,894	9.2	102,864	50.1	73,609	35.8	9,405	4.6	581	0.3	205,353
	2	남	25,017	9.8	107,281	42.0	100,410	39.3	20,973	8.2	1,575	0.6	255,256
		여	20,978	8.9	116,635	49.6	85,596	36.4	11,123	4.7	678	0.3	235,010
	3	남	28,596	9.9	125,618	43.3	112,378	38.7	21,888	7.5	1,634	0.6	290,114
		여	23,903	9.0	129,399	48.9	97,111	36.7	13,308	5.0	878	0.3	264,599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16)

표 3-16. 고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단위: %, 명)

구분		1등급 (100~80)		2등급 (79~60)		3등급 (59~40)		4등급 (39~20)		5등급 (19~0)		검사 인원수	
학년	성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고	1	남	19,639	6.9	116,575	40.8	117,843	41.2	29,351	10.3	2,631	0.9	286,039
		여	18,183	6.9	114,162	43.6	108,413	41.4	19,665	7.5	1,275	0.5	261,698
	2	남	14,618	5.0	105,312	36.3	126,717	43.7	39,074	13.5	4,400	1.5	290,121
		여	16,711	6.3	104,514	39.5	115,534	43.7	25,712	9.7	1,935	0.7	264,406
	3	남	10,487	3.5	94,465	31.9	136,156	45.9	48,478	16.4	6,737	2.3	296,323
		여	14,863	5.4	102,091	37.0	125,460	45.4	31,352	11.3	2,524	0.9	276,290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16)

3) 건강체력 우려학생 현황

2016년 초등학교 중 저체력 학생은 3.0%, 비만학생은 5.90%, 두 가지(저체력+비만)를 모두 지닌 학생은 1.20%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저체력 2.47%, 비만학생은 5.23%, 두 가지를 모두 지닌 학생은 1.27%이다. 고등학생은 저체력 4.30%, 비만학생은 6.87%, 두

가지를 모두 지닌 학생은 2.33%이다.

표 3-17. 건강체력 우려학생 현황

(단위: %, 명)

학교 구분	학년	저체력				비만				저체력+비만			
		남	여	전체	비율	남	여	전체	비율	남	여	전체	비율
초	5	15,017	8,653	23,670	2.9	26,093	19,802	45,895	5.5	6,173	2,634	8,807	1.1
	6	15,731	10,421	26,152	3.1	31,554	21,156	52,710	6.3	7,247	3,282	10,529	1.3
	소계	30,748	19,074	49,822	3.0	57,647	40,958	98,605	5.90	13,420	5,916	19,336	1.20
중	1	25,472	10,495	35,967	2.6	38,919	21,113	60,032	4.4	13,109	3,714	16,823	1.2
	2	20,937	10,216	31,153	2.3	44,914	24,283	69,197	5.0	12,569	4,229	16,798	1.2
	3	22,121	12,844	34,965	2.5	55,867	30,973	86,840	6.3	14,189	5,626	19,815	1.4
	소계	68,530	33,555	102,085	2.47	139,700	76,369	216,069	5.23	39,867	13,569	53,436	1.27
고	1	32,605	20,023	52,628	3.2	65,119	38,050	103,169	6.4	20,306	8,387	28,693	1.8
	2	43,578	26,519	70,097	4.3	68,509	41,173	109,682	6.8	27,046	11,092	38,138	2.4
	3	55,758	31,719	87,477	5.4	75,413	44,017	119,430	7.4	33,185	12,987	46,172	2.8
	소계	131,941	78,261	210,202	4.30	209,041	123,240	332,281	6.87	80,537	32,466	113,003	2.33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16)

5. 학교운동부

1) 학교운동부 현황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엘리트스포츠의 근간이 되는 초·중·고 학교운동부는 2016년 전국 4,476교(38.7%)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66,634명(1.5%)의 학생선수가 활동 중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며 시·도교육청이 임용한 전임코치와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임용한 계약직 코치로 분류된다.

표 3-18. 학교운동부 현황

(단위: 교, 팀, 명)

연도	급별	학교 수	학교 운동부	전체 학생 수 (초3~고3)	학생 선수 수 (초3~고3)	학교운동부 수(팀)			전체코치수 (전임+일반)
						남	여	계	
2016	초	6,001	1,678	1,707,788	21,153	1,761	901	2,662	1,893
	중	3,209	1,683	1,473,773	23,831	1,828	869	2,697	2,345
	고	2,353	1,115	1,411,160	21,650	1,362	622	1,984	1,802
	합계	11,563	4,476	4,592,721	66,634	4,951	2,392	7,343	6,040

※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연보(2016), 교육부 내부자료(2016)

6. 체육 중 · 고등학교

1) 체육 중 · 고등학교 전개

체육 중 · 고등학교는 1971년 서울, 1972년 경북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설립된 특수목적 학교로서, 그 목적은 학생선수 양성에 두고 있다. 그동안 체육 중 · 고등학교에서 배출된 학생선수는 각종 대회에서 다수 입상한 주역으로 전문체육의 입지를 강화해 준 원동력이었다. 지금까지 체육 중 · 고등학교는 국내 · 외 종목별 선수권대회 및 종합체육대회에 대비한 경기력 향상을 주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학교를 졸업한 학생선수는 경기실적으로 대학수시입학 및 기타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거나 전문선수로 주로 활동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체육 중 · 고등학교는 제도적으로 큰 변화 없이 운영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학생체육의 운영을 개선하자는 분위기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즉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체육 중 · 고등학교도 바뀐 학교체육 정책 기조를 반영한 학사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2) 체육 중 · 고등학교 학생 현황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체육중학교 학생 수는 총 1,303명이고, 전국 체육고등학교 학생 수는 총 3,905명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은 체육중학교 학생선수를 보유한 지역은 광

표 3-19. 전국 체육중학교 학생 수

(단위: 명)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서울	26	28	54	33	19	52	39	18	57	98	65	163
부산	19	5	24	12	10	22	17	8	25	48	23	71
대구	20	10	30	16	9	25	17	17	34	53	36	89
광주	45	38	83	46	28	74	39	35	74	130	101	231
대전	13	20	33	26	13	39	32	18	50	71	51	122
울산	21	19	40	25	18	43	24	12	36	70	49	119
경기	17	18	35	11	14	25	20	14	34	48	46	94
강원	17	11	28	17	13	30	17	8	25	51	32	83
전북	17	8	25	19	6	25	22	14	36	58	28	86
전남	26	15	41	31	19	50	35	17	52	92	51	143
경북	18	10	28	20	12	32	32	10	42	70	32	102
합계	239	182	421	256	161	417	294	171	465	789	514	1,303

※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연보(2016)

표 3-20. 전국 체육고등학교 학생 수

(단위: 명)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서울	90	49	139	95	46	141	70	42	112	255	137	392
부산	70	41	111	70	32	102	76	23	99	216	96	312
대구	43	21	64	40	18	58	33	19	52	116	58	174
인천	59	39	98	57	33	90	50	31	81	166	103	269
광주	67	33	100	64	41	105	51	34	85	182	108	290
대전	64	33	97	69	30	99	54	31	85	187	94	281
울산	45	24	69	40	25	65	38	26	64	123	75	198
경기	69	36	105	54	34	88	63	34	97	184	104	290
강원	55	26	81	52	23	75	45	15	60	152	64	216
충북	70	25	95	56	24	80	64	27	91	190	76	266
충남	57	23	80	51	22	73	50	18	68	158	63	221
전북	68	23	91	52	14	66	48	24	72	168	61	229
전남	59	22	81	51	29	80	65	25	90	175	76	251
경북	62	30	92	70	24	94	59	25	84	190	79	269
경남	62	32	94	56	17	73	59	21	80	177	70	247
합계	940	457	1,397	877	412	1,289	824	395	1,219	2,641	1,264	3,905

※ 주: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체육고등학교 미설치

※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연보(2016)

주(231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 수를 보유한 지역은 부산(71명)이었다. 가장 많은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보유한 지역은 서울(392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 수를 보유한 지역은 대구(174명)이다.

제3절 일반학생 지원 사업

학교체육은 학력향상, 인성함양,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의 긍정적 발달에 기여한다. 이에 정부는 2010년 이후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반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 활성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학생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이 있다.

1.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1)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원 배치

교육부는 초등학교 체육 정상화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등을 위해 2013년부터 체육 전담교원 배치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에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원 지정 비율을 반영하도록 결정하였다. 구체적 방안은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201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연차적으로 1명 이상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원 배치현황은 6,407명으로, 2015년에 비해 718명 증가되었다. 향후 교육부는 2017년까지 각 지역별 학교체육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 체육 전담교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표 3-21.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원 배치현황 및 계획

(단위: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정
추가배치인원	-	1,030	719	718	718
누적인원	3,940	4,970	5,689	6,407	7,125

※ 출처: 교육부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2016)

2)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실시된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은 소정의 자격수준을 갖춘 스포츠강사를 선발하여 체육교사와 함께 체육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2013년 3,800명, 2014년 2,911명, 2015년 2,408명, 2016년

표 3-22.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현황

(단위: 명)

지역	초			특수			소계		
	공립	사립	소계	공립	사립	소계	공립	사립	소계
서울	305	0	305	7	4	11	312	4	316
부산	62	0	62	1	0	1	63	0	63
대구	47	0	47	3	0	3	50	0	50
인천	69	0	69	0	0	0	69	0	69
광주	53	0	53	1	0	1	54	0	54
대전	75	0	75	3	2	5	78	2	80
울산	55	0	55	0	1	1	55	1	56
세종	23	0	23	0	0	0	23	0	0
경기	135	0	135	2	2	4	135	4	139
강원	282	1	283	5	2	7	287	3	290
충북	96	0	96	2	5	7	98	5	103
충남	119	0	119	4	2	6	123	2	125
전북	145	0	145	2	1	3	147	1	148
전남	180	2	182	3	5	8	183	7	190
경북	65	1	66	2	2	4	66	4	70
경남	267	0	267	4	0	4	271	0	271
제주	49	0	49	2	0	2	51	0	51
합계	1,892	4	1,896	39	24	63	1,930	29	2,098

*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2016),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16)

2,098명 배치하였다.

3) 중학교 스포츠강사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써 2012년 2학기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학년별로 연간 34~68시간, 3년간 총 136시간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을 편성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부족해진 체육지도자를 보충하기 위해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6년도의 경우 6,871명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었다.

표 3-23. 시·도교육청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 현황

(단위: 명)

지역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 현황(직종별)			
	일반교사	체육교사	스포츠강사	소계
서울	600	266	1,580	2,446
부산	229	96	809	1,134
대구	11	8	496	515
인천	1,240	245	12	1,497
광주	301	81	385	767
대전	164	89	192	445
울산	280	119	213	612
세종	119	14	49	182
경기	7,176	1,108	963	9,247
강원	235	224	276	735
충북	145	61	468	674
충남	1,526	171	351	2,048
전북	609	65	134	808
전남	657	206	252	1,115
경북	678	287	271	1,236
경남	1,902	347	287	2,536
제주	7	8	133	148
합계	15,879	3,395	6,871	26,145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16)

4) 토요일스포츠강사

2012년 이후에 전면 도입된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는 토요일에 학교 내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토요일스포츠강사 지원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을 ‘스포츠 데이(Sports Day)’ 로 지정하고,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토요일스포츠데이’ 를 위하여 전국 학교에 6,070명의 체육교원, 1,826명의 스포츠 강사, 4,583명의 대한체육회 소속 지도자, 총 12,479명을 배치하였다. 지역별 스포츠강사 규모는 경기(2,056명), 서울(1,538명), 경남(1,213명), 경북(1,112명), 충남(902명), 대구(813명), 부산(783명), 인천(680명), 전남(658명), 강원(591명), 광주(514명), 전북(509명), 대전(389명), 제주(326명), 충북(247명), 세종(109명), 울산(3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4. 시·도별 토요일스포츠강사 배치 인원 현황

(단위: 명)

지역	토요일 스포츠데이 강사 현황			소계
	학교교사	학교소속 스포츠 강사	대한체육회 소속 스포츠강사	
서울	727	175	636	1,538
부산	266	85	432	783
대구	492	52	269	813
인천	309	74	297	680
광주	236	45	233	514
대전	174	47	168	389
울산	30	8	1	39
세종	67	25	17	109
경기	1,142	71	843	2,056
강원	198	285	108	591
충북	162	44	41	247
충남	375	208	319	902
전북	181	89	239	509
전남	430	157	71	658
경북	557	193	362	1,112
경남	618	217	378	1,213
제주	106	51	169	326
합계	6,070	1,826	4,583	12,479

※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2016)

5) 초등 수영 실기교육 확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교육 및 생존수영 교육(수중에서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조치 능력 배양 교육)을 통하여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2014년 수상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초등학교 3학년 수상 안전교육 시범을 실시하여 중등 체육교사 선발 실기 시험에 수영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였다. 2015년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을 전면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대상을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으로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수영 실기교육 10시간 이상 편성·운영하였다.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교사 양성 연수를 체육담당교사, 수영 실기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1차 교육 시도교육청에서 4명씩 선발하여 총 34명, 2차 교육 시도교육청에서 20~30명 선발하여 총 390명이 받았다.

표 3-25. 수영 실기교육 현황

	2014	2015	2016
참여교육(지원)청	33개	90개	143개
학 생 수	6만 여명	22만 여명	35만 여명
대 상	교육청 결정	교육청 결정	초등 3~4학년

※ 출처: 2016년 학교체육활성화 추진 계획, 2016년 10월 5일 교육부 보도자료

6) 체육(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및 연구 활성화

체육교사의 전문화 및 학교체육 연구를 위해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대회가 진행되었다. 첫째, 체육전공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이 실시되었다. 연수일수는 시·도교육청별로 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연수 교육의 주 내용은 수업모형, 뉴스포츠, 무도, 건강체조 등 실기 연수의 비중을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장학사,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별 체육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시행되었다.

둘째, 학교체육과 관련된 전국 학교체육연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회의 주제는 ‘체육현장을 고려한 효과적 학습전략 및 우수사례 발굴과 수업방법 확산’, ‘체육교육 혁신 분위기 조성’, ‘여학생 체육 활성화’ 등이다.

표 3-26. 전국 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내용

구분	연구 논문	수업사례발표
제출 형식	논문 형식	수업사례 수업지도안, 동영상 등
연구 주제	○ 학교체육 주요정책 분야 연구 -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 학교운동부 선진화 - 학교체육활성화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연구 - 체육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함양	○ 체육수업방법 개선 - 창의적인 체육수업 모델 개발·적용 - 체육수업 우수사례 발굴·보급 - 여학생 체육수업 활성화 사례 - 체육수업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연구 - 체육수업을 통한 바른 인성함양 사례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16)

2.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 활성화(1학생 1스포츠 활동)

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학생의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 의무화 되었다.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및 1학생 1스포츠 활동 문화를 조성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3종목 이상 교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였다.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다. 학생들이 교내학교스포츠클럽활동, 지역교육청단위 학교스포츠

표 3-27.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관련 「학교체육진흥법」 내용

해당 조문	내용
제6조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2016)

클럽리그대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인성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학교 현장에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확산시켜 온 것으로 제시되었다.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은 학교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체육동아리 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발전시켜 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2016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대상학생 수비율에 지원학교 수를 배분하였고, 또한 여학생 수비율을 정하여 여학생 스포츠클럽팀 지원기준을 마련하였다.

2016년 교육부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전담교사 활동비(19억 4천 1백

표 3-28.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학교 현황

지역	지원학교 수(교)				
	초	중	고	여학생	합계
서울	182	220	115	360	877
부산	68	93	46	90	297
대구	65	76	34	84	259
인천	78	87	37	80	282
광주	17	15	14	66	112
대전	40	51	25	50	166
울산	30	29	22	42	123
세종	6	6	2	3	17
경기	336	392	184	386	1298
강원	36	48	22	44	150
충북	38	50	24	48	160
충남	53	62	30	65	210
전북	44	61	60	58	223
전남	57	61	27	43	188
경북	63	80	43	72	258
경남	85	105	49	101	340
제주	23	21	9	13	66
합계	1,221	1,457	743	1,605	5,026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16)

만 원), 시설이용료(58억 2천 3백만 원), 강사 연수비(51억 원)를 지원하였다.

3)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이화여자대학교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을 두어 이를 운영한다. 전담 지원기관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총체적으로 연계하고,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의 효과를 최적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을 정착시키고 확산 및 발전시키는데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 실재를 보면, 리그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컨설팅, 학

표 3-29.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예산 배부 내역 현황

(단위 : 천원)

지역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활동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설 이용료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연수비
서울	233,000	967,580	77,440
부산	105,000	348,960	30,490
대구	75,000	297,410	26,570
인천	81,000	328,090	28,900
광주	54,000	207,730	19,770
대전	53,000	191,760	18,560
울산	38,000	143,370	14,880
세종	11,000	21,670	5,640
경기	370,000	1,505,030	118,240
강원	99,000	176,550	17,400
충북	77,000	186,220	18,140
충남	113,000	239,350	22,170
전북	127,000	229,330	21,410
전남	151,000	215,670	20,370
경북	166,000	284,420	25,590
경남	161,000	398,880	34,280
제주	27,000	80,980	10,150
합계	1,941,000	5,823,000	510,000

※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2016)

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지역사회 체육관련 기관, 기업등과 MOU체결 등 연계 강화, 행사운영, 성과분석을 보였다.

학교스포츠클럽 학생기자단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를 통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가치 인식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내·외에서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경험을 토대로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특히 학교스포츠클럽 학생기자단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기자단 운영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 활동이 지닌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

하여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에 관한 수기 공모전을 통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하였다. 2016년 12월 1일(목)부터 12월 8일(목)까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작품을 심사하였다. 공모전 결과 초등학교 123명, 중학교 37명, 고등학교 38명, 대학교 14명으로 총 212명이 신청하였다.

4)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평소 같고 님은 종목별 기량을 발휘하는 계기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학생 상호간의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방과 후 및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진행되고, 대회는 교내대회로 시작하여 교육지원청 대회, 시·도교육청 대회, 전국대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가. 지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4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 지역 예·결선 대회 개최로 17개 시·도 운영종목은 130개로 245,123명(17,132팀)이 참가하였다. 지역교육지원청대회(교육장배)는 75,981명(5,386팀), 시·도교육청대회(교육감배)는 169,142명(11,746팀)이 참가하였다.

표 3-30. 지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요

구분	2014	2015	2016
예산	1,318.3백만원	4,615백만원	2,214백만원
시도, 종목수	11시도, 56 종목	16시도, 124 종목	17시도, 130 종목
운영 실적	4,885팀/176,256명	18,877팀/276,675명	17,132팀/245,123명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나.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2016년 제9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교내대회,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리그와 시·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교육감배)를 거쳐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경기이었다. 이 대회는 2016년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주 동안 주말을 활용하여 전국 11개 시·도에서 실시되었으며 초·중·고 일반학생이 참여했다. 운영 종목은 24개 종목(정식종목 19개, 시범종목 5개)로 총 21,126명이 참가하였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승패 위주의 경기가 아닌 학생축제 형태의 경기 운영(부모와 함께하는 경기, 종목별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 명사 특강 등)으로 우리나라 초중고 청소년의 체육문화 확대에 교육적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표 3-31.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정식종목(19)	넷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소프트볼, 연식야구, 족구, 줄넘기, 창작댄스, 축구, 치어리딩(승격), 킨볼, 탁구, 티볼, 풋살,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핸드볼
시범종목(5)	검도, 국학기공, 프리테니스, 빙상(쇼트트랙, 강등), 에어로빅(힙합댄스, 신규)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3-32.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요

회차	연도	개최시도	대회 기간	종목	참가현황	
					팀(개)	선수(명)
7회	2014	11개 시도	10.25.(토)~11.23.(일)	23	1,530	18,927
8회	2015	9개 시도	11. 7.(토)~11.22.(일)	23	1,595	20,790
9회	2016	11개 시도	10.29.(토)~11.13.(일)	24	1,628	21,126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3-33.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지역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지원			
	교육지원청단위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지원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지원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합계
서울	60,000	217,000	100,000	377,000
부산	25,000	195,000	50,000	270,000
대구	22,000	216,000	50,000	288,000
인천	20,000	190,000	50,000	260,000
광주	15,000	173,000	50,000	238,000
대전	15,000	216,000	50,000	281,000
울산	10,000	183,000	50,000	243,000
세종	5,000	181,000	50,000	236,000
경기	95,000	216,000	50,000	361,000
강원	30,000	212,000	50,000	292,000
충북	20,000	195,000	50,000	265,000
충남	25,000	227,000	50,000	302,000
전북	30,000	185,000	50,000	265,000
전남	35,000	176,000	50,000	261,000
경북	40,000	216,000	50,000	306,000
경남	45,000	210,000	50,000	305,000
제주	10,000	242,000	50,000	302,000
합계	502,000	3,450,000	900,000	4,852,000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16)

5) 다양한 학교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확대

가.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2014년부터 시작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사업은 국민생활체육회 및 시·군·구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였다. 이 사업은 ‘학교 안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학교 밖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학생들의 체육문화 정착과 체력향상을 위해 시작되었다.

‘학교 안 프로그램’은 대한체육회에서 배치한 스포츠강사가 매주 토요일 2시간씩 30주간 강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016년 운영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티볼, 탁구, 피구, 농구, 뉴스포츠 등 81개였다. 참가자는 해당 학교별로 20명 내외이며,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였다.

‘학교 밖 프로그램’은 전국 227개의 시·군·구생활체육회에서 지역 내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2개의 종목을 선택하여 30주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볼링, 골프, 수영, 승마, 조정, 클라이밍, 스케이트 등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54개 종목을 운영하였다.

표 3-34. 학교안·밖 프로그램 현황

구분	학교안 프로그램				학교밖 프로그램		
	학교 수	강사 수	운영 횟수	참가지수	개소 수	운영 횟수	참가지수
계	-	-	186,347	2,730,756	-	13,985	223,326
3월	4,547	6,438	14,942	271,814	257	591	10,446
4월	4,679	6,631	29,103	490,526	465	2,021	34,393
5월	4,656	6,569	16,696	250,609	492	1,536	24,211
6월	4,672	6,615	23,957	356,925	499	1,797	28,174
7월	4,469	6,280	18,441	254,489	478	1,650	25,904
8월	2,182	2,749	4,322	56,909	334	985	15,470
9월	4,577	6,485	17,328	239,345	468	1,370	22,219
10월	4,605	6,524	27,474	369,751	464	1,997	31,822
11월	4,467	6,289	22,200	289,883	395	1,343	20,426
12월	3,596	4,854	11,884	150,505	250	695	10,261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나. 학생심판연수 및 찾아가는 스포츠 클리닉

기존에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연수교육을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학생 심판연수 및 찾아가는 스포츠 클리닉 시행을 통해 지도자에게 부여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리그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수급과 교내리그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연중 상시 리그를 운영하거나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자생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연수교육을 학생 심판연수 및 찾아가는 스포츠 클리닉 시행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으로 지역을 확대하였다.

표 3-35. 학생심판연수 및 찾아가는 스포츠 클리닉 종목

	종목
학생심판연수	플로어볼, 티볼, 농구, 줄넘기, 축구, 배구, 풋살
찾아가는 스포츠 클리닉	농구, 티볼

※ 출처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결과보고서(2016)

3.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1) 여학생 체육활동 관련법 제정

교육부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진흥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여 개정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여학생이 선호하는 스포츠클럽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여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며, 전용 학교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제도화하고,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을 설정하도록 정하는 등 각각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기준 지침을 제정하여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촉진 프로그램

교육부는 여학생 체육활성화 대책으로 실질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 사업 핵심은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의 수업을 전개하고 감성(emotion)을 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재구성하려는 것이었다. 여학생 선호종목 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종목(사격, 스케이트, 수영, 요가, 라켓스포츠, 댄스스포츠, 구기 종목 등)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여 여학생의 만족도 및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녀공학의 경우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 지정 운영을 권장하였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캠페인 전개, 여학생 스포츠 행복지수 및 맞춤형 프로그램 활용으로 여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표 3-36. 여학생 체육활성화관련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내용

해당 조문	개정 내용
제10조 제5항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이 선호하는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여학생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제13조의2에 2항에 따른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6항에 의한다.
제13조의2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 정성평가 항목으로 평가시행 중)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제3항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신설>
제17조 제2항	제17조제1항 제5호, 제13조의2에 따른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2016)

표 3-37. 여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제 목	기 간 및 대 상
여학생 선호 종목 및 프로그램	전국 초·중·고 여학생들을 대상 주 1~2회 3~6개월 지도 11종목(힙합&재즈, 치어리딩, 요가, 탁구, 배구, 넷볼, 플라잉디스크, 티볼, 피구, 걷기) 1,233개소 운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및 여대생 동아리대회	미드림(美-dream)스포츠 개발 및 보급: 8개 시·도 43개교 운영, 965명 참가 여대생 동아리대회(11.12(토), 서울시립대): 2종목 57팀 참가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4. 학생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화

1) 학생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 운영

학생의 건강체력 향상을 위해 정확한 측정을 통하여 체력 수준을 진단하고 측정결과를 개인별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교내에 체력증진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체력향상을 위한 장소를 운영하며, 체력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을 포상하는 등 다양한 동기유발을 통해 건강 체력에 대한 관심을 증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 스스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2) 건강체력 교실 운영 의무화

「학교체육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에 근거하여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등급(4~5등급)을 받은 학생은 건강체력교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에 따라 매년 저등급 판정을 받은 저체력 및 비만학생은 교내 스포츠클럽 참여,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 무료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체력향상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이 교실의 운영에 따라 체력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주기적인 학생건강체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교육은 각 급 학교에서 전담교사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되었다.

3)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운영

2009년부터 시작된 학생건강정보센터는 학생건강증진 관련 정보교류 및 공유 공간 제공을 관련 4개 영역(건강체력증진, 학교스포츠클럽, 신체활동프로그램, 학교체육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위탁 운영하였다.

표 3-38. 학생건강정보센터 영역별 제공자료

영역	제공자료
건강체력증진	PAPS 자료 탑재, 건강체력증진 관련 자료 등
학교스포츠클럽	자율체육활동, 스포츠동아리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자료
신체활동프로그램	건강증진 체육수업자료, 건강 활동 및 방과 후 수업자료, 특기적성 수업자료, 연구시범학교 관련 자료
학교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현대화, 설비자료, 체육수업 교구관리 관련 자료 등

※ 출처: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2016)

제4절 학생선수 지원 사업

학교체육에서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는 우리나라 전문체육의 초석을 만든 존재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우수 학생선수 발굴을 위해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과 함께 전국소년체전을 개최해 왔으며, 종목별 우수선수에 한하여 대학특례입학 제도를 통한 대학선수로 활동하게 해줌으로써 운동에 전념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에 대한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경기력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 최저학력제

정부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최저학업성적기준을 제시하며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게 대해 전국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고,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생 선수를 위한 최저학력제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는 「학원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2007년도 11월 2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그 결의안 중에 최저학력제 도입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어 2007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원체육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 도입을 요구하였다. 2008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최저학력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도입 시기, 적용 대상, 성적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도 초등학교(4학년~6학년) 적용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 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표 3-39. 최저학력기준 단계별 적용계획

적용년도 학교급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초	시범	초 4~6	-	-	-	-	-	-
중	시범	-	중 1	중 2	중 3	-	-	-
고	시범	-	-	-	-	고 1	고 2	고 3

※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2016)

‘최저학력제’라는 용어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조항에서 명시되어 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여 하위법령에서 최저학력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 상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부령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최저학력의 기준 등에 관하여 모범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최저학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다만 고등학생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가 해당된다)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 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2항에서 담고 있다. 그 세부내용으로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에서 해당 학년 학생 전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또는 3개 교과를 대상으로 교과별 평균 성적에 초등학교는 100분의 50, 중학교는 100분의 40, 고등학교는 100분의 30을 곱한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이하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라고 한다)를

표 3-40. 최저학력제 시행현황

(단위: 명, %)

연도	학교급	학년	학년별 학생선수 수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수	미도달률(%)
2014	초	4	4,115	217	5.27
		5	5,122	459	8.96
		6	5,226	470	8.99
	중	1	6,014	1,948	32.39
		2	6,197	2,211	35.68
		3	5,718	2,422	42.36
	합계			34,837	7,727
2015	초	4	4,698	227	4.83
		5	6,121	467	7.63
		6	6,466	544	8.41
	중	1	7,419	1,807	24.36
		2	7,611	2,686	35.29
		3	7,535	3,148	41.78
	고	1	6,899	1,843	26.71
합계			46,749	10,722	22.94
2016	초	4	4,738	161	3.40
		5	6,063	407	6.70
		6	6,417	534	8.30
	중	1	7,317	1,696	23.20
		2	7,495	2,599	34.70
		3	7,358	3,229	43.90
	고	1	7,421	1,805	24.30
2		6,515	1,660	25.50	
합계			53,324	12,091	21.25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16)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에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위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경우 중학교(5교과)는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교(3교과)는 20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단위학교 학교장은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들에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학생선수들의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단위학교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e-School 시스템을 전면시행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학교에 컨설팅 지원, 시스템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 대회참가 제한범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시기·방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대회참가제한을 해제하는 방안 등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학교에서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에 참가하도록 법제화되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전문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코칭 방법을 습득하고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선진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육성하고자 한다. 초·중·고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기 수료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3-41. 연도별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실적

(단위 : 명)

연도	합계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571	91	23	16	45	7	41	10	-	44	48	55	13	73	41	19	40	5	
'12	739	156	32	48	33	17	40	59	-	150	10	24	8	29	29	53	50	1	
'13	1,356	106	60	93	53	42	69	53	2	310	103	122	26	68	55	63	106	25	
'14	1,426	164	78	85	37	57	53	43	1	375	133	34	39	59	86	66	99	17	
'15	1,360	135	36	66	102	57	82	58	6	210	97	86	71	103	52	62	87	50	
'16 (기본)	398	35	18	27	21	19	9	7	1	81	25	4	19	20	20	47	42	3	
'16 (보수)	724	54	38	55	26	16	27	32	1	182	37	49	14	27	40	42	75	9	
총	8,172	922	301	440	474	294	449	339	21	1,509	585	493	299	538	367	387	556	198	

※ 출처 :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또한 성폭력 근절, 학생선수 인권 보호,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입학비리 예방 교육 등 학교운동부 관련 인식개선 연수를 강화하였다.

3.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대입선발 과정에서 감독이 가지는 선발 권한에 대하여 규제 및 자정과정이 전혀 없어서 감독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점이 지적되었다. 체육특기자의 입시구조는 특기자 심사소위(경기력 등급판정)를 거쳐 전형관리위원회(교수 등)가 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나, 이 경우 전형관리위원회는 전문성 및 현장성이 부족하고 실기시험이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카우트제도의 폐쇄성’으로 인해 현장지도자가 가지는 권한이 경기에서 선수를 기용하는 권한(진학에 필요한 경기실적의 전제조건)과 그 밖에 진학과 관련하는 권한 등이 절대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운동부 운영 비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4년 ‘학교운동부 투명성 강화’ 추진사업을 시작하여 그 효과로서 학교운동부 운영 비리를 근절하게 되었다. 학생선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선수 저변확대에 기여하며, 학생선수에게 인권 및 학습권 등이 보장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시스템이 정착하도록 하여 경기력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었다. 2015년 12월에는 범정부적으로 입시관련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야구, 농구 등 입시비리가

표 3-42.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

구분	내 용	성 과
사전예방	모집요강 구체화 등 입학전형 객관화 온라인발급 등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기량 향상을 위한 경기 동영상 제공 시스템 구축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 개정(‘16. 3월)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지침(‘16. 6월)
사후제재	입학비리 대학교 운동부 대회 출전 정지 입학비리 주도한 지도자 및 학생 영구제명 입학비리 대학교 모집 정지 및 지원예산 삭감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시스템 시행(‘16. 7월) 종목단체 대회 경기 동영상 홈페이지 개설(‘16. 7월)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16)

발생하는 주요 종목단체를 중심으로 대학입학 관계자 등의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체육특기자 학력·학사관리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사전예방조치로서 체육특기자의 모집요강을 구체화하는 등 입학전형을 객관화하였다. 입학에 사정자료로 활용되는 경기단체에서 발급하는 ‘경기실적증명서’를 온라인 발급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객관적인 기량 향상을 위한 경기동영상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체육특기자 입학 제도를 구축하였다.

사후 제재조치로는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의 대회출전을 정지시키고,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 및 학생은 영구 제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의 모집 체육특기생 모집을 정지시키고 지원예산을 삭감하도록 하여 체육특기자의 입학비리를 근절하고자 하였다.

4

2016 SPORT WHITE PAPER

전문체육

제1절 전문체육 전개

제2절 전문체육 선수육성

제3절 전문체육대회 및 훈련시설

제4절 선수지원 및 체육인 복지강화

제1절 전문체육 전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문체육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반지원·육성과 활동, 관련단체, 기구지원 등을 포함하며,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 실업팀 및 각급 학교운동부 등 제반주체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전문체육은 개인의 경기력 향상 및 기록달성 등 개인적 성취에서부터 국가를 대표하여 자국의 위상제고, 국민통합 및 자긍심 고취, 생활체육 활성화의 선도적 기능, 국제경기 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국가 경쟁력 강화 등 국가적, 사회적 중요성과 사회전반에 걸친 긍정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하에 꾸준히 발전·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문체육 정책은 경기력 향상과 올림픽 메달획득을 위해 국가대표선수 중심으로 육성해왔고 선수를 훈련시킬 훈련시설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왔다. 우리나라 전문체육은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기틀이 형성되었으며, 1970년대에 전문체육을 위한 정책이 시작되었다. 당시 문교부(現 교육부)에서 관리한 전문체육은 학교체육과 유기적 연계를 하여, 학생선수가 국가대표선수를 병행하였으며, 특히 1966년에 태릉선수촌 건립과 1972년 체육특기자제도는 전문체육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 이전에는 체육업무를 관장하던 중앙부처는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였으나, 1982년 체육부가 신설됨에 따라 '과'단위 체육업무가 '부'단위 업무로 승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시 정부는 '체육입국(體育立國)'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선수, 지도자, 시설에 집중투자 하였다. 그 결과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종합 4위(금 12개, 은 10개, 동 11개)의 성과를 거두어 체육강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다.

1990년대는 이전의 전문체육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 생활체육 성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설립은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였고,

전문체육 여건확대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000년대는 기존 전문체육 육성체제를 개혁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 문화를 조성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기존 학교운동부의 특기자 제도와 훈련방식을 개선하여 공부하는 학생 및 선진화된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경기력

표 4-1. 전문체육 정책 전개

구분	정책(사업명)	정책과제 부분별 목표	추진내용
문민정부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전문체육 지속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선수 과학적 체계적 양성 ○국내경기대회 운영의 개선 ○우수한 경기지도 인력 양성 ○체육인 복지향상 및 체육단체의 자율성 제고
국민의 정부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2002 FIFA 한 일 월드컵축구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발전 제도약 전기 마련 경쟁력 있는 체육과학 발전추구 및 체육행정 능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준비 운영체제 구축, 경기장 등 대회시설 확보 ○경기운영, 개회식 등 대회운영 단계적 준비 ○범국민적 대회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전 정부적 지원 ○한국체육과학연구원(現 한국스포츠개발원) 기능 증대 ○국민체력증진 연구 및 경기력향상 연구 역량강화 ○체육부문 종합정보망 구축 및 다양한 체육정보 제공 ○체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지방체육조직에 전문인력 배치
참여정부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과학적 훈련지원을 통한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선수 발굴 육성 체계 확립 ○전문체육시설의 다기능화 현대화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등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전문체육단체 자율성 및 재정자립 기반 강화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2008~ 2012	전문체육 및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 런던 하계올림픽경기대회 대비 국가대표선수 체계적 양성 및 훈련의 과학화 ○우수선수 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 ○비인기 종목 활성화 ○스포츠 의 과학 및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육상진흥 토대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이행 ○전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박근혜 정부	스포츠비전 2018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스포츠로 국격을 바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대표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및 학교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체육인 진로지원 등 복지 강화 ○태릉, 태백, 진천 국가대표훈련장의 효율적 기능 분담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학생선수 수업의무화에 따른 체육중점학급 운영 및 과학적 훈련 지원 ○운동부지도자 교육강화, 은퇴 후 대비 진로교육 확대 ○지역별 스포츠과학 거점센터 설치로 과학화 지원대상 확대 ○진천 태릉 태백선수촌 기능 특화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체육백서 (2016)

향상을 위한 과학적 육성기반 조성 및 전문체육과 관련된 체육인 복지를 강화하여 전문체육을 활성화시켰다.

최근 20년 간 전문체육 정책은 3차례에 걸친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문민정부: 1993~1997, 국민의 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2007)과 문화비전 2008~2012(이명박 정부), 스포츠비전 2018(박근혜 정부) 정책을 통해 부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추진 내용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며, 구체적인 전문체육 정책 전개는 <표 4-1>과 같다.

제2절 전문체육 선수육성

2010년 이전까지 ‘꿈나무선수-후보선수-국가대표선수’ 3단계로 운영되던 선수육성 체계는 2010년부터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선수-후보선수-국가대표선수’의 4단계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1. 꿈나무선수

1) 꿈나무선수 육성

가. 개요

‘꿈나무선수’ 육성사업은 1993년부터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어린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선발된 어린선수에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과 관리를 통해 끝내는 차세대 국가대표선수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국가대표후보선수와 통합되어 신인선수 선발·육성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부터 ‘꿈나무선수제도’로 명칭이 분리·개편되었으며, 3개 종목(육상, 체조, 수영)을 대상으로 ‘기본종목 꿈나무 발굴사업’이 시작되었다. 2003년부터는 동계올림픽대회를 대비하여 빙상, 스키 종목이 추가되었고, 2008년부터는 탁구, 핸드볼, 유도를 포함하여 총 8개 종목으로 확대하였다. 2012년까지 8개 종목 370명에서 2013년 18개 종목 693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에는 근대 5종이 추가되어 19개 종목 708명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기존 19개 종목으로 708명을 선발하였으며, 2016년에는 17개 종목(육상, 체조, 빙상, 스키, 핸드볼, 탁구, 유도, 테니스, 하키, 배드민턴, 레슬링, 펜싱,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트라이애슬론, 근대 5종)에서 628명의 꿈나무선수를 선발하였다.

나. 꿈나무선수 선발·훈련

① 선발과정

꿈나무선수 선발은 종목별로 시·도에서 추천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체격(20~30%), 체력(30~40%), 경기력(30~40%) 3개 요인을 측정하고, 특성불안과 집중력 등 심리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목별 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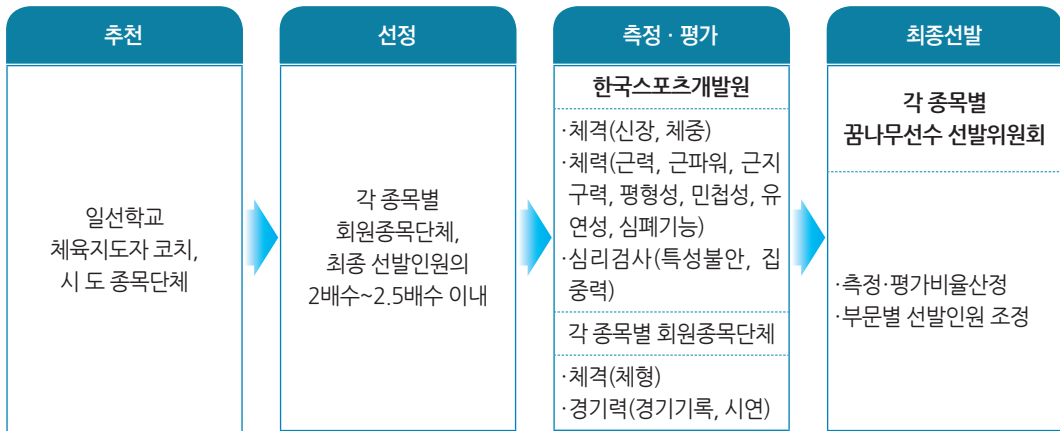


그림 4-1. 꿈나무선수 선발 과정(문화체육관광부 2015체육백서, 2016)

꿈나무선수 선발과정은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꿈나무선수 후보자 추천’ 과정으로 일선학교 체육지도자(체육교사, 체육단체 코치, 스포츠클럽지도자 등)가 꿈나무선수 후보자를 해당종목 시·도 협회에 추천한다. 이후 시·도 협회의 평가를 거쳐 회원종목단체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2단계는 각 종목별 회원종목단체가 2~2.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자를 선정한다. 3단계는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선발대상자를 측정·평가하는 과정으로 기초검사, 정밀검사, 심리검사를 통해 선수의 경기력 및 체형(체력) 등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종합점수(종목별, 연령별, 평가항목별 표준점수 및 가중점수 등)를 산출한다. 4단계는 각 종목별 꿈나무선수선발위원회가 해당종목의 꿈나무선수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으로 선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각 종목별 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된다. 2016년에는 총 측정인원 1,291명(남자 690명, 여자 601명) 중 628명이 선발되었으며, 구체적인 종목

별 꿈나무선수 선발 현황은 <표 4-2>와 같다.

표 4-2. 종목별 꿈나무선수 선발현황

(단위: 명)

종목		선발인원	총정인원	구분		연령대	
				남	여		
육상	단거리	120	282	74	35	39	4~8학년(10~14세)
	중장거리			73	40	33	5~8학년(11~14세)
	도약			67	33	34	5~8학년(11~14세)
	투척			68	38	30	5~8학년(11~14세)
체조	기계	50	93	61	24	37	1~3학년(7~9세)
	리듬			32	-	32	2~3학년(8~9세)
빙상	스피드	80	113	50	27	23	4~6학년(10~12세)
	쇼트트랙			23	14	9	3~6학년(9~12세)
	피겨			40	5	35	4~6학년(10~12세)
스키	알파인	50	98	33	23	10	4~7학년(10~13세)
	프리스타일			13	11	2	2~7학년(8~13세)
	크로스컨트리			26	21	5	3~7학년(9~13세)
	스키점프			9	5	4	2~6학년(8~12세)
	스노우보드			17	12	5	2~7학년(8~13세)
핸드볼	40		104	50	54	5학년(11세)	
탁구	32		62	30	32	4~5학년(10~11세)	
유도	32		64	39	25	4~6학년(10~12세)	
테니스	12		24	12	12	5~6학년(11~12세)	
하키	44		102	53	49	7~8학년(13~14세)	
배드민턴	40		80	40	40	4~6학년(10~12세)	
레슬링	20		40	40	-	7학년(13세)	
펜싱	플러레	20	44	17	8	9	7~8학년(13~14세)
	에페			15	7	8	7~8학년(13~14세)
	사브르			2	8	4	7~8학년(13~14세)
아이스하키	23		40	40	-	7~8학년(13~14세)	
바이애슬론	22		41	24	17	3~7학년(9~13세)	
컬링	18		46	23	23	4~6학년(10~12세)	
트라이애슬론	10		19	10	9	7~9학년(13~14세)	
근대5종	15		39	18	21	4~9학년(10~14세)	
합계		628	1,291	690	601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② 꿈나무선수 훈련

선발된 꿈나무선수는 연간 30일 이내의 동·하계 합숙훈련을 하며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보험을 지원받는다. 2016년 꿈나무선수 합숙훈련은 수영과 사격종목을 제외하

고 총 1,480명(선수 1,254명, 지도자 228명)이 참가하였으며, 하계훈련은 주로 7~8월에, 동계훈련은 11~12월에 이루어졌다. 꿈나무선수 합숙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종목은 수영과 사격이며, 구체적인 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현황은 <표 4-3>과 같다.

표 4-3. 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현황

종목	훈련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명)			비고
				선수	지도자	합계	
육상	하계	07.30~08.18	보은 종합운동장	120	22	142	-
	동계	01.27~02.05	트랙: 충북 보은 속리산 필드: 대구육상진흥센터	120	22	142	-
테니스	하계	07.10~.24	순창공설운동장	12	3	15	-
	동계	02.11~.25	군위종합테니스장	12	3	15	-
탁구	하계	09.20~10.04	홍천종합체육관	32	6	38	-
	동계	01.14~28	강원 홍천종합체육관	32	6	38	-
핸드볼	하계	08.04~18	무안 종합스포츠타파크체육관	40	6	46	-
	동계	02.11~25	대전유천초등학교 체육관	40	6	46	-
빙상	하계	07.22~08.05	양평군 일대	30	4	34	스피드
		08.08~22	의암빙상장	22	4	26	쇼트트랙
		08.08~12	인천선학국제빙상장	28	2	30	피겨
		08.22~31					
	동계	02.10~22	태릉국제스케이팅장	32	4	36	스피드
		02.14~28	인천선학국제빙상장	24	4	28	쇼트트랙
		02.11~26	인천선학국제빙상장	24	4	28	피겨
유도	하계	08.7~21	부여유스호스텔 실내체육관	32	6	38	-
	동계	01.17~31	동해 실내체육관	32	6	38	-
체조	하계	08.01~15	합포중 체육관	16	4	20	남자 기계
		08.01~15	포항제철중	18	4	22	여자 기계
		08.01~15	인왕초등학교	16	2	18	리듬체조
	동계	01.15~29	인천창천중학교	16	4	20	남자 기계
		01.17~31	부산체육고등학교	18	4	22	여자 기계
		01.22~02.05	양구국민체육센터	16	2	18	리듬체조
레슬링	하계	07.28~08.11	양구청소년수련관	18	4	22	-
	동계	01.21~02.04	강원 인제	18	4	22	-
수영	하계	미실시	-	-	0	-	
	동계	미실시	-	-	0	-	
스키	하계	09.17~10.01	알펜시아리조트 일대	14	2	16	알파인
		07.25~08.08	알펜시아리조트 일대	14	2	16	크로스컨트리
		09.17~10.01	알펜시아리조트 일대	8	2	10	스노우보드
		08.17~31	알펜시아리조트 일대	7	2	9	프리스타일
		08.16~30	알펜시아리조트 일대	7	1	8	스키점프
	동계	11.26~12.10	알펜시아리조트	14	2	16	알파인
		12.11~26	알펜시아C.C. 경기장	14	2	16	크로스컨트리
		11.27~12.11	휘닉스파크리조트	8	2	10	스노우보드

종 목	훈련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명)			비고
				선수	지도자	합계	
스 키		11.26~12.10	알펜시아리조트	7	2	9	프리스타일
		12.01~12.15	알펜시아 점프경기장	7	2	9	
아이스하키	하계	07.12~26	목동아이스링크	23	3	26	-
	동계	12.01~15	목동아이스링크	23	4	27	-
하 키	하계	07.26~08.09	평택하키경기장	44	7	51	-
	동계	01.11~25	인천선학하키경기장	44	7	51	-
사 격	하계	미 실시				0	-
	동계	미 실시				0	-
펜 싱	하계	07.28~08.11	양구국민체육센터	20	4	24	-
	동계	01.05~19	양구문화체육회관	20	4	24	-
배 드 민 턴	하계	08.13~27	홍천 국민체육센터	40	7	47	-
	동계	01.08~22	화순군 하니움체육관	40	7	47	-
근 대 5 종	하계	07.22~08.05	육상: 우슬종합운동장 수영: 조오련수영장	15	3	18	-
	동계	01.04~18	한국체육대학교	15	3	18	-
컬 링	하계	07.23~08.06	태릉컬링장	18	5	23	-
	동계	12.17~31	태릉컬링장	18	5	23	-
철 인 3 종	하계	07.25~08.08	서귀포시 중문일원	10	3	13	-
	동계	2016.12.26.~2017.1.9	서귀포시 중문일원	10	3	13	-
바이애슬론	하계	07.25~08.10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22	4	26	-
	동계	01.03~17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경기장	22	4	26	-
합계				1,252	228	1,480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 청소년대표선수

1) 청소년대표선수 선발·훈련

가. 선발현황 및 기준

청소년대표 육성사업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선수를 대상으로 공인된 입상성적(국내 전국규모대회, 국제대회)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선발작업을 실시하였다. 2016년은 27개 종목 810명의 청소년대표선수가 선발되었고, 수영과 사격에서는 선수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5년 대비 94명이 줄어들었다. 구체적인 종목별 청소년대표선수 선발육성 인원 및 선발기준은 <표 4-4>와 같다.

표 4-4. 종목별 청소년대표선수 선발육성 인원 및 선발기준

(단위: 명)

연번	종목		인원(명)							물리치료사	합계	대상연령	선수선발기준
			선수			지도자			합계				
			남	여	계	전담	전문	계					
1	육상	상영	16	16	32	1	4	5	37		37	16-17세	종목별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
2	수영												미 실시
3	체조		15	29	44	1	8	9	53	1	54	11-18세	
4	레슬링		42		42	1	6	7	49		49	14-16세	
5	복싱		22		22	1	3	4	26		26	15-16세	종목별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
6	역도		16	14	30	1	4	5	35	1	36	18세 이하	
7	유도		16	16	32	1	4	5	37		37	14-16세	
8	양궁		12	12	24	1	4	5	29		29	14-16세	
9	사격												미 실시
10	핸드볼		21	21	42	1	5	6	48	1	49	16세	
11	하키		24	24	48	1	6	7	55		55	17세 이하	
12	탁구		15	15	30	1	4	5	35		35	15세 이하	
13	펜싱		22	22	44	1	6	7	51	1	52	14-18세	
14	테니스		6	6	12	1	4	5	17	1	18	만 13-18세	
15	자전거		23	12	35	1	5	6	41		41	14-16세	
16	조정		15	15	30	1	5	6	36		36	14-16세	
17	세일링		25	4	29	1	5	6	35	1	36		
18	카누		18	8	26	1	4	5	31	1	32	14-16세	
19	소프트볼			17	17	1	2	3	20	1	21	14-16세	
20	배드민턴		20	20	40	1	6	7	47	1	48	14-16세	
21	태권도		24	24	48	1	4	5	53		53	중학생 선수	
22	근대5종		10	5	15	1	2	3	18	1	19	15-18세 이하	
23	아이스하키		23		23	1	3	4	27	1	28	17-18세	종목별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
24	빙상	스피드	8	7	15	1	2	3	18		18		
		쇼트트랙	8	7	15		3	3	18		18		
		피겨	1	9	10		2	2	12		12		
		소계	17	23	40	1	7	8	48		48		
25	바이애슬론		9	9	18	1	3	4	22		22	15-17세	
26	스키	알파인	10	4	14		2	2	16		16		
		크로스	6	6	12		2	2	14		14		
		스키점프	1	1	2		1	1	3		3		
		스노우보드	7	1	8	1	1	2	10		11	14-17세	
		프리스타일	5	2	7		2	2	9		9		
		소계	29	14	43	1	8	9	52		53		
27	컬링		5	5	10	1	2	3	13		13	중등부 선수	
28	철인3종		5	5	10	1	2	3	13		13	16-18세	
29	력비		24		24	1	4	5	29		29	만 18세 이하	
합계 (27개 종목)			474	336	810	27	120	147	957	11	968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나. 청소년대표선수 훈련

청소년대표선수들의 훈련기간은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며 종목별 회원종목단체에 따라 동계 또는 하계기간에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수영과 사격을 제외한 27개 종목으로 합숙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청소년대표선수 합숙훈련은 <표 4-5>와 같다.

표 4-5. 청소년대표선수 합숙훈련

(단위: 명)

연번	종목		기간	훈련장소	인원			
					선수	지도자	물리치료사	합계
1	육상	상	07.30~08.18	충북 보은	32	5	-	37
2	수영	경영	미 실시		-	-	-	-
		수구	미 실시		-	-	-	-
3	체조	남자 기계	11.11~30	충북 청주	15	3	1	19
		여자 기계	10.11~10.30	경북 포항	15	3	-	18
		리듬	11.11~30	강원 양구	14	3	-	17
4	테니스	스	07.20~08.08	강원 양구	12	5	1	18
5	탁구	구	06.21~07.10	전북 무주	30	5	-	35
6	레슬링	링	07.28~08.16	강원 양구	42	7	-	49
7	복싱	싱	08.02~21	충북 충주	22	4	-	26
8	역도	도	08.01~20	전남 보성	30	5	1	36
9	유도	도	09.20~10.09	강원 강릉	32	5	-	37
10	양궁	궁	06.04~23	경기 여주	24	5	-	29
11	사격	격	미 실시		-	-	-	-
12	핸드볼	볼	08.08~27	강원 삼척	42	6	1	48
13	하키	키	11.16~12.05	경기 평택	48	7	-	55
14	펜싱	싱	08.22~09.10	강원 양구	43	7	1	51
15	배드민턴	턴	08.08~27	강원 홍천	40	7	1	47
16	카누	누		경북 안동	26	5	1	32
17	자전거	거	1차:06.26~07.15 2차:08.01~20	경북 영주	35	6	-	41
18	근대5종	종	07.22~08.10	전남 해남	15	3	1	19
19	조정	경	07.26~08.14	경기 용인	30	6	-	36
20	세일링	링	07.24~08.12	전남 여수	29	6	1	36
21	소프트볼	볼	07.27~08.15	부산	17	3	1	21
22	태권도	도	08.08~08.27	전남 구례	48	5	-	53
23	빙상	스피드	07.17~08.05	서울 태릉	15	3	-	18
		쇼트트랙	07.31~08.19	인천	15	3	-	18
		피겨	07.29~08.31	인천	10	2	-	12

연번	종목	기간	훈련장소	인원				
				선수	지도자	물리치료사	합계	
24	스키	알파인	10.02~21	강원 평창(알펜시아)	14	2	-	18
		크로스컨트리	07.10~29	강원 평창(알펜시아)	12	2	-	14
		스노우보드	05.28~06.16	강원 횡성(웰리힐리파크)	8	2	-	10
		프리스타일	06.20~07.09	강원 횡성(웰리힐리파크)	7	1	-	8
		스키점프	미실시		2	1		3
25	아이스하키	11.11~30	서울 목동	23	4	1	28	
26	바이애슬론	07.23~08.11	강원 평창(알펜시아)	18	4	-	23	
27	컬링	07.08~28	서울 태릉	10	2	-	13	
28	철인3종	2016.12.26.~2017.01.09	제주 서귀포	10	2	-	13	
29	력비	07.30~08.07	전남 강진 진도	24	5	-	29	
		08.12~22	강원 영월					
합계				809	144	11	964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청소년대표선수 국외전지훈련은 스포츠선진국 선수들과의 실전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을 높이고 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각국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2016년에는 23개 종목 409명(선수 330명, 지도자 79명)이 참가하였으며, 구체적인 종목별 청소년대표선수 국외전지훈련은 <표 4-6>과 같다.

표 4-6. 종목별 청소년대표선수 국외전지훈련

(단위: 명)

연번	종목	기간	장소	인원			비고
				지도자	선수	합계	
1	핸드볼	06.20~07.4	크로아티아	6	28	34	합동훈련
2	레슬링	07.02~13	대만	3	16	19	합동훈련
	스키	07.11~25	프랑스	-	2	2	합동훈련
				-	2	2	
				-	2	2	
				-	2	2	
				1	2	3	
4	자전거	07.16~26	스위스 에이글	3	10	13	합동훈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참가
5	빙상(쇼트트랙)	07.21~30	중국 우루무치	2	10	12	합동훈련
6	철인3종	07.25~08.08	사이판	2	10	12	합동훈련
7	탁구	08.26~09.30	중국, 푸양	3	12	15	합동훈련
8	배드민턴	09.15~1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	19	25	합동훈련

연번	종목	기간	장소	인원			비고
				지도자	선수	합계	
9	유도	10.11~20	일본 센다이대학교	2	14	16	합동훈련
10	역도	10.16~28	말레이시아 페낭	5	10	15	합동훈련
11	근대5종	10.16~26	키르키즈스탄	3	9	12	합동훈련
12	펜싱	12.10~20	중국 칭도	4	15	19	합동훈련
13	세일링	12.07~12.21	뉴질랜드 오클랜드	3	7	10	합동훈련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출전 (420 요트종목(여) 조현주/ 김시인 17위)
14	소프트볼	12.09~21	일본 미야자키현	3	17	20	합동훈련
15	태권도	10.28~11.07	태국 방콕	5	30	35	합동훈련
16	컬링	11.02~16	캐나다 켈거리	2	10	12	합동훈련
17	하키	12.05~14	말레이시아	6	24	30	합동훈련
18	육상	12.12	대만 타이페이	4	14	18	합동훈련
19	바이애슬론	11.29~12.14	일본 아사이다케	2	14	16	합동훈련
20	테니스	11.30~12.13	브루나이	3	8	11	합동훈련
21	카누	11.07~11.19	스페인	2	10	12	합동훈련
22	복싱	12.16~23	중국 심양	2	10	12	합동훈련
23	아이스하키	12.03~12	일본 도마코마이	7	23	30	합동훈련
계				79	330	409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3. 후보선수

1) 개요

후보선수는 잠재력 있는 우수인재를 찾아 종목별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대표선수로 즉시 총원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1982년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관리되다가 1983년부터 각 회원종목단체가 매년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있다. 2016년에는 2015년과 동일하게 29개 종목에 1,310명의 후보선수를 선발하였다. 2016년에는 전체 후보선수 1,310명 중 52명이 대표선수로 배출되어 전체 국가대표선수 중 3.9%의 비중을 보였으며, 구체적인 연도별 후보선수 발굴 및 국가대표선수 배출은 <표 4-7>과 같다.

표 4-7. 연도별 후보선수 발굴 및 국가대표선수 배출

(단위: 명, %)

연도	발굴	탈락	최종선발(육성인원)	선수배출	비율(%)
2005	1,300	-	1,300	104	8
2006	1,300	-	1,300	62	4.8
2007	1,300	-	1,300	108	8
2008	1,300	-	1,300	115	8.8
2009	1,300	-	1,300	64	4.9
2010	1,300	-	1,300	82	6.3
2011	1,300	-	1,300	67	5.1
2012	1,300	-	1,300	118	9.1
2013	1,300	-	1,300	117	9
2014	1,300	-	1,300	79	6.1
2015	1,310	-	1,310	81	6.2
2016	1,310	-	1,310	52	3.9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016년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비율은 대표선수 794명 중 665명(88.4%)이 후보선수출신이며, 비후보선수 출신 129명(11.56%)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대표선수가 846명에서 794명으로 52명이 줄어들었다.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비중이 100%인 종목은 수영과 빙상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종목에서 비중이 80%이상을 넘고 있으나 5개 종목(복싱, 태권도, 사격, 핸드볼, 테니스)에서는 80%보다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비율은 <표 4-8>과 같다.

표 4-8.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비율

(단위: 명)

연번	종목	후보선수 수	대표선수 수	후보선수출신 대표	비후보선수출신대표
1	육상	135	22	19	3
2	수영	118	56	56	0
3	체조	60	34	31	3
4	복싱	30	19	13	6
5	레슬링	50	32	28	4
6	역도	30	26	20	6
7	유도	48	36	34	2

연번	종목	후보선수 수	대표선수 수	후보선수출신 대표	비후보선수출신대표
8	태 권 도	48	42	20	22
9	양 궁	40	16	15	1
10	사 격	84	64	48	16
11	배 구	36	24	21	3
12	핸 드 볼	48	18	9	9
13	하 키	48	36	35	1
14	탁 구	32	20	16	4
15	근 대 5 중	15	16	14	2
16	펜 싱	48	48	41	7
17	테 니 스	24	12	7	5
18	사 이 클	40	31	24	7
19	조 경	30	13	11	2
20	요 트	29	22	17	5
21	카 누	26	12	10	2
22	배 드 민 턴	60	40	34	6
23	축 구	30	20	19	1
24	소 프 트 볼	17	17	13	4
25	아 이 스 하 키	25	21	19	2
26	바 이 애 슬 론	18	12	10	2
27	빙 상	78	39	39	0
28	스 키	53	46	42	4
29	컬 링	10	0	0	0
합 계		1,310	794	665	129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 후보선수 세부현황 및 육성

후보선수 세부현황은 총 29개 종목에서 1,310명(남자 726명, 여자 584명)으로 나타났다. 후보선수 육성지도자 수는 전체 전임지도자 39명과 전문지도자 121명으로 2015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후보선수는 방학기간 중 동·하계 합숙훈련지원을 통해 집중적 기술 훈련 및 경기력 향상 훈련을 받으며 후보선수 중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국제경기대회를 대비한 해외훈련 지원사업도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종목별 후보선수 및 지도자 현황은 <표 4-9>와 같다.

후보선수 훈련육성사업은 동·하계 합숙훈련(6,445백만 원), 국외전지훈련(753백만

표 4-9. 종목별 후보선수 및 지도자 현황

(단위: 명)

	종목	선수			지도자			합계	
		남	여	계	전임	전문	소계		
1	육상	단 허 들	20	13	33	1	4	5	38
		중 장 거 리	24	14	38	1	4	5	43
		도 약 혼 성	18	17	35	1	4	5	40
		투 척	15	14	29	1	3	4	33
		소 계	77	58	135	4	15	19	154
2	수영	경 영	33	33	66	1	6	7	73
		다 이 빙	14	13	27	1	2	3	30
		수 구	15	-	15	-	2	2	17
		싱 크 로	-	10	10	1	1	2	12
	소 계	62	56	118	3	11	13	132	
3	체조	기 계	27	21	48	2	4	6	54
		리 등	-	12	12	1	1	2	14
		소 계	27	33	60	3	5	8	68
4	레슬링	자 유 형	21	8	29	1	2	3	32
		그레코로만형	21	-	21	1	1	2	23
		소 계	42	8	50	2	3	5	55
5	복싱	26	6	32	1	3	4	36	
6	역도	18	12	30	1	3	4	34	
7	유도	24	24	48	1	4	5	53	
8	양궁	20	20	40	1	3	4	44	
9	사격	49	35	84	2	8	10	94	
10	배구	18	18	36	1	3	4	40	
11	핸드볼	24	24	48	1	3	4	52	
12	하키	24	24	48	1	3	4	52	
13	탁구	16	16	32	1	4	5	37	
14	펜싱	24	24	48	1	4	5	53	
15	테니스	12	12	24	1	3	4	28	
16	사이클	25	15	40	1	5	6	46	
17	조정	16	14	30	1	4	5	35	
18	요트	25	4	29	1	3	4	33	
19	카누	18	8	26	1	3	4	30	
20	소프트볼	-	17	17	1	1	2	19	
21	배드민턴	30	30	60	1	5	6	66	
22	태권도	24	24	48	1	3	4	52	
23	근대5종	10	5	15	1	1	2	17	
24	축구	-	30	30	1	2	3	33	
25	아이스하키	23	-	23	1	2	3	26	
26	빙상	스 피 드	15	15	30	1	3	4	34
		피겨	3	9	12	-	2	2	14
		쇼트트랙	24	12	36	1	4	5	41
		소 계	42	36	78	2	9	11	89
27	바이애슬론	9	9	18	1	2	3	21	

종목	선수			지도자			합계	
	남	여	계	전임	전문	소계		
27	바 이 애 슬 론	9	9	18	1	2	3	21
28	알 파 인	12	8	20	1	1	2	22
	크 로 스	12	7	19	1	1	2	21
	스 키 점 프	4	-	4	-	1	1	5
	스 키 스 노 우 보 드	3	2	5	-	1	1	6
	프 리 스타 일	5	-	5	-	1	1	6
	소 계	36	17	53	2	5	7	60
29	컬 링	5	5	10	-	2	2	12
합계(29개 종목)		726	584	1,310	39	121	160	1,470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원), 전임지도자운영(2,427백만 원), 한일우수청소년스포츠교류(583백만 원)로 나뉘며, 후보선수 육성의 모든 사업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동·하계합숙훈련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후보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전국 일원에서 29개 종목 2,715명(동계 합숙훈련 29개 종목 1,470명, 하계합숙훈련 29개 종목 1,245명: 수영, 사격 미실시)이 참가하였다. 전임지도자 운영은 유능한 지도자 운용을 통해 후보선수들의 체계적 육성 및 국가대표선수 수급의 핵심역할로 동·하계 합숙훈련 지도, 국외 전지훈련 지도, 전국 순회지도를 하였다. 국외 전지훈련은 훈련여건 개선을 통해 훈련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시아,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등에서 19종목 315명(동계종목 제외)이 참가하였다. 한일 우수청소년 스포츠교류는 한일 양국 청소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문화교류 및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한국 및 일본 전역에서 12개 종목 939명(파견 12종목 313명, 초청 12종목 626명, 수영과 사격 미실시)이 참가하였다.

후보선수훈련 육성사업 예산은 동·하계 합숙훈련(63.1%), 전임지도자운영(23.7%), 국외 전지훈련(7.3%), 한일 우수청소년 스포츠교류(5.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후보선수 훈련육성 사업예산 지원내역은 <표 4-10>,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결과는 <표 4-11>과 같다. 국가대표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 결과는 <표 4-12>,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 결과는 <표 4-13>, 한일우수청소년스포츠교류 현황은 <표 4-14>와 같다.

표 4-10. 후보선수 훈련육성 사업예산 지원내역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예산	%	사업내용
동·하계 합숙훈련	6,445	63.1	· 훈련방법: 합숙훈련 · 훈련장소: 전국일원(회원종목단체별로 선정) · 훈련기간: 동 하계 각 20일(연간 40일 실시)
국외전지훈련	753	7.3	· 훈련기간: 종목별 15일 이내 · 지원내용: 항공료, 체재비
한일우수청소년 스포츠교류	583	5.7	· 인원: 파견 13종목 333명 / 초청 13종목 669명(한국 333명, 일본 336명) · 훈련장소: 전국 일원 및 일본 · 훈련기간: 종목별 6일
전임지도자운영	2,427	23.7	· 인원: 28종목 39명 · 지원내용: 인건비,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등 · 주요업무: - 동 하계 합숙훈련 및 비합숙훈련시 지도 -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훈련지원 등
합계	10,209	100.0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4-11.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결과

(단위: 명)

종목	기간	훈련장소	인원			숙소	비고	
			선수	지도자	계			
육상	단거리 허들	01.08~02.01	경북 예천 종합경기장	33	5	38	파라다이스 호텔	25일 훈련
	중장거리 경보	01.08~02.01	광양공설운동장	38	5	43	광양 남일호텔	
	도약, 혼성	01.08~02.01	대구육상진흥센터	35	5	40	대구육상진흥센터	
	투척	01.08~02.01	전남 목포유달공설운동장	29	4	33	목포빅토리아모텔	
수영	경영	01.18~02.06	인천 박태환 수영장	66	6	72	스텔라마니나	
	다이빙	01.18~02.06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	27	3	30	김천파크호텔	
	수구	01.18~02.06	전남체육고등학교	15	2	17	알프스모텔	
	싱크로	01.18~02.06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	10	2	12	김천파크호텔	
체조	기계(남)	02.10~02.29	강원 춘천중앙초등학교	27	3	30	-	
	기계(여)	02.10~02.29	대구체육고등학교	21	3	24	-	
복싱	리듬 체조	01.20~02.08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	12	2	14	발리모텔	
레슬링	싱	01.10~01.29	울산 경영정보고 체육관	32	4	36	갤럭시호텔	
역도	링	01.11~02.04	전남 해남 우슬체육관	50	5	55	티파니모텔 유니크모텔	해남군 유치
	도	02.11~03.01	전남 보성 다목적체육관	30	4	34	보성관광모텔	
유도	1차	01.04~01.16	1차 경남사천 삼천포체육관	48	5	53	엘리너스호텔 더메이	25일 훈련
	2차	01.18~01.30	2차 태릉선수촌, 금곡고					
양궁	남자	01.16~02.04	경기 수원시양궁장	20	2	22	W모텔	
	여자		경기 여주시청훈련장	20	2	22	여주일성콘도	

종목		기간	훈련장소	인원			숙소	비고
				선수	지도자	계		
사격	공기총화약총	01.15~02.03	전남 나주 종합사격장	44	5	49	리츠모텔	
			충북청원종합사격장	40	5	45	약수파크장외	
핸드볼	남자	(1차)01.15~01.24 (2차)01.25~02.03	서울 태릉(1차) 경기부천(2차)	24	2	26	더메이호텔	
	여자	(1차)01.15~01.28 (2차)01.29~02.03	전북 경음(1차) 서울태릉(2차)	24	2	26	더메이호텔	
하키	남자	02.12~02.26	인천 선학 하키장	24	2	26	선학하키장	
	여자	01.02~01.16	전남 목포 하키장	24	2	26	힐사이드호텔	
배구	남자	01.07~01.26	경남 하동중학교 체육관	36	4	40	삼진강호텔	
	여자	01.24~02.11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	32	5	37	태평모텔	
펜싱	싱글	01.17~02.05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	48	5	53	익산비즈니스호텔	
조정	정선	01.15~02.03	진천선수촌	30	5	35	진천선수촌	
요트	트러블	02.11~02.29	전남 여수 소호요트경기장	29	4	33	디오션	
카누	노수	02.11~03.01	제주 성산항 인근	26	4	30	미정	
배드민턴	민턴	01.16~02.04	전남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60	6	66	도곡스파랜드	
축구	(여자)	01.27~02.05	전남 목포 국제축구센터	30	3	33	목포국제축구센터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12.05~12.19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23	3	26	반데호크 호텔	12월 실시
바이애슬론	바이애슬론	12.21 2017.01.09	강원 평창 알펜시아경기장	18	3	21	대관령산방	16~17년 실시
	알파인	12.21~17.01.09	경기 포천 베어스타운	20	2	22	빌리콘도	12월 실시
크로스컨트리	12.11~12.30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	19	2	21	리조트내 타워콘도		
스노우보드	11.28~12.17	강원 횡성 웰리힐리파크	5	1	6	리조트내 숙소		
스키점프	01.16~02.04	강원 평창 알펜시아	4	1	5	올리브콘도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11.28~12.17	강원 횡성 웰리힐리파크	5	1	6	리조트내 숙소	
	태권도	01.05~01.24	전남 구례실내체육관	48	4	52	지리산가족호텔	
근대5종	근대5종	01.18~02.06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	15	2	17	소풍모텔	
테니스	테니스	02.11~03.01	전북 남원춘향테니스장	24	4	28	지리산하이츠콘도	
소프트볼	소프트볼	01.17~02.05	전남 구례 종합운동장	17	2	19	지리산가족호텔	
사이클	사이클	1차:01.04~01.21 2차:02.2~02.11	경남 창녕(1차) 전남 강진(2차)	40	6	46	부곡한성호텔 프린스호텔	28일
	빙상	스피드	1차:02.11~02.20 2차:03.14~03.23	태릉국제스케이팅장	30	4	34	더메이호텔
쇼트트랙	쇼트트랙	01.3~01.22	목동아이스링크	36	5	41	골든서울호텔	
	피겨	1차:01.21~01.28 2차:02.11~02.22	태릉실내빙상장	12	2	14	해당없음(합동훈련)	
컬링	컬링	01.18~02.06	경기도 의정부 컬링장	10	2	12	더메이호텔	
합계				1,310	160	1,470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4-12. 국가대표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 결과

(단위: 명)

종목	기간	훈련장소	인원			숙소	비고	
			선수	지도자	계			
육상	단거리 허들	07.31~08.14	보은 종합경기장	33	5	38	리치호텔	동계 25일
	중장거리 경보	07.31~08.14	보은 종합경기장	38	5	43	그린파크펜션모텔	
	도약, 혼성	07.31~08.14	문경 시민운동장	35	5	40	M컨벤션호텔	
	투척	07.31~08.14	익산 종합운동장	29	4	33	힐탑호텔 외	
수영	경영					0		
	다이빙					0		
	수구					0		
	싱크로					0		
체조	기계 (남)	07.22~08.10	대전체육고등학교	27	3	30	레전드호텔	
	기계 (여)	07.25~08.13	대구체육고등학교	21	3	24	팔공산온천관광호텔	
	리듬 체조	07.22~08.10	양구여고, 양구문화체육회관	12	2	14	챔피언펜션	
복싱	08.02~08.22	경북문경 국군체육부대	32	4	36	부대내 숙소		
레슬링	자유형	1차 08.22~25	평창국민체육센터	50	5	55	평창로얄모텔	2차 없음
	그레코	07.08~07.22	양구청소년수련관 외				공새알 펜션	
역도	07.07~07.26	고양시장미란체육관	30	4	34	람세스호텔		
유도	1차 06.25~07.02	태릉선수촌(2차 경산실내체)	48	5	53	The May 호텔 외	2차 08.14~21	
양궁	남자	1차 08.03~08.17	수원시양궁장	20	2	22	W모텔	2차 08.26~30
	여자	1차 08.03~08.17	여주시청훈련장	20	2	22	여주일성콘도	2차 08.26~30
사격	공기총화약총							
핸들볼	남자	05.14~05.23	선산체육관	24	2	26	구미체어맨모텔	2차 11.14~23
	여자	05.09~05.18	대구체고, 서울SK구장	24	2	26		2차 10.17~31
하키	남자	10.17~10.31	인천선학하키장	24	2	26	선학하키장숙소	
	여자	07.05~07.14	서울 외	24	2	26	발리호텔	
배구	07.28~08.16	울산제일고체육관 외	36	4	40	신라스테이호텔 외		
탁구	06.28~07.17	보은국민체육센터	32	5	37	그린파크모텔 외		
펜싱	08.21~09.09	해남우슬체육관	48	5	53	남도호텔		
조정	07.27~08.15	충주 탄금호조정경기장	30	5	35	그랜드관광호텔		
요트	07.08~07.28	부산수영만요트경기장	29	4	33	해운대 팔레드시즈		
카누	07.03~07.22	목포시카누경기장	26	4	30	힐사이드호텔		
배드민턴	08.02~08.20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	60	6	66	밀양관광호텔		
축구	1차 08.16~30	여수망마구장	30	3	33	여수썬하우스호텔	동계 10일	
	2차 09.12~26	목포축구센터				목포축구센터숙소		
아이스하키	12.16~12.29	고양어울림누리아이스링크	23	3	26	골든서울호텔		
바이애슬론	07.25~08.18	진천선수촌	18	3	21	진천선수촌	동계 15일	
스키	알파인	06.18~07.07	베어스타운리조트	20	2	22	빌라콘도	
	크로스컨트리	07.10~07.29	용평 및 알펜시아	19	2	21	용평 빌라콘도	
	스노우보드	05.28~06.16	웰리힐리 리조트	5	1	6	웰리힐리콘도	

종목	기간	훈련장소	인원			숙소	비고	
			선수	지도자	계			
스키점프	08.9.08.16	알펜시아스키점프장	4	1	5	티팩토리펜션		
	06.20~07.09	웰리힐리리조트	5	1	6	웰리힐리콘도		
태권도	07.08~07.27	구례실내체육관	48	4	52	지리산가족호텔		
근대5종	07.25~08.01	문경시국군체육부대	15	2	17	소풍모텔		
테니스	06.22~07.11	김천스포츠타운테니스장	24	4	28	김천파크모텔	선수-8	
소프트볼	07.21~08.09	구례공설운동장	17	2	19	그리스텔		
사이클	08.01~08.12	음성벨로드롬 외	40	6	46	홍우모텔 외	동계 28일	
빙상	스피드	07.10~07.29	태릉국제스케이팅장	30	4	34	-	합동
	쇼트트랙	08.07~08.26	태릉실내빙상장	36	5	41	더메이호텔	전문지도자1
	피겨	07.29~08.31중	목동아이스링크	12	2	14	-	합동
컬링	남자	07.11~07.30	태릉 및 강원도올림픽컬링장	5	1	6	더메이호텔 외	
	여자	08.08~08.21	태릉컬링장, 송현고	5	1	6	제이비스호텔	2차 9.1~9.6
합계			1,108	137	1,245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4-13. 국가대표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 결과

(단위: 명)

종목	기간	장소	인원			훈련내용	비고	
			선수	지도자	계			
1 탁구	05.08~05.16(8박 9일)	태국(방콕)	3	8	11	수순 전지훈련		
2 레슬링	그레코	05.02~05.16(14박15일)	기르키스탄	2	10	12	대회참가 병행	
	자유형(여)	07.04~07.18(14박15일)	캐나다(토론토)	2	8	10	대회참가 병행	
3 펜싱	11.20~11.28(8박 9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4	18	22	합동훈련		
4 핸드볼(여자)	06.28~07.11(13박14일)	스웨덴, 스페인	3	14	17	합동훈련 및 대회참가		
5 역도	06.21~07.03(12박13일)	조지아(트빌라시)	2	6	8	대회참가 병행		
6 태권도	10.24~11.03(11박12일)	중국(북경)	4	25	29	합동훈련		
7 요트	12.13~12.21(8박 9일)	뉴질랜드(오클랜드)	1	4	5	합동훈련 및 대회참가		
8 체조	남자기계	12.09~12.21(12박13일)	우즈베크(타슈켄트)	2	10	12	합동훈련 및 대회참가	
	여자기계	12.10~12.21(11박12일)	일본	3	9	12	합동훈련	
	리듬	12.10~12.17(7박 8일)	일본	2	8	10	합동훈련	
9 사이클	01.22~01.31(9박10일)	일본(이즈시)	2	13	15	대회참가 병행		
10 복싱	04.28~05.10(12박13일)	카자흐스탄(파블로다르)	2	9	11	대회참가 병행		
11 하키(남)	10.31~11.11(11박12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	4	24	28	합동훈련		
12 유도	07.20~07.31(11박12일)	체코	2	8	10	합동훈련 및 대회참가		
13 육상(도약, 투척)	03.19~04.02(14박15일)	일본(히로시마)	4	16	20	합동훈련 및 대회참가		
14 테니스	06.01~06.15(14박15일)	중국(북주)	2	8	10	합동훈련		
15 축구(여자)	02.09~02.17(8박 9일)	미국(캘리포니아)	5	18	23	대회참가 병행		
16 카누	12.02~12.15(13박14일)	스페인	2	8	10	합동훈련		
17 사격	04.27~05.07(10박11일)	독일	2	8	10	대회참가 병행	보류(미실시)	
18 배드민턴	02.29~03.15(15박16일)	네덜란드, 독일	4	16	20	대회참가 병행		
19 근대5종	07.09~07.19(10박11일)	아일랜드(리메릭)	2	8	10	합동훈련 및 대회참가		
합계			59	256	315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4-14. 한일우수청소년스포츠교류 현황

(단위: 명)

종목	파견			초청			
	기간	장소	인원	기간	장소	인원	
육상	07.09~16	홋카이도 (아바시리/키타미)	24(7/17)	12.14~20	대구	48(17/31)	
체조	기 계 리 등	11.09~14	동경(NTC)	18(4/14)	12.01~06	서울(태릉)	36(8/28)
				10(2/8)			20(4/16)
축구	남 자	12.13~18	오이타현	24(4/20)	10.26~31	파주	48(8/40)
	여 자	10.14~19	오사카현	24(4/20)	11.13~18	파주	48(8/40)
유도	12.01~06	도쿄	27(3/24)	11.15~20	태릉선수촌	54(6/48)	
핸드볼	남 자	10.26~31	오키나와	20(4/16)	09.19~24	인천	40(8/32)
	여 자	09.07~12	나고야	20(4/16)	10.16~21	인천	40(8/32)
레슬링	11.27~12.02	동경	26(6/20)	08.28~09.02	서울	52(12/40)	
소프트볼(여)	11.02~07	치바현/도쿄	22(5/17)	09.07~12	충북 진천	44(10/34)	
탁구	11.06~11	시가현	18(4/14)	10.23~28	제주도	36(8/28)	
하키	11.14~19	기후현	20(4/16)	10.17~22	대구	40(8/32)	
배드민턴	12.12~17	동경	20(4/16)	05.17~22	제주도	40(8/32)	
카누	12.20~25	고마쯔	20(5/15)	11.22~27	강원 속초	40(10/30)	
역도	12.06~11	도쿄	20(5/15)	10.25~30	경남 고성	40(10/30)	
합계			313(65/248)			626(133/493)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1983년부터 시작된 전임지도자 지원사업도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각 종목별 경기협회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지도자이다. 전임지도자 임기는 1985년부터 2004년까지는 1년이었으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2년으로 조정하였고, 2009년부터는 4년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임금치우도 개선하였다. 전임지도자는 종목별로 재능이 있는 후보선수를 선발하고 순회지도, 합숙훈련, 국외훈련에 대한 계획수립, 평가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임지도자의 지도 및 관리업적 등을 연 1회 평가하고 재임용시 결과를 반영한다. 2016년에는 29개 종목에 35명의 전임지도자가 활동하였고, 종목 중 정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종목은 컬링 한 종목이며, 정원충원이 안 된 종목은 레슬링 자유형, 복싱, 빙상 스피드 종목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종목별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현황은 <표 4-15>와 같다.

표 4-15. 종목별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현황

(단위: 명)

종목		정원	현원	종목	정원	현원	
육상	단거리	1	1	사이클	1	1	
	중장거리	1	1	테니스	1	1	
	도약	1	1	탁구	1	1	
	투척	1	1	배구	1	1	
수영	경영	1	1	배드민턴	1	1	
	다이빙	1	-	펜싱	1	1	
	싱크로	1	1	요트	1	1	
체조	남자	1	1	카누	1	1	
	여자	1	1	근대5종	1	1	
	리듬	1	1	여자축구	1	1	
레슬링	자유형	1	-	태권도	1	1	
	그레코로만형	1	1	소프트볼	1	1	
복합	싱	1	-	빙상	스피드	1	-
	도	1	1		쇼트트랙	1	1
역양	도	1	1	스키	알파인	1	1
	궁	1	1		크로스컨트리	1	1
사격	공기총	1	1	아이스하키	1	1	
	화약총	1	1	바이애슬론	1	1	
핸드볼	1	1	컬링	-	-		
하키	1	1	합계(29개 종목)		39	35	
조정	1	1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4. 국가대표선수

1) 국가대표선수 훈련

국가대표선수는 종목별로 태릉선수촌, 진천선수촌을 중심으로 훈련하였으며, 종목에 따라 선수촌 외 훈련장과 각 종목 소속훈련장에서도 훈련이 진행되었다. 2016년 종목별 훈련인원은 태릉선수촌에서 양궁 등 18개 종목 692명, 진천선수촌에서 육상 등 14종목 521명, 촌외에서 40종목 1,016명이었다. 구체적인 선수촌 구분에 따른 국가대표 훈련 현황은 <표 4-16>과 같다.

표 4-16. 대회와 선수촌 구분에 따른 국가대표 훈련 현황

구분	훈련 현황		
	태릉선수촌 입촌훈련	진천선수촌 입촌훈련	촌외훈련
올림픽경기대회종목(35)	17종목(양궁 등)	14종목(육상 등)	30종목 802명(양궁 등)
아시아경기대회종목(10)	1종목(볼링)	4종목(경구 등)	10종목 214명(야구 등)
합계	18종목 692명	18종목 521명	40종목 1,016명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016년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훈련은 2015년 대비 야구와 소프트볼 통합으로 인해 1종목이 축소된 44종목(하계 37, 동계 7)의 선수 및 지도자가 참가하였다.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2016 리우 하계올림픽대회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에 참가하였으며, 구체적인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훈련인원 현황은 <표 4-17>과 같다.

국가대표선수 훈련결과 첫째, 2016 리우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양궁의 전 종목을 석권하고, 사격 올림픽 사상 최초로 3연패를 달성하였으며, 태권도 출전선수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였다(종합 8위: 금9, 은3, 동9 획득). 둘째, 국가대표 훈련 시스템을 선진형으로 개선하였다(급량비 인상, 의·과학 현장지원 강화 및 선수 생애주기 교육 프로그램 본격화로 복지, 교육 확대). 셋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대비에 따른 훈련환경 개선 및 2020 도쿄하계올림픽대회 경기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향후 국가대표선수훈련 추진계획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종합 4위 및 2018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대회 우수성적 달성을 위해 강화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표 4-17.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훈련 현황

(단위: 명)

구분	종목	엔트리		훈련현황							합계
		남	여	선수			코치	트레이너			
				남	여	소계		체력·심리	물리치료	소계	
하계 종목 (38)	양 궁	3	3	12	12	24	7	-	1	1	32
	육 상	14	3	20	7	27	6	-	-	0	33
	배 드 민 턴	8	8	20	20	40	6	-	1	1	47
	농 구	12	12	12	12	24	4	-	-	0	28
	복 심	10	3	20	6	26	5	-	1	1	32
	카 누	16	7	12	4	16	4	-	-	0	20
사 이 클	19	15	20	11	31	6	1	-	1	38	

구분	종목	엔트리		훈련현황							합계
		남	여	선수			코치	트레이너			
				남	여	소계		체력·심리	물리치료	소계	
	승마	12	-	12	-	12	3	-	-	0	15
	펜싱	8	8	24	24	48	6	-	1	1	55
	축구	18	18	18	18	36	4	-	-	0	40
	골프	4	4	8	8	16	3	1	-	1	20
	체조	5	12	10	24	34	10	-	2	2	46
	핸드볼	14	14	22	22	44	6	-	2	2	52
	하키	16	16	24	24	48	6	-	2	2	56
	유도	9	9	18	18	36	6	1	1	2	44
	근대5종	2	2	8	8	16	5	-	-	0	21
	조정	28	20	11	9	20	3	-	-	0	23
	력비	12	12	18	14	32	4	-	1	1	37
	요트	8	7	16	7	23	5	-	1	1	29
	사격	18	12	36	28	64	12	1	1	2	78
	수영	47	56	34	22	56	10	1	1	2	68
	탁구	3	3	10	10	20	4	-	1	1	25
	태권도	4	4	16	16	32	6	-	1	1	39
	테니스	6	6	6	6	12	2	1	-	1	15
	트라이애슬론	3	3	4	4	8	2	-	1	1	11
	배구	16	16	16	16	32	5	2	-	2	39
	역도	6	4	14	12	26	5	-	2	2	33
	레슬링	12	6	32	12	44	8	-	2	2	54
	야구	24	-	24	-	24	3	-	-	0	27
	볼링	6	6	8	8	16	4	-	-	0	20
	카바디	12	12	12	12	24	2	-	-	0	26
	공수도	4	4	5	5	10	2	-	-	0	12
	세팍타크로	18	18	12	12	24	4	-	-	0	28
	스쿼시	4	4	5	5	10	2	-	-	0	12
	우슈	9	6	8	5	13	3	-	-	0	16
	경구	6	6	10	10	20	2	-	1	1	23
	소프트볼	-	15	-	17	17	2	1	-	1	20
	크리켓	15	15	15	15	30	4	-	-	0	34
소계	38종목	431	369	572	463	1,035	181	9	23	32	1,248
동계 종목 (7)	빙상	24	24	24	26	50	7	-	2	2	59
	스키	54	51	32	15	47	14	-	-	0	61
	아이스하키	23	23	22	21	43	4	-	1	1	48
	바이애슬론	6	6	8	8	16	4	-	-	0	20
	컬링	6	6	6	6	12	5	-	-	0	17
	봅슬레이·스켈레톤	21	9	16	5	21	4	1	-	1	26
루지	7	3	5	3	8	2	-	-	0	10	
소계	7종목	141	122	113	84	197	40	1	3	4	241
합계	45종목	572	491	685	547	1,232	221	10	26	36	1,489

※ 주: 훈련 지원횟수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음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제3절 전문체육대회 및 훈련시설

전문체육대회는 하계·동계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이외에도 종목별 전국대회, 종목별 시·도대회, 시·도별 종합대회, 협회장기, 시·도지사기 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을 위해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진천선수촌이 운영되고 있다.

1. 전국(하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는 1920년 11월 개최된 전 조선야구대회가 시초이고, 1934년 전 조선종합경기대회가 전국체육대회의 효시라 할 수 있다. 1948년 조선종합경기대회가 전국체육대회로 개칭되면서 시·도 대항제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1950년 제31회 전국체전은 중단되었으나 다음해 제 32회 대회는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1952년 제33회 대회부터 5회에 걸쳐 서울에서 대회가 개최되다가 1957년도 제38회 대회부터 지방순회 개최원칙을 도입하여 지방의 체육시설 확충, 시·도민의 체육에 대한 인식보급 향상 등 전국적으로 체육이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1966년 제47회 대회부터 매년 대회표어를 채택하다가 제51회 대회에서 채택한 ‘군센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이 이후 계속 사용되었다. 1967년 제48회 대회부터 체전사상 처음으로 카드섹션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1972년 제53회 전국체전부터 초등부와 중학부가 분리되어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별도로 개최되었고, 해외동포선수단이 전국체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재미동포가 최초로 해외동포선수단으로 참가하였고, 이후 국내·외 동포의 성대한 체육제전으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여 해마다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오랜 시간 동안 성장·발전하면서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주축인 꿈나무들을 선발하는 중추적인 기능과 시·군·구팀

이 존속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제97회 전국(하계)체육대회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충남 아산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대회규모는 47개 종목(정식 45, 시범 2)에 약 24,811명(임원 6,244명, 선수 18,567명)이 참가하였으며, 개최식과 폐막식 모두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종합시상 1위는 대통령배, 2위는 국무총리배, 3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상을 수여하는데 1위 경기, 2위 충남, 3위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도별 전국(하계)체육대회 개최 현황은 <표 4-18>과 같다.

표 4-18. 연도별 전국(하계)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대회기간	개최지	참가종목	참가인원(명)	순위		
					1위	2위	3위
89회	2008.10.10-10.16	전남	42	24,954	경기	서울	전남
90회	2009.10.20-10.26	대전	44	24,541	경기	서울	대전
91회	2010.10.06-10.12	경남	44	23,876	경기	경남	서울
92회	2011.10.06-10.12	경기	45	23,871	경기	서울	경남
93회	2012.10.11-10.17	대구	45	24,159	경기	대구	서울
94회	2013.10.18-10.24	인천	46	24,524	경기	서울	인천
95회	2014.10.28-11.03	제주	47	24,807	경기	서울	경남
96회	2015.10.16-10.22	강원	47	24,780	경기	강원	서울
97회	2016.10.07-10.13	충남	47	24,811	경기	충남	서울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1923년 1월, 대동강에서 개최된 빙상대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년 뒤 조선체육회 주최로 제1회 전 조선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되었고, 그 밖에 조선학생 빙상경기연맹을 비롯하여 조선빙상경기연맹 등 경기단체에 의해 크고 작은 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스키대회의 효시는 1930년 2월, 원산시 신평리 스키장에서 원산체육협회가 주최하였고, 조선체육협회 등의 후원으로 제1회 조선스키선수권대회가 일본 단체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광복 이후 1946년 1월 한강 특설링크에서 개최된 빙상대회가 오늘날

빙상경기대회로 이어졌다.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링크인 동대문실내링크가 개장되어 1967년 동계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3개 종목 경기를 개최하였다. 이후 1986년 제67회 대회부터 빙상대회와 스키대회를 동계대회로 통합하고, 종합 점수제를 실시하여 동계 종합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 전국동계체육대회는 태릉선수촌 내 국제 스케이트장을 포함한 실내 스케이트장 개장, 스키장 개장, 스키인구의 점진적인 증가 등 시설확충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에 대한 정부와 전 국민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최근 동계올림픽대회에서 보여준 한국성적은 하계올림픽대회보다도 그 발전 속도가 두드러진다. 90년대부터 시작된 10위권 진입은 1994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대회에서 6위,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대회에서 9위,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대회에서 7위 그리고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에서 5위를 차지하면서 하계올림픽경기대회에 이어 동계올림픽대회에서 한국의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동계스포츠의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에서 배출된 우수선수들과 지도자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한국식 쇼트트랙’을 전파하고 있다.

2016년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에

표 4-19. 연도별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 현황

(단위: 개)

회수	대회기간	개최지	참가종목	참가인원(명)	순위		
					1위	2위	3위
89회	2008.02.19-02.22	서울, 경기, 강원	5	3,381	경기	강원	서울
90회	2009.02.10-02.13	서울, 경기, 강원	5	3,434	경기	강원	서울
91회	2010.02.02-02.05	서울, 강원, 경남, 전북	5	3,572	경기	서울	강원
92회	2011.02.15-02.18	서울, 강원, 전북	5	3,563	경기	강원	서울
93회	2012.02.14-02.17	서울, 강원, 전북	5	3,538	경기	서울	강원
94회	2013.02.18-02.21	서울, 울산, 강원, 충남, 전북	5	3,670	경기	서울	강원
95회	2014.02.26-03.01	서울, 강원, 경기, 경북, 충남	5	3,666	경기	강원	서울
96회	2015.02.25-02.28	서울, 인천, 울산, 강원, 전북	7	3,822	경기	서울	강원
97회	2016.02.23-02.26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7	3,980	경기	서울	강원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서 동시 개최되었으며, 대회규모는 7개 종목(정식 5, 시범 2)에서 3,980명(임원 1,203명, 선수 2,777명)이 참가하였다. 개최식과 폐막식은 모두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호텔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순위는 1위 경기, 2위 서울, 3위 강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연도별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현황은 <표 4-19>와 같다.

3.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초등학교부와 중학교부가 전국체육대회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개최된 전국 규모의 주니어종합대회이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표어 아래 지·덕·체를 연마하는 전인교육의 무대로 대한체육회가 주관하여 해마다 봄에 거행되는 전국규모의 소년·소녀 체육대회이다. 성장기에 있는 소년·소녀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며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을 통한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972년 전국체육대회와 분리되면서 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로 칭해지다가 1975년 제4회 부산대회 때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로 개칭되었다. 제1회 서울대회에서는 육상·수영·축구 등 19개 종목이 실시되었고, 제2회 대전대회에서는 중학교부에 사격종목이, 제3회 서울대회에서는 중학교부에 사이클과 궁도종목이 추가되었다. 제12회 대회에서는 경기력 향상과 경기인구의 저변확대라는 취지 아래 각 경기의 세부종목을 대폭 개선하여 초등학교부 10개 경기를 포함하여 23개 경기가 정식종목으로 실시되었다.

1970년대 시·도간 과열경쟁, 선수혹사, 수업결손, 진로문제 등 대회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종합점수제 폐지(1980~1981년), 메달집계 시상(1982년), 종합점수제 부활(1983~1988년)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단행하였으나, 끝내 1989년부터 소년체전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가체육의 미래와 꿈나무선수 육성을 위한 대회의 개최 여부가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1992년 다시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4년부터 소년체전은 전국체전을 개최한 시·도에서 이듬해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4일간 개최하고, 개인시상만 실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제39회 소년체전에

서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5~6월에 열리던 대회를 “방학 중에 개최한다는 지침”에 따라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렸으나, 무더위 속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2011년 제40회 소년체전부터는 이전 방식대로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였다.

그 동안 소년체전은 지방순회개최를 통해 지방의 학교운동부 육성 확대, 우수선수 조기발굴에 기여한 바 있으나 시·도간 과열경쟁이 심화되고, 정부의 ‘공부하는 운동선수상 정립’과 역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소년체전을 둘러싼 관계 기관들은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대회규모는 36개 종목(초등부 19, 중학부 36)에서 17,238명(임원 4,971명, 선수 12,267명)이 참가하였다. 주최는 대한체육회가 하고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하였다. 2015년에 비해 승마 1종목이 추가된 36개 종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있으며, 참가인원은 2015년과 유사하였다. 구체적인 연도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현황은 <표 4-20>과 같다.

표 4-20. 연도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현황

(단위: 개)

회수	대회기간	개최지	참가인원 (명)	순위			종목수 (정식/시범)	비고
				1위	2위	3위		
37회	2008.05.31-06.03	광주	16,816	개인시상			30/2	시범종목(2):소프트볼, 요트
38회	2009.05.30-06.02	전남	16,988	개인시상			30/3	시범종목(3):소프트볼, 요트, 트라이애슬론
39회	2010.08.11-08.14	대전	16,998	개인시상			30/3	시범종목(3):소프트볼, 요트, 트라이애슬론
40회	2011.05.28-05.31	경남	16,879	개인시상			33	
41회	2012.05.26-05.29	경기	16,416	개인시상			33	
42회	2013.05.25-05.28	대구	16,871	개인시상			33	
43회	2014.05.24-05.27	인천	16,799	개인시상			33	
44회	2015.05.30-06.02	제주도	17,225	개인시상			35	골프, 바둑 추가
45회	2016.05.28-05.31	강원도	17,238	개인시상			36	승마 추가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4. 훈련시설

1) 선수촌 현황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장으로 선수촌이 운영되고 있는데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진천선수촌이 있다. 1966년 태릉선수촌은 비닐하우스 모양으로 지붕을 함석으로 만든 콘크리트 블록건물로 출발하였다. 이후 1970년 실내수영장, 1971년 옥외 스케이트장, 1972년 남자선수 숙소, 1973년 체육관과 여자선수 숙소 등이 차례로 건립되었다. 또한 1975년 개선관, 1976년 선수식당, 1978년 월계관과 테니스장이 준공되는 등 점차 종합훈련원의 형태를 갖추었고, 1980년에는 스포츠과학연구소(現 한국스포츠개발원)를 세워 훈련의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이후 1984년 진해선수촌과 1986년 온양수영장을 건립해 선수 훈련시설을 확충하였는데, 이 두 시설은 1996년 각각 해군과 온양시로 이관되었다. 1998년에는 강원도 태백시에 태백선수촌이 건립되었다. 2011년에는 진천선수촌 1단계 준공을 마쳤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진천선수촌 2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가. 태릉선수촌

서울 노원구 공릉 2동에 위치한 태릉선수촌은 1966년 6월 30일에 건립하여, 총 면적 31만 696㎡에 대표선수 4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연건평 91,956.6㎡의 각종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태릉선수촌은 하계올림픽대회 종목(양궁, 역도, 탁구, 필드하키, 농구, 유도, 레슬링, 육상, 펜싱, 체조, 복싱, 배드민턴, 핸드볼, 태권도, 리듬체조 등)을 비롯하여 동계올림픽대회 종목(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의 선수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태릉선수촌은 국제종합대회와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선수를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있다.

① 숙소

1996년에 건립된 남성전용 숙소동(지상 4층, 지하 2층)은 총 301명을, 여성전용 숙소동은 2003년에 개축하여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로 14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기존 태권도장을 철거하고, 여자 전용숙소(감래관)를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하여 27명을 추가 수용하고 있다.

② 체육관

선수촌 내의 체육관은 크게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1978년에 건립되어 체력단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월계관(지상 1층)은 2004년 보수공사로 체력단련 여건을 개선하였다. 개선관은 기존의 개선관과 연수관을 철거한 후 2003년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신축한 종합체육관이다. 이 시설은 탁구, 역도, 체조, 펜싱, 태권도 등 5종목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1973년에 건립된 승리관(지상 3층)은 탁구, 유도 종목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1978년에 건립된 필승주체육관(지상 3층, 지하 1층)의 1층은 리듬체조, 3층은 여자 레슬링 종목 훈련에 사용되고 있다. 필승관은 유도, 레슬링, 복싱, 볼링 훈련을 하고 있으며 2005년에 리모델링(지상 2층, 지하 1층)하여 사용 중이다. 농구훈련장으로 이용되는 다목적체육관은 1983년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되었다. 1985년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된 실내수영장은 경영, 수구, 싱크로나이즈 등의 훈련장이었으나 2013년 철거되었다.

2000년에 건립한 오륜관은 육상, 핸드볼, 배드민턴의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같은 해에 태릉국제스케이팅장이 세계 8번째 400m 실내링크로 건립되었다. 이 시설은 스피드스케이팅의 훈련으로 사용되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2005년에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된 실내빙상장은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의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③ 옥외시설

옥외시설은 양궁장, 크로스컨트리코스, 인조잔디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궁장(110×50m 규격)은 2005년에 새로 단장되어 국가대표선수를 위한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6년에 조성된 크로스컨트리 코스는 부상방지를 위해 1.6km×3m의 규격으로 조성되었다. 인조잔디구장은 400m 우레탄 트랙 6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하키 전용훈련장인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다. 잔디구장은 육상, 하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④ 부대시설

부대시설로 선수회관(챔피언 하우스), 행정동, 수위실, 양궁장 부속시설(창고, 사선대)

이 있다. 선수회관은 1986년에 건립되었으며 대강당, 음악감상실, 당구장, 노래방 등 위락시설과 소회의실, 임원실, 북카페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업무 공간과 기계실이 있는 행정동은 지상 2층, 지하 2층의 규모이다. 태릉선수촌 시설현황은 <표 4-21>과 같다.

표 4-21. 태릉선수촌 시설 현황

지역	구분	건물명	용도 및 수용	규모	건립연도
태릉	숙소 (3)	올림픽의 집	238실	지상 4, 지하 2(13,906㎡)	1997
		영광의 집	98실	지상 4, 지하 1(5,639㎡)	2003
		감래관	22실	지상 3, 지하 1(1,877.18㎡)	2008
	훈련 시설 (12)	월계관	체력단련장	지상 1(1,697㎡)	1978
		개선관	체조, 펜싱, 역도, 태권도	지상 2, 지하 1(7,792㎡)	2003
		승리관	탁구, 유도	지상 3(2,075㎡)	1978
		다목적체육관	농구	지상 2, 지하 1(1,593㎡)	1983 1993
		오륜관	육상, 핸드볼, 배드민턴	지상 1(10,102㎡)	1986 2000
		태릉국제스케이팅장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지상 3, 지하 1(27,067㎡)	2000
		필승체육관	리듬체조, 레슬링	지상 3, 지하 1(4,402㎡)	1978 1982
		필승관	유도, 레슬링, 복싱, 볼링	지상 2, 지하 1(5,056㎡)	2006
		실내빙상장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지상 4, 지하 1(5,477㎡)	2006
		양궁장	양궁	110×50m	1984 2006
		크로스컨트리	기초체력훈련	1.6km×3m 톱밥포설	1986
		인조잔디구장	육상, 하키, 축구	400m 트랙 6레인, 인조잔디	1984
	부대 시설 (5)	챔피언하우스	편의시설(영화관, 북카페, 당구장)	지상 2, 지하 1(2,523㎡)	1986 2007
		행정동	행정업무, 기계실	지상 2, 지하 2(1,917㎡)	1990
		수위실	선수촌 정문	지상 1(31,36㎡)	2003
		양궁장부속시설 (사선대)	사대	지상 2(408㎡)	2005
		창고 (구)실내수영장	창고	지상 1(405.40㎡) 기존 지상 1, 지하 1 (2,644.78㎡)→부분철거(풀)	1985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백서(2016)

나. 진천선수촌

2011년 10월에 개촌한 진천선수촌(1단계)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체계적인 훈련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7년 완공을 목표로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총 면적은 86만 9,868㎡이다. 사격, 카누, 조정, 테니스, 농구, 배구, 수영, 육상, 야구, 소프트볼, 정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에 걸쳐 350명의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① 숙소

선수숙소 시설은 화랑관(지상 10층)으로 1인실 228실, 2인실 64실로 356명을 수용할 수 있다. 화랑관 A동은 여자숙소로, B동과 C동은 남자숙소로 구분하여 활용되고 있다. 화랑관 숙소 1층에는 26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있으며 선수를 위한 대형목욕실 및 사우나가 설치되어 있다.

② 실내훈련시설

진천선수촌에는 수영센터, 실내테니스장, 조정/카누장, 실내사격장, 다목적체육관 등 총 5동의 실내훈련시설이 있다. 수영센터(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는 2m 수심의 50m 경영풀 10레인, 3m 수심의 싱크로나이즈풀(수구), 5m 수심의 다이빙풀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훈련장으로 최첨단 시설의 전광판, 음향시설, 영상분석 장비 등 과학적 훈련환경을 갖추고 있다.

실내테니스장은 케미컬코트 4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정/카누장은 에르고메터 등 장비가 있으며, 조정/카누 선수들의 지상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실내사격장(지상 2층)은 50m, 25m, 10m로 전자표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계훈련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프레임 설치하여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은 체육관 2면으로 구성되어, 배구, 농구, 배드민턴, 핸드볼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③ 실외훈련시설

진천선수촌의 실외훈련시설에는 육상장, 야구/소프트볼장, 테니스/정구장, 클레이사격장, 크로스컨트리 코스가 있다. 육상장은 400m 6레인, 100m 10레인 규모의 트랙이 있으며, 내부에는 축구, 럭비 등이 가능하도록 천연잔디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투척 공간

도 조성하여 창, 투포환 종목 등을 할 수 있도록 장소시설을 구성하였다. 야구 및 소프트볼장(110m×110m)은 전광판과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야간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테니스/정구장은 케미컬 6면, 클레이 4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레이사격장은 3개 사대가 조성되어 있다. 크로스컨트리 코스는 2.9km 길이의 코스와 내부순환코스인 1.5km 길이의 코스로 구성되어 선수들의 기초훈련 사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④ 지원시설

진천선수촌의 지원시설로는 선수회관, 방문자센터, 파트너하우스, 행정동/체력훈련장이 있다. 이 가운데 선수회관(지상 3층)은 강당, 도서실, 어학실습실, 영화감상실, 노래방, 당구장, 회의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총 2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방문자센터에는 안내센터, 우편취급실, 홍보관 등이 마련되어 있다. 파트너하우스(지하1층/지상4층)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파트너 훈련을 하는 상비선수들이 사용하는 숙소로 2인실 40실, 4인실 18실, 20인실 2실 등 총 19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행정동/체력훈련장(지하1층/지상2층)은 사무실, 직원식당, 종합상황실이 있는 행정동과 체력단련장, 스포츠의학실, 스포츠과학실이 있는 체력훈련장으로 구분된다. 종합상황실은 진천선수촌 자동제어 시설, CCTV, 출입통제설비를 구비하고 있어 모든 시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력단련장은 체력단련기구 및 스포츠의학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의 설비를 갖추고 선수들에게 최상의 체력 및 의료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스포츠과학실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고 과학적 운동처방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진천선수촌 시설현황은 <표 4-22>와 같다.

표 4-22. 진천선수촌 시설 현황

지역	구분	건물명	용도 및 수용	규모	건립연도
진천	훈련시설	수영센터	경영풀 10레인(50m×25m), 싱크로나이즈풀(수구): 33m×20m, 다이빙풀: 25m×25m, 트램블링실, 락 카사워, 지도자사무실	8,966㎡	2011
		실내테니스장	지하 1층/지상 1층 케미컬 코트 4면	4,621㎡	
		조정/카누장	지하 1층/지하 1층 카누훈련장, 조정훈련장, 일반사무실, 샤워 탈의실	1,657㎡	

지역	구분	건물명	용도 및 수용	규모	건립연도
진천	훈련 시설	실내사격장	지상 2층 전자표적시스템설치, 장비보관실, 총기수리실, 샤워탈의실	7,162㎡	2011
		무기고	지상 1층 무기고/탄약고(부속동)	145㎡	
		육상장	1면 트랙 : 400m 6레인, 100m 10레인 내부 : 천연잔디(축구/럭비)	8,966㎡	
		투척필드	100m×60m 육상트랙+천연잔디		
		야구/소프트볼장	110m×110m 야구/소프트볼		
		테니스/정구장	10면 조성 케미컬 6면, 클레이 4면		
		클레이사격장	3사대 조성	515㎡	
	클레이사격장 대기실	지상 2층 선수대기실, 창고 등	245㎡		
	크로스컨트리코스	무이산연결 : 길이 2.9km, 폭 1.5m 내부순환 : 길이 1.5km, 폭 1.5m			
	지원 시설	방문자센터	지상 1층, 지상 2층 관리실, 안내센터, 우편취급실, 홍보관, 카페테리아, 기념품판매점	1,711㎡	
		파트너하우스	지하 1층, 지상 4층 192명 수용(2인실 40실, 4인실 18실, 20인실 2실)	3,011㎡	
		행정/체력훈련장	지하 1층, 지상 2층 사무실, 체력단련장, 의무센터, 샤워실, 기구보관실, 직원식당, 방재실, 부속실, 자료보관실	8,217㎡	
		다목적체육관/ 챔피언하우스	지상 3층 계단식강당(270명 수용), 체육관 2면, 도서실, 여학생습실, 멀티미디어실, 회의실, 영화감상실, 노래방, 당구장	6,844㎡	
		화랑관	지상 10층 선수숙소(356명, 1인실 228실, 2인실 64실)	12,99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백서(2016)

다. 태백선수촌

태백선수촌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고지대 훈련(해발 1,330m)을 통한 심폐기능 강화와 지구력 증강을 목적으로 1998년 6월에 설립되었다. 태백선수촌 훈련시설은 총 면적 32,267㎡으로, 396.7㎡의 간이실내체육관, 400m 우레탄트랙(4레인)의 운동장이 있으며 육상, 복싱 등 저산소 훈련이 필요한 종목이 훈련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지원시설

로는 약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17실, 3인1실 기준)와 사우나실, 휴게실, 관리동 등의 부속시설이 있다. 태백선수촌 시설현황은 <표 4-23>과 같다.

표 4-23. 태백선수촌 시설 현황

구분		용도 및 수용인원	비고
건물 (1개동)	숙소	17실(3인1실)/51명(남33, 여18)	지상2층, 지하1층
	간이체육관	120평, 목재바닥 및 농구골대	
	관리동	사무실, 체력단련실, 식당, 주방, 물리치료실, 오락실	
운동장		400m 우레탄트랙(4레인) 운동장	
크로스컨트리코스		소로골코스(6,154m), 사내골코스(7,912m)	포장, 비포장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백서(2016)

2) 선수촌 훈련시설 확충 지원

기존 태릉·태백선수촌의 경우 시설이 노후하여 훈련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1998년부터 노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존시설을 개·보수하였고, 선수들의 훈련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부 신규시설을 확충하였다.

가. 훈련시설 확충

기존시설의 개보수는 노후시설물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선수와 지도자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노후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부분 개·보수하였다. 대한체육회는 연차적으로 관련시설 보수비용이 증액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반영된 예산으로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을 우선 보수하고, 진천선수촌과 연계하여 태릉선수촌의 시설보강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국제스케이팅장 링크바닥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도별 선수촌 시설 확충 현황은 <표 4-24>와 같다.

표 4-24. 연도별 선수촌 시설확충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사업내용	금액
2003	종합체육관 건립	3,070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2,439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1,000
소계		6,509
2004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5,000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3,500
소계		8,500
2005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4,561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4,500
소계		9,061
2006	선수회관 리모델링	750
2007	선수회관 외장공사	345
	올림픽의 집 화장실 리모델링	135
	필승기숙사(A,B,C)동 철거 후 부지정리	452
소계		932
2008	감래관 보수 및 증축공사	2,437
	태백선수촌 다목적 체육관 건립	1,000
소계		3,437
2009	올림픽의 집 환경개선	364
2010	국제스케이팅장 냉동설비보강 및 전기승압공사	267
2011	국제스케이팅장 링크복도 및 환경개선	300
2012	국제스케이팅장 재정비(리모델링공사)	9,900
2013	실내빙상장 쿨링장 재정비(면수확대 2면 → 3면)	1,000
2014	실내빙상장 재정비(단열보강, 내부도장 등)	1,000
2015	태백선수촌 개보수 선수촌시설보강 및 진천선수촌운영 (LED조명등 교체 등 전기설비)	1,129
2016	국제스케이팅장 링크바닥 보수공사	3,000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나. 진천선수촌 2단계 조성

대한체육회는 태릉선수촌의 노후화, 국가대표 선수 수용한계를 극복하고, 훈련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로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 35-2번지 일원에 진천선수촌을 조성하고 있다.

1단계 공사는 2011년 10월 27일에 완료되었고, 제2단계 공사는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17년까지 진행될 2단계 사업은 총 594,711㎡의 부지 위에 연면적 109,700㎡ 규모로 총 25개 종목에 걸쳐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2단계 공사는 총 37개 종목의 훈련장이 조성되어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최첨단 종합훈련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2015년 경우에는 선수숙소(남, 여), 실내훈련장, 하키훈련장, 사이클 벨로드롬, 빙상훈련장, 양궁훈련장, 재활용시설 등을 공사하였다. 진천선수촌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는 3,306억 원으로 크게 1, 2 공구로 나뉘어 건설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건설공정의 75% 수준을 달성하였다. 구체적인 진천선수촌 조성 추진현황은 <표 4-25>와 같다.

표 4-25. 진천선수촌 조성 추진 현황

연도	사업내용	비고
2001.06	문화재복원정비 관련 선수촌 이전 요구(3회)	문화재청
2003.03	선수촌 장기이전 계획안 수립	대한체육회
2003.06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 반영	문화관광부
2003.08	200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	문화관광부
2003.11	200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획예산처
2004.03/09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한국개발연구원
2004.12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 통보(사업승인) - 조사결과: 단계별 사업추진 · 1단계: 현 태릉선수촌에 없는 시설물 건립제2선수촌 형태로 부분이전(2005-2010) · 2단계: 향후 태릉선수촌 사용불가능여부, 체육정책, 엘리트스 포츠 육성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여 추진(2011-2015)	기획예산처
	제2선수촌 이전 대상지 선정 - 13개 후보지 중 2개 우수후보지 선정(음성, 진천) - 2개 우수후보지 평가를 위한 용역 의뢰 - 선수촌이전 추진자문위원회(6차회의/진천군 선정)	대한체육회

연도	사업내용	비고
2005.11	선수촌이전 사업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당선작선정	대한체육회
2006.03	선수촌이전 마스터플랜 각계 의견수렴 및 최종확정	대한체육회
2006.05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진천군, 대한체육회
2007.01-2008.10	기본 설계	대한체육회
2008.11.28	공사계약(던키 방식)	대한체육회
2009.02.05	진입도로공사 착공	대한체육회
2009.05.18	본공사 착공	대한체육회
2011.08.18	1단계 공사완공	대한체육회
2010.12-2011.09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조사결과:B/C 1.49, AHP 0.666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결론	기획재정부
2012-2017	2단계 사업 추진 - 옥외훈련시설(4) : 하키, 양궁, 럭비, 육상투척필드 - 실내훈련시설(21) : 체조, 태권도, 유도, 탁구, 사이클벨로드롬 등 21개 종목 - 지원시설(11) : 선수숙소(숙소 800명, 식당 500명 이상), 체력 훈련장, 부속의원, 스포츠과학센터 - 제 1공구 : 전체 공정률 중 75% 진행 - 제 2공구 : 전체 공정률 중 75% 진행	대한체육회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5. 스포츠과학지원센터 운영

스포츠과학지원센터 운영은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과학적 훈련지원을 목적으로 선수촌과 한국스포츠개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은 서울, 대전, 광주 3개 지역에서 체력측정 및 처방 1,650명, 밀착지원 14종목, 스포츠과학교실 20회를 하였고, 2016년에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대구, 전북 6개 지역에서 체력측정 및 처방 7,206명, 밀착지원 39종목, 스포츠과학교실 82회를 하였다. 구체적인 '15년, '16년 스포츠과학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표 4-26>과 같다.

표 4-26. '15년, '16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실적

구분	체력측정 및 처방		밀착지원		스포츠과학교실		구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서울	632명	1,490명	4종목	7종목	9회	23회	'15년
대전	500명	1,530명	4종목	5종목	4회	18회	
광주	518명	1,550명	6종목	6종목	7회	20회	
경기	-	926명	-	5종목	-	7회	'16년
대구	-	861명	-	8종목	-	7회	
전북	-	848명	-	8종목	-	7회	
계	1,650명	7,206명	14종목	39종목	20회	82회	

※ 출처 : 스포츠과학센터 내부자료

제4절 선수지원 및 체육인 복지강화

1. 선수지원

1) 체육영재 육성지원

체육영재 육성사업은 우수한 체육영재를 조기에 선발 및 관리하여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학년별(초5-중3) 최상위의 경기력을 보유한 학생선수 선발/관리, 해외우수지도자를 통한 국내훈련(3주 이내), 해외전지훈련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 및 경기력 향상 도모(2개월 이내), 스포츠과학측정 및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테니스 외 4개 종목 25명을 육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테니스 외 7개 종목(카누, 육상, 유도 신설)에서 40명을 육성하였다. 구체적인 체육영재 육성현황은 <표 4-27>과 같다.

표 4-27. 체육영재 육성 현황

(단위: 명)

구분	테니스	스키 (스노우보드)	사이클	체조 (여자기체조)	바이애슬론	카누	육상	유도	계
2015	5	5	5	5	5	-	-	-	25
2016	5	5	5	5	5	5	5	5	40

※ 주: 2017년 사업이관(공단→대한체육회) 예정

※ 출처: 2017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결과보고서(2017)

2) 체육계학교 지원

체육계학교 지원은 전문선수 양성의 산실인 체육계 학교의 훈련여건 개선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의 체계적 육성과 경기력 향상 도모하는 목적으로 전국 27개 체육계열 중·고등

학교 훈련시설·장비비 지원,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운영비 및 연구학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도별 체육계학교 지원현황은 <표 4-28>과 같다.

표 4-28. 연도별 체육계학교 지원 현황

구분	'11	'12	'13	'14	'15	'16	비고
지원학교	23개 체육중고/ 한국체대	23개 체육중고/ 한국체대	24개 체육중고/ 한국체대	27개 체육중고/ 한국체대	27개 체육중고/ 한국체대	22개 체육중고	'11년 경기체중 신설 '13년 부산체중 신설 '14년 대구체중, 울산 스포츠과학중/고 신설
체고체전 개최	전남체고	경남체고	강원체고	대전체고	충남체고	경기체고	로테이션개최
연구학교	경기체고	대구체고	경북체고	서울체고	광주체고 부산체고 경기체중	충남체고 울산스포츠고	교육부 지정

※ 주 : 2011년 사업이관(문체부→체육인재육성재단), 2017년 사업이관(공단→대한체육회) 예정

※ 출처 : 2017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결과보고서(2017)

3) 경기력향상 지원사업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은 국외전지훈련 지원, 외국인코치초청 지원, 지도자 해외파견을 통한 국외정보수집으로 구분된다.

가. 국외전지훈련

국가대표선수는 종목별 우수 경기력을 갖춘 선진국과 합동훈련 경험을 쌓기 위해 전지훈련을 실시하였다. 2016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종목별 훈련특성에 따라 지원횟수를 차별화하여 참가한 임원 및 선수의 항공료 및 훈련경비를 지원하였다. 2016년 국외전지훈련 지원인원은 31개 하계종목에서 임원 417명, 선수 1,281명, 7개 동계종목에서 임원 155명, 선수 357명이었다. 국가대표 하계종목 국외전지훈련 지원현황은 <표 4-29>와 같으며, 국가대표 동계종목 국외전지훈련 지원현황은 <표 4-30>과 같다.

표 4-29. 국가대표 하계종목 국외전지훈련 지원 현황

(단위 : 명)

종 목	장 소	인원		
		임원	선수	계
양궁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터키	20	34	54
육상	일본,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4	18	22
배드민턴	독일, 영국, 뉴질랜드, 오克兰드,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13	40	53
복싱	불가리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28	62	90
카누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6	23	29
사이클	홍콩, 일본, 스위스, 영국, 중국, 폴란드	23	41	64
펜싱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쿠바, 이집트, 일본, 캐나다, 헝가리, 아르헨티나, 카타르, 폴란드, 세네갈, 알제리, 에스토니아, 그리스, 벨기에	45	218	263
골프	호주, 태국	8	25	33
체조	일본,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19	44	63
핸드볼	폴란드,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33	103	136
하키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독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41	170	211
유도	불가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조지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멕시코, 일본	17	70	87
공수도	베트남	2	10	12
근대5종	브라질, 이탈리아, 러시아	12	19	31
조정	폴란드	2	4	6
력비	홍콩, 스리랑카	13	24	37
세일링	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아랍에미레이트,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일본	12	37	49
사격	인도, 브라질, 독일, 아제르바이잔	29	82	111
수영	브라질	1	8	9
탁구	두바이, 일본	8	12	20
태권도	스페인, 프랑스, 아제르바이잔	14	32	46
테니스	터키	2	4	6
철인3종	미국	3	12	15
배구	네덜란드	4	12	16
역도	미국	6	19	25
레슬링	태국, 몽골, 터키, 폴란드, 일본, 독일, 아제르바이잔	35	75	100
볼링	싱가포르	4	16	20
세팍타크로	태국	4	24	28
스쿼시	대만	2	10	12
우슈	태국	3	13	16
경구	일본	4	20	24
합계		417	1,281	1,698

※ 주 : 훈련 지원횟수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음
 ※ 출처 : 각 회원종목단체에서 취합한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표 4-30. 국가대표 동계종목 국외전지훈련 지원 현황

(단위: 명)

종 목	장 소	인원		
		임원	선수	계
빙 상	캐나다	8	38	46
스 키	오스트리아, 일본, 러시아,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핀란드	30	108	138
아 이 스 하 키	폴란드, 미국, 슬로베니아, 일본	20	103	123
봅 슬 레 이 스 켈 레 톤	미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10	21	31
컬 링	캐나다, 러시아, 일본, 스웨덴, 스위스	25	47	72
바 이 애 슬 론	러시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16	24	40
루 지	독일,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10	16	26
합계		119	357	476

※ 주: 훈련 지원횟수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음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나. 외국인코치 초청사업

2016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9개 하계종목(세부종목 14개)에서 19명의 외국인 코치(13개국)를 초청하였으며, 역대 최고규모로 초청사업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도별 외국인코치 초청현황은 <표 4-31>과 같다.

표 4-31. 연도별 외국인코치 초청 현황

연도	종목수 (세부종목)	인원 수(명)	국가 수(개)	지원금액(천원)		
				국고	기금	합계
2006	5(8)	8	7	244,892	-	244,892
2007	6(7)	8	6	36,321	166,691	203,012
2008	4(6)	9	4	60,786	131,584	192,370
2009	4(4)	5	4	66,007	137,438	203,445
2010	4(4)	4	4	61,522	175,529	237,051
2011	5(9)	9	6	84,877	127,408	212,285
2012	6(8)	9	6	68,968	236,318	305,286
2013	6(8)	9	7	60,174	190,878	251,052
2014	7(8)	8	7	-	149,482	149,482
2015	6(7)	7	6	-	238,750	238,750
2016	9(14)	19	13	-	502,003	502,003

※ 출처: 각 회원종목단체에서 취합한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다. 지도자 해외연수 사업

지도자 해외연수(국외 정보수집)사업은 각종 해외 세미나 및 연수 참가로 종목별 선진국들의 훈련 및 경기정보를 수집하여 국가대표선수 전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 사업의 대상종목은 메달획득 유망종목에 우선적이며 해외연수 지원대상은 종목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지원요원들이다. 국외정보수집은 종목별 15일 내외로 주로 국제대회, 국제스포츠 세미나, 스포츠과학연구기관, 훈련 지원시설 참관 및 견학 중심이다. 2015년에는 총 31개 종목 55명(27개 국가)이 파견되었고, 2016년에는 34개 종목 73명(28개 국가)이 파견되었다. 구체적인 지도자 국외정보수집 사업 현황은 <표 4-32>와 같다.

표 4-32. 지도자 국외정보수집사업 현황

연도	종목수 (회)	인원 수(명)	국가 수(개)	지원금액(천 원)		
				국고	기금	합계
2006	18(21)	35	12	70,446	-	70,446
2007	15(17)	27	13	70,738	-	70,738
2008	18(24)	33	17	87,065	-	87,065
2009	17(23)	42	15	63,768	68,180	131,948
2010	17(24)	44	16	38,211	125,129	163,340
2011	23(51)	60	25	61,187	129,990	191,177
2012	24(46)	70	26	43,024	184,309	227,733
2013	29(36)	52	21	39,858	139,948	179,806
2014	29(36)	50	21	-	141,347	141,347
2015	31(38)	55	27	-	173,241	173,241
2016	34(52)	73	28	-	274,753	274,753

※ 출처: 각 회원종목단체에서 취합한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2. 체육인 복지강화

대한체육회는 체육인 복지강화를 위해 국가대표 생애주기교육 프로그램, 은퇴선수 취업지원, 체육인 복지사업을 추진하였다.

1) 생애주기 교육프로그램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들이 운동과 더불어 학업과 진로에 대한 탐색을 수행함으로써 은퇴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생애주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생애주기 교육프로그램의 세부 교육내용은 소양분야에 요리와 경제상식, 외국어분야에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생애주기 교육프로그램은 <표 4-33>과 같다.

표 4-33. 국가대표선수 생애주기 교육 현황

구분	교육방법	수강인원(명)	금액
소양 분야	온라인 교육	402	일반교양(57), 스피치(6), 리더십(17), 은퇴대비 재테크/창업(18), 학업지원 자격증/OA(304)
	집합 교육	712	미디어커뮤니케이션(21), 취미_기타(34), 직업체험 요리(155), 직업체험 메이크업(20), 직업체험 네일아트(18), 자격증 MOS(206), 진로적성(14), 문화교류 보컬(31), 스포츠지도사자격증(213)
외국어 분야	온라인 교육	2,678	영어(1,923), 중국어(343), 일본어(308), 기타(104)
	전화 교육	455	영어(374), 일본어(74), 중국어(7)
	집합 교육	234	영어(145), 일본어(65), 중국어(24)
합계		4,481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연도별 생애주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따르면, 2년차 사업으로 전년 대비 참가인원 수가 236% 크게 상승하였으며, 집합교육에 참여한 선수들의 만족도는 97%로 나타났다. 또한 자격증 취득반을 개설하여 선수촌 내 컴퓨터 교육 및 시험과정을 통해 26명이 컴퓨터(MOS)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연도별 구체적인 연도별 생애주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은 <표 4-34>와 같다.

향후 생애주기 교육프로그램은 2015년에 도입기, 2016-2017년에 개선단계, 2018년 안정화 단계를 거쳐 학점인정체계 구축 확대, 국가대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진로, 교육, 전직 등), 교육대상 확대(국가대표 은퇴선수/지도자 및 일반 선수/지도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4-34. 연도별 생애주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구분	계				상승률 (%)	일반				여학			
	과정 수(개)		인원(명)			과정 수(개)		인원(명)		과정 수(개)		인원(명)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계	1,605	3,261	1,898	4,481	236	1,268	2,715	1,415	1,140	337	570	483	3,367
온라인교육	1,486	2,874	331	3,080	931	1,203	2,541	65	402	283	333	266	2,678
집합교육	98	366	1,324	946	71	65	174	1,267	712	33	192	57	234
전화교육	21	21	160	455	248	-	-	-	-	21	45	160	455
도서지원	-	-	83	-	-	-	-	83	-	-	-	-	-
자격증지원	-	-	-	-	-	-	-	-	26	-	-	-	-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 은퇴선수 취업지원

은퇴선수 취업지원 사업은 은퇴선수에 대한 취업지원(교육, 상담, 멘토링 등), 직업훈련 교육 등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현역 운동선수(잠재은퇴선수)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및 상담을 통해 선수시절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은퇴선수 취업지원 사업은 크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으로 구분된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인원 및 취업자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맞춤형 직업훈련은 60만 원씩 200명을 지원하는 총 120백만 원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은 신청접수에 따른 진로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진로교육 수요가 증가하였다. 특히, 향후 취업지원 서비스는 이수자 수를 195명에서 22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은퇴선수 잡매칭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구직정보와 채용업체의 구인정보를 매칭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인 은퇴선수 취업지원 추진성과는 <표 4-35>와 같다.

표 4-35. 연도별 은퇴선수 취업지원 추진성과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지원	취업	%	지원	취업	%	지원	취업	%	지원	취업	%
취업지원서비스	97	33	34	179	85	47.4	186	90	48.38	195	95	48.72
맞춤형직업훈련 (지원인원)	195			245			246			236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지원(교육인원)	1,360			2,209			2,637			2,776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3) 체육인 복지사업

대한체육회는 체육인 복지를 위해 장학금, 보조금, 포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금은 대학원 진학 장학금(은퇴 국가대표 선수 대상), 체육장학생 장학금(초·중·고 유망선수 대상), 농어촌학교 체육분야 장학금(농어촌 초·중·고 유망 선수 대상)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장학금 지원현황은 <표 4-36>과 같다. 보조금은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선수 및 지도자 대상)와 생활보조비(현역 국가대표선수 대상)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현황은 <표 4-37>과 같다.

표 4-36. 장학금 지원 현황

구분	대상	지원내용	지원결과
대학원진학 장학금	은퇴 국가대표선수	1인 1학기 300만원내(2년)	134명 363,312천원
체육장학생 장학금	초 중 고 유망선수	1인 초30/중50/고100만원	870명 550,000천원
농어촌학교 체육분야 장학금	농어촌 초 중 고 유망 선수	1인 50만원	500명 250,000천원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4-37. 보조금 지원 현황

구분	대상	지원내용	지원결과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선수 및 지도자	국제대회 입상실적 점수화로 300만원부터~	1,195명 (연금/2016.12월 기준)
생활보조비	현역 국가대표선수	1인 매월 50만원	13명 66,000천원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016년 2월 22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제6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체육대상에 체조 손연재를 비롯하여, 최우수상 7명, 우수상 25명, 장려상 73명 11개 팀을 수상하였으며, 총 106명, 11개 팀을 수상하였다. 구체적인 포상내역은 <표 4-38>과 같다.

표 4-38. 포상내역

구분	경기부문	지도부문	심판부문	공로부문	연구부문	계
체육대상	1명(손연재/체조)					1명
최우수상	2명 (김국영/최민정)	1명 (심재용)	1명 (유석진)	2명 (윤영일,채수하)	1명 (최관용)	7명
우수상	5명	5명	5명	5명	5명	25명
장려상	19명 11팀	26명	12명	11명	5명	73명 11팀
합계	27명 11팀	32명	18명	18명	11명	106명 11팀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5

2016 SPORT WHITE PAPER

국제체육

제1절 올림픽대회

제2절 국제체육계 동향

제3절 국제체육 역량

제4절 국제체육 교류 현황

제1절 올림픽대회

1. 역대 올림픽대회 개최

근대 올림픽대회는 체육을 통하여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쿠베르탱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서 최초로 1896년도에 제1회 아테네 하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된 바 있고 이후 계속하여 하계올림픽대회로만 개최되다가 1924년부터 하계올림픽대회와 동계올림픽대회로 나뉘어서 개최되고 있다. 올림픽대회는 국제적 상징성이 남다르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의 수는 UN(United Nations)에 등록된 국가보다 많은데, 이는 국가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국가들이 평등하게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제1회 아테네 하계올림픽대회는 육상, 사이클, 펜싱, 체조, 사격, 수영, 테니스, 역도, 레슬링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올림픽대회를 아테네에서 영구히 개최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가 있었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올림픽대회를 국가별 순환 개최로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4년마다 개최 국가를 변경하였다. 이후 하계올림픽대회는 1900년 제2회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이후 2016년 브라질 리우 하계올림픽대회까지 31회째를 개최한 바 있다.

IOC는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동계올림픽대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종목은 동계종목으로만 치르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에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1924년부터 1992년까지는 동계·하계올림픽대회를 같은 해에 개최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2년 단위로 동계·하계 올림픽이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2016 리우올림픽 대회에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난민 팀(Team ROA, Team of Refugee Olympic Athletes)’이 참가했다. 난민 팀은 총 10명의 난민 선수로 구성되었다. 참가한 선수의 명세는 육상 종목에 출전한 남수단 선수 5명, 유도 종목에 출전한 콩고민주공화국 선수 2명, 수영 종목에 출전한 시리아 선수 2명, 마라톤에 출전한 에티오피아 선수 1명이다.

난민 대표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깃발인 오륜기를 들고, 개최국인 브라질에 앞서 206번째로 입장해 참석한 관중들뿐만 아니라 TV 중계를 통해 지켜보는 지구촌 곳곳의 시청자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표 5-1. 역대 올림픽 개최현황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회	년도	개최 도시	개최국	비고	회	년도	개최 도시	개최국	비고
1	1896	아 테 네	그 리 스	13개국 280명					
2	1900	파 리	프 랑 스	19개국 1,066명					
3	1904	세 인 트 루 이 스	미 국	12개국 681명					
4	1908	로 마	이탈리아	대회취소					
		런 던	영 국	22개국 1,999명					
5	1912	스 웨 덴	스톡홀름	28개국 2490명					
6	1916	베 를 린	독 일	대회취소					
7	1920	앤 트 워 프	벨 기 에	29개국 2,668명					
8	1924	파 리	프 랑 스	44개국 3,070명	1	1924	샤 모 니	프 랑 스	16개국 258명
9	1928	암 스테 르담	네덜란드	46개국 2,694명	2	1928	생 모 리 츠	스 위 스	25개국 464명
10	1932	로스앤젤레스	미 국	37개국 1,328명	3	1932	레이크플레시드	미 국	17개국 252명
11	1936	베 를 린	독 일	49개국 3,956명	4	1936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독 일	28개국 646명
12	1940	도쿄	일 본	대회취소			삿포로	일 본	대회취소
		헬싱키	핀란드	대회취소	-	1940	생 모 리 츠	스 위 스	대회취소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독 일	대회취소
13	1944	런 던	영 국	대회취소	-	1944	코르티나담페초	이탈리아	대회취소
14	1948	런 던	영 국	59개국 4,064명	5	1948	생 모 리 츠	스 위 스	28개국 669명
15	1952	헬싱키	핀란드	67개국 4,879명	6	1952	오슬로	노르웨이	30개국 694명
16	1956	멜버른	호주	67개국 3,113명	7	1956	코르티나담페초	이탈리아	32개국 821명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회	년도	개최 도시	개최국	비고	회	년도	개최 도시	개최국	비고
17	1960	로 마	이탈리아	82개국 5,348명	8	1960	스 퀘 벨 리	미 국	30개국 665명
18	1964	도쿄	일본	93개국 5,081명	9	1964	인스브루크	오스트리아	36개국 1,091명
19	1968	멕시코 시티	멕시코	112개국 5,423명	10	1968	그레노블	프랑스	37개국 1,158명
20	1972	윈헨서	독	122개국 7,123명	11	1972	삿포로	일본	35개국 1,006명
21	1976	몬트리올	캐나다	88개국 6,026명	12	1976	인스브루크	오스트리아	37개국 1,123명
22	1980	모스크바	소련	81개국 5,127명	13	1980	레이크플래시드	미 국	37개국 1,072명
23	1984	로스앤젤레스	미 국	140개국 6,797명	14	1984	사라예보	유고슬라비아	49개국 1,272명
24	1988	서울	대한민국	160개국 13,600명	15	1988	캘거리	캐나다	57개국 2,600명
25	1992	바르셀로나	스페인	172개국 15,229명	16	1992	알베르빌	프랑스	67개국 1,737명
26	1996	애틀랜타	미 국	197개국 17,765명	17	1994	릴레함메르	노르웨이	67개국 1,737명
27	2000	시드니	호주	200개국 16,300명	18	1998	나가노	일본	72개국 2,176명
28	2004	아테네	그리스	201개국 10,500명	19	2002	솔트레이크시티	미 국	77개국 2,399명
29	2008	베이징	중국	204개국 16,000명	20	2006	토리노	이탈리아	80개국 2,500명
30	2012	런던	영국	204개국 19,000명	21	2010	밴쿠버	캐나다	82개국 5,558명
31	2016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206개국 10,903명	22	2014	소치	러시아	88개국 3,000명

※ 출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2016)

2. 역대 한국 올림픽대회 참가

우리나라가 올림픽대회에 참가하여 거둔 성과는 1936년 제11회 베를린 하계올림픽대회에서 마라톤 종목의 손기정 선수 금메달과 남승룡 선수 동메달 획득에서 출발한다. 하

지만 당시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참가하였으므로 이 대회결과는 일본의 성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이름으로 국제체육계로 진입하게 된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식 국가자격으로 최초로 참가한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대회로 볼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메달을 획득한 것은 같은 해에 개최된 영국 런던 하계올림픽대회에서 복싱 한수안과 역도 김성집이 따낸 동메달이었다.

이후 한국전쟁(6·25전쟁)으로 인하여 1952년 제6회 오슬로 동계올림픽대회에 불참한 것과 미국 및 관련 우방국의 보이콧 동참으로 인하여 1980년 제22회 모스크바 하계올림픽대회를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그 간 메달을 획득한 성과를 보면, 1952년 제9회 헬싱키 하계올림픽대회에서 동메달 2개(복싱의 강준호, 역도의 김성집), 1956년 제16회 멜버른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 1개(복싱의 송순천), 동메달 1개(역도의 김창희)와 같은 값진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하계올림픽대회 및 1984년 제23회 LA 하계올림픽대회 이후부터 메달순위 10위권에 진입하게 되어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이름을 각인시켜 주었다.

결정적으로 스포츠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계기는 1988년 제24회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유치였다. 우리나라는 당시 금 12개, 은 10개, 동 11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고성적인 종합 4위를 기록했다. 또한 동계종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1992년에 들어 제16회 프랑스 알베르빌 동계올림픽대회에서 10위, 제25회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대회에서 7위를 기록함으로써 동계·하계올림픽대회 모두 10위권에 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제17회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대회 6위, 1996년 제26회 애틀랜타 하계올림픽대회 10위, 1998년 제18회 나가노 동계올림픽대회 9위, 2000년 제27회 시드니 하계올림픽대회 12위, 2002년 제19회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대회 14위, 2004년 제28회 아테네 하계올림픽대회 9위, 2006년 제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대회 7위, 2008년 제29회 베이징 하계올림픽대회 7위, 2010년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 5위에 각각 오르게 되어 동계 및 하계대회 모두에서 스포츠강국의 면모를 세계에 과시했다. 이후 2012년 제30회 런던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종합 5위(금 13개, 은 8개, 동 7개)를 달성하여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다음으로 우수한 성과를 얻었다.

제31회 하계올림픽경기대회는 2016년 8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다. 대회는 28개 종목에서 306개의 세부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총 206개 국가에서 11,237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한국은 333명(선수 204명/임원 129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24개 종목에 출전하여 금 9개, 은 3개, 동 9개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206개 참가국 중에서 종합순위 8위를 차지하였다.

양궁(4), 펜싱(1), 골프(1), 사격(1), 태권도(2)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양궁과 태권도는 각각 금메달 4개, 2개를 거머쥐었다. 또한, 펜싱, 사격, 골프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각각 1개씩 획득하여 목표성적 달성에 힘을 보탤었다. 반면에 유도·레슬링 등 전통적 메달 효자 종목과 구기 종목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기대치보다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고, 육상·체조·수영 등 기초종목은 이번 대회에서도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독일, 일본 등 주요 스포츠 선진국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선진국과의 경기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주목할 점은 종합순위 8위를 달성으로 하계올림픽 4개 대회 연속 세계 1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양궁 전 종목을 석권하였으며, 펜싱종목에서 비유럽 지역 중 유일하게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또한 태권도 출전 선수 5명 전원이 메달 획득에 성공하였고, 진중오는 권총 50m 사격에서 3연패의 쾌거를 거두었다. 올림픽 신규종목으로 채택된 골프에서도 한국 여자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한국 여자 골프가 세계 최정상임을 입증해 보였다. 메달을 획득하지는 못하였으나, 리듬체조에서 손연재가 종합 4위로 아시아 선수 최고 성적을 얻었다.

표 5-2. 역대 올림픽대회 하계 메달 획득 현황

연도	대회	성적	메달획득
1948	영국 런던 하계올림픽	32위	2종목 참가, 2개(금 0, 은 0, 동 2)
1952	핀란드 헬싱키 하계올림픽	37위	2종목 참가, 2개(금 0, 은 0, 동 2)
1956	캐나다 멜보른 하계올림픽	29위	2종목 참가, 2개(금 0, 은 1, 동 1)
1964	일본 동경 하계올림픽	26위	3종목 참가, 3개(금 0, 은 2, 동 1)
1968	멕시코 멕시코시티 하계올림픽	36위	1종목 참가, 2개(금 0, 은 1, 동 1)
1972	독일 뮌헨 하계올림픽	33위	1종목 참가, 1개(금 0, 은 1, 동 0)
1976	캐나다 몬트리올 하계올림픽	19위	4종목 참가, 6개(금 1, 은 1, 동 4)
1984	미국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10위	6종목 참가, 19개(금 6, 은 6, 동 7)
1988	대한민국 서울 하계올림픽	4위	10종목 참가, 33개(금12, 은10, 동11)
1992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	7위	11종목 참가, 29개(금12, 은 5, 동12)
1996	미국 아틀란타 하계올림픽	10위	10종목 참가, 27개(금 7, 은15, 동 5)
2000	호주 시드니 하계올림픽	12위	10종목 참가, 28개(금 8, 은10, 동10)
2004	그리스 아테네 하계올림픽	9위	11종목 참가, 30개(금 9, 은12, 동 9)
2008	중국 베이징 하계올림픽	7위	14종목 참가, 31개(금13, 은10, 동 8)
2012	영국 런던 하계올림픽	5위	12종목 참가, 28개(금13, 은 8, 동 7)
2016	브리질 리우 하계올림픽	8위	10종목 참가, 27개(금 9, 은 3, 동 9)

※ 출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2016)

표 5-3. 역대 올림픽대회 동계 메달 획득 현황

연도	대회	성적	메달획득
1992	프랑스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10위	5종목 참가, 4개(금 2, 은 1, 동 1)
1994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6위	6종목 참가, 6개(금 4, 은 1, 동 1)
1998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9위	8종목 참가, 6개(금 3, 은 2, 동 1)
2002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14위	6종목 참가, 7개(금 2, 은 2, 동 0)
2006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	7위	4종목 참가, 11개(금 6, 은 3, 동 2)
2010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5위	5종목 참가, 14개(금 6, 은 6, 동 2)
2014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13위	11종목 참가, 8개(금 3, 은 3, 동 2)

※ 출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2016)

제2절 국제체육계 동향

1. 세계 주요국 체육행정

1) 미국

미국의 체육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세분화되어 운영된다. 미국 정부는 주로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연방정부의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은 야외레크리에이션국(Bureau of Outdoor Recreation)과 대통령체력스포츠영양자문위원회(The President's Council on Fitness, Sports and Nutrition) 중심이며 연방 행정부인 교육부, 내무부(Dept. of Interior), 그리고 보건복지부(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가 지원한다. 학교체육은 연방정부 조직과 함께 비영리 민간조직인 학교체육연맹에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다. 야외레크리에이션국은 미국인의 생활체육 및 여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며 주로 규정이나 정부보조금 등 각 지역에 간접적 지원을 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토대로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실제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업무 수행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원·레크리에이션과(Park and Recreation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문체육은 정부의 통제보다는 미국올림픽위원회(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USOC)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미국올림픽위원회는 미국아마추어경기연맹(Amateur Athletic Union: AAU), 미국대학경기협회(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와 연계하여 전문체육을 관리한다. 이 단체는 미국 내 체육관련 조직에 대한 승인과, 올림픽게임, 장애인올림픽게임, 판 아메리칸 게임의 참여와 같은 모든 전문체육분야를 담당한다. 또한 우수 운동선수를 육성하고자 종목별경기연맹단체와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들 간의 업무를 조절하고 있다.

표 5-4. 주요국 체육담당부처 및 주요역할

국가	체육담당부처	주요 역할
미국	대통령체력스포츠영양자문위원회 (The President's Council on Fitness, Sports and Nutrition)	학교체육연맹과 협력, 학생 학교체력 지침 제공, 학교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학교체육 업무 관장
	야외레크리에이션국 (Bureau of Outdoor Recreation)	생활체육 및 여가 업무 관장, 규정제정, 체육 보조금 지원
	미국올림픽위원회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USOC)	전문체육 육성 핵심 역할 담당, 국가올림픽위원회 운영, 장애인올림픽, 판 아메리칸 게임 운영, 재정 독립 운영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스포츠시설안전관리국 운영 지원, UK 반도핑 기구 운영 지원, UK스포츠, 스포츠잉글랜드 지원, 연방스포츠 위원회 운영 감독
	UK스포츠 (UK Sport)	국제체육(올림픽, 패럴림픽, 영연방 대회) 참가 관리, 전문체육 관리 운영
	스포츠잉글랜드 (Sport England)	생활체육 지원 계획 수립, 복권기금 운영, 생활체육시설 제공 및 관리, 생활체육실태 조사
프랑스	도시청년체육부 (Ministry of Sports, Youth, Popular Education and Community Life)	하위 체육 조직 지도 및 감독, 체육 단체 재정지원,
	국립체육개발센터 (National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Sports: CNDP)	체육 재정 지원 총괄(체육과학, 체육고용, 여가체육 개발, 전문체육훈련, 건강체육, 학교체육)
	국립스포츠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INSEP)	체육분야 발전 정책 개발(체육인 건강 보호, 스포츠윤리 준수,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독일	연방 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n: BMI)	체육재정 지원, 체육장관 회의 주도, 체육 발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체육 관련 업무 조율
	연방 교육연구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	스포츠클럽 및 학교체육 장관회의 주재, 학교지방기관 협력 조율, 청소년체육단체 협의
	독일올림픽위원회 (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 DOSB)	체육정책 민관협력, 전문체육 경기 지원 관리,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체육 연계, 지방 체육단체 대표
일본	문부과학성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체육진흥 기본 계획 수립, 체육 단체 재정지원, 학교체육, 생활체육, 경기스포츠 관리
	일본체육협회 (Japan Sports Association: JASA)	국민체육대회 개최, 지역체육 기반정비, 스포츠클럽 육성, 스포츠지도자 육성, 국민체육 표창사업, 국제교류사업, 체육소년단 육성
	일본스포츠위원회 (Japan Sport Council: JSC)	국립체육경기장 운영, 체육 보급 진흥, 학교안전지원, 스포츠 과학 의학 정보연구, 내셔널트레이닝센터의 관리 운영업무, 체육진흥투표, 체육지도자 양성 및 조사연구

※ 출처 : 한국스포츠개발원 해외 스포츠정책 동향 분석(2015)

2) 영국

영국의 체육은 중앙 행정부인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와 UK스포츠(UK Sport)와 스포츠잉글랜드(Sport England)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와 보건부(Department for Health) 및 기타 공공기관과 연계된다. 영국의 생활체육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스포츠잉글랜드(Sport England)에서, 학교체육은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와 보건부(Department for Health), 독립 자선 단체(Independent Charity)인 청소년체육단체(Youth Sport Trust)에서, 전문체육 정책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UK스포츠에서 담당한다.

생활체육 관리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스포츠잉글랜드와 함께 지방정부에서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행정운업을 담당하는 체제이다. 스포츠잉글랜드는 생활 및 학교 체육재정을 지원하며 재정의 약 50%를 경기종목단체로 배분한다. 학교체육 관리는 중앙 행정부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체육청소년단체 및 지방정부 학교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체제이다. 전문체육 관리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 및 UK스포츠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경기종목단체(National Governing Bodies of Sport: NGBs), 지방정부(local authority), 지방 스포츠 파트너십(County Sport Partnerships: CSPs), 각종 스포츠전문가 집단(national partners with specialist), 그리고 지역 스포츠클럽(local sport clubs)에서 운영하는 체제이다.

영국의 전국 단위 학교체육 대회인 스쿨게임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및 전문체육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대회의 3단계인 광역 단위 대회에서 경기종목단체들이 유능한 선수들을 선발하고 자체 훈련 과정으로 편입시켜 마지막 4단계인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한다. 이를 통해 우수 학생선수는 종목별 전문체육 선수로 성장하게 된다. 장애인체육에서도 엘리트 선수 육성은 UK스포츠가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스포츠잉글랜드가 담당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의 체육은 중앙행정부인 도시청년체육부(Ministry of Sports, Youth, Popular Education and Community Life)를 중심으로 하위 체육조직을 지도 및 감독하는 체제이다. 지역 체육활동은 청소년, 체육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방정부(the regional governing bodies for youth, sport and social cohesion: DRDJSCS)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종목별 체육연맹들은 도시청년체육부의 지원을 통해 체육발전을 위한 전국 및 지방 차원에서 대회를 조직하고 국가대표팀 선발 및 관리, 종목별 경기규칙을 제정하는 공공 서비스에 참여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와 경기연맹 지원을 위해 국립스포츠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Sports, Expertise and Performance: INSEP)에서는 체육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프랑스 체육 재정적 지원은 국립체육개발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Sports: CNDS)를 통해 이루어진다.

프랑스 생활체육 정책은 도시청년체육부 산하 지원센터(‘체육과 건강’, ‘체육교육 및 장애인 체육’, ‘체육다양성과 시민권’, ‘체육과 자연’)와 지방정부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학교체육 정책은 도시청년체육부와 교육부의 협력 하에 추진되며 학교체육관련 연맹(‘초등학교체육연합’, ‘학교체육연합’, ‘프랑스대학교체육연맹’, ‘자율교육총연합’, ‘학교단체 전국연합’)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문체육은 도시청년체육부 장관 주재의 엘리트체육국가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이 위원회 임원은 중앙정부, 프랑스올림픽위원회 위원, 선수, 코치, 심판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들로 구성된다. 장애인체육 정책은 중앙기관인 체육역량강화지원센터에 소속된 ‘국립 장애인체육센터’와 도시청년체육부 내 지원센터에서 중점 관리한다.

4) 독일

독일체육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와 독일올림픽위원회(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 DOSB)에서 관리된다. 연방 내무부(Bundes Ministerium des Innern: BMI)와 지방 정부부처(문화부 또는 내무부)가 체육업무를 관리한다. 독일의 경우 체

육전담 행정부서는 없으며 독일 지방자치 특성상 체육행정 구조는 위계적 하향식 체제보다 각 지방의 체육장관회의(Conference of Ministers of Sports: SMK)를 중심으로 독립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올림픽스포츠연합은 산하 종목별 체육회원단체들을 대변한다. 내무부는 체육행정 및 재정지원에 대한 전반적 업무를 조율한다.

독일 생활체육은 주정부에서 주도하며 근간은 스포츠클럽이다. 독일 전국에 약 91,000개 클럽은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여가를 위한 공공복지 발전을 목표로하고 있다. 학교체육 정책은 연방 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에서 담당하며, 스포츠클럽이나 학교체육 안건은 장관회의에서 주로 논의된다. 전문체육은 독일올림픽스포츠연합 산하 체육연맹들에 의해 운영되며, 내무부에서 이들 경기단체들에 재정지원을 담당한다. 독일올림픽스포츠연합 산하 올림픽체육위원회에서는 전문체육 발전에 있어서 청소년 체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큼을 인식하고, '청소년 체육 계획 2020'을 만들어 학교체육과 전문체육분야의 협업을 강조했다. 주정부와 독일올림픽스포츠연합은 학교 학생선수가 학업과 체육을 병행하면서 엘리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 장애인체육은 독일올림픽스포츠연합 산하 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 총괄한다. 독일 장애인체육은 장애인 엘리트체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활체육과 재활 및 병약자를 위한 체육활동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5) 일본

일본 체육행정은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文部科学省) 산하 설립된 체육청에서 총괄한다. 체육청은 체육발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체육 단체 재정지원, 학교체육, 생활체육, 경기스포츠를 담당하며, 기타 체육 행정은 다른 행정조직에서 관리한다. 후생노동성에서는 국민건강 체육 및 장애인과 고령자체육 진흥정책을 담당하고, 외무성에서는 국제체육교류, 경제산업성에서는 피트니스산업 및 스포츠용품업 등 스포츠서비스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부와 함께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위원회, 일본올림픽위원회 및 일본체육협회, 일본레크리에이션협회 등이 각 경기단체 및 지방 체육가맹단체를 통할하고, 국제경기력

향상, 체육지도자 양성,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육성과 청소년 체력향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스포츠위원회는 국립경기장 등의 스포츠시설의 운영, 학교 아동청소년 체육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및 건강 유지증진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일본 전문체육은 체육청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개별 경기종목단체에서 실제 운영한다. 체육청 신설로 일본올림픽위원회의 전문체육 운영 기능은 축소되었다. 생활체육의 진흥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일본체육협회이다. 다만 체육청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유럽형 모델인 종합형 지역체육 클럽제도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학교체육정책은 문부과학성의 소관이다. 최근 문부과학성은 학교체육의 교원 수 감소와 전문지도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체육지도자를 학교로 초빙하는 체육지도자 은행 제도 등을 시행한다. 일본 장애인체육은 장애인체육협회에서 총괄한다. 중앙정부와 장애인체육협회는 종합형지역체육클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체육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2. 국제 체육기구 현황

국제체육기구는 대표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국제대학체육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u Sport Universitaire: FISU),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OCA)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 를 꼽을 수 있다. 종목별·대륙별·연령별 세계대회 등을 관장하는 기구로는 종목별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IF)과 아시아대회를 관장하는 아시아경기연맹(Asian Games Federation: AF)을 들 수 있으며 연합회 형태의 기구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ANOC)나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lob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GAISF)를 들 수 있다.

표 5-5. 주요 국제체육기구 및 단체 주요역할 현황

구분	기구 및 단체명	주요 역할
국제 체육 기구	IOC(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동·하계(청소년)올림픽 관장/ NOC, IF 등 각종 체육단체 총괄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IOC 가맹국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총괄
	GAISF(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종목별 IF(국제경기연맹) 총괄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eration)	동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관장/ 가맹국 대학체육연맹 총괄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동 하계 장애인올림픽 관장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동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총괄, 아시아지역 NOC 및 아시아 경기연맹(ASF) 총괄
경기 연맹	IF(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관장
	AF(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	종목별 아시아선수권대회 관장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3. 국제 체육위원 현황

1)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 현황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894년 6월 23일 Baron Pierre de Coubertin이 비영리 국제 NGO를 설립하여 206개국(우리나라 1947년 가입)을 회원국으로 가입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 스포츠기구이다. IOC위원은 최대 115명(개인자격 70명,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 15명, 국제경기연맹 자격 15명, 선수 자격 15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IOC는 올림픽헌장(Olympic Charter) 및 IOC 규정을 준수하고, IOC와 올림픽운동(Olympic Movement)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IOC위원의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IOC 총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자국 또는 소속 스포츠 조직 내에서 IOC 프로그램의 이행을 감독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IOC는 올림픽 헌장 제16조 1.7항에서 IOC 위원 임기를 8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1회 또는 그 이상 횟수의 재선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IOC위원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IOC위원장에게 사직서 서면 제출을 통해 임기를 중단할 수 있다. NOC 자격, IF자격 IOC위원의 경우, IOC위원에 선출되었을 당시에 수행하였던 각 기관의 회장 및 임원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IOC위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수자격 IOC위원은 IOC위원임과 동시에 IOC의 분과위원회인 선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Angela Ruggiero(미국, 아이스하키)가 Claudia Bokel(독일, 펜싱)의 뒤를 이어 IOC선수위원회 의장에, Tony Estanguer(프랑스, 카누)이 Angela의 뒤를 이어 IOC선수위원회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또한, 2016 리우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올림픽 선수촌 내에서 총 25일간(2016. 7.24~8.17) 11,245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된 선수자격 IOC위원 선거에서는 5,185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였으며 투표 결과, 대한민국의 유승민(탁구)과 독일의 Britta Heidemann(펜싱), 헝가리의 Daniel Gyutta(수영), 러시아의 Yelena Isinbayeva(장대높이뛰기)가 대한민국의 문대성(태권도), 독일의 Claudia Bokel(펜싱), 러시아의 Alexander Popov(수영), 쿠바의 Yumilka Ruiz Luaces(배구)를 대체할 선수자격 IOC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들은 2024년 올림픽까지 IOC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표 5-6. 대륙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배출 인원 현황

대륙	국가
아시아 (15개국 18명)	중국(3), 한국(2), 일본, 대만, 태국, 쿠웨이트, 파키스탄, 북한, 싱가포르, 시리아, 카타르, 말레이시아, 요르단, 필리핀, 인도
오세아니아 (4개국 6명)	호주(2), 뉴질랜드(2), 피지, 파푸아뉴기니
유럽 (26개국 44명)	스위스(4), 영국(4), 러시아(3), 프랑스(2), 스페인(3), 이탈리아(3), 노르웨이, 독일(2), 우크라이나(2), 스웨덴(2), 덴마크(2),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벨기에, 헝가리(2),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이스라엘, 폴란드, 터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메리카 (11개국 15명)	미국(3), 캐나다(3), 브라질, 페루,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푸에르토리코, 아루바, 아르헨티나, 세인트루시아, 콜롬비아
아프리카 (11개국 12명)	남아프리카공화국(2), 모로코, 나미비아, 감비아, 나이지리아, 부룬디, 지부티, 짐바브웨, 케냐, 에티오피아, 세네갈
합계(5개 대륙 95명 67개국)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2)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는 1979년 설립하여 소재지는 스위스 로잔으로 206개의 회원국 각국 올림픽위원회(NOCs)의 이익을 대변하고 올림픽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미션을 지원하고 있다.

표 5-7. 국제올림픽위원회연합회 집행위원회(2014~2018)

직책	이름		국가
회장	Sheikh Ahmad Al-Fahad Al-Sabah		쿠웨이트
사무총장	Gunilla Lindberg		스웨덴
부회장 (대륙별 1명)	Patrick J. Hickey*		아일랜드
	Lassana Palenfo		코트디부아르
	Julio Cesar Maglione		우루과이
	Zaiqing Yu		중국
	Robin Mitchell		피지
집행위원 (24명)	유럽	Raffaele Pagnozzi(이태리), Vlade Divac(세르비아), Roger Talerio(핀란드), Janez Kocijancic(슬로베니아), Nese Gundogan(터키)	
	아프리카	Thomas Sithole(짐바브웨이), Mustapha Berraf(알제리), Matlohang Moila-Ramopoqo(레소토), Habu Ahmed Gumel (나이지리아), Lydia Nsekera(부룬디)	
	미주	Jimena Salda a(멕시코), Larry Probst III(미국), Marcel Aubut (캐나다), Jos Qui ones(페루), Keith Joseph(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아시아	Charouk Arirachakaran(태국), Raja Randhir Singh(인도), Prince Tunku Imran(말레이시아), Tsunekazu Takeda(일본), Mikaela Jaworski(필리핀)	
	오세아니아	Ricardo Blas(괌), Barry Maister(뉴질랜드), Baklai Temengil(팔라우), Auvita Rapilla(파푸아뉴기니)	

* Patrick J. Hickey 직무 정지(Temporary Suspended)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17)

3)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는 1967년 설립하여 소재지는 스위스 로잔이며 회장은 스위스 출신의 Patrick Baumann이다. 올림픽 하계종목(ASOIF) 33개, 동계(AIOWF) 7개, 인

정종목(ARISF) 37개, 그 외 종목(AIMS) 약 20개로 현재 5개 단체는 ARISF와 ASOIF에 중복 소속되어 있다. 2017년 4월에 스포츠어코드(SportAccord)에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4)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현황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1982년 12월 5일에 설립하여 기존의 AGF(Asian Games Federation)를 확대 개편하였다. 소재지는 쿠웨이트 하왈리에 위치하여 아시아지역 경기 대회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45개국 회원국 대표로 회장은 쿠웨이트 출신인 Sheikh Ahmad Al-Fahad Al-Sabali이다. 집행위원회는 41명으로 임기는 4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회장 1명, 부회장 14명(지역대표 5명, OCA게임 개최국 대표 5명, ANOC 대표 1명, 명예종신 부회장 2명, 명예부회장 1명), 집행위원 4명, 명예위원 3명, 분과위원회 위원장 18명, 사무국장 겸 기술국장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5-8.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원국 현황

지역	국가
동아시아(8개)	한국, 북한,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몽골
동남아시아(11개)	브루나이, 미얀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남아시아(8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서아시아(13개)	이란, 이라크, 예멘,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아시아(5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17)

5) 종목별 국제경기연맹(IF)회장 현황

올림픽 정식종목이면서 종목별 권위있는 세계대회를 주관하는 국제경기연맹(IF)회장은 주로 유럽국가에 치중되고 있다. 종목별로 보면, 이탈리아 4개 종목, 독일이 3개 종목,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가 2개 종목을 회장국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태권도 종목 회장 1명을 보유하고 있다.

표 5-9. 하계올림픽대회 정식종목별 국제경기연맹/홈페이지 현황

구분	종목	회장명	회장국적	국제경기연맹/홈페이지
하계 (28종목)	육상	Mr. Sebastian COE	영국	http://www.iaaf.org/
	조정	Mr. Jean-Christophe ROLLAND	프랑스	http://www.worldrowing.com
	배드민턴	Mr. Poul-Erik Hoyer	덴마크	http://bwfbadminton.com/
	농구	Mr. Horacio MURATORE	아르헨티나	http://www.fiba.com/
	복싱	Dr. Ching-Kuo WU	대만	http://www.aiba.org/
	카누	Mr. Jose PERURENA LOPEZ	스페인	http://www.canoeicf.com/
	사이클	Mr. Brian Cookson	영국	http://www.uci.ch
	펜싱	Mr. Alisher Usmanov	러시아	http://www.fie.org
	승마	Mr. Ingmar DE VOS	벨기에	http://www.fei.org/
	축구	Mr. Giovanni INFANTINO	이탈리아	http://www.fifa.com
	체조	Mr. Morinari Watanabe	일본	http://www.fig-gymnastics.com/
	역도	Mr. Tam s AJ N	헝가리	http://www.fivb.org/
	핸드볼	Dr. Hassan MOUSTAFA	이집트	http://www.ihf.info/
	하키	Mr. Narinder Batra	인도	http://www.fih.ch/
	유도	Mr. Marius VIZER	오스트리아	https://www.ijf.org/
	근대5종	Dr. Klaus SCHORMANN	독일	http://www.uipmworld.org/
	레슬링	Mr. Nenad Lalovic	세르비아	http://unitedworldwrestling.org/
	수영	Dr. Julio C. Maglione	우루과이	http://www.fina.org
	태권도	Dr. Chungwon CHOUE	대한민국	http://www.worldtaekwondofederation.net/
	테니스	Mr. David HAGGERTY	미국	http://www.itftennis.com/
	탁구	Mr. Thomas WEIKERT	독일	http://www.ittf.com/
	사격	Mr. Olegario V ZQUEZ RA A	멕시코	http://www.issf-sports.org/
	양궁	Dr. Ugur ERDENER	터키	http://www.worldarchery.org/
	트라이애슬론	Mrs. Marisol Casado	스페인	http://www.triathlon.org/
	요트	Mr. Kim Anderson	덴마크	http://www.sailing.org/
	배구	Mr. Ary Graca	브라질	http://www.fivb.org/
	골프	Mr. Peter Dawson	영국	http://www.igfgolf.org/
	럭비	Mr. Bill BEAUMONTT	영국	http://www.worldrugby.org/
동계 (7종목)	바이애슬론	Mr. Anders BESSEBERG	노르웨이	http://www.biathlonworld.com
	봅슬레이 스켈레톤	Mr. Ivo Ferriani	이탈리아	http://www.ibsf.org/en/
	컬링	Mrs. Kate Caithness	스코틀랜드	http://www.worldcurling.org/

구분	종목	회장명	회장국적	국제경기연맹/홈페이지
	아이스하키	Mr. Ren FASEL	스 위 스	http://www.iihf.com/iihf-home/home.html
	루지	Mr. Josef FENDT	독 일	http://www.fil-luge.org/en/home
	빙상	Mr. Jan Dijkema	네 델 란 드	http://www.isu.org
	스키	Mr. Gian-Franco KASPER	스 위 스	http://www.fis-ski.com/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4. 도핑방지 활동

초기 도핑방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63년에 유럽 21개 국가 협의체인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에서 ‘반도핑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계기를 시발점으로 196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의무위원회(Medical Commission)에서는 체육계 반도핑과 관련하여 금지약물목록을 발표하고 올림픽대회에서 선수 도핑검사를 시작하였다.

본격적 도핑방지 활동은 199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함께하는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를 결성하면서 활성화되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국제체육기구에 적용되는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WADC)을 제정하여, 세계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Sport Federation)의 규정 이행을 약속받았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도 반도핑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을 추진하였다.

1)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스위스 사법(Swiss Private Law)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IOC가 공식 인정하는 독립 조직으로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 없는 환경에서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핑 방지에 관한 과학 연구 및 교육의 시행, 도핑방지 역량의 개

발, 세계도핑방지 규약의 준수 감시, 금지 약물 목록 제정 등 도핑방지에 관련된 모든 영역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주요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도핑 없는 체육환경 조성
- 도핑방지기구 및 국제경기연맹의 세계도핑방지구약 이행 달성
- 각국의 도핑정보 수집과 공유를 위한 국내법 마련 유도
- 도핑방지 교육프로그램의 국제적 체계 수립
- 도핑의 윤리적, 의료적, 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국제적 자각 촉진
- 국제적 연구 프로그램 실행 및 연구 환경, 전문가 네트워크 조성
- 세계도핑방지기구인증시험실이 국제기준에 일치하는 수준의 분석을 수행하도록 방향 제시
- 존중받는 기관으로서 경영 및 운영기준이 국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

세계도핑방지기구 구성원은 회장단 2명, 올림픽운동대표단 18명, 정부대표단 18명 총 38명의 임원으로 되어 있고, 조직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그리고 실무위원회로 구분된다. 이사회는 최고의결기구로 위원장, 부위원장과 올림픽관계기관 구성원과 세계 각국 정부 측 대표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된다. 아시아지역에서 우리나라도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2014년부터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도핑방지기구 도핑방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Foundation Board와 실질적 운영 및 경영을 담당하는 최고정책결정기구인 Executive Committee, 5개의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며 도핑방지 주요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2016년 현재 활동 중인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선수위원회(Athlete Committee)
-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 윤리문제전문가그룹(Ethical Issues Expert Group)

표 5-10. 세계도핑방지기구 위원회 구성

(단위: 명)

구분		인원	합계	국가
회장단	위원장	1	2	영국
	부위원장	1		노르웨이
올림픽 운동 대표단 (Olympic Movement Representation)	IOC 대표	4	18	스위스, 피지, 캐나다, 세비아
	ANOC 대표	4		브라질, 이집트, 카자흐스탄, 이탈리아
	ASOIF 대표	3		헝가리, 터키, 이탈리아
	SportAccord 대표	1		스위스
	AIOWF 대표	1		노르웨이
	IOC 선수위원회 대표	4		미국, 짐바브웨, 프랑스, 영국
	IPC 대표	1		스페인
정부 대표단 (Government Representation)	유럽연합	3	18	벨기에, 몰타, 영국
	유럽회의	2		이탈리아, 터키
	아시아	4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중국, 일본
	아프리카	3		가봉, 나미비아, 에티오피아
	미주	4		캐나다, 칠레, 미국, 베네수엘라
	오세아니아	2		호주, 뉴질랜드
합계			38	

※ 출처 : 세계도핑방지기구 결과보고서(2016)

- 재정 & 행정위원회(Finance & Administration Committee)
- 건강, 의학 및 연구위원회(Health, Medical & Research Committee)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설립초기에 IOC로부터 전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2000년 2월 몬트리올에서 지역별 이사국을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부담하도록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체결을 추진하였다. 이에 이사국은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도핑방지 국제정부 간 협의체그룹회의에서 구체적 예산 부담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2002년부터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세계 각국 정부 및 IOC 분담 투자로 운영되었다. 각국의 부담금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차별화되어 책정되었다. 아시아는 20.46%의 경비를 부담한다. 42개 아시아국가 부담금은 1인당 국민소득과 체육지수(국제대회 참가선수 규모)를 고려하여 책정했다.

2016년 WADA 전체예산은 28,309,373달러이고 IOC와 각국 정부에게 청구된 총 분

담금은 각각 14,154,686달러였고, 각국 정부에 청구된 분담금 중 아시아국가 분담금은 2,896,049달러였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IOC는 분담금 13,962,521달러로 청구액 대비 98.64% 납부하였다. 각국 정부에게 청구된 분담금과 납부율을 대륙별로 보면, 미주는 분담금인 4,104,859달러의 97.67%, 유럽은 분담금인 6,723,476달러의 99.58%, 아시아는 2,896,049달러의 95.04%, 아프리카는 분담금인 70,773달러의 64.90%, 오세아니아는 분담금인 359,529달러의 100%를 납부하여 각국 정부가 납부한 분담금의 총계는 13,862,374달러로서 청구액 대비 97.93%라는 납부율을 보였다.

2) 세계도핑방지규약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과 관련하여 모든 체육관련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WADC)을 제정하였다. 최초 2003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세계반도핑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에서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회가 세계도핑방지규약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이후 2014년에 205개 NOC와 모든 국제경기연맹이 규약에 서명하였다. 세계도핑방지규약은 경기규칙

표 5-11. 세계도핑방지기구 금지약물 목록

분류	성분 · 물질
S1. 동화작용제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nabolic androgenic steroids)로서 외인성 및 기타 동화작용제 포함
S2.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및 관련약물	에리스로포이에틴 수용기 작용제, 저산소증 유도인자 안정제, 용모성 고나도트로핀 및 황체형성호르몬, 성장호르몬 및 성장호르몬방출호르몬 등 기타 모든 성장인자
S3. 베타-2 작용제	흡입 salbutamol, formoterol 및 salmeterol을 제외한 모든 베타-2 작용제류
S4.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	아로마타제 억제제류,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변조물질류, 기타 항 에스트로겐 물질들, myostatin 기능 변조제류, 대사 변조제
S5. 이노제 및 기타 은폐제	이노제류, 데스모프레신, 혈관확장제(글리세롤 등)
S6. 흥분제	모든 광학 이성질체(d-, l-)를 포함한 모든 흥분제
S7. 마약류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fentanyl 등
S8. 카나비노이드류	천연 또는 합성 Δ9-tetrahydrocannabinol (THC) 및 유사 대마초
S9. 부신피질호르몬	경구복용, 정맥주사, 근육주사 또는 좌약으로 투여하는 모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 출처 : 세계도핑방지기구 홈페이지(2016)

과 같은 조건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도핑방지규정(Korea Anti-Doping Code: KADC)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세계도핑방지규약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선수들의 고의성에 대한 제재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규약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3) UNESCO 반도핑 국제협약

세계도핑방지기구는 1999년부터 유럽에서 도핑방지 국제협정을 맺은 유럽국가의 세계도핑방지규약의 국제협약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체육스포츠장관 및 고위공직자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Ministers and Senior Officials Responsibl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MINEPS)와 정부간 체육 및 스포츠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CIGEPS)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 3월 100개국이 모인 국제체육스포츠장관 원탁회의에서 도핑방지 국제협약화 안건을 UNESCO 총회에 상정하였다.

2003년 도핑방지 국제협약은 UNESCO 반도핑국제협약 추진에 대해 총회 참여국이 동의하였고 법안 내용은 2005년 10월 19일 제33차 UNES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도핑방지 국제협약을 맺은 국가는 2014년 177개국, 2015년 183개국에 달하였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도핑방지 활동과 관련하여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회원국 역할을 강화하고 도핑방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6년 6월 28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2차 유네스코 국제체육반도핑협약 당사국총회 의장단 회의(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 ICADS)에서 의장인 살레 콘바즈 무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룩 코엘러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부총장과 케냐, 핀란드, 러시아, 네덜란드 등 9개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했다.

4) 국제 반도핑 활동

2015년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는 반도핑활동을 위한 선수 및 관련자 처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2015년 9월 21일에 도핑을 조장한 선수지원인력(코치, 트레이너, 에이전트, 의사, 선수 가족 등) 명단의 공개와 도핑을 한 선수 본인 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한 관련자도 제재를 받게 조치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2015년 개정 세계도핑방지규약 규정에 따라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현재 제재를 받거나 지난 6년 동안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선수지원인력은 선수와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다. 2015년 이후부터 세계도핑방지기구는 해당 선수지원인력 명단을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일부 체육선진국은 도핑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독일은 2014년 11월 도핑방지법을 발의하여 2015년 11월 13일 의회에 승인을 받아 법안을 발효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금지약물을 소지한 선수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금지약물을 공급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독일 도핑방지기구(National Anti-Doping Agency Germany)에 등록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일본도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도핑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2015년 12월 19일 해당 법 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법률 및 의학 전문가를 구성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핑관련법의 적용범위(프로 및 아마추어 체육 리그 등)
- 금지약물 공급자(의사, 선수지원단 등)에 대한 처벌 및 관리
- 해당 법 위반의 형사책임 여부

5) 세계도핑방지기구 도핑방지 약물현황

2004년부터 도핑분석시험실에 대한 국제공인권한은 IOC 의무위원회에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로 이관되었고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표 5-12. 도핑컨트롤센터 년도별 분석시료 현황

(단위: 건)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소변시료 계	2,527	3,579	2,833	3,528	3,965	4,139	5,213	4,646	4,797	6,193	5,004	4,498
혈액시료 계	-	-	-	-	-	-	195	189	246	234	119	275

※ 출처 : 도핑컨트롤센터 내부자료(2016)

표 5-13. 도핑컨트롤센터 년도별 양성 보고 건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23	25	65	67	43
경기/ 비경기	13/10	14/11	23/42	30/37	38/5
종목	보디빌딩(10) 레슬링(2) 축구(2) 역도(2) 바이애슬론(1) 아이스하키(1) 롤러스포츠(1) 야구(1) 보울스(1) 승마(1) 육상(1)	보디빌딩(11) 수영(2) 카복싱(2) 장애인수영(1) 농구(1) 바이애슬론(1) 장애인볼링(1) 승마(1) 무에타이(1) 장애인요트(1) 사격(1) 궁도(1) 역도(1)	보디빌딩(42) 역도(2) 레슬링(4) 사이클(2) 장애인수영(2) 장애인요트(2) 육상(1) 복싱(1) 축구(1) 골프(1) 가라데(1) 장애인양궁(1) 야구(1) 사격(1) 정구(1) 수영(1) 우슈(1)	육상(2) 배드민턴(1) 야구(1) 농구(1) 보디빌딩(38) 보울스스포츠(1) 카누(1) 사이클(1) 축구(2) 핸드볼(1) 아이스하키(2) 유도(1) 경정(1) 파워리프팅(1) 조정(2) 럭비(1) 빙상(1) 태권 도(1) 수중(1) 배구(2) 역도(4) 우슈(1)	육상(1) 야구(1) 보디빌딩(12) 보울스스포츠(1) 복싱(5) 사이클(1) 펜싱(2) 축구(2) 골프(1) 체조(1) 유도(1) 킥복싱(2) 쿠라쉬(2) 파워리프팅(3) 럭비(1) 사격(2) 궁도(1) 배구(1) 역도(1) 레슬링(2)
약물	단백동화제(9) 이노제/은페제(5) 흥분제(4) 마약류(1) 베타2작용제(1) 부신피질호르몬(2) 호르몬조절제(1)	단백동화제(10) 이노제/은페제(10) 흥분제(4) 마약류(1) 단백호르몬류(1)	단백동화제(59) 호르몬조절제(1) 이노제/은페제(10) 흥분제(5) 베타차단제(1) 부신피질호르몬(1)	단백동화제(57) 호르몬및조절제(9) 이노제/은페제(11) 부신피질호르몬(9)	단백동화제(37), 호르몬및조절제(17) 이노제/은페제(10) 흥분제(12) 마약류(2) 부신피질호르몬(4) 베타차단제(1)

참고: 단일 양성 건에서 다수의 약물이 검출되기도 하므로 약물건수 합이 양성건수 합보다 클 수 있음.

※ 출처 : 도핑컨트롤센터 내부자료(2016)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도핑컨트롤센터에서 세계도핑방지기구 국제공인을 받아 도핑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국내 국가도핑방지기구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KADA)가 설립되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2007년 세계도핑방지기구에 가입하여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준수하며 국내 도핑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에 도핑관련 의심약물 분석을 의뢰해 도핑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선수 및 지도자 제재조치를 담당한다.

5.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개발활동

1) UN의 스포츠 평화와 개발 활동

UN은 세계발전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의 체계적 활용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지난 2000년 UN은 인류의 평화와 안보, 빈곤퇴치, 기본적 자유 및 인권보장 등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의 일환으로 절대빈곤 퇴치 및 양성평등 등과 같은 8가지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였다. UN은 새천년 개발목표의 지향점으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모든 분야에서 자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상호협력적 관계로써 글로벌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UN은 2008년 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UNOSDP)을 설치하여 스포츠를 통한 전 세계의 동반 발전과 세계평화활동을 진행하였다.

2015년은 UN이 지난 2000년에 채택한 8가지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의 마지막 해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5년 8월 에티오피아에서 UN 193개 회원국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국제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이 함께 추진할 현안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였다. 이 안건 중 스포츠 관련내용은 ‘스포츠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조력자(Sport is also an important enabler of sustainable development)’로 국제개발과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의 스포츠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위원장은 2015년 9월 25일 UN개발정상회의 연설에서 ‘스포츠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인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성

취, 교육발전, 양성평등, 평화추구, 지속가능한 글로벌파트너십 등 5개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을 위한 스포츠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올림픽의 원칙이 바로 UN의 원칙(Olympic Principles are United Nations Principles)'이라고 화답하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서 스포츠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2) 한국 스포츠 평화와 개발 활동

2010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와 개발운동(SFD Movement)'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 드림프로그램, 체육 지도자 파견 및 용품지원 사업, 태권도평화봉사단 및 사범 파견 등과 같은 스포츠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사업 목적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 관련 지식이나 정보, 시스템 등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데 있었다.

2016년 7월 1일 국제스포츠협력센터와 국제스포츠외교재단이 통합하여 국제스포츠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6년 10월 4일 국제스포츠재단(iSR)이 10월 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클린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16 iSR Forum'을 개최하였다. 국제스포츠재단은 스포츠 부정부패에 대한 원인을 다각도에서 논의하고, 클린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수 및 선수관계자, 스포츠 기구 등의 역할과 방법을 모색하며 올림픽 운동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IOC 위원,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6. 국제 스포츠이벤트의 상업화

1984년 LA대회를 기준하여 올림픽은 기업의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체육 상업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TV중계권료와 기업 스폰서십은 올림픽과 같은 국

제스포르츠이벤트에서 경제적 수익수단으로 큰 의미를 보이고 있다.

올림픽대회는 TV중계권료, 후원금, 라이선스 등의 마케팅 수입으로 1980년 동·하계올림픽경기대회 당시 3.5억 달러(4,141억 9천만 원)를, 20년 후인 1998년과 2000년 동·하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는 37.7억 달러(37조 4,633억 원)로 10배 이상 증가한 수익을 얻었고 10년 후인 2010년과 2012년 동·하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는 80.4억 달러(9조 3,189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TV중계권료는 IOC의 재정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5-14. 역대 하계올림픽대회 중계권료 및 중계국가 (단위: 만달러 million, 국)

구분	1984 로스앤 젤레스	1988 서울	1992 바르셀로나	1996 아틀랜타	2000 시드니	2004 아테네	2008 베이징	2012 런던	2016 리우
중계권료	286	402	636	898	1,331	1,494	1,739	2,569	1,226
방송국가수	156	160	193	214	220	220	220	220	220

※ 출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2016)

IOC는 올림픽 파트너(The Olympic Partner: TOP)프로그램과 같은 마케팅기법을 적용하여 후원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먼저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당시 TOP에 참여한 9개 기업의 후원금액은 9,600만 달러(1,123억 6,8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2 런던 하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TOP에 참여한 11개 기업의 후원금액은 9억 5,000만 달러(1조1,111억 2,000만 원)로 증가하여 기업 스폰서십을 통한 스포츠마케팅에서 의미를 보였다. 4년 단위로 선정하는 올림픽 파트너는 정보기술(IT), 무선통신, 음료, 신용카드, 생활용품 등 분야별로 1개 업체만 선정한다. 이에 따라서 파트너로 선정되는 글로벌 기업은 10개 안팎이다. 2016 리우 하계올림픽대회 파트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 코카콜라, 제너럴일렉트릭(GE), 맥도날드, 비자카드, 파나소닉, 다우 등 11개 업체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대회와 2016 리우 올림픽대회까지 4년 동안 IOC가 올림픽 파트너로부터 받는 금액은 11억 100만 달러(1조 2,875억 94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표 5-15. 올림픽대회 공식후원업체 후원금액

(단위: 국, 개, USD million)

구분	1985-1988	1989-1992	1993-1996	1997-2000	2001-2004	2005-2008	2009-2012	2013-2016
올림픽 대회	1988캘거리 1988서울	1992알베르빌 1992바르셀로나	1994릴레함메르 1996아틀란타	1998나가노 2000시드니	2002솔트레이크 2004아테네	2006토리노 2008베이징	2010밴쿠버 2012런던	2014소치 2016리우
참가국 수	159	169	197	199	202	205	205	206
업체 수	9	12	10	11	11	12	11	11
후원금	96	172	279	579	663	866	950	1,101

* 출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2016)

제3절 국제체육 역량

1. 해외 스포츠 국제교류 정책

1) 일본스포츠위원회(Japan Sport Council: JSC)

일본스포츠위원회는 일본학교급식협회(1955년 설립), 국립경기장(1958년 설립), 일본 학교안전협회(1960년 설립), 일본학교보건센터(1982년 설립)를 통합한 일본국립경기장 및 학교보건센터(1986년 설립)를 전신으로 2003년 출범한 단체이다. 일본스포츠위원회는 국립스포츠시설관리, 스포츠활동 증진, 일본 엘리트스포츠 지원 개발 및 연구, 스포츠 공정성 유지, 스포츠관련 정보분석 시스템 강화, 스포츠진흥기금 및 스포츠복표 사업, 학교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력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일본스포츠위원회는 정보 및 국제관계부를 두어 스포츠정책 연구, 정보수집 그리고 국제관계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 및 국제관계부는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기본 계획에 설정된 목적에 따라 일본 내 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정보를 수집, 분석하며 일본 스포츠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국내·외 스포츠 정책 관련 정보를 다방면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일본 스포츠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며, 운동선수들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재단 형성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 협력 활동을 증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외의 관련된 프로젝트와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UN산하기구들과의 네트워크, UN스포츠개발평가사무국으로 직원과견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셋째, 스포츠 인재양성 및 인력교류를 위한 국제 공조 프로그램의 개발과 해외 정부 관련 스포츠 기구들에 대한 국제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업무를 공조 계획 수립, 프레임워크 개발, 공조 활동 수행,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포괄하고 있다. 넷째, 정보 및 국제관계부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일본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치계획 준비 지원, 국제 스포츠 사회에 정보 제공, 국제 스포츠 이벤트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국제기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다섯째, 엘리트 및 생활 스포츠 정책과 스포츠를 통한 국제 원조의 트렌드를 연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정책 정보를 유관기관에게 제공하고 일본 스포츠의 현재 경쟁력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행한다. 여섯째, 영국 런던과 러프버러 대학에 설치된 사무소를 활용하여 프로스포츠 선수를 양성하고,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일본 유치에 기여하며, 스포츠 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연구를 실행한다. 일곱째, ‘내일을 위한 스포츠’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공헌 프로그램으로 해외 원조에 스포츠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의 일환이다.

2) 스위스 개발 아카데미(Swiss Academy for Development: SAD)

스위스 개발 아카데미는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 교육, 취업의 증진에 비전을 둔 단체로 스포츠와 놀이를 이용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삶을 변화시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위스 개발 아카데미의 관심 지역은 저개발 국가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가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성장환경이 열악한 청소년의 건강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를 증진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스위스 개발 아카데미는 인간이 유희를 좋아하고 배움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스포츠와 놀이를 도구로 하여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꾀한다. 스위스 개발 아카데미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스포츠와 놀이를 정책실행의 도구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이해관계자들(정부, NGO, 자선단체, 회사 등)에게 스포츠와 놀이에 기반한 개발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구조와 협력자, 시스템을 선정할 수 있도록 역량 분석을 제공한다. 둘째, 스포츠와 놀이를 활용한 개발에 있어서 수혜자와 공여자의 일반적인 또는 특성화된 요구에 대한 역량 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스포츠와 놀이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지원하며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특화된 시스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개발하여 정부, NGO, 국제기구 및 파트너들의 모니터링과 평가 능력을 강화한다. 끝으로 프로젝트의 평가와 실행과 관련된 의문에 대한 실용적인 해답을 제기하기 위한 응용 연구를 진행한다.

3) 미국 교육문화국(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ECA)

미국 교육문화국은 미국 국민들과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교육적,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토록 함으로써 평화적 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1961년 제정된 교육 문화 상호 교류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교육문화국은 학술, 문화, 스포츠, 전문직 교류를 통해 미국 국민과 타국 국민들 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한다. 예술가, 학자, 운동선수, 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160개 이상의 국가들과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문화국은 미국 국무부 산하 공공외교 및 공공문제 부서에 속해 있으며, 8실(학술교류프로그램, 시민교류, 영어프로그램, 세계교육프로그램, 국제 초청, 정책평가, 민간교류, 국제유학)로 구성되어있다. 교육문화국에서는 스포츠 외교를 미국과 타국간의 우호증진의 중요한 도구로 보고 이를 활용한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4)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호주 정부는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호주의 문화를 접하게 하고 사람들 간의 유대를 쌓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외교 정책에 있어서 스포츠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포츠를 주변국과의 외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스포츠 외교를 통해 첫째,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관의 유대를 강화하고; 둘째, 호주 스포츠의 우월함과 선진 거버넌스, 스포츠 참여를 홍보하며; 셋째, 스포츠를 통한 개발을 지원하고; 넷째, 호주의 주요 스포츠 이벤트 개최 역량을 강조하고자 하고 있다.

호주의 스포츠 외교는 외교통상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보건부의 스포츠실, 호주무역투자진흥청, 호주관광청, 호주스포츠위원회와의 공조 아래,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스포츠 외교를 통해 호주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호주스포츠외교전략 2015-2018(Australian Sports Diplomacy Strategy 2015-18)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호주의 스포츠 외교 전략은 인적네트워크, 개발, 문화, 교역, 투자, 교육, 관광 기회 극대화를 위한 전 정부적 접근을 표방한다. 호주스포츠외교전략 2015-18은 사람과 기관의 연계, 스포츠를 통한 개발의 증진, 호주의 홍보, 혁신과 청렴성 지지의 4가지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2. 국내 스포츠 정책과 조직

1) 국제체육 정책

박근혜정부의 스포츠 국제협력정책의 핵심은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국제대회 유치심사 강화’, ‘국제체육인재 양성 및 협력 강화’, ‘태권도 세계화’였다. 이에 국제대회 유치에 대한 전략이 처음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양한 체육인재 양성이 추진되었고, 국제스포츠협력강화 및 스포츠공적개발원조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태권도 세계화에 있어서는 올림픽 스포츠 종목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해외 저개발국으로의 태권도 사범 파견 확대를 통해 중주국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

첫째, 경제적 국제대회 유치에 대한 전략의 추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국제경기대회의 경쟁 유치 과다로 인한 지방 및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대회 효과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에 총사업비 300억 이상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시 개최기준을 강화하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및 관계법령’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국제체육기구 유치신청서 제출 전에 정부 협의 및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부 예산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유치 타당성 보고서 실명제’가 추진되었다.

둘째, 다양한 체육인재 양성사업의 추진이다. 구체적 목표는 체육인재 양성에서 주요 국제체육기구 정직원을 2017년까지 15명, 임원은 2017년까지 1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어과정, 해외인턴 및 학위과정, 실무·전문 과정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과정별 전문성을 강화하여 인력확대를 위한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국제체육 교류협력의 추진이다. 이 사업은 정부 간 체육협력 강화, 스포츠공적개

발원조 확대로 구성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체육협력 강화의 경우 세계도핑방지위원회 이사국 진출, UNESCO 체육분야활동 등 체육 다자교류를, 스포츠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연수,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초청 합동훈련 지원을 들 수 있다.

넷째, 태권도 세계화에 있어서는 국제체육으로서의 입지강화 및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해외 저개발국으로의 태권도사범 파견 확대를 통해 중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려 한다.

표 5-16. 박근혜 정부 국제체육 정책

주요정책	내 용	세부내용
국제체육인재 양성	국제체육인재 양성	교육내실화, 교육-실제 취업 간 연계 강화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 채용 연계될 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장애인 국제체육인재 양성	국제장애인체육기구 임원 확대 지원 국내인사 인력 Pool 조성
	여성 국제체육인재 양성	여성체육리더 양성 교육 활성화
체육 국제협력 선도	정부 간 체육협력 강화	체육 다자교류 강화 대규모 체육포럼 개최
	남북 체육교류 확대	남북체육교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체육행정가 체육경영교육 활성화
	스포츠공적개발원조 확대	개발도상국 체육지도자 코칭강습 확대 개발도상국 국가대표 초청 합동훈련
태권도 세계화	태권도 사범, 시범단, 봉사단 파견 태권도 공연·연구사업 확대	국제체육으로서의 입지강화
국제대회 효과성 제고	국제대회 유치기준 강화	유치 개최 기준 강화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화
	관리감독 강화	유치 투명성 제고 정부 예산지원 기준 강화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16)

2) 조직과 인력

우리나라의 국제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관할 하에 체육관광정책실 체육협력관 내의 국제체육과가 주무부서에서 담당하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국제체육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하였다. 둘째, 국제체육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스포츠국제회의(WADA, UNESCO 반도핑), 국가 간 체육교류(스포츠공적개발원조) 및 국제체육 인재양성과 관련된 업무가 추진되었다. 셋째,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참가 지원에 대한 것으로 주로 정부의 국내 국제대회 유치에 대한 엄격한 기준설정과 2016년에 개최된 국내·외 체육대회 개최가 추진되었다. 넷째, 태

표 5-17.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정책개발 및 정보화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체육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지원
	국제체육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보급
국제체육인재양성 및 국제교류	국제체육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
	국가 간 체육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및 후속 조치
	개발도상국 체육활동 지원 - 체육동반자프로그램, 드림프로그램, 스포츠공적개발원조
	체육 외교력 강화 및 올림픽국제 체육 활동 지원
	국제회의의 참가 및 개최 지원
	국제 네트워크 구축 - 국제심판 양성 등 국제체육 인재양성에 관한 업무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WADA 및 UNESCO 반도핑
	청소년 국제교류, 친선경기 초청 및 파견 등 KOC국제교류업무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 2019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원 - 2018 창원 사격선수권대회 개최지원 - 2017 FIFA U대회 참가 지원 -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지원 - 2016 리우 하계올림픽대회 국가대표 파견 지원
	태권도 진흥 및 세계화 관련 업무 - 태권도유네스코 등재 추진
	태권도공원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태권도 관련 단체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체육동반자프로그램(태권도) 태권도진흥재단 지원 및 관리 - 태권도원 활성화 및 프로그램 지원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권도진흥 및 세계화와 관련하여 태권도관련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의 업무가 추진되었다.

대한체육회(Korea Olympic Committee: KOC)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하여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OCA), 국제대학스포츠연맹(The 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eration: FISU)과 같은 국제체육기구와도 공조를 유지하였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국제체육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각 경기단체, 국민생활체육회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대한체육회의 국제체육업무는 2016년 3월 체육단체 통합 전에는 국제협력부와 청소년국제교류부/훈련기획부에서 주로 담당하였고, 3월 이후에는 국제교류부와 국제대회지원부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표 5-18. 대한체육회 부서별 국제관계 주요업무

국제협력부	청소년국제교류부/훈련기획부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국제대회 및 국제회의의 유치, 개최 지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전문인력 양성 국제체육교류 활동(회의참가, 교류협정 체결, IOC 및 국제기구 관련 업무 등) 경기단체 국제체육교류 활동 지원(종목별 국제대회 초청/참가/개최지원, 국제전문인력 지원 등) 남북체육교류 및 협력관련 업무 국제종합대회 코리아하우스 운영 스포츠공적개발 원조(ODA) 사업 관련 업무 국제임원 육성 및 국제체육인재풀 관리 올림픽달리기대회, 올림픽솔리다리티 등 올림픽 운동에 관한 업무 국제위원회, 문화·환경·교육위원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운영 국제위원장실 지원	국제종합대회(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U대회 등) 관련 업무 - 선수단 구성 및 파견, 예산관련 업무 - 단장회의 및 사전조사단 파견 관한 업무 FISU, AUSF 관련업무 KUSB 관련 업무 - KUSB 임원구성 - KUSB 총회 및 상임위원회 등 각종회의 개최 및 주관 업무 - 동·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대학선수권대회 국내유치 업무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3) 국제체육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전 세계 국가 또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간의 MOU 체결은 국가 간 체육교류협력으로 종목별 경기력 향상은 물론 국가 간 교류 확대에 교두보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9년 이후 2015년에 이르기까지 35개 국가와 정부 간 협약을, 56개국과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체육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체육교류를 시도하였다. 2015년에 구체적으로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불가리아와 정부 간 협정을 맺었고 미국과는 83년 이후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재협정을 맺었다.

표 5-19. 체육교류협정 체결 현황

연도	정부 간	올림픽위원회 간
1979	-	대만(12.20/'99.08.11 재체결)
1980	-	바레인(10.15)
1983	도미니카(03.28)	미국(01.15), 쿠웨이트(09.22), 서독(10.06), 영국(11.03), 스웨덴(11.10)
1984	-	일본(09.13), 튀니지(12.10), 이탈리아('84.07)
1985	-	코스타리카(05.17), 프랑스(09.27)
1986	-	탄자니아(04.26)
1987	-	페루(08.08)
1988	이란(09.20/'07.08.23재체결/'13.07.03재체결), 스페인(11.16)	베냉(09.30)
1989	폴란드(05.04)	
1990	말리(03.09), 유고(05.21), 불가리아(05.23), 루마니아(05.25), 모로코(05.28)	
1991	체코(05.29)	라오스(10.25), 베트남(10.23)
1992	헝가리(02.12), CIS(06.02)	몽골(04.16)
1993	태국(01.25)	카자흐스탄(07.22), 중국(09.09), 러시아(11.24)
1994	-	칠레(04.23), 키르기스스탄(07.29), 투르크메니스탄(08.01), 호주(10.04), 슬로바키아(12.16)
1995	중국(06.09/'04.10.13재체결), 베트남(11.24)	예멘(02.27), 요르단(02.27), 우즈베키스탄(04.19), 말레이시아(05.21), 필리핀(05.22), *몽골('92.04.16/'08.10재체결) 네팔(05.22), 캄보디아(05.22), 카메룬(07.28)
1996	모리셔스(05.06), 나이지리아(10.22)	리비아(10.05)
1997	슬로바키아(01.21), 싱가포르(06.20)	스와질랜드(09.02), 아이보리코스트(10.13)
1999	몽골(05.28), 에티오피아(08.11)	시리아(03.04), 이집트(06.21), 레바논('95.09.20/'03.05재체결), 대만('79.12.20/'08.11 재체결), 베트남('91.10.23/'05.13재체결)
2001	알제리(11.23)	
2002	멕시코(11.22)	
2004	수단(05.18)	일본('84.09.13/'08.25재체결)

연도	정부 간	올림픽위원회 간
2005	이집트(08.01)	
2006	-	우크라이나(02.10), 이탈리아('84.07.26/94.12.01재체결/06.09.07재체결), 멕시코('90.05.21/04.02.25재체결/06.11.06재체결)
2007	-	스웨덴('83.11.10/01.16재체결), 알제리(01.27), 싱가포르(03.30), 폴란드(12.03)
2008	쿠웨이트 (07.30)	루마니아(08.07), 방글라데시(10.27)
2011	우루과이(01.05), 벨로루시(10.01)	뉴질랜드(09.26)
2012	온두라스(08.09)	부탄(01.06), 피지(03.06)
2013	이란(07.03), 콜롬비아(08.19), 필리핀(10.17)	태국(07.03), 카타르('95.05.21/06.15재체결)
2014	스리랑카(10.01)	핀란드 (02.23), 스리랑카(09.30), 과테말라('06.11.05/11.08재체결), 캐나다('84.11.08/11.08재체결),
2015	타지키스탄(04.12), 투르크메니스탄(04.13), 불가리아(90.05.23/05.14재체결)	미국(83.01.15/02.03재체결)
2016		네덜란드(8.14)
합 계	35개국 체결	57개 NOC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4) 국제체육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체육외교력 강화를 위해 우수 인적자원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은퇴선수, 지도자, 스포츠 행정가들에게 외국어과정, 해외인턴 및 학위과정, 실무·전

표 5-20. 국제체육인력 강화방안

구분	사업명	대상
단기정책	인력풀 구성	국제체육기구 임원, 전·현직 외교관, 대학교수, 기업체 임원 등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	심판, 코치, 국가대표급 선수
중·장기정책	어학연수 프로그램 개설	체육단체 임직원, 메달리스트, 국제심판 등
	인력 고급화를 위한 학위과정 지원	메달리스트 및 국가대표 선수
	외교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국제체육기구 파견)	체육단체 임직원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	심판, 코치, 국가대표급 선수

※ 출처 : 대한체육회 (2016)

문 과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과정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국제체육인력 양성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대한체육회와 체육인재육성재단 공동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체육인재육성재단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합병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연구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 내 체육인재육성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게 되었다. 현재는 육성단이 선수대표로서 IOC위원에 선출된 유승민과 사격의 진종오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외교활동을 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문과정을 운영하였다.

표 5-21. 2016년도 체육인재육성단 지원실적

구분		기간	수료 인원	참고사항
외국어 교육과정	국내연수(초급) *직접운영	7개월	33명	- 초급영어교육(주 2회)
	국내연수(중급) *한국외대	7개월	25명	- 중급영어교육(주 3회) - 스포츠행정 전공교육(주 1회)
	해외연수 *미국테네시대	6개월	15명	- 해외 어학연수 - 세미나, 과외활동, 스포츠문화 체험
해외과정	해외학위	1~2년	2명	- 스포츠행정 실무 석사과정 지원
전문과정 *직접운영		6개월	14명	-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진출교육 - 글로벌매너, 커뮤니케이션, 전문지식, 리더십, 1대1영어교육, 현장실습 등

표 5-22. 2016년도 수료생 성과사례

구분		참고사항
외국어 교육과정	국내연수(초급)	"16년 국내연수(초급) 6명 / 스포츠안전재단 등 체육단체 입사
	국내연수(중급)	"16년 해외연수 8명 승급 / 대한체육회,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등 체육단체 입사
	해외연수	"16년 전문과정 2명 승급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도핑방지위원회 등 체육단체 입사
해외과정	해외학위	국제수영연맹 사무국 입사
전문과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아시아럭비연맹 집행위원, 대한럭비협회 국제이사 등 배출

표 5-23. 국제심판 자격취득 지원과정 종목별 지원현황

(단위: 명)

종목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봅슬레이	-	-	-	-	-	1	-	-	1
빙상	2	6	1	1	2	3	3	3	21
스켈레톤	-	-	2	-	-	-	-	-	2
스키	9	5	1	1	4	1	4	-	25
아이스하키	3	2	2	3	-	-	-	-	10
컬링	-	-	3	2	-	5	1	-	11
공수도	3	2	1	1	1	2	1	1	12
레슬링	-	6	4	1	-	-	7	5	23
배구	1	1	-	-	-	-	-	-	2
복싱	-	-	-	-	-	6	1	-	7
소프트볼	-	4	-	-	-	-	-	2	6
수영	1	2	3	-	-	2	2	3	13
승마	6	7	2	-	2	-	-	-	17
양궁	-	-	2	-	-	-	-	-	2
역도	-	-	-	2	-	-	-	-	2
요트	-	3	-	-	1	1	-	1	6
우슈	-	3	-	1	-	3	-	4	11
유도	1	3	3	3	1	2	1	3	17
인라인	2	-	-	-	-	-	-	-	2
체조	-	-	-	3	4	-	3	9	19
카누	-	-	1	-	-	-	1	-	2
탁구	-	-	-	2	2	1	2	2	9
태권도	2	-	3	-	-	-	-	-	5
테니스	-	2	5	1	2	-	2	1	13
트라이애슬론	-	-	-	1	-	2	2	1	6
농구	-	-	-	-	-	-	4	-	4
핸드볼	3	4	-	2	-	-	-	-	9
장애인농구	2	-	-	-	3	-	-	1	6
장애인력비	2	2	-	-	-	-	-	1	5
장애인배구	-	-	1	-	-	-	-	-	1
장애인사격	-	-	6	-	-	-	-	-	6
장애인아이스하키	-	-	3	-	-	-	-	-	3
장애인조정	2	-	-	-	-	-	-	-	2
장애인컬링	-	-	-	-	3	-	-	-	3
합계	39	52	43	24	25	29	34	37	283

※ 장애인종목은 장애인체육회 자체추진으로 '14년부터 지원 중단

※ 출처: 2016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5)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체육기구 진출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비롯하여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가올림픽연합회(ANOC), 세계체육기자연맹(AIPS), 국제대학체육연맹(FISU) 등 각종 기구에 정직원 및 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 각종 국제기구 한국인위원 총괄현황

2016년 기준 국제스포츠기구에 진출한 한국인 임원들은 총 353명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 3명과 국제대학체육연맹 4명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8명이 감소하였다.

표 5-24.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임원 현황

(단위: 명)

국제기구명	연도별 위원 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IOC(국제올림픽위원회)	9	6	5	7	5	6	6	6	5	7	7	10
ANOC(국제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1	1	1	1	1	-	-	-	1	1	1	1
GAISF(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	-	-	-	-	-	-	-	-	-	-	-
AIPS(국제체육기자연맹)	1	1	1	1	1	1	1	1	1	1	1	1
FISU(국제대학체육연맹)	5	6	7	6	6	6	8	8	8	7	8	12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6	6	4	6	6	6	8	9	10	10	18	18
EAGA(동아시아대회협의회)	4	3	3	4	4	4	4	4	4	3	3	3
GAASF(아시아경기연맹총연합회)	-	-	-	-	-	-	-	-	-	-	-	-
ASPU(아시아체육기자연맹)	3	3	3	3	3	3	2	1	1	1	1	1
AUSF(아시아대학체육연맹)	-	-	-	-	-	2	2	2	2	2	2	-
TAFISA(세계생활체육연맹)	-	-	-	-	-	-	-	-	1	1	1	1
WADA(세계반도핑기구)	-	-	-	-	-	-	-	-	-	1	1	1
소계	29	26	24	28	26	28	31	31	33	34	43	48
국제(IF)	79	86	90	69	97	114	107	105	110	116	123	123
아시아(AF)	142	146	151	189	170	190	183	205	215	198	195	182
연맹	221	232	241	258	267	304	290	310	325	314	318	305
합계	250	258	265	286	293	332	321	341	357	348	361	353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나. IOC 한국인위원 등록현황

국제스포츠기구 중 가장 상위기구라 할 수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경우 직위를 기준으로 10명의 임원이 등록되어 있다. 그 중 총회 등에서 의결권이 없는 분과위원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2명의 IOC 위원을 보유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IOC위원 배출은 총 10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까지는 1955년에 이기봉(前 부통령), 1964년 이상백(前 대한체육회 부회장), 1967년 장기영(前 대한축구협회 회장), 김택수(前 대한체육회장) 등 4명이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1984년 박종규(前 대한체육회장), 1986년 김운용(前 IOC부위원장), 1996년 이건희(前 대한레슬링협회장) 2002년 박용성(前 대한체육회장), 2009년 문대성(前 국회위원), 2016년 유승민(前 국가대표선수) 등 6명이 배출되었다. 2015년에는 2명의 IOC위원(이건희, 문대성)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문대성에 이어 유승민이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상태이다.

유승민 위원외의 경우, 2015년 8월 대한체육회에서 국내 선수위원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어 IOC에 선수위원 후보로 등록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IOC 집행위원회에서 선수위원 최종후보자(24명)로 선정하였다. 이후 2016년 8월, 리우올림픽 기간에 선수들을 대상으로 왕성한 유세활동을 하여 브라질 현지시간 8월 18일에 선수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브리타 하이데만(Britta Heidemann, 펜싱, 독일), 다니엘 구르타(Daniel Gyurta, 수영, 헝가리), 옐레나 이신바예바(Yelena Isinbayeva, 육상, 러시아)와 함께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브리타 하이데만(1,603표)에 이어 두 번째 다 득표자(1,544표)로 선정되었다.

표 5-25. IOC 한국인위원 현황

직 위	성 명	피선년도	임 기	국내직위
위원	이건희	1996. 07. 17	2022년	前 대한체육회 이사
위원	유승민	2016. 08. 19	2024년	대한체육회 이사, 선수위원장

출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2016)

다.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분과위원 등록 현황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유경선 유진그룹회장(스포츠와 환경 위원장), 문대성 前IOC 위원(선수관계자위원회 위원장) 등 집행위원 2명을 포함하여 대한체육회 양재완 前 사무총장

(스포츠위원회), 김지영 국제위원장(문화위원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유임된 김소희 국제위원회 위원(여성과 스포츠위원회), 문희중 KOC국제위원회 위원(국제관계위원회)을 포함해 총 16명의 한국인이 18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2015년에는 문체부 2차관이 세계반도핑방지기구(WADA) 이사로 선정되었다.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던 우리나라는 이로써 8년 만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것이다. 2016년 11월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임기로 한국이 재선정되었으며, 2017년 11월에는 한국에서 WADA 이사회·집행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5년 유병진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위원장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2015년 국가올림픽연합회(ANOC)에서 분과위원으로 1명,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에서 회장 1명, 세계체육기자연맹(AIPS)에서 집행위원 1명이 활동하였다.

표 5-26.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분과위원 세부현황

기구	직위	성명	피선년도	임기	국내직위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ANOC)	국제관계분과위원	김재열	2013	4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국제부위원장
	선수관계자위원회 위원장	문대성	2015	4년	대한체육회 이사
	스포츠와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경선	2015	4년	유진그룹 회장
	스포츠분과위원	양재완	2015	4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의무분과위원	진영수	2015	4년	KADA위원장
	교육분과위원	김길두	2015	4년	대한불림협회장
	문화분과위원	김지영	2015	4년	대한체육회 국제위원장
	재정분과위원	이수원	2015	4년	대한체육회 기획재정위원장
	정보통계분과위원	김성철	2015	4년	대한체육회 사무차장
	미디어분과위원	윤은기	2015	4년	한국협업진흥협회장
	규정분과위원	강래혁	2015	4년	대한체육회 법무팀장
	생활체육분과위원	주원홍	2015	4년	(주)미디어윌 고문
	국제관계분과위원	문희중	2015	4년	대한체육회 국제위원
	여성스포츠분과위원	김소희	2015	4년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
조정위원	문대성	2015	4년	대한체육회 이사	
2018자카르타AG조정위원	문대성	2014	대회종료시	대한체육회 이사	

기구	직위	성명	피선년도	임기	국내직위
	2018자카르타AG조정위원	권경상	2014	대회종료시	인천AG조직위 사무총장
	2018자카르타AG조정위원	김재열	2014	대회종료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국제부위원장
	2017삿포르동계AG조정위원	김재열	2015	대회종료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국제부위원장
세계생활체육연맹 (TAFISA)	회장	장주호	2013	4년	
세계반도핑기구 (WADA)	이사	유동훈	2016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제대학체육연맹 (FISU)	집행위원	유병진	2015	4년	명지대학교 총장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홍양자	2016	4년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대학스포츠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하용용	2016	4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의무위원회	윤택림	2016	4년	전남대병원장
	교육위원회	장은영	2016	4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학생위원회	장은영	2016	4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동계유니버시아드 국제기술위원회(쇼트트랙)	박남환	2015	4년	계명대학교 교수
	하계유니버시아드 국제기술위원회(배드민턴)	김동문	2015	2년	원광대학교 조교수
	세계대학선수권 국제기술위원회(배드민턴)	김동문	2015	2년	원광대학교 조교수
	세계대학선수권 국제기술위원회(핸드볼)	홍정호	2015	4년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세계대학선수권 국제기술위원회(우드볼)	이상욱	2015	4년	대한대학우드볼연맹 전무이사	
세계체육기자연맹 (AIPS)	집행위원	정희돈	2013	4년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아시아체육기자연맹 (ASPU)	위원	정희돈	2016	4년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라. 종목별 국제경기연맹 한국인 임원 진출현황

2016년 국제경기연맹에서 활동한 임원은 10개 종목의 회장단 9명, 4개 종목의 사무국 임원 2명, 17개 종목의 집행위원 19명, 26개 종목의 분과위원 65명, 기타임원 14명으로 총 123명이었다.

표 5-27. 국제경기연맹 한국인 임원 현황

직 위	올림픽대회 종목	인원 (명)	그 외 종목	인원 (명)
회장단	바이애슬론, 태권도, 루지	3	정구(2), 검도, 세팍타크로, 당구, 바둑	6
사무국	-	-	정구, 댄스스포츠	2
집행위원	탁구, 빙상, 체조, 사이클, 레슬링(2), 스키, 사격, 태권도(7), 골프, 근대5종, 산악, 트라이애슬론	19	정구, 검도, 보디빌딩, 수중핀수영, 당구, 게이트볼	6
분과위원	축구(4), 핸드볼, 역도(2), 복싱(7), 빙상, 유도(3), 배구(2), 레슬링(3), 수영, 야구(2), 스키(18), 사격(4), 펜싱(2), 롤러, 요트, 양궁(4), 근대5종, 산악(6), 봅슬레이, 아이스하키	65	정구(4), 수상웨이크보드, 산악스키, 수중핀수영, 스쿼시	8
기타	육상(6), 탁구(2), 빙상, 레슬링(2), 태권도, 양궁	13	당구	1
합계		123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2016년 아시아경기연맹 우리나라 집행부 진출현황은 32개 종목에서 회장단 36명, 12개 종목에서 사무국 임원 13명, 14개 종목에서 집행위원 19명, 29개 종목의 분과위원 105명, 기타 임원 9명 등 총 182명이 선임되어 아시아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표 5-28. 아시아경기연맹 한국인 임원 현황

직 위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인원 (명)	그 외 종목	인원 (명)
회장단	탁구, 역도, 복싱, 빙상, 사이클, 농구, 레슬링, 야구, 스키, 승마, 하키, 태권도(2), 배드민턴, 요트, 양궁,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세팍타크로, 스쿼시, 볼링, 축구(동아시아), 핸드볼(동아시아2), 역도(동아시아), 유도(동아시아), 농구(동아시아)	27	정구, 수상웨이크보드, 산악, 산악스키, 소프트볼, 롤러, 당구, 바둑, 볼링(동아시아)	9
사무국	역도, 빙상, 사이클, 스키, 승마, 태권도, 배드민턴, 양궁, 골프, 농구(동아시아)	10	바둑, 산악, 볼링(동아시아)	3
집행위원	축구, 탁구, 빙상, 체조, 사이클, 배구, 럭비, 스키, 사격, 태권도(2), 근대5종, 세팍타크로, 우슈, 농구(동아시아)	15	정구, 당구, 게이트볼(2)	4
분과위원	축구(11), 탁구(3), 핸드볼(3), 역도(3), 복싱(4), 빙상(2), 유도(2), 체조(3), 농구(3), 배구(7), 야구(2), 하키(7), 사격, 펜싱(3), 조정, 배드민턴(2), 요트(3), 양궁(6), 트라이애슬론(8), 테니스, 세팍타크로, 우슈, 스쿼시(4), 축구(동아시아6), 핸드볼(동아시아4), 유도(동아시아)	92	수상웨이크보드(9), 롤러(2), 댄스스포츠, 스쿼시(동아시아)	13
기타	핸드볼, 역도, 유도, 배구, 양궁(2), 핸드볼(동아시아), 유도(동아시아)	8	스쿼시(동아시아)	1
합계		182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제4절 국제체육 교류 현황

1. 국제종합 경기대회 참가

2016년도 주요 국제종합 경기대회는 제2회 릴레함메르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제31회 리우 하계올림픽대회, 제6회 아시아유소년국제경기대회, 제5회 다낭 아시아비치경기대회이다.

표 5-29.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현황

대회명	개최기간	개최지	대회종목	한국참가현황		
				인원 (선수/임원)	메달획득	순위
제2회 릴레함메르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2016 2. 12. ~ 2. 21.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7	총 51 (30/21)	금 10, 은 3, 동 3 (총 16)	2위
제6회 아시아유소년국제경기대회	2016 7. 6. ~ 7. 16.	러시아, 야쿠츠크	22	총 40 (26/14)	금 7, 은 6, 동 9 (총 22)	10위
제31회 리우하계올림픽대회	2016 8. 5. ~ 8. 2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8	총 333 (204/129)	금 9, 은 3, 동 9 (총 21)	8위
제5회 다낭아시아비치경기대회	2016 9. 24. ~ 10. 3.	베트남, 다낭	14	총 88 (62/26)	금 1, 은 4, 동 11 (총 16)	23위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1) 제2회 릴레함메르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가. 대회 개요

2016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제2회 릴레함메르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7개 종목에서 23개의 세부종목이 진행되었으며, 한국은 6개 종목에 15세부종목에 선수 30명, 본부임원 8명, 경기임원 12명, 청년대사 1명으로 총 51명이 참가하였다.

표 5-30. 릴레함메르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요

구분	(제1회 2012년)	2016년 대회
장 소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대회기간	2012.1.13.~1.22.	2016. 2.12.~2.21.
개최 종목	7종목 15세부종목	7종목 23세부종목
참가 종목	6종목 12 세부종목	6종목 15세부종목
파견결과	종합 2위(금5, 은9, 동2)	종합 2위(금10, 은3, 동3)
파견인원	49명	51명

※ 출처 : 2016대한체육회 결과보고서(2017)

나.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미국이 메달 합계 16개(금10개, 은6개)를 획득하며 종합1위를 차지하였고, 대한민국은 총 16개(금10개, 은3개, 동3개)로 종합2위를 차지하였다.

표 5-31.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합계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합계
1	미 국	10	6	0	16	16	이 탈 리 아	1	2	6	9
2	대 한 민 국	10	3	3	16	17	라 트 비 아	1	1	0	2
3	러 시 아	7	8	9	24	18	루 마 니 아	1	0	0	1
4	독 일	7	7	8	22	19	우 크 라 이 나	1	0	0	1
5	노 르 웨 이	4	9	6	19	20	호 주	0	3	1	4
6	개 별 참 가	4	4	5	13	21	체 코	0	2	2	4
7	스 위 스	4	3	4	11	22	핀 란 드	0	1	5	6
8	중 국	3	5	2	10	23	뉴 질 랜 드	0	1	1	2
9	캐 나 다	3	2	1	6	24	헝 가 리	0	1	1	2
10	스 웨 덴	3	2	0	5	25	벨 기 예	0	1	0	1
11	슬로베니아	3	0	2	5	26	슬로바키아	0	1	0	1
12	일 본	2	4	0	6	27	카자흐스탄	0	0	2	2
13	오스트리아	2	3	5	10	28	네덜란드	0	0	1	1
14	프 랑 스	2	1	3	6	29	불 가 리 아	0	0	1	1
15	영 국	2	0	2	4						

※ 출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2016)

다. 한국 선수단의 메달 획득 현황

이번에 한국이 거둔 성적(금10개, 은3개, 동3개)은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참가사상 최고의 성적이며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한국동계스포츠의 경기력 전망을 한층 밝게 하는 청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2) 제6회 아시아유소년국제경기대회

가. 대회 개요

2016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러시아, 야쿠츠크에서 제6회 아시아유소년국제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러시아, 야쿠츠크에서 23종목이 진행되었으며, 한국은 4종목에 선수 26명, 본부임원 3명, 경기임원 8명, 대동심판 3명으로 총 40명이 참가하였다. 대한민국은 총 22개(금7개, 은6개, 동9개)로 종합10위를 차지하였다.

표 5-32. 아시아유소년국제경기대회 개요

구분	제4회_2008년	제5회_2012년	2016년 대회
장 소	러시아, 야쿠츠크	러시아, 야쿠츠크	러시아, 야쿠츠크
대회기간	2008.7.3.~7.13.	2012.7.4.~7.16.	2016.7.6.~7.16.
개최 종목	23종목	23종목	22종목
참가 종목	5종목	2종목	4종목
파견결과	종합 5위 (금13, 은8, 동4)	종합 2위 (금2, 은2)	종합 10위 (금7, 은6, 동9)
파견인원	40명	14명	40명

※ 출처 : 2016대한체육회 결과보고서(2017)

3) 제31회 리우 하계올림픽대회

가. 대회 개요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31회 리우 하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28개 종목이 진행되었으며, 한국은 23종목에 선수 204명, 본부임원 33명, 경기임원 96명으로 총 333명이 참가하였다.

표 5-33. 리우 하계올림픽대회 개요

구분	제29회_2008년	제30회_2012년	2016년 대회
장 소	중국, 베이징	영국, 런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기간	2008.8.8.~8.24.	2012.7.27.~8.12.	2016.8.5.~8.21.
개최 종목	28종목	26종목	28종목
참가 종목	25종목	22종목	23종목
파견결과	종합 7위 (금13, 은10, 동8)	종합 5위 (금13, 은8, 동7)	종합 8위 (금9, 은3, 동9)
파견인원	389명	377명	333명

※ 출처 : 2016대한체육회 결과보고서(2017)

나.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미국이 메달 합계 121개(금46개, 은37개, 동38개)를 획득하며 종합1위를 차지하였고, 영국은 총 67개(금27개, 은23개, 금17개)로 2위, 중국은 총 60개(금26개, 은18개, 동16개)로 3위를 차지하였다. 대한민국은 총 21개(금9개, 은3개, 동9개)로 8위를 차지하였다. 상위 30개 팀 메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34.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단위: 개)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합계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합계
1	미 국	46	37	38	121	16	자 메 이 카	6	3	2	11
2	영 국	27	23	17	67	17	크 로 아 티 아	5	3	2	10
3	중 국	26	18	16	60	18	쿠 바	5	2	4	11
4	러 시 아	19	18	19	56	19	뉴 질 랜 드	4	9	5	18
5	독 일	17	10	15	42	20	캐 나 다	4	3	15	22
6	일 본	12	8	21	41	21	우즈베키스탄	4	2	7	13
7	프 랑 스	10	18	14	42	22	카 자 흐 스탄	3	5	9	17
8	대 한 민 국	9	3	9	21	23	콜 롬 비 아	3	2	3	8
9	이 탈 리 아	8	12	8	28	24	스 위 스	3	2	2	7
10	호 주	8	11	10	29	25	이 란	3	1	4	8
11	네 덜 란 드	8	7	4	19	26	그 리 스	3	1	2	6
12	헝 가 리	8	3	4	15	27	아 르 헨 티 나	3	1	0	4
13	브 라 질	7	6	6	19	28	덴 마 크	2	6	7	15
14	스 페 인	7	4	6	17	29	스 웨 덴	2	6	3	11
15	케냐	6	6	1	13	30	남아프리카공화국	2	6	2	10

※ 출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2016)

다. 한국 선수단의 메달 획득 현황

이번 리우올림픽은 120년의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미 대륙에서 개최되는 대회로 올림픽운동의 지구촌 확산에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8월 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 폐회식까지 역대 대회 최다 참가국인 206개국, 1만여 명의 선수들이 28개 종목에서 골프와 럭비가 신규종목이며, 306개 세부경기는 161개의 남자경기, 136개의 여자경기 및 9개의 혼성경기로 나누어 열렸다.

‘열정적으로 살자(Live Your Passion)’ 라는 대회 슬로건처럼 한국은 금 9개(골프, 사격, 양궁, 태권도, 펜싱), 은 3개(사격, 유도), 동 9개(레슬링, 배드민턴, 양궁, 역도, 유도, 태권도, 펜싱)로 종합 8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표 5-35.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현황

구분	제29회_2008년	제30회_2012년	2016년 대회
금메달	골 프	여자 개인	박인비
	사 격	남자 50m권총	진종오
	양 궁	남자 개인	구본찬
	양 궁	남자 단체	구본찬, 김우진, 이승윤
	양 궁	여자 개인	장혜진
	양 궁	여자 단체	기보배, 장혜진, 최미선
	태 권 도	여자 -49kg	김소희
	태 권 도	여자 -67kg	오혜리
	펜 싱	남자에빠개인	박상영
은메달	사 격	남자 50m소총복사	김종현
	유 도	남자 -66kg	안바울
	유 도	여자 -48kg	정보경
동메달	레 슬 링	남자 그레코로만형75kg	김현우
	배 드 민 턴	여자복식	신승찬, 정경은
	양 궁	여자 개인	기보배
	역 도	여자 53kg	윤진희
	유 도	남자 -90kg	곽동한
	태 권 도	남자 +80kg	차동민
	태 권 도	남자 -58kg	김태훈
	태 권 도	남자 -68kg	이대훈
펜 싱	남자 사브르개인	김정환	

※ 출처 : 리우올림픽 홈페이지(2016)

4) 제5회 다낭 아시아비치경기대회

가. 대회 개요

제5회 다낭 아시아비치경기대회는 2016년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었다. 2008년 제1회 발리 아시아비치경기대회를 시작으로 해양스포츠 및 비올림픽종목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주최 하에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베트남, 다낭에서 14개 종목이 진행되었으며, 한국은 8종목에 선수 62명, 본부임원 8명, 경기임원 26명으로 총 88명이 참가하였다.

표 5-36. 아시아비치경기대회 개요

구분	제3회_2012년	제4회_2014년	제5회_2016년
장 소	중국, 하이양	태국, 푸켓	베트남, 다낭
대회기간	2012.6.16.~6.22.	2014.11.14.~11.23.	2016.9.24.~10.3.
개최 종목	13종목	26종목	14종목
참가 종목	6종목	13종목	8종목
파견결과	종합 3위 (금6, 은7, 동10)	종합 3위 (금9, 은14, 동14)	종합 23위 (금1, 은4, 동11)
파견인원	63명	152명	88명

※ 출처 : 2016대한체육회 결과보고서(2017)

나.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이번 대회는 이쾌규(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선수단장을 비롯하여 카바디, 무에타이, 삼보, 비치발리볼, 세팍타크로, 보디빌딩, 우드볼, 레슬링 등 8종목 대한민국은 총 16개(금1개, 은4개, 동11개)로 23위를 차지하였다.

2. 국제체육교류 지원

국제체육교류협력은 정부 간 체육협력 강화, 스포츠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체육협력 강화는 국가 간 체육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세계도핑방지위원회 이사국 진출 등 체육 다자간 교류로 이루어졌다. 스포츠공적개발원조로는 개발도상국 스

포즈행정이 연수,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초청 합동훈련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1) 국제친선 및 교류사업

가. 국제 청소년 교류

대한체육회의 학교체육부의 국제교류사업은 한일, 한중, 한중일 학교체육교류의 3가지가 있다. 한일, 한중 교류의 경우 선수단의 초청, 파견 형식으로 진행되며, 한중일 교류를 3국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개최국을 맡아 다른 두 나라를 초청하는 형식이다.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하계와 동계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계는 1997년부터, 동계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양국 청소년들에게 국제스포츠 경기 참여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력 향상과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물론 국제친선 도모에 크게 기여한다. 아시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간 이 청소년 스포츠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및 고등학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표 5-37. 한·일, 한·중 청소년 스포츠교류

사업	구분	집행실적	
한일 동계	추진일정	(초청) 2016.2.13.~19.	(파견) 2016.1.11.~17.
	장 소	(초청) 대한민국 서울·강원	(파견) 일본 이와테·나가노
	참 여 자	중학생 (4종목, 578명)	
	참 여 인원	(초청) 한국145명, 일본151명	(파견) 한국140명, 일본143명
한일 하계	추진일정	(초청 및 파견) 2016.8.16.~22.	
	장 소	(초청) 대한민국, 전북(전주)	(파견) 일본, 지바현
	참 여 자	초중학생 (5종목, 854명)	
	추진내용	(초청) 한국218명, 일본211명	(파견) 한국210명, 일본215명
한중	추진일정	(초청) 2016.7.25.~31.	(파견) 2016.11.1.~7.
	장 소	(초청) 제주특별자치도	(파견) 중국 광둥성(자오칭)
	참 여 자	중학생 (3종목, 319명)	
	추진내용	(초청) 한국80명, 중국80명	(파견) 한국79명, 중국80명

※ 출처 : 2016대한체육회 결과보고서(2017)

나.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사업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은 체육교류협정국 및 저개발 국가들과의 교류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도자파견, 용품지원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교류국 간의 우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2016년에는 지도자 파견이 8건으로 종목은 축구(동티모르), 야구(라오스) 등이며, 복싱(브라질), 체조(미얀마, 몽골), 레슬링(캄보디아) 3종목은 용품 지원이 진행되었다.

다. 드림프로그램 사업

2016년 드림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권역 국가 44개국 179명이 참가하였고, '우리는 챔피언, 우리는 친구(You are Champs, We are Friends)'라는 주제로 13일간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참가국 현황은 비장애인 부문에서 39개국 147명(아시아 16개국 68명, 유럽 2개국 8명, 중남미 11개국 44명, 중동·아프리카 15개국 59명)이 참가했고 장애부문에서는 9개국 32명(르완다, 몽골, 베트남, 케냐, 홍콩, 파키스탄,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한국)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코치들에게 설상·빙상 등 동계스포츠 교습을 받고, 서울이나 대회 개최지 문화탐방을 통해 한국을 알 기회도 가졌다. 2004년부터 11회에 걸쳐 진행된 드림프로그램은 동계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국으로서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100개국 이상 참가를 목표로 동계종목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에 동계스포츠의 싹을 틔우고,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5-38. 드림프로그램 참가 현황

참가국	참가 인원	대륙별 참가국
44	179	아시아 :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홍콩, 한국, 유럽 : 세르비아, 중남미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중동아시아/아프리카 :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공, 르완다, 모로코,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이집트,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장애참가국 : 에콰도르, 홍콩, 케냐, 한국, 몽골, 파키스탄, 르완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 출처 : 드림프로그램 홈페이지(2016)

라. 2016 태권도지도자 초청 연수프로그램

국기원의 '2016 태권도지도자 초청 연수프로그램'은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태권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재육성사업으로, 국기원이 2009년부터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 받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교류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저개발국 대상으로 한류 대표 브랜드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한 인지도성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에 국기원은 총 10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말레이시아, 우간다, 튀니지, 알제리, 나이지리아, 온두라스, 콜롬비아) 10명의 연수생을 중심으로 2016년 8월말부터 12월 14일까지 연수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로는 해당 국가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선수부터, 고교 체육교사, 도장 지도자, 대학생 등 다양하다. 이 중 태국의 손캄 차킵은 2014 인천 아시아 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로 이번 연수를 통해 본격적인 선수에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됐다.

연수생들은 매주 3회 품새와 겨루기 및 태권도 시범기술을 수련했으며, 9월 24일 개최한 주한 다문화태권도경연대회에 출전하여 16개 진 종목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표 5-39. 태권도지도자 초청 연수프로그램 현황

연도	국 가
2009	남아공, 몽골, 부탄
2010	불가리아, 수단, 캄보디아, 네팔
2011	모로코, 세네갈, 인도네시아, 인도
2012	폴란드,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콜롬비아, 부탄, 파키스탄
2013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멕시코, 불가리아, 나이지리아
2014	가나, 가봉,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칠레
2015	인도네시아, 라오스, 세네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페루, 스리랑카, 콜롬비아
2016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말레이시아, 우간다, 튀니지, 알제리, 나이지리아, 온두라스, 콜롬비아

※ 출처 : 국기원 홈페이지(2016)

마. 개발도상국 체육 발전 지원

1)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ODA) 교육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Dream Together Master Program)은 2013년 4월에 시작한 사업으로, 목적은 UN의 새천년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스포츠공적개발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동 사업은 개발도상국 체육행정가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 과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개발도상국 체육행정 분야 경력자 또는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참가 경험이 있는 선수 경력자 중 각국 정부 또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들 중에서 매년 개발도상국 학생 20여명을 선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포츠 비즈니스 뿐 아니라 스포츠 법, 스포츠 교육, 스포츠 이벤트 유치 및 운영, 올림픽 마케팅 등 스포츠 경영과 행정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는다. 이에 더해 한국어 교육 등의 어학과정과 체육시설 현장학습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경험도 쌓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 체육지도자 교육과정은 개발도상국의 감독, 코치 등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국제기구 공인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2016년에는 육상, 사이클, 아이스하키, 태권도 4종목에서 운영되었다. 각 교육과정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일정 수준의 과정을 수료할 경우 국제기구가 공인하는 자격증 등을 발급하고 있다. 육상의 경우 21개국 21명을 초청, 사이클은 3차에 걸쳐 43명을, 아이스하키는 2회 기준 12개국 61명, 태권도는 무주 태권도원에서 37개국 60명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1, 2기 학생들 36명이 졸업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국제스포츠기구 등에서 근무하며 스포츠 행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드림투게더 플러스’라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졸업생 초청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교육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고 있다.

표 5-40.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사업실적

연도 구분	'13(17)		'14(27)		'15(3기)		'16(4기)	
	외국인	국내	외국인	국내	외국인	국내	외국인	국내
졸업인원	17명 (16개국)	6명	18명 (18개국)	3명	17명 (16개국)	1명	25명 (23개국)	4명

※ 3기생 '17. 8월 졸업예정, 4기생 교육 중, 5기생 선발 중

※ 출처 : 2016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2) 개발도상국 스포츠 발전 지원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포츠 선진국의 위상에 맞는 공적개발원조차원의 스포츠

ODA 사업 추진이다. 개발도상국 국가대표 지도자 교육을 위한 초청 및 한국·개발도상국 간의 합동훈련을 통한 국제스포츠계 유대관계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한다.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한 스포츠 발전 동기부여하며 개발도상국과 지속적인 체육교류를 통한 우의증진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함이다.

진전선수촌 합동훈련은 16종목의 회원단체들이 13개국 236명의 개발도상국 선수들을 초청하여 진전선수촌, 태릉선수촌 등지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종목별 선수단 경기력 강화 및 스포츠 보급 활성화, 훈련 기술 교류 등을 통한 양국 지도자 및 선수들 간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국제 대회 등에서의 우호 관계 형성한다. 철인3종 남아공 최초 리우올림픽 남자부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코즈멜월드드라이애슬론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 남자엘리트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정구는 제8회아시아 정구선수권대회에서 베트남 여자단체 은메달, 캄보디아 남자단체 은메달 획득하였다. 보

표 5-41. 개발도상국 선수초청 합동훈련 사업 성과

연번	종목	기간 및 장소	초청인원	초청대상
1	배 구	05.05~05.12(8일간) 진전선수촌	20명(선수 14, 임원6)	카자흐스탄(1)
2	요 트	05.09~05.20(12일간) 여수 소호요트경기장	7명(선수 5, 임원2)	태국(2)
3	복 상	05.20~05.30(11일간) 태릉선수촌	13명(선수 12, 임원1)	몽골(3)
4	근 대 5 종	07.04~07.14(11일간) 한체대, 전남 해남	10명(선수 8, 임원2)	키르기스스탄(4)
5	레 슬 링	07.14~07.25(12일간) 태릉선수촌	13명(선수 10, 임원3)	키르기스스탄
6	정 구	08.30~09.12(14일간) 진전선수촌	21명(선수 18, 임원3)	캄보디아(5), 라오스(6) 베트남(7), 태국
7	철 인 3 종	10.11~10.23 (13일간) 진전선수촌, 통영	10명(선수 8, 임원2)	우크라이나(8)
8	소 프 트 볼	10.19~10.28(10일간) 진전선수촌	23명(선수 17, 임원6)	필리핀(9)
9	볼 링	10.27~11.07(12일간) 태릉선수촌	15명(선수 12, 임원3)	태국
10	카 누	11.08~11.14 (7일간) 진전선수촌	7명(선수 6, 임원1)	말레이시아(10)
11	검 도	11.10~11.14 (5일간) 국민대, 충북 음성	10명(선수 9, 임원1)	몽골
12	세팍타크로	11.17~11.25 (9일간) 진전선수촌	24명(선수 15, 임원9)	태국, 베트남, 미얀마(11)
13	카 바 디	11.25~12.03 (9일간) 동아대학교	28명(선수 20, 임원8)	케냐(12), 태국
14	역 도	12.03~12.12(10일간) 한국체육대학교	9명(선수 7, 임원2)	키르기스스탄
15	펜 상	12.07~12.16(10일간) 태릉선수촌, 서울체고	15명(선수 14, 임원1)	필리핀
16	탁 구	12.07~12.20(14일간) 수원국민체육센터 등	11명(선수 10, 임원1)	리비아(13)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다 효과적인 개발도상국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8인도네시아팔렘방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전략적인 초청국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은 4종목 56개국 194명의 종목별 스포츠지도자 양성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 강화한다. 3개 종목 평균 국제 지도자 자격 취득률 85%달성하였고, 40여개 국에서 종목별 국제 지도자로 활약할 예정이다.

표 5-42. 개발도상국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 사업성과

연번	종목	기간		장소	초청인원		초청대상
1	육상	1차	02.19~02.28	대구육상진흥센터	국외 21명		21개국
		2차	10.17~10.30				
2	사이클	1차	04.16~05.25	양양벨로드롬, 영주경륜훈련원,	1차	18명	6개국
		2차	07.14~08.23		2차	15명	5개국
		3차	09.07~10.16		3차	10명	5개국
		영재	10.21~10.26		4차	9명	3개국
3	아이스하키	1차	08.08~08.15	전주화산빙상장	국외	33명	12개국
		2차	08.15~08.22		국내	88명	
					국외	28명	
4	태권도	10.1~10.31		무주 태권도원	60명		36개국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5-43. 개발도상국 스포츠 발전 지원 연도별 사업 현황

	사업명	예산(백만원)	참가국(개)	인원(명)	사업수
2014	합동훈련	436	12	171	12
	지도자 교육과정	1,410	52	134	4
	합계	1,846	64	305	16
2015	합동훈련	506	13	185	13
	지도자 교육과정	1,498	44	190	4
	합계	2,004	57	375	17
2016	합동훈련	623	13	236	16
	지도자 교육과정	1,534	56	194	4
	합계	2,157	69	421	20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 국제체육기구 교류사업

가. 국제체육기구 인재파견

국제체육기구 인재파견은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체육 동향을 파악하고 선진체육행정 경험의 기회를 줄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사업에 힘입어 2016년도에 시행한 국제체육기구 파견사업은 2건이었다.

표 5-44. 국제체육기구 파견사업 현황

연 번	기구명	기간	장 소	파견자
1	세계컬링연맹	2016.02-2017.01	영국, 퍼스	이목은
2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2016.11-2017.11	스위스, 로잔	박은별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나. 국제체육교류 지원 및 국제회의 파견사업

국제체육의 흐름을 파악하며 국제체육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양한 국가 및 국제경기단체와 체육교류와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에는 총 26회에 걸쳐 연맹총회 및 파견사업을 시행하였다.

표 5-45. 국제체육교류 지원 및 국제회의 파견사업 현황

연 번	사업명	파견기간	장 소
1	IOC 올림픽마케팅 세미나	1.19.~24.	스위스, 로잔
2	제33차 EAGA 총회 및 분과위원회	1.26.~28.	대만, 타이중
3	통합체육회 관련 IOC 방문	3.3.~6.	스위스, 로잔
4	스포츠어코드컨벤션	4.17.~22.	스위스, 로잔
5	AUSF 집행위원회	5.5.~9.	타지키스탄, 두산베
6	OCA 지역별 포럼	5.16.~17.	태국, 방콕
7	제14차 IOA 임원연수회	5.7.~15.	그리스, 아테네
8	제56차 IOA 정기연수회	6.11.~26.	그리스, 아테네
9	FISU 포럼	7.2.~10.	프랑스, 몽펠리에
10	EAGA 상임위원회	7.11.~13.	중국, 베이징
11	IOC 선수위원 후보자 파견	7.22.~8.23.	브라질, 리우
12	제35차 OCA 총회	9.23.~27.	베트남, 다낭
13	제21회 ANOC 총회	11.13.~17.	카타르, 도하
14	IOC 팀주치의연수	11.15.~21.	남아공, 케이프타운
15	AUSF 총회	11.19.~21.	중국, 하문
16	Peace and Sport 국제포럼	11.22.~27.	모나코
17	중국올림픽위원회(COC) 유스캠프	11.27.~12.3.	중국, 광저우
18	제1차 동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조정위원회	12.17.~19.	타이완, 타이중
	기타(국내개최 국제행사 참가 등)		평창, 인천, 진천 등
19	프랑스 체육부장관 오찬 행사	2.19	강원도, 횡성
20	IOC 제6차 조정위원회	3.14~16	강릉
21	IOC, OCA 대표단 방문	4.26.~28.	서울, 인천
22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막식 참석	9.2.	청주
23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관계자 회의	9.5.	부산
24	IOC 집행위원(Sermiang NG) 방한	11.4.~6.	서울, 인천
25	IOC 제7차 조정위원회	10.5.~7.	평창
26	평창동계올림픽테스트이벤트(빙상) 참관	12.16.~18.	강릉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6

2016 SPORT WHITE PAPER

장애인체육

제1절 장애인 생활체육

제2절 장애인 전문체육

제3절 국내·외 장애인체육대회

제4절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현황

제1절 장애인 생활체육

1. 장애인 생활체육 현황

장애인에게 있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들을 생활체육 현장으로 참여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각적으로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도자 확대배치 및 프로그램(교실, 동호회, 캠프 등)지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홍보 및 상담 강화를 통한 체육활동 신규참여자 발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어울림(통합)체육활동 프로그램 등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원하였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1.9% 증가한 17.7%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표 6-1>과 같다.

표 6-1.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생활체육 참여율	6.3	7.0	8.3	9.6	10.6	12.3	14.1	15.8	17.7
전년대비 증가	-	0.7	1.3	1.3	1.0	1.7	1.8	1.7	1.9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시·도 및 종목별 장애인 생활체육클럽 팀 현황은 <표 6-2>에서와 같이 총 2,010개로 나타났다. 시·도별 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287개 팀으로 가장 많은 팀이 등록되어 있고, 다음으로 인천 254개 팀, 경기 228개 팀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볼링 243개 팀, 탁구 221개 팀, 배드민턴 162개 팀, 게이트볼 130개 팀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361개 클럽이 늘어났으며 9.7% 증가하였다.

시 종	도 목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대전	충북	세종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광주	전북	제주	합계
조	경	2	2	1	1	-	1	1	1	1	-	1	1	1	1	-	-	-	14
족	구	-	-	1	1	-	-	-	-	-	-	-	2	-	-	-	-	-	4
짐	볼	1	-	-	-	-	-	-	-	-	-	-	-	-	-	-	-	-	1
체	조	-	-	2	-	-	-	-	-	-	-	-	-	-	5	-	-	-	7
축	구	11	9	6	6	2	4	3	2	3	8	2	7	12	6	1	1	1	84
컬	링	4	1	3	-	-	1	-	-	1	-	-	-	-	-	-	-	-	10
탁	구	18	23	35	11	10	15	10	6	14	11	6	10	31	8	5	5	3	221
태	권	2	2	6	-	-	7	4	1	-	-	-	1	-	4	-	-	-	27
택	견	-	1	-	-	-	1	-	-	-	-	-	-	-	-	-	-	-	2
테	니스	1	2	1	-	1	1	-	-	-	-	-	1	1	1	1	2	-	12
템	사이클	-	3	1	2	-	-	-	-	-	-	-	1	1	-	-	-	-	8
특	수체육	28	1	6	3	-	23	2	-	1	7	-	12	-	-	-	-	-	83
파크	골프	14	15	1	4	4	1	9	1	4	2	8	5	3	1	4	2	1	79
펜	싱	-	-	-	-	-	-	1	-	1	-	-	-	-	-	-	-	-	2
팟	살	-	3	-	2	-	1	2	-	-	3	-	1	-	1	-	1	-	14
플	라인디스크	1	-	-	-	-	1	-	2	-	-	-	-	-	-	-	-	1	5
플	로어볼	2	-	1	-	-	-	-	-	-	1	-	-	-	-	-	-	1	5
합	기도(호신술)	-	1	-	-	-	-	-	-	1	-	-	-	-	-	-	-	-	2
핸	드사이클	1	-	1	-	-	1	-	1	-	-	-	1	1	-	-	-	-	6
헬	스	2	-	7	1	1	-	3	2	-	-	-	2	-	1	-	-	-	19
휠	체어농구	7	4	1	-	-	-	-	-	-	-	-	-	-	-	-	-	-	12
휠	체어력비	1	-	1	-	-	-	-	-	-	-	-	-	-	-	1	-	-	3
휠	체어육상	-	-	-	-	-	-	-	-	-	-	-	-	1	-	-	-	-	1
휠	체어테니스	1	2	-	-	-	-	1	-	-	-	1	-	-	-	-	-	-	5
T	-ball	1	1	1	-	-	-	-	1	-	-	-	-	-	-	-	-	-	4
합	계	287	228	254	108	60	129	150	32	77	105	49	94	184	123	41	57	28	2,010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사업을 지방·소외지역 생활체육 확산, 비활성화 종목육성 등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 17개 생활체육교실 운영단체와 41개 시·도 생활체육클럽, 7개 여성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대상으로 지도자 수당 및 운동용품, 편의시설 설치 및 임차료 지원을 하였다. 또한, 계절스포츠교실 운영과 특수학교 체육활동 및 체육용품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비롯한 전국 4개

지역 10개 대학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사업을 폭넓게 진행하였다.

2008년에는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과 생활체육 기초 조사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시·도지부 설치로 광역권의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을 구축하고 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생활체육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체계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정비하였다.

2010년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12년은 인구 30만에서 50만 사이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을 확대하였다. 조사결과(적정 설치율 2010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시설 54.6%, 2012년 인구 30만에서 50만 사이 기초자치단체 시설 48.9%)에 따라 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 시설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5년부터는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개관(2015년 5월 7일)하였다. 광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장애유형 및 체력수준을 고려한 운동처방 및 스포츠 연계를 통해 체력이 약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체육참여 환경을 마련하였다.

2016년은 국민체력100 장애인분야 도입 연구(국민체력100 장애인분야 도입 연구 및 체력증진 운동지침서, 영상제작 등)와 해외우수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현장 견학사업(장애인 생활체육 선진 프로그램 정보 및 최신 동향수집 등)을 추진하였다. 제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개관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엘리트체육 및 동호인 활동지원 등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구축하였다. 또한, 해외우수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현장 견학사업을 추진하여 미국의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 및 최신동향수집 등을 하였다. 구체적인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 현황(2008~2016)은 <표 6-3>과 같다.

표 6-3.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 현황

2008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 통합체육수업 매뉴얼 개발 ·직장장애인 체육활동 효과분석 연구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구성 ·기개발종목 보급(파크골프, 등산 등) ·장애인체육활동 사진공모전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	·실외형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가능환경 실태 및 리모델링 방안 연구 ·장애인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연구 ·장애인생활체육 사업 평가 연구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콜서비스 운영 ·생활체육 잠재군 발굴 및 생활체육정보센터 관리 ·전일제 장애인체육지도자 관리 및 운영
2010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지원 ·프로그램 7종 개발(인라인하키, 트레이오리엔테어링, 휠체어핸드볼, 탁견, 핀수영, 좌구, 스포츠타킹)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	·2010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응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화 실태조사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콜서비스 운영 ·서비스 진단인력 인건비 지원(분회 3명, 시·도 16명) ·서비스 전용차량 5대 시도 지원 ·장애인스포츠용품 구매
2012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생활체육 동영상 자료집(리드업프로그램) 개발 제작 보급 ·전체 시·도 장애인체육회 등 보급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연구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 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 ·청각장애인 건강체력 인증사업을 위한 기반조사 및 측정기준 개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종목 강습회	·전체 시·도, 총 32회 운영
2013	건강체력인증제 마스터플랜 수립	·유형별 장애인 건강 체력 인증 가능한 기준준거자료 마련
	생활체육 프로그램 동영상 개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생활체육 프로그램개발: 티볼, 휠체어사이클
	해외우수 장애인생활체육운영현장 견학	·장애인 생활체육 선진 프로그램 정보 및 최신 동향 수집 등 ·기간 및 장소: 2013. 9. 10-15 / 호주 시드니
2014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종목 강습회	·개발프로그램 강습회 ·전체 시·도 강습회 51회 지원
	장애인 체력관리 및 운동상담 사업 운영방안 연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모델 마련 ·사업기간: 2013. 5.~12.
	생활체육 프로그램 동영상 개발	·생활체육종목 안내 ·전동휠체어측구, 체력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동영상 제작
	해외우수장애인생활체육운영현장 견학	·장애인 생활체육 선진 프로그램 정보 및 최신 동향 수집 등 ·장소: 영국 런던(9명), 일본(2명)

2015	정당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정당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 사업기간 : 2015. 5~12.
	해외우수 장애인생활 체육운영현장 견학	·장애인 생활체육 선진 프로그램 정보 및 최신동향수집 등 - 기간 및 장소 : 2015. 9. 8~9. 15 / 캐나다
2016	광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관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엘리트체육 및 동호인 활동지원 등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국민체력100 장애인분야 도입 연구	·국민체력100 장애인분야 도입 연구 및 체력증진 운동지침서, 영상제작 - 사업기간 : 2015. 12.~2016. 9.
	제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관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엘리트체육 및 동호인 활동지원 등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해외우수 장애인생활체육운영현장 견학	·장애인 생활체육 선진 프로그램 정보 및 최신동향수집 등 - 기간 및 장소 : 2016. 7. 6~7. 13 / 미국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3.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1)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설립 초기부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3가지이다. 각종 생활체육교실 및 기타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지원이다. 교실 지원사업은 생활체육 초보자를 위해 기본적인 종목안내 및 기본기를 가르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호회 활동지원은 일정의 소양과정을 통해 생활체육에 접한 장애인들을 생활체육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생활체육클럽에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생활체육대회지원은 해당종목 기술을 연마한 장애인들의 수준별 흥미를 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체육교실사업은 설립초기 청소년 교실, 전통종목 교실, 여성교실 등 교실사업을 세분화하여 지원하였지만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각 지역 실정에 맞추어 교실의 종류를 선택하도록 점차 변화하였다. 구체적인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기타 프로그램 지원실적은 <표 6-4>와 같으며, 2016년에는 생활체육교실 392개소, 스포츠센터교실 6개소를 지원하였다.

표 6-4.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기타 프로그램 지원 실적

(단위: 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하계캠프	8								
전통종목육성		75	31	32	28				
스포츠센터교실						3	6	7	6
생활체육교실	123	182	265	264	325	332	327	348	392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장애인 생활체육클럽활동을 통한 클럽 및 동호인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확립을 위해 2008년 생활체육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전국의 동호인클럽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매년 지역장애인체육회가 우수 동호인과 동호인클럽을 선정하여 용·기구 지원, 지도자 지원, 클럽매니저 지원을 하고 있다. 2016년에는 동호인클럽 246개를 지원하였으며, 구체적인 연도별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실적은 <표 6-5>와 같다.

표 6-5. 연도별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실적

(단위: 개,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동호인클럽	83	85	126	135	138	147	178	230	246
클럽매니저교육	-	-	-	7	16	16	16	-	-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유형별 생활체육대회는 장애유형에 따른 신규 생활체육참여자 발굴 등을 위해 전년도와 다른 개최 시·도에서 개최한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주관단체인 대한체육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어울림’ 대회로서 통합 사회 기여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2016년에는 각종 생활체육 축제 및 대회지원을 하였으며, 2016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현황<표 6-6>에 따르면 총 134개소에 44,254명이 참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종목통합 대회(125개소/31,888명) 개최현황은 <표 6-7>과 같다. 장애유형별 통합대회(2개소/1,151명) 개최 현황은 <표 6-8>과 같으며, 장애유형별 축제대회(3개소/10,045명) 개최현황은 <표 6-9>와 같다. 20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어울림사이클대회 개최 현황은 <표 6-10>과 같으며, 전국어울림축제대회(2개소/300명) 개최 현황은 <표 6-11>과 같다. 마

지막으로 2016 전국장애인체육가족 한마음대회(1개소/320명) 개최 현황은 <표 6-12>와 같다.

표 6-6. 2016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현황

연도	대회명	개소 / 참가인원
2008	종목 통합대회	125개소 / 31,888명
	장애유형별 통합대회	2개소 / 1,151명
	장애유형별 축제대회	3개소 / 10,045명
	20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어울림사이클대회	1개소 / 550명
	전국어울림축제대회	2개소 / 300명
	2016 전국장애인체육가족 한마음대회	1개소 / 320명
	계	134개소 / 44,254명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6-7. 종목 통합대회 개최 현황

순	종목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1	컬링	2016 경기도지사배 전국휠체어컬링대회	03.25~28	동두천국제컬링경기장	101명
2		2016 글로벌 금융배 전국휠체어컬링대회	04.28~05.02	동두천국제컬링경기장	99명
3		2016 네네치킨배 전국휠체어컬링대회	06.01~05	인천선학국제컬링장	80명
4		2016 덕광배 전국휠체어컬링대회	06.24~27	인천선학국제컬링장	74명
5	사이클	2016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	04.22~24	여주이포보	94명
6		2016 전국장애인도로선수권대회	10.08	여주이포보	92명
7	축구	2016 전라남도지사배 지적장애인축구대회	12.06~07	전남목포	90명
8		제13회 전국뇌성마비장애인축구대회	08.27	파주NFC	287명
9		LIG 2016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06.03~06	보은군공설운동장, 자영고	433명
10		2016 전국시각장애인축구대회	09.03~04	울산 동천다목적구장	287명
11		제35회 전국농아인축구대회	09.23~25	정선종합경기장	361명
12		2016 전국전동휠체어축구대회	11.07~08	강서실내체육관	150명
13	조정	제12회 대구대학교총장배 전국장애인조정대회	04.29~30	문천지조정경기장	246명
14		2016 영산강 전국장애인조정대회	07.15~16	영산강조정경기장	153명
15		2016 충주탄금호 아시아장애인조정대회	08.26~27	충주탄금호제조정경기장	195명
16		2016 서울특별시장배 전국장애인조정대회	09.30~10.01	미사리조정경기장	184명
17	사격	2016 전국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	04.08~12	청주사격장	140명
18		2016 종별 선수권대회	04.14~18	청주사격장	140명
19		2016 전국장애인사격 공기총대회	12.08~10	청주사격장	80명

362 Section 06 장애인체육

순	종목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20	보치아	제7회 전라남도 땅끝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04.1~03	해남 동백체육관	198명
21		제2회 전라북도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06.07~10	전주 화산체육관	320명
22		제3회 하이트진로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07.04~07	광주여대 체육관	331명
23		제10회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10.07~10	제주사라봉체육관	277명
24		제2회 충청남도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11.11~13	천안시장장애인체육관	157명
25	럭비	2016 충남컵 휠체어럭비대회	05.07~08	천안시장장애인체육관	161명
26		2016 부산컵 휠체어럭비대회	06.25~26	사직실내체육관	158명
27		2016 서울컵 휠체어럭비대회	08.06~07	정립회관	139명
28		제7회 구미컵 전국휠체어럭비대회	08.19~21	구미시장장애인체육관	204명
29		제8회 전국휠체어럭비선수권대회	11.18~20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	221명
30		2016 전국휠체어럭비 어울림대회	12.16~18	김천국민체육센터	250명
31	당구	2016 충청북도지사배 전국장애인당구대회	09.30~10.01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224명
32		2016 전국장애인당구 개인통합대전	11.10~11	부산기장체육관	240명
33		2016 대한장애인당구협회장배 전국장애인당구대회	12.21~22	대전한밭체육관	350명
34		전남도지사배 전국장애인당구대회	07.08~09	빅박스당구클럽	130명
35		경주시장배 전국장애인당구대회	09.04~05	경주시장애인체육관	240명
36		용인시장배 전국장애인당구대회	11.02~03	용인시 골든프라자 4층	200명
37	댄스스포츠	제6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장애인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05.29	대구보훈병원재활체육관	200명
38		제3회 코리아서울씨티컵 장애인댄스스포츠 챔피언십 2016	07.03	동대문구체육관	220명
39		여수거북선배 전국장애인댄스스포츠대회 및 전국 프로, 아마추어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07.24	여수진남실내체육관	275명
40		2016년 광양시 전국 장애인 댄스스포츠대회 및 선샤인배 전국 프로, 아마 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08.21	광양시국민체육센터	750명
41		제9회 신나리한가족 전국장애인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09.04	구미시장장애인체육관	275명
42	골볼	2016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전국장애인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10.09	서라벌대학교원석체육관	160명
43		제9회 전국시각장애인골볼선수권대회	06.04~06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120명
44		2016년 전국시각장애인골볼통합대회	09.24~25	고덕사회체육센터	106명
45	테니스	제4회 서울오픈 통합 전국휠체어테니스대회	05.18~20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170명
46		2016 전국어울림테니스대회	10.05~07	대구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160명
47	태권도	제4회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06.18	송곡고 다목적체육관	200명
48		제6회 전국한마음태권도대회	10.08	경기도인재개발원	200명
49	탁구	제8회 부천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04.22~23	경기도부천체육관	482명
50		제12회 서산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05.13~15	서산농어민문화체육센터	437명
51		제3회 경상북도지사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05.27~28	문경실내체육관	390명
52		제5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06.10~11	인천선학체육관	470명

순	종목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57	탁구	제6회 광주광역시장애 장애인탁구대회	11.05~06	호남대학교 체육관	390명
58		2016 전국장애인탁구 종합선수권대회	11.18~20	기장체육관	492명
59		2017 장애인탁구 국가대표 선발전	12.21~22	문경 온누리스포츠센터	220명
60	배드민턴	2016 춘계 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05.27~29	동천체육관	278명
61		제17회 요넥스배 및 제1회 화성시장배 전국장애인배드민턴대회	06.10~12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350명
62		제7회 직지배 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08.26~28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336명
63		제3회 돌하르방배 추계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10.14~16	한라체육관	216명
64		2016 영남지역 장애인배드민턴동호인대회	07.24	울산제2장애인체육관	124명
65		2016 서울특별시장애 장애인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09.04	불암산배드민턴전용구장	215명
66		제5회 경남장애인배드민턴협회장애 장애인배드민턴동호인대회	09.25	창원장애인복지관체육관	117명
67		2017 국가대표 선발전	12.09	충주호암제2체육관	95명
68		2016 전국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	03.19~20	인천문학박태환수영장	279명
69		2016 대전광역시장애 전국장애인수영대회	04.23~24	대전용운국제수영장	372명
70	수영	제14회 수원시장배 전국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	06.19	수원새천년수영장	299명
71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	07.08~10	제주한라수영장	400명
72		제3회 울산광역시 전국장애인수영대회	08.13~14	울산문수실내수영장	420명
73		2016 부산광역시장애 전국장애인수영대회	12.03	부산사직실내수영장	300명
74	양궁	제12회 천안전국장애인양궁대회겸 2017장애인양궁세계선수권대회국가대표2차선발전	05.27~29	천안시생활체육공원 축구장	131명
75		2016함평전국장애인양궁대회겸 2017장애인양궁세계선수권대회국가대표3차선발전	07.01~03	함평공설운동장	131명
76		2016울산전국장애인양궁대회겸 2017장애인양궁세계선수권대회국가대표4차선발전	09.30~10.02	울산문수양궁장	142명
77	펜싱	제13회 춘계 전국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	06.03~05	충북곰두리체육관	89명
78		제5회 추계 전국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	11.18~20	제주일성비치콘도 한라홀	70명
79	유도	2016 전국하계체급별선수권대회	07.02~03	서산중앙고체육관	160명
80		2016 전국추계체급별선수권대회	11.19~20	전남목포고등학교	160명
81	역도	제4회 경기도지사기 전국장애인역도대회	06.03~05	평택이충체육관	248명
82		제16회 전국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	07.14~18	홍천종합체육관	225명
83		2016 전국장애인역도대회	11.18~20	구미혜당학교체육관	230명
84		제3회 평택시장기 장애인통합역도대회	11.26~27	이충문화체육센터	80명
85		제7회 전남도지사배 장애인통합역도대회	10.09~11	광양국민체육센터	220명
86	육상	제11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06.15~17	구미시민운동장	700명
87		제10회 전국아울림마라톤대회	11.05	의정부시복지관 주변일대	1,200명
88		2016 충청남도 장애학생체육대회	09.23	계룡시종합운동장	780명

364 Section 06 장애인체육

순	종목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89	승마	제4회 전라남도 영산강배 전국장애인승마대회	6.11~12	목포 옥암동 일원	135명
90		제2회 기전대학총장배 전국장애인 승마선수권대회	11.05~06	전북말산업복합센터	142명
91	골프	2016년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전국장애인파크골프대회	06.18~19	태화강파크골프장	385명
92		2016년 영호남 장애인파크골프대회	07.23	삼락생태공원	210명
93		2016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 최강전	11.26~27	양평 강상체육공원	285명
94		제1회 KDPGA 추계 장애인 골프대회	12.09	충주 세일컨트리클럽	120명
95		2016 전국장애인파크골프대회	12.22	삼락생태공원	260명
96	아이스하키	제6회 KHP 강남베드로배 장애인아이스하키대회	06.11~12	의정부실내빙상장	95명
97		제11회 이성근배 전국장애인아이스하키대회	09.04, 09.09~11	전주화산빙상장, 인천선학빙상장	130명
98		2016 전국장애인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10.28~30	춘천의암빙상장	130명
99	볼링	2016 전국장애인볼링종목별선수권대회	06.16~18	대구	453명
100		2016 전국장애인볼링최강전	11.30~12.03	경기도 수원시	413명
101		2016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	09.22~24	전북	320명
102	배구	제17회 땅끝공룡기 전국좌식배구대회	05.14~15	해남우슬동백체육관	212명
103		제22회 대구광역시장기 전국좌식배구대회	06.18~19	대구시민체육관	250명
104		제21회 광주무등기 전국좌식배구대	08.27~28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214명
105		제13회 천안시장기 전국장애인배구대회	09.23~25	천안시장장애인종합체육관	244명
106		2016 전국 지적,청각 장애인배구대회 겸 좌식배구 왕중왕전	09.30~10.02	대구세명학교	220명
107	론볼	제16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론볼대회	06.14~16	인천대공원	248명
108		제9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론볼대회	06.29~07.01	충주장애인론볼경기장	219명
109		제14회 FG기념 부산광역시장배 전국론볼대회	09.06~08	사직론볼경기장	170명
110		2016년 전라남도지사배 전국론볼대회	09.27~30	나주구장	170명
111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론볼대회	08.23~25	한림론볼경기장	144명
112		2016 대전광역시장배 전국론볼대회	08.31~09.02	대전론볼경기장	250명
113		제7회 서울특별시장배 전국론볼대회	09.19~21	잠실론볼경기장	250명
114		제11회 익산시장배 전국론볼대회	11.03~04	익산론볼경기장	250명
115	농구	고양시장컵 제22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04.17~20	홀트장애인종합복지관	440명
116		제15회 우정사업본부장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06.03~07	서울시학생체육관	511명
117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06.17~20	제주하라체육관	450명
118		2016 온양온천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07.08~10	이순신빙상장실내체육관	200명
119		제19회 대구컵 국제초청휠체어농구대회	07.22~25	대구시민체육관	220명
120		2016 서울시장기 휠체어농구대회	08.14~15	서부재활체육센터	190명
121	스키	2016 전국장애인알파인스키선수권대회	12.19~20	알펜시아리조트	75명
122		제1회 대한장애인스키협회장배 전국장애인알파인스키대회	12.20~21	알펜시아리조트	75명

순	종목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123	요트	제10회 전국장애인요트대회	11.17~21	부산시 영만요트경기장	58명
124	바둑	2016년 전국장애인바둑종목통합대회	11.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50명
125	걷기	제1회 세종시 장애인어울림거북이대회	11.05	조치원 체육공원	600명
합계					31,888명

※ 주 : 2016년 12월말 기준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6-8. 장애유형별 통합대회 개최 현황

순	종목	구분	대회명	일자	장소	인원
1	종합	유형별	제13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11.10~12	제주도 일원	831명
2	종합	유형별	2016 전국시각장애인 통합대회	12.13~15	대전광역시 일원	320명
합계						1,151명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6-9. 장애유형별 축제대회 개최 현황

순	종목	구분	대회명	일자	장소	인원
1	종합	유형별	2016 전국척수장애인축제대회	05.27~28	천안 유관순체육관	8,391명
2	종합	유형별	2016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10.07	대구스타디움	839명
3	종합	유형별	2016 전국시각장애인생활체육대회	10.07	선학하키경기장	815명
합계						10,045명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6-10. 20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어울림사이클대회 개최 현황

순	종목	구분	대회명	일자	장소	인원
1	사이클	장관배	20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어울림사이클대회	11.04~05	광주광역시 일원	550명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6-11. 전국어울림축제대회 개최 현황

순	종목	구분	대회명	일자	장소	인원
1	수상	축제	2016 전국장애인가족 수상스포츠 페스티벌	08.06~07	춘천 송암레포츠타운	100명
2	종합	어울림	술불구이축제와 함께하는 장애인 전국어울림 축제	10.06~07	전남 광양 일원	200명
합계						300명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6-12. 2016 전국장애인체육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현황

순	종목	구분	대회명	일자	장소	인원
1	종합	어울림	2016 전국장애인체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11.17~18	울산광역시시 일원	320명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용

장애인체육지도자는 1993년부터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2000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개칭)에서 양성하기 시작하여 2005년까지 총 569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이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한 장애인스포츠아카데미 등 단기교육과정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였으며, 2015년부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도가 처음으로 국가자격제도로써 시행되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하기 위해, 총 20명의 전일제 생활스포츠지도사(시·도 11명, 경기단체 4명, 총 15명) 및 보조 생활스포츠지도사(시·도 5명) 배치를 시작하였다. 2016년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전국에 335명이 배치되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현황은 <표 6-13>과 같다.

표 6-1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현황

(단위: 명)

연번	구분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시·도 지원	총계	연번	구분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시·도 지원	총계
1	서울	23	30	53	10	강원	6	12	18
2	부산	8	8	16	11	충북	6	6	12
3	인천	6	6	12	12	충남	13	22	35
4	대구	7	9	16	13	전북	9	9	18
5	광주	6	6	12	14	전남	10	11	21
6	대전	6	9	15	15	경북	6	7	13
7	울산	5	8	13	16	경남	7	7	14
8	세종	1	3	4	17	제주	4	5	9
9	경기	23	31	54	합계		146	189	335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제2절 장애인 전문체육

1. 장애인 전문체육 현황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꿈나무-신인-후보-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전문체육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리우 하계패럴림픽대회 10위 이내 진입을 위한 경기력 향상에 집중지원을 하였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대비 전략적으로 동계종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창단 및 육성지원 등을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2016년에는 국가대표 상시훈련(평균 114일/27개 종목, 477명) 및 리우 하계패럴림픽대회 특별훈련(40일) 및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리우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 종합 20위(금7개, 은11개, 동17개)를 달성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대비 동계종목 실업팀 창단을 지원(2개 팀: 노르딕스키, 휠체어컬링)하였으며, 동계종목 훈련여건(지도자 월급제 수당, 국제대회 참가 시 수당지급 등)을 개선하고 인적인프라 강화를 위해 해외우수지도자 및 팀매니저 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천훈련원 건립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사업을 완료하였다. 구체적으로 사격훈련장 및 컬링훈련장 완공, 상수도 대체 조경용 지하수 개발을 통한 예산절감 및 뇌성마비축구장 운영개선을 하였다.

1) 국내대회지원 현황

국내대회 지원으로는 최근 장애인과 비장애인선수들이 함께 참가하는 통합대회까지 지원영역이 확대되었다. 2016년에는 31개 종목, 125개의 대회를 지원하였으며, 구체적인 연도별 국내대회 지원현황은 <표 6-14>와 같다.

표 6-14. 연도별 국내대회 지원현황

(단위: 개)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원종목	12	26	22	24	26	25	30	30	32	29	31
국내대회 개최수	12	67	89	95	60	64	76	82	94	74	125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 전문인력 양성 현황

장애인 전문체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선수 발굴·육성과 함께 종목별 심판 및 등급분류사 양성이 필요하다. 2006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16년까지 총 23,572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였다. 구체적인 연도별 전문인력(등급분류사, 심판) 양성현황은 <표 6-15>와 같으며, 2016년 전문인력(등급분류사, 심판)양성 사업 세부현황은 <표 6-16>과 같다.

표 6-15. 연도별 전문인력(등급분류사, 심판) 양성현황

(단위: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등급분류사	5	37	54	42	55	137	57	103	135	99	37	761
심 판	327	1,095	1,480	2,268	2,345	4,058	3,310	3,036	2,456	1,801	635	22,811
합 계	332	1,132	1,534	2,310	2,400	4,195	3,367	3,139	2,591	1,900	672	23,572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3) 우수선수 발굴·육성 경기력 향상

가. 선수등록 현황

장애인선수란 매년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등록선수는 시·군·구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시·도 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을 확인받아 해당 중앙경기단체에 최종 승인받는 절차로 등록된다. 구체적으로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등록선수 수가 14,786명에서 15,215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연도별 시도 등록선수 현황은 <표 6-17>과 같으며, 연도별 중

표 6-16. 2016년 전문인력(등급분류사, 심판) 양성 사업 세부현황

연번	단체	분류	사업명	기간	참가인원
1	농 구	등급분류사	2016 기능등급분류강습회	08.7/08.14~15	17명
2		심판	2016 역량강화 심판 강습회	10.01~02	25명
3	당 구	심판	제9기 2, 3급 심판강습회	7월 중	35명
4		심판	제10기 2, 3급 심판강습회	10월 중	35명
5	력 비	등급분류사	2016 휠체어력비 등급분류 승급(2,3급) 강습회	08.27~28	20명
6		심판	2016 휠체어력비 승급(1,2급) 강습회	10.15~16	20명
7	배 구	심판	제25회 좌식배구전문심판강습회	09.17~18	20명
8		심판	제26회 좌식배구전문심판강습회	10.08~09	20명
9		심판	제1회 심판보수교육	12.17~18	20명
10	배드민턴	심판	장애인배드민턴 2급 강습회	07.22~23	40명
11	보치아	심판	보치아 상급심판강습회	09.03~04	15명
12		심판	보치아 상급심판강습회	10.15~16	15명
13	볼링	심판	제23기 심판강습회	09.02~03	30명
14		심판	제24기 1급 심판강습회	11.17~18	30명
15	스키	심판	장애인알파인스키 심판강습회	07.01~02	30명
16	유도	심판	2016 공인1급 및 2급 심판강습회	11.12~13	35명
17	육상	심판	고급과정(주임심판 이상) 심판강습회	11.25~26	50명
18	조정	심판	장애인조정심판강습회(2급)	10.07~08	30명
19	컬링	심판	2016 전문인력양성사업(국내심판)	07.28, 07.29	45명
20	탁구	심판	제22기 장애인탁구 심판강습회	11.10~11	40명
21		심판	제23기 장애인탁구 심판강습회	11.24~25	40명
22		심판	제24기 장애인탁구 심판강습회	11.28~29	40명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목별 등록선수 현황은 <표 6-18>과 같다.

나. 우수선수 발굴·육성

① 꿈나무·신인선수 육성

꿈나무·신인선수 육성은 국제수준의 경기력을 갖춘 국가대표의 세대교체 목적과 2016 리우 하계패럴림픽대회·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30세 이하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에는 국가대표 176명, 꿈나무/신인선수 13명을 선발하였으며, 구체적인 장애인 꿈나무, 신인선수 국가대표 선발 현황은 <표 6-19>와 같다.

표 6-17. 연도별 시도 등록선수 현황

(단위: 명)

연번	구분	2014			2015			2016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15,337	11,639	3,698	14,786	11,146	3,640	15,215	11,486	3,729
1	서울	1,821	1,383	438	1,614	1,220	394	1,671	1,248	423
2	부산	803	634	169	736	581	155	845	659	186
3	대구	858	619	239	752	552	200	880	637	243
4	인천	796	617	179	703	554	149	747	589	158
5	광주	693	508	185	673	497	176	663	481	182
6	대전	910	687	223	845	623	222	789	595	194
7	울산	529	389	140	564	417	147	530	403	127
8	경기	2,543	1,906	637	2,413	1,792	621	2,024	1,536	488
9	강원	721	590	131	779	605	174	737	579	158
10	충북	961	727	234	857	660	197	887	672	215
11	충남	896	670	226	975	728	247	1,045	780	265
12	전북	679	529	150	739	563	176	742	562	180
13	전남	744	596	148	772	604	168	834	661	173
14	경북	908	668	240	841	621	220	858	635	223
15	경남	1,060	819	241	991	754	237	1,022	766	256
16	제주	415	297	118	532	375	157	520	372	148
17	세종	-	-	-	-	-	-	421	311	110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6-18. 연도별 종목별 등록선수 현황

(단위: 명)

연번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계	11,180	3,421	14,601	11,639	3,698	15,337	11,061	3,611	14,672	11,486	3,729	15,215
1	양궁	71	18	89	68	19	87	67	20	87	69	19	88
2	육상	836	363	1,199	937	411	1,348	657	315	972	803	338	1,141
3	배드민턴	379	157	536	427	162	589	400	151	551	386	165	551
4	보치아	385	134	519	441	152	593	441	148	589	477	173	650
5	사이클	125	31	156	128	28	156	139	37	176	167	59	226
6	휠체어펜싱	56	11	67	53	11	64	56	10	66	49	12	61
7	골볼	124	52	176	107	42	149	128	49	177	121	47	168
8	유도	87	17	104	90	13	103	104	17	121	101	20	121
9	론볼	896	353	1,249	937	374	1,311	935	391	1,326	889	346	1,235
10	역도	513	226	739	538	233	771	424	206	630	415	202	617

연번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1	사격	203	48	251	196	45	241	182	43	225	165	35	200
12	축구	1,255	25	1,280	1,318	33	1,351	1,261	37	1,298	1,087	18	1,105
13	수영	548	188	736	517	171	688	458	163	621	464	163	627
14	탁구	982	326	1,308	1,024	369	1,393	999	378	1,377	1,077	405	1,482
15	배구	283	76	359	258	86	344	282	102	384	292	97	389
16	농구	512	31	543	482	29	511	473	36	509	627	51	678
17	휠체어테니스	131	21	152	125	24	149	124	20	144	123	22	145
18	볼링	570	243	813	571	257	828	591	253	844	609	280	889
19	휠체어럭비	157	16	173	152	16	168	131	10	141	130	12	142
20	파크골프	555	215	770	640	274	914	535	247	782	441	198	639
21	조정	244	140	384	203	120	323	215	135	350	275	143	418
22	댄스스포츠	78	60	138	82	75	157	68	45	113	104	102	206
23	요트	43	6	49	51	6	57	43	8	51	72	11	83
24	스키	101	46	147	87	46	133	95	54	149	114	55	169
25	아이스하키	69	0	69	58	0	58	78	0	78	124	0	124
26	휠체어컬링	72	27	99	73	25	98	89	35	124	97	29	126
27	당구	440	81	521	492	74	566	506	94	600	532	112	644
28	태권도	82	32	114	136	55	191	183	90	273	214	75	289
29	e스포츠	161	24	185	174	37	211	106	27	133	122	39	161
30	게이트볼	1,086	417	1,503	1,117	453	1,570	1,171	455	1,626	1,102	435	1,537
31	플로어볼	57	11	68	80	8	88	59	6	65	65	5	70
32	디스크골프	60	26	86	63	36	99	50	20	70	72	16	88
33	승마	19	0	19	14	14	28	11	9	20	101	45	146

※ 주 : 2017년 8월말 기준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통계자료(2017)

② 국가대표 육성

국가대표 육성은 경기력향상 및 국제대회 입상을 통한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다. 훈련원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전용훈련장이 없이 산발적으로 국가대표 훈련이 실시되었지만, 이천훈련원이 건립된 이후에는 훈련원 내 종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도는 2016 리우 하계패럴림픽대회를 앞두고 경기력을 최대한 높이고자 총 28개 종목 434명이 훈련에 참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총 27개 종목에서 선수와 임원을 포함한 총 475명이 훈련에 참가하였다. 구체적인 2016년 장애인 국가대표훈련 현황은 <표 6-20>과 같다.

표 6-19. 장애인 꿈나무, 신인선수 국가대표 선발 현황

(단위: 명)

연번	종목	국가대표 인원	꿈나무·신인 선수 선발인원	연번	종목	국가대표 인원	꿈나무·신인 선수 선발인원
합계		176	13				
1	골볼	9	2	10	역도	12	-
2	배드민턴	13	-	11	유도	8	-
3	보치아	12	-	12	육상	14	-
4	사격	12	2	13	조정	6	-
5	사이클	5	-	14	컬링	5	-
6	수영	8	-	15	탁구	22	1
7	알파인스키	3	-	16	테니스	10	-
8	아이스하키	13	4	17	펜싱	3	1
9	양궁	17	1	18	노르딕스키	4	2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6-20. 2016년 장애인 국가대표훈련 현황

(단위: 일, 명)

종목	기간	일수	장소	인원	세부내용	
1	보치아	02.15~03.18 04.03~04.24 05.09~05.31 06.13~07.01 07.11~07.18 07.19~08.29 08.30~09.22	141	이천훈련원	26	선수 12명, 임원 14명
2	사격	06.10~08.20 08.31~09.18	99	이천훈련원	21	선수 12명, 임원 9명
3	수영	01.18~02.29 03.03~05.12 05.19~07.10 07.11~08.22 08.23~08.30 08.31~09.22	183	이천훈련원	14	선수 8명, 임원 6명
4	양궁	04.04~06.10 06.23~07.13 07.14~08.22 08.23~08.30 08.31~09.22	115	이천훈련원	22	선수 17명, 임원 5명
5	유도	01.28~03.04 03.14~05.31 06.13~07.14 07.14~08.22 08.31~09.15 11.14~12.16	192	이천훈련원	20	선수 8명, 임원 12명

종목	기간	일수	장소	인원	세부내용	
6	탁구	04.05~05.08 05.17~07.04 07.15~08.22 08.23~08.31 09.01~09.22	103	이천훈련원	35	선수 22명, 임원 13
7	사이클	01.18~02.04 02.18~03.12 04.01~04.18 04.27~05.14 06.07~06.13 06.20~08.30 08.31~09.21	126	이천훈련원	10	선수 5명, 임원 5명
8	역도	01.28~04.09 04.14~07.08 07.09~08.29 08.30~09.18	140	이천훈련원	12	선수 8명, 임원 4명
9	복싱	04.04~04.16 05.01~05.21 06.03~07.01 07.05~07.14 07.18~08.22 08.31~09.15	108	이천훈련원	22	선수 14명, 임원 8명
10	조정	02.15~02.29 03.01~03.20 03.21~04.09 04.11~04.20 05.23~05.29 05.30~07.23 07.24~08.22 08.23~08.30 08.31~09.15 11.07~12.18	232	충주, 미사리, 화천	10	선수 6명, 임원 4명
11	테니스	04.06~04.26 07.14~08.22 08.23~08.30 10.31~11.19	58	이천훈련원	16	선수 10명, 임원 6명
12	펜싱	02.29~04.05 04.11~04.26 05.04~06.02 06.03~06.20 06.21~07.09	134	이천, 광주	7	선수 3명, 임원 4명
13	하구	08.05~08.21 09.01~09.13 09.19~09.26 10.01~10.18	56	이천, 고양	17	선수 13명, 임원 4명

374 Section 06 장애인체육

종목	기간	일수	장소	인원	세부내용	
14	배드민턴	04.26~05.20 08.31~09.10 09.19~10.08 10.25~11.21	90	이천훈련원	17	선수 13명, 임원 4명
15	블링	04.17~05.26 09.19~10.02 10.03~10.11	77	대구, 경기, 태국	16	선수 12명, 임원 4명
16	골볼	05.21~08.26 09.02~12.11	149	고덕, 이천	14	선수 9명, 임원 5명
17	댄스스포츠	04.16~04.17 04.23~04.24 05.05~05.08 05.14~05.15 06.04~06.06 06.18~06.19 06.25~06.26 08.13~08.16 08.27~08.28 09.03 09.24~09.25 10.29~10.30	44	이천, 대구	18	선수 15명, 임원 3명
18	럭비	06.07~07.11	39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	20	선수 12명, 임원 8명
19	론볼	05.05~06.25 07.03~08.16	92	시흥	13	선수 9명, 임원 4명
20	배구	03.03~03.12 03.13~03.24 11.07~12.22	80	이천훈련원	14	선수 12명, 임원 2명
21	요트	05.30~06.22 06.27~07.15 08.01~08.10 08.22~09.12 10.07~10.20 10.28~11.10 11.22~12.10	122	부산	7	선수 5명, 임원 2명
22	태권도	03.02~03.31	33	이천훈련원	29	선수 13명, 임원 16명
23	축구(시각)	03.09~03.18 08.23~09.02 09.05~09.22	133	이천훈련원	12	선수 6명, 임원 6명
	축구(뇌성)	06.06~07.04 07.07~07.26 11.22~12.11		이천훈련원	18	선수 14명, 임원 4명
	축구(청각)	06.25~07.25		마산종합운동장	23	선수 20명, 임원 3명

종목	기간	일수	장소	인원	세부내용	
24	아이스하키	01.04~01.13 01.14~01.25 01.28~02.04 02.06~02.14 03.02~03.18 03.20~03.25 03.26~04.04	71	의암빙상장	21	선수 13명, 임원 8명
25	노르딕스키	01.05~02.06 02.11~03.05 03.07~03.22 04.29~05.13 05.17~05.31 06.09~06.29 07.07~07.26 07.31~08.20 08.25~09.13 09.19~10.15	241	평창알펜시아	7	선수 4명, 임원 3명
26	알파인스키	01.09~01.11 01.12~01.17 01.18~01.19 01.20~01.31 02.01~02.05 02.07~03.04 03.05~03.11 03.12~03.18 03.19~03.28 03.30~04.10 08.01~08.31	122	평창알펜시아	8	선수 3명, 임원 5명
27	컬링	01.04~01.07 01.14~01.19 01.26~01.31 02.01~02.05 02.11~02.13 07.11~07.12 07.14~07.20 07.26~07.29 08.01~08.10 08.22~08.31 09.01~09.09 09.19~09.30 10.04~10.07 10.31~11.10 12.02~12.20	107	동두천	8	선수 5명, 임원 3명
합계				477	선수 303명, 임원 174명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③ 장애인실업팀 육성

장애인 전체실업팀 수는 총 62개 팀 304명(선수 242명, 임원 62명)이다. 장애인 실업팀 육성은 장애인선수의 훈련여건 보장을 통한 경기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2012년부터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공공기업, 민간기업의 장애인실업팀 창단을 유도하고 장애인실업팀 창단 지원을 통해 장애인선수의 경제적 안정 기반구축 및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6-21. 연도별 장애인실업팀 지원 현황

(단위: 원, 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백만원)	800	800	800	1,320	1,320
지원한 실업팀 수	24	10	11	12	15
전체 실업팀 수	29	38	47	53	62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6-22. 장애인실업팀 종목별 운영현황

(단위: 명)

연번	종목	실업팀 수	실업팀 구성(인원)		
			계	임원	선수
1	농구	3	41	7	34
2	댄스스포츠	1	5	1	4
3	배구	1	9	1	8
4	배드민턴	7	22	5	17
5	보치아	1	7	2	5
6	볼링	2	3	0	3
7	사격	6	25	5	20
8	사이클	1	1	0	1
9	수영	6	27	4	23
10	스키	3	11	3	8
11	아이스하키	1	13	2	11
12	양궁	5	22	4	18
13	역도	7	33	6	27
14	유도	1	3	1	2
15	육상	6	23	4	19
16	컬링	2	12	2	10
17	탁구	5	25	6	19
18	테니스	3	16	6	10
19	펜싱	1	6	3	3
합계		62	304	62	242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장애인실업팀은 2011년 12월 기준, 17개 팀(12개 종목, 선수 75명)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후 2012년부터 예산 8억이 배정되어 24개 팀(창단, 기존팀, 입단)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8억) 10개 팀 지원, 2014년(8억) 11개 팀 지원, 2015년(13억 2천) 12개 팀을 지원하였다. 2016년(13억 2천)에는 15개의 실업팀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연도별 실업팀 지원 현황은 <표 6-21>과 같으며, 장애인실업팀 종목별 운영현황은 <표 6-22>와 같다.

④ 전임지도자 배치

전임지도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사격, 역도, 탁구, 테니스 등 4개 종목에 국가대표선수 지도를 목적으로 각 경기단체에 배치하여 운영되었다. 2011년부터 2012년에는 전임지도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전훈련원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운영하였다. 전임지도자 배치종목은 2013년 13개 종목, 2014년 15개 종목, 2015년 19개 종목, 2016년에는 23개 종목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인 전임지도자 배치현황은 <표 6-23>과 같다.

표 6-23. 전임지도자 배치현황

(단위: 명)

연번	종목	배치인원	연번	종목	배치인원
1	대한장애인체육회	2	11	역도	1
2	골볼	1	12	유도	1
3	배드민턴	1	13	육상	1
4	보치아	1	14	조정	1
5	사격	1	15	컬링	1
6	사이클	1	16	탁구	1
7	수영	1	17	테니스	1
8	알파인스키	3	18	펜싱	1
9	아이스하키	1	19	노르딕스키	2
10	양궁	1			
합계					23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 장애인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

장애인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는 2013년 4월부터 공익사업적립금 1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였다. 각종 폭력예방 교육과 다양한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장애인스포츠인의

체육활동 참여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훈련을 도모하고 있다. 전문상담사 2명으로 시작하여 2015년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는 이용자 편의와 즉각적인 상담 및 피드백 제공을 위해 인터넷 포털 시스템을 구축·운영(<http://sports-in.koreanpc.or.kr>)하고 있으며, 시·도와 체육현장을 직접 찾아가 (성)폭력 예방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시·도에 권익보호 전문인력을 구성하였으며, 2016년부터 교육과 홍보 등의 권익사업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인 연도별 장애인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 상담 접수 현황은 <표 6-24>와 같으며, 연도별 장애인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 교육 및 홍보 현황은 <표 6-25>와 같다.

표 6-24. 연도별 장애인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 상담 접수 현황 (단위: 건)

실업팀 수	총계	접수유형				성별			상담(신고)내용			
		전화	내방	방문	온라인	남	여	미확인	(성)폭력 추행, 희롱 포함	관계갈등	각종 비위 및 선수선발, 이적관련	기타 (일반상담)
2013	54	35	8	8	3	31	20	3	11	18	14	11
2014	106	54	43	7	2	62	39	6	23	72	11	3
2015	122	65	39	15	3	94	25	3	21	3	46	49
2016	97	22	56	13	6	74	22	1	17	29	8	43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6-25. 연도별 장애인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 교육 및 홍보 현황

구분	연도(년)	횟수(번)	인원(명)	구분	연도(년)	횟수(번)	인원(명)
교육	2013	21	1,018	홍보	2013	-	-
	2014	34	1,527		2014	17	1,930
	2015	35	2,021		2015	19	2,755
	2016	38	1,380		2016	45	1,720
합 계		128	5,936	합 계		81	6,405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3. 이천훈련원

이천훈련원은 2005년 정부 정책사업 차원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10월 15일 개원한 이천훈련원은 전문체육 상시훈련장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표준화, 지도자 양성 및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천훈련원은 1단계~3단계 계획에 따라 건립되었으며, 자세한 이천훈련원 1단계 건립내역은 <표 6-26>, 2단계 건립내역은 <표 6-27>과 같다. 특히, 2011년 2단계 공사로 생활관은 2인실과 4인실 규모의 28실 증설을 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양궁훈련장, 필드훈련장, 다기능 체육관의 건축시설을 증설하였으

표 6-26. 이천훈련원 1단계 건립(2007-2009) 시설내역

구분	시설명	규격(규모)	시설면적
건축시설	종합 체육동	제1체육관(종합플로어)	· 농구코트 3면 크기(농구, 배구, 보치아) 14,340㎡
		제2체육관(실내수영장)	· 50m x 8레인 (4,338평)
		제3체육관(종목별훈련장)	· 역도 펜싱 탁구 유도 골볼장
		스포츠의과학실	· 스포츠의과학실 / 체력단련실
	생활관(숙소, 식당, 사무실)	· 72실 144명 이용(2인 72실) · 식당, 주방, 관리사무실	6,480㎡ (1,960평)
기타시설	· 운동장부속실, 경비실, 휴게정자	809㎡(245평)	
실외 체육시설	운동장(육상장, 축구장)	· 육상장 : 트랙, 투척 도약장 · 축구장 : 훈련용 인조잔디	23,800㎡ (7,200평)
	주차장	· 주차대수 : 321대	-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6-27. 이천훈련원 2단계 건립(2011-2015) 시설내역

구분	시설명	적용시설(규격·규모)	시설면적	완공연도
건축시설	생활관	· 28실 88명(2인 12실, 4인 16실)	2,460㎡(744평)	2011
	훈련시설	· 다기능 체육관(휠체어력비)	4,724㎡(1,429평)	2013
	교육동	· 대강당, 회의실, 사무실, 연구실 등	4,956㎡(1,499평)	2014
실외 체육시설	양궁훈련장	· 양궁장 90m x 14사로(실외)	9,200㎡(2,782평)	2013
	보조구장	· 뇌성마비축구장, 시각축구장	6,500㎡(1,967평)	2015
	테니스장	· 4코트(실내 2코트, 실외 2코트)	3,500㎡(1,058평)	
	주차장	· 주차대수 : 195대	-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며,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 교육동과 보조구장, 주차장 등을 추가 증설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컬링장, 사격훈련장(45사로) 등 훈련시설 건립을 위한 3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구체적인 이천훈련원 3단계 건립 시설내역은 <표 6-28>과 같다.

표 6-28. 이천훈련원 3단계 건립(2016) 시설내역

구분	시설명	적용시설(규격·규모)	시설면적	완공연도
건축시설	훈 련 시 설	컬링장(4레인) 지도자실, 회의실, 사무실 등	7,450㎡(2,254평)	2016
		사격훈련장(45사로)	기존 4724㎡(1,429평) 증축 1320㎡(400평)	2016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4. 장애인체육 선수복지

제8회 서울 하계패럴림픽대회 이후, 1989년 7월부터 우수선수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지급 초기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 개최하고 패럴림픽대회에 입상한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97년 1월부터 지급대상을 농아인올림픽대회 입상 선수들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복지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2005년 11월 25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 2006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와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에 의거 각종 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선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체육인복지사업 8개 분야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도별 장애인체육선수 복지지원금 지급현황은 <표 6-29>와 같다.

표 6-29. 연도별 장애인체육선수 복지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명)

연도	총목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경기지도자 연구비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		체육장학금		복지후생금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2006	1,195,680	1,195,680	165	-	-	-	-	-	-	-	-
2007	1,313,640	1,184,640	163	-	-	31,000	250	65,000	50	32,000	16
2008	2,287,710	1,829,810	179	362,100	21	14,300	358	12,000	11	69,500	16
2009	1,795,200	1,650,700	199	-	-	2,000	390	52,000	40	60,500	11
2010	3,434,483	2,785,000	204	505,600	16	35,000	370	50,000	36	58,883	21
2011	1,984,165	1,815,000	203	-	-	30,000	460	50,000	34	89,165	24
2012	2,928,038	2,347,600	219	364,600	22	30,000	450	79,500	56	106,338	18
2013	4,695,212	3,779,200	234	707,600	14	30,000	606	77,000	54	101,412	17
2014	2,751,417	2,445,800	234	-	-	103,000	600	79,000	62	23,617	23
2015	2,507,812	2,405,000	232	-	-	-	-	102,912	69	-	-
2016	3,283,455	2,872,855	251	313,100	15	-	-	97,500	81	-	-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제3절 국내·외 장애인체육대회

1. 국내대회

1)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981년 UN이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장애인체육은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제1회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정립회관이 주최하는 전국지체부자유청소년체육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주최하는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전국정신지체인축구대회 등 각 장애별로 몇몇 대회가 있었으나, 전 장애인이 참여하는 종합체육행사는 이 대회가 최초였다. 1981년 제1회 대회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개최하였으며, 2회부터 4회 대회까지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문화방송이 공동주최하였다.

이후 1985년 발족한 서울장애인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준비 일환으로 제5회 대회부터 1987년 제7회 대회까지 주관하였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올림픽대회가 열린 1988년과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된 해를 제외하고는 1989년부터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주최·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제10회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만 지속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장애인 선수들의 참여의식이 결여되고, 선수촌 및 경기장이 군부대인 관계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불편하였다. 또한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대규모 행사가 빈번하여 국민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효과가 적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장애인체육대회의 질적수준 향상의 계기 마련과 장애인복지의 시·도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장애인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체전 순회개최가 제기되었다. 2000년 인천광역시에서 제20회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를 개최하고 제21회 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제26회 대회부터는 2005년 11월 25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제35회 대회는 강원도 일원에서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5일간) 개최되었으며, 제36회 대회는 2016년은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5일간) 충남에서 개최되었다. 구체적인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은 <표 6-30>과 같다.

표 6-30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개최기간	개최지	개최종목	참가선수단(명)			순위			
				계	선수	임원	1위	2위	3위	
1회	'81.10.02~10.04	서울	5	1,011	761	250	-	-	-	
2회	'82.10.11~10.12		7	1,295	945	350	-	-	-	
3회	'83.09.15~09.16		7	1,140	860	280	-	-	-	
4회	'84.10.24~10.25		8	1,507	1,157	350	-	-	-	
5회	'85.10.19~10.20		7	1,624	1,224	400	-	-	-	
6회	'86.10.11~10.13		9	1,733	1,314	419	-	-	-	
7회	'87.09.19~09.22		16	1,932	1,500	432	-	-	-	
8회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관계로 개최하지 않음									
9회	'89.10.15~10.17	서울	16	1,469	1,129	340	서울	경기	대구	
10회	'90.05.14~05.26		15	1,443	1,052	391	서울	경기	경남	
11회	'91.05.22~05.24		16	1,588	1,189	399	서울	경기	경북	
12회	'92.05.07~05.09		16	1,708	1,304	404	서울	경기	부산	
13회	'93.05.25~05.27		16	1,637	1,222	415	서울	경기	경남	
14회	'94.05.14~05.16		16(시범1)	1,733	1,310	423	서울	경남	부산	
15회	'95.05.23~05.25		17	1,695	1,276	419	경기	서울	부산	
16회	'96.05.14~05.16		17	1,740	1,305	435	경기	서울	대구	
17회	'97.05.20~05.22		17	1,756	1,340	416	경기	서울	충북	
18회	'98.05.19~05.21		17	1,744	1,312	423	경기	서울	충북	
19회	'99.05.25~05.27		17	1,766	1,334	432	경기	서울	충북	
20회	'00.06.13~06.15		인천	17	1,867	1,375	492	경기	서울	충북
21회	'01.05.09~05.11		부산	17	2,020	1,500	520	경기	서울	부산
22회	제22회 대회는 한일월드컵축구대회, 아시아대회,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으로 개최되지 않음									
23회	'03.05.14~05.16	충남	17	2,020	1,500	520	경기	서울	충남	
24회	'04.05.11~05.14	전북	17	2,291	1,656	635	경기	서울	충남	
25회	'05.05.10~05.13	충북	18	2,586	1,885	701	서울	경기	충남	
26회	'06.09.12~09.15	울산	19	3,272	2,462	810	경기	서울	부산	
27회	'07.09.11~09.14	경북	22(시범1,전시1)	4,031	2,991	1,040	경기	서울	경북	

횟수	개최기간	개최지	개최종목	참가선수단(명)			순위		
				계	선수	임원	1위	2위	3위
28회	'08.10.05~10.09	광주	23(전시2)	5,459	3,987	1,472	경기	서울	광주
29회	'09.09.21~09.25	전남	24(시범1,전시1)	6,350	4,569	1,658	경기	서울	충북
30회	'10.09.06~09.10	대전	22(시범1,전시1)	6,746	4,825	1,921	경기	서울	경북
31회	'11.10.17~10.21	경남(진주)	27(시범1,전시2)	7,095	4,964	2,131	경기	서울	경남
32회	'12.10.08~10.12	경기(고양)	27(전시2)	6,995	4,839	2,156	경기	서울	인천
33회	'13.09.30~10.04	대구	27(전시1)	7,419	5,154	2,265	경기	대구	서울
34회	'14.11.04~11.08	인천	26	7,460	5,029	2,431	경기	인천	서울
35회	'15.10.28~11.01	강원	27(전시1)	7,687	5,247	2,440	경기	서울	대전
36회	'16.10.21 - 10.25	충남	26	7,938	5,481	2,457	경기	서울	충남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동계스포츠에 대한 장애인 참여인구 증가와 국제 동계장애인스포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4년부터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하계종목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동계종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동계 장애인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강원도 일원에서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4일간) 개최되었으며, 구체적인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은 <표 6-31>과 같다.

표 6-31.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횟수	개최기간	개최지	개최종목	참가선수단(명)			순위		
				계	선수	임원	1위	2위	3위
1회	'04.02.24~02.25	춘천, 용평	4	150	100	50	-	-	-
2회	'05.02.17~02.18	춘천, 용평	3	150	80	70	-	-	-
3회	'06.02.22~02.24	춘천, 보광	4	209	102	107	-	-	-
4회	'07.02.21~02.24	춘천, 하이원	4	224	117	107	서울	경기	울산
5회	'08.02.19~02.22	춘천, 하이원, 울산	4	446	215	231	서울	강원	경기
6회	'09.02.10~02.13	춘천, 하이원, 의성	4	307	304	303	경기	강원	서울
7회	'10.01.16~01.29	하이원, 서울, 이천	4	660	330	330	서울	강원	충북
8회	'11.02.15~02.18	춘천, 하이원, 서울, 창원	4	685	338	347	서울	인천	강원

횟수	개최기간	개최지	개최 종목	참가선수단(명)			순위		
				계	선수	임원	1위	2위	3위
9회	'12.02.28~03.02	전북(전주, 무주)	4	731	365	366	서울	경기	강원
10회	'13.02.25~02.28	강원도 일원	4	738	372	366	경기	인천	서울
11회	'14.02.11~02.14	강원도 일원	5	729	344	385	경기	인천	강원
12회	'15.02.09~02.12	강원도 일원	6	754	376	378	서울	인천	강원
13회	'16.02.16~02.19	강원도 일원	6	818	405	413	경기	강원	서울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3)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장애학생체육대회는 2006년 울산광역시(장애학생체육대회), 2007년 경북과학경시대회(지역별 독자대회), 2008년 광주광역시(전국장애청소년대회)개최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격년제로 주관하였으나, 2009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기로 대회규정을 개정(2009년 1월 29일)하고 대회 명칭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로 명명하여 전라남도에서 개최하였다. 2016년에는 강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3,000명(1,640명의 선수, 1,060명의 임원, 300명의 보호자)이 참가하였다. 구체적인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현황은 <표 6-32>와 같다.

표 6-32.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현황

횟수	개최기간	개최지	참가종목	참가인원(명)				장애유형별 선수 참가현황					
				계	선수	임원	보호자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청각
1	1회는 일부 지역에서 지역별 대회로 자체적으로 개최												
2	'08.10.28~31	광주	9개 종목(정식7, 시범1, 전시1)	1,479	912	206	111	912	86	-	92	586	148
3	'09.05.12~15	전남 (여수,목포)	11개 종목 (정식10, 전시1)	2,006	1,315	526	165	1,315	38	57	82	941	197
4	'10.05.17~20	대전	13개 종목 (정식12, 전시1)	2,437	1,570	640	227	1,570	50	97	83	1,141	190
5	'11.05.24~27	경남진주	13개 종목 (정식11, 시범 2)	2,731	1,701	738	292	1,701	175	-	80	1,258	188
6	'12.05.01~04	경기도	15개 종목(정식11, 시범2, 전시2)	2,710	1,615	843	252	1,615	47	132	77	1,162	197
7	'13.05.11~14	대구	15개 종목 (보급, 육성)	3,018	1,773	1,012	233	1,773	54	153	80	1,277	209

횟수	개최기간	개최지	참가종목	참가인원(명)				장애유형별 선수 참가현황					
				계	선수	임원	보호자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청각
8	'14.11.04~08	인천	15개 종목	2,723	1,644	826	253	1,644	41	147	134	827	495
9	'15.05.19~22	제주	15개 종목	2,717	1,477	1,003	237	1,477	38	156	69	1,055	159
10	'16.05.17~20	강원	15개 종목 (보급, 육성)	3,000	1,640	1,060	300	1,640	45	191	72	1,157	175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 국제대회

1) 장애인올림픽대회(Paralympic Games)

가. 기본이념

장애인올림픽의 기본이념은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 우정과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올림픽정신과 이념에 장애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조화시킨 것이다. 즉, 올림픽이 인종, 국가, 정치, 문화 및 이념을 초월한 인간의 건강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화합, 나아가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범세계적인 축제로서 세계 젊은이들의 힘과 기록의 제전이라면, 장애인올림픽은 인간의 평등을 확인하는 대회이며, 인간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축제이다.

나. 어원

장애인올림픽 즉, 패럴림픽(Paralympics)이란 말은 하반신마비를 뜻하는 paraplegia의 접두어 para와 olympics의 어미lympics를 조합한 합성어로 이는 지난 1964 동경 장애인올림픽대회 당시 주최측 해석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 후 올림픽과 함께 장애인올림픽대회가 개최되면서 참가선수의 폭이 넓어져, 척수장애 이외에 시각장애, 뇌성마비, 절단 및 기타장애 등 전반적인 장애인을 포괄하게 되자, 세계장애인스포츠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World Sports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ICC)에서는 공식해석을 내려 para를 ‘부수적인(attached to)’의 뜻으로

정의하였다. 오늘날의 패럴림픽이란 용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림픽대회와 함께 치러지는 장애인의 올림픽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뜻하여 para-는 the same, 혹은 next to로 해석되고 있다.

다. 하계대회

최근 2016년 리우 하계 패럴림픽대회는 9월 7일부터 9월 18일(12일간) 22개 종목에 각국의 4,333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1개 종목(양궁, 육상, 보치아, 사이클, 유도, 역도, 조정, 사격, 수영, 탁구, 휠체어테니스)에 선수단 139명(선수 81명, 임원, 58명)이 참가하여, 금 7개(보치아 1개, 수영 4개, 유도 1개, 탁구 1개), 은 11개(양궁 1개, 육상 1개, 사이클 1개, 유도 1개, 사격 2개, 수영 1개, 탁구 3개), 동 17개(보치아 1개, 사격 5개, 양궁 2개, 유도 2개, 육상 2개, 탁구 5개)를 획득하여, 종합 20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다음 하계 패럴림픽대회는 2020년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하계 패럴림픽대회 개최 현황은 <표 6-33>과 같다.

표 6-33. 하계 패럴림픽대회 개최 현황

(단위: 개, 명)

횟수	연도	개최장소	패럴림픽대회 규모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 결과					비고
			참가국	개최종목	참가선수	종목	선수/임원	금	은	동	
1	1960	로마 (이탈리아)	23개국	8	400	-	-	-	-	-	-
2	1964	도쿄 (일본)	21개국	9	375	-	-	-	-	-	-
3	1968	텔아비브 (이스라엘)	29개국	10	750	2	10 (6/4)	-	-	-	첫참가
4	1972	하이델베르크 (독일)	43개국	10	984	2	16 (10/6)	4	2	1	종합16위 (첫 메달 획득)
5	1976	토론토 (캐나다)	40개국	13	1,657	2	11 (7/4)	1	2	1	종합 27위
6	1980	안헴 (네덜란드)	43개국	13	1,973	2	15 (10/5)	2	2	1	종합 26위
7	1984	뉴욕 (미국)	45개국	18	1,800	6	25 (14/11)	-	-	1	동반개최
		스토크덴더빌 (영국)	41개국	18	1,100	2	24 (12/12)	-	2	1	종합 37위
8	1988	서울 (대한민국)	61개국	18	3,057	16	366 (236/130)	40	35	19	종합 7위

횟수	연도	개최장소	패럴림픽대회 규모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 결과					비고
			참가국	개최종목	참가선수	종목	선수/임원	금	은	동	
9	1992	바로셀로나 (스페인)	83개국	16	3,001	10	92 (65/27)	11	15	18	종합 12위
10	1996	애틀랜타 (미국)	104개국	19	3,259	13	92 (64/28)	13	2	15	종합 12위
11	2000	시드니 (호주)	122개국	18	3,881	13	119 (89/30)	18	7	7	종합 9위
12	2004	아테네 (그리스)	135개국	19	3,808	13	123 (82/41)	11	11	6	종합 16위
13	2008	베이징 (중국)	146개국	20	3,951	13	131 (77/54)	10	8	13	종합 13위
14	2012	런던 (영국)	164개국	20	4,237	13	149 (88/61)	9	9	9	종합 12위
15	2016	브라질 (리우)	160개국	22	4,333	11	139 (81/58)	7	11	17	종합 20위
16	2020	일본(도쿄)	개최 예정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16)

라. 동계대회

최근 제11회 소치 동계 패럴림픽대회는 2014년 3월 7일부터 16일까지 5개 종목 72개 메달이벤트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를 통해 스노우보드와 알파인스키의 세부종목으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개최국인 러시아가 종합우승을, 독일과 캐나다가 그 뒤를 이으며 성대했던 폐막식과 함께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바이애슬론을 제외한 4개 종목에 57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나(선수 27명, 임원 30명) 메달 획득에는 실패하였다.

표 6-34. 동계 패럴림픽대회 개최 현황

(단위: 개, 명)

횟수	연도	개최장소	패럴림픽대회 규모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 결과					비고
			참가국	개최종목	참가선수	종목	선수/임원	금	은	동	
1	1976	외른셀드스비크 (스웨덴)	16개국	2	250	-	-	-	-	-	
2	1980	에일로 (노르웨이)	18개국	3	250	-	-	-	-	-	
3	1984	인스부르크 (오스트리아)	21개국	3	457	-	-	-	-	-	
4	1988	인스부르크 (오스트리아)	22개국	4	397	-	-	-	-	-	

횟수	연도	개최장소	패럴림픽대회 규모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 결과					비고
			참가국	개최종목	참가선수	종목	선수/임원	금	은	동	
5	1992	디나알베르빌 (프랑스)	24개국	4	475	1	2	-	-	-	첫 출전
6	1994	릴레함메르 (노르웨이)	31개국	5	471	1	2	-	-	-	
7	1998	나가노 (일본)	31개국	5	561	1	4	-	-	-	
8	2002	솔트레이크 (미국)	36개국	4	416	1	14(6/8)	-	1	-	종합21위 (알파인스키)
9	2006	토리노 (캐나다)	38개국	5	474	1	7(3/4)	-	-	-	
10	2010	밴쿠버 (캐나다)	44개국	5	502	5	49(25/24)	-	1	-	종합18위 (휠체어컬링)
11	2014	소치 (러시아)	45개국	5	547	4	57(27/30)	-	-	-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16)

2) 농아인올림픽대회(Deaflympic Games)

가. 기본이념

농아인올림픽대회는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사회로부터 분리·배제되어온 농아인들을 위한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서, 스포츠를 통해 평등을 실현하고 의사소통의 장벽을 뛰어넘는 장이기도 하다. 농아인올림픽대회(Deaflympic Games)는 4년마다 개최되는 종합국제대회로서 장애인올림픽대회와 동일하게 하계와 동계로 나뉘어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1924년 8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1회 하계 농아인올림픽대회를 시작과 1949년 1월 오스트리아 지펠트에서 제1회 동계대회 개최 이래 현재까지 하계대회 22회와 동계대회 18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1985년 7월 제15회 LA 하계 농아인올림픽대회에 탁구, 육상, 사이클 3개 종목 참가를 시작으로 2015년 4월 제18회 한티만시스크 동계 농아인올림픽대회까지 출전하였다.

나. 어원

농아인올림픽대회는 농아인이라는 deaf와 olympics의 어미lympics을 조합한 합

성어로 만들어 졌으며 종전에는 세계농아인경기대회(World Games for the Deaf)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01년 5월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가 농아인올림픽대회(Deaflympics)로 명칭변경을 요청한 ICSD 요구를 승인하여 제19회 대회부터 농아인올림픽대회(Deaflympics)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표 6-35. 하계 농아인올림픽대회 개최 현황

(단위: 년, 명)

횟수	연도	개최장소	대회규모(참가국/참가인원)	비고
1회	1924	파리 (프랑스)	9/145	
2회	1928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10/210	
3회	1931	뉴렌버그 (독일)	14/316	
4회	1935	런던 (영국)	12/293	
5회	1939	스톡홀름 (스웨덴)	13/264	
6회	1949	코펜하겐 (덴마크)	14/406	
7회	1953	브뤼셀 (벨기에)	16/524	
8회	1957	밀라노 (이탈리아)	25/625	
9회	1961	헬싱키 (핀란드)	24/595	
10회	1965	워싱턴 (미국)	27/697	
11회	1969	베오그라드 (유고슬라비아)	33/1183	
12회	1973	말뫼 (스웨덴)	32/1,061	
13회	1977	부쿠레슈티 (루마니아)	32/1,118	
14회	1981	킬른 (독일)	32/1,213	
15회	1985	로스엔젤레스 (미국)	29/1,053	첫 참가
16회	1989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30/959	
17회	1993	소피아 (불가리)	51/1,706	
18회	1997	코펜하겐 (덴마크)	62/2,068	종합 38위
19회	2001	로마 (이탈리아)	71/2,406	종합 11위
20회	2005	멜버른 (호주)	78/3,600	종합 7위
21회	2009	타이페이 (대만)	91/5,500	종합 3위
22회	2013	소피아 (불가리)	90/5,000	종합 3위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16)

표 6-36 동계 농아인올림픽대회 개최 현황

(단위: 개, 명)

횟수	연도	개최장소	대회 규모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결과		비고
			참가국	개최종목	참가선수	종목	선수/임원	
2	1953	오슬로 (노르웨이)	6	1	44	-	-	-
3	1955	오버이머가우 (독일)	8	1	59	-	-	-
4	1959	몬테나버멜라 (스위스)	9	1	53	-	-	-

횟수	연도	개최장소	대회 규모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결과		비고
			참가국	개최종목	참가선수	종목	선수/임원	
5	1963	아레 (스웨덴)	9	1	60	-	-	-
6	1967	베르히테스가덴 (독일)	12	1	77	-	-	-
7	1971	아델보덴 (스위스)	13	1	92	-	-	-
8	1975	레이크플래시드 (미국)	13	3	139	-	-	-
9	1979	멜리벨 (프랑스)	14	1	113	-	-	-
10	1983	마돈나 디 캄피그리오 (이탈리아)	15	2	147	-	-	-
11	1987	오슬로 (노르웨이)	15	2	129	-	-	-
12	1991	벤프 (캐나다)	16	3	181	-	-	-
13	1995	일라스 (핀란드)	18	2	258	-	-	-
14	1999	다보스 (스위스)	18	2	265	-	-	-
15	2003	순스발 (스웨덴)	21	2	247	-	-	-
16	2007	솔트레이크 (미국)	23	3	298	-	-	-
17	2011	브라티슬라바 (슬로바키아)	취소			-	-	-
18	2015	한티만시스크 (러시아)	27	5	692	3	14/28	첫 출전 메달 성과 없음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16)

3) 장애인아시아대회(Asian Para Games)

가. 기본이념

장애인아시아대회의 전신인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 FESPIC Games)는 극동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FESPIC)에 가입되어 있는 42개 회원국이 참가하여 패럴림픽대회 중간의 해에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애인 종합국제대회였다. 2006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종료 이후 IPC 정책 기조에 맞춰, IOC와 동일한 대륙구조로 지역위원회가 재편되면서, 종전에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 비회원국인 중동지역 국가들이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과 병합되어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sian Paralympic Committee: APC)가 탄생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대회명도 장애인아시아대회(Asian Para Games)로 변경되었다.

나. 대회역사

1970년 인도네시아 장애인체육지도자재단(Yayasan Pembina Olahraga Cacat: YPOC)은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을 회원국으로 하여 장애인재활사업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전담기구 필요성을 인지, 가칭 '아세안장애인 스포츠키구' 설립을 관계국에 건의하는 등 아시아지역 장애인스포츠기구 설립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같은 시기에 장애인 병원 및 재활시설을 운영하던 일본 오이타의 유다카 나카무라 박사가 장애인스포츠기구의 회원을 아세안 5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 대상지역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길 건의하여 이에 대한 최종 합의로 1974년 10월 8일 아시아태평양장애인연맹이 정식 발족하였다.

이후 제1회 FESPIC대회는 1975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일본 오이타에서 18개국 973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에서 개최된 제2회 대회부터 참가하였으나 2-3회 대회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참가, 제4회 대회는 서울 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참가하였으며, 제5회 대회부터 제8회 대회까지는 한국 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참가를 주관했다. 이후 2005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하면서 2006년 쿠알라룸푸르 아태장애인대회부터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대회까지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구체적인 역대 장애인아시아대회 참가 현황은 <표 6-37>과 같다.

표 6-37. 역대 장애인아시아대회 참가 현황

(단위: 개, 명)

횟수	연도	개최장소	패럴림픽대회 규모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 결과					비고
			참가국	개최종목	참가선수	종목	선수/임원	금	은	동	
1	1975	일본(오이타)	18	8	973	-	-	-	-	-	-
2	1977	호주(파라마타)	16	13	430	-	-	-	-	-	최초 참가
3	1982	홍콩(샤틴)	23	9	744	-	-	-	-	-	-
4	1986	인도네시아(수라카르티)	19	12	834	13	76	40	19	9	종합 6위
5	1989	일본(고베)	41	13	1,646	13	114	73	29	29	종합 4위
6	1994	중국(베이징)	42	14	2,081	14	131	48	28	17	종합 3위
7	1999	태국(방콕)	34	15	2,258	14	137	31	26	27	종합 4위
8	2002	대한민국(부산)	43	17	1,867	17	306	62	68	20	종합 2위
9	2006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47	19	3,641	19	256	58	42	43	종합 3위
10	2010	중국(광저우)	41	19	3,773	19	300	27	43	33	종합 3위
11	2014	대한민국(인천)	41	23	3,847	23	484	72	62	77	종합 2위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16)

4) 종목별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2016년에는 총 22개 종목의 장애인 국제대회에 참가하였다. 총 541명(임원 200명, 선수(남자 263명, 여 78명)이 참가하였으며, 금 71개, 은 53개, 동 41개를 획득하였다. 구체적인 2016년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현황은 <표 6-38>과 같다.

표 6-38. 2016년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현황 (단위: 개, 명)

횟수	연도	개최장소	참가인원				획득메달			참가 이벤트 수		
			합계	임원	선수		금	은	동	금	은	동
					남	여						
		합계	541	200	263	78	71	53	41	292	292	299
1	보치아	BISFed 세계선수권대회	22	11	9	2	1	-	1	4	4	4
		BISFed 월드오픈	22	11	9	2	6	2	-	7	7	7
2	배구	2016 항저우 국제대회	27	2	12	13	-	-	-	1	1	1
3	태권도	제2회 아시아장애인태권도 선수권대회	5	2	3	-	-	-	1	3	3	3
4	펜싱	2016 IWAS 에게르 휠체어펜싱 월드컵대회	6	3	2	1	-	-	-	6	6	6
		2016 IWAS 홍콩 휠체어펜싱 아시아챔피언십대회	7	4	2	1	-	1	-	6	6	6
		2016 IWAS 라발 휠체어펜싱 월드컵대회	7	4	2	1	-	-	-	6	6	6
5	사이클	2016 UCI 이탈리아 세계장애인 트랙선수권대회	7	5	2	-	-	-	-	5	5	5
		2016 UCI 벨기에 장애인로드 월드컵대회	7	4	1	2	1	2	1	6	6	6
6	역도	2016 IPC 쿠알라룸푸르 역도 월드컵대회	10	3	4	3	1	-	-	7	7	7
7	테니스	2016 고베휠체어테니스 오픈대회	4	1	3	-	2	1	-	2	2	2
		2016 메가폰 휠체어테니스 드림컵대회	9	2	5	2	-	2	1	4	4	4
		2016 토글리아티 휠체어테니스 오픈대회	9	2	5	2	1	-	2	4	4	4
		2016 일본 휠체어테니스 오픈대회	11	3	6	2	-	-	-	6	6	6
		2016 도쿄 세계휠체어테니스팀 선수권대회	5	2	3	-	-	-	-	1	1	1
8	조정	2016 Paralympic Qualification Regatta(리우장애인올림픽 쿼터 대회)	10	4	3	3	-	2	-	3	3	3
9	육상	2016 IPC 중국오픈 육상선수권대회	24	9	13	2	2	6	2	21	21	21
		2016 IPC 런던마라톤 월드컵대회	3	1	2	-	-	-	-	2	2	2
		2016 IPC 취리히 육상그랑프리대회	17	7	9	1	9	1	2	15	15	15

횟수	연도	개최장소	참가인원				획득메달			참가 이벤트 수		
			합계	임원	선수		금	은	동	금	은	동
					남	여						
10	탁구	2016 슬로바키아 탁구오픈대회	32	10	14	8	9	4	4	19	19	19
11	배드민턴	2016 베이징아시아장애인 배드민턴선수권대회	18	5	9	4	3	3	7	22	22	22
12	알파인스키	2016 IPC 크렌스카고라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	6	3	2	1	-	1	-	6	6	6
		2016 IPC 타르비시오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	6	3	2	1	-	1	-	6	6	6
		2016 IPC 스타나프래니나 알파인스키 유럽컵대회	4	2	2	-	4	2	-	8	8	8
		2016 IPC 용평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	4	2	2	-	-	1	1	12	12	12
		2016 IPC 오버삭슨 알파인스키 유럽컵파이널	4	2	2	-	-	-	-	6	6	6
		2016 IPC 파라롱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	4	2	2	-	-	2	-	7	7	7
13	노르딕스키	평창아시아안컵대회	11	6	4	1	2	2	1	18	18	18
		2016 부오카티월드컵대회	10	5	4	1	-	-	2	19	19	19
14	컬링	2016 휠체어컬링 세계선수권대회	8	3	4	1	-	-	1	1	1	1
15	아이스하키	월드아이스슬레지하키 챌린지	27	10	17	-	-	-	1	1	1	1
		일본아이스슬레지하키선수권대회	16	5	11	-	1	-	-	1	1	1
		IPC환태평양 선수권대회	24	9	15	-	-	-	1	1	1	1
16	볼링	제3회 APTBF 장애인볼링 챔피언십대회	22	4	16	2	17	8	5	18	18	18
17	댄스스포츠	2016 IPC 휠체어댄스스포츠월드컵	10	3	3	4	3	5	4	7	7	7
		2016 IPC 휠체어댄스스포츠 벨기에 오픈	11	3	4	4	2	-	3	6	6	6
		2016 IPC 휠체어댄스스포츠 아시아챔피언십	7	4	2	1	3	2	-	5	5	5
18	골볼	2016 일본 골볼 챔피언십	9	4	-	5	-	-	-	1	1	1
		2016 오스트리아 골볼 챔피언십	7	4	3	-	1	-	-	1	1	1
19	양궁	2016 장애인양궁 월드컵랭킹 토너먼트	21	6	9	6	1	3	-	9	9	9
20	럭비	2016 메트로컵	20	8	12	-	-	-	-	1	1	1
		2016 Bali 4's International WC Rugby Tournament	20	8	12	-	1	-	-	1	1	1
21	축구	IFCPF World Championships Qualification Tournament	17	4	13	-	-	-	-	1	1	1
22	유도	2016 영국 시각유도 오픈대회	9	4	3	2	1	2	1	5	5	10
		2016 브라질 그랑프리	2	1	1	-	-	-	-	1	1	3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제4절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현황

1.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진출인사

2016년에는 2018 평창 제6차 IPC 프로젝트리뷰 회의를 우리나라 서울에서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11월 말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16 APC 정기총회 참가까지 총 14개의 회의 및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구체적인 2016년 국제회의 및 워크숍 참가 현황은 <표 6-39>와 같다.

표 6-39. 2016년 국제회의 및 워크숍 참가 현황

구분	회의명	지역/장소	기간	참가인원	비고
1	2018 평창 제6차 IPC 프로젝트리뷰	대한민국/서울	01.19-01.20	2명	
2	제13차 APC 집행위원회의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01.30-01.31	2명	
3	2018 평창 제6차 IOC 조정위원회의	대한민국/강릉	03.14-03.16	4명	
4	제5~6차 IPC 엑셀런스워크숍	대한민국/서울	04.04-04.07	4명	
5	제72차 IPC 집행위원회의	독일/본	04.15-04.17	2명	
6	스웨덴NPC 초청 동계종목 선수개발 워크숍	스웨덴/외스터순드	04.21-04.24	1명	
7	제14차 APC 집행위원회의	UAE/두바이	06.15-06.16	1명	
8	제7~8차 IPC 엑셀런스워크숍	대한민국/평창	07.04-07.07	2명	
9	제73차 IPC 집행위원회의	브라질/리우	09.06	2명	
10	2018 평창 제7차 IOC 조정위원회의	대한민국/평창	10.05-10.07	1명	
11	CPIIRA 정기총회	스페인/산트쿠갓	11.11-11.12	2명	
12	제15차 APC 집행위원회의	태국/방콕	11.25-11.26	1명	
13	2016 APC 상임위원회의	태국/방콕	11.27	3명	
14	2016 APC 정기총회 참가	태국/방콕	11.28-11.29	2명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16)

장애인국제스포츠기구로 자국의 인사를 진출시키는 것은 자국의 장애인스포츠 위상은 물론 국제대회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를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하계패럴림픽대회를 기점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하였다. 1988 서울 장

애인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었던 조일묵 총장이 집행위원으로 임명되어, 1989년부터 4년간 활동한 바 있으며, 2009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장향숙 초대회장이 집행위원에 당선되어 4년간 국제장애인스포츠의 저변확대와 패럴림픽운동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나경원 의원이 2013년 11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진행된 제16차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당선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상임위원회는 교육, 반도핑, 법사윤리, 선수위원회 총 4개 분야별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대한민국 집행위원 및 상임위원 활동현황은 <표 6-40>과 같다.

표 6-40.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대한민국 집행위원 및 상임위원 현황

구분	성명	직위	주요경력	임기
IPC 집행위원회 (1명)	나경원	집행위원	17, 18, 19, 20대 국회의원 (前)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13. 11 ~ '17. 09
IPC 상임위원회 (4명)	김매이	교육위원회 위원	(現)고려대학교 교수	'15. 01 ~ '17. 11
	이규환	반도핑위원회 위원	(現)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부	'14. 06 ~ '17. 11
	노소라	법사윤리위원회 위원	(現)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4. 06 ~ '17. 11
	홍석만	선수위원회 위원	(現)제주도장애인체육회 육상팀	'17. 05 ~ '19. 05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16)

또한,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4개의 장애유형별 국제스포츠기구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유형별 기구는 1989년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제1회 대회인 1960년 로마 패럴림픽대회를 시작으로 1984년 뉴욕·에일즈버리대회에 이르기까지 각 대회를 주최하는 핵심기구로 그 역할을 수행해 온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 회원기구인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협회(International Blind Sports Federation: IBSA)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인정단체인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Special Olympics International: SOI)에 총 3명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장애인스포츠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2006년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과 아시아장애인올림픽협의회가 합병되면서 설립

된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모두 15명의 집행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초대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으로 박창일 부위원장과 김임연 선수대표가 활동하기 시작했고, 이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민규 부위원장을 포함 총 3명의 집행위원이 활동하였다. 현재는 지난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대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차지한 유호경 선수대표(사격)가 2018년까지 4년 임기의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는 스포츠·개발, 의무·스포츠과학, 여성스포츠 및 선수위원회 등 총 4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위원회에 14명의 상임위원을 진출시켜 각 전문분야별 위원회에서 활동 중에 있다.

표 6-41. 장애유형별 국제스포츠기구 개요

순	영문 명칭	국문 명칭	국내 회원단체	비고
1	CPISRA	국제뇌성마비인스포츠험회	KPC	IPC 회원단체 (IOSD)
2	IBSA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험회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험회	
3	IWAS	국제휠체어 및 절단장애인스포츠험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	INAS	국제지적장애인스포츠험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5	2018 평창 제4차 조정위원회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		IOC 인정단체
6	ICSD	국제농아인스포츠험회	대한농아인체육연맹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16)

표 6-42. 장애유형별 국제스포츠기구 내 대한민국 주요 인사 현황

구분	성명	직위	주요경력	임기
IBSA 집행위원회	이병돈	집행위원	(現)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험회 회장	'14.06~'17.09
SOI 집행위원회	나경원	이사	17, 18, 19대 국회의원 (現)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회장	'11.05 ~ '17.02
SOI 집행위원회	김병덕	이사	(現)스페셜올림픽 코리아 부회장	'16.11 ~ '20.11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16)

표 6-43.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한민국 집행위원 및 상임위원 활동 현황

구분	성명	직위	주요경력	임기
APC집행위원회(1명)	유호경	선수대표	(現)청주시청 사격팀 선수	'14.10 ~ '18.10
	이정민	선수위원회 위원	(現)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선수	'15.08 ~ '18.12
	김미정	여성스포츠위원회 위원	(現)한양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15.08 ~ '18.12
APC상임위원회(8명)	배하석	의무위원회 위원	(現)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15.06 ~ '18.12
	김은국	반도핑위원회 위원	(現)한국체육대학교 교수	'15.06 ~ '18.12
	한승훈	등급분류위원회 위원	(現)한양대학교 재활의학과실 교수	'15.06 ~ '18.12
	이재원	스포츠과학위원회 위원	(現)용인대학교 교수	'15.06 ~ '18.12
	윤석민	스포츠개발위원회 위원	(現)나사렛대학교 교수	'16.02 ~ '18.12
	서석호	법사윤리위원회 위원	(現)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6.05 ~ '18.12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16)

2. 교류의향서 및 양해각서 체결현황

국제스포츠교류활동이 증가하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전략적 국제교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대륙별 거점국가 확보와 국내 우호국가(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NPC)확보를 통한 국제장애인스포츠 경쟁력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장애인스포츠계에서 안정적인 국제스포츠 교류활동을 보장하고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되기 시작했다. 국제장애인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동·하계 패럴림픽대회에 성공적인 참가 준비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08년부터 각국 국가패럴림픽위원회(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NPC)와 교류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그 수가 28개국에 이르고 있다.

협약 체결국가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상호간 전략 종목 교류활동을 포함, 주요 인사의 초청 및 방문 교류, 우수 지도자의 초청 및 파견을 통한 전략적 스포츠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교류의향서 및 양해각서 체결현황은 <표 6-44>와 같다.

표 6-44. 교류의향서 및 양해각서 체결현황

연번	구분	국가명	구분	체결일자	비고	
1	아 시 아	서	양해각서	'11. 02	국내	
2				이 라 크	'10. 12	2010 광저우 APG 기간
3				쿠 웨 이 트	'12. 05	쿠웨이트
4		남	의향서	'09. 05	국내	
5						인 도
6						파 키 스 탄
7		중양	의향서	'08. 10	국내	
8						우 즈 베 키 스 탄
9						중 국
10		동	의향서	'09. 10	국내	
11						일 본
12						대 만
13						홍 콩
14		동남	양해각서	'10. 07	베트남	
15						베 트 남
16						싱 가 포 르
17						필 리 핀
18						캄 보 디 아
19	유 럽	동	양해각서	'10. 07	국내	
20						터 키
21		서	의향서	'10. 12	2010 광저우 APG 기간	
22						슬 로 바 키 아
23						북 스 웨 덴
24	아프리카	의향서	'10. 03	국내		
25					네 덜 란 드	
26	대 양 주	의향서	'10. 07	국내		
27					남 스 페 인	
28	아메리카	의향서	'12. 07	스페인		
29					북 모 로 코	
30	대 양 주	의향서	'09. 09	국내		
31					동 케냐	
32	아메리카	의향서	'09. 09	국내		
33					대륙 호 주	
34	아메리카	의향서	'10. 09	국내		
35					중 맥 시 코	
36	아메리카	양해각서	'12. 10	국내		
37					북 캐 나 다	
38	아메리카	양해각서	'15. 02	국내		
39					북 캐 나 다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16)

7

2016 SPORT WHITE PAPER

체육시설

제1절 체육시설 정의 및 현황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제4절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리·운영 효율화

제5절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1절 체육시설 정의 및 현황

1. 체육시설 정의

체육시설 정의는 학문적 정의와 법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학문적 정의는 쾌적하고 효과적인 운동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설치·관리되는 물적 환경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광의적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광의적 개념은 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적 조건을 인공적으로 정비한 시설과 용·기구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이며, 협의적 개념은 운동학습을 위한 각종의 장소이다. 반면에 법적 정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체육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그 중 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따르면,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개념으로 체육시설은 ‘건전한 신체·정신함양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야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한다.

체육시설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체육시설의 종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운동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 운동종목으로 구분되는 시설로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형태별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표 7-1. 체육시설 종류

구분	체육시설의 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6)

둘째, 체육시설은 설치주체와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와 시설 목적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전문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도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군·구(특별자치도 포함)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읍·면·동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인의 건강 및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로 직장의 장이 설치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근로자 50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직장에는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체육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국민이 이

표 7-2. 공공체육시설 분류기준

구분	설치 기준
1. 육상경기장	일주거리 400m 또는 300m, 200m의 육상트랙, 필드(축구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등을 갖춘 경기시설로서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 ○○경기장 등으로 일컬어짐
2. 축구장	길이 100-110m, 폭 64-75m(국제경기 규격)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축구 경기 가능시설로서, 육상경기장내의 축구경기장은 제외)
3. 하키장	길이 91.4m, 폭 55m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하키 전용 경기장에 한함)
4. 야구장	본루로부터 1,3루 축 야외거리가 98m이상, 백스크린까지 110m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5. 사이클경기장	일주거리 실내 250-400m(통상 333.33m가 주종), 실외 250-500m, 주로 폭 7m 이상, 경사도 직선주로 8°-10°, 곡선주로 38°-45°
6. 테니스장	가로 10.97m, 세로 23.77m (마을체육시설 수준의 테니스장은 간이 운동장으로 분류)
7. 씨름장	경기장 높이 30cm 이상 70cm 이하, 경기장 직경 8m 이상인 원형의 모래시설과 경기장 밖 1.5m 이상의 보조경기장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8. 간이운동장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기구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거주지 인근의 마을체육시설
9. 체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기체육관 ·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의 경기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 투기체육관 · 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펜싱, 검도, 씨름 등 투기종목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 생활체육관 · 농구, 배구 등 구기종목과 수영, 볼링, 에어로빅, 헬스 등 생활체육종목의 각종 체육시설이 복합 설치된 체육관(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등)
10.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식 규격의 게이트볼장으로 지붕, 기둥 또는 벽면으로 구성된 경기장(단, 지붕구조가 막구조로 된 게이트볼장도 포함)
11. 수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풀 · 폭25m, 길이50m 8레인으로 레인 폭은2.5m이상(1레인과 8레인 수영조벽과 폭 0.5m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 다이빙풀 · 폭과 길이가 25m×33m, 수심5m - 비정규 · 경기장 규격이 정규수준에 미달되는 시설
12. 롤러스케이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 규(트랙) · 트랙경기장 : 일주거리 200m의 트랙, 주폭6m 이상 - 정 규(로드) · 로드경기장 : 250m-1,000m, 주폭 8m 이상 - 간이 · 경기장 규격이 정규수준에 미달되는 시설
13. 사격장	공기총사격(10m), 화약총사격(10m, 25m, 50m, 300m), 클레이사격(트랩,스킵)시설, 러닝 타겟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격장
14. 국궁장	사격거리는 관저 중심에서 사대 중심까지 145m, 과녁 사이 5m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15. 양궁장	30m, 50m, 60m, 70m, 90m거리의 경기 가능
16. 승마장	마장마술(길이 60m, 폭 20m), 장애물 비월(폭의 길이 최소한 60m 총 넓이 4,800㎡이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승마장
17. 골프연습장	골프 연습 타석을 갖춘 시설
18. 조정카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 조정 경기 가능 시설 - 카누 · 카누 경기 가능 시설
19. 요트장	요트 경기에 필요한 시설과 요트의 수납과 정비용 부대시설을 갖춘 경기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경기장

구분	설치 기준
20. 빙상장 - 쇼트트랙 - 400m트랙	· 길이 60m, 폭 30m(일주거리111.12m의 트랙)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아이스하키 경기 가능) · 일주거리 400m이상 333.3m미만 길이의 두 개의 주로
21. 설상경기장 - 스키점프장 - 바이애슬론경기장 - 크로스컨트리경기장	· 길이 90m, 120m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스키점프 경기 가능) · 3.25km와 2km지점에 컷오프를 갖춘 하나의 4km주로로 구성 · 5km×3코스=15km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크로스컨트리 경기 가능)
22. 기타 체육시설	· 상기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체육시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6)

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중 직장체육시설을 제외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각종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한다. 더불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 현황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분류된다. 공공체육시설은 주로 국가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영리보다는 국민건강복지증진에 목적이 있으며, 민간체육시설은 체육단체·사회복지단체·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체육활동 또는 그 기관의 고유목적에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체육시설과 개인·영리단체 또는 기업에서 영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업용 체육시설을 말한다.

과거 체육시설업은 9개의 등록체육시설업과 11개의 신고체육시설업, 총20개의 시설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위해 2005년 7월 29일 공포된 개정법률(법률 제7629호)에서 당초 특별시, 광역시, 도의 업무였던 등록체육시설업 중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등 6개 시설을 시·군·구 업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하였다. 추가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육

성·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2006년 3월 24일 공포된 개정법률(법률 제7913호)을 통해서 상기 등록체육시설업에서 신고체육시설로 전환된 6개 업종을 포함한 17개 신고체육시설업 중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이러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회원모집, 시설규모, 운영형태 등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하는 대중 체육시설업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표 7-3. 전국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시도 종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육상경기장	3	3	6	4	2	3	5	-	53	30	15	13	18	25	31	31	12	254
축구경기장	65	32	26	28	19	13	27	3	180	56	30	19	94	75	55	146	18	886
하키장	1	1	1	2	-	-	-	-	3	2	1	2	-	2	-	1	-	16
야구장	13	8	9	6	6	2	2	1	54	20	8	11	17	17	20	24	4	222
사이클경기장	1	1	1	1	-	1	-	-	1	2	1	-	1	1	-	1	-	12
테니스장	60	25	24	32	17	9	7	4	151	68	29	32	56	51	48	97	8	718
씨름장	-	1	2	1	1	1	1	-	11	4	1	1	7	7	9	6	1	54
간이운동장 (동네체육시설)	2,374	1,009	585	817	600	344	202	14	2,541	1,390	1,342	731	670	1,052	1,844	1,377	219	17,111
체육관	123	29	19	25	19	17	13	8	210	73	33	46	62	60	58	85	25	905
전천후 게이트볼장	7	16	3	27	10	15	6	10	245	165	94	201	125	178	38	134	20	1,294
수영장	89	23	15	17	10	17	9	4	75	15	10	6	17	18	21	22	2	370
롤러스케이트장	14	15	4	4	2	2	2	2	29	10	8	5	6	9	12	21	2	147
사격장	-	1	1	1	-	-	1	-	1	6	3	2	1	1	4	4	-	26
국궁장	8	2	3	7	3	5	4	2	42	32	14	20	15	37	15	38	5	252
양궁장	1	1	2	2	2	1	1	-	5	2	3	-	1	1	1	-	-	23
승마장	1	2	3	-	1	1	-	-	1	3	-	1	2	1	3	-	-	19
골프연습장	32	6	-	2	2	-	-	-	6	6	2	-	2	5	5	5	1	74
조정카누장	-	1	-	-	-	-	-	-	2	1	4	-	-	2	-	1	-	11
요트장	-	1	-	-	-	-	-	-	1	2	1	1	1	2	1	7	-	17
빙상장	3	1	1	-	1	1	-	-	8	2	-	1	1	-	1	2	-	22
설상경기장	-	-	-	-	-	-	-	-	-	3	-	-	-	-	-	-	-	3
기타시설	1	22	14	8	12	5	5	-	58	39	18	7	7	13	3	10	4	226
합계	2,796	1,200	719	984	707	437	285	48	3,677	1,931	1,617	1,099	1,103	1,557	2,169	2,012	321	22,662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6)

표 7-4. 전국 시·도별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종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록 시설	골프장	-	8	2	9	4	3	4	2	150	
	스키장	-	-	-	-	-	-	-	-	5	
	자동차경주장	-	-	-	1	-	-	-	-	1	
	소계	-	8	2	10	4	3	4	2	156	
신고 시설	요트장	1	-	-	-	-	-	-	-	-	
	카누장	-	-	-	-	-	-	-	-	-	
	조정장	-	-	-	-	-	-	-	-	-	
	빙상장	13	5	2	1	-	1	-	-	5	
	승마장	-	3	-	3	-	-	1	1	55	
	종합체육시설	88	17	14	5	8	6	5	1	67	
	수영장	102	26	25	17	10	21	15	1	182	
	체육도장	2,383	847	773	828	472	451	355	66	3,697	
	골프연습장	1,524	547	472	456	192	244	394	20	2,340	
	체력단련장	2,077	582	399	399	241	277	166	23	1,733	
	당구장	4,568	1,063	563	1,474	631	620	540	85	5,398	
	썰매장	4	4	4	4	1	1	1	-	36	
	무도장	15	-	4	1	-	1	-	-	22	
	무도학원	120	57	91	23	40	55	27	6	178	
소계	10,895	3,151	2,347	3,211	1,595	1,677	1,504	203	13,713		
합계	10,895	3,159	2,349	3,221	1,599	1,680	1,508	205	13,869		

구분	종목	시도									합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록 시설	골프장	60	37	22	26	38	47	35	40	487	
	스키장	10	1	-	1	-	-	1	-	18	
	자동차경주장	3	-	-	-	-	-	-	-	5	
	소계	73	38	22	27	38	47	36	40	510	
신고 시설	요트장	-	-	1	-	1	2	13	3	21	
	카누장	-	-	-	-	-	-	2	-	2	
	조정장	-	-	-	-	-	-	-	-	-	
	빙상장	3	1	3	1	1	5	-	-	41	
	승마장	6	3	9	12	12	22	16	33	176	
	종합체육시설	5	8	6	5	5	12	13	4	269	
	수영장	41	10	33	24	33	28	27	24	619	
	체육도장	380	401	503	553	481	766	833	155	13,946	
	골프연습장	343	312	339	323	329	590	605	192	9,222	
	체력단련장	197	252	242	233	216	389	421	84	7,931	
	당구장	862	713	886	869	1,108	1,167	1,156	277	21,980	
	썰매장	38	10	9	9	10	11	7	1	150	
	무도장	3	-	6	5	4	3	4	2	70	
	무도학원	29	17	27	38	39	63	62	48	920	
소계	1,907	1,727	2,064	2,072	2,239	3,058	3,159	823	55,347		
합계	1,980	1,765	2,086	2,101	2,277	3,105	3,195	863	55,857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2016)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1. 체육시설 조성정책 전개

우리나라는 19세기 후반 국내로 입국한 외교관과 계몽주의적인 서구교육관을 기초로 세운 민간학교를 중심으로 축구, 사이클, 정구, 체조 육상 등의 스포츠가 대중에게 소개되었고, 이로 인해 스포츠가 대중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체육시설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학교 운동장이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체육시설은 현재와 같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연 상태로 가까운 환경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로 알려진 것은 1897년 2월, 영어학교에 근무했던 영국인 교사 허치슨(Hutchison)이 탁지부(現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학생들의 식비예산 1,000원 중 일부를 운동장 확장과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 또한 1916년 5월, YMCA가 회관 옆에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체육관을 세우면서 그동안 야외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던 체육활동이 실내로 확장되었고, 1923년 7월 전 조선 육상경기대회 준비를 위하여 휘문의숙의 설립자인 민영휘(閔泳徽)가 계동궁의 절반을 매입하고 넓이와 길이를 측정하여 100m의 직선주로와 333m의 트랙을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정규 육상경기시설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체육시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민간에 의해서도 점차 체육시설이 설치되던 시기에 1926년에 경성부(일제강점기의 서울시청)가 최초의 체육시설인 경성운동장(동대문운동장)을 건립하였다. 체육시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자 1957년부터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서울과 지방의 균등한 체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지방 순회개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에 각종 근대적인 경기장 시설이 건립되었다. 이 시기에 효창운동장(1959년)과 장충체육관(1960년) 등이 건립되었다.

우리나라 체육시설 조성정책은 도입 초기부터 1950년대까지는 민간부분이 중심적

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1960년대부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국내 체육시설의 상당 부분이 정부정책으로 주도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법률 제 1146호로 제정, 시행되었다. 같은 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민간으로부터 도입된 체육은 학교와 교육의 영역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한정적인 범위에 그치고 있는 것을 전 국민의 생활영역으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하였고, 이는 체육진흥을 국가와 지방의 중요한 정책요소로 명문화한 계기가 되었다.

1966년에는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태릉선수촌을 건립하였고, 1970년대 이후 전국 주요도시마다 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대형 체육시설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81년에 '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이듬해인 1982년 체육부(現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되었고, 착실한 준비를 통해 '86 서울 하계아시아대회와 '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를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대형 종합경기대회를 두 차례 준비하는 동안 체육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했고, 그 영향이 대회가 열리는 도시인 서울에 편중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건립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1986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 체육시설사업을 국고보조대상사업에 포함시켰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듬해인 1989년 3월 31일 정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권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그 당시 교통부(現 국토교통부)가 골프장과 스키장, 보건사회부(現 보건복지부)가 수영장, 문교부(現 교육부)가 체육도장을 관리하던 분산된 체육시설의 관리업무를 체육부(現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지도자 배치와 피해보상제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를 개최한 이후 기존 전문체육 육성정책과 더불어 생활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과 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각지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생활체육 보급률을 높일 수 있었고, 전국 15개 시·도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건립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지역사회체육시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2.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

정부는 1986 서울 하계아시아대회와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인해 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생활체육으로 이어가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1990년 3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추진하였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은 국민생활체육진흥을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의 축적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을 가속화하고, 여가생활의 건전화를 통해 바람직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의 기본적인 진행방향은 평생체육의 실현과 국민의 체력·정신력 강화를 통해 국력을 키우고,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신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향상을 통해 생활체육의 참여여건을 단계적으로 확충·조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신규 확충대상은 운동장, 체육관 등 기본체육시설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동계체육시설, 체육인 올림픽동산, 직장체육시설 등으로 하였고 민간투자 촉진, 체육시설 설치지역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생활체육 시설화, 올림픽시설 활용, 직장체육시설 개방, 학교체육시설의 생활체육 시설화 등의 실천방안을 수립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체육

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기가 뜨거워졌다. 체육이 사회·경제적 분야에서 개인과 사회의 건전성을 높이고 활력을 더해주는 점에 주목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육정책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2002),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으로 총 3차례에 걸쳐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모든 국민의 체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체육시설의 공급을 목표로 지방체육시설의 확충과 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부족한 동계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지역의 기본체육시설로 운동장과 체육관, 수영장을 설치하였고, 국민의 생활반경에 맞춘 생활권 내 체육시설인 동네체육시설, 종합체육회관, 구민문화체육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자연 친화적인 체육공원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운동장, 관공서의 체육관을 개방하고 공공기관 테니스장 혹은 배드민턴장을 설치·개방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더불어 1997 동계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무주와 전주 지역의 동계체육시설을 정비하였고 실내빙상장, 실외빙상장, 스키점프대, 크로스컨트리코스 등을 설치하였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꾸준히 증가하는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별시, 광역시·도와 같은 광역 단위가 아닌 시·군·구와 같은 지역의 부족한 기본체육시설과 근린체육공간 조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체육시설이 단순히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성과 함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고 운동장, 체육관, 실내빙상장, 지방스포츠센터(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마을체육시설 등의 체육시설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육활동기회 확대, 시설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등 관리운영의 다양성 확대 정책도 병행하여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전문체육단체의 육성과 자생력 강화를 통해서 전문체육

과 생활체육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생활체육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닦고 체육시설과 관련된 스포츠산업의 지원을 확대해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체육의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참여, 분권,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2003년에 수립되었다.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은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에 비해 체육시설 공급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지표를 토대로 수립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체육활동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 주민의 생활권 안에서 언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육시설을 정부의 선택으로 설치하지 않고 설치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다목적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단위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게이트볼 경기장,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함께 개인 건강기능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였다. 전문체육시설 부분에서는 기본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더불어 체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던 기존 시설의 활용을 통해 시·군 기본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지원, 관리·운영실적 우수 공공체육시설 인센티브 부여, 종목별 전문체육시설과 전국체전시설 등의 확보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추진하였다.

더불어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 시행, 지방분권 확대 등의 정책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지역별 환경의 차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성·연령·계층·지역의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4.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시설배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로당·폐교·폐파출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2017년까지 900여개의 ‘작은 체육관’ 및 ‘세대통합·문화통합시설’을 조성하고, 이동 스포츠 센터인 스포츠버스(Sports Bus)운행을 통해 주민들의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 및 스포츠 소외계층의 참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유소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용품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체육활동 기본환경 구축, 1인당 체육시설 면적 확대 정책에서 종목별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로 공급의 패러다임 전환, 현장 지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실시하다. 또한 체육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업종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체육시설의 편의 시설 설치 관련 규제는 사행행위 등 불가능한 시설에만 적용하기로 하였다.

5.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강유지와 체력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충족시키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06년에 이어 2014년에 다시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체육시설의 접근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행정계획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체육시설 공급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고, 해당 계획을 통해 구축한 체육시설을 바탕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뉴스포츠맵 서비스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필요한 시설의 수요와 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도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의 공급주체로 활용하며 나아가 스포츠산업 확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스포츠 수요와 스포츠 환경 변화를 반영한 스포츠시설 공급정책 개발 및 추진을 목표

로, 2022년까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하였으며, 건강한 환경의 조성 및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여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체육시설 보급률 확대를 통해 쾌적하고 여유로운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계층 접근기회의 균등과 지역별 확충전략의 차별화, 공간단위별 기본체육시설 설정 및 시설·이용체계 네트워크 형성, 신규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기존시설의 공간효율성 및 이용률 제고를 추진한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유관시설과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민간시설과의 시장 차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주체 간 역할체계를 마련하였다. 계획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첫째, 체육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체육시설을 공간단위별, 경기수준별로 조직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이용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둘째, 체육시설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위해 공공영역은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기금지원 모델 수정안을 제시하고 민간영역이 체육시설의 주요 공급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정보, 제도개선, 공공시설의 민간사업장 활용 가능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유휴자원 및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한 공공체육시설 지원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자원 부담을 축소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간의 최대 유효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최소 시설투자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체계를 확립하고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지역주민·종목별 동호인 운동선수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민이 쾌적한 체육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2022년까지 필요한 적정 체육시설 면적을 1인당 5.73㎡로 규정하고, 참여율 70%, 2022년까지의 이용수요 예측 및 공급기준, 공간단위별, 지역유형별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였다. 5.73㎡/인은 월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자 비율이 70%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되었다. 이와 함께 종목별 시설 공급을 위해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육시설 종목별 적정 서비스거리를 도출하여 접근성 및 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 생활권별로는 시·군·구·읍·면·동 및 마을단위별로 실내와 실외시설을 구분하여 생활체육공원, 권역형 체육공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생활거점체육센터, 주민스포츠센터, 마을 스포츠홀 등을 기본체육시설로 설정하여 학교나 청소년시설 등 유관시설과의 형태적·기능적 복합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 배치방식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생활권역 및 인구 수, 접근성 및 서비스 수준을 고려함으로써 공간단위 및 시설의 위상에 따른 시설간 이용체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체육시설의 위계와 참여자의 기술수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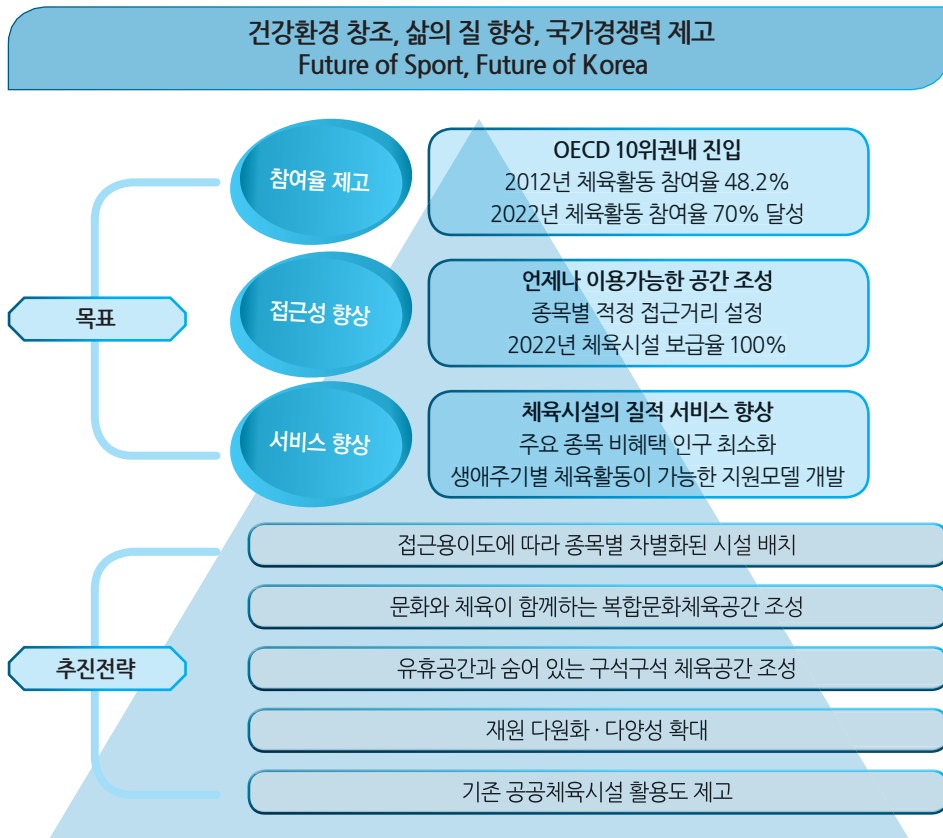


그림 7-1. 공공체육시설 공급 비전(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5 체육백서)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우리나라 체육시설은 1986 서울 하계아시아대회,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와 2002 FIFA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2002 부산 하계아시아대회 등의 개최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대형 종합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은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 생활체육 활동, 선수훈련, 국내·외 경기 개최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설의 확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정부는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목적은 생활체육공간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육시설을 손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전략은 체육시설 신규조성과 함께 기존시설 이용의 활성화이며, 현재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등의 시설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표 7-5. 체육시설 지원사업

사업별	지원액	지원목적
국민체육센터	30억원 내외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형, 체육관형, 복합형의 공공체육 인프라를 확충, 지역주민의 건강 및 체육복지 기반 마련(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4~9억원	초·중·고 학교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국민체육복지 향상(30% 정률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시설별 상이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우려 시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여건 및 경기관람 환경 개선(노후 30%, 안전 50%, 장애인 70% 정률지원)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시설별 상이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장, 체험센터, 실내체육관 등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건립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 확산

※ 출처 :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표 7-6. 연도별 체육시설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별	합계	'89~'10	'11	'12	'13	'14	'15	'16	'17계획
계	16,423	9,045	1,345	1,329	1,371	660	1,311	1,362	1,882
국민체육센터	6,873	3,788	530	548	518	537	484	468	297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1,103	247	133	117	93	113	253	147	133
운동장생활 체육시설	899	-	-	-	-	-	435	464	1,073
농어촌복합시설	432	-	-	-	-	10	139	283	379
레저스포츠시설	5,462	3,576	612	594	680	-	-	-	-
축구센터/공원	270	180	30	30	30	-	-	-	-
마을단위 체육시설	210	80	40	40	50	-	-	-	-
농구장/족구장	650	-	-	-	-	-	-	-	-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레저스포츠시설 : 지특회계 이관('14년)

※ 출처 :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1.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서민형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국민건강, 체육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크게 3가지 형태로 수영장 기본형(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다목적 체육관형(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체육관 복합형(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이 있다. 국민체육센터 연도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는 11개소에 483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6개소 468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7-7. 지원시설

수영장 기본형	→	수영장(25m×4 6레인),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연면적 약 2,161㎡)
다목적 체육관형	→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연면적 약 1,867㎡)
체육관 복합형	→	수영장(25m×6레인),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연면적 약 4,029㎡)

※ 상기시설 기본으로 장애인 특화·편의시설을 확충한 장애인형 별도

※ 출처 :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표 7-8. 연도별·지역별 지원 실적

(단위: 억원, 개소)

지역	국민생활관	'97	'99	'00	'01	'02	'03	'04	'05	'06	
서울	종로	강서(90)				성동(30)					
부산	해운대		서구(37.5)			사하(30)	금정(30)	영도(30)		남구(30)	
	달서구		동구(37.5)				북구(30)	달서(30)	서구(30)		
인천	남동구		계양(37.5)		부평(30)		남동(30)	서구(30)			
	서구		광산(37.5)		서구(30)		북구(30)	남구(30)			
대전	서구		유성(22)			서구(30)			대덕(30)		
울산			중구(30)		동구(30)				북구(30)		
세종						연기(30)					
경기			의왕(30) 부천(30)			광명(30) 평택(30)	가평(30)	시흥(30) 하남(30)	화성(30) 오산(30)		
	춘천		춘천(30)	원주(30)			고성(30)	인제(30) 동해(30)	강릉(30)	평창(30)	
충북	청주	제천(45) <99.5>		충주(30)		보은(30)	청원(30)	음성(30)	증평(30)		
충남	아산		천안(30)	공주(30)	금산(30)		서산(30)	보령(30)	논산(30)	서천(30)	
전북	익산	익산(45)		전주(30)	군산(30)	정읍(30)	완주(30)	남원(30)	장수(30)		
전남	순천		강진(30) 목포(30)		무안(30)		영광(30) 곡성(30)	나주(30)	해남(30)	구례(30)	
경북	구미		영주(30) 군위(20)			문경(30) 경주(30)	안동(30)	포항(30)	상주(30)	경산(30)	
경남	마산		진해(30) 밀양(20)		함안(30)		의령(30)	양산(30) 진주(30)	거제(30)	거창(30)	
제주	서귀포		제주(30)	서귀포(22)				북제주(30)			
합계	개소수	15	3	17	5	7	10	13	16	12	6
	지원액	-		276	63	123	229	175	274	269	515

※ 사업취소 1개소('11년 대구 중구 2억원) 포함

※ 출처: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기장(29)	연제(30) 사상(30) 동래구(31) 북구(31)	강서구(30)	동구(32)	부산진구(31)		사하구(50)	수영구(32)	
			달성(29)		중구(30)	수성구(31)		달서구(31)	남구(32)	수성(50)
				중구(29)	강화군(32)			남구(31) 옹진군(32) 연수구(50)		남동(30)
			동구(31)			서구(50)				
		중구(30)				동구(32)		서구(31) 유성(50)		
		남구(29)					울주(29)			
양평(29)	포천(29) 안성(29)	남양주(28) 김포(27) 성남(27) 여주(28) 고양(27)	이천(29) 파주(28) 양주(28)	구리(29) 수원(27)	용인(27)			안산(28) 군포(29) 화성(28) 시흥(50)	수원(28) 부천(29)	남양주(29) 동두천(32)
태백(28)	속초(30) 횡성(31)	양구(31) 홍천(31) 정선(31)	영월(32)					양양(32)	철원(33) 화천(33)	
영동(30)		옥천(31) 단양(31)	진천(31) 괴산(32)				청주(30)		충주(50)	
	태안(30)	예산(31) 당진(29)	부여(32) 청양(32)				아산(29)	천안(29) 아산(50)		
	부안(32)	김제(31) 진안(31)	무주(32) 순창(33) 임실(33)	고창(33)				전주(30)	전주(50)	
진도(36) 여수(27)	장흥(32)	영암(31) 화순(30)	신안(33) 광양(29) 완도(33)			고흥(33) 장성(32)	담양(32) 보성(32)	순천(31)	여수(50)	
청도(30)	칠곡(29)	고령(31) 울릉(32)		김천(31) 의성(32) 영양(32) 성주(32)		영덕(32) 울진(32) 청송(32)		포항(29)	예천(33)	봉화(33) 영천(32)
김해(30)	통영(31)	사천(31) 고성(31) 하동(31) 산청(31) 창원(27)	창녕(32) 합천(32) 남해(32) 함양(32)					창원(29) 김해(30)	사천(50)	
		남제주(30)					제주(50)			
	7	13	29	20	10	10	6	19	11	6
	464	460	531	409	530	548	518	537	484	468

2.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은 학교부지를 활용한 주민체육관을 건립,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체육복지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지원 대상은 체육관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로 설정하였다. 지원 시설은 학교와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이다.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연도별 지원 실적에 따르면, 2015년 31개소에 252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24개소 147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7-9. 연도별·지역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개소)

구분 (시군구수)	'09	'10	'11	'12	'13	'14	'15	'16
서울(25)		동작구 동작초 (900)		중랑구 송곡고 (200)			도봉구 방학초 (840) 양천구 신월중 (660)	노원 영신여고 (900) 양천 신화중 (840)
부산(16)		북구 가림중 (900)	동래구 동신중 (480)	사상 덕상초 (854) 부산진 동평 중-1(900)	동구 부산중 (680) 연제구 토현중 (680)	남구 대천초 (790) 해운대 동백초 (700) 연제구 연제초 (790)	수영구 한바다중(900) 남구 남천중 (900)	부산진 광무여중(900) 금정 구서여중 (480)
대구(8)							서구 평리중 (3,000)	
인천(10)		강화 교동중 (480)					서구 신현북초 (675)	남동 구월초 (892)
광주(5)			북구 광주체고 (900)	북구 금파공고 (900)				
대전(5)		서구 서원초 (900)	서구 서중 (900)	유성 어은초 (752)	중구 대전중 (680)		서구 복수초 (900) 유성 송강초 (900)	서구 경림초 (900) 서구 탄방중 (900)
울산(5)					남구 장생포초 (500)			
세종								
경기(31)	가평 상면초 (410) 양평 개군초 (410)	안산 미디어고 (900) 고양 화정초 (600) 성남 이매중 (900)	고양 현산초 (600) 양주 삼송중 (461) 의왕 갈매중 (480)	광명 하안중 (690) 가평 설악고 (480) 양주 천보초 (480) 이천 모가중 (420)	양주 회천중 (400)	파주 금향초 (600) 수원 우만초 (726) 용인 서원고 (789)	의정부 회룡중 (413) 가평 가평초 (480) 고양 신일중 (3,000) 이천 백사초 (480)	용인 수지중 (900) 고양 신촌초 (690)
강원(18)	홍천 팔월고 (315) 횡성 강림중 (220)	인제 용대초 (480) 영월 옥동초 (480)	원주 귀래초 (390) 춘천 춘천초 (480) 홍천 화계초 (480)	영월 신천초 (480) 삼척 호산초 (270)	강릉 사천중 (400) 삼척 가곡중 (400)	횡성 안흥중고 (440) 삼척 미로중 (440)	영월 무릉초 (480) 정선 사북중고 (480) 고성 아야진초 (480)	횡성 수백초 (480)

구분 (시군구수)		'09	'10	'11	'12	'13	'14	'15	'16
충북(11)	영동 황간고 (415)	청원 미원초 (480)	진천 진천고 (480)	증평 죽리초 (480)			진천 문상초 (440)	진천 구경초 (450)	진천 학성초 (480)
	진천 이월중 (410)						제천 봉양초 (440)		
충남(15)	부여 백제중 (420)	금산 금산여고 (480)	천안 천안초 (444)	서천 장항중 (480)	당진 당진고 (400)		서천 장항고 (440)	서천 시초초 (450)	천안 천안동중 (900)
	홍성 광동초 (410)		공주 정보고 (480)	보령 웅천중고 (480)			태안 송암초 (480)	청양 수정초 (420)	서천 조선공고 (480)
전북(14)	무주 무주초 (420)	장수 개남초 (480)	익산 원광여중 (900)	남원 용성고 (480)	임실 대리초 (400)		익산 이리서초 (378)	정읍 정우초 (397)	전주 원동초 (396)
	완주 구이중 (410)		남원 용복중 (480)	진안 한국한방 고(480)	진안 마령고 (480)		익산 금마초 (680)	진안 강성초 (378)	남원 이백초 (396)
전남(22)	경진 강진여중 (425)	완도 노화고 (480)	영암 대불초 (375)	장흥 회덕중 (414)	장흥 장흥서초 (400)		여수 여양중고 (440)	무안 전남예고 (480)	담양 용면초 (480)
	보성 예담고 (337.5)		강진 중앙초 (480)	순천 도사초 (480)			완도 금일초 (480)	화순 아산초 (440)	영암 신북중 (480)
전남(22)	순천 매산중 (410)	장흥 장평초 (480)	담양 고서초 (465)				여수 종고초 (480)	완도 완도초 (3,000)	
	영암 도포중 (270)	담양 고서초 (465)	목포 대연초 (375)				목포 임성초 (375)		
전남(22)	장흥 관산초 (425)	목포 대연초 (375)	목포 임성초 (375)						
	진도 군내북초 (420)	목포 임성초 (375)	목포 임성초 (375)						
전남(22)	해남 송지중고 (337.5)	해남 송지중고 (337.5)	해남 송지중고 (337.5)						
	고령 대가야고 (420)	상주 화령초 (465)	포항 이동중 (530)						
경북(23)	상주 중모중 (420)	안동 경덕중 (480)	안동 경일고 (480)	성주 수륜초 (480)	상주 남부초 (400)	상주 공검초 (440)	영주 동산여중 (480)	경주 동방초 (480)	경주 동방초 (480)
	영양 영양초 (425)	구미 선주초 (480)	영천 영동중고 (480)	안동 안동여중 (480)	포항 양학초 (680)	포항 양학초 (680)	울진 노음초 (480)	상주 이안초 (480)	상주 이안초 (480)
경북(23)	영주 대영고 (415)	영주 대영고 (415)	영주 대영고 (415)						
	영천 영천전자 (415)	영천 영천전자 (415)	영천 영천전자 (415)						
경북(23)	예천 감천초 (420)	예천 감천초 (420)	예천 감천초 (420)						
	의성 의성초 (425)	의성 의성초 (425)	의성 의성초 (425)						
경남(18)		창녕 길곡초 (480)	창녕 진해여중 (570) 거창 대 성일고(480)	거제 수월초 (420)	거제 오비초 (400)	통영 산양중 (440)	김해 경운초 (604)		
		밀양 흥제중 (480)	창녕 남지중 (480)	통영 한산초 중 (480)	창녕 계창초 (400)	하동 횡천초 (440)	하동 횡천초 (440)		
제주(2)		제주 귀일중 (480)			제주 신성여고 (680)	제주 물메초 (790)	제주 광령초 (750)	제주 대흘초 (466)	제주 대흘초 (466)
							제주 구엄초 (800)	서귀포 보성초 (466)	서귀포 보성초 (466)
계	수량	25	27	25	22	19	21	31	24
	금액	9,825	14,940	13,270	11,700	9,300	11,300	25,260	14,712

※ 사업취소 1개소('11년 대구 중구 2억원) 포함
 ※ 출처 :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3.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목적은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의 노후가 심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미비하여 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장애인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보조(30%)로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였으며, 총464억원(노후체육시설 241억원 1천만원, 국민건강, 안전관련 긴급재보수 172억원 4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50억원 5천만원)이 지원되었다.

표 7-10.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개소)

구 분	합 계	'15				'16				'17계획
		소계	노후	안전	장애인	소계	노후	안전	장애인	
지원액	899	435	57.8	336.5	40.7	464	241.1	172.4	50.5	1,073
개소수	392	248	36	194	18	144	68	57	19	1,045

※ 출처 :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4.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목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및 빙상종목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유·청소년기에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스포츠의 즐거움 및 소질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한 인성함양 도모에 있다. 또한 다목적 체육센터, 유소년 축구장 등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을 위한 종목별 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신규 체육시설 건립 지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였다. 지원 조건은 사업 형태에 따른 정액 및 정률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한다. 지원 시설은 실내빙상장, 복싱센터, 다목적체육관, 유소년축구전용구장, 문화체육컴플렉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등이다.

표 7-11. 연도별 지원 내역

연도	지원내용	지원액(억원)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주복싱센터 10억원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주복싱센터 계속비 20억원, 산악문화체험센터 25억원 실내빙상장 4개소 1차년도 지원액 30억원,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2개소 40억원, 송파 문화체육회관 20억원 스포츠가치센터 등 2개소 4억원 	13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주복싱센터 계속비 39억원, 산악문화체험센터 계속비 18억원 실내빙상장 4개소 2차년도 지원액 51억원 유소년축구전용구장 3개소 60억원 다목적체육센터 4개소 80억원, 문화체육컴플렉스 1개소 30억원, 폐교활용스포츠센터 1개소 5억원 	283
'17(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빙상장 계속비, 다목적체육센터, 문화체육컴플렉스, 유소년축구전용구장 등 16개소 	379

※ 출처 : 2016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7)

제4절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리·운영 효율화

1. 체육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40시간 근무제와 주5일제 수업제의 정착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은 모든 국민들에게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건강의 유지와 체력을 증진하는 것에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되었다.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정부는 체육시설의 건립 등 여러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활동 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공공체육시설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설치 후 체육시설과 관련된 홍보 미흡으로 지역주민들은 체육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고, 건립 후 꾸준한 관리·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설활용도와 만족도가 민간체육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체육시설의 건립뿐만 아니라 이미 건립된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체육시설 공급기준은 참여인구와 시설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참여인구는 수요분석을 통해 도출된 종목별 참여율 예측치를 추세인구에 반영하여 산출한 참여인구를 기준으로 필요한 공급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접근성 기준은 서비스의 균등 배분 및 수요 집중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서비스 비혜택 인구를 기준으로 공급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성을 공급계획에 반영하여 중기계획에서는 비혜택 인구 및 비혜택지역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종목별로 지역에 따라 시설 이용인구가 평균보다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추가로 시설을 공급하도록 했다. 체육활동 참여자들이 선호 종목별 적정 서비스 거리 내에 입지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당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출된 서비스 거리는 실제

시설 위치를 중심으로 설정하며, 인구데이터와 함께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분석을 실시하여 시·구별, 종목별 비혜택 인구와 비혜택 면적을 산출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시설의 활용도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정책적 방향으로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첫째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노후화된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최신식의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작업은 동일한 종류의 체육시설을 새로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대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로 학교운동장과 같은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경비 소요가 부담스러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개정하여 개방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내에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을 건립과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드는 운동장·체육관과 같은 대형 체육시설은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다목적·다용도의 복합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체육시설건립 초기단계인 계획 단계부터 시설을 직접 이용할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해당 건립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 과 권장)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 제1항, 국민체육진흥시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국민체육진흥시책) 제1항 제3호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국민체육진흥시책) 제3조 제1항 제3호의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제5조(전문체육시설)·제6조(생활체육시설), 같은 법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서 다루는 사항이다.

공공체육시설의 공급 기본계획에서 차별화, 특성화, 복합화, 입체화, 실용화, 다양화,

유용화 등 다양한 비전 및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차별화는 접근용이도에 따라 종목별로 차별화된 시설 배치 유도, 종목별 참여수요 및 민간시설 공급 정도를 감안한 공급계획을 작성한다. 특성화로는 도시 및 농촌 등 지역 맞춤형 체육시설 건립, 도시지역 업무 중심지의 유동인구를 고려한 소규모 간이체육시설 건립,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 등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서의 체육시설 건립이 있다. 문화와 체육이 함께 하는 복합 문화체육 공간 조성, 생애주기별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종합 구현을 위한 복합공간 조성, 자원봉사자 중심 운영 등 저비용 운영이 복합화에 해당한다. 입체화는 타 부처 사업과 연계·협조에 의한 입체적 공간 확보, 도심의 자투리 공간, 지하철 역사, 기업 청사 등 유동인구 수용체육시설 확보, 그린벨트 등 체육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성 확대가 있다. 둔치, 폐교, 미사용 행정시설 등 미사용 시설의 발굴과 유휴공간과 숨어있는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야구장, 축구장 등 건립 방안 및 체육시설 설치는 실용화의 단계이다.

전문체육 기반 구축과 종목 다양성 제고 발판으로서 동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동계종목 수요변화 추세 검토 및 서비스의 균등 수혜, 동계체육시설의 수도권 편중 해소 및 권역별 빙상장 건립을 통해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노후시설 및 기능 변화 필요 시설의 리모델링 지원 등 기존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대형 전문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학교체육시설의 야간 개방 확대 등 이용 활성화 유도,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최적화로 정보 접근성 강화, 장애인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유용화를 추구하고 있다.

1) 지방체육시설 개·보수

다중체육시설인 대형운동장이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체육활동 및 경기관람 환경이 저하되어 이들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조치하였으나 기존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의 필요성과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0년 「국민체육진흥법」(2010년 1월 27일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2010년 9월 17일 공포)이 개

정되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시설 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대상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실내시설은 500석 이상, 실외시설은 1,000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시설로 제한)로 제한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5%이며, 개·보수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의 30%를 지원하도록 정해졌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많은 체육시설들이 편의성을 갖춘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다.

2) 공공체육시설 민간투자 여건조성 및 수익시설 설치기준 완화

프로경기단체가 사용하는 경기장 시설의 단기임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2월 4일 공표(같은 해 5월 5일 시행)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을 통해 기존 3년간의 단기임대에서 25년간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프로경기단체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투자, 공공체육시설의 현대화 작업 및 다양한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등을 위한 민간투자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2010년 3월 16일에 공표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법률 개정을 통해 종합운동장의 공간·기능적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고 체육시설 고유의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시설활용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종래 수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체육시설은 운동장의 규모가 100만㎡이상이거나 6종목 이상의 국제규격경기장을 갖춘 체육시설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 10만㎡이상이거나 3종목 이상의 국제규격경기장을 갖춘 체육시설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약 20여개 이상의 지방자

치단체 운동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

국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와 건강증진 및 유지에 관한 급격한 관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수와 규모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체육시설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 부족으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1년 7월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1년 10월에 인터넷 홈페이지(www.sportsmap.or.kr)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은 공공체육시설의 위치나 사진, 동영상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지도자, 홈페이지, 셔틀버스 정보, 각 공공체육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 운영요금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은 국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구축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기금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체육시설 지역별 균형배치 등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4) 공공체육시설(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학교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중 급격하게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은 공공체육시설의 신규 공급과 같은 효과를 내며 건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과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가 지원한 학교의 공공체육시설 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야간에도 생활체육이 가능하도록 야간조명시설 의무설치) 및 개방형 다

목적학교체육관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개방하는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지역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전 공공체육시설은 시설보호 위주로 관리·운영되었으나 현재는 활용 위주로 관리·운영하도록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 주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소외계층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및 장애인 이용편의 확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소외계층에 대해 일정부분 이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이용편의 시설을 설치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용료 감면은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를 근거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그 밖의 지방조례 등을 통하여 할인 대상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감면된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제25조에 따라 편의시설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까지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 2012년까지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 2015년까지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에까지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2.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1)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국내·외로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 스포츠환경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관련법을 통한 규제, 행정적·기술적 지원, 일깨움, 참여유도 등의 행정적 방안과 자원의 사용

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의 실천적 방안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이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최근 환경과 관련한 여러 정책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시행되면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응원문화 및 경기운영 방식의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하는 그린 스포츠(Green Sports)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4개 프로단체의 경우에는 2010년 3월 ‘그린스포츠 업무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실천행사로 관중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쓰레기 분리수거 유도, 응원문화의 개선 등을 통한 자원절약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 등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설치, 조명시설 자동제어기 설치, 물 절약 시설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강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은 매년 지방 체육행정공무원 및 지방 체육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경영마인드의 도입과 시설운영 개선을 유도하고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중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과목을 개설하여 체육시설의 시간적·공간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연간 약 80여 명의 지방 체육행정공무원 및 체육시설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변화된 체육환경과 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실무를 이해함으로써 지방 체육행정의 선진화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도 「체육시설업」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배치, 안전·위생 기준 등의 안전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되 시설의 특성 및 지역여건에 맞게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동장, 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빙상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 및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경기 개최시설 등 대형 인명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체육활동 외 공연 행사 등으로 대관 시에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 관리자 선임, 작업자 안전관리수칙 준수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절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배경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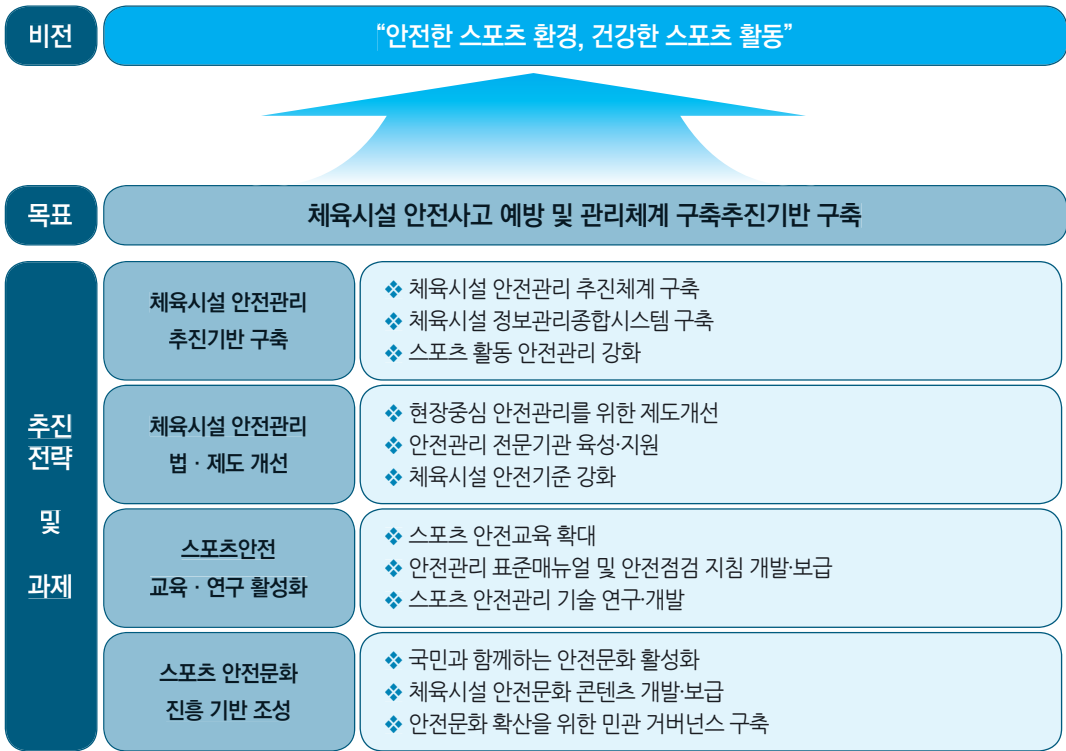
1) 추진배경

기존 체육시설 관련 정책은 공급확대와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체육시설 건립단계부터의 체계적 안전관리 요구가 증가하였다.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년 2월 3일 공포) 및 시행(2015년 8월 4일)되었으며,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을 보면, 「체육시설법」 제4조의2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중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2) 추진목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가 기본시책과 목표를 제시하고 체육시설(약 7만 8천여 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인 재난예방 체계 구축을 통한 체육시설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데 있다. 안전한 스포츠 환경,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반구축,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스포츠안전교육·연구 활성화, 스포츠안전 문화 진흥 기반 조성의 세부목표가 있으며,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추진 목표는 <그림 7-2>와 같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16)

그림 7-2. 제1차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

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과제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기반 구축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스포츠 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상시적,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대 핵심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기반 구축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4대 핵심 전략 첫 번째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기반 구축이다. 세부적으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체육현장에서 실질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문체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 부과이다. 민관 합동으로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안전(C)등급 이하, 민간 등록·신고 체육시설, 육상 레저스포츠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시설은 이용 제한 및 사용 중지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특별 관리한다. 셋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 역할 분담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추진할 때, 중앙은 시스템 구축,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등, 중앙과 지방의 업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체육시설에는 인증 부여, 건립 및 개·보수 예산 지원 등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한다. 넷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 구축이다. 전국에 산재한 체육시설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안전관리와 온라인 교육 등이 가능한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을 구축해, 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2016년에는 안전점검시스템 등 주요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2017년에는 대민서비스 누리집 구축 등을 통해 이용 대상을 확대하며, 3차 연도인 2018년에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과 외부 정보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시스템을 완성한다. 다섯째,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 강화이다. 체육시설 이외에도 각종 스포츠대회 및 행사 개최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에서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스포츠활동 현장에서의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제세동기(AED) 등 응급 구호장비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한다. 최근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생활체육공원 등의 야외 운동기구를 대상으로 제조 및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2)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종의 확대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업자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도를 개선하였다.

첫째,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계획, 점검, 평가, 조치의 일관 관리체계를 구축 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실질적인 체육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지원·평가함으로써 집행과 지원·평가를 분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소규모 체육시설 4개 업종(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민간체육시설의 95%인 53,823개소)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육성한다.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안전점검 및 교육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가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기존의 시설안전관리 전문 업체가 스포츠 활동과 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교육은 스포츠안전재단이 안전교육을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표준화법」 등의 안전검사 적용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스포츠용품과 용기구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개발원을 지정함으로써 용품 및 용기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한다. 셋째, 체육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체육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구체화하고, 미규정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정하여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신규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등록 시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시설 종류별로 안전·위생 기준의 구체화와 세부기준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업, 스포츠클럽 등 청소년이용 체육시설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확대해 지정하고,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사회인 야구장, 탁구장 등을 기타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번지점프, झ라인 등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

진하며, 입법 전이라도 번지점프, 짚라인, 카트 등 사고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조정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레저스포츠 시설 건설 관련 면허 제도에 대한 합리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3) 스포츠 안전교육·연구 활성화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관련 지침(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첫째, 스포츠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체육시설 관리자와 실무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준을 제정하여 공공체육 시설 관리자와 담당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체육 활동 중의 안전사고와 재난·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일부 교과목은 사이버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응급처치 요령, 안전사고 시 행동 요령 등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한다. 둘째,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및 안전점검 지침을 개발·보급한다.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별로 규모와 건축 구조, 이용 계층, 이용자 수, 활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특별한 전문성과 지식이 없어도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및 조직, 안전점검의 주기와 방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셋째,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체육 분야의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체육시설과 용품,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산업 등 안전관리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안전관리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 산업의 등장을 유도한다.

4)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

대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첫째,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이다. 체육활동 시작 전 준비운동, 응급처치, 대피로 확보, 보호 장비 착용 등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5분 안전 교육’ 운동을 전개하고, ‘스포츠레저안전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와의 안전협약 체결, 아이디어 공모, 안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둘째, 체육시설 안전문화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일반 이용자 기능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안전지도 보급, 위험시설에 대한 신고 서비스 제공, 우수시설 공개, 안전 정보 제공 등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민간 포털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체육시설 안전 관련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동영상과 웹툰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안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이다.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민관 협업을 통한 선진화된 안전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단체, 안전 유관 기관, 민간단체, 프로단체 등 22개 기관) 참여를 통해 민관이 함께 안전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동으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시민단체와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정책 감시, 제안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 참여 영역을 개방한다. 예시하면, 스포츠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스포츠안전 홍보대사 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2016. 2. 4.~2018. 2. 3.)를 위촉하여 활용한다.

8

2016 SPORT WHITE PAPER

체육전문인력

제1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제2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제1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1. 선수·코치·심판

1) 종목별 등록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2016년 말 기준 등록선수는 137,748명으로 2015년 142,832명에 비하여 5,084명(3.5%)이 감소하였다. 종목별 등록선수는 축구가 26,81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야구, 소프트볼(12,415명), 태권도(12,254명), 궁도(10,802명), 육상(5,132명)이 뒤를 잇고 있으며, 루지(22명), 봅슬레이·스켈레톤(110명), 카바디(155명), 트라이애슬론(193명), 바이애슬론(274명), 공수도(300명), 세팍타크로(281명), 수상스키, 웨이크보드(319명), 스쿼시(335명), 근대5종(473명) 종목은 등록선수가 500명 미만으로 저변이 취약한 실정이다. 종목별 등록선수 현황은 <표 8-1>과 같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선수 974명, 중학교 선수 1,825명, 고등학교 선수 356명, 대학교 선수 176명이 감소하였다. 일반선수의 경우는 40,364명으로 1,771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앞으로 체육분야 전문선수들의 유입 확대를 위해 프로구단 뿐만 아니라 실업팀 지원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연도별 등록선수 수는 <표 8-2>와 같다.

표 8-1. 종목별 등록선수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시·도청 (체육회 포함)		경기단체		기업 (공공기관, 군 포함)		기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검 도	1,666	1,494	172	142	22	399	35	377	45	305	27	146	13	-	-	9	3	116	27
골 프	2,384	1,344	1,040	197	208	341	361	651	402	151	65	-	-	3	3	1	-	-	1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시·도청 (체육회 포함)		경기단체		기업 (공공기관, 군 포함)		초등학교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공 도	10,802	9,442	1,360	-	-	-	-	69	35	-	-	67	-	-	-	-	-	9,306	1,325
근대5종	473	301	172	12	16	114	71	101	60	25	7	35	14	3	-	11	4	-	-
농 구	2,407	1,649	758	369	264	448	198	370	162	295	94	-	31	-	-	27	8	140	1
당 구	916	808	108	5	4	11	15	30	12	-	-	14	5	747	71	1	1	-	-
댄 스 스 포 츠	556	235	321	7	16	19	44	56	98	19	17	-	-	75	87	51	52	8	7
력 비	1,274	1,259	15	-	-	489	-	433	-	242	-	-	-	-	-	70	15	25	-
레 슬 링	1,701	1,485	216	9	1	644	28	431	102	217	26	80	53	48	6	56	-	-	-
롤 러	981	642	339	291	131	145	80	77	50	22	6	51	38	1	4	-	5	55	25
루 지	22	13	9	-	-	4	5	-	-	3	2	-	-	6	2	-	-	-	-
바 득	1,136	848	288	338	80	174	70	65	19	31	3	-	-	145	86	2	-	93	30
바 이 애 슬 론	274	168	106	75	41	22	12	23	17	12	2	12	11	19	22	5	-	-	1
배 구	2,621	1,695	926	522	316	353	225	316	180	215	48	45	72	32	-	108	-	104	85
배드민턴	2,216	1,330	886	511	316	283	201	238	170	177	107	72	40	6	6	43	46	-	-
보디빌딩	2,172	1,807	365	-	-	1	0	166	0	129	11	101	2	4	-	11	1	1,395	351
복 상	1,572	1,416	156	-	-	519	1	528	70	158	20	80	19	2	-	22	-	107	46
볼 링	1,574	916	658	47	17	217	136	227	138	158	88	50	86	12	6	10	7	195	180
봅슬레이 스켈레톤	110	87	23	-	-	-	-	14	3	12	2	6	-	45	18	4	-	6	-
빙 상	1,648	663	985	228	461	151	284	102	148	59	37	33	21	7	2	23	3	60	29
사 격	3,556	2,309	1,247	31	15	454	448	430	347	196	110	95	74	2	0	63	38	1,038	215
산 약	1,663	1,130	533	62	73	46	44	178	45	45	16	0	0	0	0	5	5	794	350
세 일 링	536	450	86	31	9	57	28	63	11	30	11	50	0	16	1	11	0	192	26
세 팍 타 크 로	281	171	110	-	-	25	5	76	47	36	8	25	32	4	13	5	5	-	-
수 상 스 키·웨이 크 보 드	319	208	111	4	3	7	4	36	27	16	9	-	-	-	-	-	-	145	68
수 영	3,547	2,150	1,397	815	599	517	399	410	232	122	44	129	104	133	10	22	8	2	1
수 중 핀 수 영	3,793	2,600	1,193	117	77	33	36	121	66	41	14	36	29	11	11	7	0	2,234	960
스 퀴 시	335	208	127	18	14	28	6	52	38	36	26	24	23	38	15	-	-	12	5
스 키	813	566	247	189	81	97	51	98	52	93	29	15	11	56	23	17	-	1	-
승 마	816	539	277	63	62	66	53	66	29	97	50	-	-	-	-	1	-	246	83
씨 림	1,660	1,660	-	505	-	409	-	319	0	203	-	195	-	6	-	23	-	-	-

442 Section 08 체육전문인력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시·도청 (체육회 포함)		경기단체		기업 (공공기관, 군 포함)		초등학교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아이스하키	2,792	2,491	301	1,772	245	351	32	131	-	119	-	-	-	-	23	118	-	-	-
야구소프트볼	12,415	11,893	522	4,155	10	4,008	116	2,647	148	1,055	124	-	45	-	13	18	13	10	53
양궁	1,819	983	836	356	320	198	208	147	145	73	67	43	47	-	-	23	28	143	21
에어로빅	1,067	236	831	25	175	13	57	31	40	38	70	7	4	-	1	-	-	122	484
역도	1,138	765	373	-	-	329	164	259	118	60	22	83	54	16	3	14	10	4	2
우슈	993	773	220	181	54	119	39	216	46	59	23	87	2	41	1	13	-	57	55
유도	3,265	2,354	911	508	164	735	292	659	226	272	136	99	72	9	11	64	8	8	2
육상	6,132	3,769	2,363	1,256	898	1,025	634	854	433	298	125	-	-	-	-	-	-	336	273
자전거	1,059	794	265	202	47	215	61	214	83	36	6	71	51	8	2	48	15	0	-
경구	1,397	800	597	317	247	161	139	136	120	96	9	83	65	-	-	7	17	0	-
조정	1,145	783	362	-	-	28	33	125	78	295	111	54	59	5	-	38	4	238	77
철인3종	193	130	63	17	2	33	14	11	10	4	1	37	21	22	14	3	-	3	1
체조	1,033	503	530	166	213	105	116	89	103	76	48	39	33	2	2	19	6	7	9
축구	26,812	25,187	1,625	3,680	327	5,514	426	4,333	414	2,680	214	0	22	-	-	-	-	8,980	222
카누	640	454	186	-	-	128	72	149	53	97	17	50	29	6	7	12	1	12	7
카바디	155	121	34	-	-	-	-	54	-	57	26	-	-	-	-	-	-	10	8
컬링	709	353	356	53	51	70	71	83	104	2	3	18	22	127	104	-	-	-	1
크리켓	256	245	11	-	-	-	-	-	-	-	-	-	-	-	-	-	-	245	11
탁구	1,457	713	744	279	279	143	155	133	122	87	93	26	38	7	10	29	47	9	-
태권도	12,254	8,814	3,440	1,519	664	2,161	881	2,711	980	1,643	618	-	-	-	-	-	-	780	297
택견	553	408	145	99	33	98	27	39	8	74	39	-	-	96	38	-	-	2	-
테니스	1,530	893	637	307	233	187	154	208	97	121	83	51	48	4	12	13	8	2	2
펜싱	1,634	920	714	-	-	417	333	273	207	116	75	52	96	28	2	30	-	4	1
하키	1,385	755	630	-	-	275	228	245	204	148	94	53	86	12	-	22	18	-	-
핸드볼	2,091	1,130	961	303	262	242	198	188	167	314	216	21	60	-	-	62	58	-	-
계	137,748	105,860	31,888	19,783	7,050	22,628	7,290	20,058	6,511	10,965	3,099	2,235	1,532	1,804	629	1,141	435	27,246	5,342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표 8-2. 연도별 등록선수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합계
2015		27,807	31,743	26,925	14,240	42,117	142,832
2016		26,833	29,918	26,569	14,064	40,364	137,748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2)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국가대표 선수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파견하기 위하여 각 경기단체가 선발·확정한 선수를 말한다. 국가대표 선수선발은 경기단체에서 국내·외 대회성적 및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발전가능성, 기초체력 및 기술, 대표코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협회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는 하계 38개 종목, 동계 7개 종목 1,232명, 코치는 257명이다. 자세한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는 <표 8-3>과 같다.

표 8-3.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수

(단위: 명)

구분	종목	인원				
		코치	선수			계
			남	여	소계	
하계 (38)	양궁	8	12	12	24	32
	육상	6	20	7	27	33
	배드민턴	7	20	20	40	47
	야구	3	24	-	24	27
	농구	4	12	12	24	28
	볼링	4	8	8	16	20
	복싱	6	20	6	26	32
	카누	4	12	4	16	20
	사이클	7	20	11	31	38
	승마	3	12	-	12	15
	펜싱	7	24	24	48	55
	축구	4	18	18	36	40
	골프	4	8	8	16	20
	체조	12	10	24	34	46
핸드볼	8	22	22	44	52	

구분	종목	인원				
		코치	선수			계
			남	여	소계	
	하키	8	24	24	48	56
	유도	8	18	18	36	44
	공수도	2	5	5	10	12
	근대5종	5	8	8	16	21
	조정	3	11	9	20	23
	력비	5	18	14	32	37
	요트	6	16	7	23	29
	세팍타크로	4	12	12	24	28
	사격	14	36	28	64	78
	카바디	2	12	12	24	26
	스쿼시	2	5	5	10	12
	수영	12	34	22	56	68
	탁구	5	10	10	20	25
	태권도	7	16	16	32	39
	테니스	3	6	6	12	15
	트라이애슬론	3	4	4	8	11
	배구	7	16	16	32	39
	역도	7	14	12	26	33
	레슬링	10	32	12	44	54
	우슈	3	8	5	13	16
	정구	3	10	10	20	23
	소프트볼	3	-	17	17	20
	크리켓	4	15	15	30	34
소계	38종목	213	572	463	1,035	1,248
	빙상	9	24	26	50	59
	스키	14	32	15	47	61
	아이스하키	5	22	21	43	48
동계(7)	바이애슬론	4	8	8	16	20
	컬링	5	6	6	12	17
	봅슬레이스켈레톤	5	16	5	21	26
	루지	2	5	3	8	10
소계	7종목	44	113	84	197	241
합계	45종목	257	685	547	1,232	1,489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3) 심판

심판은 운동경기에서 승패와 관련된 판정을 하는 자로 경기단체에서 종목별 자격조건을 가진 자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종목별 협회에 따라 조금

씩 다르지만 선수출신자, 체육관련 전공자, 기타 대상자에 대해 소정의 교육과정과 실기 및 필기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종목별 심판 수는 <표 8-4>와 같다.

국내심판은 총 122,268명으로 태권도(23,122명), 수영(14,727명), 축구(6,826명), 족구(6,020명), 육상(4,03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심판은 총 3,787명으로 태권도(1,344명), 탁구(328), 사격(189명), 역도(178명), 수상스키(14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심판 수 대비 국제심판 수의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해당 종목 심판이 국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심판 수 대비 국제심판 수의 비율은 근대5종, 레슬링, 빙상, 아이스하키, 사격, 정구 순으로 나타나 해당 종목의 심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야구는 국내심판 30명이 전부 국제심판 자격을 갖고 있다.

국제심판이 선정되는 절차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축구의 경우 대한축구협회가 국내 1급 심판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아시아축구연맹에 추천을 하게 되면 아시아축구연맹은 서류심사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 3급 국제심판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제심판은 언어, 체력, 규정 이해도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하

표 8-4. 종목별 심판 수

(단위: 명)

구분	인원										합계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9,430	18,975	86,521	7,278	122,268	700	778	1,377	932	3,787	125,999
검도	37	1,698	311	-	2,046	33	-	-	-	33	2,079
골프	-	-	-	18	18	-	-	-	7	7	25
궁도	354	493	2,145	-	2,992	-	-	-	-	0	2,992
근대5종	9	34	7	-	50	7	16	32	-	55	105
농구	316	1,114	1,968	-	3,398	-	-	-	116	116	3,514
당구	-	-	128	-	128	-	-	19	25	44	172
댄스스포츠	32	52	113	62	259	-	-	-	29	29	288
력비	10	8	6	-	24	-	-	1	-	1	25
레슬링	21	10	32	-	63	-	-	-	67	67	130
롤러	40	44	53	-	137	-	-	5	18	23	160
루지	12	-	-	-	12	-	-	-	-	0	12
바둑	-	38	39	-	77	-	-	-	-	0	77
바이애슬론	9	24	160	-	193	-	-	-	22	22	215
배구	124	41	50	-	215	-	-	-	14	14	229
배드민턴	59	301	628	808	1,796	3	7	3	-	13	1,809

구분 종목	인원										합계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9,430	18,975	86,521	7,278	122,268	700	778	1,377	932	3,787		
보디빌딩	352	375	-	-	727	-	-	-	31	31	758	
복싱	292	45	-	22	359	11	12	17	-	40	399	
봅슬레이/스켈레톤	-	52	-	-	52	23	-	-	-	23	75	
빙상	-	-	-	93	93	20	42	-	-	62	155	
사격	-	-	-	403	403	27	162	-	-	189	592	
사이클	1,020	-	-	35	1,055	-	-	-	2	2	1,057	
산악	클라이밍	35	52	-	-	87	2	2	-	4	95	
	일반등산	43	195	-	-	238	-	-	-	0	238	
	산악스키	11	8	34	-	53	-	-	-	2	55	
세팍타크로	38	50	556	-	644	54	-	-	-	54	698	
소프트볼	24	38	53	-	115	-	-	-	16	16	131	
수상스키	39	120	1,392	4	1,555	2	48	53	40	143	1,698	
수영	309	1,080	13,338	-	14,727	1	1	2	38	42	14,769	
수중	-	12	620	-	632	21	-	-	-	21	653	
스쿼시	12	31	616	-	659	-	-	15	-	15	674	
스키	26	104	1,369	-	1,499	15	15	20	-	50	1,549	
승마	장애물	9	13	32	-	54	-	-	-	11	65	
	마장마술	4	28	24	-	56	-	-	-	4	60	
씨름	69	37	181	-	287	-	-	-	-	0	287	
아이스하키	6	6	19	33	64	-	31	3	-	34	98	
야구	-	-	-	30	30	-	-	-	30	30	60	
양궁	129	153	264	-	546	-	-	-	3	3	549	
역도	133	123	234	-	490	96	82	-	-	178	668	
요트	2	3	180	-	185	-	-	-	2	2	187	
우슈	76	116	510	-	702	14	23	15	-	52	754	
유도	935	-	-	-	935	39	38	-	-	77	1,012	
육상	1,097	983	1,953	-	4,033	-	2	-	-	2	4,035	
정구	19	145	24	-	188	3	50	42	-	95	283	
조정	-	-	-	190	190	-	-	-	12	12	202	
족구	109	423	5,488	-	6,020	-	-	-	-	0	6,020	
체조	-	-	-	357	357	2	13	10	68	93	450	
축구	569	500	4,258	1,499	6,826	-	-	-	28	28	6,854	
카누	90	70	185	-	345	-	-	-	13	13	358	
카바디	-	58	257	-	315	-	-	-	21	21	336	
컬링	5	10	412	-	427	-	-	-	-	0	427	
탁구	25	190	867	-	1,082	-	-	-	328	328	1,410	
태권도	겨루기	801	2,363	18,446	-	21,610	45	120	948	28	1,141	22,751
	품세	33	137	1,342	-	1,512	31	82	90	-	203	1,715
택견	-	91	422	-	513	-	-	-	-	0	513	
테니스	30	56	224	582	892	-	2	4	12	18	910	
트라이애슬론	30	416	3,408	-	3,854	15	7	2	-	24	3,878	
펜싱	36	107	-	-	143	1	31	-	4	36	179	
하키	-	-	-	77	77	-	-	-	8	8	85	
핸드볼	465	991	-	-	1,456	4	6	4	-	14	1,470	

※ 주 : 각 종목별 심판급수가 다름. 위 표에 맞게 획일적으로 기입한 것임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고, 국제대회 심판경력과 심판능력에 대한 기존 심판들의 정성평가, 구전, 개인의 커리어에 대한 평가 등이 중요하다.

각 협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심판의 양성과 자원에 힘쓰고 있다. 체육인재아카데미는 2009년부터 국제심판의 해외강습회 참가를 지원하여 종목별 최신규정 습득 및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국제심판으로서의 글로벌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2016년에는 국제심판 자격취득 41명, 국제심판 역량강화교육 32명을 교육하였으며, 구체적인 국제심판 자격취득 및 역량강화 교육 현황은 <표 8-5>와 같다.

표 8-5. 국제심판 자격취득 및 역량강화 교육 현황

(단위: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국제심판 자격취득	39	52	43	24	25	29	34	41	287
국제심판 역량강화교육	-	-	-	-	-	26	38	32	96

※ 출처: 체육인재아카데미 내부자료(2017)

2. 체육계 고등학교 및 대학(원)

1) 고등학교

2016년 고등학교 체육계열학과와 학생 수는 169개 학과 4,623명(남자 3,112명, 여자 1,511명)이다. 대부분이 골프관련 학과(전체학과 중 23.0%)이며,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분류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일반계고에는 골프관련 학과 외에 체육과, 스포츠경기가과가 있으며, 전문계고에서는 바둑과, 관광레저경영과, 스포츠마케팅과, 실용무용과, 레저스포츠과,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경영과, 스포츠건강관리과, 건강과학과가 있었다. 구체적인 고등학교 체육계열학과 및 학생 수는 <표 8-6>과 같다.

표 8-6. 고등학교 체육계열학과 및 학생 수

(단위: 개/명)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합계	남	녀
일반계고	체 육 과	101	3,089	2191	898
	골 프 과	6	111	72	39
	스 포 츠 경 기 과	9	282	174	108
	골 프 경 기 과	3	41	31	10
	골 프 지 도 과	3	32	21	11
	골 프 산 업 과	1	14	8	6
전문계고	바 독 과	6	105	85	20
	관 광 레 저 경 영 과	9	226	84	142
	스 포 츠 마 케 팅 과	2	47	43	4
	실 용 무 용 과	3	115	34	81
	골 프 과	3	64	42	22
	골 프 관 리 과	12	234	170	64
	레 저 스포 츠 과	4	100	56	44
	생 활 체 육 과	3	87	51	36
	레 저 스포 츠 경 영 과	1	12	3	9
	필 드 매 니 저 과	3	64	47	17
	관 광 골 프 운 영 과	2	60	35	25
	골 프 산 업 경 영 과	3	74	64	10
	스 포 츠 건 강 관 리 과	3	76	-	76
	골 프 산 업 과	3	91	-	91
	건 강 과 학 과	6	155	98	57
	합	계	169	4,623	3,112

※ 주: 학과 수는 해당 학과에 학생 수가 한 명 이상인 학과 기준임
 ※ 주: 2015년 체육백서는 일반계고 학과를 제외한 전문계고 학과만 수록
 ※ 주: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내용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7)

2) 전문대학(2, 3년제)

2016년 전문대학 체육계 학과와 학생 수는 254개 학과 17,524명이다. 2015년에 비해 16개 학과가 증가하였으며, 학생 수도 336명이 증가하였고 전문대학의 체육계학과 교원 수는 2015년 286명에서 2016년에 291명으로 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는

사회체육학과(1,892명), 생활체육과(1,164명), 레저스포츠과(1,15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체육계열 전문대학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는 <표 8-7>과 같다.

표 8-7. 체육계열 전문대학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

(단위: 개/명)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남	녀	합계	남	녀
2013	267	22,358	18,072	4,286	357	296	61
2014	248	20,211	16,470	3,741	312	260	52
2015	238	17,188	13,884	3,304	286	233	53
2016	254	17,524	13,996	3,528	291	237	54
골프경영과	1	3	3	-	-	-	-
관광레저경영과	2	283	127	156	-	-	-
관광레저경영학과(1년과정)	1	1	1	-	-	-	-
골프비즈니스과	1	173	141	32	2	2	-
관광레저과	1	1	1	-	-	-	-
레저관광전공	1	14	11	3	-	-	-
관광레저복지과	1	127	93	34	2	1	1
태권도외교행정과	1	2	2	-	-	-	-
자동차모터스포츠과	1	164	164	-	4	4	-
e-스포츠게임과	1	2	2	-	-	-	-
승마산업학과	1	48	28	20	1	1	-
말산업스포츠계열	1	7	6	1	-	-	-
의료건강관리학부	1	1	1	-	-	-	-
보건운동관리학과	1	21	12	9	-	-	-
보건운동관리전공	2	165	106	59	4	1	3
재활스포츠과	4	526	419	107	7	6	1
재활운동건강과	3	234	186	48	3	1	2
재활스포츠과(예체능)	1	35	28	7	2	2	-
스포츠재활과(자연)	1	33	19	14	2	2	-
무용과	1	32	7	25	-	-	-
무용전공	1	79	30	49	3	-	3
실용무용전공	1	2	2	-	-	-	-
실용무용과	1	96	40	56	2	1	1
건강관리과	1	104	65	39	2	1	1
경호스포츠과	3	209	180	29	1	1	-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남	녀	합계	남	녀
경호전공	1	142	125	17	-	-	-
경호태권도과	1	3	3	-	-	-	-
골프지도과	2	2	1	1	-	-	-
관광레저스포츠계열	1	376	331	45	3	2	1
관광레저스포츠과	2	326	308	18	5	5	-
레저스포츠계열	5	67	65	2	-	-	-
레저스포츠과	17	1154	924	230	22	22	-
레저스포츠전공	5	329	297	32	4	4	-
레저스포츠학과	4	268	209	59	6	2	4
사회체육계열	1	30	22	8	3	3	-
사회체육과	23	1892	1618	274	20	18	2
사회체육전공	1	44	38	6	-	-	-
사회체육학과	2	14	7	7	-	-	-
생활스포츠과	1	82	77	5	-	-	-
생활스포츠학과	2	8	4	4	-	-	-
생활체육과	12	1164	897	267	27	20	7
생활체육학과	3	49	29	20	-	-	-
스포츠과학과	2	348	306	42	4	4	-
아동스포츠과	1	2	-	2	-	-	-
아동체육과	1	41	-	41	-	-	-
요가과	1	50	3	47	1	-	1
체육과	1	33	33	-	-	-	-
태권도과	6	85	77	8	1	1	-
태권도외교과	3	364	318	46	9	8	1
태권도체육계열	1	205	168	37	5	5	-
경호스포츠학부	1	8	8	-	-	-	-
골프경기지도과	1	322	245	77	8	5	3
스포츠건강관리과	6	545	465	80	11	9	2
실용댄스과	1	170	49	121	1	-	1
생활체육학부	1	374	298	76	7	7	-
레크리에이션과	2	217	180	37	3	2	1
레포츠지도과	1	50	48	2	-	-	-
사회체육학부	2	18	14	4	-	-	-
생활레저스포츠과	1	21	19	2	-	-	-
스포츠과학학부	1	3	3	-	-	-	-
이종격투기전공	1	30	26	4	-	-	-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남	녀	합계	남	녀
경호무도과	1	1	1	-	-	-	-
골프과	2	23	21	2	-	-	-
경호안전전공	1	1	1	-	-	-	-
스포츠복지과	2	51	45	6	2	2	-
승마조련전공	1	7	7	-	-	-	-
생활체육계열(생활체육전공)	1	44	40	4	-	-	-
경호합기도과	1	1	1	0	-	-	-
레저스포츠과	1	126	113	13	2	1	1
국제스포츠초무도전공	1	1	1	-	-	-	-
경호행정학과	1	10	9	1	-	-	-
국제태권도과	1	19	18	1	-	-	-
태권도체육학과	3	203	149	54	4	3	1
스포츠지도과	4	622	502	120	12	11	1
체육경호계열	1	1	1	-	-	-	-
운동재활과	2	158	122	36	2	1	1
스포츠재활과	5	448	333	115	10	7	3
특수체육전공	1	9	7	2	-	-	-
골프지도전공	1	21	17	4	-	-	-
스포츠레저과	4	322	274	48	12	10	2
해양레저스포츠과	1	5	5	0	-	-	-
골프지도&사회스포츠과	1	3	3	-	-	-	-
생활체육레저과	2	285	247	38	4	3	1
경호스포츠전공	1	10	10	-	-	-	-
스포츠·피트니스계열	1	1	1	-	-	-	-
태권도외교학과	1	41	33	8	-	-	-
태권도경영과	1	8	8	0	-	-	-
축구과	2	93	93	-	3	3	-
해양산업잠수과	1	119	118	1	2	2	-
스포츠경호계열	1	18	18	-	-	-	-
스포츠·피트니스과	1	1	1	-	-	-	-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1	162	129	33	3	2	1
경호보안과	4	159	150	9	4	3	1
생활체육계열(스포츠재활전공)	1	90	78	12	-	-	-
관광레저스포츠학과	1	38	23	15	-	-	-
스키스노보드전공	1	42	40	2	-	-	-
경찰경호스포츠과	2	93	75	18	2	2	-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남	녀	합계	남	녀
스포츠·건강관리과	1	81	69	12	-	-	-
스포츠레저학부	1	407	361	46	4	4	-
골프레저스포츠전공	1	4	4	-	-	-	-
태권도지도과	1	12	12	-	-	-	-
예술체육학부 생활체육학과	1	9	9	-	-	-	-
특수체육재활과	1	1	1	-	-	-	-
스포츠지도전공	1	19	10	9	-	-	-
경호태권도경영과	1	91	76	15	2	2	-
레저스포츠과 해양관광레저산업전공	1	82	-	82	2	1	1
레저스포츠과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1	78	-	78	2	-	2
경호스포츠과학학부	1	426	362	64	9	9	-
생활체육지도과	1	4	4	-	-	-	-
골프산업과	4	196	148	48	6	6	-
경호보안계열	2	146	135	11	-	-	-
재활스포츠학과	1	51	37	14	-	-	-
이종격투기·국제주짓수전공	1	4	4	-	-	-	-
정통태권도과	1	1	1	-	-	-	-
스포츠지도학과	1	49	35	14	-	-	-
태권도경호과	1	151	134	17	2	2	-
말산업레저스포츠과	1	28	22	6	-	-	-
골프산업학과	1	37	28	9	-	-	-
생활스포츠골프과	2	151	115	36	3	2	1
레저스포츠과 골프전공	1	31	25	6	-	-	-
레저스포츠과 레저스포츠전공	1	35	30	5	-	-	-
레저스포츠과 야구전공	1	10	10	-	-	-	-
국제스포츠계열	1	32	25	7	1	1	-
재활레저스포츠과	1	173	141	32	4	3	1
스포츠케어과	1	116	91	25	3	3	-
스포츠·경호보안학부	1	227	193	34	4	3	1
스포츠안전지도과	2	89	78	11	-	-	-
스포츠복지과(인문사회)	1	78	65	13	2	2	-
스포츠재활학과	1	24	16	8	-	-	-
운동건강과	1	88	59	29	4	3	1
스포츠승마과	1	21	10	11	2	2	-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남	녀	합계	남	녀
레크리에이션학과	1	9	6	3	-	-	-
스포츠레저학과	1	17	16	1	-	-	-
스포츠재활운동학부	2	83	52	31	4	4	-
재활무도과	1	20	20	-	-	-	-
축구학과	1	9	9	-	-	-	-

※ 주 : 학과 수는 해당 학과에 재적학생 수가 한 명 이상인 학과 기준임

※ 주 : 학과 정렬은 한국교육개발원 학과코드에 준함

※ 주 : 2014년 체육백서는 무도학과 통계적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2015년 체육백서는 예체능 분야이외의 학과(스포츠경영학 및 의학 등)는 제외되었다.

※ 주 : 교육대학,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대학), 각종대학(대학), 원격대학(대학), 사내대학(대학), 사이버대학(대학)이 포함됨

※ 주 : 2017년 4월 1일 기준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7)

3) 대학교(4년제)

4년제 대학교 체육계열학과 학생 수는 2015년 473개 학과, 69,069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501개 학과 71,643명으로 학과 수는 28개 증가하였고, 학생 수 역시 2,574명이 증가하였다. 교원 수는 2015년 1,489명에서 2016년 1,548명으로 59명 증가하였다. 학생 수는 체육학과(6,794명), 체육교육과(5,222명), 사회체육학과(4,215명), 태권도학과(3,539명), 생활체육학과(2,61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체육계열 대학교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는 <표 8-8>과 같다.

표 8-8. 체육계열 대학교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

(단위: 개/명)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남	녀	합계	남	녀
2013	599	78,348	60,637	17,711	1,554	1,238	316
2014	540	77,150	59,184	17,921	1,581	1,259	322
2015	473	69,069	52,883	16,186	1,489	1,190	299
2016	501	71,643	54,297	17,346	1,548	1,239	309
문화스포츠선교학전공	1	2	2	-	-	-	-
태권도선교학과	1	156	124	32	3	3	-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남	녀	합계	남	녀
스포츠산업학과	2	481	383	98	11	10	1
스포츠아웃도어학과	1	163	91	72	19	13	6
스포츠경영학과	4	533	429	104	9	7	2
스포츠경영학전공	2	153	138	15	-	-	-
스포츠산업학과	1	207	173	34	5	5	-
스포츠산업학부	1	33	33	-	1	1	-
스포츠산업학전공	1	99	83	16	3	3	-
골프경영학과	2	118	107	11	-	-	-
스포츠경영관리학전공	1	4	4	-	-	-	-
레저관광경영학과	1	281	165	116	8	8	-
스포츠마케팅학과	3	536	447	89	9	8	1
관광레저학과	2	192	114	78	2	2	0
레저컨벤션학과	1	2	2	-	-	-	-
국제레저관광학과	1	316	120	196	5	2	3
레저&리조트학과	1	59	40	19	5	5	-
노인체육복지학과	1	278	219	59	6	3	3
스포츠-재활복지학부 (재활복지전공)	1	47	28	19	-	-	-
특수체육교육과	7	1183	951	232	34	25	9
체육교육과	27	5222	4383	839	189	164	25
스포츠건강의학과	1	82	72	10	4	3	1
무용과	9	1073	129	944	26	1	25
무용예술학과	4	469	57	412	11	2	9
무용전공	4	284	60	224	11	4	7
무용학과	19	1805	313	1492	58	11	47
무용학부	2	240	47	193	3	-	3
무용학전공	1	91	22	69	-	-	-
민속무용학과	1	106	16	90	4	-	4
발레전공	1	59	17	42	-	-	-
생활무용예술학과	1	122	22	100	4	1	3
한국무용전공	2	66	20	46	-	-	-
현대무용전공	1	69	31	38	-	-	-
무용복지전공	1	3	-	3	-	-	-
실용무용지도과	1	1	1	-	-	-	-
실용무용전공	1	89	31	58	2	-	2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남	녀	합계	남	녀
실용무용지도학과	1	19	7	12	1	1	-
공연영상창작학부(무용전공)	1	230	58	172	6	3	3
공연예술무용과	1	122	18	104	3	-	3
무용	1	20	7	13	2	-	2
건강관리전공	1	9	6	3	-	-	-
건강관리학과	3	294	150	144	6	4	2
건강스포츠전공	1	5	5	-	-	-	-
격지지도학과	1	190	168	22	5	5	-
경기지도학과	2	128	116	12	6	5	1
경기지도학전공	1	18	16	2	-	-	-
경찰무도학과	1	31	26	5	-	-	-
경호비서학과	3	337	293	44	4	3	1
경호정보전공	1	1	-	1	-	-	-
경호학과	3	423	359	64	8	6	2
경호학부	2	135	109	26	12	12	-
골프전공	1	145	116	29	3	2	1
골프지도학과	1	221	177	44	3	3	-
골프학과	2	217	169	48	4	2	2
동양무예학과	1	324	276	48	7	7	-
레저스포츠전공	7	414	320	94	3	2	1
레저스포츠학과	14	2444	2031	413	42	35	7
무도학과	1	10	9	1	-	-	-
바둑학과	1	199	167	32	4	2	2
사회체육과	1	4	4	-	-	-	-
사회체육전공	2	343	281	62	6	6	-
사회체육학과	27	4215	3582	633	74	66	8
사회체육학부	7	999	871	128	18	17	1
사회체육학전공	4	791	669	122	6	5	1
산업스포츠학과	1	134	128	6	1	1	-
생활스포츠학부	1	109	91	18	-	-	-
생활체육전공	3	453	385	68	6	6	-
생활체육지도학과	1	128	90	38	4	3	1
생활체육학과	15	2614	1982	632	56	48	8
생활체육학부	1	204	183	21	-	-	-
스포츠건강과학과	1	213	172	41	4	2	2
스포츠과학과	12	2479	2016	463	58	53	5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남	녀	합계	남	녀
스포츠과학부	7	2384	1972	412	42	39	3
스포츠과학전공	2	523	430	93	5	3	2
스포츠레저학과	9	1762	1337	425	48	43	5
스포츠레저학부	2	9	9	-	-	-	-
스포츠의학전공	1	139	112	27	-	-	-
스포츠지도전공	1	57	46	11	-	-	-
스포츠지도학과	3	879	749	130	9	8	1
스포츠학과	4	211	177	34	4	3	1
운동처방학과	3	634	487	147	8	8	-
운동처방학전공	1	224	178	46	3	2	1
유도학과	1	445	407	38	7	7	-
체육계열	1	1	1	-	-	-	-
체육과학부	2	67	6	61	8	4	4
체육전공	3	338	294	44	3	2	1
체육학과	30	6794	5088	1706	173	148	25
체육학부	12	1763	1508	255	37	34	3
체육학전공	5	961	778	183	7	6	1
태권도전공	7	203	173	30	2	2	-
태권도학과	20	3539	2840	699	59	51	8
특수체육학과	2	435	346	89	9	8	1
해양스포츠학과	2	387	301	86	10	10	-
해양체육학과	1	165	136	29	5	5	-
동양무예전공	1	121	106	15	2	1	1
한방스포츠의학과	1	244	183	61	7	5	2
스포츠건강관리학과	5	1104	869	235	21	17	4
경기지도전공	1	219	163	56	5	4	1
체육과학전공	2	366	87	279	-	-	-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3	267	219	48	3	3	-
무도경호학과	2	238	200	38	5	5	-
스포츠복지학과	1	34	29	5	-	-	-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1	267	229	38	-	-	-
체육학부 태권도학전공	2	301	248	53	-	-	-
체육학부(사회체육학전공)	1	147	135	12	-	-	-
체육학부(운동과학전공)	1	95	77	18	-	-	-
체육학부(체육학전공)	1	112	97	15	-	-	-
태권도학부	1	49	44	5	-	-	-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남	녀	합계	남	녀
경호전공	2	310	245	65	4	4	-
스포츠미디어학과	1	14	14	-	-	-	-
스포츠과학부(생활체육학전공)	1	355	314	41	8	6	2
스포츠과학부(골프지도전공)	1	236	171	65	4	4	-
체육학부(태권도)	1	198	156	42	4	3	1
스포츠의학과	6	1136	818	318	17	16	1
무도체육학과	1	3	3	-	-	-	-
생활무용학과	1	179	30	149	3	1	2
헬스케어정보전공	1	1	1	-	-	-	-
스포츠학부	4	498	429	69	10	9	1
경호무도지도학과	1	25	24	1	-	-	-
국제스포츠레저전공	1	189	155	34	-	-	-
국제스포츠레저학부	1	35	23	12	4	4	-
체육학부 생활체육학전공	1	140	123	17	-	-	-
스포츠레저복지전공	1	4	4	-	-	-	-
골프산업학과	2	304	219	85	6	6	0
골프산업학전공	1	105	77	28	1	-	1
체육학부 경기지도학전공	1	188	172	16	7	7	-
운동처방재활학과	5	402	309	93	1	1	-
태권도경기지도학과	1	288	211	77	8	8	-
유도경기지도학과	1	358	292	66	8	7	1
운동건강관리전공	1	167	134	33	1	1	-
레포츠과학부	1	138	122	16	-	-	-
스포츠복지학부	1	1	1	-	-	-	-
축구전공	1	36	36	-	-	-	-
레저스포츠·건강학과	1	5	5	-	-	-	-
복지스포츠학과	1	2	2	-	-	-	-
임상건강운동학과	1	213	173	40	4	3	1
공연예술무도학과	1	47	39	8	-	-	-
실버스포츠산업학과	1	214	179	35	-	-	-
건강증진학과	1	221	143	78	4	3	1
무도경찰경호학부	1	19	18	1	-	-	-
경호보안전공	1	91	81	10	2	2	-
스포츠건강학부	1	128	110	18	8	6	2
축구학과	3	438	431	7	7	7	-
태권도경호학과	4	344	289	55	5	5	-

458 Section 08 체육전문인력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남	녀	합계	남	녀
경호보안학과	2	492	394	98	9	9	-
태권도.경호학과	1	13	9	4	-	-	-
검도학과	1	126	114	12	3	3	-
운동건강관리학과	1	277	213	64	11	9	2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1	270	213	57	7	4	3
무술경기지도전공	1	1	1	-	-	-	-
스포츠산업과학부골프전공	1	16	14	2	-	-	-
우슈경기지도전공	2	5	5	-	-	-	-
해양레저학과	1	137	117	20	7	6	1
스포츠복지경영학과	1	12	11	1	-	-	-
스포츠복지전공	1	3	3	-	-	-	-
스포츠산업과학부 사회체육학전공	1	94	78	16	-	-	-
운동건강학부	1	366	275	91	9	7	2
국제스포츠학과	1	191	157	34	4	2	2
스포츠산업-복지학과	1	251	228	23	3	3	-
태권도스포츠학부	1	5	5	-	-	-	-
스포츠재활학과	2	22	14	8	-	-	-
마산업학과	2	12	10	2	-	-	-
경찰경호무도학과	1	117	116	1	3	3	-
무술경호전공	1	12	10	2	-	-	-
스포츠격기에이전시학과	1	9	7	2	-	-	-
항공레저산업학과	1	129	106	23	2	2	-
경호무도비서학과	1	95	86	9	1	1	-
스포츠문화학과	1	44	41	3	-	-	-
골프학과	1	85	71	14	3	2	1
스포츠산업정보학과	1	6	6	-	-	-	-
스포츠·재활복지학부 (사회체육전공)	1	85	73	12	-	-	-
체육학부(체육)	1	264	220	44	6	4	2
스포츠건강재활전공	1	116	93	23	7	5	2
스포츠산업-레저전공	1	87	72	15	5	5	-
경호무술청소년학과	1	26	16	10	-	-	-
국제스포츠학부	1	319	234	85	9	7	2
경호보안학전공	2	240	204	36	-	-	-
무도지도학전공	2	124	84	40	-	-	-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남	녀	합계	남	녀
웰빙체육학부	1	122	94	28	5	3	2
스포츠레저학전공	1	93	84	9	-	-	-
경호무도학과	1	40	32	8	3	2	1
건강스포츠학부	2	130	77	53	7	6	1
스포츠건강재활학부 스포츠건강관리전공	1	226	183	43	5	5	-
스포츠건강재활학부 스포츠재활전공	1	127	89	38	5	3	2
스포츠지도경영학과	1	17	13	4	-	-	-
태권도운동처방학과	1	125	117	8	2	2	-
야구산업학과	1	12	12	-	-	-	-
스포츠교육전공	1	95	82	13	6	4	2
해양레저관광학과	1	196	154	42	5	5	-
스포츠헬스케어학과	1	103	80	23	4	4	-
무도경호학과(신)	1	120	106	14	4	3	1
골프레저산업학과	1	11	11	-	3	3	-
스포츠건강관리학	1	29	21	8	4	4	-
스포츠학부 골프전공	1	38	33	5	1	1	-
스포츠학부 레저스포츠전공	2	69	54	15	4	3	1
스포츠학부 마산업전공	2	46	36	10	4	3	1
스포츠학부 스포츠재활전공	2	70	46	24	3	3	-
실버스포츠학과	1	45	33	12	3	3	-
체육학/레저스포츠	1	86	71	15	4	4	-
태권도경호학부	1	30	24	6	5	5	-

※ 주 : 학과 수는 해당 학과에 재적학생 수가 한 명 이상인 학과 기준임

※ 주 : 학과 정렬은 한국교육개발원 학과코드에 준함

※ 주 : 2014년 체육백서는 무도학과 통계적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2015년 체육백서는 예체능 분야이외의 학과(스포츠경영학 및 의학 등)는 제외되었다.

※ 주 : 교육대학,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대학), 각종대학(대학), 원격대학(대학), 사내대학(대학), 사이버대학(대학)이 포함됨

※ 주 : 2017년 4월 1일 기준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7)

4) 대학원(석, 박사과정)

대학원 체육계열학과 석사과정은 2015년 276개 학과, 6,365명에서 2016년 337개 학과 7,428명으로 61개 학과가 증가하였으며, 학생 수는 1,063명 증가하였다. 박사과정은 2015년 114개 학과, 1,559명에서 2016년 122개 학과 1,579명으로 8개 학과가 증가하였으며, 학생 수는 20명 증가하였다. 석사과정 학생 수는 체육교육전공(2,944명), 체육학과(891명), 무용학과(41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박사과정 학생 수는 체육학과(858명), 무용학과(143명), 스포츠과학과(10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체육계열 대학원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는 <표 8-9>와 같다.

표 8-9. 체육계열 대학원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

(단위: 개/명)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2013	352	116	7,868	5,510	2,358	1,665	1,081	584	50	31	19
2014	348	116	7,877	5,419	2,458	1,707	1,072	636	54	32	22
2015	276	114	6,365	4,297	2,079	1,559	953	606	73	47	26
2016	337	122	7,428	4,988	2,440	1,579	970	609	82	52	30
스포츠경영전공	1	-	27	13	14	-	-	-	1	1	-
스포츠경영학과	6	1	142	125	17	2	2	-	3	2	1
스포츠관리전공	1	-	20	15	5	-	-	-	-	-	-
스포츠마케팅학과	1	-	5	4	1	-	-	-	-	-	-
스포츠산업학과	5	1	34	28	6	1	-	1	-	-	-
태권도산업경영학과	1	-	1	1	-	-	-	-	-	-	-
스포츠산업경영전공	1	1	3	2	1	13	8	5	2	2	-
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	1	1	41	34	7	10	6	4	-	-	-
축구산업전공	1	-	28	26	2	-	-	-	-	-	-
골프·리조트경영학과	1	-	18	16	2	-	-	-	-	-	-
스포츠산업학전공	1	-	12	8	4	-	-	-	-	-	-
스포츠관광융합학과	1	-	19	10	9	-	-	-	-	-	-
스포츠공학융합학과	1	-	27	20	7	-	-	-	-	-	-
스포츠테크노산업학과	1	-	5	4	1	-	-	-	-	-	-
관광레저산업학과	1	-	2	1	1	-	-	-	-	-	-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스포츠언론정보전공	1	-	15	11	4	-	-	-	-	-	-
스포츠미디어콘텐츠전공	1	-	1	1	-	-	-	-	-	-	-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1	-	38	28	10	-	-	-	-	-	-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1	1	3	3	-	3	1	2	-	-	-
아동스포츠교육전공	2	-	5	4	1	-	-	-	-	-	-
초등체육교육전공	17	3	327	255	72	14	12	2	-	-	-
무용교육전공	7	-	144	5	139	-	-	-	1	-	1
생활체육교육전공	1	-	5	5	-	-	-	-	-	-	-
체육교육과	2	2	64	44	20	28	19	9	-	-	-
체육교육전공	59	1	2944	2201	743	25	20	5	46	29	17
체육교육학과	-	1	-	-	-	8	4	4	-	-	-
학교체육교육	1	-	49	28	21	-	-	-	-	-	-
태권도교육학과	1	-	10	10	-	-	-	-	-	-	-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전공)	1	1	87	56	31	11	7	4	-	-	-
해양스포츠과학전공	1	-	6	4	2	-	-	-	-	-	-
스포츠IT융합학	1	1	48	35	13	17	15	2	-	-	-
스포츠정보기술융합학과	1	-	26	20	6	-	-	-	4	3	1
융합건강과학전공	-	1	-	-	-	2	-	2	-	-	-
무용과	1	-	8	-	8	-	-	-	-	-	-
무용학과	22	11	411	81	330	143	19	124	-	-	-
무용학전공	1	-	7	6	1	-	-	-	-	-	-
민속무용학과	1	1	5	4	1	3	-	3	-	-	-
전통무용전공	1	-	44	-	44	-	-	-	1	1	-
표현예술학과	1	-	1	-	1	-	-	-	1	-	1
무용예술학과	1	-	10	2	8	-	-	-	-	-	-
생활무용전공	1	-	29	4	25	-	-	-	-	-	-
공연예술학과 무용극전공	1	-	4	-	4	-	-	-	-	-	-
무용공연예술학과	1	-	15	1	14	-	-	-	-	-	-
실용무용전공	1	-	27	12	15	-	-	-	-	-	-
무용융합콘텐츠학과	1	-	4	-	4	-	-	-	-	-	-
경호학과	2	2	26	21	5	23	21	2	-	-	-
골프학과	2	-	20	11	9	-	-	-	-	-	-
레저스포츠학과	9	3	86	62	24	31	28	3	2	2	-
바둑학과	1	1	8	6	2	4	3	1	-	-	-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보건체육학과	1	-	18	11	7	-	-	-	-	-	-
사회체육학과	10	5	59	43	16	34	29	5	-	-	-
생활스포츠학과	1	1	24	13	11	12	9	3	-	-	-
생활체육전공	2	-	107	83	24	-	-	-	1	1	-
생활체육학과	3	1	27	22	5	5	5	-	-	-	-
스포츠과학과	15	8	148	102	46	103	78	25	-	-	-
스포츠과학학과	2	-	24	14	10	-	-	-	-	-	-
스포츠지도전공	2	-	16	11	5	-	-	-	-	-	-
스포츠학과	2	-	61	46	15	-	-	-	-	-	-
체육 및 여가교육전공	1	-	86	49	37	-	-	-	-	-	-
체육과학과	2	2	11	3	8	14	2	12	-	-	-
체육무도학과	1	-	4	3	1	-	-	-	1	1	-
체육학과	64	59	891	601	290	858	562	296	1	-	1
체육학전공	2	-	10	8	2	-	-	-	-	-	-
태권도학과	4	2	79	72	7	19	15	4	-	-	-
특수체육학과	2	1	28	20	8	8	8	-	-	-	-
요가학과	1	-	24	2	22	-	-	-	-	-	-
뇌교육학과	1	1	76	9	67	61	20	41	9	5	4
태권도전공	1	-	44	43	1	-	-	-	-	-	-
건강관리전공	1	-	101	81	20	-	-	-	-	-	-
심심통합치유학과	1	1	34	6	28	17	4	13	3	1	2
골프매니지먼트전공	1	-	1	-	1	-	-	-	-	-	-
스포츠산업정보학과	1	1	21	16	5	10	9	1	-	-	-
건강과학과	1	1	13	5	8	3	2	1	-	-	-
스포츠기록분석전공	1	-	16	15	1	-	-	-	1	1	-
경호무도학과	1	-	16	11	5	-	-	-	-	-	-
스포츠예술산업학과	1	-	25	16	9	-	-	-	-	-	-
골프경영학과	2	-	16	16	-	-	-	-	-	-	-
운동생리·처방학과	1	-	2	2	-	-	-	-	-	-	-
무도학과	2	1	17	17	-	11	7	4	-	-	-
스포츠·태권도학전공	1	1	5	5	-	1	1	-	2	2	-
스포츠레저학과	2	1	53	34	19	56	33	23	-	-	-
생활체육교육학과	1	-	43	25	18	-	-	-	1	-	1
체육학과(체육학전공)	1	-	2	2	-	-	-	-	-	-	-
축구학과	2	-	20	20	-	-	-	-	-	-	-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야구학과	1	-	11	11	-	-	-	-	-	-	-
골프산업학과	2	-	32	29	3	-	-	-	-	-	-
건강레저전공	1	-	72	47	25	-	-	-	-	-	-
스포츠지도학과	1	-	5	4	1	-	-	-	-	-	-
임상건강운동학과	1	-	5	4	1	-	-	-	-	-	-
태권도교육전공	1	-	3	3	-	-	-	-	-	-	-
경호보안학과	1	1	9	8	1	12	10	2	-	-	-
골프레저학과	1	-	12	11	1	-	-	-	2	1	1
스포츠코칭학과	1	-	18	15	3	-	-	-	-	-	-
무도학전공	1	-	5	5	-	-	-	-	-	-	-
항공해양스포츠학과	1	-	4	3	1	-	-	-	-	-	-
글로벌스포츠티더전공	1	-	45	37	8	-	-	-	-	-	-
스포츠문화학과	1	-	11	11	-	-	-	-	-	-	-
융합요가학과	1	-	17	2	15	-	-	-	-	-	-
운동과학학과	1	-	4	3	1	-	-	-	-	-	-
스포츠커뮤니케이션융합전공	1	-	30	22	8	-	-	-	-	-	-
태권도·골프전공	1	1	13	12	1	13	11	2	-	-	-
건강과학산업학과	1	-	34	25	9	-	-	-	-	-	-
레저및경기지도학과	1	-	15	12	3	-	-	-	-	-	-
글로벌골프전공	1	-	14	10	4	-	-	-	-	-	-
글로벌스포츠학과	1	-	20	16	4	-	-	-	-	-	-
도장경영학과	1	-	1	1	-	-	-	-	-	-	-
신체활동레저학과	1	-	7	5	2	-	-	-	-	-	-
체육과학부	1	1	7	-	7	4	-	4	-	-	-
골프과학 및 산업전공	1	-	8	6	2	-	-	-	-	-	-
골프과학전공	1	-	4	3	1	-	-	-	-	-	-
골프비즈니스전공	1	-	6	5	1	-	-	-	-	-	-
국제CKD무도학과	1	-	1	1	-	-	-	-	-	-	-
스포츠비즈니스전공	1	-	4	4	-	-	-	-	-	-	-
골프산업·경영전공	1	-	28	20	8	-	-	-	-	-	-

※ 주: 학과 수는 해당 학과에 재적학생 수가 한 명 이상인 학과 기준임

※ 주: 학과 정렬은 한국교육개발원 학과코드에 준함

※ 주: 2014년 체육백서는 무도학과 통계적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2015년 체육백서는 예체능 분야이외의 학과(스포츠경영학 및 의학 등)는 제외되었다.

※ 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 주: 2017년 4월 1일 기준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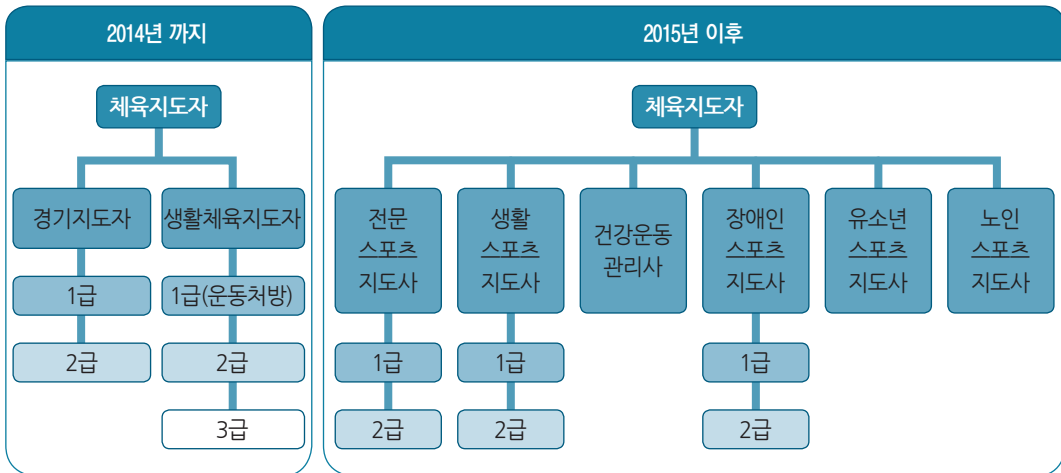
제2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1.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1) 자격체계

2012년 2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고 2015년 1월 1일로 시행됨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가 개편되었다. 개정된 자격체계는 취득순서가 기존의 실기 → 구술시험 → 연수 → 필기시험에서 필기시험 →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실무)로 바뀌었다는 큰 특징이 있다. 특히, 기존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되었던 자격이 전문, 생활, 건강, 장애인, 유소년, 노인으로 세분화되었다. 구체적인 자격체계 현행 및 개정 비교는 <표 8-10>과 같다.

표 8-10. 자격체계 기존 및 현행 비교표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17)

2) 지도대상 및 분야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지도대상 및 분야는 지도내용, 대상, 분야에 따라 구분하였다. 스포츠종목은 대상에 따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구분하였으며, 비장애인은 다시 연령별 구분을 두어 유소년, 청소년/성인, 노인으로 분화되었다. 각각의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전문,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자격등급 및 종류를 구체화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체화하였으며, 운동수행방법 지도관리의 경우 건강운동관리사로 구체화하였다. 구체적인 체육지도자 지도대상 및 분야는 <표 8-11>과 같다.

표 8-11. 체육지도자 지도대상 및 분야

지도내용	대 상		분 야	자격등급 · 종류
스포츠종목	비장애인	유소년 (만3세~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체육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전문체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거 1급 경기지도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거 2급 경기지도자
			생활체육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과거 2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과거 3급 생활체육지도자
		노인 (만65세 이상)	생활체육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 ※ 전문체육, 생활체육, 종목 단계인 기초운동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운동수행방법 지도·관리			건강운동관리사 ※과거 1급 생활체육지도자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17)

3) 자격정의

체육지도자는 총 5개 자격으로 나누어진다. 스포츠지도사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의 구체적인 체육지도자 자격정의는 <표 8-12>와 같다.

표 8-12. 체육지도자 자격정의

구분	정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건강운동관리사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사람을 말함. ※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 관리함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17)

4) 자격요건

개정 전·후 자격요건의 가장 큰 특징은 학력제한이다. 즉, 개정 후 학력에 따른 구분이 제외되었다. 또한 1급을 제외한 2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18세 이상으로 두어 체육전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구체적인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은 <표 8-13>과 같다.

5) 자격종목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은 <표 8-14>와 같으며, 명칭변경(4종목)과 더불어 종목추가(12종목)가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기존 생활체육 종목(54종목)에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종목이 추가되었으며, 노인스포츠지도사는 그라운드 골프가 추가되었다.

표 8-13.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과 거		현 행	
1급 경기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경기 + 경기지도 경력 1년 ■ 체육 석사 + 경기/경기지도 경력 1년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종목 2급 전문 취득 후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
2급 경기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분야 학사 ■ 대학교 졸업+경기경력 4년 ■ 전문대학 졸업+경기경력 5년 ■ 고교 졸업+경기경력 6년/국가대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종목 경기경력 4년 이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급 생활체육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생체 + 선수/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3년 ■ 체육분야 학사 ■ 대학교/체육분야 전문대학 졸업+선수/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2년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종목 2급 생활 취득 후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3급 생활체육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1급 생활체육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생체 + 선수/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3년 ■ 체육분야 석/박사 ■ 운동처방전공 석사 	건강운동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1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종목 2급 장애인 취득 후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노인 스포츠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17)

6) 자격검정 필기시험과목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스포츠영양학이 새로 포함되었고,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가 포함되었다. 1급 생활스

표 8-14.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과 거		현 행	
경기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댄스스포츠, 태권	전문 스포츠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종목 유지 ■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목
생활 체육 (42)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생활 스포츠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종목 ■ 명칭변경(4) 사이클→자전거, 산악→등산, 수중→스킨스쿠버, 인라인롤러→인라인스케이트 ■ 종목 추가(12)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목
		장애인 스포츠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수도, 골볼, 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댄스스포츠, 럭비, 펜싱,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컬링 ■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목
		유소년 스포츠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종목(54) +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목
		노인 스포츠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종목(54) + 그라운드 골프 ■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목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17)

포츠지도사의 경우 체육측정평가론이 추가되었으며,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가 새로 포함되었다. 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과목이 새로 포함되었다. 이외에 1급/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필수로 각 대상에 따른 개론과목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과목은 <표 8-15>와 같다.

표 8-15.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과목

과 거		현 행	
1급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 9과목 *영어, 컴퓨터, 스포츠심리학Ⅱ, 스포츠생리학Ⅱ, 스포츠생체역학Ⅱ, 스포츠사회학Ⅱ, 트레이닝론Ⅱ, 코칭론Ⅱ, 스포츠의학 	1급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 4과목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2급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 8과목 *영어, 한국체육사, 스포츠심리학Ⅰ, 스포츠생리학Ⅰ, 스포츠생체역학Ⅰ, 스포츠사회학Ⅰ, 트레이닝론Ⅰ, 체력측정평가 실기와 구술시험 	2급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 5과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7과목중 5과목 선택) 실기 및 구술시험
2급 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 9과목 *건강교육,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역학, 트레이닝론, 체력검사, 인체해부학, 운동상해 실기와 구술시험 	1급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 4과목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실기 및 구술시험
3급 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 8과목 *생활체육론, 건강관리,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레크리에이션론, 트레이닝론, 구급 및 안전관리 실기와 구술시험 	2급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 5과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7과목중 5과목 선택) 실기 및 구술시험
1급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 12과목 *운동심리학, 생체역학, 심폐소생법, 운동생리학, 운동영양학, 기능해부학, 병리생리학, 심전도원리, 운동부하 검사, 체력 및 건강검사, 체력육성지도법, 운동처방론 	건강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 8과목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 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실기 및 구술시험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1급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 4과목 *장애인스포츠론,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실기 및 구술시험, 장애유형에 따른 지도방법
		2급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 5과목 *필수(1) : 특수체육론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및 구술시험, 장애유형에 따른 지도방법
		유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 5과목 *필수(1) : 유아체육론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및 구술시험, 유소년 발육 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 : 5과목 *필수(1) : 노인체육론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및 구술시험,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17)

2.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은 필기검정기관,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연수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필기검정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담당하며,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은 비장애인의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담당을 하고 장애인의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담당을 한다. 태권도를 제외한 종목은 각 종목 경기단체에서 자격검정을 주관하지만, 태권도의 경우 국기원에서 단일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구체적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은 <표 8-16>과 같다.

표 8-16.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자격구분	기관명	비고
전문스포츠지도사(1급,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	※ 경기단체 주관 ※ 태권도 종목에 한해 국기원을 해당 자격 단일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
장애인 스포츠지도사(1급, 2급)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진흥공단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17)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개소,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5개소,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개소,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1개소, 유소년스포츠지도사 5개소, 노인스포츠지도사 7개소, 건강운동관리사 4개소,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4개소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구분된 구체적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은 <표 8-17>과 같다.

표 8-17.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구분	총 개소	지역	연수 기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개소	수도권	국민체육진흥공단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5개소	수도권	한국체육대, 국기원
		경상	동아대
		충청	충남대
		전라	조선대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개소	수도권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라	원광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1개소	수도권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경상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영남대
		충청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전라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	강릉원주대
		제주	제주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5개소	수도권	중앙대
		경상	경남대
		충청	호서대
		전라	광주대
		강원	가톨릭관동대
노인스포츠지도사	7개소	수도권	연세대, 이화여대
		경상	신라대
		충청	대전대
		전라	목포대, 호남대
		강원	가톨릭관동대
건강운동관리사	4개소	수도권	연세대
		경상	계명대
		충청	순천향대
		전라	조선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4개소	수도권	용인대
		경상	대구대
		충청	백석대
		전라	원광대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17)

3. 체육지도자 양성

1) 연도별 양성 현황

연도별 체육지도자 양성현황은 <표 8-18>과 같다. 각 자격등급별, 성별로 제시하였다. 체육지도자는 총 266,690명이 양성되었다. 구체적으로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97명,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35,985명이 양성되었으며,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9,511명,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10,016명이 양성되었고 건강운동관리사는 1,569명이 양성되었다. 2015년부터 신설된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3,607명이 양성되었으며, 노인스포츠지도사는 3,669명,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036명이 양성되었다.

표 8-18. 체육지도자 연도별 양성 현황 (단위: 명)

자격등급	남자			여자			성별불명			남녀합계		
	2016년	2015년 이전	계	2016년	2015년 이전	계	2016년	2015년 이전	계	2016년	2015년 이전	계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57	1,020	1,077	21	199	220	-	-	-	78	1,219	1,297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974	27,501	29,475	797	5,707	6,504	-	6	6	2,771	33,214	35,985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89	6,885	7,074	88	2,349	2,437	-	-	-	277	9,234	9,51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6,142	148,638	154,780	3,070	52,138	55,208	-	28	28	9,212	200,804	210,016
건강운동관리사	206	871	1,077	78	414	492	-	-	-	284	1,285	1,569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391	334	725	183	128	311	-	-	-	574	462	1,036
유소년스포츠지도사	921	1,148	2,069	712	825	1,537	1	-	1	1,634	1,973	3,607
노인 스포츠지도사	840	539	1,379	1,083	1,207	2,290	-	-	-	1,923	1,746	3,669
합계	10,720	186,936	197,656	6,032	62,967	68,999	-	34	35	16,753	249,937	266,690

※ 주 : 성별불명에 대한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주 : 한명이 다중목을 취득한 경우는 개별 합산됨
 ※ 주 : 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 2014년까지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로 양성된 인원임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17)

2) 종목별 양성 현황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은 <표 8-19>와 같다. 2016년까지 총 266,690명이 양성되었다. 종목이 가장 많은 순으로는 보디빌딩(64,460명), 태권도(31,168명), 수영(25,156명), 배드민턴(15,609명), 에어로빅(15,265명), 축구(12,660명), 골프(11,007명)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은 <표 8-19>와 같다.

표 8-19.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명)

종목	전 체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검 도	2,319	141	93	2,085
게 이 트 볼	3,539	297	211	3,031
골 프	11,007	203	254	10,550
궁 도	169	20	50	99
근 대 5 종	223	10	8	205
농 구	7,703	486	452	6,765
당 구	1,014	50	25	939
라 켓 볼	236	-	3	233
레 슬 링	1,044	68	49	927
레 크 리 에 이 셴	2,258	489	305	1,464
루 지	12	-	1	11
리 듨 체 조	59	8	5	46
배 구	4,653	458	346	3,849
배 드 민 턴	15,609	1,049	800	13,760
보 디 빌 디ング	64,460	6,019	3,793	54,648
복 싱	3,241	159	113	2,969
볼 링	7,633	136	114	7,383
빙 상	1,612	46	27	1,539
사 격	1,097	75	78	944
자 전 거	828	36	45	747
등 산	832	81	47	704
세 팍 타 크 로	107	5	4	98
소 프 트 볼	145	11	13	121
수 상 스 키	405	17	10	378
수 영	25,156	757	460	23,939

종목	전 체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스킨스쿠버	348	24	24	300
스쿼시	3,206	39	30	3,137
스키	1,945	58	59	1,828
승마	1,764	133	58	1,573
씨름	873	80	65	728
아이스하키	238	26	11	201
야구	4,206	383	281	3,542
양궁	687	43	45	599
에어로빅	15,265	474	819	13,972
역도	701	91	64	546
오리엔티어링	220	28	29	163
요트	930	36	117	777
우슈	1,315	45	12	1,258
윈드서핑	342	11	11	320
유도	3,391	222	144	3,025
육상	2,648	199	154	2,295
정구	673	66	61	546
조정	567	40	25	502
체조	1,573	59	28	1,486
축구	12,660	1,179	813	10,668
카누	656	30	46	580
컬링	151	26	13	112
탁구	5,711	411	276	5,024
태권도	31,168	760	537	29,871
테니스	6,886	168	110	6,608
트라이애슬론	117	5	4	108
펜싱	591	106	32	453
하키	461	51	47	363
핸드볼	762	103	104	555
행글라이딩	9	1	-	8
바이애슬론	67	8	8	51
인라인스케이트	871	78	82	711
력비	322	46	53	223
봅슬레이스켈레톤	22	7	8	7
댄스스포츠	264	152	45	67
족구	106	61	45	-

종목	전 체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철 인 3 종 경 기	19	7	12	-
패 러 글 라 이 디ング	33	19	14	-
풋 살	238	88	150	-
파 크 골 프	37	28	9	-
등 산	7	3	4	-
공 수 도	59	8	5	46
택 견	160	-	1	159
골 볼	31	27	4	-
론 볼	46	22	24	-
보 치 아	97	55	42	-
스 노 우 보 드	2	2	-	-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21	10	11	-
줄 넘 기	375	119	256	-
플 라 잉 디 스크	66	48	18	-
피 구	211	117	94	-
그 라 운 드 골 프	12	12	-	-
합 기 도	1,676	-	-	1,676
활 기 도	1,017	-	-	1,017
활 법	594	-	-	594
보디빌딩(구.육체미)	1,983	-	-	1,983
요 가	386	-	-	386
로울러스케이팅	111	-	-	111
회 전 무 술	33	-	-	33
력 비 풋 볼	71	-	-	71
연 식 경 구	9	-	-	9
십 팔 반 무 예	11	-	-	11
왕 도 특 수 무 술	10	-	-	10
국 술	69	-	-	69
십 팔 기	24	-	-	24
도 봉 술	8	-	-	8
통 일 무 술	18	-	-	18
불 무 도	28	-	-	28
권 격 도	49	-	-	49
킥 복 싱	151	-	-	151
격 투 기	105	-	-	105

종목	전 체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태 수 도	3	-	-	3
유 술	5	-	-	5
공 권 도	17	-	-	17
국 선 도	62	-	-	62
화 량 도	18	-	-	18
궁 중 무 술	33	-	-	33
연 식 경 구	8	-	-	8
특 공 무 술	50	-	-	50
수 박 도	23	-	-	23
한 무 도	23	-	-	23
사 이 클	51	33	18	-
인 라 인 롤 러	1	1	-	-
수 중 (핀 수 영)	1	-	-	1
건 강 운 동 사	1,570	285	234	1,051
합 계	266,709	16,754	12,462	237,493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2017)

종목별 전문스포츠지도사 양성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사격(93명), 육상(71명), 수영(6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태권도(7,038명), 야구(2,655명), 육상(2,359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종목별 전문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은 <표 8-20>과 같다.

표 8-20. 종목별 전문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명)

종목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검 도	2	-	-	2	386	23	13	350
골 프	50	4	1	45	643	17	45	581
궁 도	6	-	1	5	94	-	-	94
근 대 5 종	22	-	3	19	201	10	5	186
농 구	12	-	-	12	1,006	76	72	858
당 구	10	-	-	10	203	2	1	200
레 슬 링	48	2	1	45	549	38	25	486

종 목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루 지	2	-	-	2	10	-	1	9
리 등 체 조	-	-	-	-	10	-	-	10
배 구	33	1	1	31	1,199	151	73	975
배 드 민 턴	46	1	1	44	921	162	28	731
보 디 빌 딩	34	14	9	11	645	24	17	604
복 싱	26	1	1	24	756	24	21	711
볼 링	24	-	-	24	639	24	21	594
빙 상	23	4	2	17	479	22	5	452
사 격	93	1	2	90	940	48	38	854
자 전 거	35	-	-	35	376	0	0	376
등 산	13	-	-	13	335	0	0	335
세 팍 타 크 로	5	1	-	4	70	3	2	65
소 프 트 볼	9	-	-	9	136	11	13	112
수 상 스 키	4	-	-	4	102	6	2	94
수 영	65	3	-	62	1,374	98	40	1,236
스 킨 스 쿠 버	3	-	-	3	108	18	18	72
스 퀴 시	6	-	1	5	116	4	4	108
스 키	46	3	4	39	324	18	8	298
승 마	38	8	3	27	240	5	3	232
씨 림	3	-	-	3	410	62	31	317
아 이 스 하 키	27	-	1	26	194	15	4	175
야 구	12	1	-	11	2,655	281	196	2,178
양 궁	34	-	3	31	638	37	37	564
역 도	40	2	2	36	598	50	38	510
요 트	27	-	-	27	311	16	1	294
우 슈	19	2	-	17	303	10	3	290
유 도	21	1	1	19	958	134	85	739
육 상	71	1	2	68	2,359	96	69	2,194
정 구	9	-	-	9	362	40	26	296
조 경	19	-	3	16	287	21	8	258
체 조	44	-	1	43	692	59	27	606
축 구	22	-	1	21	2,446	507	168	1,771
카 누	20	-	1	19	286	15	11	260
컬 링	18	1	3	14	119	19	2	98

종 목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탁 구	33	1	2	30	881	131	40	710
태 권 도	61	9	8	44	7,038	130	42	6,866
테 니 스	19	1	1	17	1,049	59	31	959
트 라이 애 슬 론	11	-	-	11	106	5	4	97
펜 싱	26	4	1	21	551	98	21	432
하 키	30	-	-	30	376	27	16	333
핸 드 볼	22	-	-	22	636	64	50	522
바 이 애 슬 론	8	1	-	7	59	7	8	44
인라인스케이팅	23	3	4	16	201	25	25	151
력 비	5	1	-	4	128	22	14	92
봄슬레이스켈레톤	3	-	2	1	19	7	6	6
댄 스 스포 츠	12	7	4	1	76	5	5	66
등 산	-	-	-	-	7	3	4	-
공 수 도	2	-	-	2	57	8	5	44
택 건	1	-	-	1	159	-	1	158
로울러스케이팅	-	-	-	-	47	-	-	47
력 비 풋 볼	-	-	-	-	58	-	-	58
연 식 경 구	-	-	-	-	9	-	-	9
사 이 클	-	-	-	-	51	33	18	-
인 라 인 롤 러	-	-	-	-	1	1	-	-
합 계	1,297	78	70	1,149	35,989	2,771	1,451	31,767

※ 주: 양성 수가 0명인 경우 종목 삭제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2017)

종목별 생활스포츠지도사 양성은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의 경우, 보디빌딩(1,751명), 수영(1,518명), 테니스(58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의 경우, 보디빌딩(60,688명), 태권도(23,348명), 수영(21,82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종목별 생활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은 <표 8-21>과 같다.

표 8-21. 종목별 생활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명)

종목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검도	29	-	1	28	1,833	85	43	1,705
게이트볼	107	1	1	105	3,206	185	95	2,926
골프	549	43	16	490	9,702	107	161	9,434
궁도	-	-	-	-	66	19	47	-
농구	410	8	2	400	5,931	241	195	5,495
당구	36	1	-	35	751	37	20	694
라켓볼	12	-	1	11	224	-	2	222
레슬링	47	9	6	32	386	11	11	364
레크리에이션	121	2	-	119	1,517	97	75	1,345
리듬체조	9	1	-	8	36	5	3	28
배구	283	5	2	276	2,736	98	71	2,567
배드민턴	502	6	7	489	13,404	534	374	12,496
보디빌딩	1,751	53	29	1,669	60,688	5,095	3,229	52,364
복싱	64	3	1	60	2,358	110	74	2,174
볼링	282	5	6	271	6,581	54	33	6,494
빙상	59	2	1	56	1,040	16	10	1,014
사격	3	2	1	-	24	11	13	-
자전거	45	6	5	34	335	16	17	302
등산	82	20	16	46	387	54	23	310
세팍타크로	11	-	-	11	18	-	-	18
수상스키	60	1	-	59	237	9	7	221
수영	1,518	9	6	1,503	21,824	432	254	21,138
스킨스쿠버	55	-	-	55	178	4	4	170
스쿼시	139	2	1	136	2,932	26	18	2,888
스키	305	1	4	300	1,250	25	34	1,191
승마	32	-	1	31	1,406	92	31	1,283
씨름	29	-	-	29	400	10	11	379
아이스하키	1	1	-	-	4	3	1	-
야구	159	9	1	149	1,331	70	57	1,204
양궁	4	-	-	4	-	-	-	-
에어로빅	233	-	3	230	14,124	189	193	13,742
오리엔티어링	35	7	5	23	164	12	12	140
요트	12	-	5	7	564	15	100	449
우슈	40	3	-	37	945	26	5	914

480 Section 08 체육전문인력

종 목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원 드 서 핑	89	-	2	87	253	11	9	233
유 도	93	9	4	80	2,266	48	31	2,187
육 상	42	6	3	33	54	34	20	-
경 구	26	2	-	24	240	10	13	217
조 정	14	4	-	10	226	3	5	218
체 조	204	-	-	204	633	-	-	633
축 구	526	4	2	520	9,168	451	361	8,356
카 누	24	-	1	23	310	12	20	278
탁 구	230	3	2	225	4,197	85	53	4,059
태 권 도	429	7	11	411	23,348	497	301	22,550
테 니 스	588	-	1	587	5,117	47	25	5,045
하 키	10	6	4	-	19	8	11	-
핸 드 볼	18	5	2	11	32	19	13	-
행 글 라이 디ング	4	1	-	3	5	-	-	5
인라인스케이팅	54	8	5	41	569	28	38	503
력 비	8	2	-	6	132	4	7	121
댄 스 스포 츠	12	6	6	-	129	114	15	-
족 구	2	-	2	-	89	48	41	-
철인3종경기	2	1	1	-	15	5	10	-
패러글라이딩	20	9	11	-	13	10	3	-
풋 살	10	3	7	-	205	71	134	-
파 크 골 프	1	1	-	-	27	19	8	-
합 기 도	-	-	-	-	1,676	-	-	1,676
활 기 도	-	-	-	-	1,017	-	-	1,017
활 법	-	-	-	-	594	-	-	594
보 디 빌 디ング (구. 육 체 미)	-	-	-	-	1,983	-	-	1,983
요 가	-	-	-	-	386	-	-	386
로울러스케이팅	64	-	-	64	-	-	-	-
회 전 무 술	-	-	-	-	33	-	-	33
력 비 풋 볼	13	-	-	13	-	-	-	-
십 팔 반 무 예	-	-	-	-	11	-	-	11
왕도특수무술	-	-	-	-	10	-	-	10
국 술	-	-	-	-	69	-	-	69
십 팔 기	-	-	-	-	24	-	-	24
도 봉 술	-	-	-	-	8	-	-	8

종 목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통 일 무 술	-	-	-	-	18	-	-	18
불 무 도	-	-	-	-	28	-	-	28
권 격 도	-	-	-	-	49	-	-	49
킥 복 싱	-	-	-	-	151	-	-	151
격 투 기	-	-	-	-	105	-	-	105
태 수 도	-	-	-	-	3	-	-	3
유 술	-	-	-	-	5	-	-	5
공 권 도	-	-	-	-	17	-	-	17
국 선 도	-	-	-	-	62	-	-	62
화 량 도	-	-	-	-	18	-	-	18
궁 중 무 술	-	-	-	-	33	-	-	33
연 식 경 구	5	-	-	5	3	-	-	3
특 공 무 술	-	-	-	-	50	-	-	50
수 박 도	-	-	-	-	23	-	-	23
한 무 도	-	-	-	-	23	-	-	23
수중(핀수영)	-	-	-	-	1	-	-	1
합 계	9,512	277	185	9,050	210,029	9,212	6,341	9,050

※ 주: 양성 수가 0명인 경우 종목 삭제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2017)

종목별 2급 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은 <표 8-22>와 같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배구(118명), 보치아(97명), 배드민턴(9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소년스포츠지도사의 경우, 배드민턴(475명), 줄넘기(375명), 축구(331명)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보디빌딩(1,035명), 에어로빅(786명), 레크리에이션(56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종목별 2급 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은 <표 8-22>와 같다.

표 8-22. 종목별 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명)

종목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계	2016년	2015년	계	2016년	2015년	계	2016년	2015년
검도	-	-	-	50	22	28	19	11	8
게이트볼	-	-	-	35	26	9	191	85	106
골프	-	-	-	44	22	22	19	10	9
궁도	-	-	-	2	1	1	1	-	1
농구	80	49	31	215	83	132	49	29	20
당구	-	-	-	2	-	2	12	10	2
레슬링	-	-	-	10	4	6	4	4	-
레크리에이션	-	-	-	57	35	22	563	355	208
리듬체조	-	-	-	2	1	1	2	1	1
배구	118	72	46	219	94	125	65	37	28
배드민턴	94	46	48	475	204	271	167	96	71
보디빌딩	-	-	-	307	200	107	1,035	633	402
복싱	-	-	-	22	9	13	15	12	3
볼링	45	28	17	27	13	14	35	12	23
빙상	0	0	0	7	1	6	4	1	3
사격	31	11	20	4	1	3	2	1	1
자전거	13	7	6	12	3	9	12	4	8
등산	-	-	-	8	2	6	7	5	2
세팍타크로	-	-	-	1	-	1	2	1	1
수상스키	-	-	-	2	1	1	-	-	-
수영	48	40	8	176	97	79	151	78	73
스킨스쿠버	-	-	-	1	0	1	3	2	1
스쿼시	-	-	-	12	6	6	1	1	-
스키	-	-	-	16	7	9	4	4	-
승마	-	-	-	32	14	18	16	14	2
씨름	-	-	-	29	7	22	2	1	1
아이스하키	11	6	5	1	1	-	-	-	-
야구	-	-	-	46	20	26	3	2	1
양궁	11	6	5	-	-	-	-	-	-
에어로빅	-	-	-	122	41	81	786	244	542
역도	63	39	24	-	-	-	-	-	-
오리엔티어링	-	-	-	10	6	4	11	3	8
요트	6	2	4	7	2	5	3	1	2
우슈	-	-	-	1	-	1	7	4	3

종 목	2급 장애인스포츠택지도사			유소년스포츠택지도사			노인스포츠택지도사		
	계	2016년	2015년	계	2016년	2015년	계	2016년	2015년
유 도	2	1	1	37	17	20	14	12	2
육 상	43	22	21	71	33	38	8	7	1
정 구	-	-	-	21	7	14	15	7	8
조 경	14	8	6	3	1	2	4	3	1
축 구	57	25	32	331	133	198	110	59	51
카 누	-	-	-	14	1	13	2	2	-
컬 링	14	6	8	-	-	-	-	-	-
탁 구	76	45	31	137	75	62	157	71	86
태 권 도	31	11	20	195	75	120	66	31	35
테 니 스	14	9	5	53	24	29	46	28	18
펜 싱	14	4	10	-	-	-	-	-	-
하 키	-	-	-	21	8	13	5	2	3
핸 드 볼	-	-	-	48	11	37	6	4	2
인 라인스 케이트	-	-	-	18	11	7	6	3	3
력 비	44	16	28	5	1	4	-	-	-
댄 스 스포 츠	10	5	5	13	7	6	12	8	4
족 구	-	-	-	8	7	1	7	6	1
철 인 3 종 경 기	-	-	-	1	-	1	1	1	-
풋 살	-	-	-	23	14	9	-	-	-
파 크 골 프	-	-	-	2	2	-	7	6	1
골 볼	31	27	4	-	-	-	-	-	-
론 볼	46	22	24	-	-	-	-	-	-
보 치 아	97	55	42	-	-	-	-	-	-
스 노 우 보 드	2	2	-	-	-	-	-	-	-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21	10	11	-	-	-	-	-	-
줄 념 기	-	-	-	375	119	256	-	-	-
플 라 잉 디 스크	-	-	-	66	48	18	-	-	-
피 구	-	-	-	211	117	94	-	-	-
그 라 운 드 골 프	-	-	-	-	-	-	12	12	-
합 계	1,036	574	462	3,607	1,634	1,973	3,669	1,923	1,746

※ 주: 양성 수가 0명인 경우 종목 삭제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2017)

4. 체육지도자 배치·활용

스포츠지도사는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운동처방과 지도, 그리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각종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배치된다. 체육지도자 배치는 크게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부문 의무배치와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통한 공공부문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민간부문 배치·활용

민간부문에서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의 체육지도자 배치규정에 근거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은 <표 8-23>과 같다.

2) 공공부문의 배치·활용

2000년부터 시작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장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체육활동을 지도하며 신규 프로그램 보급을 확산시킴으로써 대국민 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청년전문인력 고용 지원계획’에 따라 처음으로 99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인건비 50%씩을 부담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원하였다. 이후 국고지원을 기금지원으로 대체하고, 공동자금출자(matching fund)형태로 지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2015년(560,068회/10,885,760명 참가)에 비해 운영횟수가 15,731회 증가하였으나, 참가자 수는 818,228명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생활스포츠지도사 운영실적은 <표 8-24>와 같다.

표 8-23.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골프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 골프코스 36홀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스키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로프 10면 이하 ■ 슬로프 10면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요트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트 20척 이하 ■ 요트 20척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조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20척 이하 ■ 조정 20척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카누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누 20척 이하 ■ 카누 20척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빙상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승마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20마리 이하 ■ 말 20마리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수영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1인 이상 2인 이상
체육도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골프연습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 50타석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체력단련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 주 :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종류의 체육지도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됨

※ 주 :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백서(2016)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실적을 보면, 2015년(1,080명 배치/448,999회/8,573,205명 참가)에 비해 지도자 배치 수, 운영횟수, 참가자 수 모두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총 1,200명의 지도자가 498,597회 운영하였고 참가자 수가 8,871,174명이었다. 지도자 수가 가장 많이 배치된 지역은 서울/경기 158명, 전남 131명으로 나타났으며, 운영횟수는 서울 74,976회, 경기 67,812회, 전남 54,471회 순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수는 서울 1,531,198명, 경기 1,247,226명, 전남 914,824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실적은 <표 8-25>와 같다.

표 8-24.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실적

(단위: 명/회)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서울	164	69,703	1,396,070	강원	109	36,323	635,974
부산	72	29,363	550,138	충북	74	27,384	387,682
대구	56	22,752	358,940	충남	76	29,617	430,094
인천	50	21,749	362,916	전북	71	19,425	336,161
광주	43	20,389	382,183	전남	110	45,653	809,541
대전	87	45,222	723,089	경북	117	51,724	834,129
울산	48	18,659	525,848	경남	123	52,827	850,350
세종	4	1,747	19,825	제주	25	12,742	233,006
경기	171	70,520	1,232,129	계	1,400	575,799	10,068,075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표 8-25.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실적

(단위: 명/회)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서울	158	74,976	1,531,198	강원	91	33,329	561,909
부산	43	15,167	295,507	충북	68	27,603	376,305
대구	42	19,566	309,736	충남	71	27,646	396,492
인천	36	16,220	290,289	전북	78	24,927	463,765
광주	28	14,204	246,929	전남	131	54,471	914,824
대전	36	17,186	271,041	경북	107	44,310	724,520
울산	26	9,220	234,766	경남	94	37,854	694,536
세종	5	1,496	22,679	제주	28	12,577	289,427
경기	158	67,812	1,247,226	계	1,200	498,597	8,871,714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생활체육광장지도자는 매일 아침(06:00-07:00)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리한 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1일 1시간 이상 지역별 특성과 장소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현장지도와 아침광장 에어로빅 및 생활체조 지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

광장지도자 배치실적을 보면, 총 434명이 배치되어 2015년과 동일하다. 운영횟수는

서울이 4,998회, 경남 4,767회, 대구 4,776회로 나타났으며, 참가자 수는 대구 200,994명, 서울 197,362명, 전남 188,959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광장지도자 배치실적은 다음 <표 8-26>과 같다.

표 8-26. 광장지도자 배치 실적

(단위: 명/회)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서울	35	4,998	197,362	강원	30	3,585	73,123
부산	32	4,514	132,579	충북	25	3,227	80,257
대구	35	4,766	200,994	충남	24	3,602	71,081
인천	20	2,749	48,586	전북	31	4,079	96,978
광주	21	4,343	133,171	전남	36	4,640	188,959
대전	22	3,145	119,987	경북	30	3,873	102,047
울산	14	1,746	56,069	경남	37	4,767	125,628
세종	2	115	3,086	제주	10	1,278	41,205
경기	30	4,050	92,826	계	434	59,477	1,763,938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7)

9

2016 SPORT WHITE PAPER

남북체육교류

제1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의미

제2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정책 환경

제3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 현황

제1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의미

1. 남북체육교류협력 의의

교류란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하는 것’을 뜻하며, 협력이란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것’을 뜻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가 교환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을 추구하므로 남북교류보다는 남북교류협력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상용되는 용어를 ‘남북교류’가 아닌 ‘남북교류협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북체육교류는 1963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에 의하여 스위스 로잔에서 도쿄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91년에 남북체육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교환되었다. 이를 통하여 체육교류는 다른 분야와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행정에서 남북체육교류협력이 관용적 표현으로 정착되었다.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 중 체육교류협력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한편, 남북 간 체육교류협력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타 분야의 교류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남북한 체육교류는 역사성을 갖는 문화행사로서 전통을 갖고 있다. 경평전(경평축구대항전)은 1929년에 시작된 경성(現 서울)과 평양 간 축구교류전으로 그 당시 민족의 관심사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둘째, 체육교류협력은 체육 자체가 갖는 대중성 때문에 민족공동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대회나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아대회에서처럼 상대방의 경기를 응원하거나 남북 대항전에서 상대팀을 응원하는 행위 등은 민족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남북한 체육은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 운동경기는 동일한 경기규칙규정 등에 의해 진행되므로 남북 간의 이질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교류될 프로그램의 내용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장애요인이 없다. 넷째, 체육교류는 국제단체를 통한 중재가 가능하다. 남북한 체육교류는 양국 당사자 간에 진행되지만 국제체육의 장(場)에서 국제체육기구(IOC 등)라는 중재자가 존재한 상태로 진행되므로 다른 분야의 교류와는 그 틀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IOC는 남북한 체육교류 실현을 위해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 왔다. 1997년 IOC가 북한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측에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체육교류를 제안한 이후 1998년 9월에는 IOC 특사가 축구, 탁구,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남북한 교류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국제유도연맹은 1998년 5월 대한유도회가 요청한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승인하면서 1개국에서 1팀만 출전하도록 한 기존규정을 예외로 적용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체육교류의 특성으로 체육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교류·협력이 용이하였고, 그 파급효과 또한 컸다.

2. 남북체육교류협력 기능

체육교류가 국가 간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다. 이념적 대립으로 교류가 단절되었던 미국과 중국은 1972년 평풍경기를 계기로 미국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후 불과 10개월 만에 교류를 시작하였다.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는 화합·전진의 가치 아래, 1980 모스크바 하계올림픽대회와 1984 LA 하계올림픽대회에 걸쳐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동·서 간의 이념적 정치대립을 잇고 인류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전 세계 160개국이 참가하는 당시 올림픽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체육교류의 기능은 남북체육교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체육교류의 기능은 크게 정치적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기능으로 체육교류는 화해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한다. 남북체육교류는 이데올로기를 떠나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며 오직 기량만을 대결하기에 선수단과 임원단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볼 수 있듯이, 체육교류는 인적왕래와 정보자료 교환 등의 교류기반을 마련하기 용이하다. 남북은 1990년대에 들어 1991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와 제6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축구단 단일팀 구성 등으로 남북이 가장 쉽게 교류할 수 있는 분야가 체육분야임을 인식하였다.

둘째, 체육교류는 남북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담당한다. 1991년 일본에서 열렸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이 ‘코리아팀’으로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둬으로써 남한과 북한은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한민족임을 느꼈다. 또한, 부산 하계아시아대회나 시드니 하계올림픽대회처럼 남북응원단이 서로 상대방의 경기를 응원하거나, 남북이 대결하는 경기에서 상대팀을 응원하는 등의 행위는 동포애를 고취시켜 민족화합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은 체육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셋째, 남북체육교류는 한반도 화해와 평화무드 조성에 일조하여 우리나라 국제신용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외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하다. 더불어, 국제대회 유치로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남북이 공유하여 남북교류 과정에서 체육행사를 병행한 이벤트를 실시할 경우,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제2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정책 환경

1. 법·제도적 기반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1990년에 공포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 1조는 남한과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 법제정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법 24조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범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1997년 통일원장관의 고시로 발표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주민왕래, 주민 접촉, 교역 및 기타 협력사업을 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협력사업'이란 법률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동법 2조 4항)'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그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과 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동 규정 3조)'로 정의한다. 이 중 체육 관련 협력사업과 관련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4. 국내·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 5. 문화, 학술연구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체육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협력관(국제체육과)과 통일부의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이며, 정부협의체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 장관)이다. 동 협의회는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연락 및 실무적 협의 지원',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남북한 간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남북한 간 교역·투자와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교역상품전시회 등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활동의 추진·지원', '남북한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연락 및 협의 지원', '그 밖에 남북한 간 교역 및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

통일부는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급증하는 남북 교류협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해왔다. 2009년도에는 남북 간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형물까지로 확대하고, 남북한 왕래 및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을 보완하였으며,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협력사업 승인제도로의 일원화 등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1월 30일 동 법률을 크게 개정하였다. 특히, 개정 법률은 동법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에 걸쳐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역할과 개별 사안별 처리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통일부는 2009년 7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전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남북사회문화협력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2010년 들어 개정 발효된 동 법의 개정 사유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 간 물품 등의 반출·반입 승인과 업무위탁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수송 장비 등의 출입관리, 검역, 무역보험법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년대 후반 들어 활성화되었던 남북 간 문화교류협력사업의 관리를 위해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남북 문화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지침」(2009년 7월

1일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제정하였다. 동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4조(각 기관의 의무) ①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각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 요청서를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협회의 설치)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협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신규 의제 발굴 등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의 발의 및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과제의 점검
 4.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재원

남북체육교류협력사업은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다른 부문의 교류와 같은 조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그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체육교류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예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남북협력기금은 1991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사업(2억 5700만 원), 1991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사업(7억 7500만 원), 2002 부산 하계 아시아대회(21억 2600만 원), 남북통일축구경기(1억 5300만 원), 남북태권도시범단 교환(1억 8900만 원), 2003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13억 5600만 원), 제주 민족평화축전행사(4억 9700만 원)에 지원되었다.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은 통일부고시로 명문화하고 있는데 남북 간의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 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4장 제2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 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제1조)에서 제정되었다. 동 지침에 따르면 국제체육행사의 단일팀 참가사업이나 국제체육행사 공동 시행사업은 우선지원 대상 사업이다(제3조). 한편 동 지침에 의거한 기금지원상의 지원한도(제5조)는 다음과 같다.

- 제5조(지원한도) ① 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 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자당 연 1회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70%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

2.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
 3.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4.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비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
 5.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침 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족액(경비의 초과지출, 추가경비의 발생, 예상 수익금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부족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협력지원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동 지침에서 자금의 집행 및 사용(제6조)과 기금지원의 중단(제7조) 등을 명시하여 남북협력지원자금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남북체육교류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법·제도적으로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근거는 뚜렷이 명시된 바 없다. 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관 제22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근거하면 남북체육교류 축진은 정부의 정책사업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대회 단복제작비 및 2006년 남북단일팀 구성 체육회담 개최비 등에 남북체육교류의 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2007년에는 장춘 동계아시아대회 공동입장 단복제작, 북한 청소년축구단 전지훈련비 지원, 남북축구 친선교환경기 및 축구장 개·보수 지원, 체육용품(축구화)을 지원하였다.

제3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 현황

1. 남북체육회담을 통한 체육교류 발전

남북 간 체육교류를 위한 첫 번째 노력은 1963년 1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1964 도쿄 하계올림픽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이었다. 이후 냉전 이데올로기가 강화됨에 따라 남북체육교류는 1978년까지 전무하였다. 그러나 1979년 제35회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문제를 위해 그 해 2월과 3월 판문점에서 4차례 접촉이 있었으며, 1984 LA 하계올림픽대회의 단일팀 구성 문제,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의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90 베이징 하계아시아대회의 단일팀 구성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였다. 따라서 1990년까지는 실질적인 체육교류라기 보다는 접촉단계로써 의미를 가진다. 이후 1990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1991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은 체육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 남북체육교류 추진

남북체육교류는 1990 베이징 하계아시아대회의 단일팀 구성을 위해 198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어오다 1990년 4월에 일시 중단되었다. 1990년 9월 베이징 하계아시아대회를 계기로 10월 11일 평양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후 남북체육회담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다시 열렸다. 동 체육회담에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를 공동 발표하고, 일본 지바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양 대회에 단일팀 출전을 결정하였다.

표 9-1. 남북체육회담 주요일지

날 짜	장 소	명 칭	내 용
1963	01. 24	스위스 로잔	도쿄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회담
	05. 17	홍콩	단일팀 구성 실무 1차 회담
	07. 26	홍콩	단일팀 구성 실무 2차 회담
1979	02. 27	판문점	제1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03. 05	판문점	제2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03. 09	판문점	제3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03. 12	판문점	제4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1984	04. 0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04. 30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05. 25	판문점	제3차 남북체육회담
1985	10. 08 ~ 10. 09	스위스 로잔	제1차 남북체육회담
1986	01. 08 ~ 01. 09	스위스 로잔	제2차 남북체육회담
	06. 10 ~ 06. 11	스위스 로잔	제3차 남북체육회담
1987	07. 14 ~ 07. 15	스위스 로잔	제4차 남북체육회담
1989	03. 0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03. 28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10. 20	판문점	제3차 남북체육회담
	11. 16	판문점	제4차 남북체육회담
	11. 24	판문점	제5차 남북체육회담
	12. 22	판문점	제6차 남북체육회담
1990	01. 19	판문점	제7차 남북체육회담
	01. 29	판문점	제8차 남북체육회담
	02. 07	판문점	제9차 남북체육회담
1990	11. 2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1991	01. 15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01. 30	판문점	제3차 남북체육회담
	02. 12	판문점	제4차 남북체육회담

※ 출처 : 대한올림픽위원회 남북체육교류자료집(1992)

표 9-2.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결과

구분	평양대회	서울대회
방문기간	1990. 10. 09 ~ 10. 13	1990. 10. 21 ~ 10. 25
방문자	76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0명) -인솔 : 체육부장관(정동성)	78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2명) -인솔 : 국가체육위원회위원장(김유순)
경기일/장소	1990. 10. 11 / 5-1경기장	1990. 10. 23 / 잠실주경기장
방문경로	서울-베이징-평양-판문점-서울	평양-판문점-서울
경기결과	북한승리(2:1)	남한승리(1: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체육백서(2016).

1991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 이후 남북체육교류는 침체기를 겪었으나, 1994년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체육교류가 남북이 가장 원활히 교류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남북문화체육교류 세부합의서’를 문화체육부에서 만들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여파로 남북

표 9-3.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현황

구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일시/장소	1991. 04. 24 ~ 05. 06 / 일본 지바현	1991. 06. 14 ~ 06. 30 / 포르투갈 리스본
호칭	코리아, KOREA	좌동
단기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	좌동
단가	1920년 우리나라 아리랑	좌동
선수선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서울·평양 공개 평가전을 기초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선수단구성	단장(북측) 총 56명(남북 각 28명, 선수 각 11명씩)	단장(남측) 총 62명(남북 각 31명, 선수 각 9명씩)
선수훈련	일본전지훈련(1991. 03. 26 ~ 04. 23)	남·북 왕래훈련(1991. 05. 06~05. 21) - 서울평가전 05. 06~05. 09 / 70명(잠실) - 평양평가전 05. 10~05. 16 / 70명(5·1) - 서울강화훈련 및 결단식 05. 17~ 05. 21 72명(잠실주경기장)
선수단경비	남·북 공동부담	좌동
장비조달	단복-북측, 운동복 등-남측	좌동
귀국	1991. 05. 08(동경에서 서울·평양으로)	1991. 06. 28(북한), 1991. 06. 29(남한)
대회결과	여자단체전우승 및 개인단식준우승(리분희) 남자개인단식 3위(김택수), 혼합단식 3위	8강 진출(예선 1승1무1패) 준준결승전에서 브라질에 패배(5:1)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백서(2016)

체육교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1998년에는 방콕 하계아시아대회를 앞두고 단일 팀 구성을 의제로 우리가 남북체육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정부 간 남북체육교류가 소강상태인 상황 속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남북체육교류가 시작되었다. 1999년 8월에는 노동단체가 주관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11월에는 현대기업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민간기업을 통한 체육교류의 장이 열렸다. 현대는 북한과 합작 사업으로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하여 기부하기로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실내체육관 기공식을 전후로 남북 농구경기대회를 진행하였다. 우인방 커뮤니케이션은 2000년 7월 3일~4일 양일간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지역에서 금강산자동차질주경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

표 9-4.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세부 실적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남북(대표팀)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개최	평양	1990. 10. 09 ~ 10. 13	76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0명)	남한: 체육부장관 인솔
	서울	1990. 10. 21 ~ 10. 25	78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2명)	북한: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인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	오사카	1991. 04. 24 ~ 05. 06	56명(남북 각 28명, 선수 각 11명씩)	한반도기 사용 국가: 아리랑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	리스본	1991. 06. 14 ~ 06. 30	62명(남북 각 31명, 선수 각 9명씩)	한반도기 사용 국가: 아리랑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평양	1999. 08. 10 ~ 08. 14	37명(선수단 22명, 인솔 15명) 남북 노동단체	8.12(남북대결) 8.13(남북혼합팀 구성)
현대 통일농구 교환경기	평양	1999. 09. 27 ~ 10. 01	79명(선수단 42명, 현대관계자 31명, TV중계요원 6명)	9.28(혼합경기) 9.29(남북대결)
	서울	1999. 12. 22 ~ 12. 25	62명(선수단 38명, 교예단 14명, 위성중계 기술자 2명, 아태관계자 8명)	12.23(혼합경기) 12.24(남북대결)
금강산 자동차질주경주대회	서울, 평양, 금강산	2000. 06. 30 ~ 07. 04	차량 56대(경기차량 23대 포함), 241명	사업대가로 100만 달러 지급
삼성 통일탁구 경기대회	평양	2000. 07. 26 ~ 07. 30	50명(선수단 13명, 인솔 37명)	남북대결 및 남북혼합팀 구성 경기
시드니 하계올림픽대회 개막식 공동입장	시드니	2000. 09. 15	남북 각 90명씩 180명	한반도기 사용 호칭: KOREA
제81회 부산 전국체전 금강산 성화채화	금강산 옥류동 무대바위	2000. 10. 01	50명(주관: 부산광역시·금강산관광총회사)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5체육백서(2016)

는 2000년 7월 말 평양체육관에 전광판을 기증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남북탁구경기대회를 열었다.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대회에서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팀 동시입장이 성사되어 남북팀이 단일 국기와 국가, 복장으로 개·폐회식에 참가하였다. 그 해 10월 제 81회 부산 전국체전 성화가 금강산에서 채화되기도 하였다.

3. 남북단일팀 구성 노력

2001년 3월에는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문제를 협의하였다. 4월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이 공동응원을 하였으며, 공동응원을 위한 경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9월에는 제18회 부산 아·태장애인대회에 북한측을 초청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고, 11월에는 2002 부산 하계아시아대회 북한 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2005년도 마카오 동아시아대회부터 남북단일팀 구성 노력이 거론된 바 있다. 2005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 김정길 회장과 조선올림픽위원회 문재덕 위원장 간의 회동이 시발점이 된 이후 11월 초 마카오 동아시아대회 기간 중 개최된 남북체육회담 실무대표단 회의에 남북 양측 6명이 참가했고, 차기 회담은 12월 7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12월 7일 남북체육회담이 개성에서 이루어졌으나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차이로 회담을 종료하였다.

2005년 말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7년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 및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IOC는 2006년 12월 24일자 공문에서 개인종목의 경우는 남북올림픽위원회가 각각 개별적으로 참가자격대회에 참가한 후 IOC가 해당종목의 국제연맹과 최종 참가자격 및 인원수에 대해 협의할 것이며, 단체종목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예선대회에 참가한 후 IOC가 해당 국제연맹과 종목별로 단일팀에 적용할 참가인원에 대해서 특별 규정을 두어 인정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은 선수선발 문제를 제외한 여타 문제(단일팀 명칭, 단가, 단기, 임원구성, 공동기구 등)에서 다소간 의견 차이를 보여 최종 결렬되었다.

한편, 2007년 10월 개최된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2008년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를 맞이하여 경의선 열차를 이용, 남북공동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11월 16일 개최된 남북총리회담에서는 12월 28일 개성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갖기로 합의하였고, 12월에 제1차 실무접촉이 개최되어 응원단 규모, 응원단 이용 열차, 운행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8년 2월 4일 개최된 제2차 실무접촉에서는 남북 각각 150명씩 300명의 응원단 규모(지원인원 포함)와 응원단의 개·폐막식 참가 등에 대해 합의하였고,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2008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결국 베이징 하계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파견은 물론이고 2000년 이후 계속된 남북 동시입장 또한 무산되고 말았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공동입장을 위한 체육회담 개최를 위해 2008년 전반기에만 북한측에 수차례 서한을 보냈으나 접수조차 거부했다.

같은 해 4월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6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 총회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북한올림픽위원회가 나란히 참석하였지만 베이징 하계올림픽대회 남북단일팀 및 공동응원단 구성을 위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한 후, 남북관계는 물론 체육분야까지 모든 교류가 경색되었다.

이처럼 남북한이 자체적으로 공동입장에 대한 해법을 풀어나가지 못하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2008년 6월, 자크로게 위원장은 남북한 정상에게 공동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북측의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 공동입장이 무산되자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는 화합 분위기라도 조성하기 위해 입장순서를 한국은 176번, 북한은 177번째로 정하였는데 북한은 이마저 거부하고 180번째로 입장하였다. 이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와 2012 런던 하계올림픽대회의 개폐회식 공동입장은 실행되지 못했다.

표 9-5. 2001년~2010년 남북체육교류 세부 실적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제2차 금강산 자동차질주 경주대회	금강산	2001. 07. 29 ~ 07. 31	차량 56대(경기차량 23대 포함), 241명	사업대가로 지급	
태권도시범단 교환	평양	2002. 09. 14 ~ 09. 17	65명(남측35,북측30)	7차 남북장관급회의 실무회의 합의에 근거 황봉영 조선태권도 위원회의 초청	
	서울	2002. 10. 14	62명(남측41,북측21)		
남북통일축구경기	서울	2002. 09. 05 ~ 09. 08	리광근 등 49명		
부산 하계아시아경기대회	부산	2002. 09. 22 ~ 10. 15	박명철 등 668명		
	부산	2002. 10. 08 ~ 10. 15	장웅 등 7명		
아오모리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식 공동입장	일본 아오모리	2003. 02. 01 ~ 02. 08	-남한 선수단 110명 -북한 선수단 40명	단기: 한반도기 북한 2월30일 밤 전격제안, 남한 수용으로 성사	
22회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	대구	2003. 08. 20 ~ 09. 01	전극만 등 524명 선수단 197명 응원단 327명		
남북태권도교류 협의 및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참관	대구	2003. 08. 17 ~ 08. 21	장웅 등 3명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및 통일농구대회	평양	2003. 10. 06 ~ 10. 07	김운규 등 800여명	경의선 임시도로로 육로 방북 SBS 평양에서 통일 농구대회 중계	
제주민족평화축전	제주	2003. 10. 23 ~ 10. 28	김영대 등 190명	행사직전 취주단, 예술단 불참통보로 물의 야기	
아테네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입장	그리스 아테네	2004. 08. 14 ~ 08. 09	-남한선수단 136명 -북한선수단 50명	단기: 아리랑 단기: 한반도기	
제2회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	대구, 전주, 대전	2005. 07. 31 ~ 08. 07	북 선수단 65명		
남북통일축구	서울	2005. 08. 14 ~ 08. 16	남 여 선수단		
제4회 마카오 동아시아 경기대회 공동입장	마카오	2005. 10. 29 ~ 11. 6	남북선수단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강원도겨울철체육경기	춘천	2006. 03. 02 ~ 03. 05	선수단 36명 (단장 정덕기 북측 민화협 부회장)	남북선수단 합동훈련 남측대학 선발팀과 북한 선발팀 혼성경기 남북 시범경기	
도하 하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식 공동입장	카타르 도하	2006. 12. 01 ~ 12. 15	남북선수단	공동기수는 이규섭선수(남측)와 리금숙선수(북측)	
남북유소년 축구선수단 상호교류	북한 청소년 팀 방한	제주, 수원, 순천, 광양, 서울	2007. 03. 20 ~ 04. 20	북 선수단 23명	15~17세, 전지훈련
		강진	2007. 06. 01 ~ 06. 14	북 선수단 34명	15세 이하 친선 경기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남한 청소년 팀 방북	평양	2007. 06. 23 ~ 07. 03	남 선수단 26명	
		2007. 11. 03 ~ 11. 14	남 선수단 22명	
북한태권도 시범단 방남	서울, 춘천	2007. 04. 06 ~ 04. 09	북 시범단 48명	단장: 장웅 IOC 위원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	창원	2007. 04. 30	-	5.1절노동자통일대회 행사 북 대표단 60명 방한
2007 FIFA 청소년(U-17) 월드컵대회	서울 등 8개 도시	2007. 08. 18 ~ 09. 09	북 선수단 31명	16강 진출 2회 연속 8강 진출 실패
제2회 국제청소년 친선 축구대회	전남 강진	2007. 10. 13 ~ 10. 25	북 선수단 22명	한국, 북한, 프랑스 등 7개국 참가 한국 중등축구연맹 주최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준공식	평양	2007. 11. 09	남 대표단 145명	축구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제3회 동아시아축구대회	중국 충칭	2008. 02. 20		경기결과 1:1
2008 아시아시니어레슬링 선수권대회	제주도	2008. 03. 16 ~ 03. 24	북 선수단 15명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제주도	2008. 04. 26 ~ 04. 27	북 선수단 17명	남자 -60kg 3위 여자 48kg이하 2위, 52kg이 하 1위, 57kg이하 3위, 63kg 이하 3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경기대회 3차 예선전	중국 상하이	2008. 03. 26	남북 축구대표팀	경기결과 0:0
	서울	2008. 06. 22	남북 축구대표팀	경기결과 0:0
2008 남북태권도교류행사	평양	2008. 06. 28 ~ 07. 01	(사)ITF태권도협회 남측대표단 60명	북한의 시범공연 남한사범의 북한선수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축구단 교류	평양	2008. 06. 14 ~ 06. 26	유소년축구선수단 30명	4차례 친선 경기
		2008. 10. 08 ~ 10. 15	경수유소년축구단, 임원 등 50여명	친선경기 및 합동훈련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경기대회 최종 예선전	중국 상하이	2008. 09. 10	남북축구대표팀	경기결과 1:1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경기대회 코리아응원단	중국 베이징	2008. 08. 10 ~ 08. 14	응원단 400여명	남북한 팀 경기 응원
남북체육교류협회	평양	2009. 02. 25 ~ 02. 28	협회 관계자 17명	「김경성 체육인초대소준공식 참석 및 체육교류 협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경기대회 남북 예선전	서울	2009. 03. 29 ~ 04. 02	북 선수단 43명	경기결과 1: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체육백서(2016)

4. 남북체육교류 현황(2011~2016)

1) 남북체육교류 실적

2011년에 중국 선양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터키 에르주룸의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었으나 남북체육교류와 관련한 어떠한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시범단교류와 같은 방문교류도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제탁구연맹과 국제체육평화교류 비정부기구인 피스앤스포츠(Peace and Sports)가 공동주관하여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회 Peace and Sports Cup대회에서 남북선수들을 단일팀으로 구성하여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동 대회는 국제탁구연맹이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카타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10개국에서 남자복식과 여자복식조를 초청한 친선대회였다. 비록 친선대회이기는 하나 1991년 4월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이후 20년만의 단일팀 구성으로 남자복식은 우승, 여자복식은 준우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때 대한탁구협회 회장이자 피스앤스포츠 대사인 조양호 회장의 역할이 컸는데 피스앤스포츠대회의 남북단일팀의 선전은 국제경기대회에서의 남북협력이 단절되고, 정부주도의 남북체육교류가 경색된 상황에서 가맹단체 또는 민간차원의 교류성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

인천광역시는 4억 5천만 원을 투자해 2011년 지자체 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의 자회사로 중국 단둥에 수제축구화 공장을 설립하였다. 단둥에 설립된 축구화공장은 한·중 합작 공장으로 공장관리는 중국인이, 기술지도는 한국 수제축구화 장인 김봉학씨가 맡았다. 이 공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축구화 제작기술을 전수하며 생산된 축구화의 일부는 북한 청소년 및 성인 축구대표팀에게 기증한다는 사업전략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교류형태는 전형적인 체육교류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축구화 제작기술 전수 및 축구화 지원이 북한의 축구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광의의 남북체육교류 성과이다.

2012년 1월, 인천광역시의 노력으로 중국 쿤밍에서 「인천 평화컵 청소년 14세 이하 축구대회」가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 남측은 인천 광성중학교 축구팀, 북측은 425축구단 청소년팀, 중국 대표로는 운남성 선발팀, 일본 대표는 요코하마

마리노스 유소년팀이 참가하였다. 북한팀은 현장에 참가했으나 수교를 맺지 않은 일본과 경기를 치를 수 없으므로 경기를 거부한다며 경기불참을 선언하였고, 결과적으로 남북청 소년 간 교류전은 성사되지 못했다.

2013년에는 서울과 화성에서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2013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남녀 각각 4개국씩 참가하였는데 남자부는 한국, 호주, 중국, 일본, 여자부는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이 참가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가진 후 최종 승점만으로 우승팀을 가렸다. 이 대회에 북한여자축구선수단 26명이 방한하였으며 북한이 1위, 남한이 3위를 기록하였다. 북한대표팀은 이번 경기 참가를 위해 8년 만에 방한하였다.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광주에서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된 「유스리더십프로그램>Youth Leadership Program」에는 북한대표단 4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평양에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역도선수권대회」에 남한선수단 등 41명이 방북하여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남북 분단 이후 북한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된 첫 경기였다.

2014년 인천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린 「2014 인천 하계아시아대회」에 북한의 참가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45개 회원국이 모두 출전하였다. 북한선수단은 273명이 14개 종목에 참가하여 종합 7위를 하였다. 이러한 북한선수단의 쾌거로 아시아대회 폐막식에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비서, 김양건 대남 담당비서 등 북한의 고위급 3인이 참석하여 남북관계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대회」에 4개 종목 33명의 북한선수단이 참가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아시아대회 역사상 북한선수단의 최초 출전이었으며, 동메달 2개로 총 32개국 중 29위를 차지하였다. 11월에는 인천에서 개최된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에 북한 유소년축구단 32명이 참석하였다. 북한 유소년축구단(4.25 체육단 소속팀)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축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통일부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인천 소재)에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체류하기도 하였다. 동 대회는 사회문화분야 교류 중 미진했던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교류 확대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5년에는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2015 경북문

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북한이 미리 참여의사를 밝혀 대회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북측의 불참통보로 남북체육교류는 무산되었다. 특히,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은 2015년 3월 3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을 통해 8개 종목(선수 75명, 임원 33명)의 선수단 참가를 신청하고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회참가를 기정사실화 하였으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를 이유로 대회에 최종 불참하였다. 9월에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동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9월 평양을 방문하여 광복 70년 기념 남녀 남북축구대표팀 친선경기 등 남북 간 체육교류를 협의하였으나, 북한의 미온적 태도로 남북친선축구대회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광복 70년 기념사업으로 남북씨름대회, 태권도시범단 상호방문 등도 추진하였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였다.

한편, 2007년 경남 창원에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된 이후 8년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과 함께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단

표 9-6. 2011년~2015년 남북체육교류 세부 실적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피스앤스포츠컵	카타르 도하	2011. 11. 21 ~ 11. 22	남한 선수 2명 북한 선수 2명	남자 복식(남북단일팀) 우승 여자 복식(남북단일팀) 준우승
2013 동아시아연맹 축구선수권대회(동아시아안컵)	서울 화성	2013. 07. 20 ~ 07. 28	북한여자축구선수단 26명	북한 1위 대한민국 3위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UNOSDP YLP	광주	2013. 08. 22 ~ 09. 03	북한청소년대표단 4명	-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 역도선수권대회	평양	2013. 09. 12 ~ 09. 17	우리선수단 41명 방북	대한민국 3위 (금: 6, 은: 8, 동: 10)
2014 인천 아시아대회	인천	2014. 09. 19 ~ 10. 04	북한선수단 273명 방한	대한민국 2위 북한 7위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대회	인천	2014. 10. 18 ~ 10. 24	북한선수단 33명 방한	북한 29위
2014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연천	2014. 11. 07 ~ 11. 09	유소년축구단 32명 방한	북한 1위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평양	2015. 10. 28 ~ 10. 31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표단 162명 방북	경기결과 남 0 : 북 6

162명이 방북하였으며, 이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이후 최대 규모였다. 2016년은 북한이 4차 및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 도발을 감행하여 교류협력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 간 체육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남북체육교류 인적접촉

가. 체육관련 북한방문

체육교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남북 간의 인적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 이후부터 점차 활발해지면서 2000년대에 들어 남측의 북한방문은 점차 증가되었고, 2003년 10월, 1999년에 착공한 「류경 정주영체육관」의 개관식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당시 모집된 남한의 참관단은 1,000명 규모로 이들은 통일농구대회를 참관하고, 묘향산·개성단지를 관광하였다. 2005년 북한방문은 총 27건이며 799명이, 2006년에는 34건 266명이 체육관련 업무로 북한을 방문했다. 2007년은 북한방문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한 해 동안 남북체육교류협력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건수는 65건 1,198명이었다. 태권도시범단 교류사업과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준공식에 남측 대표단 145명이 참가하였고, 남북한 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류 사업으로 2007년 6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서 남한선수단 26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8년 북한방문 건수와 방문자수는 22건 272명, 2009년에는 2건 23명, 2010년에는 1건 3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남북 간 교류를 목적으로 한 방북건수는 124,084건, 방북인원수는 130,119명이지만 개성공단 관련 건을 제외하면 사회문화교류 전반이 모두 위축되었고, 체육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후에도 남북관련 교류는 활발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011년 체육관련 북한방문 현황은 1건 2명이었으며, 2013년에 1건 41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4년에는 체육관련 북한방문이 한 건도 없었고, 2015년에도 남북체육교류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2015년 전체 북한방문은 128,657건 132,09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체육관련 방북은 6건 100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체 북한방문자 수는 14,787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체육관련 방북현황은 한 건도 없었다.

표 9-7. 체육관련 북한방문 현황

(단위: 건/명)

구분	신청	승인	불허	철회	성사	
2001	전체	786(9,148)	737(8,805)	3(30)	-	698(8,551)
	체육	44(362)	43(353)	-	1(9)	37(310)
2002	전체	802(13,502)	774(12,979)	5(167)	27(349)	753(12,825)
	체육	38(336)	37(326)	-	1(10)	37(326)
2003	전체	1,060(16,161)	1,028(15,697)	(17)	33(496)	983(15,280)
	체육	19(1,190)	19(1,190)	-	-	19(1,190)
2004	전체	1,532(30,455)	1,497(29,410)	-	-	1,428(26,213)
	체육	6(8)	5(7)	-	-	4(5)
2005	전체	6,475(98,945)	6,494(97,464)	1(32)	7(1,604)	6,086(87,028)
	체육	28(804)	28(804)	-	-	27(799)
2006	전체	11,297(97,343)	11,273(95,251)	3(529)	6(1,50)	12,468(100,838)
	체육	34(266)	32(251)	-	-	34(266)
2007	전체	12,807(111,650)	12,803(109,476)	3(129)	33(2,078)	29,862(158,170)
	체육	68(1,272)	68(1,272)	-	-	65(1,198)
2008	전체	71,099(117,020)	70,987(115,174)	107(357)	3(1,677)	119,884(186,443)
	체육	25(308)	25(308)	-	-	22(272)
2009	전체	93,765(101,934)	92,985(100,810)	27(93)	619(877)	113,083(120,616)
	체육	7(89)	2(23)	-	6(79)	2(23)
2010	전체	69,224(74,639)	69,086(74,424)	9(65)	135(147)	124,084(130,119)
	체육	1(3)	1(3)	-	-	1(3)
2011	전체	51,489(53,179)	51,401(52,695)	37(433)	51(51)	14,738(116,047)
	체육	1(2)	-	1(2)	-	-
2012	전체	49,905(50,169)	49,766(50,022)	10(20)	-	120,152(120,360)
	체육	-	-	-	-	-
2013	전체	38,011(38,528)	37,946(38,420)	4(47)	61(61)	76,024(76,503)
	체육	1(41)	1(41)	-	-	-
2014	전체	5,655(50,753)	6,625(50,073)	4(48)	26(266)	126,006(129,028)
	체육	-	-	-	-	-
2015	전체	1,617(46,081)	1,614(46,054)	2(17)	1(1)	128,657(132,097)
	체육	6(102)	6(102)	-	-	6(100)
2016	전체	132(3,097)	132(3,097)	-	-	14,787(14,787)
	체육	-	-	-	-	-

※ 주: ()는 참여인원

※ 주: 전체에는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사업, 교통통신, 과학 환경, 경수로, 대북지원, 기타 등이며 금강산 관광은 제외함

※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2016)

나. 체육관련 남한방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의 남한방문 건수는 총 10건이며 방문자 수는 424명이다. 체육과 관련해서 남한을 방문한 건수는 총 8건이며 방문자 수는 410명이다. 남북체육교류의 경우 남한방문 건수에 비해서 방문자 수가 많은 것은 인천 하계아시아대회 등 인적교류 규모가 큰 대회개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 인천 하계아시아대회를 위한 북한대표선수단의 방한,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발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합스포츠국(United Nations Offi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UNOSDP)의 청소년리더십프로그램(Youth Leadership Program: YLP)에 북한청소년의 참가로 2014년 남북체육교류가 5건이 성사되었으며, 방문자수는 366명이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2014년 2월에 중국에서 개최한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왕중왕전'에 북한 425체육단과의 친선경기를 개최하였고, 이로써 2014 인천 아시아대회에 북한의 참가를 유도할 수 있었다. 2015년에 체육관련 남한방문은 1건으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대표단장 사전회의를 위한 북측대표단 4인의 방문이었다. 2016년 북한의 남한방문은 한 건도 없었다.

표 9-8. 체육관련 남한방문 현황

(단위: 건/명)

구분		신청	승인	불허	철회	성사
2001	전체	5(191)	5(191)	-	-	5(191)
	체육	1(1)	1(1)	-	-	1(1)
2002	전체	13(1,120)	13(1,120)	-	-	13(1,052)
	체육	4(883)	4(883)	-	-	4(765)
2003	전체	11(1,023)	11(1,023)	-	-	11(1,023)
	체육	3(717)	3(717)	-	-	3(717)
2004	전체	13(321)	13(321)	-	-	13(321)
	체육	0(0)	0(0)	-	-	-
2005	전체	30(1,313)	30(1,313)	-	-	30(1,313)
	체육	1(78)	1(78)	-	-	1(78)
2006	전체	42(888)	42(888)	-	-	41(870)
	체육	1(4)	1(4)	-	-	1(4)
2007	전체	69(1,052)	69(1,052)	-	-	69(1,044)
	체육	6(221)	6(221)	-	-	6(213)
2008	전체	48(332)	48(332)	-	-	48(332)
	체육	4(76)	4(76)	-	-	4(76)
2009	전체	101(246)	101(246)	-	-	101(246)
	체육	1(43)	1(43)	-	-	1(43)
2010	전체	61(132)	61(132)	-	-	61(132)
	체육	-	-	-	-	-
2011	전체	2(14)	2(14)	-	-	2(14)
	체육	-	-	-	-	-
2012	전체	-	-	-	-	-
	체육	-	-	-	-	-
2013	전체	2(40)	2(40)	-	-	2(40)
	체육	2(40)	2(40)	-	-	2(40)
2014	전체	5(366)	5(366)	-	-	5(366)
	체육	5(366)	5(366)	-	-	5(366)
2015	전체	1(4)	1(4)	-	-	1(4)
	체육	1(4)	1(4)	-	-	1(4)
2016	전체	-	-	-	-	-
	체육	-	-	-	-	-

※ 주: ()는 참여인원

※ 주: 전체에는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사업, 교통통신, 과학 환경, 경수로, 대북지원, 기타 등이며 금강산 관광은 제외함

※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2016)

10

2016 SPORT WHITE PAPER

스포츠윤리

제1절 스포츠비리

제2절 스포츠윤리강화

제1절 스포츠비리

1. 스포츠비리 현황

정부는 체육단체의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입학비리’, ‘조직사유화’를 반드시 없애져야 할 스포츠 4대악으로 지목하고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육분야 정상화를 위해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합동하여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을 운영하였다. 2015년 6월에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훈령을 제정하고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6년 현재까지 스포츠비리 신고접수 및 조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스포츠 4대악에 관련된 비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책임있고 효과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지속적 운영은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계획·개혁하는 시스템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참여적 정책수행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서 처리한 사건현황을 살펴보면, 총 580건 중 조직사유화 205건(35%), 승부조작 70건(12%), (성)폭력 23건(4%), 입학비리 16건(3%), 기타 266(46%)건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10-1>과 같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조직사유화가 35%로 가장 높았다. 현재 종목별 경기단체의 운영은 대한체육회 규정(가맹경기단체규정, 시·도지부 규정) 및 자체 정관 등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제 규정의 인사, 회계, 업무 관련 내용이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체육단체의 경우,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금을 유용하거나 직원 인사를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협회운영으로 사적이익을 취하는 등 조직을 사유화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표 10-1.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조직사유화	(성)폭력	입학비리	승부조작	기타	합계
조사 중	95	3	9	21	121	251
종결	90	11	6	27	102	236
종결(수사의뢰)	1	-	1	1	11	14
종결(처분요구)	18	7	-	20	28	73
종결(수사 후 검찰송치)	1	-	-	1	4	6
합계	205	23	16	70	266	580
(%)	(35%)	(4%)	(3%)	(12%)	(46%)	(100%)

※ 주 : 조직사유화는 횡령·배임, 승부조작은 편파판정 포함

※ 주 : 2016년 6월 30일 기준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 사례집(2016)

승부조작은 대부분 주요 4대 프로스포츠와 관련하여 불법배팅 등 도박과 관련이 깊다. 불법도박은 선수, 감독, 심판 등이 브로커에 매수되어 승부조작을 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불법도박 이외에 국가대표 선수선발 및 대회 우승 등을 위한 대회 성적에 특정 선수 및 팀, 감독과 협회관계자들의 승부조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외에 심판의 금품수수·향응, 지도자 또는 협회관계자의 고의적 패배 또는 담합 등 승패 조정, 선수의 불법도박 등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체육계가 스포츠를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민의 애국심 고취 등 국익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승리 지상주의에 의한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 선수권의 침해현상은 증가하였다. 스포츠현장에서의 선수권의 침해는 체육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증대 및 체육계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성)폭력 등은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이미지 추락과 한국 체육계의 황폐화를 초래하였다.

체육특기자의 입학비리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대입선발 과정에서 감독의 선발 권한에 대한 규제 및 자정과정이 없어 감독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체육특기자의 입시구조는 입시전형관리위원회 안에 필요에 따라 특기자 심사소위원회회를 두고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전형관리위원회의 전문성 및 현장성 부족, 실기시험 없는 대학 입학사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카우트제도의 폐쇄

성' 으로 인해 현장지도자의 권한이 경기에서의 선수기용 권한(진학에 필요한 경기실적의 전제조건)과 진학관련 권한 등 절대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운동부 운영비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체육계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의 규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부실, 대학의 특수성에 의거한 정부의 관리권한 제약, 교육부 내의 담당부서 이원화(학교건강안전과, 대입제도과)로 인한 관리의 한계, 형식적으로는 프로팀의 신인 드래프트 과정과 유사하나 제도의 비합리적·비교육적 측면 부각 등이 지목되고 있다.

2. 스포츠비리 근절 대책

정부는 개혁의 제도화·상시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내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를 설치, 국민 누구나가 스포츠 관련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각종 비정상 관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제보가 접수되면 사안의 특성과 경중에 따라 관련 단체에 사안을 이첩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징계요구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신고센터는 제보의 접수에서부터 조치결과의 관리까지 총괄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며, 특히 해당 단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 곤란했던 (성)폭력이나 체육계 입학비리 등에서의 피해자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연도별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접수건수는 평균 주 4회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현지조사, 면담, 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종결처리 건수는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표 10-2>와 같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신고방법은 전화(1899-7675), 온라인(실명신고, 익명신고), 전자메일,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 다양하며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실명신고)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높아 징계 또는 형사처분에 이른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때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처리 과정은 <그림 10-1>과 같다.

표 10-2.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수)

연도별	접수건수 (주 평균)	조사 중	총결			
			수사의뢰 검찰송치	처분요구	자체종결	계
2014	274(5)	85	10	46	133	189
2015	197(4)	78	10	26	83	119
2016	84(4)	68	-	1	15	16
합계	555	231	20	73	231	324

※ 주: 2016년 6월 10일 기준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 사례집(2016)

신고대상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성)폭력, 체육계학교 입학비리, 체육단체 임직원 비리 등 조직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불공정 행위					
신고방법	온라인	익명 신고	성명 기재하되 익명을 보장하며, 신고제목, 신고이유 및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실명 신고	인터넷 본인 인증 후 신고 신청서 작성	민원마당 스포츠 비리 신고 실명 신고 익명 신고		
	전자 메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파일을 다운, 작성하여 메일 전송 18997675@korea.kr				
	전화	스포츠 비리 신고 및 관련 궁금 사항에 대한 문의 가능 ☎ 1899-7675				
	FAX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파일을 다운, 작성하여 팩스 전송 ☎ 02-410-1629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역도경기장 내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					
포상금 지급	<p>신고자의 신원이 명확(실명신고)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높고, 조사 기여도, 비리 행위의 영향력, 제도 개선으로 연계 여부에 따라 포상금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일 경우 포상금 100만원 내외 ◇ 중징계의 경우 포상금 200만원 내외 ◇ 형사처벌 등 강력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300만원 내외 지급 <p>신고자가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받지 않을 수도 있음</p>					

그림 10-1. 스포츠비리 신고센터 신고처리 과정(문화체육관광부, 2016)

제2절 스포츠윤리강화

1. 체육단체 감사

정부는 체육계의 관행적인 비리, 파벌, 편파판정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체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기관행정 및 회계감사, 체육단체 운영 감사,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1) 기관행정 및 회계감사

기관행정 및 회계감사는 정기자체감사, 외부 회계감사, 일상감사, 특정감사로 진행되었다. 우선 정기자체감사는 대한체육회 본관, 태릉 및 진천선수촌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15년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 회계결산 등 업무전반 및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현황에 대하여 실시하여 2개 부서에 총 2건의 처분요구를 하였다. 외부 회계감사는 외부 회계전문가의 감사 및 자문서비스를 통한 재무제표 관리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16년도 외부회계감사 실시결과, 2015년 회계연도 대한체육회 회계결산 및 예산집행과 결산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관계법규와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나타났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집행 업무 등 총 88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특정감사는 2016년 1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된 사건 등 5건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2) 체육단체 운영 감사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11개 및 시도체육회 4곳을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원종목단체 5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체육단체 종합

표 10-3. 2016년 체육단체 종합감사 실시현황

월	피감단체명	감사기간	비고
2~12		특정감사	전국소년체육대회(강원, 05.28. ~ 05.31.)
6	제주	06.07 ~ 06.09	-
	검도(1차)	06.20 ~ 06.22	-
	충남	06.28 ~ 06.30	-
7	카바디	07.06 ~ 07.08	-
	검도(2차)	07.12 ~ 07.15	-
	테니스	07.18 ~ 07.22	-
	궁도	07.26 ~ 07.28	-
8	전북	08.10 ~ 08.12	리우올림픽(08. 05. ~ 08.21.)
	아이스하키	08.24 ~ 08.26	
9	하키	09.21 ~ 09.23	-
10	카누	10.12 ~ 10.14	전국체육대회(충남, 10. 7 ~ 10.13.)
	정구	10.24 ~ 10.26	
11	레슬링(1차)	11.07 ~ 11.11	-
	탁구	11.16 ~ 11.18	-
	자전거	11.23 ~ 11.25	-
12	레슬링(2차)	12.12 ~ 12.16	-
	경남	12.19 ~ 12.21	-
계	15개 단체	○ 회원종목단체 11/ 시·도체육회 4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감사 실시현황은 <표 10-3>과 같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국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정책·회계·예산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에 국가공인 전문자격자와 외부 유경험 전문가들로 감사 인력풀을 구성·운영하였다. 국민감사관은 8명이 총 12회에 걸쳐 감사에 참여하였으며, 자세한 국민감사관 활동실적은 <표 10-4>와 같다.

한편, 체육단체 임직원의 청렴도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도체육회 직원, 시·도 종목단체 전무이사·사무국장·회계직원, 시·군·구체육회 사무국장·회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회계 기본 개요, 관련 법률 및 규정, 감사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인원은 제주, 충남, 전북, 경남 4곳의 시·도체육회 161명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사례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8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0-4. 국민감사관 활동실적

연번	기간	단체명
1	09.07 ~ 09.12	대한 당 구 연 맹
2	06.07 ~ 06.09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3	11.07 ~ 11.11	대한 레슬링 협회
4	08.24 ~ 08.26	대한아이스하키협회
5	06.20 ~ 06.22	대한 검 도 회
6	07.12 ~ 07.15	
7	10.24 ~ 10.26	대한 정 구 협 회
8	11.23 ~ 11.25	대한 자 전 거 연 맹
9	11.07 ~ 11.01	대한 레슬링 협회
10	07.20 ~ 07.22	대한 테 니 스 협 회
11	09.21 ~ 09.23	대한 하 키 협 회
12	07.26 ~ 07.28	대한 공 도 협 회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3) 반부패 · 청렴시책 추진

정부는 체육계의 청렴 생태계 조성 및 정착, 반부패 의식 제고 및 부패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우선, 청렴 생태계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청렴 우수기관 반부패 협력활동을 진행하고 고위직 부패위험성/자체청렴도 측정하였으며, 반부패 · 청렴시책 추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명절 청렴서신 발송과 공익신고자 집합 교육 개최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와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홍보활동을 하였다. 자세한 사업시행 내용은 <표 10-5>와 같다.

향후 감사의 실효성 · 효과성 제고를 위한 상임감사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로 자체 감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강화, 감사결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치결과에 대한 추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감사의 실효성 배가 및 연계성 확보, 체육단체 회계업무 능력 배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10-5. 청렴 생태계 조성 및 정착 사업

연번	기간	세부 내용
청렴 우수기관 반부패 협력활동	2016.06월	우수기관 청렴 프로그램 공유, 운영방식 컨설팅을 통한 대한체육회 청렴도 개선 방법 모색
고위직 부패위험성/ 자체청렴도 측정	2016.06.20. ~06.30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국민권익위원회)에 대비하여 내부직원의 청렴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180여명)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회의 개최	2016.04.29 2016.10.21	2016 반부패·청렴시책 계획 및 실행을 위한 회의 진행
명절 청렴서신 발송	2016.02.02 2016.09.12	대상: 체육회 임직원,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거래업체 등
공익신고자 집합 교육 개최	2016.09.23	공익신고자 운영 및 신고제도 안내, 운영매뉴얼 교육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홍보	2016.02월	홈페이지 배너, 선수촌전광판, 각종 인쇄물 제작,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공문 홍보 요청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홍보	2016.08월	홈페이지 배너, 선수촌전광판, 각종 인쇄물 제작,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공문 홍보 요청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 클린스포츠 환경 구축

스포츠현장에서의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로 명랑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클린스포츠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체육분야 공정성 확보 및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1) 체육분야 공정성 확보

정부는 2014년 ‘스포츠비전 2018’을 발표하고,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포츠 불법도박 근절대책으로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를 설립하여 스포츠 불법도박 및 승부조작 근절을 위해 2016년에도 스포츠경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의 주요업무와 실적은 <표 10-6>, <표10-7>과 같다.

표 10-6.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주요 업무

주요업무	내 용
스포츠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및 전문심리상담제도 운영	선수 및 감독 등이 신분상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비리행위(경기조작 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내부고발자 및 외부협박자 피해자 등 신고상담 전담창구 신설
수사기관(경찰청 등) 공조수사 체계 운영	불법행위자 수사의뢰, 현장지원 등
불법행위 신고·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	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 포상금지금지침 수립 등
사전예방 중심의 교육제도 운영	불법스포츠 근절을 위한 주최단체 예방교육 등
모니터링단(민간인)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모니터링단 구성: 합법 및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유경험자 중심 자문위원회 구성: 공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자문 등
기타 불법스포츠관련 예방활동	조사, 분석, 홍보 등

※ 출처: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홈페이지(2016)

표 10-7.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주요 실적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광고글 차단	17,662명	34,049명	27,505명	14,597명	9,060명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차단 및 해지	20,042명	42,504명	61,643명	80,662명	76,766명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검거	12건(101명)	20건(212명)	26건(115명)	53건(221명)	48건(316명)

※ 출처: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홈페이지(2016)

한편, 2016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내·외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 스포츠의 기본가치인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하고 승부조작 등 스포츠 불공정행위 근절을 강조하였다.

2) 스포츠인권 향상

정부는 2014년부터 ‘스포츠비전 2018’의 세부 추진과제인 선수인권보호 시스템강화를 통하여 스포츠현장에서의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홍보활동 전개 및 인프라 구축으로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였다. 2016년에는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다(표 10-8).

표 10-8.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내용

주요업무	내 용
스포츠인권 교육 강화	대상별 스포츠인권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개발 정서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인권센터 운영	스포츠 권익센터 상담실 및 홈페이지 운영 스포츠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접수와 상담 및 조사 지원 찾아가는 교육(인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인권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 실시 폭력·성폭력 실태조사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운영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2016년 스포츠인권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인원이 2015년 보다 2천 명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사업일정 지연과 2016 리우 하계올림픽 참가에 따른 선수대상 집합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2016년 7월부터 온라인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8,680명이 수료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확대하였다. 온라인 스포츠인권 교육은 선수·지도자 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선수·지도자 등록 시 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며, 온라인을 통한 일반인들의 스포츠인권 교육수강도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0-9>와 같다.

표 10-9. 스포츠인권 교육 현황

구분	교육명	교육대상	횟수 및 인원		
			2014	2015	2016
대한체육회	찾아가는 인권교육	신청학교 및 단체(국가대표, 후보선수)	166회 6,991명	117회 7,827명	295회 10,103명
시·도체육회	시·도별 인권교육	시·도체육회 소관 학교, 선수, 지도자	146회 14,969명	181회 16,712명	122회 9,749명
회원종목단체	종목별 인권교육	종목별 선수, 지도자, 심판 등	97회 8,666명	163회 14,610명	122회 9,749명
합계			409회 30,626명	461회 39,149명	627회 37,820명

※ 주 : 회원종목단체는 2015년까지 경기단체임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스포츠인권센터는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폭력·성폭력 및 기타 민원을 신고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스포츠인권 침해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스포츠인권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폭력·성폭력, 기타 민원의 전체건수는 2014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신고 14건, 상담 416건 등 총 430건으로 2015년 550건 대비 120건 감소하였다. 특히 폭력과 성폭력 신고건수는 2015년 26건과 8건에서 2016년 11건과 2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상담 건수도 폭력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0-10>과 같다.

표 10-10. 선수인권 침해 신고·상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폭력			성폭력			기타 민원			합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2009	19	7	26	3	3	6	4	47	51	26	57	83
2010	34	114	148	5	11	16	47	285	332	86	410	496
2011	28	72	100	8	26	34	46	336	382	82	434	516
2012	39	83	122	8	21	29	13	296	309	60	400	460
2013	31	104	135	6	31	37	15	430	445	52	565	617
2014	24	127	151	9	48	57	49	380	429	82	555	637
2015	26	149	175	8	32	40	1	334	335	35	515	550
2016	11	162	173	2	22	24	1	232	233	14	416	430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폭력, 성폭력, 기타 민원과 관련하여 신고대비 징계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신고 대비 징계 비율은 50%로 2015년 대비 13% 증가하였다. 폭력의 경우 2015년까지 41%에 머물던 징계비율이 2016년 62.5%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0-11>과 같다.

2016년도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폭력·성폭력, 기타 민원의 전체건수가 감소한 것은 그동안 정부 및 유관기관의 선수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 실시 등으로 인한 선수들의 인식개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에서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회관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인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실태 인식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자가 62.2%로 2015년 대비 6.2% 상승하였다. 또

표 10-11. 스포츠인권센터 신고대비 징계 현황

(단위: 건)

연도	폭력		성폭력		기타 민원		합계	
	신고	징계	신고	징계	신고	징계	신고	징계
2009	19	15	3	3	4	-	26	18
2010	34	16	5	2	47	1	86	19
2011	28	12	8	5	46	-	82	17
2012	39	14	8	5	13	2	60	21
2013	31	14	6	3	15	-	52	17
2014	24	10	9	7	49	-	82	17
2015	26	11	8	2	1	0	35	13
2016	11	7	2	0	1	0	14	7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한 스포츠인권센터 인지도도 2016년 65.5%로 2015년 대비 6.3%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2년마다 조사하는 선수들의 (성)폭력 현황을 보면 2016년 폭력 및 성폭력 현황이 2014년과 비교하여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12. 스포츠인권 인지도

구분	2014	2015	2016
(성)폭력 실태 인식개선도	54.0%	56.1%	62.2%
스포츠인권센터 인지도	54.2%	59.2%	65.5%

※ 주: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회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출처: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표 10-13. 2016년 선수(성)폭력 현황

(단위: %)

폭력	연도		성폭력	연도	
	2014	2016		2014	2016
구타	15.4	8.7	성희롱	7.3	3.06
심리적 폭력	20.6	16.9		성폭행	0.9
가혹행위	17.5	15.0	전체 평균		4.1
전체 평균	17.8	13.5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표 10-14. 2016년 학교급별, 종목별, 성별 폭력 경험률 (단위: %)

폭력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심리적/언어적)		가혹행위 (기함/일차려)		전체 폭력		
	2014	2016	2014	2016	2014	2016	2014	2016	
학교급별	초 등 학 생	21.8	15.6	18.3	14.9	10.6	14.9	32.4	25.7
	중 학 생	19.6	10.2	24.9	17.6	21.6	19.8	35.3	27.0
	고 등 학 생	14.6	7.0	23.1	20.6	24.2	15.1	37.9	28.1
	대학 및 일반선수	7.7	3.9	16.3	15.8	13.1	11.3	24.6	21.6
종목별	개 인 종 목	12.9	8.3	18.6	15.6	13.9	10.0	29.4	23.2
	단 체 종 목	18.3	7.4	22.8	17.3	21.6	20.2	35.4	26.5
성별	남	13.0	7.4	18.2	15.3	18.0	15.4	29.7	26.3
	여	21.6	11.6	26.4	20.8	16.2	12.5	38.5	28.4
전체 평균		15.4	8.7	20.6	16.9	17.5	15.0	32.2	26.9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표 10-15. 2016년 학교급별, 종목별, 성별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률 (단위: %)

폭력	성희롱		성폭력		성 관련 폭력		
	2014	2016	2014	2016	2014	2016	
학교급별	초 등 학 생	7.0	1.6	1.4	0.4	7.4	1.8
	중 학 생	10.5	5.2	1.9	0.3	10.7	5.4
	고 등 학 생	5.5	4.0	0.0	1.0	5.5	4.3
	대학 및 일반선수	6.0	2.2	0.5	0.0	6.0	2.2
종목별	개 인 종 목	5.5	3.1	0.4	0.3	5.6	3.2
	단 체 종 목	9.3	4.4	1.5	0.1	9.4	4.5
성별	남	7.1	4.1	0.9	0.5	7.2	4.2
	여	7.7	2.5	1.0	0.3	7.9	2.6
전체 평균		7.3	3.6	0.9	0.4	7.4	3.0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6)

3.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2016년 3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 발표를 계기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와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척결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제재조치를 마련하였다. 사전 예

방조치로는 대회 세부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하여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 정책과제 추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경기실적증명서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대학관계자 등에 경기동영상을 제공하여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사후 예방조치로는 입학비리 관련 선수의 대회출전 정지·처벌을 강화하고 학교 운동부 비리 현황을 회원종목단체에 통보하여 조사·검토·징계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0-16>과 같다.

표 10-16.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

입학비리 근절대책		세부내용	성과
사전 예방 조치	대회 세부정보 제공	정부-대한체육회가 승인한 전국 규모 주요대회 정보를 교육부에 제공	
	경기실적증명서 관리체계 개선	입학비리 대책을 반영하여 대한체육회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 지침’ 개정 회원종목단체 대상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 설명회 개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시스템 시행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 지침’ 개정(16.06.22.) 회원종목단체 대상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 설명회 개최(16.07.14)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시스템 시행(16.07.21.)
	대학관계자 등에 경기동영상 제공	기량 향상을 위한 경기 동영상 제공 시스템 구축	회원종목단체 대회경기영상” 홈페이지(vod.sport.or.kr) 개설(16.07.20.)
사후 제재 조치	대회출전 정지·처벌 강화	입학비리 대학교 운동부 대회 출전 정지 입학비리 주도한 지도자 및 학생 영구제명 입학비리 대학교 모집 정지 및 지원예산 삭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 개정(16.03.21.)
	학교운동부 비리 종목단체에 통보	회원종목단체에 학교에서 통보 받은 비위사실에 대해 조사·검토·징계 조치 시행 요청	

※ 출처 : 2016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2017)

특히, 체계적인 경기동영상 관리 시스템은 학생기량에 대한 확인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선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정보제공 및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기반을 마련하였다. 종목별 경기동영상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도는 <그림 10-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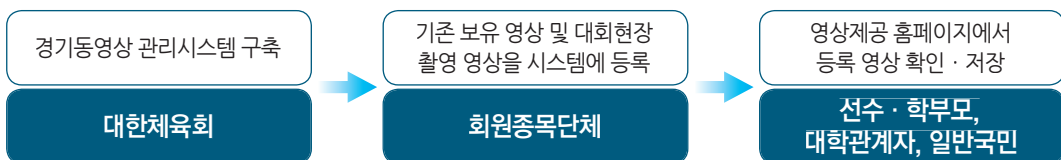


그림 10-2. 종목별 경기동영상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도(대한체육회, 2016)

2016 Sport White Paper

집필진

(가나다 순)

책임 기획·편집

- 문화체육관광부
 - 오영우(체육국장)

집필진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 책임집필 : 노용구
 - 공동집필 : 권연택, 김태현, 여경아
 - 검토위원 : 김권일, 김대회, 김미숙, 김미옥, 김양례, 남상우, 성문정, 유지곤, 정현우, 조현주, 한태룡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 총괄 : 이수원, 신현수
 - 검토위원 : 왕기영, 국동남, 박찬아, 김현목, 김재현, 김용남, 도현우, 정인양, 박홍규, 신인교, 정슬기, 김파중, 방강덕, 권재오

감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 책임감수 : 김승규(체육정책과장)
 - 감수위원 : 최진(체육진흥과장), 정원상(국제체육과장)

